정책보고서 2022-89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43-1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이윤경
이선희·강은나·김세진·남궁은하·최유정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02. 10.)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차

요 약 ····· 1

제1장 서론 ····· 3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1

제3절 표본설계 ····· 50

제2장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항목 설계 ····· 93

제1절 장기요양실태조사 항목 구성 기본방향 ····· 93

제2절 장기요양실태조사 종류별 기본방향 및 구성 ····· 99

제3장 장기요양수급자 조사결과 ····· 123

제1절 수급자의 일반 특성 ····· 123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 164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 현황 ····· 253

제4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현황 ····· 299

제4장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결과 ····· 323

제1절 일반 현황 ····· 323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 365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 419

제5장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 455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특성 ····· 455

제2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 459

제3절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대응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544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력 ····· 590

제6장 장기요양요원 조사결과 ····· 603

제1절 일반 현황 ····· 603

제2절 근무조건 ····· 618

제3절 근무환경 ····· 663

제4절 만족도 및 개선사항 ····· 694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근무현황 ····· 724

제7장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함의 ····· 749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 749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 773

참고문헌 ····· 779

부록 ····· 780

[부록 1]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표 ····· 780

[부록 2] 장기요양 행정지표 결과 분석 ····· 844

표 목차

〈표 1-1〉 장기요양실태조사 유형별 조사규모 ····· 42
〈표 1-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종류별 주요문항 구성 ····· 44
〈표 1-3〉 조사 홍보 내용 ····· 47
〈표 1-4〉 조사별 현장조사 완료율 ····· 48
〈표 1-5〉 수급자 조사의 응답 유형 ····· 49
〈표 1-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수급자) ····· 51
〈표 1-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수급자) ····· 52
〈표 1-8〉 분산분석 결과 ····· 54
〈표 1-9〉 사후분석 결과(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연령층) ····· 54
〈표 1-10〉 분류지표 순서 결과 ····· 55
〈표 1-11〉 분류지표(수급자) ····· 55
〈표 1-12〉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 56
〈표 1-13〉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 56
〈표 1-14〉 표본 규모(수급자) ····· 56
〈표 1-15〉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수급자) ····· 57
〈표 1-1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기관) ····· 58
〈표 1-1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기관) ····· 58
〈표 1-18〉 분산분석 결과 ····· 59
〈표 1-19〉 분석분석 사후분석 결과(설립유형) ····· 60
〈표 1-20〉 분류지표 순서 결과 ····· 60
〈표 1-21〉 분류지표(기관) ····· 60
〈표 1-22〉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 61
〈표 1-23〉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 61
〈표 1-24〉 표본 규모(기관) ····· 62
〈표 1-25〉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기관) ····· 62
〈표 1-2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요원) ····· 63
〈표 1-2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1) ····· 65
〈표 1-28〉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2) ····· 67
〈표 1-29〉 정준 상관분석 결과(표준화된 정준상관계수) ····· 69
〈표 1-30〉 분류지표(기관) ····· 69
〈표 1-31〉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 70

〈표 1-32〉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 70
〈표 1-33〉 표본 규모(요원) ····· 71
〈표 1-34〉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요원) ····· 72
〈표 1-35〉 표본의 유고 사유(예시) ····· 76
〈표 1-36〉 조사완료 수급자 현황 ····· 77
〈표 1-37〉 조사완료 장기요양 기관 현황 ····· 78
〈표 1-38〉 조사완료 장기요양 요원 현황 ····· 79
〈표 1-39〉 무응답층 조사완료 수급자 현황 ····· 80
〈표 1-40〉 무응답층 조사완료 장기요양 요원 현황 ····· 81
〈표 1-41〉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수급자) ····· 83
〈표 1-42〉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기관) ····· 84
〈표 1-43〉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요원) ····· 84
〈표 1-44〉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수급자) ····· 85
〈표 1-45〉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기관) ····· 86
〈표 1-46〉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요원) ····· 86
〈표 1-47〉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수급자) ····· 87
〈표 1-48〉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기관) ····· 87
〈표 1-49〉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요원) ····· 87
〈표 1-50〉 조사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신뢰수준 평가 ····· 89
〈표 2-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조사 항목 구성 ····· 95
〈표 2-2〉 장기요양기관조사 내용 구성 ····· 96
〈표 2-3〉 장기요양요원조사 내용 구성 ····· 98
〈표 2-4〉 수급자 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 101
〈표 2-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 107
〈표 2-6〉 장기요양기관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 113
〈표 2-7〉 장기요양요원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 118
〈표 3-1〉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반 특성 ····· 124
〈표 3-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유무 ····· 126
〈표 3-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자녀수 ····· 127
〈표 3-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소 식사 형태 ····· 129
〈표 3-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거동가능 수준 ··· 131

〈표 3-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 133
〈표 3-7〉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자 ····· 135
〈표 3-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정보 습득 경로 ····· 137
〈표 3-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 ····· 140
〈표 3-1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요 만성질환 ····· 141
〈표 3-1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용하고 있는 알약 개수(1일 기준) ····· 143
〈표 3-1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 ····· 145
〈표 3-1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본인 의료기관 직접 방문 횟수 ·· 147
〈표 3-1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 ····· 149
〈표 3-1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 시 이동방법 ····· 151
〈표 3-1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수급자 대신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 152
〈표 3-1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요양병원 제외) ····· 154
〈표 3-1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 횟수 및 평균 입원일수 (요양병원 제외) ····· 155
〈표 3-1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 입원 여부 ····· 157
〈표 3-2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 입원 횟수 및 평균 입원일수 ··· 158
〈표 3-2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낙상 경험 ····· 160
〈표 3-2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낙상 후 병원 치료 여부 ····· 161
〈표 3-2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욕창 발생 경험 ····· 163
〈표 3-2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 형태 ····· 165
〈표 3-2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주 ····· 167
〈표 3-2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원 수(본인 포함) ····· 169
〈표 3-2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본인 포함) ····· 170
〈표 3-2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 유형 ····· 172
〈표 3-2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 점유 형태 ····· 174
〈표 3-3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 177
〈표 3-3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처방전에 따른 약 복용 현황 179
〈표 3-3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경험 ····· 181
〈표 3-3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횟수 ····· 182

〈표 3-3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 184
〈표 3-35〉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 외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 여부 ····· 187
〈표 3-36〉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소 도와주는 사람(1순위) ····· 188
〈표 3-37〉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소 도와주는 사람(2순위) ····· 189
〈표 3-3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경험 ····· 191
〈표 3-3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빈도 ····· 192
〈표 3-4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장소 ····· 194
〈표 3-4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또는 복지기관의 지원 ····· 197
〈표 3-42〉 (본인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 경험 ····· 200
〈표 3-43〉 (본인응답) 건강악화 시 거주지 ····· 202
〈표 3-44〉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 ····· 204
〈표 3-4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 이용 현황 ····· 207
〈표 3-4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 이용 현황 ····· 209
〈표 3-4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 이용 현황 ····· 210
〈표 3-4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야간보호 이용 현황 ····· 211
〈표 3-4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미이용자 현황 ····· 213
〈표 3-5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미이용자 현황 ····· 215
〈표 3-5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단기보호급여 이용 여부 ····· 217
〈표 3-5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재가급여 이용행태 ····· 219
〈표 3-5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달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 ····· 221
〈표 3-5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여부 ····· 223
〈표 3-55〉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개수 ····· 224
〈표 3-56〉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복지용구 이용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만족도 ··· 226
〈표 3-57〉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미사용 이유 ····· 227
〈표 3-58〉 (본인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 유형 ····· 229

〈표 3-59〉 (본인응답) 방문요양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 231
〈표 3-60〉 (본인응답) 방문요양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 233
〈표 3-61〉 (본인응답) 방문목욕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 235
〈표 3-62〉 (본인응답) 방문목욕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 237
〈표 3-63〉 (본인응답) 방문간호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 239
〈표 3-64〉 (본인응답) 방문간호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 241
〈표 3-65〉 (본인응답) 주야간보호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 243
〈표 3-66〉 (본인응답) 주야간보호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 245
〈표 3-67〉 (본인응답) 단기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 246
〈표 3-6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지난 1년간 코로나19 관련 경험(중복응답) ····· 248
〈표 3-69〉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지 못한 경험 ····· 250
〈표 3-7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코로나19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 252
〈표 3-7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 장소 ····· 254
〈표 3-7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기 전 가구형태 ····· 256
〈표 3-7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기 전 병원이나 시설 평균 입원·입소기간 ····· 258
〈표 3-7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여부 ····· 259
〈표 3-7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이용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중복응답) ····· 261
〈표 3-7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기간 ····· 263
〈표 3-7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실 규모 ····· 264
〈표 3-7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가족이나 지인 방문 빈도 ····· 266
〈표 3-7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가족이나 지인 등과 통화(영상 통화 포함) 빈도 ····· 268
〈표 3-80〉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 경험 ····· 270
〈표 3-8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 ····· 272
〈표 3-8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목욕 ····· 274
〈표 3-8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구강관리 ··· 275

〈표 3-8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물리(작업)치료 ····· 276
〈표 3-8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기능회복훈련 ····· 278
〈표 3-8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 279
〈표 3-8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여가활동 서비스 ····· 280
〈표 3-8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건물 밖 산책 ····· 282
〈표 3-8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야유회 또는 나들이 ····· 283
〈표 3-9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시설급여 이용에 대한 납부 비용 ····· 285
〈표 3-91〉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식사 및 목욕 만족도 ····· 287
〈표 3-92〉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청결서비스 만족도 ····· 288
〈표 3-93〉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 증진 및 간호의료서비스 만족도 ····· 290
〈표 3-94〉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여가활동 및 시설환경 만족도 ····· 292
〈표 3-95〉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전반적인 만족도 ····· 294
〈표 3-96〉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다른 수급자와의 생활 만족도 ····· 296
〈표 3-97〉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 의향 ····· 298
〈표 3-98〉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생활하고 싶은 장소 ····· 298
〈표 3-9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 ····· 300
〈표 3-10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현 (요양)병원 입원자의 입원 기간 ····· 301
〈표 3-10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현 (요양)병원 입원자의 지난 한 달간 (요양)병원 입원비 ····· 302
〈표 3-10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현재 가구형태 (일반 가정 응답자) ····· 304
〈표 3-10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주 ····· 305
〈표 3-10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원 수 ····· 306
〈표 3-105〉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본인 포함) ····· 307
〈표 3-106〉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주택 종류 ····· 308

〈표 3-107〉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 311
〈표 3-10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3개월 동안 일상생활 및 신체수발 도와주는 사람(1순위) ····· 312
〈표 3-10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3개월 동안 일상생활 및 신체수발 도와주는 사람(2순위) ····· 313
〈표 3-11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후 이용한 적 있는 장기요양급여(중복응답) ····· 314
〈표 3-11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 315
〈표 3-11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 ··· 316
〈표 3-11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1순위) 317
〈표 3-11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2순위) 318
〈표 3-115〉 (본인 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경험 ····· 320
〈표 4-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의 일반 특성 ····· 325
〈표 4-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응답 가족과의 관계 ····· 327
〈표 4-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와의 동거 여부 ····· 330
〈표 4-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와 이용자의 거주 지역 ····· 331
〈표 4-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 여부 ··· 334
〈표 4-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여부 ··· 335
〈표 4-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 여부 ····· 337
〈표 4-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이용 여부 ····· 338
〈표 4-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가족휴가제 인지여부 ····· 341
〈표 4-1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여부 ····· 342
〈표 4-11〉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담자 ····· 344
〈표 4-1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나 정보 ····· 346
〈표 4-1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나 정보의 만족도 ····· 348
〈표 4-1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향후 희망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정보 ····· 350
〈표 4-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 352
〈표 4-1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정신적 부양부담 완화 ····· 354
〈표 4-1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 356
〈표 4-1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가족의 사회 참여 활동 향상 358

〈표 4-1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360
〈표 4-2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가 겪은 부적절한 경험 목격(인지) 여부 ····· 362
〈표 4-2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이용자 돌봄 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가장 큰 어려움 ····· 364
〈표 4-22〉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 367
〈표 4-23〉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의 부담 정도: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 368
〈표 4-24〉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지원 ····· 371
〈표 4-2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부담정도: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지원 ····· 372
〈표 4-26〉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 375
〈표 4-27〉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376
〈표 4-28〉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 379
〈표 4-29〉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 380
〈표 4-30-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직원) ····· 384
〈표 4-30-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385
〈표 4-30-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386
〈표 4-30-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전반적인 만족도) ····· 387
〈표 4-31-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장기요양기관 직원) ····· 390
〈표 4-31-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391
〈표 4-31-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 392
〈표 4-31-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전반적인 만족도) ····· 393
〈표 4-32-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직원) ····· 396
〈표 4-32-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397
〈표 4-32-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서비스 내용) ····· 398
〈표 4-32-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전반적인 만족도) ····· 399

〈표 4-33-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기관 직원) ····· 402
〈표 4-33-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403
〈표 4-33-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 ····· 404
〈표 4-33-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전반적인 만족도) ····· 405
〈표 4-34-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직원) ····· 407
〈표 4-34-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 408
〈표 4-34-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서비스 내용) ····· 409
〈표 4-34-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전반적인 만족도) ····· 410
〈표 4-3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412
〈표 4-36〉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 건강상태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 414
〈표 4-37〉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 416
〈표 4-38〉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의견 ·· 418
〈표 4-39〉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 421
〈표 4-40〉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 423
〈표 4-41〉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병원 동행,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 425
〈표 4-42〉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병원 동행,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 427
〈표 4-43-①〉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식사 ····· 429
〈표 4-43-②〉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목욕 및 청결 서비스 ····· 431
〈표 4-43-③〉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 ····· 433
〈표 4-43-④〉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간호 및 의료 서비스 ····· 435
〈표 4-43-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시설의 환경 ····· 437
〈표 4-43-⑥〉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 439
〈표 4-43-⑦〉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비용 ····· 441
〈표 4-43-⑧〉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443
〈표 4-44〉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 446
〈표 4-45〉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수급자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 ····· 447

〈표 4-46〉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시설급여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 ····· 449
〈표 4-47〉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시설급여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서비스 질 측면 ····· 451
〈표 5-1〉 응답 기관의 일반 특성 ····· 456
〈표 5-2〉 응답자(시설장)의 일반 특성 ····· 458
〈표 5-3〉 응답 기관의 운영 주체 ····· 460
〈표 5-4〉 응답 기관의 단독 및 병설 운영 현황 ····· 462
〈표 5-5〉 응답기관의 병설 형태 ····· 464
〈표 5-6〉 장기요양기관의 병설 운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중복응답) ····· 466
〈표 5-7〉 장기요양기관의 병설 운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 개수(조사대상 급여유형 포함) ····· 467
〈표 5-8〉 주야간보호기관의 주당 운영 일수 ····· 468
〈표 5-9〉 주야간보호기관의 일일 운영 시간 ····· 469
〈표 5-10〉 응답 기관의 점유 형태 ····· 471
〈표 5-11〉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형태 ····· 473
〈표 5-12〉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사용하는 최고층수 ····· 474
〈표 5-13〉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 475
〈표 5-14〉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개수 현황 ····· 477
〈표 5-15〉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유형별 평균 침실개수 ····· 478
〈표 5-16〉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유형별 평균 입소자 수 ····· 479
〈표 5-17〉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현황 ····· 481
〈표 5-18〉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이용자 현황 ····· 483
〈표 5-19〉 장기요양기관의 성별 이용자 현황 ····· 484
〈표 5-20〉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진단 여부별 이용자 현황 ····· 485
〈표 5-21〉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 ····· 487
〈표 5-22〉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 ····· 489
〈표 5-23〉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 ····· 491
〈표 5-24〉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안직원 현황 ····· 493
〈표 5-25〉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 ····· 495
〈표 5-26〉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원 현황 ····· 497
〈표 5-27〉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 ····· 498

〈표 5-28〉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 ····· 499
〈표 5-29〉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 ····· 501
〈표 5-30〉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 ····· 503
〈표 5-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종별 직원 현황 ····· 504
〈표 5-32〉 노인요양시설의 직종별 직원 현황 ····· 506
〈표 5-33〉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자체예산으로 직원 추가채용 여부 및 평균 인원 ····· 508
〈표 5-34〉 장기요양기관의 법정 직원배치기준 외 추가채용 필요 직종(1순위) ····· 510
〈표 5-35〉 지난 3개월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사회복무요원 ····· 512
〈표 5-36〉 지난 3개월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유급 프로그램 강사) ···· 513
〈표 5-37〉 지난 3개월간 시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 514
〈표 5-38〉 사회보험 가입 직원 수 ····· 515
〈표 5-39〉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복지 현황 ····· 517
〈표 5-40〉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 ····· 519
〈표 5-41〉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6개월간 직원 퇴사 현황 ····· 521
〈표 5-42〉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 523
〈표 5-43〉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 ····· 525
〈표 5-44〉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개선사항(1순위) ····· 527
〈표 5-45〉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 개선사항 ····· 529
〈표 5-46〉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6개월간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 531
〈표 5-47〉 장기요양기관(주야간, 단기보호, 시설급여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주·야간 근무 인원 ····· 533
〈표 5-48〉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야간근무 운영 형태 ····· 534
〈표 5-49〉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1일 평균 야간근무 인원 ····· 535
〈표 5-50〉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 직종 ····· 537
〈표 5-51〉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현황 ····· 539
〈표 5-52〉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 ····· 541
〈표 5-53〉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현황 ····· 542
〈표 5-54〉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평균 금액 ····· 543
〈표 5-55〉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여부 ····· 545
〈표 5-56〉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총 건수 ····· 547
〈표 5-57〉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유형별 평균 건수 ····· 549

〈표 5-58〉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낙상 건수 ····· 551
〈표 5-59〉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 553
〈표 5-60〉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방식(중복응답) ····· 554
〈표 5-61〉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 여부 ····· 556
〈표 5-62〉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에 대한 대응방식(중복응답) 558
〈표 5-63〉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 상담 및 사례 관리 ····· 560
〈표 5-64〉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보호자 상담 및 대응 ····· 562
〈표 5-65〉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기관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업무 ····· 564
〈표 5-66〉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장기요양기관 평가 ····· 566
〈표 5-67〉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안전설비 및 시설 관리 ····· 568
〈표 5-68〉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 570
〈표 5-69〉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 ····· 572
〈표 5-70〉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 ····· 574
〈표 5-71〉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1순위) ····· 576
〈표 5-72〉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인력채용 ····· 578
〈표 5-73〉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1순위) ····· 580
〈표 5-74〉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직종(1순위) ····· 582
〈표 5-75〉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 ····· 584
〈표 5-76〉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 ····· 585
〈표 5-77〉 시설 급여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 ····· 587
〈표 5-78〉 시설 급여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대응 방법(중복응답) ····· 589
〈표 5-79〉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591
〈표 5-80〉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 592
〈표 5-81〉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 593
〈표 5-82〉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 ····· 594
〈표 5-83〉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 596
〈표 5-84〉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 598
〈표 5-85〉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 ····· 599

〈표 6-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특성 ····· 605
〈표 6-2〉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증 보유 현황(중복 응답) ····· 607
〈표 6-3〉 가족인 요양보호사 현황 ····· 609
〈표 6-4〉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주된 이유 ····· 611
〈표 6-5〉 장기요양요원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 ····· 613
〈표 6-6〉 장기요양요원의 주 소속기관 근무기간 ····· 615
〈표 6-7〉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 계속 근무기간 ····· 617
〈표 6-8〉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직위 ····· 619
〈표 6-9〉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 ····· 621
〈표 6-10〉 장기요양요원의 주된 근무장소 ····· 623
〈표 6-11〉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대 ····· 625
〈표 6-12〉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교대제 형태 ····· 627
〈표 6-13〉 장기요양요원의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지난 3개월) 629
〈표 6-14〉 장기요양요원의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 ····· 631
〈표 6-15〉 장기요양요원의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평균 수령임금(지난 3개월) ····· 634
〈표 6-16〉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 동안 복수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여부 ····· 636
〈표 6-17〉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 동안 동시 근무 장기요양기관수 ····· 637
〈표 6-18〉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과 월평균 임금(복수기관 근무자 통합) ····· 639
〈표 6-19〉 장기요양요원의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 ····· 641
〈표 6-20〉 휴일수당 수령방식 ····· 643
〈표 6-21〉 장기요양요원의 주휴수당 수령방식 ····· 645
〈표 6-22〉 장기요양요원의 연차수당 수령방식 ····· 647
〈표 6-23〉 장기요양요원의 연장(초과)근로수당 수령방식 ····· 649
〈표 6-24〉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여부 ····· 651
〈표 6-25〉 장기요양요원의 직책수당 수령 여부 ····· 652
〈표 6-26〉 장기요양요원의 기타 수당 수령 여부 ····· 653
〈표 6-27〉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 자유로운 사용 여부 ····· 655
〈표 6-28〉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1순위) ····· 657
〈표 6-29〉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2순위) ····· 658

〈표 6-30〉 장기요양요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660
〈표 6-31〉 장기요양요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 661
〈표 6-32〉 장기요양요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662
〈표 6-3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 빈도 ····· 664
〈표 6-34〉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빈도 ····· 666
〈표 6-35〉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빈도 ·· 668
〈표 6-36〉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업무 이외 활동, 초과업무 등 요구 빈도 ····· 670
〈표 6-37〉 장기요양요원의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방식(1순위) ····· 672
〈표 6-38〉 장기요양요원의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방식(2순위) ····· 673
〈표 6-39〉 장기요양요원의 소속기관의 부당대우 대응 조치 ····· 675
〈표 6-40〉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 ····· 677
〈표 6-41〉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 및 사고 비용처리 방법(중복 응답) ····· 679
〈표 6-42〉 장기요양요원의 발생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대응의 적절성 수준 ····· 680
〈표 6-4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관련 주된 어려움 ····· 682
〈표 6-44〉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대면 및 비대면) 참여 경험 여부 ····· 684
〈표 6-45〉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내용(중복 응답) ····· 686
〈표 6-46〉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참여 만족도 ····· 687
〈표 6-47〉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미참여 주된 이유 ····· 689
〈표 6-48〉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정도 ····· 691
〈표 6-49〉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1순위) ····· 692
〈표 6-50〉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2순위) ····· 693
〈표 6-51〉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임금수준 ····· 695
〈표 6-52〉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근무시간 ····· 696
〈표 6-53〉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근무유형 ····· 698
〈표 6-54〉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내용 ····· 699
〈표 6-55〉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강도 ····· 701
〈표 6-56〉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 ····· 702
〈표 6-57〉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고용 안정성 ····· 704

〈표 6-58〉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복리후생 ····· 705
〈표 6-59〉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 707
〈표 6-60〉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708
〈표 6-61〉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 710
〈표 6-62〉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직 여부 ····· 712
〈표 6-6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직 횟수 ····· 713
〈표 6-64〉 장기요양요원의 타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직한 이유(중복 응답) ····· 715
〈표 6-65〉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과 이직 희망 업종) ····· 717
〈표 6-6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 719
〈표 6-67〉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 720
〈표 6-68〉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 722
〈표 6-69〉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 723
〈표 6-70〉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급여 제공 여부 ····· 724
〈표 6-71〉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725
〈표 6-72〉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 급여 제공 여부 ····· 726
〈표 6-73〉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727
〈표 6-74〉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 급여 제공 여부 ····· 728
〈표 6-75〉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 729
〈표 6-76〉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와 외출 동행 여부 ····· 731
〈표 6-77〉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와의 외출 동행 시 주된 이동수단 ····· 732
〈표 6-78〉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 ····· 734
〈표 6-79〉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이유(중복 응답) ····· 735
〈표 6-80〉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 빈도 ····· 737
〈표 6-81〉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1일 기준 실제 사용 휴게시간 ····· 739
〈표 6-82〉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소속기관 내 독립된 휴게공간 여부 ····· 740
〈표 6-83〉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야간근무 여부 ····· 742
〈표 6-84〉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 외 업무상 전화 또는 문자 대응 횟수 ····· 743
〈표 6-85〉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 대한 부당행위 목격률 ····· 745
〈표 7-1〉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주거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 750

〈표 7-2〉 재가급여 이용자와 시설급여 이용자의 급여 선택시 고려사항 ····· 751
〈표 7-3〉 재가급여 서비스별 해당 급여 미이용자의 인지율 및 향후 이용 의향 ····· 753
〈표 7-4〉 시설급여 이용자의 시설 거주기간 ····· 753
〈표 7-5〉 급여 이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754
〈표 7-6〉 급여 이용에 대한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만족 비율) ····· 756
〈표 7-7〉 재가 급여 이용자 가족의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1순위) ····· 756
〈표 7-8〉 수급자 및 가족의 학대 경험 및 목격률 ····· 757
〈표 7-9〉 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율 ····· 759
〈표 7-10〉 급여 이용자 가족의 급여 개선사항 및 희망서비스 ····· 760
〈표 7-11〉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비율의 합) ····· 765
〈표 7-12〉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 766
〈표 7-1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매우만족+만족) ····· 772
〈부표 1〉 2022년 장기요양 행정지표 개요 ····· 845
〈부표 2〉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47
〈부표 3〉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49
〈부표 4〉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50
〈부표 5〉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수 및 수급자 비율 ····· 850
〈부표 6〉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52
〈부표 7〉 장기요양급여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지표 정의 및 산식 ····· 853
〈부표 8〉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55
〈부표 9〉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수급 장애인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56
〈부표 10〉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지표 정의 및 산식 ····· 858
〈부표 11〉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일수 지표 정의 및 산식 ····· 859
〈부표 12〉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지표 정의 및 산식 ····· 860
〈부표 13〉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61
〈부표 14〉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63
〈부표 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64
〈부표 16〉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65
〈부표 1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66
〈부표 18〉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68
〈부표 19〉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69

〈부표 20〉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70
〈부표 2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71
〈부표 23〉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 872
〈부표 23〉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74
〈부표 25〉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76
〈부표 25〉 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 877
〈부표 26〉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78
〈부표 28〉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80
〈부표 29〉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지표 정의 및 산식 ····· 881
〈부표 30〉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83
〈부표 3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 884
〈부표 31〉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정의 및 산식 ····· 886
〈부표 32〉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기초자료(2016~2018년도) ····· 886
〈부표 32〉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기초자료(2019~2020년도) ····· 886
〈부표 33〉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88
〈부표 35〉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 지표 정의 및 산식 ····· 890
〈부표 3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91
〈부표 37〉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93
〈부표 38〉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지표 정의 및 산식 ····· 894

그림 목차

〔그림 1-1〕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 ····· 87
〔부도 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 848
〔부도 2〕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 849
〔부도 3〕 전체 인구 및 연령대별 인구 대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 851
〔부도 4〕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 852
〔부도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 854
〔부도 6〕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 855
〔부도 7〕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비율 ····· 856
〔부도 8〕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 858
〔부도 9〕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 일수 ····· 860
〔부도 10〕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861
〔부도 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 862
〔부도 12〕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 863
〔부도 1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 864
〔부도 14〕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 866
〔부도 15〕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 867
〔부도 16〕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 868
〔부도 17〕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 869
〔부도 18〕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 870
〔부도 19〕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 871
〔부도 20〕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 873
〔부도 21〕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 875
〔부도 22〕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 876
〔부도 23〕 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 수 ····· 877
〔부도 24〕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 879
〔부도 25〕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 880
〔부도 26〕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 882
〔부도 27〕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 883
〔부도 2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 884
〔부도 29〕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재가급여) ····· 887
〔부도 30〕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시설급여) ····· 887

〔부도 31〕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 889
〔부도 3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 ····· 890
〔부도 3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 892
〔부도 34〕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 893
〔부도 35〕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 895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2022년 이루어진 본 조사는 2019년 1차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조사임

○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②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수급자)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관한 사항, ③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④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⑤ 그 외의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

□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급여 제공기관 및 인력의 현황과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 항목 구성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1)수급자와 가족조사, 2)장기요양기관조사, 3)장기요양요원조사의 3종으로 구성

○ 2019년 실시된 3종 조사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3종의 조사 유형별 별도의 표본설계, 조사내용 구성 및 항목 설정, 조사실시 및 분석을 수행

○ 조사 유형별 조사항목의 구성은 2019년 1차 조사 항목의 시계열 유지를 통해 장기요양실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정책의 변화와 장기요양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 또한 2019년 조사 문항 중 시의성과 정책적 필요도와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함.

- 수급자 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급여이용형태별 급여에 이용특성 및 만족도, 급여미이용자에 대한 급여 미이용이유 및 향후 의향 등의 문항 구성
- 수급자의 가족 조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돌봄 현황 및 돌봄 부담, 장기요양제도 전반적 만족도 및 이용급여별 만족도,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욕구 등의 문항 구성
- 장기요양기관 조사에서는 수급자 현황, 인력 현황, 기관 운영의 어려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 교육 및 훈련 등의 문항 구성
- 장기요양요원 조사에서는 자격증 및 경력, 근무 특성 및 환경, 교육 경험 및 욕구, 근로 만족도, 이직 경험 및 의향 등의 문항 구성

나. 장기요양실태조사 수행체계

□ 조사대상 및 조사 사전 준비

○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및 표본수는 수급자(가족)은 4,500명, 기관 2,000기관(명), 요원은 4,500명으로 총 11,000명

○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조사를 병행함.

- 조사대상에 따라 수급자(가족)조사는 면접을 우선시 하며, 기관과 요원조사는 인터넷 조사를 병행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2019년 조사와는 달리 인터넷 조사를 도입함. ‘수급자 가족’에 한해서는 전화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수행하였고, 인터넷 조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행함

○ 조사완료율은 조사대상 11,000명 중 10,678명을 완료하여 97.1%임.

- 수급자는 4,500명 중 4,423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이 98.3%, 기관은 2,000개소 중 1,953개 기관이 응답하여 응답률 97.7%, 요원은 4,500명 중 4,302명 응답하여 응답률 95.6%로 나타남

○ 조사는 조사관리자 95명, 조사원 274명에 의해 수행, 조사원 1명당 평균 42명(개소)의 조사를 수행하여 평균 1일 3명(개소)을 조사함

- 조사원 교육은 4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개 권역에서 실시함

○ 조사의 협조 증진을 위해 조사안내문, 조사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협조공문 발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

□ 현장실사 및 입력/내검 지도

○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한 지침 전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애로사항을 해결 및 공유

○ 현장조사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 및 조사방법 개선사항 발굴, 조사시스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 조사 후 자료처리는 현장조사 후 조사대상 확인, 조사원·조사관리자 조사현장 내용검토(eye-checking), 완료된 가구에 대한 방문기록결과 내용 검토한 후, 자료 입력·내검 및 정리(7.26.~8.1. 통계청 지방청·사무소)를 수행

○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가중치 작성 작업을 실시함

□ 파라데이터 분석

○ 수급자 조사는 응답자 4,423명 중 본인응답은 42.8%, 대리응답 57.2%, 이중

가족 대리응답은 딸 14.1%, 아들 11.3% 등의 순이며, 장기요양요원에 의한 대리응답은 19.3%임

- 완료 가구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83.6%, 2회 방문 13.2%, 3회 방문 3.2%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2회이며, 조사소요시간은 재가급여 이용자 31~40분 33.4%, 시설급여 이용자 21~30분 33.9%, 미이용자 20분 이내 41.8%가 가장 높음

○ 장기요양기관 조사는 완료 기관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67.4%, 2회 방문 25.2%, 3회 방문 7.4%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4회이며, 조사소요시간은 21~30분 39.5%, 31~40분 32.1%, 20분 이내 21.1% 순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 조사는 완료 요원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74.7%, 2회 방문 20.5%, 3회 방문 4.7%이며, 평균 방문횟수는 1.3회, 조사소요시간은 21~30분 43.2%, 20분 이내 29.1%, 31~40분 23.8% 순으로 나타남.

다. 표본설계

□ 수급자/가족조사

○ 목표모집단: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미이용자 포함)

○ 조사모집단: 2022년 1월말 기준 인정유효기간이 유효한 자로서 주소불분명 및 도서지역 제외

○ 표본추출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 기준

○ 추출단위: 급여유형 22년 1월 기준 장기요양급여청구 실적에 따른 급여유형 구분

○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급여유형 기준, 미이용층 포함 10개층
- 분류지표: 장기요양인정등급, 연령층, 성별, 지역, 시도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4,500명 /층화계통추출

□ 장기요양기관 조사

○ 목표모집단: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 조사모집단: 2022년 1월말 기준 장기요양급여청구 실적있는 기관(복지용구, 통합재가급여, 도서지역 제외)

○ 표본추출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 기준

○ 추출단위: 급여유형별 기관

○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급여유형 기준(9층)
- 분류지표: 설립유형, 지역, 시도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2,000개 /층화계통추출

□ 장기요양요원 조사

○ 목표모집단: 급여유형별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 조사모집단: 2022년 1월말 기준 장기요양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요원

- 직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표본추출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 기준

- 추출단위: 급여유형 및 직종별 요원
-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급여유형 및 직종(26개 층)
  - 분류지표: 기관 설립유형, 지역, 시도

○ 표본규모 및 표본 추출: 4,500명 /층화계통추출

II. 장기요양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장기요양수급자 조사결과

가. 일반 현황

□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시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77.5%, 미이용자는 22.5%로 나타남.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은 27.7%, 여성은 72.3%였으며, 8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70.4%, 65세 미만 수급자는 2.8%임

○ 전체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보면, 1등급 수급자는 4.7%, 2등급인 수급자는 9.2%, 3등급 27.4%, 4등급 45.7%, 5등급 10.9%, 인지지원등급 2.1%로 나타났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54.4%로 분석됨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26.1%는 남성이며, 여성 수급자는 73.9%임. 80세 이상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72.2%에 이르며, 90세 이상 이용자는 급여 이용자의 18.2%를 차지함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보면, 1등급인 이용자는 3.9%, 2등급 9.4%, 3등급 27.3%, 4등급 48.6%, 5등급 10.2%, 인지지원등급 0.6%임

○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으로는 방문요양이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19.9%, 주야간보호 14.6%, 방문목욕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방문간호 1.3%, 단기보호 0.1% 순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남성은 33.2%, 여성은 66.8%임. 80세 이상 미이용자는 전체 미이용자의 64.4%였으며, 90세 이상 미이용자는 15.0%로 나타남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보면, 1등급 미이용자는 7.3%, 2등급 8.3%, 3등급 27.6%, 4등급 36.0%, 5등급 13.4%, 인지지원등급 7.5%로 분석됨

□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거동 가능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으

로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는 전체의 17.6%였으며, 기어서 또는 보장구를 착용하여 이동가능한 수급자는 7.8%, 타인의 부축이나 휠체어 등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는 58.1%, 거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16.6%로 분석됨

□ 장기요양 급여이용의 주된 결정 주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 본인 11.0%, 배우자 10.2%, 이웃이나 지인 5.0%, 형제자매 등 친인척 3.7%, 장기요양기관 직원 2.6%, 기타 3.2% 등으로 나타남

○ 수급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나 손자녀가 장기요양급여이용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직계가족 32.9%, 이웃이나 지인 23.1%, TV·신문·인터넷 11.9%, 장기요양기관 직원 11.9%, 기타 8.3%, 친인척 6.6% 순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개수가 3개인 장기요양수급자는 25.5%, 5개 이상 23.7%, 2개 21.3%, 4개 18.0%, 1개 10.7%, 없음 0.8%로 나타남

○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는 61.3%, 치매 54.4%, 당뇨병 31.7%,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8.7%, 뇌졸중 20.2% 등임

○ 장기요양수급자는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알약 개수가 하루 4개 이하인 수급자는 28.9%, 5~9개 37.9%, 10~14개 20.0%, 15개 이상은 13.2%로 분석됨

□ 지난 1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 수급자는 61.9%였으며,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22.8%,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10.4%로 나타났음

○ 지난 1개월간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평균 횟수는 없음 14.8%, 1회 44.7%, 2회 17.5%, 3회 8.6%, 4~10회 13.1%, 11회 이상 1.3%임

○ 수급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비율은 36.2%로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높은 경우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2%로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낙상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8.9%로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욕창 발생률도 높아짐

나. 재가급여 이용자

□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독거가구 40.2%, 자녀동거가구 31.1%, 부부가구 22.4%,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4.8%, 기타 1.5%로 나타남

○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이용자는 독거가구 비율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80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부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8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재가급여 이용자의 43.3%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40.0%,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14.9%, 기타 1.8%임.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64.3%, 전세 11.1%, 보증금있는 월세 12.4%, 보증금 없는 월세 2.1%, 무상 10.1%로 나타남

□ 주거공간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을 질문한 결과,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은 36.0%,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41.2%,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29.0%,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나 설치가 된 주택은 52.7%,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현관의 폭을 갖춘 주택은 56.1%,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 문 폭을 확보한 주택은 44.8%,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은 10.7%,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은 47.4%로 조사됨

□ 재가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식사준비(상차리기, 요리 등) 18.8%, 없음 18.5%, 심리정서적 문제(외로움, 무료함, 불안 등) 14.1%, 외출 12.3%, 통증 9.8% 등의 순이었음

□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보면,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 24.3%, 기관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 14.7%,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4.5%, 물리적 환경 12.6%, 인력수준 11.8%, 비용 11.0%, 전문서비스 6.9%, 기타 4.1%로 분석됨

□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급여유형을 보면, 방문요양 77.8%, 방문목욕 21.8%, 방문간호 3.9%, 주야간보호 20.5%, 단기보호 0.8%로 나타남

○ 재가급여 이용자의 18.3%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받고 있었으며,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의 59.5%는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급여유형별로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평균 일수는 방문요양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0.1일, 일반 요양보호사는 16.8일이었으며, 방문목욕은 평균 3.4일, 방문간호는 평균 4.0일, 주야간보호는 평균 18.0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유형별로 지난 1개월 동안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일반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2.9시간, 방문목욕 1.0시간, 방문간호 0.7시간, 주야간보호 8.1시간으로 나타남

□ 재가급여 유형별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의향을 보면, 방문요양 미이용자의 경우 향후 방문요양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수급자는 48.6%였으며, 방문목욕 미이용자의 39.1%는 향후 방문목욕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방문간호 미이용자의 41.9%가 향후 방문간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야간보호 미이용자의 32.6%, 그리고 단기보호 미이용자의

30.5%가 향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각각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이후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69.2%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개수는 1개 22.7%, 2개 23.8%, 3개 19.0%, 4개 13.0%, 5개 이상 21.4%로 나타남

□ 장기요양급여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본인 응답이 가능한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함

○ 방문요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5.8%, 방문목욕 87.5%, 방문간호 89.7%, 주야간보호 93.9%, 단기보호 97.7%. 복지용구 72.2%로 나타남

□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게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지게 되면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인지 질문한 결과, 재가급여 이용자의 49.8%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28.7%, 요양병원 입원 17.8%, 자녀나 친인척 집으로 이사 3.7%로 분석됨

□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25.9%,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8%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28.8%로 분석됨

다. 시설급여 이용자

□ 시설급여 이용자의 입소 전 거주형태를 보면, 일반 가정은 71.1%, (요양)병원 14.6%, 다른 노인요양시설 10.4%, 기타 0.4%, 모름 3.5%로 나타남

○ 일반 가정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의 입소 전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 37.4%, 독거가구 37.3%, 부부가구 17.8%,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6.0%, 기타 1.6%로 분석됨

○ 노인요양시설 입소전 재가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38.9%,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49.8%, 모름 11.2%로 나타남

□ 장기요양기관 계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물리적 환경이 30.5%,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4.6%, 장기요양기관의 평판이나 평가 14.3%, 주변의 소개나 추천 13.6%, 비용 10.0%, 인력수준 7.6%, 전문서비스 제공 여부 5.4%, 기타 4.2%로 분석됨

□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 구강관리, 물리(작업)치료, 기능회복훈련,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여가활동, 산책, 야유회 등을 중심으로 시설급여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았음

○ 시설급여 이용자의 99.8%는 주당 평균 1.2회의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96.6%는 하루 평균 2.7회의 구강서비스를 이용함. 시설급여 이용자의 69.4%는 주당 2.2회의 물리(작업)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됨

○ 기능회복훈련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83.9%로 주당 4.6회 이용하였고, 인지기능증진서비스는 이용자의 82.2%가 주당 2.6회 이용하였으며, 여가활동서비스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7%가 주당 평균 2.1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년간 요양시설 건물 밖 산책을 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46.7%로 월평균 5.6회의 산책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난 1년간 야유회나 나들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9.0%로 연평균 2.6회 정도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음

□ 시설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함

○ 식사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77.9%, 목욕서비스 80.7%, 청결서비스 80.3%,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 77.7%, 간호 및 의료서비스 77.5%, 여가활동 만족도 77.3%, 시설환경 78.6%, 장기요양기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81.4%로 나타남

○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0.4%였으며, 다른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0.5%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라. 미이용자

□ 장기요양 미이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일반 가정이 71.2%, (요양)병원 28.6%, 기타 0.2%로 나타남

○ 일반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25.8%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가구였으며, 부부가구 32.8%, 자녀동거가구 33.5%,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5.6%, 기타 2.4%로 나타남

○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3.7년으로 1~3년 미만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비율은 34.3%, 3~5년 미만 26.6%, 1년 미만 20.0%, 5~10년 미만은 12.8% 등임

□ 일상생활 및 신체수발을 도와주는 사람(1순위)은 배우자 27.1%, 딸 21.6%, 간병인이나 도우미 19.3%, 아들 18.1%, 며느리 4.7%, 없음 3.6% 등임

○ 평소 미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수발을 도와주는 사람(2순위)은 아들(26.4%)과 딸(20.2%)의 비율이 높고, 며느리 10.7%, 이웃이나 지인 9.2%, 간병인이나 도우미 6.9% 등으로 분석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20.9%, 가족돌봄으로 충분해서 16.1%,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어서 9.6% 등으로 나타남

○ 가족 외 도움을 꺼리는 미이용자는 85~89세, 중소도시 거주,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5등급인 미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병원 입원으로 인한 미이용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65세 미만 미이용자, 대도시 거주,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1등급이거나 2등급인 미이용자, 그리고 치매가 있

는 미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1순위는 방문요양 38.1%, 노인요양시설 19.1%, 없음 16.4%, 주야간보호 7.8%, 방문목욕 6.5%, 복지용구 6.3%, 방문간호 5.0% 등으로 나타남

○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2순위는 방문목욕 19.3%, 복지용구 17.1%, 방문간호 16.4%, 방문요양 15.7%, 노인요양시설 15.2%, 주야간보호 11.8% 등임

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결과

가. 일반 특성 및 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응답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80.0%,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20.0%로 나타남

○ 가족 응답자 중 남성은 38.6%, 여성은 61.4%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86.5%를 차지함. 현재 경제활동 중인 비율은 65.3%이며, 이용자 돌봄을 위해 퇴직을 한 경험은 19.0%임

○ 응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딸 37.2%, 아들 29.0%, 배우자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부모-자녀 관계에 해당함

○ 현재 이용자와 동거중인 이용자의 가족은 40.3%이며, 동거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족 중 32.9%는 이용자와 같은 읍면동에, 27.4%는 같은 시군구, 24.7%는 다른 시도, 14.9%는 같은 시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3은 이용자와 비교적 근거리에 거주함

□ 치매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마련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41.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16.7%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기관은 44.7%가 인지하고 이중 21.8%가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치매가족휴가제는 26.2%가 인지하며 14.1%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활성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자녀 중 한 명 33.7%, 자녀 공동 24.0%, 면제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약 1/2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46.3%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시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32.0%, 정기적인 가족상담 24.8%, 노인 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또는 정보 18.4%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 한정적 수준의 정보를 구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교육에 대해서는 76,6%가 (매우)만족함

○ 향후 희망하는 정보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 돌봄 22.3%, 가족관계 개선 관련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자원에 대한 정보가 각 14.0%로 나타남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이용자의 제도 이용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와 사회참여 활동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89.1%,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 86.7%, 사회참여 활동 향상 78.5%,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78.0% 순으로 도움(도움+매우 도움)된 것으로 응답함

○ 제도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이용자 가족의 86.2%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앞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족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리는 결과임

□ 지난 1년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경험을 한 것을 인지(목격)한 적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 기피 2.0%, 적절한 돌봄이나 도움 미제공 1.9% 등 소수의 사례가 파악됨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음 48.4%, 돌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23.5%,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 지난 1년간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주3회 이상 정서적 지원(71.0%), 신체 수발 지원(50.8%), 가사 지원(49.0%), 일상생활 지원(28.3%) 순으로 빈번한 돌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고령, 중증 이용자의 가족일수록 돌봄 서비스 제공빈도가 높고, 물리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돌봄(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신체수발 지원)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일수록 빈도수가 높게 나타남

○ 돌봄 제공 부담에 있어서는 신체수발 지원 34.6%, 일상생활 지원 28.7%, 가사 지원 26.7%, 정서적 지원 18.9% 순으로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돌봄제공 횟수에 상응함

□ 급여유형별 이용자 가족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주야간보호 93.1%, 방문목욕 89.9%, 방문간호 86.9%, 방문요양 86.7%, 단기보호 83.8% 순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이용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75.1%, 필요한 시간(야간 및 주말 등)에 이용이 어려워서 32.8%,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필요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함

□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돌봄 의향에 대해 파악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39.3%, 현재 집 29.5%, 요양병원 25.3%,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 근처 4.5% 순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재가 거주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재가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가 36.5%로 가장 높고, 1일 다회서비스와 같은 제공형태 다양화 18.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8.0%, 단기보호기관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식사 및 영양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0.1%로 가장 높고, 방문형 의료서비스 26.1%, 이동 지원 22.3%, 주택 수리 지원 10.4% 등의 순임

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 지난 1년간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이용자에게 월1회 이상 제공한 정서적 지원은 65.4%, 일상생활 지원은 36.8% 순으로 나타남

○ 연5회 이하 또는 최근 1년간 교류가 없다는 응답 역시 정서적 지원은 24.8%, 일상생활 지원은 51.9%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각각의 부담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16.2%, 정서적 지원 9.4%로 크지 않음

□ 지난 1개월간 시설급여 이용자가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가족들의 83.1%는 시설급여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시설 환경(86.2%), 장기요양 기관 직원(85.6%), 목욕 및 청결 서비스(85.0%), 간호 및 의료서비스(83.6%), 식사서비스(79.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의 환경 및 인력, 신체 수발 지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설급여 이용자의 건강 건강상태 호전시 집에서 모실 의향에 대해 파악한 결과, 25.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집에서 모실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68.7%, 주기적인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서 16.7%,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급여 기관의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용자의 가족은 돌봄인력 확대 43.8%, 간호사 및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 강화 23.4%, 치매 전담시설 확대 22.5% 등을 지적함.

○ 이용자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배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함.

○ 서비스 질 개선 측면에서의 우선 과제로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 38.9%, 치매, 뇌졸중 등을 위한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 27.0%, 기능 훈련 및 재활서비스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의료 욕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희망함.

3.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가. 일반적 특성

□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응답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은 재가급여 제공기관 78.7%,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1.2%로 나타남

○ 세부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47.7%, 주야간보호 16.7%, 노인요양시설 15.0%, 방문목욕 1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2%, 방문간호 1.7%, 단기보호 0.2%임

□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대도시 36.7%, 중소도시 37.1%, 농어촌 26.2%이며, 기관의 위치는 상업·업무 지역 44.2%, 주거지역 40.6%, 비주거·비상업지역 14.3%, 산지지역 0.7%임

나. 운영 실태

□ 운영 주체는 개인 83.6%, 비영리법인 12.0%, 영리법인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2%임

○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8.7%, 기타법인 3.4%임

□ 응답기관의 운영형태는 단독이 77.9%, 병설이 22.1%로 나타남

○ 병설운영 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은 83.7%, 장기요양기관 이외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 13.8%, 의료기관과 병설 2.3%, 기타 0.2% 순임

○ 병설운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수는(조사대상 급여유형 포함) 2종 54.9%, 3종 37.3%, 1종 6.7%, 4종 0.9%, 5종 이상 0.2%로 나타남

- 병설운영 장기요양기관에서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이 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야간보호 58.1%, 방문목욕 47.7%, 노인요양시설 24.8% 등의 순

□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일수는 주 6일 운영이 78.9%로 가장 많았으며, 주 7일 11.6%, 주 5일 이하 9.5% 순임

○ 주야간보호기관의 평균 운영시간은 1일 10.4시간으로.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34.9%,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7.2%,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7.0%, 12시간 이상 16.0%, 9시간 미만 4.9% 순임

□ 장기요양기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대표 등) 소유 30.3%, 법인 소유 9.2%, 전세 6.3%, 국가 및 지자체 소유 1.6%, 기타 0.6% 순임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물리적 특성은 건물형태, 침상용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침실 개수를 중심으로 검토함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51.6%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로 기관을 건립하였으며,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의 비율도 30.8%로 높음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62.5%는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음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개수는 평균 13.4개이며, 5~10개 미만 28.5%, 5개 미만 20.8%, 10~15개 미만 19.4%, 20~30개 미만 13.4%,

15~20개 미만 10.3%, 30~40개 미만 4.8%, 40~50개 미만 1.9%, 50개 이상 1.0% 순임

□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는 평균 33.7명이며, 10~29명 36.7%, 30~49명 23.8%, 9명 이하 18.6%, 50~69명 10.6%, 70~99명 7.0%, 100명 이상 3.3% 순임

○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는 4등급 47.2%, 3등급 27.5%, 5등급 10.6%, 2등급 9.1%, 1등급 4.3%, 인지지원등급 0.9%, 등급외 0.5%임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5.0%, 여성 75.0%이며, 치매진단을 받은 이용자는 50.2%,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49.8%임

□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인력 수는 평균 23.1명이며, 10~29명(41.5%), 5~9명(19.1%), 30~49명(17.3%), 5명 미만(11.3%), 50명 이상(10.8%) 순임

○ 급여유형별 평균 직원 수는 방문요양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는 11명 내외, 방문간호 5명, 단기보호는 7명 수준임

-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30.8명으로 시설장 1.0명, 사회복지사 1.4명, 요양보호사 28.4명, 기타 0.1명
-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11.8명으로 시설장 1.0명, 요양보호사 10.7명, 기타 0.2명
- 방문간호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5.0명으로 시설장 1.0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1.8명
-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11.5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요양보호사 44.5%(평균 5.5명), 사회복지사 15.4%(평균 1.7명), 시설장과 간호조무사(평균 1.0명)가 각각 10.4%와 10.0%, 보조원(운전원)이 8.7%(평균 1.0명), 조리원 5.9%(평균 0.7명), 사무원 3.1%(평균 0.4명), 간호사 1%(평균 0.1명), 물리치료사 0.5%(평균 0.1명), 기타 0.4% 순임
-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7.1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요양보호사 47.7%(평균 3.6명), 시설장 15.0%(0.9명), 간호조무사 14.9%(평균 0.9명), 조리원 9.7%(평균 0.7명), 사회복지사 8.7%(평균 0.6명) 순임

□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20.5명이며, 10~29명 기관 46.6%, 5~9명 31.9%, 30~49명 14.0%, 50명 이상 7.0%, 5명 미만 0.5% 순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직원 수는 6.6명이며, 노인요양시설은 26.3명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종별 직원 수는 요양보호사 51.9%(평균 3.4명), 시설장 15.7%(평균 1.0명), 간호조무사 14.4%(평균 0.9명), 사회복지사 8.0%(평균 0.5명), 조리원 7.7%(평균 0.5명) 순임
- 노인요양시설의 직종별 직원 수는 요양보호사 65.1%(평균 17.2명), 사회복지사 8.3%(평균 1.9명), 간호조무사 7.4%(평균 1.8명), 조리원 5.8%(평균 1.5명), 시설장 5.3%(평균 1.0명) 등의 순임

□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3.8%로 평균 3.7명을 추가로 채용

○ 추가채용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29.0%(2.8명), 사회복지사 21.7%(1.3명), 간호(조무)사 15.1%(1.2명), 조리원 14.1%(1.2명)임

○ 추가채용 필요 직종은 요양보호사 56.3%, 사회복지사 16.6%, 없음 8.3%, 조리원 5.8%, 사무원 3.7%, 간호조무사 2.7%, 간호사 2.2%, 물리치료사 2.0%, 위생원 0.8%, 작업치료사, 영양사와 기타 각각 0.5% 순임

□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단기보호기관의 비공식인력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관 중 사회복무요원 38.3%, 유급프로그램강사 13.1%, 개인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25.7%가 활동하고 있음

□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수당 및 관련 직원복지(경조사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포상휴가 등)로 전체 기관 중 86.3%의 기관에서 제공하며,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지원 54.1%,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41.5%,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장비 지원 21.3%, 노동조합 또는 직원 협의체 운영 8.7%, 동호회 활동 지원 2.7%임

○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원이 없는 기관은 4.8%임

□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은 사회복지사 2.8년, 간호사 3.3년, 간호조무사 2.6년, 물리(작업)치료사 3.6년, 요양보호사 2.3년, 조리원 2.2년임

○ 전반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큰 기관, 비영리기관에서의 근속년수가 오래됨

□ 지난 6개월 동안 퇴사한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84.5%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직원 중 평균 5.9명의 직원이 지난 6개월간 퇴사를 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0.3명, 간호조무사 0.2명, 조리원 0.1명, 그 외 직원 0.1명의 순임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교육필요 직종, 교육 개선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41.5%, 필요하다 44.0%, 보통이다 9.0%, 필요하지 않다 4.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임

-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으로는 요양보호사가 55.2%, 시설장 21.1%, 사회복지사 20.3%, 간호(조무)사 1.3%, 사무국장 1.2%, 물리(작업)치료사 0.9% 등 이었음

○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중심의 교육내용 개편' 55.3%,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17.3%,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확대 및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접근성 확대' 각각 9.3%, '양질의 전문강사 양성' 4.2%, '교육시간대의 다양화' 4.1%, '기타' 0.4% 순임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기관에서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7명,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8명이고,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는 주간 6.0명, 야간 7.7명임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직원의 근무 형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야간근무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2교대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3교대(20.2%), 24시간 근무+2일 휴무(16.0%), 주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13.3%), 24시간 격일제(2.4%), 4교대(2.4%), 기타(1.2%) 순임

○ 야간근무 운영 형태는 교대제 66.7%, 야간전담 근무자 19.9%, 교대제+야간전담 근무자 12.7%, 기타 0.7%임

○ 1일 평균 야간근무 인원은 3.6명이며, 1명과 2명 각각 24.8%, 6명 이상이 18.8%, 3명이 16.0%, 4~6명 미만 15.7% 순임

○ 전체 기관의 72.9%는 요양보호사 이외의 야간근무 직종이 없고, 요양보호사 외에 야간근무를 하는 직종으로는 시설장이 17.2%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4.8%, 사무국장 2.2%, 기타 1.2%임

□ 시설 및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99.5%, 간식비 85.0%, 경관 유동식 42.6%, 2인실 29.8%, 1인실 28.2%, 이미용비 22.4%, 기타 0.5%임

-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1인실 8,421원, 2인실 5,519원, 식사재료비 2,775원, 경관유동식 2,657원, 이미용비 1,293원, 간식비 853원 순으로 높았음

○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99.7%, 간식비 86.8%, 기저귀 7.1%, 기타 0.3%임

-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식재료비가 2,7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저귀 1,783원, 간식비 798원 순임

다.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대응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사고 여부와 사고 내용, 대응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전체 응답기관 중 수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1.0%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에서는 평균 2.0건이 발생함

- 유형별로는 각 유형별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서 낙상이 1.8건, 흡인성 폐렴과 감염성 질환이 각각 1.7건, 질식 1.4건, 교통사고가 1.3건으로 나타남

○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기관은 전체의 19.8%로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평균 건수는 1.4건임

- 손해배상 대응방식으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처리 73.1%, 기관예산 처리 25.8%, 기타 7.5%였음

○ 전체 응답기관 중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를 경험한 기관은 12.2%로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발생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는 평균 1.4건이 발생함.

- 대응방식으로는 산재보험 65.3%, 장기요양기관예산 14.1%,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 12.2%, 직원의 개인비용 및 기타 각각 8.8% 임.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렵다(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이용자 모집 78.0%, 인력채용 72.9%, 장기요양기관 평가 68.5%, 재정 운영 어려움 65.8%, 회계 및 행정업무 50.0%,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41.6%, 안전설비 및 시설관리 33.3%,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31.3%, 보호자 상담 및 대응 30.6% 순

○ 이용자 모집에 대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이 방문간호 85.3%, 방문목욕 82.1%, 주야간보호 79.4% 등 대체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로는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경쟁 54.3%,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4%,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동 8.2%,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6.7%,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급여의 선호 5.1%, 기타 2.8%, 가족인 요양보호사 증가 1.4% 순임

○ 인력채용 대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은 노인

요양시설(30~49명) 82.3%,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1.4%, 노인요양시설(10~29명) 80.6%, 방문간호 79.4%, 방문목욕 73.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2% 등의 순임

-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40% 이상이며, 시설규모가 클수록 어려움의 비율이 높음. 이는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인력 수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로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 20.6%, 높은 업무강도 18.0%,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서 10.4%, 사회적 편견 7.4%, 교대 또는 야간 근무 기피 6.0%, 기타 4.5%의 순임
- 인력채용이 어려운 직종은 요양보호사 71.0%, 사회복지사 11.5%, 간호사 6.3%, 조리원 5.6%, 간호조무사 3.7%, 물리(작업)치료사 1.5%, 그 외 직종 0.4% 순임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방문형 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은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 53.0%,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29.8%,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직원 신규 채용의 어려움 10.8% 등의 순임

○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은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 62.8%,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24.3%, 이용자의 건강 악화 4.9%,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직원 신규 채용의 어려움 3.4% 등의 순임

○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43.3%,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 어려움 17.8%, 대면 면회가 안되는 데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 14.7%,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10.8% 등의 순임

-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은 방역물품 제공 92.6%, 기관 내 감염 관리자 지정 및 관리 강화 90.9%, 시설 환경 개선

87.9%, 종사자 대상 전문적 감염 관리 교육 강화 81.6% 등의 순임

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력

□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이용자 병원 동행시 기관 차량 또는 추가인력을 지원 64.0%,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도구(인지, 재활 등)를 구비한 서비스 제공 56.7%, 원거리 교통비 외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교통비 지급 53.3%,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를 운영 34.5%, 고난도 돌봄 대상자에게 추가 인력을 투입 18.9%의 순임

□ 주야간보호는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토함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 93.9%,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93.8%,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 45.9%,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보장 24.9%임

○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노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저염식 등) 제공 82.8%, 지역 내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 이용자 건강관리 47.1%,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34.3%, 송영시 노인 실종 방지 시스템 마련 25.5%, 치매전담실 3.7%임

○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노력은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97.8%,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 94.5%임

□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토함

○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 98.3%,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 96.9%,

야간 수면시 일괄 소등 하지 않음 83.6%,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 66.9%,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보장 31.7% 등

○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노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 92.3%, 임종, 감염병 등을 위한 특별 침실 마련 89.8%, 의료서비스 강화 87.4%, 간호서비스 강화 41.1%, 유니트케어와 같은 소단위 돌봄 제공 20.2%,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19.3%, ICT를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 설치 6.2%, 치매전담실 운영 5.9%임

○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노력은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96.0%,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 96.9%임

4. 장기요양요원 조사결과

가. 일반적 특성

□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응답한 장기요양요원의 78.4%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1.6%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에서 근무함

○ 남성 장기요양요원은 6.1%인 반면 여성은 93.9%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62.9%를 차지함.

○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88.9%를 차지하였고,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을 보면 방문요양이 67.1%로 가장 높았음.

○ 근무 기관의 운영주체는 개인 운영 비율이 77.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3.9%, 계약직(전일제)이 12.5%, 계약직(시간제)이 53.6%로 나타남.

○ 계약직 비중은 남성 대비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양보호사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20.9%, 1년에서 5년 미만이 58.8%, 5년에서 10년 미만이 14.5%, 10년 이상은 5.8%로 분석됨.

나. 근로조건

□ 장기요양요원의 3개월 평균 근무일수는 월 20.9일이었으며, 월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근무일 1일 평균 약 5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3개월 중 1개월이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은 전체의 30.6%로 이들 대부분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제공자였음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주요 이유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고, 그 밖에 일거리가 없어서 9.1%, 기관에서 단기간 근로자만 채용해서 8.3%로 타의에 의해 60시간 미만 일했다는 응답자도 17.4%를 차지함

□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동안 월평균 임금은 127.1만원(복수 기관 근무자 통합)이며, 직종과 급여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17.0만원, 사회복지사 213.3만원, 간호(조무)사 199.0만원, 물리(작업)치료사 218.8만원임.

○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근로자는 월평균 96.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시설급여 근로자는 월평균 약 200만원 내외로 높게 나타남.

□ 법정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7%,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5.2%, 법정휴가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33.1%로 나타남

○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이유로는 대체 인력 부족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정휴가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24.6%, 급여 또는 고용상 불이익 염려 19.8%, 업무량 과다 8.6%, 상사 또는 동료 눈치 7.0%, 기관의 휴가 거부·축소 3.9% 순으로 나타남

다. 근무환경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은 부적절한 언어, 신체적 부당행위, 업무적 부당행위, 성적 부당 행위 순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1.9%,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13.3%,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8.3%, 업무 이외 활동, 초과 업무를 요구받는 등의 업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10.5%로 나타남

○ 부당행위 경험자 대상으로 부당행위에 경험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한 결과, 1순위 대응 방식으로 그냥 참고 일을 지속했다는 응답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 기관 보고 및 대응 요구 34.9%,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 13.7%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한 경우에는 48.2%가 기관이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9.0%가 수급자 또는 업무를 변경해 주었다고 응답하는 등 일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에서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도 17.4%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경험한 질환이나 사고 경험에 대해 4가지 유형 각각의 경험률을 조사함. 4가지 유형 중 근골격계질환 경험률이 전체기간 15.4%, 1년 이내 1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발생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약 19%는 기관의 대응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28.5%는 기관에 질환이나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2021년 7월~2022년 6월)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6.8%)는 본인과 수급자(가족) 간 코로나19 상호 감염에 대한 두려

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응답함

○ 방역 등 추가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14.9%), 근로시간 감소 또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12.5%), 이용자의 건강 상태 악화, 외부 활동 제한 등으로 돌봄 요구도 증가(11.0%)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 이상에게서 나타남

○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에게서 소득감소의 어려움이 13.6%로 타 직종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서는 업무 과중이 약 40% 내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라. 근무 만족도

□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총 11개 측면에서 살펴봄. 1) 임금수준, 2) 근무시간, 3) 근무유형, 4) 일의 내용, 5) 업무 강도, 6)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 7) 고용 안정성, 8) 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9)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10)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이 28.5%,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의 46.6%, 근무유형(주간, 야간, 교대제 형태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 59.6%, 일(업무) 내용은 전체의 50.0%, 업무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8%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함

□ 경력 개발 및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0%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관련 세부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6%가 (매우)만족, 종사자 복리후생 수준은 35.3%,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5%가 (매우)만족, 장기요양기관 및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자의 36.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함

□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6.2%가 (매우)만족, 43.1%가 보통, 10.7%가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함

○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낮은 만족률을,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40.6%)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임

□ 지난 1년간의 이직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11.4%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이직 이유로는(중복응답 가능) 개인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전 기관에서 일거리 제공이 중단되어서(이용자 사망, 거부 등)라는 응답이 24.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정 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 18.2%,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6.9%, 정규직 고용 확대 4.4%, 업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제공 2.7%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법정 휴게, 근로시간 보장 26.4%로 가장 높았고, 임금수준 상향 19.4%, 임금격차 축소 18.4%, 업무관련 교육 제공 16.4%, 정규직 고용 확대 13.0% 등이 10% 이상 응답률을 보임

□ 장기요양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1순위로는 업무보조 장비 또는 기기지원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 교육 17.2%, 서류업무 축소 또는 행정전산화 15.6%, 사회적 인식 개선 14.9%, 부당 대우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 12.6%, 권익보호기관 강화 12.6%라는 응답이 고르게 10% 이상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9.6%,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교육이 21.6%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마. 급여유형별 근무현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 절반 가까이는(47.6%) 담당 이용자가 1명이었으나, 2명 혹은 3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명 이상 다수의 이용자를 담당하는 경향은 특히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더 두드러짐

□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로 나타남

○ 근무 중단 이유로(중복 응답 가능) 본인의 개인 사정이라는 응답률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자발적 중단(감염, 급여중단 등) 26.6%,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용자(가족)의 요청으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 23.6%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 결과, 26.0%가 이러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함

○ 특히 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요원에서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높게 나타남

□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 대상으로 소속 기관 내 식사, 휴식, 취침 등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휴게 공간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8.4%는 이러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함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 중 지난 1년동안 업무시간 외 전화 또는 문자로 대응한 경우가 1회 이상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7.0%로 나타났으며, 월 1회 이상 경험자는 전체 해당 응답자의 30.9%로 나타남

○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약 66%가 년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대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 외

전화(문자)대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다른 장기요양기관 직원 또는 시설장이 수급자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각 유형별로 최대 3.4%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

○ 비난, 고함, 욕설을 목격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4%,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9%, 꼬집기, 밀치기, 신체적 위협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6%, 필요 이상의 신체적 구속 또는 제한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4%, 성적 부당행위를 목격했다는 비율은 0.6%, 약물, 경관 영양등을 필요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0.8%, 경제적 착취를 목격했다는 비율은 0.3%로 나타남

Ⅲ.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 재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첫째, 재가급여의 다양화가 요구됨. 조사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급여 외에 식사관련 서비스, 차량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지속적인 재가 생활 유지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장기요양서비스로서 식사 · 영양서비스를 30.1%, 차량지원 22.3%,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26.1%로 높게 응답

○ 거동이 불편하며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서비스는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원활한 의료이용을 비롯한 생활을 위해 요구됨

□ 둘째, 재가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주거편의 및 안전장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재가 거주를 위해서는 생활하는 주택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되어야 함.

○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과거에 비해 주거 안

전과 편의는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내 안전바 설치, 안전벨 설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거동불편자의 주택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유사한 수준

-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급여 미이용자 중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와 비교하여 생활하는 주택의 안전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더욱 낮은 것이 발견됨
- 본 조사 결과 수급자의 낙상률은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안전장치 등 기능상태에 따른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재가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재가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는 방문형 의료서비스이며, 기존 서비스 중 방문간호 제공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18.0%로 응답함

- 재가급여 이용자의 6.1%는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가지 못한 경험을 하는 등 미충족 욕구가 발견됨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재택의료센터의 향후 본 사업으로 안착을 통해 재가거주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방문간호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경주되어야 함

- 조사결과 재가 거주자 중 1~2등급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하며, 방문간호 이용자 중 1등급이 24.0%로 높게 나타나고 또한 방문간호 이용자 중 17.4%가 욕창 발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중증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활용한 방문간호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1인 가구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재가 지원방식의 개편이 요구됨

○ 재가 거주 수급자 중 1인 가구(독거)의 비중은 점차 증가. 현재의 1일 1회 2~3시간의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의 단종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혼자사는 수급자의 돌봄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본 사업을 준비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 수급자에 대한 재가생활을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공 방식에서도 1일 1회가 아닌 필요에 따른 1일 다회 방문, 야간 방문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섯째, 재가 거주 수급자의 기능 악화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재가급여에서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의 적극적 급여화 추진을 제언하고자 함

2.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 현재 개별 기관에서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과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부족한 상태임

○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또는 일부 우수한 시설에 대한 기관 평가 가점부여(예) 등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크게 서비스 품질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비급여 방식의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3. 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비공식 돌봄)의 공생을 위한 정책 추진

□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공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한적 보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책적으로 향후 수급자를 지원하는 가족의 돌봄 활동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현재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편과 비공식 돌봄으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4. 장기요양수급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 본 조사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학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응답이 가능한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학대 목격 경험, 시설 급여 제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학대 목격 경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함

○ 조사결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자, 급여 미이용자별로 학대 유형별 경험 사례가 나타나며, 특히 시설 직원의 학대 목격 비율은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응답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장기요양요원과 함께 수급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노인학대의 적극적 신고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임

5. 장기요양요원 공급 확대 정책

□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인력채용의 어려

움으로 나타나며, 장기요양요원 조사 지난 1년간 이직률은 10%를 상회함

○ 특히 요양보호사의 인력 구인의 어려움은 노인요양시설과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열악한 처우, 업무 강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향후 장기요양에서의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장기요양 인력의 인건비 수준을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기술 활용 등의 접근이 필요함

6.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화 및 인권 보장

□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임.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약(약속)을 당일 취소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 중 특히 시간제 고용형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취소, 연기 등에 대해 직원이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요원은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

○ 시도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이용이 쉽지 않은 상태임

- 향후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계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표본설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2022년 조사는 2019년 1차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조사이다.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②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수급자)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관한 사항, ③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④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⑤ 그 외의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

노인인구 증가, 특히 후기 노인인구의 급증은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과 신체 및 정신기능 악화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확대하는 일차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9,018천명(전체 인구의 17.5%)에서 2030년 13,056천명(전체 인구의 25.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돌봄필요가 증가하는 80세 이상 노인 또한 2022년 939천명에서 2030년 3,144천명으로 약 3배 이상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1). 후기 노인의 증가는 신체 및 인지 건강과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로 나타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84.0%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90%이상이 만성질환이 있다(이윤경 외, 2020). 또한 지역사회거주하는 노인 중 일상생활수행(ADL)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I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2020년 기준 전체 노인의 12.2%이며, 특히 75~79세에서는 13.5%, 80~84세는 21.8%, 85세 이상에서는 42.0%로 증가한다(이윤경 외, 2020년). 인지기능 저하자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25.3%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저하 비율이 높고, 85세 이상 노인의 34.0%는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난다(이윤경 외, 2020).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에 대한 필요 증가 뿐 아니라 1인 노인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로 인해 요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2020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19.8%는 1인 거주이며 58.4%는 노인부부 거주가구로 나타났다. 요양욕구가 증가하는 80세 이상에서도 노인 1인 또는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80~84세에서는 73.9%, 85세 이상에서는 58.2%로 높다(이윤경 외, 2020). 또한 노인의 87.9%는 거동불편이 될 경우에 재가 또는 시설의 사회적 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며, 다만 12.1%만이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국민의 서비스 및 수급자 확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와 공급기관, 종사 인력의 양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214천명에서 2021년 954천명으로 확대되며, 공급기관은 2008년 10천개에서 2021년 27천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인력은 2008년 125천명에서 2021년 565천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의 양적 확대와 함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1)과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돌봄에 대한 보장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8;보건복지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사회의 노년기 사회적 돌봄을 보장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인구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증가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은 미래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 개편 및 추진에서의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조사는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수행되는 두 번째 조사로서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제공기관 및 인력의 현황과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데이터

를 제공하며,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1] 및 연구방법

1.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 수행체계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통계청에 의해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수립·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중장기적인 연구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관련 자료 협조 및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총괄하는 역할로서 조사표 개발, 조사설계 지원, 조사결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장기요양 분야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표를 개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본설계, 사전조사, 조사지침서 작성, 조사원 교육, 현장점검 등의 조사 전반에 걸친 과정에 참여하였다.

통계청은 전체적인 조사계획 수립, 조사표 개발 참여, 표본설계, 사전 및 본 조사 실시, 현장점검, 조사원 교육, 자료처리 및 집계, 마이크로 데이터 관리 및 제공 등을 담당하였다.

2. 조사 설계

가. 조사대상 및 규모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이다. 장기요양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자를 의미한다. 수급자의 가

1)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강은나 외, 2019)에서 수행한 장기요양실태조사 이외의 행정지표를 통한 실태파악 관련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부록에 수록함.

족 조사는 조사대상자인 수급자의 돌봄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제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재가급여기관은 제공 서비스 종류별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다. 단, 본 조사에서는 복지용구만을 제공하는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수급자 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9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요원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본 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유형별 표본수[2]는 수급자 4,500명, 기관 2,000개소(명), 요원 4,500명으로 총 11,000명이다. 수급자의 가족조사는 조사표본으로 선정된 수급자의 가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별도의 표본을 추출하지는 않았다.

2019년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3,981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하면 수급자에서 1,500명을 축소, 요원에서 약 500명이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조사규모에서 약 1,000명(사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2019년 조사에서 수급자 중 미이용자 대상 조사 내용이 많지 않으며 동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약 1,000명의 미이용자 조사 대상을 500명으로 축소하고, 급여이용자에서 약 1,000명을 축소하여 표본설계를 진행하였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요원유형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조사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조사규모를 이전 2019년 대비 500명을 확대하여 4,500명으로 확대하였다.

〈표 1-1〉 장기요양실태조사 유형별 조사규모

(단위: 명, 개소)

구분	수급자(가족)	기관	요원(종사자)
합계	4,500(4,500)	2,000	4,500
재가	2,667	1,263	2,218
시설	1,333	737	2,282
미이용	500	-	-
(2019년)	6,000	2,000	3,981

2) 조사유형별 세부 조사대상 및 규모는 본 보고서 1장3절의 표본설계를 참고

나. 조사표 수정 보완[3)]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수급자와 가족조사, 장기요양기관조사, 장기요양요원 조사의 3종의 조사로 구성된다. 이는 2019년 실시된 3종 조사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유형별 조사항목의 구성은 2019년 1차 조사 항목의 시계열 유지를 통해 장기요양실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정책의 변화와 장기요양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 이전 조사에서 활용도와 정책적 함의가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최근 장기요양돌봄 현장에서의 수급자 인권(학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수급자, 가족, 기관, 요원 조사유형별 관련 문항을 강화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이용 경험 및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형태 변화에 대한 문항, 장기요양기관 제도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

수급자 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주거환경, 장기요양인정, 급여이용, 만족도,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구성하고, 공통문항과 이용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에 따라 별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급자의 가족 조사에서는 수급자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급노인 현황, 가족돌봄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관련 도움정도 및 만족도, 가족지원서비스 욕구 등을 구성하고, 공통문항과 수급노인의 이용급여별(재가급여, 시설급여) 별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조사에서는 기관 공통항목으로 기관운영 형태 및 점유형태, 인력 현황 및 관리, 안전사고 대응,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기관의 제공 급여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형 기관, 비방문형기관, 24시간 돌봄제공기관, 주야간 보호로 분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공 급여 내용에 따라 기관 운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특성을 유형화하여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정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게는 직원수, 월 60시간 미만 직원 현황, 코로나19 경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질의, 비방문형 기관(시설, 단기, 주야간)은 월160시간 미만 직원 현황, 추가 채용 인력, 주야간 근무 요양보호사, 직원 추가배치에 대한 우선 필요 직종 등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24시간 돌봄(시설, 단기보호) 기관은 코로나19 경험, 기

3) 조사표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본 보고서 2장을 참고

관 건물 용도 및 구성, 직원 근로 운영형태, 비급여,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문항을 구성, 주야간 기관에는 주당 운영일수/시간, 비급여 항목,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장기요양요원 조사 또한 모든 기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문항과 근로특성에 따른 특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공통질문으로는 장기요양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근무 현황 및 특성, 교육 경험과 욕구, 근무환경 만족도, 이직 경험 및 의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 근로특성별로는 가정 방문형 직종(방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급자수 및 급여제공 특성, 비자발적 중단 경험을 조사하고, 그 외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 및 휴게 권리 보장, 야간근로 특성,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의 목격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의 수정 보완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무부처의 의견수렴을 총 3차례 수행하고, 장기요양전문가 19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조사 이전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 항목 구성과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일부 문항의 수정 보완을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진과 통계청, 보건복지부가 함께 수행하였다.

〈표 1-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종류별 주요문항 구성

구 분		주요 문항
장기요양 수급자조사	공통항목	- 가족특성 - 건강특성: 만성질환, 의료이용, 이동기능 등 - 장기요양급여 이용: 서비스 결정자 및 정보경로
	재가급여이용자	- 가구원특성 - 거주환경 - 급여이용특성 및 만족도 - 가족 등 비공식 및 지역사회 자원 - 코로나19 경험
	시설급여 이용자	- 입소전 거주특성 - 급여이용특성 및 만족도 - 외부접촉현황
	미이용자	- 거주특성 - (재가거주자) 거주환경 및 돌봄특성 - 급여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가족조사)	공통항목	- 수급자와의 관계 - 치매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 가족교육 및 정보 - 장기요양 도움정도

구 분		주요 문항
		- 제도 전반적 만족도 - 코로나19 어려움 - 학대 인지 경험
	재가/시설 급여별 항목	-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부담정도 - 급여이용 만족도 - 급여 관련 서비스 욕구 - 급여 변경 의향
장기요양 기관조사	공통항목	- 기관운영 형태 및 점유형태 - 인력 현황 및 관리 - 안전사고 대응 - 기관 운영의 어려움
	기관 유형별 항목	- 가정방문형: 직원수, 월 60시간 미만 직원 현황, 코로나19 경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비방문형: 월160시간 미만 직원 현황, 추가채용 인력, 주야간 근무 요양보호사, 직원추가배치에 대한 우선 필요 직종 - 24시간 돌봄: 코로나19 경험, 기관 건물 용도 및 구성, 직원 근로 운영형태, 비급여,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주야간: 주당 운영일수/시간, 비급여 항목,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장기요양 요원조사	공통항목	- 장기요양 관련 자격증 및 경력 - 현 근무 특성: 근무기간, 직위, 고용형태, 근무 유형, 근로시간, 임금 및 수당, 사회보험 가입현황 - 복수 기관 근무 현황 - 근무환경 - 코로나19 어려움 - 교육 경험 및 욕구 -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11종) - 이직 경험 및 의향
	근로특성별 항목	- 가정 방문형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 등), 급여제공 및 비자발적 중단 경험 - 비(非) 가정방문형 기관 종사자(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종사자): 근로 및 휴게 권리 보장 현황, 야간근로 특성,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7종) 목격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조사별 응답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기기입식,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수급자 조사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건강을 고려하여 직접 면접이 어려울 경우 대리응답을 허용하였다. 대리응답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의료기관 입원중인 경우 의료인이나 간병인은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문항에 따라 대리응답 가능 범위을 설정하였다. 수급자의 주관적 응답이 필요한 경우(예, 만족도)는 대리응답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족에 의

한 대리응답만 가능한 문항(예, 급여선택 관련 문항, 비용 납부 관련 등), 대리응답 가능 문항(예, 급여 이용 관련 문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가족 조사의 경우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수급자의 가족의 경우 수급자와 장거리 거주하거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전화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조사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사응답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조사와는 달리 인터넷조사를 도입하였다.

3. 조사 준비 및 실시

가. 조사원 교육

조사설계에 따른 정확하고 통일된 조사수행을 위해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등에 대한 조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전 사전 교육은 담당공무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도급조사원, 예비조사원 등의 총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사전 교육은 전국 10개 권역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합교육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단, 집합교육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조사원은 사전교육을 받은 통계청 사무소 담당자에 의해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원 임무, 조사표 작성방법, 내용 검토요령, 시스템 사용방법 등으로, 조사수행기관인 통계청과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나. 조사 수행

본 조사의 수행은 2022. 7. 12.~7. 25.(14일간)에 수행하였고,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조사 중 인터넷을 통한 조사는 7. 12.~7. 21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수시로 연구진-통계청-조사원간의 지침 전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 및 조사방법 개선사항 발굴, 조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조사 진척사항 및 완료 조사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조사관리자 95명, 조사원 274명이 실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의 협조 증진을 위해 조사 안내문, 조사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협조공문 발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3〉 조사 홍보 내용

기관별	홍보 내용
본청	• 조사안내문 제작 - 조사시작 전 대상가구에 조사안내문 우편발송 • 통계대행과 홈페이지 운영(http://kostat.go.kr/ssm) - 조사개요, 묻고 답하기 코너 등 홍보
지방청	• 조사기간 중 대상가구에 조사안내문, 협조공문 재배부 • 지역언론사, LED 홍보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다. 자료 검증 및 데이터 크리닝

통계조사에 대한 검증은 조사원별로 조사완료 대상 표본 2명에 대해 실제응답 여부, 조사결과 정확성 검증, 통계조사답례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검증 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1건으로 착오사항을 재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 후 자료처리는 현장조사 후 조사대상 확인, 조사원·조사관리자 조사현장 내용 검토(eye-checking), 완료된 조사에 대한 방문기록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 자료 입력·내검 및 정리(7.26.~8.1. 지방청 사무소)를 수행하였다. 내검오류 확인 및 이동 항목 누락 등 기본적인 오류 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 내검(타당성 및 일관성 에디팅)을 통해 전반적인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방청 현장조사결과 보고서를 시스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입력시스템의 종합 내검을 실시, 오류사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DB 상태에서 내검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재확인하였다.

심층내검(8.22.~10.31. 통계대행과)과정으로 각 조사표별 연관 항목의 타당성 확인(이용 대상별 연관 항목 오류 분석), 데이터 심층 확인(일반적 특징과 상반되는 데이터,

이상 수치 등), 연구진에 의한 추가 내검 검토 및 전분기 대비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가중치 작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완료 및 파라데이터 분석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완료율은 조사대상 11,000명 중 10,678명으로 97.1%를 완료하였다. 수급자 4,500명 중 4,423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98.3%, 기관 2,000개 중 1,953개 기관이 응답하여 응답률 97.7%, 요원 4,500명 중 4,302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95.6%으로 나타났다. 조사 불응 155건 중 주요 사유는 바쁘거나 귀찮아서(57건), 사생활 노출 기피(54건), 기타(3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조사별 현장조사 완료율

(단위: 명/기관, %)

구분	표 본 수				완료 응답자 수				불응	불능	완 료 율			
	합계	수급자	기관	요원	합계	수급자	기관	요원			합계	수급자	기관	요원
2022년	11,000	4,500	2,000	4,500	10,678	4,423	1,953	4,302	155	167	97.1	98.3	97.7	95.6
경인	4,935	1,865	931	2,139	4,749	1,827	905	2,017	80	106	96.2	98.0	97.2	94.3
동북	1,299	533	226	540	1,282	531	225	526	8	9	98.7	99.6	99.6	97.4
호남	1,564	732	278	554	1,521	718	274	529	21	22	97.3	98.1	98.6	95.5
동남	1,334	601	230	503	1,327	600	227	500	5	2	99.5	99.8	98.7	99.4
충청	1,380	574	249	557	1,345	566	240	539	19	16	97.5	98.6	96.4	96.8
강원	488	195	86	207	454	181	82	191	22	12	93.0	92.8	95.3	92.3

수급자 조사는 응답자 4,423명 중 본인응답은 42.8%이며, 대리응답은 57.2%이다. 대리응답자와 수급자의 관계는 수급자의 가족 응답이 높았으며 그중 딸 14.1%, 아들 11.3%, 배우자 6.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에 의한 대리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 본인응답비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54.8%, 시설급여 수급자는 23.7%, 미이용자는 46.4%이며, 대리응답자는 재가급여 수급자와 미이용자는 딸, 아들, 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한 대리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에 의한 대리응답이 42.7%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완료자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83.6%, 2회 방문 13.2%, 3회 방문 3.2%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2회이며, 조사소요시간은 재가급여 31~40분 33.4%, 시설급여

21~30분 33.9%, 미이용자 20분 이내 41.8%가 가장 높다.

수급자 가족 조사는 조사대상인 급여이용 수급자(미이용자 제외)의 85.8%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89.4%, 시설급여 수급자 가족의 80.4%가 가족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1-5〉 수급자 조사의 응답 유형

(단위: %)

응답유형			전체	재가급여수급자	시설급여수급자	미이용자
수급자조사	계		100.0	100.0	100.0	100.0
	본인응답		42.8	54.8	23.7	46.7
	대리응답	소계	57.2	45.2	76.3	53.3
		수급자의 배우자	6.1	7.9	2.3	10.4
		수급자의 아들	11.3	9.0	13.2	16.6
		수급자의 며느리	4.4	4.5	4.6	3.3
		수급자의 딸	14.1	14.6	11.3	20.8
		수급자의 사위	0.3	0.4	0.3	0.2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0.3	0.3	0.4	0.2
		수급자의 형재자매 등 친인척	1.2	0.8	1.5	2.1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19.3	7.7	42.7	-
가족조사 응답률			85.8	89.4	80.4	-

장기요양기관 조사는 완료 기관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67.4%, 2회 방문 25.2%, 3회 방문 7.4% 순으로 평균 방문횟수는 1.4회이다. 조사소요시간은 21~30분 39.5%, 31~40분 32.1%, 20분이내 21.1%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 조사는 완료 요원의 방문횟수는 1회 방문 74.7%, 2회 방문 20.5%, 3회 방문 4.7%이며, 평균 방문횟수는 1.3회이다. 조사소요시간은 21~30분 43.2%, 20분이내 29.1%, 31~40분 23.8% 순이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백분율과 빈도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일부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값도 제시하였다. 또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후가중값(샘플 추정)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전체 '합계'가 '소계'와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의 '합계'가 해당 행의 개별 값의 합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해 백분율의 합계가 100.0보다 약간 적거나 약간 많을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기술하였다.

수급자의 분석표와 분석 결과 기술은 성별, 연령대, 지역, 급여유형,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 여부에 따른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백분율, 빈도, 평균 등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다. 수급자의 경우, 본인응답, 가족의 대리응답,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 수급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유형에 따른 분석대상을 표 제목의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제공하는 급여유형, 운영주체, 지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별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장기요양요원은 성별, 연령대, 지역, 직종, 소속기관 운영주체, 소속기관 급여제공유형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요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3절 표본설계

1. 수급자(가족) 조사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수급자의 목표 모집단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미이용자 포함)이며, 조사 모집단은 2022년 1월말 기준 인정유효기간이 유효한 자(사망자 제외)로서 주소불분명 및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 수급자 목록 및 급여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추출단위는 급여유형으로 2022년 1월 기준,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에 따라 급여유형을 구분하였다(가족요양비, 복지용구 급여 청구 제외).

〈표 1-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수급자)

(단위: 명, %)

급여유형			모집단(A)	제외 대상			표본 추출틀(B)	포함률 (B/A)
				소계	주소 불분명	도서 지역		
수급자 실인원			940,748	8,185	1,889	6,296	932,563	99.1
	수급자 합계 (급여유형별 수급자)		1,031,570	9,115	1,991	7,124	1,022,455	99.1
	재가	소계	618,727	4,551	623	3,928	614,176	99.3
		방문요양	418,298	2,663	168	2,495	415,635	99.4
		방문목욕	72,672	948	35	913	71,724	98.7
		방문간호	10,784	34	3	31	10,750	99.7
		주야간보호	116,380	905	417	488	115,475	99.2
		단기보호	593	1	0	1	592	99.8
	시설	소계	175,532	1,858	838	1,020	173,674	98.9
		공동생활가정	13,780	231	135	96	13,549	98.3
		30명미만	45,751	617	340	277	45,134	98.7
		30~49명	33,149	447	191	256	32,702	98.7
		50명이상	82,852	563	172	391	82,289	99.3
	미이용		237,311	2,706	530	2,176	234,605	98.9

표본추출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성, 만 75세 이상, 3등급 및 4등급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급여유형간 중복 수급자가 포함되어 실인원과의 합계는 상이하다.

〈표 1-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수급자)

(단위: 명)

특성		실인원	급여유형별 수급자										
			합계	재가					시설				미이용*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생활 가정	30명 미만	30~ 49명	50명 이상	
전체		932,563	1,022,455	415,635	71,724	10,750	115,475	592	13,549	45,134	32,702	82,289	234,605
성별	남성	257,159	282,460	117,081	22,034	3,451	29,271	117	2,163	9,686	7,438	18,265	72,954
	여성	675,404	739,995	298,554	49,690	7,299	86,204	475	11,386	35,448	25,264	64,024	161,651
연령층	65세미만	26,501	28,422	11,811	1,276	342	1,962	11	387	1,472	1,033	2,150	7,978
	65~69세	40,497	43,750	21,013	2,263	578	3,121	18	423	1,465	1,067	2,429	11,373
	70~74세	72,488	78,675	36,660	4,603	1,021	6,939	28	681	2,419	1,790	4,389	20,145
	75~79세	130,864	142,211	60,550	8,973	1,697	15,955	64	1,203	4,439	3,335	8,897	37,098
	80~84세	240,849	263,790	106,095	18,971	2,708	33,325	131	2,862	9,937	7,373	18,646	63,742
	85~89세	249,659	275,661	109,083	21,052	2,547	34,696	151	3,907	12,857	9,286	23,542	58,540
	90세이상	171,705	189,946	70,423	14,586	1,857	19,477	189	4,086	12,545	8,818	22,236	35,729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45,494	49,044	11,454	2,115	1,649	319	22	1,356	3,794	2,935	7,759	17,641
	2등급	88,566	95,167	27,057	4,831	1,512	2,404	77	2,932	9,122	6,509	17,209	23,514
	3등급	255,076	280,847	114,074	18,716	2,938	23,636	233	4,851	16,745	12,247	30,773	56,634
	4등급	416,322	462,863	225,585	38,822	4,086	53,413	209	4,127	14,558	10,347	25,019	86,697
	5등급	104,943	112,372	37,460	7,239	565	31,450	51	282	915	661	1,528	32,221
	인지지원	22,162	22,162	5	1	0	4,253	0	1	0	3	1	17,898
지역**	대도시	325,579	349,501	158,242	13,284	4,466	39,021	391	4,468	9,805	7,858	23,187	88,779
	중소도시	310,180	333,787	127,929	14,490	3,628	45,453	124	4,366	16,274	13,248	27,924	80,351
	농어촌	296,804	339,167	129,464	43,950	2,656	31,001	77	4,715	19,055	11,596	31,178	65,475
시도	서울	118,305	123,955	60,895	2,221	1,388	11,850	357	2,219	2,064	1,823	7,752	33,386
	부산	61,291	64,493	31,241	1,516	513	6,528	1	155	606	848	3,329	19,756
	대구	43,054	45,515	18,100	0	182	6,836	22	1,025	1,415	969	3,951	11,299
	인천	51,622	57,355	22,986	3,875	1,263	5,248	12	777	4,239	2,944	5,316	10,695
	광주	25,855	30,216	12,973	2,893	532	3,952	0	111	987	579	1,150	7,039
	대전	25,719	27,850	11,420	874	530	3,807	0	335	838	987	3,041	6,018
	울산	14,190	15,567	6,175	975	237	2,279	0	111	248	372	1,088	4,082

특성		실인원	급여유형별 수급자										
			합계	재가					시설				미이용*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생활 가정	30명 미만	30~ 49명	50명 이상	
시도	세종	3,375	3,670	1,464	132	69	667	1	25	142	100	190	880
	경기	211,279	221,859	82,180	4,554	2,067	24,606	133	4,206	15,352	12,442	25,112	51,207
	강원	35,785	38,816	15,282	2,243	571	3,680	35	845	2,871	1,576	4,051	7,662
	충북	35,907	38,595	13,944	2,364	237	5,537	2	741	2,679	1,198	4,042	7,851
	충남	52,088	58,895	23,334	6,510	510	6,525	5	702	2,806	1,620	4,366	12,517
	전북	52,068	62,873	22,374	10,272	1,176	8,611	0	453	1,956	1,569	2,845	13,617
	전남	50,951	60,342	23,874	9,360	595	6,062	5	545	3,089	1,619	2,703	12,490
	경북	69,861	78,697	32,027	9,018	343	9,673	18	875	3,528	2,503	5,049	15,663
	경남	71,213	82,602	34,587	11,947	375	8,333	1	377	1,931	1,346	5,752	17,953
	제주	10,000	11,155	2,779	1,254	162	1,281	0	47	383	207	2,552	2,490

주: 1)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중소도시: 세종 및 그 외 도시의 동부, 농어촌: 읍
2) 미이용: 단순 미이용, 요양병원 입원, 장기요양기관 외 시설 입소 등

나. 층화 및 분류지표

표본 추출시 층화는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미이용층을 포함한 총 10개층으로 이루어졌다. 분류지표(보조단위)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급자의 만성질환개수와 전주기 분류지표인 장기요양 인정등급(1등급~인지지원 등급), 연령층, 성별, 지역, 시도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보된 5개의 변수 – 장기요양 인정등급, 연령층, 성별, 지역, 시도 - 를 분류지표로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단기보호 수급자 및 미이용자는 수급자의 거주지 주소를, 그 외 급여유형은 기관의 주소를 사용하였다.

〈표 1-8〉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evels	F Value	Pr 〉 F
수급자의 만성질환개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5	9.64	〈.0001
	연령층	6	16.48	〈.0001
	성별	1	4.24	0.0394
	지역	2	4.23	0.0146
	시도	16	3.74	〈.0001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연령층의 경우 사후분석(Duncan) 결과와 갯수, 분포, 내용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 그룹화하였다.

〈표 1-9〉 사후분석 결과(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연령층)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A	4.0	1,812	3등급
A	3.9	2,175	4등급
A	3.9	743	2등급
B	3.8	451	5등급
B	3.7	352	1등급
C	3.5	73	인지지원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연령층**
A	4.0	904	75~79세
A	4.0	1,465	80~84세
A	4.0	1,364	85~89세
B	3.9	234	65~69세
B	3.9	422	70~74세
C	3.7	1,015	90세 이상
D	3.6	202	65세 미만

분류지표의 순서는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Type I 의 F Value의 크기를 적용하였다.

〈표 1-10〉 분류지표 순서 결과

순서	변수 분류	F Value	Pr 〉 F
1차	연령층	42.5	〈.0001
2차	장기요양 인정등급	15	〈.0001
3차	지역	5.5	0.046
4차	성별	4	0.004
5차	시도	3.5	〈.0001

〈표 1-11〉 분류지표(수급자)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연령층	만 75세와 90세 기준으로 구간화		
		1구간	2구간	3구간
		만 75세 미만	만 75세 이상 ~ 90세 미만	90세 이상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음		
		1구간	2구간	3구간
		1~2등급	3~4등급	5~인지지원
③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④	성별	성별		
		1구간	2구간	
		남성	여성	
⑤	시도	17개 시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다. 표본 규모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의 규모는 4,500명(추출률: 0.44%)으로 예산 및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이중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이용자의 표본규모는 500명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표본의 조사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하였다. 표본규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RSE)는 5.1%이다.

〈표 1-12〉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 명)

	2019년	2022년 예상 RSE			
RSE	4.4*	5.4	5.1	4.8	4.6
표본 규모	6,000	4,000	4,500	5,000	5,500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수급자의 주요 항목(만성질환개수)의 RSE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1-13〉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 명)

	2019년		2022년	
구분	표본규모	평균RSE	표본규모	예상RSE
전체	4,694	4.4	4,000	5.2
방문요양	1,350	8.9	948	10.6
방문목욕	502	14.2	497	14.2
방문간호	191	27.4	259	23.5
주야간보호	649	12.0	589	12.6
단기보호	57	37.3	114	26.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99	19.9	280	20.5
노인요양시설(10~29명)	494	15.9	419	17.3
노인요양시설(30~49명)	416	15.0	376	15.8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36	16.8	518	20.0

표본 배분시,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수급자수 기준 멱등배분(p=0.4)을 실시하였다. 미이용층(500명)을 제외한 층에 50명씩 최소 배분하였다.

〈표 1-14〉 표본 규모(수급자)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배분	제곱근	전체 제곱근 배분	멱등 배분[1] (p=0.4)	최소 배분[12]	최소 배분[23]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1,031,570	4,501	2,674	4,506	4,504	4,500	4,500	229.2
재가	방문요양	418,298	1,825	647	1,089	1,012	1,101	948	441.2
	방문목욕	72,672	317	270	455	504	486	497	146.2
	방문간호	10,784	47	104	176	236	217	259	41.6
	주야간보호	116,380	508	341	576	608	604	589	197.6
	단기보호	593	3	24	41	72	89	114	5.2
시설	공동생활가정	13,780	60	117	198	260	242	280	49.2
	30명미만	45,751	200	214	360	416	398	419	109.2
	30~49명	33,149	145	182	306	368	345	376	88.2
	50명이상	82,852	361	288	486	528	518	518	159.9
미이용		237,311	1,035	487	819	500	500	500	474.6

주: 1)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의 멱등 배분(p=0.4)
2) 미이용 500명 고정 후 50명 최소배분 후 제곱근 배분
3) 미이용 500명 고정 후 50명 최소배분 후 멱등 배분(p=0.4)(최종표본)

라.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출결과 표본추출틀과 표본간 주요 특성의 구성비율 차이는 7.8%p 이내로 나타났다.

〈표 1-15〉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수급자)

(단위: %p)

특성(분류지표)		재 가					시 설				미이용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생활가정	30명 미만	30~49명	50명 이상	
인정등급	1등급	0.7	1.1	1.6	0.0	-1.1	-0.7	-0.8	0.1	0.8	0.1
	2등급	0.2	0.9	-0.2	0.3	-0.7	-1.3	1.0	-2.4	1.5	-1.0
	3등급	0.2	-1.5	0.1	-0.6	1.0	2.1	-1.3	-0.2	-1.5	0.7
	4등급	-0.6	-0.8	-3.3	2.0	2.4	-3.3	0.4	1.3	-0.3	0.6
	5등급	-0.6	0.4	1.7	-2.3	-1.6	3.3	0.6	1.2	-0.5	0.3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9	0.0	0.0	0.0	0.0	0.0	-0.6
성별	남성	-0.1	-0.9	-0.1	1.3	-2.2	6.2	3.6	1.7	-2.3	3.3
	여성	0.1	0.9	0.1	-1.3	2.2	-6.2	-3.6	-1.7	2.3	-3.3
연령층	65세 미만	-0.9	0.2	-0.1	0.3	2.5	0.0	1.0	0.8	0.3	0.4
	65~69세	0.3	0.1	0.0	0.9	-0.4	0.4	-0.4	-0.1	-0.2	-0.8
	70~74세	-0.3	-0.8	0.5	-1.1	-1.2	1.0	-1.3	0.1	2.2	1.6
	75~79세	-1.8	2.4	0.0	0.8	-4.7	-1.0	2.6	0.7	-1.2	-1.0
	80~84세	-1.4	-1.1	-5.1	-2.0	-3.7	3.5	0.2	-0.2	-1.8	-4.4
	85~89세	3.7	-0.6	4.9	1.4	7.8	3.7	0.6	1.4	0.7	4.2
	90세 이상	0.4	-0.2	-0.3	-0.2	-0.3	-7.7	-2.7	-2.8	0.0	0.0
지역	대도시	0.1	-0.2	0.2	0.2	-1.1	0.2	0.0	0.4	-0.4	-0.2
	중소도시	-0.5	0.9	-0.5	-0.8	-0.8	0.3	0.5	1.0	0.0	1.4
	농어촌	0.4	-0.7	0.4	0.7	1.9	-0.5	-0.5	-1.4	0.3	-1.1

주: 설계층별 분류지표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표와는 무관함

2. 장기요양기관 조사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장기요양기관의 목표 모집단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이며, 조사 모집단은 2022년 1월말 기준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복지용구 실적 및 통합재가급여,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추출단위는 급여유형별 기관이다.

〈표 1-1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기관)

(단위: 개, %)

급여유형		모집단(A)	제외 대상			표본 추출틀(B)	포함률 (B/A)
			소계	통합재가 급여	도서 지역		
실기관 수		21,902	106	11	95	21,796	99.5
기관 합계 (급여유형별 기관)		27,298	125	11	114	27,173	99.5
재가	소계	21,439	73	0	73	21,366	99.7
	방문요양	12,980	43	0	43	12,937	99.7
	방문목욕	3,373	11	0	11	3,362	99.7
	방문간호	475	1	0	1	474	99.8
	주야간보호	4,552	18	0	18	4,534	99.6
	단기보호	59	0	0	0	59	100.0
시설	소계	5,848	41	0	41	5,807	99.3
	공동생활가정	1,756	12	0	12	1,744	99.3
	30명미만	2,220	17	0	17	2,203	99.2
	30~49명	832	6	0	6	826	99.3
	50명이상	1,040	6	0	6	1,034	99.4
통합재가급여		11	11	11	0	0	0.0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의 분포를 살핀 결과, 설립유형으로는 개인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다수 위치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기관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시설기관은 농어촌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급여유형간 중복급여 제공 기관이 있어 실기관의 합계와는 상이하다.

〈표 1-1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기관)

(단위: 개)

특성		실기관	급여유형별 기관									
			합계	재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 생활 가정	30 명 미만	30 ~49 명	50 명 이상
전체		21,796	27,173	12,937	3,362	474	4,534	59	1,744	2,203	826	1,034
설립 유형	개인	18,215	22,807	11,553	2,985	420	3,422	53	1,608	1,769	592	405
	법인	3,277	4,029	1,327	357	52	980	5	126	399	221	562
	지자체	237	251	16	5	1	118	1	5	26	12	67
	기타	67	86	41	15	1	14	0	5	9	1	0
지역*	대도시	7,825	9,700	5,288	1,168	197	1,510	38	567	471	201	260
	중소도시	8,006	10,039	4,729	1,302	187	1,726	13	570	821	336	355
	농어촌	5,965	7,434	2,920	892	90	1,298	8	607	911	289	419
시도	서울	2,878	3,515	1,919	525	67	472	33	279	96	45	79
	부산	1,125	1,371	914	105	22	217	0	20	32	22	39

특성		실기관	급여유형별 기관									
			합계	재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공동 생활 가정	30명 미만	30~49명	50명 이상
	대구	1,108	1,306	680	56	16	294	2	128	64	25	41
	인천	1,407	1,797	826	274	43	196	3	101	211	77	66
	광주	669	852	504	89	21	144	0	15	48	15	16
	대전	650	828	405	106	26	149	0	44	39	25	34
	울산	299	394	193	37	9	106	0	14	12	9	14
	세종	67	88	41	9	4	19	0	3	6	3	3
	경기	5,409	6,588	2,704	792	115	975	13	557	792	320	320
	강원	808	997	386	107	24	149	4	105	131	38	53
	충북	862	988	387	58	11	224	0	96	130	29	53
	충남	1,154	1,478	660	196	19	278	1	93	134	39	58
	전북	1,097	1,480	648	269	32	295	0	58	100	38	40
	전남	1,077	1,383	644	196	17	242	1	65	143	38	37
	경북	1,545	1,937	894	209	22	397	2	113	163	65	72
	경남	1,462	1,929	1,054	294	21	320	0	46	86	33	75
	제주	179	242	78	40	5	57	0	7	16	5	34

주: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중소도시: 세종 및 그 외 도시의 동부, 농어촌: 읍면부

나. 층화 및 분류지표

표본 추출을 위한 층화는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9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분류지표(보조단위)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와 전주기 분류지표인 설립유형, 지역, 시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보된 3개의 변수- 설립유형, 지역, 시도 -를 분류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1-18〉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evels	F Value	Pr 〉 F
기관의 운영형태*	설립유형	3	5.67	0.0007
	지역	2	6.08	0.0023
	시도	16	3.36	〈.0001

주: 1) 분석시, 단독(0), 병설(1)로 분석

기관의 설립유형의 경우, 사후분석(Duncan) 결과와 갯수, 분포, 내용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그룹화하였다(기타를 개인과 통합).

〈표 1-19〉 분석분석 사후분석 결과(설립유형)

Duncan Grouping	평균	갯수	설립유형
A	0.55	31	지자체
A	0.45	386	법인
A	0.36	1,532	개인
B	0.00	5	기타

분류지표의 순서는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Type I 의 F Value의 크기를 적용하여 배열하였다.

〈표 1-20〉 분류지표 순서 결과

	변수 분류	F Value	Pr 〉 F
1차	설립유형	7.25	0.0007
2차	지역	6.36	0.0018
3차	시도	2.52	0.0008

〈표 1-21〉 분류지표(기관)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설립 유형	설립유형 1구간: 개인 및 기타 / 2구간: 법인 / 3구간: 지자체
②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1구간: 대도시 / 2구간: 중소도시 / 3구간: 농어촌
③	시도	17개 시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다. 표본 규모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의 규모는 2,000개(추출률: 7.33%)로 예산 및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표본의 조사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하였다. 표본규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RSE)는 1.7%이다.

〈표 1-22〉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 명)

	2019년	2022년 예상 RSE			
RSE	1.7*	1.8	1.7	1.6	1.5
표본 규모	2,000	1,800	2,000	2,200	2,500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관의 주요 항목(운영형태)의 RSE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1-23〉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 명)

	2019년		2022년	
구분	표본규모	평균RSE	표본규모	예상RSE
전체	1,954	1.7	2,000	1.7
방문요양	525	3.4	505	3.4
방문목욕	255	5.2	271	5.0
방문간호	90	8.2	118	7.2
주야간보호	293	4.4	310	4.3
단기보호	50	14.4	59	1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0	5.8	203	6.1
노인요양시설(10~29명)	215	5.8	224	5.7
노인요양시설(30~49명)	135	10.4	148	9.9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71	7.7	162	7.9

표본 배분시,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기관 수 기준 제곱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으며 27개소씩 최소 배분하였다.

〈표 1-24〉 표본 규모(기관)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배분	제곱근	제곱근 배분	초기 표본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27,298*	2,000	419	2,000	1,757	2,000	13.6
재가	방문요양	12,980	951	114	544	478	505	25.7
	방문목욕	3,373	247	58	278	244	271	12.4
	방문간호	475	35	22	104	91	118	4.0
	주야간보호	4,552	334	67	322	283	310	14.7
	단기보호	59	4	8	36	32	59	1.0
시설	공동생활가정	1,756	129	42	200	176	203	8.7
	30명미만	2,220	163	47	224	197	224	9.9
	30~49명	832	61	29	138	121	148	5.6
	50명이상	1,040	76	32	154	135	162	6.4

주: 모집단에서 통합재가급여(11명) 제외함

라.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출결과 표본추출틀과 표본간 주요 특성의 구성비율 차이는는 6.7%p 이내로 나타났다.

〈표 1-25〉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기관)

(단위: %p)

급여유형(설계층)		설립유형			지역		
		개인 및 기타	법인	지방 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가	방문요양	0.4	-2.8	3.2	0.0	-1.7	2.3
	방문목욕	-0.3	1.9	-2.0	-0.1	0.2	-0.2
	방문간호	0.0	0.1	0.0	0.0	0.1	-0.1
	주야간보호	-0.2	1.1	2.0	-0.1	0.2	-0.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0.1	-0.3	0.0	0.0	0.2	-0.2
	30명미만	0.1	-0.4	-6.7	0.1	0.7	-1.0
	30~49명	0.1	-0.2	-0.6	0.0	0.3	-0.4
	50명이상	-0.1	0.6	6.6	0.1	0.1	-0.3

주: 설계층별 분류지표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표와는 무관함

3. 장기요양요원 조사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장기요양요원의 목표 모집단은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장기요양요원이다. 조사 모집단은 급여유형, 직종별로 2022년 1월말 기준 장기요양 급여청구 실적이 있는 요원이다. 이중 직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한정하였으며,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출단위는 급여유형 및 직종별 요원이다.

〈표 1-26〉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요원)

(단위: 명, %)

급여유형 및 직종				모집단 (A)	제외 대상			표본 추출틀 (B)	포함률 (B/A)
					소계	직종 제외	도서 지역		
실인원				438,314	1,301	13	1,288	437,013	99.7
요원 합계 (급여유형별 요원)				453,308	1,346	19	1,327	451,962	99.7
	재가	소계(재가)		347,525	763	15	748	346,762	99.8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10	10	10	.	.	0.0
			사회복지사	504	5	.	5	499	99.0
			요양보호사	292,328	555	.	555	291,773	99.8
		방문목욕	사회복지사	2	2	2	.	.	0.0
			요양보호사	16,150	35	.	35	16,115	9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316	4	.	4	1,312	99.7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5,441	20	.	20	5,421	99.6
			물리(작업)치료사	424	1	.	1	423	99.8
			사회복지사	7,884	30	.	30	7,854	99.6
			요양보호사	23,157	98	.	98	23,059	99.6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70	0	.	.	70	100.0
			물리(작업)치료사	3	3	3	.	.	0.0
			사회복지사	25	0	.	.	25	100.0
			요양보호사	211	0	.	.	211	100.0
		소계(시설)		105,783	583	4	579	105,200	99.4
	시설	공동 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882	13	.	13	1,869	99.3
			물리(작업)치료사	4	4	4	.	.	0.0
			사회복지사	564	1	.	1	563	99.8
			요양보호사	6,193	41	.	41	6,152	99.3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2,772	19	.	19	2,753	99.3
			물리(작업)치료사	160	0	.	.	160	100.0
			사회복지사	3,324	17	.	17	3,307	99.5

급여유형 및 직종				모집단 (A)	제외 대상			표본 추출틀 (B)	포함률 (B/A)
					소계	직종 제외	도서 지역		
			요양보호사	22,003	124	.	124	21,879	99.4
		노인 요양시설 (30~49명)	간호(조무)사	1,927	16	.	16	1,911	99.2
			물리(작업)치료사	888	6	.	6	882	99.3
			사회복지사	1,747	14	.	14	1,733	99.2
			요양보호사	15,724	112	.	112	15,612	99.3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간호(조무)사	4,981	23	.	23	4,958	99.5
			물리(작업)치료사	1,415	6	.	6	1,409	99.6
			사회복지사	2,925	13	.	13	2,912	99.6
			요양보호사	39,274	174	.	174	39,100	99.6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의 분포를 살핀 결과, 설립유형으로는 개인이, 지역에서는 대도시에 장기요양요원이 다수 분포하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았다. 급여유형 및 직종간 중복이 있어 실인원의 합계와는 상이하다.

〈표 1-27〉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 (1)

(단위: 명)

급여유형 및 직종		전체	설립유형(소속기관)				지역*			시도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실인원		437,013	348,353	81,912	5,501	1,247	171,470	160,048	105,495	66,269	29,047	20,847	27,747
합계		451,962	361,274	83,783	5,610	1,295	176,929	166,231	108,802	68,741	29,490	21,177	29,327
급여유형	방문요양	292,272	254,912	36,159	257	944	129,984	106,653	55,635	52,930	24,101	14,129	17,698
	방문목욕	16,115	14,268	1,761	18	68	5,775	6,588	3,752	2,505	485	270	1,714
	방문간호	1,312	1,114	194	2	2	611	501	200	230	60	35	122
	주야간보호	36,757	27,987	7,649	1,001	120	12,693	14,325	9,739	4,333	1,906	2,213	1,626
	단기보호	306	282	17	7	.	209	54	43	195	.	7	7
	공동생활가정	8,584	7,905	626	29	24	2,809	2,846	2,929	1,397	92	649	484
	30명미만	28,099	22,670	4,995	320	114	6,114	10,460	11,525	1,281	370	865	2,665
	30~49명	20,138	14,354	5,467	294	23	4,911	8,164	7,063	1,113	504	628	1,866
	50명이상	48,379	17,782	26,915	3,682	.	13,823	16,640	17,916	4,757	1,972	2,381	3,145
직종	간호(조무)사	12,845	8,002	4,267	542	34	4,169	4,523	4,153	1,675	373	674	836
	물리(작업)치료사	2,039	863	1,043	128	5	606	708	725	206	97	87	129
	사회복지사	11,979	7,901	3,627	404	47	3,754	4,466	3,759	1,423	427	597	674
	요양보호사	274,135	211,739	57,569	3,815	1,012	107,743	96,519	69,873	43,074	16,926	12,513	18,71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2,098	1,685	403	4	6	681	874	543	315	79	99	77
	요양보호사	180,415	154,177	25,199	286	753	78,702	62,704	39,009	31,900	13,949	8,502	11,78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562	14,569	1,925	13	55	6,517	6,730	3,315	3,095	536	374	1,700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708	600	106	2	.	323	294	91	125	27	18	96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3,292	2,173	934	169	16	1,283	1,139	870	591	107	216	112
	물리(작업)치료사	244	86	130	28	.	102	88	54	42	25	13	3
	사회복지사	4,073	2,734	1,143	168	28	1,550	1,522	1,001	633	182	250	160
	요양보호사	11,692	7,891	3,240	499	62	4,416	4,438	2,838	1,874	468	719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107	95	7	5	.	65	31	11	46	.	12	7
	사회복지사	42	35	3	4	.	22	12	8	21	.	1	.
	요양보호사	306	278	13	15	.	200	79	27	164	.	24	12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777	1,620	146	8	3	600	591	586	299	19	140	108
	사회복지사	406	374	28	4	.	138	140	128	58	4	34	31
	요양보호사	5,608	5,110	463	26	9	1,872	1,869	1,867	949	59	432	338

급여유형 및 직종		전체	설립유형(소속기관)				지역*			시도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노인요양시설(30명미만)	간호(조무)사	1,713	1,358	338	14	3	350	650	713	83	26	42	131
	물리(작업)치료사	45	32	12	1	.	10	17	18	3	2	1	1
	사회복지사	1,916	1,497	397	17	5	390	718	808	91	33	45	147
	요양보호사	14,226	11,131	2,928	143	24	2,922	5,334	5,970	709	214	348	1,080
노인요양시설(30~49명)	간호(조무)사	1,321	896	395	22	8	327	498	496	90	29	40	106
	물리(작업)치료사	566	365	189	9	3	134	210	222	36	14	14	43
	사회복지사	1,211	844	341	20	6	320	437	454	79	33	43	103
	요양보호사	11,600	7,902	3,424	213	61	2,857	4,265	4,478	815	240	361	924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간호(조무)사	3,923	1,256	2,341	322	4	1,219	1,318	1,386	440	165	205	276
	물리(작업)치료사	1,180	377	712	89	2	358	392	430	123	56	59	82
	사회복지사	2,230	731	1,310	187	2	653	763	814	226	96	125	156
	요양보호사	33,726	10,681	20,377	2,620	48	10,257	11,100	12,369	3,568	1,460	1,753	2,393

주: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중소도시: 세종 및 그 외 도시의 동부, 농어촌: 읍면부

〈표 1-28〉 주요 특성별 표본추출틀 분포 (2)

(단위: 명)

급여유형 및 직종		시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인원		13,455	13,508	6,643	1,384	103,247	15,917	15,600	21,701	19,881	18,774	29,262	29,763	3,968
합계		13,674	13,941	6,789	1,413	108,032	16,466	15,821	22,556	20,576	19,305	29,974	30,619	4,061
급여유형	방문요양	10,393	9,182	4,783	879	59,931	9,145	8,659	13,755	12,788	12,016	18,852	21,398	1,633
	방문목욕	330	412	188	27	4,340	512	187	941	1,089	813	837	1,330	135
	방문간호	94	69	18	6	296	39	34	49	98	45	56	50	11
	주야간보호	1,172	1,179	760	210	7,813	1,171	1,770	2,110	2,552	1,837	3,127	2,537	441
	단기보호	.	.	.	.	65	16	.	2	.	2	12	.	.
	공동생활가정	68	204	81	16	2,694	538	482	439	273	336	562	233	36
	30명미만	605	537	157	96	10,065	1,708	1,613	1,738	1,191	1,782	2,118	1,103	205
	30~49명	352	636	210	68	7,753	964	720	952	970	923	1,543	808	128
	50명이상	660	1,722	592	111	15,075	2,373	2,356	2,570	1,615	1,551	2,867	3,160	1,472
직종	간호(조무)사	440	602	238	60	5,280	844	862	1,009	900	810	1,315	934	261
	물리(작업)치료사	59	91	44	10	904	133	119	144	125	120	195	161	59
	사회복지사	401	498	232	73	4,597	800	860	920	892	832	1,520	975	216
	요양보호사	12,774	12,750	6,275	1,270	97,251	14,689	13,980	20,483	18,659	17,543	26,944	28,549	3,52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3	2	.	.	22	86	54	15	2	20	231	43	.
	요양보호사	10,390	9,180	4,783	879	59,909	9,059	8,605	13,740	12,786	11,996	18,621	21,355	1,63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330	412	188	27	4,340	512	187	941	1,089	813	837	1,330	135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94	69	18	6	296	39	34	49	98	45	56	50	11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173	171	115	27	1,078	183	262	329	346	284	498	374	67
	물리(작업)치료사	18	8	15	2	75	14	12	19	32	19	28	30	5
	사회복지사	244	260	152	43	1,691	248	367	439	544	391	698	532	95
	요양보호사	737	740	478	138	4,969	726	1,129	1,323	1,630	1,143	1,903	1,601	274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	.	.	.	15	5	.	1	.	1	3	.	.
	사회복지사	.	.	.	.	6	3	.	.	.	.	3	.	.
	요양보호사	.	.	.	.	44	8	.	1	.	1	6	.	.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6	45	18	4	596	117	102	100	61	68	121	51	7
	사회복지사	5	13	10	2	164	36	30	29	15	29	48	13	2
	요양보호사	47	146	53	10	1,934	385	350	310	197	239	393	169	27

급여유형 및 직종		시도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52	55	14	8	990	163	155	175	125	165	217	106	19
	물리(작업)치료사	4	6	2	1	62	3	4	12	5	10	13	6	1
	사회복지사	72	71	21	13	1,134	198	200	202	147	215	256	133	24
	요양보호사	477	405	120	74	7,879	1,344	1,254	1,349	914	1,392	1,632	858	161
노인 요양시설 (30~49명)	간호(조무)사	36	60	20	6	736	91	70	89	95	91	139	72	10
	물리(작업)치료사	15	27	9	3	344	40	31	40	40	39	71	38	6
	사회복지사	34	55	17	7	648	85	66	81	82	76	123	72	14
	요양보호사	267	494	164	52	6,025	748	553	742	753	717	1,210	626	98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간호(조무)사	69	202	53	9	1,569	246	239	266	175	156	281	281	147
	물리(작업)치료사	22	50	18	4	423	76	72	73	48	52	83	87	47
	사회복지사	43	97	32	8	932	144	143	154	102	101	161	182	81
	요양보호사	526	1,373	489	90	12,151	1,907	1,902	2,077	1,290	1,242	2,342	2,610	1,197

나. 층화 및 분류지표

표본 추출을 위한 층화는 급여유형 및 직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26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분류지표(보조단위)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수준(종속변수)과 전주기 분류지표인 설립유형, 지역, 시도(독립변수)의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분류지표 순서를 적용하였다. 단, 설립유형의 경우 기관 설립유형의 그룹화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타 및 개인을 통합하였다.

〈표 1-29〉 정준 상관분석 결과(표준화된 정준상관계수)

순서	변수 분류	v1	v2
1차	설립유형	0.82	-0.47
2차	지역	0.53	0.16
3차	시도	-0.02	0.77

〈표 1-30〉 분류지표(기관)

정렬 순서	지표	분류지표		
①	설립유형	설립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개인 및 기타	법인	지자체
②	지역	7대 광역시 및 동부 읍면부 고려		
		1구간	2구간	3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③	시도	17개 시도		
		17개 구간		
		서울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다. 표본 규모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의 규모는 4,500명(추출률: 0.99%)으로 예산 및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표본의 조사 불능 사유 발생 시, 대체표본을 추가 제공하였다. 표본 규모에 따른 상대표준오차(RSE)는 3.6%이다.

〈표 1-31〉 표본 규모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명)

	2019년	2022년 예상 RSE			
RSE	3.8*	3.8	3.6	3.4	3.2
표본 규모	4,000	4,000	4,500	5,000	5,500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요원의 주요 항목(월평균 임금수준, 월평균 근로시간)의 RSE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1-32〉 급여유형에 따른 예상 오차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2년	
		표본규모	평균RSE	표본규모	예상RSE
전체		3,734	3.8	4,500	3.4
직종	간호(조무)사	570	11.5	825	9.8
	물리(작업)치료사	179	41.7	326	32.3
	사회복지사	558	19.7	741	17.4
	요양보호사	2,427	5.9	2,608	5.6
급여 제공 유형	방문요양	1,010	9.9	1,010	9.7
	방문목욕	252	22.4	250	22.2
	방문간호	54	23.1	100	17.5
	주야간보호	518	15.7	715	13.3
	단기보호	69	41.5	143	30.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5	31.8	361	28.8
	노인요양시설 (10~29명)	444	26.6	608	22.9
	노인요양시설 (30~49명)	407	25.9	558	22.4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695	23.7	755	22.7

표본의 배분은 설계층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최소 배분 후 요원수 기준 제곱근 비례배분을 적용하였으며, 최소 40명씨 배분되도록 하였다.

〈표 1-33〉 표본 규모(요원)

(단위: 명)

급여유형(설계층)		모집단	비례 배분	제곱근	제곱근 배분	초기 표본	최종 표본	설계 가중값
합계		453,289*	4,499	2,108	4,502	3,500	4,500	100.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504	5	22	48	37	77	6.5
	요양보호사	292,328	2,902	541	1,154	893	933	313.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150	160	127	271	210	250	64.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316	13	36	77	60	100	13.2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5,441	54	74	158	122	162	33.6
	물리(작업)치료사	424	4	21	44	34	74	5.7
	사회복지사	7,884	78	89	189	147	187	42.2
	요양보호사	23,157	230	152	325	252	292	79.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70	1	8	18	14	54	1.3
	사회복지사	25	0	5	11	25	25	1.0
	요양보호사	211	2	15	31	24	64	3.3
공동 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882	19	43	93	72	112	16.8
	사회복지사	564	6	24	51	39	79	7.1
	요양보호사	6,193	61	79	168	130	170	36.4
노인 요양시설 (30명미만)	간호(조무)사	2,772	28	53	113	87	127	21.8
	물리(작업)치료사	160	2	13	27	21	61	2.6
	사회복지사	3,324	33	58	123	95	135	24.6
	요양보호사	22,003	218	148	317	245	285	77.2
노인 요양시설 (30~49명)	간호(조무)사	1,927	19	44	94	73	113	17.1
	물리(작업)치료사	888	9	30	63	49	89	10.0
	사회복지사	1,747	17	42	89	69	109	16.0
	요양보호사	15,724	156	125	268	207	247	63.7
노인 요양시설 (50명이상)	간호(조무)사	4,981	49	71	151	117	157	31.7
	물리(작업)치료사	1,415	14	38	80	62	102	13.9
	사회복지사	2,925	29	54	116	89	129	22.7
	요양보호사	39,274	390	198	423	327	367	107.0

주: * 모집단에서 4개 직종(19명) 제외

라.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출결과 표본추출틀과 표본간 주요 특성의 구성비율 차이는 6.2%p 이내로 나타났다.

〈표 1-34〉 주요 특성별 구성 비율 차이(요원)

(단위: %p)

급여유형 및 직종(설계층)		설립유형			지역		
		개인 및 기타	법인	지방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0.0	0.0	0.0	0.0	0.0	0.0
	요양보호사	-0.1	0.7	0.8	0.2	0.1	-0.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0.0	-0.1	0.8	0.0	-0.2	0.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0.0	0.0	0.0	0.0	0.0	0.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0.0	0.1	-1.2	0.0	0.0	0.0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2	0.0	0.0	0.0
	사회복지사	0.1	-0.2	-1.5	0.0	-0.1	0.1
	요양보호사	0.0	0.0	-2.0	0.0	0.0	0.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사	0.0	0.0	0.0	0.0	0.0	0.0
	요양보호사	0.0	0.0	0.0	0.0	0.0	0.0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0.0	0.0	0.2	0.0	0.0	0.0
	사회복지사	0.0	0.0	0.1	0.0	0.0	0.0
	요양보호사	0.0	0.0	0.0	0.0	0.0	0.0
노인요양시설(30명미만)	간호(조무)사	0.0	-0.2	-0.1	0.0	0.0	0.0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사	0.0	0.0	-0.3	0.0	0.0	0.0
	요양보호사	0.1	-0.1	-1.7	-0.1	0.0	0.1
노인요양시설(30~49명)	간호(조무)사	0.0	0.1	0.0	0.0	0.0	0.1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2	0.0	0.0	0.0
	사회복지사	0.0	0.1	0.1	0.0	0.0	0.0
	요양보호사	0.0	-0.3	1.3	0.0	0.0	0.0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간호(조무)사	0.0	0.1	-2.0	0.0	0.0	0.0
	물리(작업)치료사	0.0	-0.1	0.7	0.0	0.0	0.1
	사회복지사	0.0	0.0	-0.5	0.0	0.0	-0.1
	요양보호사	-0.1	-0.3	6.2	-0.1	0.2	-0.1

주: 설계층별 분류지표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표와는 무관함

4. 가중치 설계

가.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표본 추출시에는 수급자, 기관, 요원 각각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w_h^0 = \frac{N_h}{n_h}$$

- $h = 1, 2, \c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w_h^0: h층의 설계 가중값
- N_h: h층의 전체 수급자(기관, 요원) 수
- n_h: h층의 표본 수급자(기관, 요원) 수

나. 무응답 보정 가중값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불응한 단위무응답 등 표본의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즉, 설계 가중값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이를 무응답 보정 가중값으로 활용하였다.

$$w_h^1 = w_h^0 \times \frac{1}{\rho_h}$$

- w_h^1 : 무응답 보정 가중값
- w_h^0: 설계 가중값
- ρ_h: 응답률

다. 최종 가중값(사후층화 가중값)

최종 가중값은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벤치마크 모집단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내역 자료를 활용하였다.

$$w_{hi} = w_h^1 \times \frac{X_{h,g}}{\hat{X}_{h,g}}$$

- w_{hi}: h층 i번째 표본의 사후가중값
- w_h^1: 무응답 보정 가중값
- g: 사후층화 그룹
- X: 추출틀 내 특성 값
- $\hat{X}$: 표본의 총 가중값

5. 추정

평균 및 분산 추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를 도출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 추정

$$\bar{y}_G = \frac{\sum_{h=1}^{H}\sum_{i=1}^{n_h} w_{hi}\ y_{hi} I[c_{hi} \in G]}{\sum_{h=1}^{H}\sum_{i=1}^{n_h} w_{hi} I[c_{hi} \in G]}$$

- $h = 1, 2, \c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cdots, n_h$: h층 내 표본
- w_{hi}: h층 i번째 표본의 가중값
- y_{hi}: h층 i번째 표본의 관측값
- $I[c_{hi}] = \begin{cases} 1 & \text{if } I[c_{hi} \in G] \\ 0 & otherwise \end{cases}$
- G: 분류 (급여유형, 지역 등)

나. 분산 추정

$$\widehat{Var}(\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 - 1} \sum_{i \in h}^{n_h} (y_{hi} - \bar{y}_h)^2 \quad , \quad \bar{y}_h = \frac{\sum_{i \in h}^{n_h} w_i y_i}{n_h}$$

다.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6. 표본관리

안정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표본추출 시 동일 수급자, 기관 및 요원이 2번 이상 추출된 경우 표본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부적격이나 불응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 조사원에게 대체명부를 제공하였다. 표본구의 가중값 조정을 위해 표본가구 접촉 이력정보 등 표본관리 정보(부재, 불응, 부적격, 미접촉 등)를 입수하였으며, 표본의 유고사유가 표본의 변동사유 인지 모집단의 변동사유인지 등을 구분하였다. 즉, 유고 사유가 전출, 부재, 불응, 불능 등 표본의 변동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값 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조사대상 외 등 모집단의 변동사유인 경우에는 벤치마크 단계에서 보완을 진행하였다.

〈표 1-35〉 표본의 유고 사유(예시)

전출	대상자가 관할 사무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사 불응	사생활침해, 건강불화, 가족구성원의 특이함, 정부불신 등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 불능	잦은 출타(타지역으로), 주응답자의 장기투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등 조사대상 외	조사대상자 사망, 명부 오류 등 모집단의 변동사유

7. 사후가중값 작성 결과

가. 조사결과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수급자 조사결과, 전체 4,500명 표본 중 4,423명(98.3%)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총 77명으로 불응 28명(사생활 노출, 가사 사정 등), 불능 49명(장기출타, 장애, 전출 등)이다.

〈표 1-36〉 조사완료 수급자 현황

구분			조사대상(명)	조사완료(명)	완료율(%)
전체			4,500	4,423	98.3
급여 유형	재가	방문요양	948	936	98.7
		방문목욕	497	496	99.8
		방문간호	259	256	98.8
		주야간보호	589	583	99.0
		단기보호	114	98	86.0
	시설	공동생활가정	280	278	99.3
		30명미만	419	414	98.8
		30~49명	376	373	99.2
		50명이상	518	508	98.1
	미이용		500	481	96.2
성별		남자	1,192	1,171	98.2
		여자	3,308	3,252	98.3
연령층		65세미만	129	125	96.9
		65~69세	173	171	98.8
		70~74세	324	315	97.2
		75~79세	583	575	98.6
		80~84세	1,069	1,052	98.4
		85~89세	1,310	1,288	98.3
		90세이상	912	897	98.4
인정등급		1등급	254	247	97.2
		2등급	566	554	97.9
		3등급	1,330	1,302	97.9
		4등급	1,866	1,837	98.4
		5등급	417	416	99.8
		인지지원	67	67	100.0
지역		대도시	1,444	1,415	98.0
		중소도시	1,483	1,459	98.4
		농어촌	1,573	1,549	98.5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2,000개 표본 중 1,953개(97.7%)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미완료 기관은 47개로 불응 42개, 불능 5개가 해당된다.

〈표 1-37〉 조사완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조사대상(개)	조사완료(개)	완료율(%)
전체			2,000	1,953	97.7
급여 유형	재가	방문요양	505	496	98.2
		방문목욕	271	261	96.3
		방문간호	118	114	96.6
		주야간보호	310	304	98.1
		단기보호	59	57	96.6
	시설	공동생활가정	203	200	98.5
		30명미만	224	219	97.8
		30~49명	148	144	97.3
		50명이상	162	158	97.5
설립유형		개인	1,623	1,586	97.7
		법인	346	338	97.7
		지방자치단체	28	26	92.9
		기타	3	3	100.0
지역		대도시	685	672	98.1
		중소도시	750	731	97.5
		농어촌	565	550	97.3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전체 4,500명 표본 중 4,302명(95.6%)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미완료 요원은 198명으로 불응 85명, 불능 113명이 해당되었다.

〈표 1-38〉 조사완료 장기요양 요원 현황

구분			조사대상(명)	조사완료(명)	완료율(%)
전체			4,500	4,302	95.6
급여유형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77	77	100.0
		요양보호사	933	900	9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50	237	94.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00	91	91.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162	157	96.9
		물리(작업)치료사	74	74	100.0
		사회복지사	187	182	97.3
		요양보호사	292	280	95.9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54	45	83.3
		사회복지사	25	20	80.0
		요양보호사	64	51	79.7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12	102	91.1
		사회복지사	79	74	93.7
		요양보호사	170	167	98.2
	노인요양시설(30명미만)	간호(조무)사	127	121	95.3
		물리(작업)치료사	61	45	73.8
		사회복지사	135	133	98.5
		요양보호사	285	275	96.5
	노인요양시설(30~49명)	간호(조무)사	113	111	98.2
		물리(작업)치료사	89	87	97.8
		사회복지사	109	106	97.2
		요양보호사	247	240	97.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간호(조무)사	157	150	95.5
		물리(작업)치료사	102	96	94.1
		사회복지사	129	127	98.4
		요양보호사	367	354	96.5
설립유형	개인		3,327	3,170	95.3
	법인		1,060	1,022	96.4
	지방자치단체		103	100	97.1
	기타		10	10	100.0
지역	대도시		1,506	1,425	94.6
	중소도시		1,625	1,558	95.9
	농어촌		1,369	1,319	96.3

나. 사후 가중값 작성

2022년 1월 모집단의 특성과 2022년 7월(조사시점)의 표본 특성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후 가중값을 산출하였다.

먼저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 시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계산하였다.

$$w_h^0 = \frac{N_h}{n_h}$$

- $h = 1, 2, \c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w_h^0: h층의 설계 가중값
- N_h: h층의 전체 수급자/기관/요원 수
- n_h: h층의 표본 수급자/기관/요원 수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조사설계시 층(급여유형, 10개)과는 별도로 무응답 조정용 층(6개)을 구성하였다. 이중 단기보호의 응답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보호 여부로 2개층을 구성하고 2단계 내재적 층화변수(인정등급) 3개층과 결합하여 6개 무응답층으로 구성하였다.

〈표 1-39〉 무응답층 조사완료 수급자 현황

구분		조사대상(명)	조사완료(명)	완료율(%)	조정인자
전체		4,500	4,423	98.3	
단기보호	1~2등급	20	14	70.0	1.43
	3~4등급	84	74	88.1	1.14
	5~인지지원	10	10	100.0	1.00
단기보호 외 급여유형	1~2등급	800	787	98.4	1.03
	3~4등급	3112	3065	98.5	1.02
	5~인지지원	474	473	99.8	1.00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목표 기관수(2,000개)를 달성하지 못한 무응답 기관수(47개)의 비율이 약 2.3%로 낮고, 특성별 무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아 별도의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조사설계시 층(급여유형*직종, 26개)과는 별도로 무응답 조정용 층(16개)을 구성하였다. 즉, 응답률이 낮은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30명 미만)에서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여부로 4개층을 구성하고, 2단계 내재적 층화변수(직종) 4개층과 결합하여 16개 무응답층을 구성하였다.

〈표 1-40〉 무응답층 조사완료 장기요양 요원 현황

구분		조사대상(명)	조사완료(명)	완료율(%)	조정인자
전체		4,500	4,302	95.6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77	77	100.0	1.00
	요양보호사	933	900	96.5	1.04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54	45	83.3	1.20
	사회복지사	25	20	80.0	1.25
	요양보호사	64	51	79.7	1.25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간호조무사	127	121	95.3	1.05
	물리치료사	61	45	73.8	1.36
	사회복지사	135	133	98.5	1.02
	요양보호사	285	275	96.5	1.04
그 외 급여유형	간호조무사	644	611	94.9	1.05
	물리치료사	265	257	97.0	1.04
	사회복지사	504	489	97.0	1.03
	요양보호사	1326	1278	96.4	1.04

무응답 조정이 이루어진 장기요양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무응답 조정 가중값을 적용하였다. 즉, 무응답층에 무응답 보정 계수를 계산하여 설계가중값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조정이 이루어졌다.

$$w_h^1 = w_h^0 \times \frac{1}{\rho_h}$$

- w_h^0: 설계 가중값
- ρ_h: h층의 응답 확률
- $\frac{1}{\rho_h}$: 무응답 조정 계수
- w_h^1: 무응답 조정 가중값

다음으로 특정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분포를 일치시켜, 추정값의 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가중값을 조정하는 사후조정(벤치마크 조정)을 실시하였다. 벤치마크 자료원은 2022년 5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청구 내역이며,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비포함 차이(Coverage Error)에 대한 보정과 장기요양실태조사 공표단위와 집계 또는 추정이 가능한 특성의 공표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레이킹비 조정이 이루어졌다.

① 레이킹 기준변수(수급자)

① 급여유형	: 10개 급여유형(미이용 포함)
② 성별	: 남자/ 여자
③ 연령대	: 65세미만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세/85~89세/90세이상
④ 인정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⑤ 지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② 레이킹 기준변수(기관)

① 급여유형	: 9개 급여유형
② 설립유형	: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③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③ 레이킹 기준변수(요원)

① 급여유형	: 9개 급여유형
②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설립유형	: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④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무응답 조정 및 벤치마크 조정이 이루어진 조사대상별 모집단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41〉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수급자)

(단위: %, %p)

구분			설계 가중표본	무응답조정 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100.0	
급여 유형	재가	방문요양	40.8	40.8	41.2	0.4
		방문목욕	7.2	7.2	7.1	0.0
		방문간호	1.1	1.1	1.0	0.0
		주야간보호	11.4	11.3	11.3	0.0
		단기보호	0.1	0.1	0.1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1.4	1.4	1.3	-0.1
		30명미만	4.5	4.5	4.5	0.0
		30~49명	3.3	3.3	3.4	0.2
		50명이상	8.0	8.0	7.5	-0.5
	미이용		22.5	22.5	22.5	0.0
성별		남자	28.1	28.1	27.7	-0.4
		여자	71.9	71.9	72.3	0.4
연령층		65세미만	2.8	2.8	2.8	0.0
		65~69세	4.3	4.3	4.5	0.2
		70~74세	7.7	7.7	7.9	0.2
		75~79세	14.0	14.0	14.3	0.4
		80~84세	24.1	24.0	26.3	2.2
		85~89세	28.7	28.7	26.7	-2.0
		90세이상	18.5	18.5	17.5	-1.1
인정등급		1등급	4.7	4.8	4.7	-0.1
		2등급	9.7	9.8	9.2	-0.6
		3등급	27.9	28.0	27.4	-0.6
		4등급	44.7	44.8	45.7	1.0
		5등급	10.5	10.3	10.9	0.6
		인지지원	2.4	2.4	2.1	-0.3
지역		대도시	34.3	34.3	35.4	1.1
		중소도시	32.7	32.7	32.7	0.0
		농어촌	33.0	32.9	31.9	-1.1

〈표 1-42〉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기관)

(단위: %, %p)

구분			설계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47.8	47.7	0.0
		방문목욕	12.2	12.4	0.2
		방문간호	1.7	1.7	0.0
		주야간보호	16.7	16.7	0.0
		단기보호	0.2	0.2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6.5	6.2	-0.3
		30명미만	8.1	8.2	0.1
		30~49명	3.0	3.2	0.2
		50명이상	3.8	3.6	-0.2
설립유형		개인	84.5	84.0	-0.5
		법인	14.4	14.8	0.4
		지방자치단체	0.9	0.9	0.0
		기타	0.2	0.3	0.1
지역		대도시	36.1	36.7	0.6
		중소도시	36.9	37.1	0.2
		농어촌	27.0	26.2	-0.8

〈표 1-43〉 표본 및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요원)

(단위: %, %p)

구분			설계 가중표본	무응답조정 가중표본(A)	벤치마크(B)	B-A
합계			100.0	100.0	100.0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64.6	64.6	67.1	2.5
		방문목욕	3.5	3.5	3.4	-0.1
		방문간호	0.3	0.3	0.3	0.0
		주야간보호	8.1	8.1	7.6	-0.6
		단기보호	0.1	0.1	0.1	0.0
	시설	공동생활가정	1.9	1.9	1.7	-0.2
		30명미만	6.2	6.2	6.1	-0.2
		30~49명	4.5	4.5	4.4	-0.1
		50명이상	10.7	10.7	9.4	-1.4
직종		간호(조무)사	4.0	4.1	3.8	-0.3
		물리(작업)치료사	0.6	0.6	0.6	0.0
		사회복지사	3.8	3.7	6.7	3.0
		요양보호사	91.6	91.6	88.9	-2.6
설립유형		개인	79.7	79.7	80.5	0.9
		법인	18.8	18.8	18.0	-0.8
		지방자치단체	1.3	1.3	1.2	-0.2
		기타	0.2	0.2	0.3	0.1
지역		대도시	38.7	38.7	40.0	1.4
		중소도시	36.7	36.7	37.1	0.4
		농어촌	24.6	24.6	22.9	-1.7

다음으로 극단 가중값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4]. 단, 조사대상별로 벤치마크 조정 후 불균등 가중값 효과(UWE)가 수급자는 1.51, 기관은 1.33, 요원은 2.32 이내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단가중값을 조정하지 않았다.

〈표 1-44〉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수급자)

구분			min	med	max	mean	std	UWE
전체			5.4	165.8	591.9	239.5	171.1	1.51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377.7	464.8	547.8	466.5	35.7	1.01
		방문목욕	125.3	150.5	181.8	152.4	12.1	1.01
		방문간호	36.3	42.6	51.0	43.1	3.4	1.01
		주야간보호	154.7	203.3	239.8	205.4	18.2	1.01
		단기보호	5.4	6.0	8.2	6.3	0.6	1.01
	시설	공동생활가정	41.1	48.9	59.6	49.4	3.9	1.01
		30명미만	100.2	113.9	140.6	115.8	9.3	1.01
		30~49명	83.1	95.7	115.0	96.4	7.8	1.01
		50명이상	131.6	154.6	188.3	156.6	12.1	1.01
	미이용		377.6	494.8	591.9	495.9	42.2	1.01
성별		남자	5.5	169.7	566.4	250.4	172.7	1.48
		여자	5.4	163.7	591.9	235.6	170.4	1.52
연령층		65세미만	6.0	157.8	548.1	239.6	180.2	1.57
		65~69세	6.4	212.7	567.5	279.2	187.8	1.45
		70~74세	5.9	172.5	559.6	266.4	187.1	1.49
		75~79세	5.8	183.7	557.2	263.6	175.7	1.44
		80~84세	6.1	179.9	591.9	264.3	182.4	1.48
		85~89세	5.4	147.8	501.6	219.8	157.0	1.51
		90세이상	5.4	147.7	512.8	206.3	153.3	1.55
인정등급		1등급	7.2	143.0	558.0	200.6	171.8	1.73
		2등급	6.2	127.5	536.8	175.3	145.8	1.69
		3등급	5.4	152.4	557.5	222.9	167.8	1.57
		4등급	5.5	188.0	583.9	263.7	174.1	1.44
		5등급	5.4	217.6	591.9	278.2	168.4	1.37
		인지지원	154.7	407.2	480.5	333.2	128.7	1.15
지역		대도시	5.6	194.7	591.9	265.1	187.1	1.50
		중소도시	5.4	165.9	573.5	237.5	168.7	1.50
		농어촌	5.4	152.5	554.9	218.1	154.2	1.50

4) UWE 〈1.3: 극단가중값 절삭 불필요 / 1.3 〈 UWE 〈 2.5: 극단가중값 절삭 고려 / UWE 〉 2.5: 극단가중값 절삭 필수

〈표 1-45〉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기관)

구분			min	med	max	mean	std	UWE
전체			1.0	13.1	34.9	14.2	8.1	1.33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25.6	26.7	34.9	26.7	0.8	1.00
		방문목욕	12.6	13.1	13.8	13.1	0.3	1.00
		방문간호	4.1	4.2	4.4	4.2	0.1	1.00
		주야간보호	14.6	15.2	16.6	15.2	0.5	1.00
		단기보호	1.0	1.0	1.1	1.0	0.0	1.00
	시설	공동생활가정	8.4	8.7	9.1	8.6	0.2	1.00
		30명미만	10.0	10.4	14.2	10.4	0.4	1.00
		30~49명	5.9	6.1	6.4	6.1	0.1	1.00
		50명이상	6.0	6.3	6.9	6.4	0.2	1.00
설립유형		개인	1.0	13.1	26.9	14.7	8.2	1.31
		법인	1.0	10.4	28.0	12.1	7.2	1.36
		지방자치단체	1.1	6.8	16.6	10.0	5.0	1.25
		기타	14.2	34.9	34.9	28.0	12.0	1.18
지역		대도시	1.0	13.3	28.0	15.1	8.8	1.34
		중소도시	1.0	13.1	27.7	14.1	7.9	1.31
		농어촌	1.0	10.4	34.9	13.2	7.3	1.31

〈표 1-46〉 벤치마크 조정 후 가중값 분포(요원)

구분			min	med	max	mean	std	UWE
전체			1.3	62.6	441.4	111.2	128.0	2.32
급여유형	재가	방문요양	15.3	357.8	441.4	328.6	92.2	1.08
		방문목욕	64.6	70.2	86.6	69.4	2.7	1.00
		방문간호	14.0	15.2	18.4	15.2	0.7	1.00
		주야간보호	4.8	62.6	85.8	52.2	22.7	1.19
		단기보호	1.3	2.3	3.3	2.4	0.8	1.12
	시설	공동생활가정	13.3	18.0	36.4	23.6	8.0	1.11
		30명미만	3.4	53.0	81.5	50.7	22.7	1.20
		30~49명	10.4	35.5	62.9	39.1	20.3	1.27
		50명이상	13.2	46.9	97.5	61.6	31.6	1.26
직종		간호(조무)사	1.3	22.7	34.4	23.2	8.5	1.14
		물리(작업)치료사	3.4	11.2	14.7	9.4	4.1	1.19
		사회복지사	2.1	46.1	85.8	44.7	22.2	1.25
		요양보호사	3.0	87.7	441.4	170.0	140.0	1.68
설립유형		개인	1.4	62.9	363.9	121.6	135.8	2.25
		법인	1.3	56.8	359.7	84.3	99.9	2.41
		지방자치단체	1.4	55.6	335.0	56.6	43.6	1.59
		기타	18.4	76.1	441.4	130.2	156.5	2.44
지역		대도시	1.5	63.7	441.4	134.3	144.6	2.16
		중소도시	1.4	62.6	357.8	114.0	128.3	2.27
		농어촌	1.3	57.5	403.9	83.1	100.3	2.46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중값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단계별 가중값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1-1]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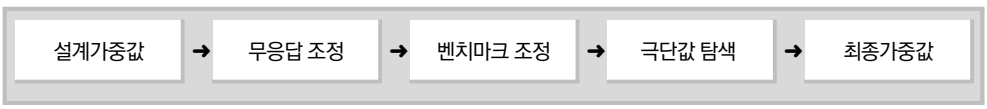

〈표 1-47〉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수급자)

구분	min	median	max	mean	std	sum	UWE	max/min
설계가중값	5.2	159.9	474.6	229.1	160.4	1,013,209	1.49	91.2
무응답조정가중값	5.2	163.1	486.6	233.2	163.2	1,031,570	1.49	93.5
최종가중값	5.4	165.8	591.9	239.5	171.1	1,059,394	1.51	109.5

〈표 1-48〉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기관)

구분	min	median	max	mean	std	sum	UWE	max/min
설계가중값	1.0	12.4	25.7	13.7	7.8	26,701	1.32	25.7
최종가중값	1.0	13.1	34.9	14.2	8.1	27,716	1.33	35.9

〈표 1-49〉 단계별 가중값 조정 결과(요원)

구분	min	median	max	mean	std	sum	UWE	max/min
설계가중값	1.0	63.7	313.3	101.6	112.7	437,004	2.23	313.3
무응답조정가중값	1.3	66.1	324.8	105.4	116.8	453,289	2.23	259.8
최종가중값	1.3	62.6	441.4	111.2	128.0	478,556	2.32	329.7

8. 상대표준오차

표본조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RSE)의 값이 25% 미만이면서 해당 표본의 수가 10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상대표준오차가 25%미만이지만 표본수가 10미만의 경우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표준오차가 25%≤RSE〈50%의 경우 신뢰도가 다소 낮으며,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2022년 조사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의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항의 특성별(예, 연령, 급여유형별 등) 분석의 경우 해당 응답대상자의 수가 적거나 상대표준오차의 범위가 25% 이상으로 나타나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문항으로 제시한 문항별 상대표준오차의 신뢰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 조사의 만성질환갯수(없음, 1개, 2개, 3개,4개 이상) 문항에 대한 결과 공표는 전체, 성별(남,녀),연령별(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기요양인정등급(1등급, 2,3,4,5, 인지지원등급), 급여유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0~29인, 노인요양시설 30~49인, 노인요양시설 50인 이상), 치매진단여부(예, 아니오)의 총 30개의 그룹별 결과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성질환 개수에 대한 결과 값은 30개 특성별 그룹별 만성질환개수범주(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의 값을 갖게 되어 총 150개 값이 산출, 그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와 해당 조사응답자수를 기준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항목은 150개 항목 중 121개인 80.7%는 “신뢰도 높음”이며, 8.7%는 “신뢰도 다소 낮음”, 7.3%는 신뢰도 낮음에 해당하며, 해당되는 표본이 없는 항목은 3.3%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본 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해당 응답자 규모가 10인 미만의 경우 조사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할때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1-50〉 조사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신뢰수준 평가

구분		항 목 (개, %)									
		합계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낮음		신뢰도 낮음		표본없음	
수급자	(의사진단) 만성질환개수	150	100	121	80.7	13	8.7	11	7.3	5	3.3
	(재가급여)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중복이용 포함)	100	100	85	85.0	13	13.0	2	2.0	0	0.0
	(시설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총액	144	100	130	90.3	13	9.0	1	0.7	0	0.0
	(미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189	100	67	35.4	65	34.4	44	23.3	13	6.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장기요양급여의 도움 정도: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150	100	84	56.0	27	18.0	27	18.0	12	8.0
기관	운영형태(단독 또는 병설)	34	100	31	91.2	2	5.9	1	2.9	0	0.0
	(재가급여) 수급자 현황	78	100	51	65.4	15	19.2	4	5.1	8	10.3
	(시설급여) 수급자 현황	72	100	36	50.0	11	15.3	11	15.3	14	19.4
요원	월평균 근로시간	116	100	89	76.7	13	11.2	14	12.1	0	0.0
	월평균 근로일수	116	100	85	73.3	21	18.1	10	8.6	0	0.0
	업무내용 만족도	145	100	111	76.6	23	15.9	10	6.9	1	0.7

주: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가구통계기준)

(참고)

구분	RSE〈25%		25%≤RSE〈50%	RSE≥50%
	n≥10	n〈10		
신뢰도수준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제2장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항목 설계

제1절 장기요양실태조사 항목 구성 기본방향
제2절 장기요양실태조사 종류별 기본방향 및 구성

제 2 장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항목 설계

제1절 장기요양실태조사 항목 구성 기본방향

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항목 구성 기본방향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 이후 2번째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약 15년의 경과를 거치면서 제도의 발전과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제도 도입을 통해 요양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변화하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서비스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자인 요원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확대를 비롯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확대 측면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의 계속적 확대와 함께 전체적인 수급자 규모가 크게 확대됨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야간보호 중심의 확대, 치매돌봄 강화 등이 대표적인 제도의 발전 사항이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장기요양실태의 지속적인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고, 또한 향후 장기요양의 발전방안을 위한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조사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하는 방향은 2019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들의 요양 이용실태 파악하고, 기관 운영자 및 요원의 서비스 제공특성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계열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다만, 1차 조사 항목 중 정책적이나 학술적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된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조사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욕구, 현 제도의 개선점을 밝히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돌봄 기관에서의 이용자에 대

한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사 대상별 학대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의 문항 구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의 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되온 코로나19의 경험,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수급자와 가족조사에서는 향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욕구, 기관조사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의 새로운 항목을 구성하여 장기요양제도의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자료 산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종류별 항목구성 개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2019년과 같이 수급자와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3종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별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수급자 조사는 수급자의 급여 이용여부에 따라 이용자와 미이용자로 구분되며, 이용자는 급여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자와 재가급여 이용자로 분류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모든 수급자를 포괄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통영역을 구성하였다. 공통영역에서는 수급자의 가족 특성, 식사특성, 만성질환 및 의료이용, 낙상 및 욕창, 이동기능과 장기요양 이용 결정자 및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급여이용자는 재가급여 이용자와 시설급여 이용자로 분류하여 현재 거주하는 공간에 따른 차별화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가구원 및 주거공간 특성, 복지용구, 복약 및 의료 미충족 욕구, 비공식 돌봄 자원, 급여 만족도, 학대경험, 코로나19 경험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전 거주특성, 현재 이용시설 현황 및 급여이용특성, 외부 접촉현황, 급여 만족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기요양수급권자이지만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급여 비이용자에게는 현 거주형태와 함께 급여 미이용 이유, 급여 이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장기요양이용자의 가족조사는 2019년의 조사항목에서 항목 축소를 시도하였다. 2019년 수급자 조사와 가족조사에 동일하게 구성된 항목의 경우 수급자 조사에 유지하고, 가족조사에서는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 조사에서 대리응답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수급자 조사에서만 조사하고, 가족 조사에서는 삭제하였다. 장

기요양 신청 과정과 초기이용경험, 본인부담금 납부 특성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다.

가족조사는 수급자의 이용 급여에 따라 시설과 재가이용자 공통적 문항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이용급여에 따른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가/시설 급여별로 수급자에 대한 가족의 지원, 서비스 만족도, 필요 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욕구, 급여변경 의향 등의 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별로 급여 유형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2-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조사 항목 구성

조사 종류	영역		중영역
장기요양 수급자조사	공통 영역		가족 특성
			식사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
			낙상 및 욕창
			이동 기능
			장기요양이용 결정자 및 정보 경로
	급여 이용자	재가 급여 이용자	가구원 특성
			주거공간 특성
			급여이용(재가, 복지용구) 이용 특성
			급여만족도
			본인부담금
			복약 및 의료미충족 욕구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자원
			외출
			지역사회지원
			코로나-19 경험
			학대 경험
			향후 희망 거주형태
		시설 급여 이용자	입소전 거주특성
			급여 이용 특성
			급여 만족도
			본인부담금
			외부 접촉 현황
			거주지 변경 욕구
			학대 경험
	급여 미이용자		거주 특성
			(재가거주자) 가구 및 거주 특성
			(재가거주자) 돌봄특성
			급여이용 경험
			향후 급여이용 의향
			학대 경험
이용자 가족조사	가족 공통항목		수급자와 관계 특성
			치매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가족 교육 및 정보제공
			장기요양 도움 정도
			장기요양제도 만족도

조사 종류	영역	중영역
		수급자 학대 인지 경험
		코로나 경험
	재가/시설 급여에 따른 분류	수급자에 대한 가족의 지원
		서비스 만족도
		필요 지원서비스
		급여 변경 의향 (시설↔재가)
		서비스 욕구(현 서비스 개선사항, 신규서비스 욕구)

장기요양기관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별로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통영역과 기관특성별 영역을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공통영역에서는 기관 운영 특성, 기관 인력관리, 안전 관리, 기관 운영의 어려움의 중영역별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기관특성별 영역에서는 가정 방문형 기관, 비가정방문형 기관, 24시간 돌봄시설, 주야간 보호기관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기관 특성별 문항은 인력 운영 특수성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의 문항을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표 2-2〉 장기요양기관조사 내용 구성

영역	중영역	조사내용
공통사항	기관 운영 형태 및 점유 형태	운영주체
		단독 및 병설여부
		건물점유형태
		이용자 현황 (총계/ 등급별/성별/치매진단여부별)
	기관 인력 관리	사회보험 가입된 직원 수(보험 4종)
		지난 6개월 퇴사 및 입사 현황(8종 직종)
		직종별 평균 근무 기간
		기관 내 직원 복지 정책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기관의 안전 사고 발생 대응	수급자의 안전사고
		직원이 업무 상 질병 상해 여부/건수
	기관 운영의 어려움	기관 운영의 어려움(10종) 정도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기관 특성별 문항 구성	가정 방문형 기관 현황 (방문요양/목욕/ 간호)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수
		COVID-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비(非) 가정방문형 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호보, 단기보호)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수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 직원(4종) 수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법정 직원배치기준에서 상향조정 필요 직종(1순위~3순위)

영역	중영역	조사내용
	(24시간 돌봄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COVID-19로 인하여 경험 및 대응
		기관의 건물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위한 용도인지 여부
		건물별_전체 층수 / 노인요양시설 사용층수(최저/최고)/ 침상이동 EV 설치여부
		생활실 유형별(1인실-4인실) 개수 및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야간근무 운영 형태
		하루 평균 야간근무 직원 수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야간근무 여부
		기관의 비공식 인력 현황(명수 및 횟수)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주야간보호	COVID-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주당 운영 일수
		주당 운영 시간
		이용자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장기요양요원 조사의 내용 구성은 직종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공통문항으로는 장기요양 관련 자격증 및 경력, 현 근무 기관 특성, 복수기관 근무 현황, 근무환경,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교육 경험 및 욕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직 경험 및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근로 특성별로는 가정방문형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수급자 현황과 급여제공과 비자발적 중단 경험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비 가정방문형 종사자에게는 근로 및 휴게 권리 보장 실태, 야간근로 특성,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목격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3〉 장기요양요원조사 내용 구성

영역	중영역	조사내용
장기요양 요원 전체	장기요양 관련 자격증 및 경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가족인 요양보호사 활동 여부
		교육 수준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총 근로 기간(장기요양영역)
	현 근무 특성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기간
		직위
		현재 소속기관 고용 형태
		주된 근무장소
		주된 근무 시간 유형 및 교대제 형태
		근무 일수 및 시간
		임금, 수당
		사회보험 가입 현황
	복수 기관 근무 현황	복수기관 근무 여부
		복수기관 총 근무시간
		복수기관 총 급여
	근무환경	부당 대우 경험 실태
		장기요양업무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4종)
	코로나19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교육 경험 및 욕구	외부기관 제공 교육 참여 경험
		추가 교육 필요성
	근무환경 만족도 및 욕구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11종)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환경 개선 사항
	이직 경험 및 의향	이직경험
		향후 이직 의향
근로 특성별	가정 방문형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 등)
		급여제공 및 비자발적 중단 경험
	비(非) 가정방문형 기관 종사자 (요양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종사자)	근로 및 휴게 권리 보장 현황
		야간근로 특성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 대응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7종) 목격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장기요양실태조사 종류별 기본방향 및 구성

1. 장기요양 수급자 조사

가. 기본방향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수급자 조사표의 구성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공통문항,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영역별 세부 문항에서는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문항 유지와 수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응답 편의 및 조사문항 활용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문항에 따라 간소화 또는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 유형, 만성질환이나 주거환경 등은 구체화하여 기존 문항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2019년 조사 결과에서 변별력이 적거나, 객관성 확보가 불분명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적은 문항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응답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였다. 하루 식사 횟수, 지난 1년간 낙상 횟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용구 이용 비용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 문항을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일반요양보호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분리하여 방문요양 이용 현황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관리, 병원에 입원 중인 미이용자의 입원비용 등의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장기요양수급자의 일상과 서비스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을 개발하여 향후 전국적인 전염병 또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표 구성

수급자 조사표는 공통 영역,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등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조사항목과 2019년과 2022년 간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통영역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당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미이용자 모두가 응답

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문항은 기본적인 가족 사항(배우자, 자녀수), 건강 및 기능 상태(식사, 만성질환 등), 의료기관 이용(외래, 입원), 장기요양 이용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2019년과 달라진 점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성질환 항목에 3개 질환을 추가하였으며, 본인응답 문항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습득 경로가 본인 및 대리응답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 영역은 가구 및 주거 문항, 재가급여 이용 현황, 재가급여 이용 만족도, 일상생활, 코로나19 경험, 노인학대 경험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여 재가급여 이영자 영역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식사 횟수, 장기요양요원 변경 여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용구 비용 등의 문항이 2022년에는 삭제되고, 주거내 편의시설, 코로나19 경험 등이 추가되었다. 시설급여 이용자 영역은 입소 전 상황, 현재 입소생활 현황, 시설급여 이용 만족도, 노인학대 경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에 재가에 거주한 경우, 가구구성이나 이용한 재가급여 등에 대한 질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에 입원했던 수급자는 입원기간에 관한 문항을 파악하였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서는 구강관리 문항이 추가되고, 만족도에서는 청결서비스를 신설하고 여가활동 서비스를 분리하여 시설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나 제한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 간의 방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빈도 문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본인응답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계속 거주 희망 여부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거주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영역은 현재 거주지 및 거주지별 기본 현황, 주된 돌봄제공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노인학대 경험 등으로 구성되며, 2019년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문항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 거주지의 보기문항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삭제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 미이용자 대상으로 지난 1개월간 입원비 문항을 신설하고,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에서 중첩되거나 모호한 보기문항은 통합하거나 수정하였다.

〈표 2-4〉 수급자 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Ⅰ. 공통 영역	배우자 여부	○	○	
	현재 자녀 수	○	○	
	평소 식사 형태	○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	△	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 안질환, 치과질환 추가
	만성질환으로 약 복용 여부	○	○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질병 종류 개수	○	×	
	알약 개수(1일 기준)	○	○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경험	○	○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 방문 횟수	○	○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자	○	○	
	의료기관 이동 방법	×	○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 방문 횟수	○	○	
	지난 1년간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여부, 횟수, 일수 (요양병원 제외)	○	○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여부, 횟수, 일수	○	○	
	지난 1년간 낙상 여부	○	○	
	지난 1년간 낙상 횟수	○	×	
	낙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 여부	×	○	
	욕창 발생 여부	×	○	
	거주 공간에서 생활이나 외출 시 이동 방법	○	○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	○	재가급여 영역에서 공통문항 영역으로 이동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	○	△	선택지 일부 통합, 대리응답 허용범위 변경: 가족응답만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	△	('19년) 본인응답 문항 ('22년) 공통문항(본인 및 대리응답 허용)
Ⅱ. 재가 급여 이용자	가구형태	○	○	
	가구주	○	○	
	가구원수	○	○	
	가구 내 장기요양인정 등급 받은 사람 수	○	○	
	주택의 종류	○	○	
	주택의 점유형태	○	○	
	현재 살고 있는 집 거주 기간	○	×	
	주거공간 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여부(7종)	○	△	방문이나 화장실 등의 휠체어이동 가능여부, 긴급연락장치 설치 추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지난 1개월) 이용 여부,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	△	방문요양 이용여부: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구분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지난 6개월) 장기요양요원 변경여부(횟수)	○	×	
	(해당 재가급여 미이용자)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	○	
	(해당 재가급여 미이용자) (지난 1년간) 이용 여부	○	×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지난 1년간) 단기보호 - (이용자) 이용 여부, 이용횟수, 이용일수 - (미이용자) 인지 여부, 향후 이용의향	○	○	
	(지난 1년간) 단기보호 - (이용자) 장기요양급여 적용 이용 일수	○	×	
	(지난 1개월) 본인부담금 총액	○	△	부연설명 추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모두 포함
	(지난 1년) 노인요양시설 이용 여부	○	×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중 가장 중요한 급여유형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유무 / 개수	○	○	
	복지용구 비용 지불 여부 / 지불 금액	○	×	
	경제적 부담 정도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만족도	○	○	
	복지용구 불만족 이유	×	○	
	(지난 1개월) 하루 식사 횟수_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날의 식사	○	×	
	지난 1개월) 하루 식사 횟수_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날의 식사	○	×	
	(지난 1개월) 처방전에 따른 제 시간 약 복용 여부	○	○	
	(지난 1개월)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 약국 가지 못한 경험/횟수	○	○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	×	공통문항 영역으로 이동
	평소 집에서의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	△	- 일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 9번과 10번 위치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여부	○	○	
	도와주는 사람 여부 및 우선순위(1순위/2순위)	○	○	
	(지난 1년)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외한 외출 여부	○	○	
	(지난 1년) 외출 빈도	○	○	
	(지난 1년) 주된 외출 장소	○	△	선택지 용어 수정 -자녀/친구/친지 등 행사 또는 집 방문
	(지난 1년) 지역사회 지원 여부(7종, 중복응답)	○	○	
	(지난 1년) 지역사회 지원 여부(7종): 지원 기관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	×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	△	-일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치매/간호/재활 등 전문서비스 제공여부 추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본인부담금 감면 제안 경험	○	×	
	해당 장기요양 기관 선택에 영향	○	×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 부담 여부	○	×	
	경제적 부담정도	○	×	
	지난 1년간 코로나 경험	×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공백 여부(일수)	×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공백 이유	×	○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	○	
	(지난 1개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5종) - 장기요양직원 / 서비스내용/ 전반적 만족도	○	△	용어수정 -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직원 - 급여내용 →서비스 내용
	(지난 1개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5종) - 이용시간, 이용일수	○	△	- 이용시간과 이용일수 통합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가장 중요 이유	○	×	
	(지난 1년) 차별 또는 학대 경험 여부	○	△	-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추가
	건강상태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의향	○	△	(기존) '있다, 없다' (수정) 자택에서 거주,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으로 이사,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으로 세분화
Ⅲ. 시설 급여 이용자	현재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한 곳	○	△	보기 문항 축소: 사회복지생활시설 삭제
	입소 전 가구형태	○	○	
	(요양)병원 입원기간	○	○	
	(타 요양시설) / 거주기간	○	○	
	(타 생활시설) / 거주기간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재가급여 이용여부	○	○	
	입소 직전에 이용했던 재가급여(5종)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기(년/월)	○	○	
	(지난 1개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일수	○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침실(몇 인실)	○	○	
	현재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여부	○	×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5종) 이용여부 / 이용 횟수(평균)	○	△	- 구강관리 추가 - 일부 문항에 대한 예시 추가
	(지난 1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한 야외활동(2종) 이용여부 / 이용 횟수	○	○	
	(지난 1개월)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한 금액	○	○	
	(지난 1년) 수급자의 가족, 지인 방문 횟수	○	○	
	(지난 1년) 수급자의 가족, 지인 연락 횟수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	×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	△	- 일부 선택지에 대한 예시 추가 - 치매/간호/재활 등 전문서비스 제공여부 추가
	(지난 1개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만족도(7종)	○	△	- 청결서비스 추가 - 여가활동 서비스 분리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가장 중요 이유	○	×	
	다른 수급자와의 생활 만족도	○	○	
	만족하지 않는 이유	○	△	주관식 문항에서 객관식 문항으로 변경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 의향	×	○	
	노인요양시설 외 계속 거주지	×	○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지난 1년) 차별 및 학대 경험 여부	○	△	-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추가
Ⅳ.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	○	△	보기 문항 축소: 사회복지생활시설 삭제
	현재 가구형태	○	○	
	(요양)병원 입원기간	○	○	
	(요양)병원 입원비	×	○	
	(타 생활시설) 거주기간	○	×	
	가구주	○	○	
	가구원 수	○	○	
	가구내 인정자수	×	○	
	주택의 종류	○	○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여부(7종)	○	△	선택지 추가: 방문이나 화장실 등의 휠체어이동 가능여부, 긴급연락장치 설치 추가
	(지난 3개월) 수급자의 일상생활 도움자(1순위/2순위)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	×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이용한 장기요양급여(중복응답)	○	○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2순위)	○	○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	△	- 3개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
	향후 이용 재가급여 우선순위(1순위/2순위)	○		
	향후 이용 시설급여 유형	○		
	(지난 1년) 차별 또는 학대 경험 여부	○	△	-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추가

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

가. 기본방향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라 제도 이용을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22년도 조사에 있어서는 주요 항목에 대한 시계열 유지와 가족의 급여 이용에 따른 만족도, 정책적 욕구 파악에 방점을 두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은 조사항목에 대한 활용도 및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등에 기인한다. 즉, 2차년도 조사인만큼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시계열 유지와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유관 행정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등은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가족 전체, 급여유형별(재가·시설) 가족 조사로 구분된다.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는 일반 현황, 급여 이용 경험 및 제도 이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양부담 경감 정도, 제도 전반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및 부담정도, 급여이용 만족도 및 향후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사표 구성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조사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2019년의 조사표 구성 및 조사 항목을 대체로 유지하되, 조사항목의 활용도,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책적 욕구 파악 등의 관점에서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신설하였다.

전체적인 조사표 구성은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1) 이용자 가족 전체 2)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3)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으로 구분된다.

이용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는 일반 현황, 급여 이용 경험 및 제도 이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양부담 경감 정도, 제도 전반의 만족도 항목 등을 조사하였다.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조사 활용도 제고 및 조사항목간 배타성 확보 등을 위한 일부 항목의 삭제이다. 우선 '수급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일부) 부담 여부' 항목은 조사표 내 유사 문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삭제하였다. 나아가 급여 이용 전(前)단계와 관련한 항목(최초 인정신청인, 최초 신청방법, 정보 구득 방법, 신청 및 갱신 경험 등)과 '경제적 도움 제공자' 등의 문항은 전주기 조사 결과 활용도 등을 제고하여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제안 경험'은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삭제하였다.

반면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다. 기존 치매전담 기관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포함되었던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 및 이용 여부' 문항을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치매가족 휴가제'를 포함하여 인지 및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나아가 기존에 제도 이용이 수급자 및 가족에게 주는 도움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문항을 가족에 대한 도움 정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신체·정신·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항목 신설로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이나 정보 및 만족도', '향후 희망하는 교육 및 정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목격(인지) 여부'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문항을 추가하였다.

급여유형별(재가·시설) 이용자 가족 조사에는 크게 돌봄 제공, 급여 이용 및 개선의 측면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된다. 2019년도 문항을 대부분 유지하되 만족도 및 제도 개선의과 관련한 항목의 수정 및 신설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조사에 있어서 가족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 제공과 관련해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일 경우 해당 급여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주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공횟수에 대한 선택지를 재범주화하였다. 급여 만족도의 경우, 전주기에는 전반적 만족도로 일원화하여 파악한 반면 2022년도에는 응답항목을 세분화하였다. 즉,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 만족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가급여 개선 항목(기존 급여 개선, 신규 급여 추가)을 추가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조사 역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조사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문항 수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가족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 제공과 관련한 선택지 재범주화, 급여 만족도의 세분화(식사, 목욕, 신체 및 인지 기능 증진, 간호 및 의료, 물리적 환경, 직원, 비용, 전반적 만족도(8종)), 시설급여 개선 항목(시설 및 인력, 서비스 질)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주기 조사 활용도를 제고하여 현재까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의 수 문항을 삭제하였다. 급여이용 불만족 사유 및 시설급여 개선 우선순위 문항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재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삭제 후 앞서 언급한 시설급여 개선 항목 신설시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표 2-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전체 가족	수급자와의 관계	O	O	
	수급자와 동거 여부	O	O	
	- 수급자의 거주지와 같은 행정구역 거주 여부	O	△	선택지 수정
	- 수급자의 거주지까지 거리	O	X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인정 신청인	O	X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신청방법	O	X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접하는 경로	O	X	
	수급자 대신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경험	O	X	
	- 어려운 점	O	X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O	X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본인부담금 감면 제안 경험	O	X	
	- 해당 장기요양 기관 선택에 영향	O	X	
	치매전담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 여부	O	O	
	-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여부	O	O	
	- 이용하지 않는 이유	O	X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 여부	X	O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이용 여부	X	O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	X	O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여부	X	O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	O	X	
	- 정보제공 및 교육을 받을 의향	O	X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교육, 정보	X	O	
	- 교육이나 정보에 대한 만족도	X	O	
	향후 받고 싶은 교육, 정보 내용	X	O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통한 수급자나 가족의 생활에 도움 여부			문항내용 수정 - '가족에 대한 도움'으로 한정
	- 신체적 측면	O	△	
	- 정신적 측면	O	△	
	- 경제적 측면	O	△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 사회활동 측면	X	△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자	O	X	
	-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여부	O	X	
	- 경제적 부담 정도	O	X	
	수급자 본인부담금 외 경제적인 도움 주는 사람 여부	O	X	
	-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	O	X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O	O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행위 목격/인지경험	X	O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X	O	
재가 급여 이용 자의 가족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_지원 횟수 / 부담 정도			
	- 정서적 지원	O	△	선택지 수정 - '돌봄 지원 횟수' 선택지 범주 통합
	- 일상생활 지원	O	△	
	- 가사 지원	O	△	
	- 신체수발 지원	O	△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 여부(5종)	O	△	응답항목 세분화 -단일만족도→항목 세분화
	- 만족하지 않는 이유	O	△	선택지 수정
	수급자의 건강,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2순위)	O	X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이용 의향	O	△	문항내용 수정 -노인요양시설 이용의향 → 건강악화시 거주장소
	재가거주를 위한 기존 재가급여 개선	X	O	
	재가거주를 위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X	O	
시설 급여 이용 자의 가족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인정 후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총 개소	O	X	
	(지난 1년)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_지원 횟수 / 부담 정도			선택지 수정 - '돌봄 지원 횟수' 선택지 범주 통합
	- 정서적 지원	O	△	
	- 일상생활 지원	O	△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O	△	응답항목 세분화 -단일만족도→항목 세분화
	- 만족하지 않는 이유	O	X	
	시설급여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2순위)	O	X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계획 여부	O	△	
	- 집으로 모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	O	X	
	- 노인요양시설 계속 희망 이유	O	△	문항내용 및 선택지 수정 -(문항내용)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로 수정 -(선택지 수정) 기존 선택지 재범주화 및 추가 등
	노인요양시설 개선 사항(시설/인력)	X	O	
	노인요양시설 개선 사항(서비스 질 개선)	X	O	
전체 가족 (일반 현황)	성별	O	O	
	연령	O	O	
	지난 1주일 일 여부	O	O	
	- 직장 및 직위	O	X	
	- 종사상 지위	X	O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O	X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지 여부	O	X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	O	O	
	수급자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 둔 경험	O	O	

3. 장기요양기관 조사

가. 기본방향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은 장기요양정책의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파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기관조사 문항은 2019년 35개 문항에서 49개 문항으로 타 영역들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 조사내용을 가능한 유지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조사표 구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많은 문항들을 추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기관조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 유지 측면이다. 실태조사의 장점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시행된 항목의 계속적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022년 조사에서는 2019년의 문항을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 확보 측면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형 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이용형 재가시설인 주야간보호, 숙박형 재가시설인 단기보호, 9인 미만의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운영 내용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공통문항과 기관유형별 문항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응답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응답을 할 수 있다. 이에 2022년 장기요양 기관조사에서는 문항의 순서를 대폭 변경하였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관련 응답문항의 증가로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이해도 증진 측면이다. 응답자의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지의 내용을 가독성 높게 수정하였으며, 질문방법도 조정하였다. 넷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 측면이다. 2019년 조사 이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2022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과 대응방법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제도의 변화 측면이다.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

기요양기관 실태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파악이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문항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2022년 조사에서는 인력기준, 교육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2019년 대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여섯째,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측면이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파악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2022년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장기요양제도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 외에 기관 자체의 노력 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본방향에 따른 조사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표 구성

장기요양 실태조사 기관조사는 총 6개 영역(공통문항 영역, 방문형 기관 영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영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영역, 주야간보호 영역, 시설장(관리책임자)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앞서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관의 유형 및 규모별 기준이 상이하여 조사가 복잡하기에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통사항은 조사원 확인사항, 기관 운영 형태 및 점유 형태, 기관 인력관리,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 대응, 기관 운영의 어려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부 영역인 조사원 확인사항은 기관의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급여유형, 기관위치, 응답자 연락처)과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조사표 기입방법, 조사소요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2022년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였기에 조사표 기입방법을 자기기입식 조사와 인터넷 조사로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운영형태 및 점유형태는 운영주체, 단독 및 병설여부, 건물점유형태, 이용자 현황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부 항목에서 선택지 및 응답방법의 수정이 있었으며, 가능한 시계열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저당권 금액 비율의 경우 2019년 조사 결과 보기별 분포가 유사하여 조사결과의 실효성이 낮아 문항을 삭제하였다. 기관인력관리는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퇴사현황, 평균 근무기간, 직원복지정책, 교육의 필요성 및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직원의 입퇴사 현황을 모두 질문하였으나, 조사의 부담이 높아 2022년

조사에서는 퇴사 현황만 질문하였으며, 장기요양인력의 교육 필요성과 개선필요사항은 정책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선택지 일부를 수정하였다. 또한 2022년 조사에서는 인력 관리 관련 문항이 2개 추가하였다. 먼저 직원의 평균 종사 기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을 추가하였으며, 기관 내 직원의 복지수준 파악을 위해 기관 내 직원 복지 정책 문항을 추가하였다. 기관의 안전 사고 발생 대응은 수급자의 안전사고 현황,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현황 및 대응 방법, 직원의 업무상 질병 상해 현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9년 조사 결과에서 응답빈도가 높지 않은 선택지는 통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은 문항 내용의 명확화와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항목을 수정하였으며,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와 직중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방문형 기관 대상 영역에서는 기관유형별 직원 수와 월 60시간 미만 근무직원 수 현황 문항은 2019년의 문항을 유사하게 유지하였으며, 응답항목만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서비스 질 확보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방법,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대상 영역에서는 기관유형별 직원수와 월 160시간 미만 근무직원 수 현황 문항은 2019년의 문항을 유사하게 유지하였으며, 응답항목만 일부 수정하였다.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한 직원수와 법정 직원배치기준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직종은 2019년의 문항을 유지하거나 우선순위만 조정하였다.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기 적절한 수급자 수는 2022년에는 삭제하였다. 응답자의 주관보다는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문항은 삭제하고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치매전담실과 관련된 문항들은 모두 삭제하였다. 치매전담실은 보급률이 높지 않은 관계로 해당 문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삭제를 결정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대상 영역에서는 건물의 용도, 층수, 생활실 유형 개수 및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야간근무 운영 형태, 야간근무 직원 수,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야간근무 여부, 비공식 인력 현황,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은 2019년 문항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은 수정하였다. 이 영역 역시 사회적 변화와 서비스 질 확보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방법,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해당 영역은 방문형 기관에 비해 서

비스 질 관련 문항을 자기선택권 보장,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위한 노력,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은 2022년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형태의 경우 기관의 건물 건립 용도와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며, 같은 대지 안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사용 건물 수는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였다. 수급자나 가족의 치료 거부 사례는 기관운영의 어려움 문항에서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어려움으로 갈음하였으며, 직종별 주당 야간 근무일수는 하루 평균 야간근무 직원수로 내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주야간보호 대상 영역은 2022년 신규 생성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앞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영역과 같이 사회적 변화와 서비스 질 확보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방법,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비급여 항목 및 주당 운영 일수, 시간 문항을 추가하여 주야간보호의 운영현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일반사항은 2019년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였으며, 보유 자격증의 내용과 장기요양기관 총 근무기간을 일부 수정하였다.

〈표 2-6〉 장기요양기관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공통사항	조사원 확인 사항	응답자 성명	○	○	
		급여 유형	○	○	
		기관 위치	○	○ (선택지 수정)	
		응답자 연락처	○	○	
		조사표 기입방법	○	○ (선택지 수정)	
		조사 소요시간	○	○	
		지방청(사무소)	○	○	
		조사원 성명	○	○	
		조사원 연락처	○	○	
	기관 운영 형태 및 점유 형태	운영주체	○	○ (선택지 수정)	
		단독 및 병설여부	○	○	
		- 병설형태	○	○	
		- 급여유형 제공 여부(7종)	○	○ (선택지 수정)	
		건물점유형태	○	○	
		- 저당권 금액 비율	○	×	
		이용자 현황 (총계/ 등급별/성별/치매진단여부별)	○	○ (응답항목 수정)	
	기관 인력 관리	사회보험 가입된 직원 수(보험 4종)	○	○	
		지난 6개월 퇴사 및 입사 현황(8종 직종)	○	○ (질문 수정)	
		직종별 평균 근무 기간	×	○	
		기관 내 직원 복지 정책	×	○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	○ (선택지 수정)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2순위)	○	○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1순위/2순위)	○	○ (선택지 수정)	
		현재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교육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	○	
	기관의 안전 사고 발생 대응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안전사고 유무/건수	○	○ (문항내용 수정)	
		해당하는 안전사고 항목별 건수(7개 항목)	○	○ (문항내용 수정)	
		(지난 1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로 손해배상 여부/건수	○	○	
		대응 방법별 건수(4종)	○	○ (응답방법 수정)	
		(지난 1년) 직원이 업무 상 질병 상해 여부/건수	○	○	
		대응 방법별 건수(5종)	○	○ (응답방법 수정)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기관 운영의 어려움	기관 운영의 어려움(10종) 정도	○	○ (문항내용 수정)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	○ (선택지 수정)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	×	○	
		-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직종	×	○	
방문형 기관 현황		(방문요양/목욕/ 간호)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수	○	○ (응답항목 수정)	
		(방문요양/목욕/ 간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	○	
		(방문요양/목욕/ 간호)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호보, 단기보호		(공생/시설/주야간/단기) 직원 수 /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수	○	○ (응답항목 수정)	
		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채용 직원(4종) 수	○	○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기 적절한 수급자 수(주간/야간)	○	×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	○	
		법정 직원배치기준에서 상향조정 필요 직종(1순위~3순위)	○	○ (우선순위 조정)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여부	○	×	
		치매전담실 현황(개수/정원/현원)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개수/정원/현원)	○	×	
		운영하지 않는 이유	○	×	
		향후 운영 계획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공생/시설/단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	○	
		(공생/시설/단기) 코로나19 대응 방법	×	○	
		기관의 건물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위한 용도인지 여부	○	○ (문항내용 수정)	
		- 사용하고 있는 건물 형태	○	×	
		같은 대지 안에 노인요양시설 사용 건물 수	○	×	
		건물별_전체 층수 / 노인요양시설 사용층수(최저/최고)/ 침상이동 EV 설치여부	○	○ (응답항목 수정)	
		생활실 유형별(1인실~4인실) 개수 및 입소자 수	○	○	
		(지난 1년) 수급자나 가족이 치료 거부 사례 여부/건수	○	×	
		(지난 6개월)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	○	
		(지난 1개월) 야간근무 운영 형태	○	○	
		(지난 1개월) 하루 평균 야간근무 직원 수	○	○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야간근무 여부	○	○ (문항내용 수정)	
		- (지난 1개월) 직종별 주당 야간 근무 일수	○	×	
		(지난 3개월) 기관의 비공식 인력 현황(명수 및 횟수)	○	○ (응답항목 수정)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	○	
		(공생/시설/단기)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 보장을 위한	×	○	

구분	조사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기관의 노력			
	(공생/시설/단기)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	○	
	(공생/시설/단기)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	○	
주야간보호	(주야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	×	○	
	(주야간) 비급여 항목(6종) 제공 여부 및 금액	×	○	
	(주야간) 주당 운영 일수	×	○	
	(주야간) 주당 운영 시간	×	○	
	(주야간) 이용자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	○	
	(주야간)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	○	
	(주야간))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	×	○	
시설장 일반사항	성별	○	○	
	연령	○	○	
	교육수준	○	○	
	보유 자격증	○	○ (선택지 추가)	
	소속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시작 일자	○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	○	○ (응답항목 추가)	

4. 장기요양요원 조사

가. 기본방향

장기요양요원 조사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및 고용 현황 및 근로 환경을 파악하여, 추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간, 고용형태와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및 수당, 부당한 경험 여부 및 횟수, 근무 중 질환이나 사고 경험, 교육참여 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 이직 경험 및 의향, 개선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시계열적 장기요양요원 근로 현황 및 변화 추이 이해를 위해 전체적인 조사표 구성의 기본방향과 많은 조사 항목의 경우 2019년 조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고, 정책적 중요도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기존 문항은 삭제 및 대체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문항 추가, 삭제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들에 집중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특히, 2020년 초반부터 2022년 조사 시점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및 공급자에게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을 다수 개발하여 2022년 조사에 포함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조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응답자의 (예상) 응답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질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질문 또는 응답지의 문구를 추가·수정·삭제하였다.

나. 조사표 구성

조사표는 크게 ①전체 장기요양요원, ②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③장기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주야간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대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장기요양요원 대상 조사표는 조사자 확인 사항(표지 문항), 자격증 및 경력, 근무 형태, 근무 일수 및 시간, 임금/수당/사회보험, 복수기관 근무현황, 근무환경, 교육참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이직 경험으로 문항 영역을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원 확인 사항」 영역에서는 모든 2019년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조사표 기입방법 관련 문항에서 인터넷 조사로 인한 응답자 자기기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근무 현황」 영역에서도 대부분 기존 조사 문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 근로계약서 보관 여부 및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 2문항은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9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한 자료라 정책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22년 조사에서는 삭제하였다. 「근무 일수 및 시간」, 「임금, 수당, 사회보험」의 두 영역에서는 2019년 조사 시 포함된 세부 문항 중 정책적, 학술적 활용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번 2022년 조사에서는 유급 및 무급 근로시간을 통합하여 총 근로시간만을 조사하였고, 법정근로수당의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수령방식만을 조사하였다. 대신, 법정휴가제도(연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근무환경」 영역에서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

험 시 소속 기관에서 어떠한 대응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관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사고 관련 문항에서 정신·심리적 질환(우울증 등) 에 관한 세부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업무 또는 근로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교육참여」 영역에서는 기존 2019년 조사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치매전문교육,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으나, 2022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 기타 행정자료 등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자료 활용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외부기관 제공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 영역에서는 만족도 관련 11개의 세부문항 중 기존의 '업무시간 조정의 유연성', '일에 대한 보람' 관련 세부 항목은 삭제하고, '근무유형', '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관련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중요도가 높아지는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위의 전체 요원 대상 조사 항목에 이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대상으로 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였다. 본 영역에서도 대부분 조사 문항을 시계열적으로 유지하였다. 단, 담당 수급자 현황 파악 문항에서 '총 방문 횟수' 등 일부 세부 문항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도가 높은 문항만을 유지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지난 1년간의 근무 일시 중단 시 중단 기간 문항도 삭제하였다. 대신, 갑작스런 수급자의 통보로 일을 그만 둔 경험 여부, 일시 근무 중단 사유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근무 중단자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표의 마지막은 장기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주야간 및 단기보호 근무 장기요양요원 대상 조사 문항이다. 2019년에는 주야간보호 급여유형 및 사회복지사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주야간보호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도 휴게 시간 및 공간, 야간근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 문항에서는 최근의 정책 및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근무시간 외 전화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 대응 횟수,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부당대우 목격 여부(7종)에 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2-7〉 장기요양요원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19-2022년)

구분	조사 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장기요양 요원 전체	조사원 확인 사항	○	○	
	- 응답자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직종, 교육수준)	○	○	
	- 급여유형, 소속기관 등 제공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	
	- 조사수행정보(조사표 기입방법, 조사 소요시간, 조사원 정보)	○	○	기입방법 관련 선택지 추가
	자격증 및 경력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	○	
	- 가족인요양보호사로 가족에게 재가급여 제공	○	○	
	- 교육 수준	○	○	선택지 추가, 문항 순서(영역)변경
	-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근로한 전체 기간	○	○	문항순서(영역) 변경
	근무 현황			
	-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	○	○	선택지 추가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	○	선택지 수정, 삭제
	-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시작	○	○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문서 보관 여부	○	×	
	- 월 급여명세서 받는 여부	○	×	
	- 직위	○	○	
	- 현재 소속기관 고용 형태	○	○	
	- 주된 근무장소	○	○	
	- 주된 근무 시간 유형	○	○	
	- 교대제 형태	○	○	
	근무 일수 및 시간 - (지난 3개월) 현재 소속기관 근무한 일수	○	○	
	- (지난3개월)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총 근무시간	○	△	유급(정규/초과), 무급초과 통합 총 근무시간만 조사
	-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	○	○	선택지 추가, 수정, 삭제
	임금, 수당, 사회보험 - (지난 3개월) 수령한 급여	○	○	
	- 법정 근로수당 인지여부(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	×	
	- 법정 근로수당 수령방식(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	○	선택지 수정, 순서변경
	- 소속기관에서 받는 추가 수당 수령 여부(2종)	○	○	-
	- 법정휴가제도 자유로운 사용 여부	×	○	
	- 자유롭게 법정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	○	
	- 희망하는 주당 근로 시간	○	○	
	- 사회보험 가입 여부(3종)	○	○	
	복수기관 근무현황			
	-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 동시에 근무 여부/개소	○	○	
	-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근로 시간	○	○	
	- (지난 3개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급여	○	○	
	근무환경 - (지난 1년) 부당 경험 여부 및 횟수(모욕적 비난 / 신체적 위협 / 성희롱적 발언 또는 신체접촉 / 업무 이외 활동)	○	○	경험 여부와 횟수 문항 통합
	- 부당한 대우 대응 방법(1순위/2순위)	○	○	
	- 소속 기관의 대응 조치	×	○	
	- 장기요양업무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4종)	○	○	- 우울증 등 정신심리적 질

구분	조사 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환 관련 문항 추가(3종→4종 질환) - 최근 1년, 전체 기간 따로 질문
	-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 사고 발생 비용 처리방법	○	○	선택지 삭제, 수정
	- 장기요양기관의 대응 적절성	○	○	
	- (지난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	○	
	교육 참여 - 치매전문교육 교육 경험 여부 - 소속기관 교육 교육 경험 여부 - 외부기관 제공 교육 참여 경험여부	 ○ ○ ○	 × × ○	
	- 교육 내용(중복응답)	×	○	
	- 교육 만족도	○	○	
	- 교육 미참여 사유	○	○	
	- 장기요양업무에 추가적인 교육 필요성	○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	○	
	만족도 및 개선사항 -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11종)	 ○	 ○	세부항목 추가, 삭제 - '업무시간 조정의 유연성', '일에 대한 보람' 관련 세부 항목 삭제 - '근무유형' '종사자 복지 후생 수준' 관련 세부 항목 추가
	-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자긍심	○	×	
	-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	×	
	- 업무 수행 시 스트레스 수준	○	×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 -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 이직경험	△ △	○ ○	개선사항 관련 기존 한 문항을 두 문항으로 분리
	- (지난 1년) 이직 경험	○	○	
	- (지난 1년) 이직 횟수	○	○	
	- 이직한 이유	○	○	
	- 향후 이직 의향	○	○	'앞으로 1년 이내' 로 기간 제시
	-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	○	○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수급자 현황			
	- 수급자와 알게 된 계기	○	×	
	- (지난 1개월_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제공 여부/ 담당 수급자 수/ 1일 최대 방문 수급자 수	○	○	'총 방문횟수' 관련 세부문항 삭제
	- (지난 1년_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병원 등의 이유로 수급자와의 외출 여부	○	○	
	급여제공 및 중단 현황			
	- (지난 1년) 1개월 이상 일을 쉰 경험 여부	○	○	
	- 일을 쉰 이유	○	○	선택지 추가, 수정
	- 중단 기간	○	×	
	- (지난 1년)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그만 둔 경험	×	○	
시설, 공생, 단기보호, 주야간보	근로 및 휴게시간			조사대상 확대(사회복지사 포함, 주야간보호 포함)
	-규정상 휴게시간 인지 여부/ 시간	○	×	

구분	조사 내용	2019년	2022년	비고
호 종사자	-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	○	○	직종 구별 없이 단일 문항으로 통합
	- 독립된 휴게공간 여부	○	○	
	- (지난 1개월) 야간 근로 여부	○	○	직종 구별 없이 단일 문항으로 통합
	- 야간근무 담당 층수, 수급자 수, 함께 근무하는 요양보호자 수	○	×	
	-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 대응	×	○	
	-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7종) 목격	×	○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장기요양수급자 조사 결과

제1절 수급자의 일반 특성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 현황
제4절 미이용자 현황

제 3 장 장기요양수급자 조사결과

제1절 수급자의 일반 특성

1. 일반현황

장기요양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조사 당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77.5%, 미이용자는 22.5%였으며, 남성과 여성 수급자 비율은 3:7 수준으로 2019년도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는 85~89세 26.7%, 80~84세 26.2%, 90세 이상 17.5% 등으로 80대 이상 비율이 70.4%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은 대도시 35.4%, 중소도시 32.7%, 농어촌 31.9%로 2019년에 비해 농어촌 거주 수급자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은 4등급인 수급자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등급인 수급자 27.4%, 5등급인 수급자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이 41.2%, 미이용 22.5%, 노인요양시설 15.4%, 주야간보호 11.3% 등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54.4%가 치매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427명의 특성을 보면, 남성 26.1%, 여성 73.9%였으며, 80세 이상 자는 전체의 72.2%였으며 65세 미만인 이용자는 2.3%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는 34.2%, 중소도시 31.8%, 농어촌 거주자는 34.0%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인정등급을 보면, 4등급(48.6%)과 3등급(27.3%)을 받은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인지지원등급자 비율은 0.6%에 불과하였다. 장기요양 이용자의 53.2%는 방문요양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19.9%, 주야간보호 14.6%, 방문목욕 9.2%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이용자의 55.1%는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의 남성 비율은 33.2%, 여성은 66.8%로 장기요양이용자보다 미이용자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 이용자에 비해 80세 미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80세 이상인 미이용자 비율은 64.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이용자에 비해 1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미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이용자 중 1등급(7.3%)과 인지지원등급(7.5%)인 미이용자 비율이 이용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질환이 있는 미이용자는 52.0%로 조사되었다.

〈표 3-1〉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이용자	미이용자	계(명)		2019년도 이용자	2019년도 미이용자
전체	100.0(3,427)	100.0(996)	100.0	(4,423)	100.0	100.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100.0	0.0	77.5	(3,427)	100.0	0.0
미이용	0.0	100.0	22.5	(996)	0.0	100.0
성별						
남성	26.1	33.2	27.7	(1,224)	25.7	32.6
여성	73.9	66.8	72.3	(3,199)	74.3	67.4
연령대						
65세 미만	2.3	4.6	2.8	(125)	3.2	5.5
65~69세	4.5	4.4	4.5	(199)	4.6	5.0
70~74세	7.4	9.6	7.9	(350)	7.8	8.5
75~79세	13.5	17.1	14.3	(633)	16.4	19.0
80~84세	26.7	24.7	26.2	(1,161)	26.1	26.9
85~89세	27.3	24.7	26.7	(1,182)	24.3	22.2
90세 이상	18.2	15.0	17.5	(772)	17.6	13.0
지역						
대도시	34.2	39.5	35.4	(1,566)	34.3	39.1
중소도시	31.8	35.8	32.7	(1,447)	31.6	32.0
농어촌	34.0	24.7	31.9	(1,410)	34.1	2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9	7.3	4.7	(207)	4.5	10.3
2등급	9.4	8.3	9.2	(405)	11.4	12.4
3등급	27.3	27.6	27.4	(1,212)	32.2	27.3
4등급	48.6	36.0	45.7	(2,022)	43.8	32.6
5등급	10.2	13.4	10.9	(483)	7.7	11.4
인지지원등급	0.6	7.5	2.1	(93)	0.4	5.9
급여유형						
방문요양	53.2	0.0	41.2	(1,823)	48.6	0.0
방문목욕	9.2	0.0	7.1	(316)	8.0	0.0
방문간호	1.3	0.0	1.0	(46)	1.3	0.0
주야간보호	14.6	0.0	11.3	(500)	12.1	0.0
단기보호	0.1	0.0	0.1	(3)	0.2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0.0	1.3	(57)	2.8	0.0
노인요양시설	19.9	0.0	15.4	(682)	26.9	0.0
미이용	0.0	100.0	22.5	(996)	0.0	100.0
치매 여부						
예	55.1	52.0	54.4	(2,408)	57.4	56.6
아니오	44.9	48.0	45.6	(2,015)	42.6	43.4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장기요양수급자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31.4%로 2019년 32.6%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2.9%인 반면 여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19.3%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배우자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유배우자 비율은 65~69세 연령대가 56.3%로 가장 높은 반면 90세 이상은 10.6%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33.1%, 중소도시 거주 수급자의 30.7%, 농어촌 거주 수급자의 30.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1등급인 수급자의 40.6%, 2등급의 30.9%, 3등급 수급자의 33.0% 등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26.9%로 가장 낮았다. 급여유형에 따르면, 방문간호 수급자의 유배우자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이용자(39.8%), 방문목욕(3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치매 질환 여부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치매를 앓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수급자의 4.7%를 자녀가 없었으며, 나머지 95.3%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가 있는 수급자 비율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2명 20.5%, 4명 19.7%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자녀 수가 6명 이상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자녀 수가 2명과 3명인 수급자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수급자는 자녀 수가 2명(30.4%)과 3명(25.0%)인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 수급자는 4명(21.3%)과 3명 (21.0%)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자녀 수가 6명 이상인 비율도 13.3%로 남성 수급자(5.7%)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았으며, 특히 70세 미만인 경우 자녀 수가 2명 비율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1등급과 2등급인 수급자는 자녀 수가 2명인 비율이 각각 27.5%와 20.9%로 가장 높았으며, 3등급과 4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자녀 수는 3명인 비율이 각각 24.3%, 21.8%, 2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급여유형에 따른 자녀 수 특성을 보면, 방문요양 수급자는 자녀 수가 2명에서 4명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방문목욕 수급자는 자녀 수가 6명 이상인 비율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방문간호와 주야

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자녀 수도 2명에서 4명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미이용자는 자녀 수가 2명과 3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유무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1.4	68.6	100.0 (4,423)
성별			
남성	62.9	37.1	100.0 (1,224)
여성	19.3	80.7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48.8	51.2	100.0 (125)
65~69세	56.3	43.7	100.0 (199)
70~74세	51.9	48.1	100.0 (350)
75~79세	44.5	55.5	100.0 (633)
80~84세	33.9	66.1	100.0 (1,161)
85~89세	23.2	76.8	100.0 (1,182)
90세 이상	10.6	89.4	100.0 (772)
지역			
대도시	33.1	66.9	100.0 (1,566)
중소도시	30.7	69.3	100.0 (1,447)
농어촌	30.1	69.9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0.6	59.4	100.0 (207)
2등급	30.9	69.1	100.0 (405)
3등급	33.0	67.0	100.0 (1,212)
4등급	30.5	69.5	100.0 (2,022)
5등급	28.2	71.8	100.0 (483)
인지지원등급	26.9	73.1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32.3	67.7	100.0 (1,823)
방문목욕	38.3	61.7	100.0 (316)
방문간호	43.5	56.5	100.0 (46)
주야간보호	25.2	74.8	100.0 (500)
단기보호	0.0	10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5	84.5	100.0 (57)
노인요양시설	18.8	81.2	100.0 (682)
미이용	39.8	60.2	100.0 (996)
치매 여부			
예	28.2	71.8	100.0 (2,408)
아니오	35.1	64.9	100.0 (2,015)
2019년	32.6	67.4	100.0 (5,606)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표 3-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자녀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계(명)
전체	4.7	7.7	20.5	22.1	19.7	14.1	11.2	100.0 (4,423)
성별								
남성	5.7	7.2	30.4	25.0	15.4	10.5	5.7	100.0 (1,224)
여성	4.3	7.8	16.7	21.0	21.3	15.5	13.3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27.2	10.4	48.8	11.2	.8	0.0	1.6	100.0 (125)
65~69세	12.0	9.5	56.5	19.0	2.0	1.0	0.0	100.0 (199)
70~74세	9.7	8.0	37.3	32.5	10.8	.9	.9	100.0 (350)
75~79세	6.0	8.4	26.3	30.4	19.5	5.7	3.8	100.0 (633)
80~84세	2.9	7.7	19.0	21.5	21.5	17.9	9.4	100.0 (1,161)
85~89세	2.2	6.9	10.9	21.2	25.4	19.9	13.5	100.0 (1,182)
90세 이상	2.3	7.4	11.1	15.4	20.1	18.3	25.4	100.0 (772)
지역								
대도시	5.7	9.2	25.3	24.9	17.9	10.1	7.0	100.0 (1,566)
중소도시	4.2	7.5	22.3	23.6	19.6	13.3	9.5	100.0 (1,447)
농어촌	4.1	6.1	13.4	17.5	21.8	19.5	17.5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3	9.2	27.5	21.3	16.4	11.1	10.1	100.0 (207)
2등급	3.4	8.1	20.9	20.4	19.0	14.0	14.0	100.0 (405)
3등급	4.3	8.0	21.3	24.3	18.5	13.4	10.1	100.0 (1,212)
4등급	5.6	6.7	19.6	21.8	20.0	14.5	11.7	100.0 (2,022)
5등급	3.3	9.3	19.0	18.2	24.0	15.9	10.3	100.0 (483)
인지지원등급	3.2	9.6	20.2	27.7	20.2	12.8	6.4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5.8	7.1	20.7	20.8	20.4	14.2	11.1	100.0 (1,823)
방문목욕	3.8	8.3	14.9	20.6	19.7	16.2	16.5	100.0 (316)
방문간호	2.2	8.7	21.7	21.7	19.6	13.0	13.0	100.0 (46)
주야간보호	2.2	7.2	19.2	21.6	21.0	17.2	11.6	100.0 (500)
단기보호	0.0	0.0	50.0	50.0	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6	12.1	17.2	20.7	19.0	13.8	8.6	100.0 (57)
노인요양시설	6.9	10.0	22.3	19.1	19.4	12.6	9.8	100.0 (682)
미이용	2.7	6.9	21.6	27.2	18.3	13.0	10.3	100.0 (996)
치매 여부								
예	3.2	7.8	19.2	21.8	20.0	15.4	12.5	100.0 (2,408)
아니오	6.5	7.5	22.1	22.4	19.4	12.7	9.5	100.0 (2,015)
2019년	4.7	7.2	17.8	21.0	19.1	15.3	14.9	100.0 (5,606)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장기요양수급자의 평소 식사 형태는 일반식 78.1%, 죽 14.3%, 미음 2.2%, 경관 유동식 4.5%, 기타 0.9%로 2019년도의 수급자 식사 형태인 일반식 76.0%, 죽 15.3%, 미음 2.8%, 경관 유동식 4.9%, 기타 1.0%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수급자는 여성 수급자에 비해 경관 유동식(5.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수급자는 일반식(78.6%) 비율이 남성 수급자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의 경우 경관 유동식 비율이 1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9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식 비중이 70.9%로 가장 낮았으나, 죽을 섭취하는 비율은 20.7%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는 일반식 77.3%, 죽 14.8%, 경관 유동식 5.0% 등의 순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일반식 76.4%, 죽 14.7%, 경관 유동식 5.8%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일반식 비율이 80.7%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죽 13.5%, 경관 유동식 2.6%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일반식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일반식은 18.0%, 경관 유동식은 48.1%, 죽은 22.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의 일반식 비율은 각각 90.4%와 92.3%로 분석되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일반식 비율이 각각 63.0%와 63.3%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방문간호 수급자와 미이용자의 경관 유동식 비율도 13.0%와 10.2%로 다른 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일반식 식사 비율은 83.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죽을 섭취하는 비율이 18.0%로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소 식사 형태[1)]

(단위: %, 명)

특성	일반식	죽	미음	경관 유동식	기타[2)]	계(명)	
전체	78.1	14.3	2.2	4.5	0.9	100.0	(4,423)
성별							
남성	76.9	14.7	1.7	5.5	1.2	100.0	(1,224)
여성	78.6	14.2	2.4	4.1	0.8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76.8	12.0	0.0	11.2	0.0	100.0	(125)
65~69세	79.3	9.1	3.0	8.1	0.5	100.0	(199)
70~74세	79.1	13.1	2.9	4.3	0.6	100.0	(350)
75~79세	79.9	13.0	1.6	4.1	1.4	100.0	(633)
80~84세	80.2	14.0	1.6	3.7	.6	100.0	(1,161)
85~89세	79.5	12.7	2.5	4.3	1.0	100.0	(1,182)
90세 이상	70.9	20.7	3.2	4.1	1.0	100.0	(772)
지역							
대도시	77.3	14.8	2.8	5.0	0.1	100.0	(1,566)
중소도시	76.4	14.7	1.9	5.8	1.2	100.0	(1,447)
농어촌	80.7	13.5	1.8	2.6	1.4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8.0	22.3	10.7	48.1	1.0	100.0	(207)
2등급	57.8	25.2	4.4	10.4	2.2	100.0	(405)
3등급	77.1	16.6	1.7	2.8	1.7	100.0	(1,212)
4등급	85.0	12.0	1.8	1.0	0.3	100.0	(2,022)
5등급	92.3	7.2	0.4	0.0	0.0	100.0	(483)
인지지원등급	90.4	7.4	0.0	2.1	0.0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81.9	13.9	1.6	1.6	0.9	100.0	(1,823)
방문목욕	85.1	11.1	1.3	1.6	0.9	100.0	(316)
방문간호	63.0	17.4	4.3	13.0	2.2	100.0	(46)
주야간보호	92.6	6.4	0.4	0.2	0.4	100.0	(500)
단기보호	66.7	33.3	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1.9	19.3	1.8	5.3	1.8	100.0	(57)
노인요양시설	63.3	22.7	5.1	7.5	1.5	100.0	(682)
미이용	72.8	13.9	2.3	10.2	0.8	100.0	(996)
치매 여부							
예	73.3	18.0	2.9	4.8	1.0	100.0	(2,408)
아니오	83.7	10.0	1.4	4.1	0.8	100.0	(2,015)
2019년	76.0	15.3	2.8	4.9	1.0	100.0	(5,606)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당뇨식, 액체식 두유, 환자식 음료 등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거동가능한 수준을 보면, 거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16.6%, 타인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여 이동 가능한 수급자는 58.1%, 기어서 또는 보장구를 착용하여 이동 가능한 수급자는 7.8%,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수급자는 17.6%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21.3%에서 17.6%로 감소하였으며, 타인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여 이동 가능한 비율은 49.9%에서 58.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여성 수급자보다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비율이 4.2%포인트 높았으며, 여성 수급자는 남성 수급자에 비해 타인의 부축 및 보장구를 활용하여 이동 가능한 비율(5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9세 미만 수급자의 거동 불가능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는 75~79세 및 80~84세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타인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여 이동 가능한 수급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비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와 2등급인 수급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비율이 각각 78.7%와 42.7%였으며, 3등급인 수급자와 4등급인 수급자는 타인이 부축하거나 보장구의 도움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64.9%와 63.4%로 다른 등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5등급인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비중이 44.5%와 56.4%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수급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비율은 13.0%와 13.0%였으며, 방문간호 수급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다. 주야간보호 수급자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35.2%로 다른 급여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거동 불가능한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며,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의사로부터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19.3%였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도 20.2%로 나타났다.

〈표 3-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거동가능 수준[1)]

(단위: %, 명)

특성	거동 불가능	타인의 부축, 휠체어 사용 등 도움 필요	기어서, 보장구 착용 이동	독립적 이동 가능	계(명)	
전체	16.6	58.1	7.8	17.6	100.0	(4,423)
성별						
남성	15.9	56.9	6.5	20.6	100.0	(1,224)
여성	16.8	58.5	8.3	16.4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25.4	49.2	6.3	19.0	100.0	(125)
65~69세	21.1	61.3	6.0	11.6	100.0	(199)
70~74세	13.7	58.1	7.7	20.5	100.0	(350)
75~79세	18.0	55.0	6.0	21.0	100.0	(633)
80~84세	15.0	57.2	6.8	21.0	100.0	(1,161)
85~89세	15.0	59.6	9.2	16.2	100.0	(1,182)
90세 이상	19.0	59.9	9.3	11.8	100.0	(772)
지역						
대도시	17.9	60.9	6.0	15.2	100.0	(1,566)
중소도시	18.1	57.2	7.8	16.9	100.0	(1,447)
농어촌	13.6	55.8	9.7	20.9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8.7	20.8	0.5	0.0	100.0	(207)
2등급	42.7	52.8	2.7	1.7	100.0	(405)
3등급	17.3	64.9	7.8	10.0	100.0	(1,212)
4등급	7.9	63.4	9.8	18.9	100.0	(2,022)
5등급	5.0	43.9	6.6	44.5	100.0	(483)
인지지원등급	4.3	33.0	6.4	56.4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13.0	63.4	9.1	14.6	100.0	(1,823)
방문목욕	13.0	56.3	15.2	15.5	100.0	(316)
방문간호	34.8	50.0	6.5	8.7	100.0	(46)
주야간보호	2.2	55.6	7.0	35.2	100.0	(500)
단기보호	33.3	66.7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1	58.6	5.2	12.1	100.0	(57)
노인요양시설	25.8	61.6	2.6	10.0	100.0	(682)
미이용	23.8	48.2	7.2	20.8	100.0	(996)
치매 여부						
예	20.2	54.5	6.0	19.3	100.0	(2,408)
아니오	12.2	62.3	9.9	15.6	100.0	(2,015)
2019년[2)]	17.9	49.9	10.7	21.3	100.0	(5,606)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보기문항에 '⑤기타(0.2)'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기타' 문항 삭제하였으며, 2019년의 응답자 수 4,423명은 기타에 응답한 0.2 를 포함한 명수임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분석한 결과, 침대·이불에서만 활동가능하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24.2%, 방 안에서만 이동한다는 이용자는 14.6%, 집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용자는 29.3%, 집 주변까지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19.5%였으며, 이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12.4%로 조사되었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침대·이불에서만 활동가능한 비율이 12.5%에 24.2%로 증가하였으며, 집안(37.1% → 29.3%)과 집 주변까지(27.5% → 19.5%) 비율은 감소하였다.

침대·이불에서만 활동가능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의 비율(22.5%)이 여성(24.9%)보다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이용자의 34.1%와 90세 이상 이용자의 31.2%가 침대·이불에서만 활동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침대·이불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이용자가 24.8%와 25.6%로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 없음의 비율이 16.7%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인 이용자와 2등급 이용자는 침대·이불에서만 활동가능한 비율이 90.9%, 63.1%였으며, 3등급인 이용자는 집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4등급인 이용자와 5등급 이용자는 집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 이용자는 집 안에서만 이동 가능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비율이 23.2%로 다른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와 시설급여 이용자는 침대·이불에서만 이동가능한 비율이 높았다. 치매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29.8%는 침대·이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반면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침대·이불에서만 이동가능한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표 3-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1)]

(단위: %, 명)

특성	침대.이불에서만	방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집주변까지	어려움 없음	계(명)	
전체	24.2	14.6	29.3	19.5	12.4	100.0	(4,423)
성별							
남성	22.5	14.1	30.0	19.9	13.6	100.0	(1,224)
여성	24.9	14.8	29.0	19.4	11.9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34.1	15.1	23.0	7.1	20.6	100.0	(125)
65~69세	30.0	17.0	28.0	16.0	9.0	100.0	(199)
70~74세	22.0	14.9	32.0	16.0	15.1	100.0	(350)
75~79세	23.7	16.1	26.9	19.7	13.6	100.0	(633)
80~84세	20.4	14.0	28.5	23.9	13.2	100.0	(1,161)
85~89세	22.4	14.0	30.6	19.9	13.0	100.0	(1,182)
90세 이상	31.2	14.4	30.4	16.6	7.5	100.0	(772)
지역							
대도시	24.8	17.8	31.3	16.9	9.3	100.0	(1,566)
중소도시	25.6	14.0	31.3	17.6	11.5	100.0	(1,447)
농어촌	22.2	11.7	24.9	24.5	16.7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0.9	2.9	4.8	1.0	0.5	100.0	(207)
2등급	63.1	14.8	14.8	5.7	1.7	100.0	(405)
3등급	28.7	18.2	33.6	12.6	6.9	100.0	(1,212)
4등급	12.5	15.7	32.6	25.7	13.4	100.0	(2,022)
5등급	5.0	6.8	30.2	29.1	28.9	100.0	(483)
인지지원등급	4.3	9.6	13.8	24.5	47.9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16.8	16.9	34.2	21.6	10.5	100.0	(1,823)
방문목욕	15.6	19.0	26.0	24.4	14.9	100.0	(316)
방문간호	39.1	10.9	23.9	19.6	6.5	100.0	(46)
주야간보호	6.4	13.0	29.2	28.2	23.2	100.0	(500)
단기보호	50.0	0.0	5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4	12.1	25.9	13.8	6.9	100.0	(57)
노인요양시설	49.4	12.0	25.1	9.1	4.4	100.0	(682)
미이용	30.7	11.8	24.5	17.3	15.7	100.0	(996)
치매 여부							
예	29.8	13.7	27.7	18.2	10.6	100.0	(2,408)
아니오	17.6	15.7	31.1	21.0	14.5	100.0	(2,015)
2019년[2)]	12.5	11.2	37.1	27.5	11.7	100.0	(2,866)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본 문항은 2019년 조사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대상으로 조사함. 이로 인해 2019년도 응답 결과와 2022년 응답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에 있어 누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및 손자녀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수급자 본인 11.0%, 배우자 10.2%, 형제자매 등 친인척 3.7%, 이웃 또는 지인은 5.0%,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2.6%, 기타 3.2%로 나타났다. 2019년 결과에 비해 자녀 및 손자녀가 결정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급자 본인이나 이웃 또는 지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결정한 비율(13.6%)과 배우자가 결정한 비율(22.7%)이 여성 수급자(각각 9.9%, 5.3%)에 비해 높았으며, 여성 수급자는 자녀 및 손자녀가 결정한 비율이 70.5%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80세 이상 수급자는 자녀 및 손자녀가 결정하는 비율이 6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11.8%와 11.2%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7.4%로 낮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1등급인 수급자는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21.6%로 다른 등급에 비해 높았으며, 2등급인 수급자는 자녀 및 손자녀에 의해 결정한 비율이 69.7%로 다른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수급자 본인이 결정한 비율이 3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결정 비율이 각각 11.7%, 10.2%, 16.3%로 타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자녀 및 손자녀에 의해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이용자는 본인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비율이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에 의한 이용 결정이 72.2%, 수급자 본인 6.3%, 배우자 9.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7〉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자[1)]

(단위: %, 명)

특성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손자녀	형제자매 등 친인척	이웃 또는 지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기타[2)]	계(명)	
전체	11.0	10.2	64.3	3.7	5.0	2.6	3.2	100.0	(3,935)
성별									
남성	13.6	22.7	48.7	4.4	5.0	3.3	2.3	100.0	(1,121)
여성	9.9	5.3	70.5	3.4	5.0	2.3	3.6	100.0	(2,816)
연령대									
65세 미만	19.8	27.4	18.9	22.6	4.7	1.9	4.7	100.0	(106)
65~69세	22.6	32.8	26.6	5.6	6.8	2.3	3.4	100.0	(177)
70~74세	17.0	18.5	42.3	5.6	10.2	3.4	3.1	100.0	(324)
75~79세	13.5	20.1	49.0	2.9	5.9	4.7	4.0	100.0	(578)
80~84세	11.3	9.1	67.0	3.1	3.8	3.2	2.6	100.0	(1,045)
85~89세	7.5	3.5	78.1	2.2	4.0	1.6	3.1	100.0	(1,043)
90세 이상	6.2	1.1	80.1	3.3	4.5	1.4	3.5	100.0	(662)
지역									
대도시	11.1	11.8	61.9	3.7	5.7	3.4	2.4	100.0	(1,422)
중소도시	11.4	11.2	62.6	4.2	4.9	2.2	3.5	100.0	(1,266)
농어촌	10.3	7.4	68.9	3.2	4.3	2.2	3.8	100.0	(1,2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5	21.6	65.4	3.1	4.3	2.5	.6	100.0	(162)
2등급	5.9	10.1	69.7	5.0	4.7	1.5	3.0	100.0	(337)
3등급	10.2	13.5	65.1	2.8	4.2	2.2	2.0	100.0	(1,065)
4등급	12.6	8.4	63.1	3.8	5.2	3.1	3.9	100.0	(1,834)
5등급	8.5	7.2	65.1	4.7	6.9	3.1	4.5	100.0	(447)
인지지원등급	32.2	4.4	55.6	3.3	1.1	0.0	3.3	100.0	(90)
급여유형									
방문요양	11.1	11.7	59.3	3.6	6.3	3.8	4.2	100.0	(1,728)
방문목욕	9.5	10.2	61.8	3.6	6.9	3.6	4.3	100.0	(304)
방문간호	9.3	16.3	60.5	2.3	4.7	4.7	2.3	100.0	(43)
주야간보호	6.6	7.3	76.8	3.0	3.4	2.0	.9	100.0	(440)
단기보호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9	5.9	73.5	8.8	2.9	2.9	2.9	100.0	(34)
노인요양시설	5.6	4.4	78.2	4.4	4.4	1.3	1.8	100.0	(390)
미이용	15.6	11.1	62.5	3.8	3.2	1.1	2.7	100.0	(995)
치매 여부									
예	6.3	9.5	72.2	3.8	4.0	1.8	2.5	100.0	(2,015)
아니오	15.9	11.0	56.1	3.6	6.0	3.5	3.9	100.0	(1,919)
2019년[3)]	8.6	11.7	68.8	2.7	3.2	2.3	2.6	100.0	(5,606)

주: 1) 본인응답과 가족응답을 포함한 3,935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계자, 보건복지기관 관계자 등
3) 2019년 조사에서는 '본인 및 대리응답' 모두 가능했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과 가족만 응답만 하도록 변경함.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응답한 수급자 3,9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직계가족 32.9%, 이웃이나 지인 23.1%, TV·신문·인터넷 11.9%, 장기요양기관 직원 11.9%, 기타 8.3%, 친인척 6.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에서는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직계가족에 의한 정보습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7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이웃이나 지인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TV·신문·인터넷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 거주하는 수급자는 직계가족과 이웃/지인 비율이 높고 TV·신문·인터넷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경우 TV·신문·인터넷이 14.8%로 다른 등급 응답자에 비해 높았으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직계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에는 TV·신문·인터넷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TV·신문·인터넷 12.9%, 직계가족 32.0%, 이웃이나 지인 23.1%, 장기요양직원 12.5%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정보 습득 경로[1) 3)]

(단위: %, 명)

특성	TV·신문·인터넷	직계가족	친인척	이웃·지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공공기관, 보건복지기관 관계자	기타[2)]	계(명)	
전체	11.9	32.9	6.6	23.1	11.9	5.3	8.3	100.0	(3,935)
성별									
남성	12.7	34.0	6.6	20.4	13.8	4.9	7.6	100.0	(1,121)
여성	11.7	32.5	6.6	24.1	11.2	5.4	8.5	100.0	(2,816)
연령대									
65세 미만	16.0	13.2	10.4	31.1	11.3	8.5	9.4	100.0	(106)
65~69세	11.8	28.1	6.7	27.0	11.8	5.6	9.0	100.0	(177)
70~74세	17.0	31.8	7.7	21.3	9.0	4.6	8.6	100.0	(324)
75~79세	9.7	28.1	8.7	25.3	12.1	5.2	10.9	100.0	(578)
80~84세	10.1	36.7	5.8	23.0	12.1	6.4	5.7	100.0	(1,045)
85~89세	12.5	37.2	5.0	20.3	11.8	4.3	8.9	100.0	(1,043)
90세 이상	12.6	29.3	7.4	24.1	13.3	4.8	8.5	100.0	(662)
지역									
대도시	14.7	29.7	7.0	23.3	12.6	4.5	8.3	100.0	(1,422)
중소도시	12.1	31.8	5.9	21.7	12.3	6.5	9.8	100.0	(1,266)
농어촌	8.7	37.8	6.8	24.4	10.8	4.9	6.7	100.0	(1,2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4.8	27.8	6.2	21.0	11.1	3.7	15.4	100.0	(162)
2등급	11.6	32.3	8.0	24.0	11.9	4.7	7.4	100.0	(337)
3등급	13.7	30.8	7.2	21.9	12.5	3.7	10.3	100.0	(1,065)
4등급	11.2	33.9	5.9	23.0	12.9	6.0	7.2	100.0	(1,834)
5등급	10.3	35.7	6.7	25.2	8.9	6.9	6.3	100.0	(447)
인지지원등급	12.1	37.4	7.7	28.6	3.3	5.5	5.5	100.0	(90)
급여유형									
방문요양	10.1	33.2	5.5	23.2	14.9	6.2	7.0	100.0	(1,728)
방문목욕	7.6	37.2	5.9	23.7	13.8	4.6	7.2	100.0	(304)
방문간호	9.1	31.8	6.8	22.7	15.9	4.5	9.1	100.0	(43)
주야간보호	10.2	35.1	5.9	23.1	13.1	4.1	8.6	100.0	(440)
단기보호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1	24.2	9.1	27.3	12.1	6.1	9.1	100.0	(34)
노인요양시설	14.7	27.8	9.0	23.7	11.3	4.4	9.3	100.0	(390)
미이용	16.3	32.7	7.9	22.4	5.7	4.6	10.3	100.0	(995)
치매 여부									
예	12.9	32.0	6.6	23.1	12.5	4.6	8.4	100.0	(2,015)
아니오	10.9	33.9	6.6	23.1	11.3	6.0	8.1	100.0	(1,919)

주: 1) 본인응답과 가족응답을 포함한 3,935명의 자료를 분석
2) 병원(요양병원)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3) 본 문항은 2019년 조사에서는 급여유형(재가, 시설, 미이용)별 본인응답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조사하여 2019년도 응답 결과와 비교 불가함

2. 건강 및 의료이용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개수는 평균 3.5개(2019년 3.4개)로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였다. 만성질환 개수가 3개 25.5%, 5개 이상 23.7%, 2개 21.3%, 4개 18.0%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만성질환 평균 개수는 유사하지만, 만성질환 개수가 5개 이상인 응답자가 2019년 21.3%에서 2022년 23.7%로 증가하였다.

남성 수급자보다는 여성 수급자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가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75세에서 90세 미만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가 평균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미만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는 2.9개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보면, 3등급인 수급자와 4등급인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가 평균 3.6개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등급 수급자,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가 3.2개와 3.0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수급자(평균 3.7개), 방문목욕 수급자(평균 3.5개), 방문간호 수급자(평균 3.8개)의 만성질환 개수가 많았으며, 단기보호 수급자(평균 2.9개)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평균 3.1개)의 만성질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치매 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3.6개였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3.3개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수급자의 주요 만성질환을 보면, 고혈압이 전체 수급자의 61.3%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는 54.4%, 당뇨병은 31.7%,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은 28.7%, 뇌졸중은 20.2%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고혈압을 가진 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수급자보다는 여성 수급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80세 이상인 수급자,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3등급과 4등급인 인정자의 고혈압 비율이 높았으며, 1등급인 수급자의 고혈압을 앓는 비율은 47.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서는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그리고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고혈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의 경우, 남성 수급자보다는 여성 수급자의 치매유병률이 높았으며, 75세 이상 수급자,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5등급 수급자

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 비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80.0% 이상이 치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각 71.2%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여성 수급자보다는 남성 수급자, 70~74세 수급자,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보면, 4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유병률이 높았고,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당뇨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의 당뇨병 유병률이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관절염은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85세 이상 수급자에서 30% 이상 앓고 있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관절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은 여성 수급자보다는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뇌졸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비해 뇌졸중 유병률이 낮았으며, 1등급 수급자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뇌졸중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와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뇌졸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의 뇌졸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3-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1)2)]

(단위: %, 명, 개)

특성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명)		평균(개)
전체	0.8	10.7	21.3	25.5	18.0	23.7	100.0	(4,423)	3.5
성별									
남성	0.7	13.0	23.2	24.4	16.5	22.2	100.0	(1,224)	3.4
여성	0.8	9.8	20.7	25.9	18.5	24.3	100.0	(3,199)	3.5
연령대									
65세 미만	0.8	19.2	31.2	20.8	13.6	14.4	100.0	(125)	2.9
65~69세	1.0	12.1	26.1	19.1	23.1	18.6	100.0	(199)	3.3
70~74세	0.0	12.3	24.4	24.1	18.6	20.6	100.0	(350)	3.3
75~79세	0.0	11.6	21.7	23.1	16.3	27.4	100.0	(633)	3.6
80~84세	0.4	8.5	21.2	25.0	18.9	26.0	100.0	(1,161)	3.6
85~89세	1.1	10.6	18.3	25.6	19.6	24.8	100.0	(1,182)	3.6
90세 이상	1.9	10.9	21.6	31.1	14.5	19.9	100.0	(772)	3.3
지역									
대도시	0.7	11.2	19.9	24.7	19.2	24.3	100.0	(1,566)	3.6
중소도시	0.7	10.2	20.4	23.7	18.1	26.9	100.0	(1,447)	3.6
농어촌	1.1	10.6	24.0	28.1	16.5	19.8	100.0	(1,410)	3.3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5.9	23.6	23.1	19.7	17.8	100.0	(207)	3.2
2등급	0.7	11.1	24.4	27.7	16.5	19.5	100.0	(405)	3.3
3등급	0.7	10.9	18.9	26.2	16.6	26.7	100.0	(1,212)	3.6
4등급	0.6	8.9	21.3	25.3	18.8	25.0	100.0	(2,022)	3.6
5등급	1.7	13.8	23.8	23.6	18.8	18.4	100.0	(483)	3.2
인지지원등급	4.3	17.0	23.4	23.4	16.0	16.0	100.0	(93)	3.0
급여유형									
방문요양	0.5	8.7	19.1	24.1	18.9	28.8	100.0	(1,823)	3.7
방문목욕	0.3	9.8	22.2	28.6	15.6	23.5	100.0	(316)	3.5
방문간호	0.0	8.7	19.6	23.9	17.4	30.4	100.0	(46)	3.8
주야간보호	1.2	11.8	23.0	25.0	17.2	21.8	100.0	(500)	3.4
단기보호	0.0	0.0	50.0	50.0	0.0	0.0	100.0	(3)	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14.0	22.8	24.6	19.3	19.3	100.0	(57)	3.2
노인요양시설	0.3	13.5	24.5	29.9	17.3	14.6	100.0	(682)	3.1
미이용	1.8	11.9	22.3	24.4	17.9	21.7	100.0	(996)	3.4
치매 여부									
예	0.0	8.9	19.8	26.0	19.4	25.8	100.0	(2,408)	3.6
아니오	1.8	12.8	23.2	24.8	16.2	21.2	100.0	(2,015)	3.3
2019년	1.0	10.4	21.8	26.0	19.5	21.3	100.0	(5,606)	3.4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만성질환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을 의미함

〈표 3-1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요 만성질환[1)2)]

(단위: %, 명)

특성	총 사례수	고혈압	치매	당뇨병	골관절염, 류마티즘	뇌졸중
전체	(4,423)	61.3	54.4	31.7	28.7	20.2
성별						
남성	(1,224)	53.3	47.1	33.0	18.5	29.9
여성	(3,199)	64.3	57.2	31.2	32.5	16.5
연령대						
65세 미만	(125)	54.4	36.8	24.8	4.8	58.4
65~69세	(199)	50.0	35.7	35.7	19.5	44.7
70~74세	(350)	55.6	41.6	39.1	23.4	29.7
75~79세	(633)	58.1	54.8	33.3	26.2	24.2
80~84세	(1,161)	62.7	52.0	38.5	32.0	18.8
85~89세	(1,182)	62.9	59.5	28.3	30.9	14.1
90세 이상	(772)	65.9	63.6	22.0	30.9	11.5
지역						
대도시	(1,566)	62.1	51.8	34.1	28.3	21.1
중소도시	(1,447)	62.3	55.7	32.0	27.6	22.8
농어촌	(1,410)	59.3	56.1	28.7	30.2	16.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07)	47.3	61.8	24.6	16.4	44.0
2등급	(405)	54.6	63.7	23.9	24.9	31.4
3등급	(1,212)	62.8	53.6	32.4	27.3	23.3
4등급	(2,022)	65.0	46.4	34.6	32.2	16.0
5등급	(483)	54.5	76.4	26.9	26.7	11.8
인지지원등급	(93)	53.8	69.9	35.1	22.6	12.9
급여유형						
방문요양	(1,823)	64.6	42.0	33.8	32.9	19.7
방문목욕	(316)	62.3	44.0	31.6	35.4	21.8
방문간호	(46)	55.3	43.5	37.0	32.6	26.1
주야간보호	(500)	60.2	71.2	33.3	25.6	16.0
단기보호	(3)	50.0	100.0	33.3	0.0	3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7)	49.1	80.7	22.8	19.3	22.8
노인요양시설	(682)	59.1	82.1	24.9	18.0	20.4
미이용	(996)	57.6	52.0	31.9	28.0	22.1
치매 여부						
예	(2,408)	58.0	100.0	28.9	24.7	17.0
아니오	(2,015)	65.2	0	35.0	33.4	24.0
2019년	(5,606)	60.3	57.2	29.3	27.8	25.8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수급자의 20% 이상이 보유한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분석

의사 또는 한의사가 처방한 약의 개수(1일 기준)는 평균 8.3개로 2019년 조사 결과인 9.8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일 복용하는 약 개수는 5~9개가 37.9%, 4개 이하 28.9%, 10~14개 20.0%, 15개 이상은 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4개 이하 비율이 높아진 반면 15개 이상 비율은 낮아졌다.

성별에 따라 복용하는 1일 알약의 평균 개수는 남성 수급자는 8.6개, 여성 수급자는 8.1개였다. 연령대별로는 75~79세 8.7개, 80~84세 8.6개, 65~69세 8.6개, 70~74세 8.5개 등으로 하루 평균 8개 정도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 수급자와 90세 이상 수급자가 복용하는 평균 1일 알약의 개수는 7.4개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평균 9.0개, 대도시 거주 수급자 7.3개, 농어촌 지역에 거주 수급자는 평균 8.5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서는 3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4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가 각각 8.7개와 8.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1일 복용하는 약의 개수는 8개 미만이었다. 급여유형에 따른 알약 개수를 보면, 방문목욕 수급자가 9.2개로 1일 평균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문요양 수급자는 8.8개, 방문간호 수급자는 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 수급자는 6.6개로 상대적으로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알약 개수가 적었다.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가 1일 평균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는 8.3개,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8.2개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1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용하고 있는 알약 개수(1일 기준)[1)]

(단위: %, 명, 개)

특성	4개 이하	5~9개	10~14개	15개 이상	계(명)		평균(개)
전체	28.9	37.9	20.0	13.2	100.0	(4,423)	8.3
성별							
남성	28.4	35.5	21.3	14.7	100.0	(1,224)	8.6
여성	29.1	38.8	19.5	12.6	100.0	(3,199)	8.1
연령대							
65세 미만	29.8	44.4	18.5	7.3	100.0	(125)	7.4
65~69세	29.0	34.5	21.0	15.5	100.0	(199)	8.6
70~74세	30.0	38.0	15.1	16.9	100.0	(350)	8.5
75~79세	25.7	36.6	22.9	14.8	100.0	(633)	8.7
80~84세	27.8	37.3	20.3	14.6	100.0	(1,161)	8.6
85~89세	28.7	37.4	21.1	12.8	100.0	(1,182)	8.1
90세 이상	32.9	40.1	17.7	9.3	100.0	(772)	7.4
지역							
대도시	35.2	38.3	17.5	9.1	100.0	(1,566)	7.3
중소도시	25.0	35.8	21.7	17.5	100.0	(1,447)	9.0
농어촌	25.9	39.5	21.1	13.4	100.0	(1,410)	8.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9.6	44.7	17.0	8.7	100.0	(207)	7.6
2등급	26.6	40.9	23.4	9.1	100.0	(405)	7.9
3등급	25.0	38.5	21.2	15.3	100.0	(1,212)	8.7
4등급	29.8	36.9	19.5	13.8	100.0	(2,022)	8.3
5등급	35.4	34.2	19.0	11.4	100.0	(483)	7.6
인지지원등급	35.1	41.5	12.8	10.6	100.0	(93)	7.6
급여유형							
방문요양	26.8	38.0	19.3	16.0	100.0	(1,823)	8.8
방문목욕	25.6	35.4	20.3	18.7	100.0	(316)	9.2
방문간호	23.4	40.4	21.3	14.9	100.0	(46)	8.6
주야간보호	33.8	32.8	21.2	12.2	100.0	(500)	7.9
단기보호	33.3	33.3	33.3	0.0	100.0	(3)	6.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2.8	34.5	22.4	10.3	100.0	(57)	7.6
노인요양시설	27.0	42.8	21.7	8.5	100.0	(682)	7.7
미이용	32.7	37.6	19.4	10.3	100.0	(996)	7.6
치매 여부							
예	28.2	38.4	20.3	13.2	100.0	(2,408)	8.2
아니오	29.7	37.3	19.8	13.3	100.0	(2,015)	8.3
2019년	20.6	33.1	26.2	20.1	100.0	(5,606)	9.8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1.9%였으며, 2019년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전체 수급자의 72.0%가 지난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남성 수급자의 60.6%, 여성 수급자의 62.4%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연령대별로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56.8%, 65~69세 수급자는 61.8%, 70~74세 수급자는 65.8%, 75~79세 수급자는 58.8% 등이었으며, 90세 이상 수급자는 55.2%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외래진료 비율은 60.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61.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63.7%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는 4등급 수급자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외래진료 이용률이 65.0%를 상회하는 반면 3등급 수급자는 59.3%, 2등급 수급자는 45.9%, 1등급 수급자는 34.3%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수급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목욕 수급자는 69.3%, 방문간호 수급자는 71.7%, 주야간보호 수급자는 70.7%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38.9%로 가장 낮은 외래진료 이용률을 보였다. 치매 여부에 따른 지난 1개월간 외래진료 여부를 보면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58.3%,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는 66.2%로 나타났다.

〈표 3-1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1)]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61.9	38.1	100.0 (4,423)
성별			
남성	60.6	39.4	100.0 (1,224)
여성	62.4	37.6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56.8	43.2	100.0 (125)
65~69세	61.8	38.2	100.0 (199)
70~74세	65.8	34.2	100.0 (350)
75~79세	58.8	41.2	100.0 (633)
80~84세	66.0	34.0	100.0 (1,161)
85~89세	63.4	36.6	100.0 (1,182)
90세 이상	55.2	44.8	100.0 (772)
지역			
대도시	60.9	39.1	100.0 (1,566)
중소도시	61.4	38.6	100.0 (1,447)
농어촌	63.7	36.3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4.3	65.7	100.0 (207)
2등급	45.9	54.1	100.0 (405)
3등급	59.3	40.7	100.0 (1,212)
4등급	67.5	32.5	100.0 (2,022)
5등급	69.6	30.4	100.0 (483)
인지지원등급	66.7	33.3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73.4	26.6	100.0 (1,823)
방문목욕	69.3	30.7	100.0 (316)
방문간호	71.7	28.3	100.0 (46)
주야간보호	70.0	30.0	100.0 (500)
단기보호	50.0	5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3	51.7	100.0 (57)
노인요양시설	38.9	61.1	100.0 (682)
미이용	50.5	49.5	100.0 (996)
치매 여부			
예	58.3	41.7	100.0 (2,408)
아니오	66.2	33.8	100.0 (2,015)
2019년[2)]	72.0	28.0	100.0 (5,606)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를 질문함. 이로 인해 2022년 조사(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

지난 1개월간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급자가 직접 방문한 횟수를 보면, 없음 14.8%, 1회 44.7%, 2회 17.5%, 3회 8.6%, 4~10회 13.1%, 11회 이상 1.3%로 나타나 수급자의 절반 가량은 월 1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수급자의 1개월간 외래진료 1회 이용비율은 46.5%, 여성 수급자는 월 1회 비율이 44.0%였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비율은 여성 수급자가 15.3%로 남성 수급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없음이 2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65~69세 연령대와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월1회 의료기관 이용비율이 각각 4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비율이 18.3%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보다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인정등급에 비해 높았으며,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는 3회 방문한 비율이 15.9%로 다른 인정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1회 방문하거나 아예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9.2%와 18.2%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 1개월간 4~10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인 반면 치매를 가진 수급자는 8.9%로 나타났다.

〈표 3-1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본인 의료기관 직접 방문 횟수[1)]

(단위: %, 명)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4~10회	11회 이상	계(명)	
전체	14.8	44.7	17.5	8.6	13.1	1.3	100.0	(2,738)
성별								
남성	13.5	46.5	16.6	8.0	14.0	1.5	100.0	(742)
여성	15.3	44.0	17.8	8.9	12.8	1.3	100.0	(1,996)
연령대								
65세 미만	21.1	36.6	25.4	7.0	7.0	2.8	100.0	(71)
65~69세	9.0	47.5	13.1	8.2	18.9	3.3	100.0	(122)
70~74세	10.9	43.5	11.7	10.4	21.3	2.2	100.0	(230)
75~79세	14.8	42.0	21.3	8.4	11.6	1.9	100.0	(371)
80~84세	12.6	43.5	18.6	8.3	15.8	1.0	100.0	(767)
85~89세	15.5	46.4	17.2	8.6	11.4	0.9	100.0	(748)
90세 이상	20.5	47.5	15.5	8.7	7.3	0.5	100.0	(425)
지역								
대도시	13.1	45.4	17.3	8.6	13.5	2.1	100.0	(954)
중소도시	13.1	44.6	18.6	8.3	14.9	0.6	100.0	(888)
농어촌	18.3	44.1	16.5	8.9	10.9	1.2	100.0	(89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3.8	49.3	7.0	7.0	2.8	0.0	100.0	(71)
2등급	29.0	41.4	14.0	4.8	8.6	2.2	100.0	(186)
3등급	15.9	43.0	20.1	7.5	11.4	2.1	100.0	(718)
4등급	12.3	44.8	17.1	8.6	16.3	0.9	100.0	(1,365)
5등급	13.1	49.0	16.3	11.9	8.3	1.5	100.0	(337)
인지지원등급	1.6	46.0	22.2	15.9	12.7	1.6	100.0	(63)
급여유형								
방문요양	13.4	42.3	17.4	9.6	15.8	1.5	100.0	(1,338)
방문목욕	19.2	46.6	15.5	5.9	11.4	1.4	100.0	(219)
방문간호	18.2	42.4	18.2	6.1	12.1	3.0	100.0	(33)
주야간보호	13.7	48.3	19.1	9.1	9.1	0.6	100.0	(350)
단기보호	0.0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2	51.9	18.5	3.7	3.7	0.0	100.0	(27)
노인요양시설	20.7	52.3	19.2	4.9	3.0	0.0	100.0	(266)
미이용	13.7	43.7	16.1	8.9	15.5	2.2	100.0	(504)
치매 여부								
예	18.4	47.0	17.7	7.7	8.9	0.4	100.0	(1,405)
아니오	11.0	42.4	17.3	9.6	17.5	2.3	100.0	(1,333)
2019년[2)]	-	25.0	15.9	24.1	24.0	11.1	100.0	(3,833)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수급자 중 지난 1개월 동안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수급자 2,738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를 질문함. 이로 인해 2022년 조사(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방문을 같이 한 동행인은 동거가족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35.7%, 비동거가족은 21.2%, 동행자 없음은 4.7%, 기타는 0.4%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동행자 없음과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동거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수급자는 동거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44.2%였으며, 여성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동행하는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가족은 35.7%, 비동거가족은 21.2%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을 보면, 65~69세 수급자는 동거가족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미만 수급자는 동행자 없음이 2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8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가족보다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의료기관 방문에 동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동거가족과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율이 45.2%로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율이 40.7%로 높은 반면 동행자 없음 비율도 6.5%로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행인 없음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수급자의 경우 동거가족과 병원에 동행하는 비율이 48.1%로 높은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병원에 동행하는 비율이 70.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이용자의 경우, 동거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가는 비율이 55.5%로 높았지만, 동행자가 없는 비율도 1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동거가족과의 동행은 41.7%,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동행은 35.9% 등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도 동거가족과 동행 34.6%,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동행 35.4%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1)]

(단위: %, 명)

특성	동행자 없음	동거가족	비동거 가족	장기요양 기관 직원	기타[2)]	계(명)	
전체	4.7	38.0	21.2	35.7	0.4	100.0	(2,333)
성별							
남성	5.3	44.2	21.3	28.7	0.5	100.0	(642)
여성	4.4	35.7	21.2	38.3	0.4	100.0	(1,691)
연령대							
65세 미만	20.0	45.5	5.5	29.1	0.0	100.0	(55)
65~69세	0.0	54.5	14.3	27.7	3.6	100.0	(112)
70~74세	7.3	50.7	10.7	31.2	0.0	100.0	(205)
75~79세	4.7	47.5	14.5	32.7	0.6	100.0	(318)
80~84세	4.9	31.1	26.2	37.4	0.4	100.0	(669)
85~89세	3.8	35.1	24.3	36.8	0.0	100.0	(633)
90세 이상	2.9	34.5	23.3	39.2	0.0	100.0	(339)
지역							
대도시	3.1	45.2	21.7	29.8	0.1	100.0	(828)
중소도시	4.4	36.8	20.9	37.1	0.8	100.0	(100)
농어촌	6.5	31.3	21.0	40.7	0.4	100.0	(77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44.7	10.6	44.7	0.0	100.0	(734)
2등급	0.0	38.6	18.2	42.4	0.8	100.0	(132)
3등급	1.8	47.4	18.0	32.3	0.5	100.0	(604)
4등급	5.0	33.1	22.4	39.2	0.3	100.0	(1,197)
5등급	6.8	35.8	26.3	31.1	0.0	100.0	(293)
인지지원등급	27.9	45.9	21.3	1.6	3.3	100.0	(61)
급여유형							
방문요양	3.5	37.3	20.2	38.5	0.5	100.0	(1,159)
방문목욕	4.0	40.1	21.5	33.9	0.6	100.0	(177)
방문간호	0.0	48.1	22.2	29.6	0.0	100.0	(27)
주야간보호	2.6	37.3	19.1	40.6	0.3	100.0	(303)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9.1	13.6	77.3	0.0	100.0	(22)
노인요양시설	0.5	7.1	18.6	73.8	0.0	100.0	(210)
미이용	11.8	55.5	27.0	5.3	0.5	100.0	(434)
치매 여부							
예	2.7	41.7	19.5	35.9	0.3	100.0	(1,145)
아니오	6.6	34.6	22.8	35.4	0.6	100.0	(1,188)
2019년[3)]	6.1	36.4	22.4	33.8	1.3	100.0	(3,833)

주: 1)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2,738명 중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2,333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병원 차량, 이웃, 친구 등

3)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를 질문함. 이로 인해 2022년 조사(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보면, 본인 차량 41.8%,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원 차량 24.6%, 택시 15.9%, 도보 7.6%, 대중교통 4.9% 등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본인차량 37.5%인 반면 여성 수급자의 경우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43.4%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대에 따른 이동수단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거주지역에 따른 이동방법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다. 대도시 거주 수급자는 본인차량(43.2%), 택시(21.4%), 도보(10.4%)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본인 차량(41.3%),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원 차량(34.9%)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경우, '기타' 비율이 30.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는 도보(21.3%)와 대중교통(18.0%) 비율이 다른 등급의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본인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 여부에 따라 이동수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개월간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를 살펴보면, 가족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음이 63.8%였으며, 1회 25.7%, 2회 7.2%, 3회 1.5%, 4회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를 질문했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해 1회 방문 비율이 낮고, 4회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수급자와 여성 수급자 간의 가족이 의료기관 방문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인 수급자의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가 높았으며,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가족이 수급자 대신 의료기관 방문한 비율이 높았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이 그렇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보다 수급자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 시 이동방법[1),3)]

(단위: %, 명)

특성	도보	본인 차량	택시	대중교통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원 차량	기타[2)]	계(명)	
전체	7.6	41.8	15.9	4.9	24.6	5.2	100.0	(2,333)
성별								
남성	8.6	37.5	18.4	6.2	21.7	7.6	100.0	(642)
여성	7.2	43.4	15.0	4.4	25.8	4.3	100.0	(1,691)
연령대								
65세 미만	3.6	42.9	19.6	3.6	21.4	8.9	100.0	(55)
65~69세	5.4	43.8	13.4	3.6	20.5	13.4	100.0	(112)
70~74세	8.8	36.1	23.9	8.8	15.6	6.8	100.0	(205)
75~79세	9.1	37.1	16.7	5.3	24.2	7.5	100.0	(318)
80~84세	7.9	42.2	14.3	6.3	25.5	3.7	100.0	(669)
85~89세	7.9	44.4	15.6	3.3	25.0	3.8	100.0	(633)
90세 이상	5.6	43.5	13.8	2.9	29.7	4.4	100.0	(339)
지역								
대도시	10.4	43.2	21.4	5.0	15.1	5.0	100.0	(828)
중소도시	7.7	41.0	14.7	4.5	25.0	7.1	100.0	(100)
농어촌	4.4	41.3	10.9	5.2	34.9	3.4	100.0	(77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28.3	15.2	0.0	26.1	30.4	100.0	(734)
2등급	7.6	36.4	7.6	2.3	34.8	11.4	100.0	(132)
3등급	6.3	45.4	13.3	2.8	24.5	7.6	100.0	(604)
4등급	7.4	41.0	18.8	4.7	25.0	3.2	100.0	(1,197)
5등급	9.2	43.5	13.0	8.9	22.9	2.4	100.0	(293)
인지지원등급	21.3	36.1	19.7	18.0	3.3	1.6	100.0	(61)
급여유형								
방문요양	8.2	38.9	20.4	5.1	20.4	7.1	100.0	(1,159)
방문목욕	5.6	47.2	16.3	3.9	23.0	3.9	100.0	(177)
방문간호	7.4	44.4	18.5	3.7	14.8	11.1	100.0	(27)
주야간보호	6.9	44.1	7.6	2.6	37.8	1.0	100.0	(303)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5	18.2	4.5	0.0	68.2	4.5	100.0	(22)
노인요양시설	3.3	20.1	1.9	0.0	69.9	4.8	100.0	(210)
미이용	9.4	57.4	16.8	8.8	3.9	3.7	100.0	(434)
치매 여부								
예	6.6	42.5	12.8	4.6	28.8	4.7	100.0	(1,145)
아니오	8.4	41.3	18.9	5.1	20.7	5.6	100.0	(1,188)

주: 1)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2,738명 중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2,333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교통약자이동수단, 129 응급차 등
3) 2022년도 신규 문항임

〈표 3-1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수급자 대신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1)]

(단위: %, 명)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명)	
전체	63.8	25.7	7.2	1.5	1.7	100.0	(2,738)
성별							
남성	63.9	26.5	5.7	2.0	1.9	100.0	(742)
여성	63.8	25.4	7.8	1.4	1.7	100.0	(1,996)
연령대							
65세 미만	67.1	27.1	5.7	0.0	0.0	100.0	(70)
65~69세	73.2	13.8	9.8	2.4	0.8	100.0	(123)
70~74세	72.2	21.3	4.8	.9	0.9	100.0	(230)
75~79세	61.6	26.3	8.6	.8	2.7	100.0	(372)
80~84세	66.4	23.6	7.7	1.6	0.8	100.0	(767)
85~89세	62.3	26.3	6.5	2.0	2.8	100.0	(749)
90세 이상	55.8	33.6	7.2	1.9	1.4	100.0	(428)
지역							
대도시	63.5	24.2	8.1	1.9	2.3	100.0	(951)
중소도시	64.5	24.4	8.0	1.7	1.4	100.0	(888)
농어촌	63.4	28.6	5.6	1.0	1.4	100.0	(89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8.6	30.0	18.6	1.4	1.4	100.0	(70)
2등급	49.7	35.8	9.6	2.7	2.1	100.0	(187)
3등급	60.4	28.9	7.0	1.7	2.1	100.0	(719)
4등급	67.2	23.2	6.4	1.5	1.8	100.0	(1,365)
5등급	66.1	24.4	7.1	1.5	0.9	100.0	(336)
인지지원등급	75.8	17.7	6.5	0.0	0.0	100.0	(62)
급여유형							
방문요양	63.6	26.1	7.0	1.5	1.9	100.0	(1,339)
방문목욕	56.4	30.9	9.1	1.8	1.8	100.0	(220)
방문간호	54.5	36.4	6.1	0.0	3.0	100.0	(33)
주야간보호	66.6	22.0	7.4	2.6	1.4	100.0	(350)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3	33.3	7.4	0.0	0.0	100.0	(27)
노인요양시설	63.9	27.1	6.8	1.1	1.1	100.0	(266)
미이용	66.2	23.5	7.2	1.2	2.0	100.0	(503)
치매 여부							
예	60.8	27.6	8.1	1.9	1.7	100.0	(1,404)
아니오	67.0	23.8	6.3	1.2	1.7	100.0	(1,334)
2019년[2)]	69.3	11.1	8.0	7.4	4.2	100.0	(4,039)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수급자 중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2,738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를 질문함. 이로 인해 2022년 조사(지난 1개월 동안 외래진료 여부)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 경험을 보면, 입원한 적이 있음은 22.8%, 입원한 적이 없음은 77.2%로 2019년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비율보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수급자의 입원율은 25.4%, 여성 수급자의 입원율은 21.8%였으며, 65세 미만 수급자(20.0%)와 85~89세 수급자(20.7%), 90세 이상 수급자(18.9%)의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입원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의료기관 입원율을 보면, 1등급인 수급자(15.5%)와 5등급인 수급자(18.0%)의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등급인 수급자의 입원율이 25.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비율은 방문요양 수급자 25.2%, 방문목욕 수급자 27.0%, 방문간호 수급자 25.5%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자의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입원 비율은 21.0%,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입원 비율은 25.0%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는 71.2%, 2회는 19.2%, 3회 이상은 9.6%였으며, 평균 28.3일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수급자는 1회가 70.1%, 2회는 19.6%, 3회 이상은 10.3%였으며, 여성 수급자는 1회가 71.6%, 2회는 19.1%, 3회 이상은 9.3%로 나타났다. 평균 입원 일수는 남성 36.0일, 여성 24.8일로 남성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긴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61.1일로 가장 길었으며, 80~84세 연령대 수급자는 평균 21.3일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입원일수가 23.4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1회 68.8%, 2회 21.9%, 3회 이상 9.4%로 의료기관에 1회 입원한 비율이 다른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1회 68.2%, 2회 13.6%, 3회 이상 18.2%로 3회 이상 비율이 높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별로는 미이용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50.0일이었으며, 3회 이상 입원 비율도 15.9%로 높았으며, 주야간보호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각각 17.8일과 17.4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1회 입원율은 74.8%,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의 1회 입원율은 67.7%로 분석되었다.

〈표 3-1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요양병원 제외)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22.8	77.2	100.0 (4,423)
성별			
남성	25.4	74.6	100.0 (1,224)
여성	21.8	78.2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20.0	80.0	100.0 (125)
65~69세	26.5	73.5	100.0 (199)
70~74세	23.4	76.6	100.0 (350)
75~79세	25.6	74.4	100.0 (633)
80~84세	25.5	74.5	100.0 (1,161)
85~89세	20.7	79.3	100.0 (1,182)
90세 이상	18.9	81.1	100.0 (772)
지역			
대도시	22.5	77.5	100.0 (1,566)
중소도시	21.1	78.9	100.0 (1,447)
농어촌	24.8	75.2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5.5	84.5	100.0 (207)
2등급	25.9	74.1	100.0 (405)
3등급	23.3	76.7	100.0 (1,212)
4등급	23.7	76.3	100.0 (2,022)
5등급	18.0	82.0	100.0 (483)
인지지원등급	23.7	76.3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25.2	74.8	100.0 (1,823)
방문목욕	27.0	73.0	100.0 (316)
방문간호	25.5	74.5	100.0 (46)
주야간보호	19.2	80.8	100.0 (500)
단기보호	0.0	10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3	80.7	100.0 (57)
노인요양시설	17.4	82.6	100.0 (682)
미이용	22.7	77.3	100.0 (996)
치매 여부			
예	21.0	79.0	100.0 (2,408)
아니오	25.0	75.0	100.0 (2,015)
2019년	26.8	73.2	100.0 (5,606)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표 3-1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 횟수 및 평균 입원일수(요양병원 제외)

(단위: %, 명)

특성	1회	2회	3회 이상	계(명)	평균 입원일수
전체	71.2	19.2	9.6	100.0 (1,009)	28.3
성별					
남성	70.1	19.6	10.3	100.0 (311)	36.0
여성	71.6	19.1	9.3	100.0 (698)	24.8
연령대					
65세 미만	52.0	32.0	16.0	100.0 (25)	26.9
65~69세	54.7	26.4	18.9	100.0 (53)	29.8
70~74세	79.3	11.0	9.8	100.0 (82)	61.1
75~79세	70.8	15.5	13.7	100.0 (161)	31.2
80~84세	72.6	19.9	7.4	100.0 (296)	21.3
85~89세	73.4	19.3	7.4	100.0 (244)	22.1
90세 이상	70.1	21.8	8.2	100.0 (147)	30.7
지역					
대도시	66.1	21.8	12.1	100.0 (354)	30.1
중소도시	72.8	19.7	7.5	100.0 (305)	31.6
농어촌	74.9	16.3	8.9	100.0 (350)	23.4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8.8	21.9	9.4	100.0 (32)	64.4
2등급	74.3	15.2	10.5	100.0 (105)	35.2
3등급	72.1	19.8	8.1	100.0 (283)	31.8
4등급	69.2	21.5	9.4	100.0 (480)	23.2
5등급	77.0	10.3	12.6	100.0 (87)	25.9
인지지원등급	68.2	13.6	18.2	100.0 (22)	15.6
급여유형					
방문요양	71.0	20.9	8.1	100.0 (459)	23.6
방문목욕	69.8	19.8	10.5	100.0 (86)	24.2
방문간호	63.6	27.3	9.1	100.0 (11)	26.6
주야간보호	77.3	15.5	7.2	100.0 (97)	17.8
단기보호	0.0	0.0	0.0	0.0 (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7	18.2	9.1	100.0 (11)	18.0
노인요양시설	76.7	18.3	5.0	100.0 (120)	17.4
미이용	66.1	18.1	15.9	100.0 (227)	50.0
치매 여부					
예	74.8	14.5	10.7	100.0 (504)	24.1
아니오	67.7	24.0	8.3	100.0 (504)	32.5
2019년	66.6	20.1	13.3	100.0 (1,505)	-

주: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 1,009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4%였으며, 2019년 요양병원 입원율 12.6%보다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수급자의 10.5%, 여성 수급자의 10.3%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수급자의 21.6%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으며, 그 외로는 65~69세 수급자의 8.0%, 70~74세 수급자의 10.6%, 75~79세 수급자의 14.5%, 80~84세 수급자의 8.3%, 85~89세 수급자의 9.5%, 90세 이상 수급자의 1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13.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10.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7.5%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1등급인 수급자의 33.3%, 2등급인 수급자의 16.8%, 3등급인 수급자의 11.8%, 4등급인 수급자의 7.4%, 5등급인 수급자의 4.8%,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의 9.7%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미이용자의 32.6%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외 방문요양(3.4%), 방문간호(2.2%), 방문목욕(4.4%), 주야간보호(3.2%), 노인요양시설(5.7%)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11.7%, 그리고 치매 질환이 없는 수급자의 8.9%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 횟수를 질문하였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92.4%는 1회, 나머지 7.6%는 2회 이상이었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207.1일로 조사되었다. 평균 입원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 수급자는 210.9일, 여성 수급자는 205.6일을 입원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90세 이상 수급자는 평균 177.3일로 가장 적은 반면 65세 미만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247.8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18.4일, 중소도시 206.1일, 농어촌 거주 수급자는 187.0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평균 입원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등급인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99.1일인 반면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4.9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미이용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271.0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방문간호 이용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102.2일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11.3일, 치매가 없는 수급자는 평균 200.6일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 입원 여부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10.4	89.6	100.0	(4,423)
성별				
남성	10.5	89.5	100.0	(1,224)
여성	10.3	89.7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21.6	78.4	100.0	(125)
65~69세	8.0	92.0	100.0	(199)
70~74세	10.6	89.4	100.0	(350)
75~79세	14.5	85.5	100.0	(633)
80~84세	8.3	91.7	100.0	(1,161)
85~89세	9.5	90.5	100.0	(1,182)
90세 이상	10.4	89.6	100.0	(772)
지역				
대도시	13.0	87.0	100.0	(1,566)
중소도시	10.4	89.6	100.0	(1,447)
농어촌	7.5	92.5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3.3	66.7	100.0	(207)
2등급	16.8	83.2	100.0	(405)
3등급	11.8	88.2	100.0	(1,212)
4등급	7.4	92.6	100.0	(2,022)
5등급	4.8	95.2	100.0	(483)
인지지원등급	9.7	90.3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3.4	96.6	100.0	(1,823)
방문목욕	4.4	95.6	100.0	(316)
방문간호	2.2	97.8	100.0	(46)
주야간보호	3.2	96.8	100.0	(500)
단기보호	0.0	10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	94.7	100.0	(57)
노인요양시설	5.7	94.3	100.0	(682)
미이용	32.6	67.4	100.0	(996)
치매 여부				
예	11.7	88.3	100.0	(2,408)
아니오	8.9	91.1	100.0	(2,015)
2019년	12.6	87.4	100.0	(5,606)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표 3-2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 입원 횟수 및 평균 입원일수

(단위: %, 명, 일)

특성	1회	2회 이상	계(명)	평균 입원일수
전체	92.4	7.6	100.0 (460)	207.1
성별				
남성	94.6	5.4	100.0 (129)	210.9
여성	91.5	8.5	100.0 (331)	205.6
연령대				
65세 미만	96.3	3.7	100.0 (27)	247.8
65~69세	100.0	0.0	100.0 (16)	238.7
70~74세	89.2	10.8	100.0 (37)	217.3
75~79세	87.9	12.1	100.0 (91)	218.4
80~84세	91.7	8.3	100.0 (96)	201.4
85~89세	96.4	3.6	100.0 (111)	206.5
90세 이상	92.5	7.5	100.0 (80)	177.3
지역				
대도시	94.1	5.9	100.0 (203)	218.4
중소도시	91.3	8.7	100.0 (150)	206.1
농어촌	90.7	9.3	100.0 (107)	187.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5.7	4.3	100.0 (69)	299.1
2등급	91.3	8.7	100.0 (69)	231.3
3등급	90.9	9.1	100.0 (143)	229.5
4등급	93.9	6.1	100.0 (148)	161.0
5등급	90.9	9.1	100.0 (22)	95.2
인지지원등급	77.8	22.2	100.0 (9)	14.9
급여유형				
방문요양	80.6	19.4	100.0 (62)	55.7
방문목욕	92.9	7.1	100.0 (14)	50.8
방문간호	100.0	0.0	100.0 (1)	102.2
주야간보호	93.8	6.3	100.0 (16)	45.2
단기보호	0.0	0.0	0.0 (0)	26.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0	0.0	100.0 (3)	45.7
노인요양시설	92.3	7.7	100.0 (39)	55.4
미이용	94.2	5.8	100.0 (325)	271.0
치매 여부				
예	92.9	7.1	100.0 (282)	211.3
아니오	91.1	8.9	100.0 (180)	200.6
2019년	93.2	11.8	100.0 (708)	-

주: 지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 46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2%로 2019년 32.4%보다는 낮아졌으며, 남성 수급자의 낙상률은 28.8%, 여성 수급자의 낙상률은 26.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자는 15.9%, 65~69세 32.2%, 70~74세 27.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낙상률은 30.3%, 중소도시 26.6%, 농어촌 지역 거주 수급자는 24.2%로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낙상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방문요양(32.9%), 방문간호(30.4%), 단기보호(33.3%) 이용자의 낙상 경험률이 30%를 넘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낙상률은 11.9%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낙상률은 25.4%인 반면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낙상률은 29.2%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지난 1년간 낙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01명을 대상으로 낙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61.1%가 낙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수급자의 49.4%, 여성 수급자의 65.9%가 낙상 후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낙상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낙상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50.1%가 낙상 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특성을 보면, 1등급인 수급자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낙상 후 치료받은 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르면, 방문목욕 수급자 중 낙상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67.4%로 다른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수급자는 낙상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이 4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 여부에 따른 낙상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낙상 경험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27.2	72.8	100.0 (4,423)
성별			
남성	28.8	71.2	100.0 (1,224)
여성	26.5	73.5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15.9	84.1	100.0 (125)
65~69세	32.2	67.8	100.0 (199)
70~74세	27.9	72.1	100.0 (350)
75~79세	28.6	71.4	100.0 (633)
80~84세	28.4	71.6	100.0 (1,161)
85`89세	25.0	75.0	100.0 (1,182)
90세 이상	27.6	72.4	100.0 (772)
지역			
대도시	30.3	69.7	100.0 (1,566)
중소도시	26.6	73.4	100.0 (1,447)
농어촌	24.2	75.8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2	92.8	100.0 (207)
2등급	18.7	81.3	100.0 (405)
3등급	27.1	72.9	100.0 (1,212)
4등급	31.1	68.9	100.0 (2,022)
5등급	25.5	74.5	100.0 (483)
인지지원등급	31.2	68.8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32.9	67.1	100.0 (1,823)
방문목욕	29.8	70.2	100.0 (316)
방문간호	30.4	69.6	100.0 (46)
주야간보호	28.0	72.0	100.0 (500)
단기보호	33.3	66.7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8	84.2	100.0 (57)
노인요양시설	11.9	88.1	100.0 (682)
미이용	26.3	73.7	100.0 (996)
치매 여부			
예	25.4	74.6	100.0 (2,408)
아니오	29.2	70.8	100.0 (2,015)
2019년	32.4	67.6	100.0 (5,606)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표 3-2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낙상 후 병원 치료 여부[1)2)]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61.1	38.9	100.0 (1,201)
성별			
남성	49.4	50.6	100.0 (352)
여성	65.9	34.1	100.0 (848)
연령대			
65세 미만	50.0	50.0	100.0 (20)
65~69세	54.7	45.3	100.0 (64)
70~74세	57.1	42.9	100.0 (98)
75~79세	61.9	38.1	100.0 (181)
80~84세	62.7	37.3	100.0 (330)
85~89세	61.5	38.5	100.0 (296)
90세 이상	61.5	38.5	100.0 (213)
지역			
대도시	65.0	35.0	100.0 (474)
중소도시	50.1	49.9	100.0 (385)
농어촌	68.0	32.0	100.0 (34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0.0	20.0	100.0 (15)
2등급	69.3	30.7	100.0 (75)
3등급	63.2	36.8	100.0 (329)
4등급	60.7	39.3	100.0 (629)
5등급	52.0	48.0	100.0 (123)
인지지원등급	51.7	48.3	100.0 (29)
급여유형			
방문요양	61.1	38.9	100.0 (599)
방문목욕	67.4	32.6	100.0 (95)
방문간호	64.3	35.7	100.0 (14)
주야간보호	57.1	42.9	100.0 (140)
단기보호	0.0	0.0	0.0 (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4.4	55.6	100.0 (9)
노인요양시설	53.1	46.9	100.0 (81)
미이용	63.7	36.3	100.0 (262)
치매 여부			
예	60.5	39.5	100.0 (612)
아니오	61.7	38.3	100.0 (588)

주: 1) 지난 1년 동안 낙상경험이 있는 1,201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년 동안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8.9%였으며, 남성 수급자의 10.9%, 여성 수급자의 8.2%가 지난 1년간 욕창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연령대의 수급자 중 욕창 발생율은 1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90세 이상 수급자 9.1%, 70~74세 8.8%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9.6%가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창 발생률이 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욕창 발생률을 보면,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욕창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25.6%, 2등급인 수급자의 17.5%가 지난 1년간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의 4.3%, 5등급인 수급자의 3.1%가 욕창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17.4%로 높았으며, 미이용자 11.7%, 방문목욕 이용자의 11.4% 등이 욕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10.1%가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7.4%가 욕창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본인 또는 대리응답)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난 1년 동안 욕창 발생 경험[1)2)]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8.9	91.1	100.0 (4,423)
성별			
남성	10.9	89.1	100.0 (1,224)
여성	8.2	91.8	100.0 (3,199)
연령대			
65세 미만	8.0	92.0	100.0 (125)
65~69세	12.0	88.0	100.0 (199)
70~74세	8.8	91.2	100.0 (350)
75~79세	8.7	91.3	100.0 (633)
80~84세	8.7	91.3	100.0 (1,161)
85~89세	8.7	91.3	100.0 (1,182)
90세 이상	9.1	90.9	100.0 (772)
지역			
대도시	9.6	90.4	100.0 (1,566)
중소도시	7.7	92.3	100.0 (1,447)
농어촌	9.3	90.7	100.0 (1,4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5.6	74.4	100.0 (207)
2등급	17.5	82.5	100.0 (405)
3등급	8.9	91.1	100.0 (1,212)
4등급	7.1	92.9	100.0 (2,022)
5등급	3.1	96.9	100.0 (483)
인지지원등급	4.3	95.7	10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9.1	90.9	100.0 (1,823)
방문목욕	11.4	88.6	100.0 (316)
방문간호	17.4	82.6	100.0 (46)
주야간보호	3.4	96.6	100.0 (500)
단기보호	0.0	10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0	93.0	100.0 (57)
노인요양시설	6.6	93.4	100.0 (682)
미이용	11.7	88.3	100.0 (996)
치매 여부			
예	10.1	89.9	100.0 (2,408)
아니오	7.4	92.6	100.0 (2,015)

주: 1)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4,423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1. 가구 및 일상생활

가. 가구 및 주거 특성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2,687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독거가구 40.2%, 자녀동거가구 31.1%, 부부가구 22.4%,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3세대) 4.8%, 기타 1.5%로 나타났다. 남성은 부부가구가 45.9%, 독거가구 26.7%, 자녀동거가구는 23.2% 등이었으며, 여성은 독거가구 45.2%, 자녀동거가구 34.1%, 부부가구 13.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독거가구 비중이 40.0%를 넘었으며, 69세 미만까지의 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46.2%가 독거가구였으며, 자녀동거 가구 비율은 26.3%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 가구형태를 보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와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가 각각 42.7%와 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독거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이용자와 방문목욕 이용자는 독거가구의 비중이 42.6%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간호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38.3%),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41.1%)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36.7%, 독거가구 36.0%, 부부가구 20.2% 등이었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는 독거가구 43.9%, 자녀동거가구 26.0%, 부부가구 24.4%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 형태[1)]

(단위: %, 명)

특성	독거 가구	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자녀 및 손자녀 동거	기타[2)]	계(명)	
전체	40.2	22.4	31.1	4.8	1.5	100.0	(2,687)
성별							
남성	26.7	45.9	23.2	2.3	1.9	100.0	(733)
여성	45.2	13.6	34.1	5.7	1.4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26.8	30.4	25.0	0.0	17.9	100.0	(56)
65~69세	33.3	39.4	23.5	2.3	1.5	100.0	(132)
70~74세	35.4	32.5	29.1	1.5	1.5	100.0	(206)
75~79세	32.8	34.4	25.5	5.7	1.6	100.0	(383)
80~84세	43.0	23.9	27.4	4.4	1.3	100.0	(743)
85~89세	44.4	16.0	33.2	5.2	1.1	100.0	(724)
90세 이상	40.6	9.3	42.9	6.8	.5	100.0	(443)
지역							
대도시	36.6	22.2	35.2	4.4	1.6	100.0	(974)
중소도시	37.9	22.6	31.6	6.6	1.3	100.0	(824)
농어촌	46.2	22.5	26.3	3.5	1.6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0.0	30.7	42.7	5.3	1.3	100.0	(75)
2등급	17.3	25.0	45.8	8.3	3.6	100.0	(168)
3등급	29.9	24.7	36.0	6.1	3.3	100.0	(672)
4등급	46.3	21.6	27.5	3.7	.8	100.0	(1,422)
5등급	50.0	18.4	27.1	4.2	.3	100.0	(331)
인지지원등급	52.6	15.8	21.1	10.5	0.0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42.6	22.3	29.1	4.4	1.6	100.0	(1,823)
방문목욕	40.2	27.8	25.9	4.1	1.9	100.0	(316)
방문간호	27.7	29.8	38.3	4.3	0.0	100.0	(46)
주야간보호	32.3	18.8	41.1	6.6	1.2	100.0	(500)
단기보호	50.0	0.0	50.0	0.0	0.0	100.0	(3)
치매 여부							
예	36.0	20.2	36.7	5.8	1.2	100.0	(1,283)
아니오	43.9	24.4	26.0	3.8	1.8	100.0	(1,404)
2019년	34.0	24.8	31.9	7.4	1.9	100.0	(3,055)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형제 또는 자매와 동거, 손자녀 동거, 수급자의 부모와 동거 등

재가급여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는 본인이 57.3%, 아들이나 며느리는 17.1%, 배우자는 15.0%, 딸이나 사위는 9.4%, 기타 1.2%로 나타났다. 남성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53.3%, 아들이나 며느리는 19.7%, 배우자는 14.8% 등으로 나타났다. 만 70세 미만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가구주가 배우자인 비율이 30.0%를 상회하고 있으며, 90세 이상인 이용자의 경우 가구주가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딸이나 사위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2.1%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1등급인 이용자부터 3등급인 이용자의 경우 가구주가 본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구주가 배우자인 비율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인정등급이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급여유형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각각 59.7%와 59.8%로 높았으며, 방문간호 이용자는 배우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23.9%로 타 유형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48.4%, 다음으로 아들이나 며느리 24.4%, 딸이나 사위 14.8%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52.3%, 아들이나 며느리 20.3%, 배우자 14.2% 등이었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61.9%, 배우자는 15.8%, 아들이나 며느리는 14.1%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주[1)]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2)]	계(명)	
전체	57.3	15.0	17.1	9.4	1.2	100.0	(2,687)
성별							
남성	68.2	15.6	10.2	5.0	1.0	100.0	(733)
여성	53.3	14.8	19.7	11.1	1.2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46.4	35.7	5.4	3.6	8.9	100.0	(56)
65~69세	53.8	32.6	5.3	6.8	1.5	100.0	(132)
70~74세	57.0	27.5	13.5	1.4	0.5	100.0	(206)
75~79세	53.4	25.5	13.0	7.3	0.8	100.0	(383)
80~84세	60.4	13.9	15.1	9.4	1.2	100.0	(743)
85~89세	59.3	9.8	18.6	11.3	1.0	100.0	(724)
90세 이상	54.9	2.5	28.0	13.5	1.1	100.0	(443)
지역							
대도시	55.3	14.6	17.0	11.6	1.4	100.0	(974)
중소도시	54.4	15.5	17.7	11.3	1.1	100.0	(824)
농어촌	62.1	14.9	16.5	5.4	1.0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7.4	23.7	15.8	11.8	1.3	100.0	(75)
2등급	34.3	19.5	23.7	21.3	1.2	100.0	(168)
3등급	47.0	18.0	21.1	11.5	2.4	100.0	(672)
4등급	63.4	13.2	15.0	7.5	0.9	100.0	(1,422)
5등급	65.9	12.4	14.8	6.9	0.0	100.0	(331)
인지지원등급	63.2	10.5	15.8	10.5	0.0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59.7	15.3	15.4	8.4	1.2	100.0	(1,823)
방문목욕	59.8	17.7	14.6	6.3	1.6	100.0	(316)
방문간호	43.5	23.9	17.4	13.0	2.2	100.0	(46)
주야간보호	48.4	11.4	24.4	14.8	1.0	100.0	(500)
단기보호	50.0	0.0	50.0	0.0	0.0	100.0	(3)
치매 여부							
예	52.3	14.2	20.3	12.3	0.9	100.0	(1,283)
아니오	61.9	15.8	14.1	6.8	1.4	100.0	(1,404)
2019년	51.4	17.8	19.4	10.0	1.4	100.0	(3,055)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수급자의 손자녀,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등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는 1명이 40.2%, 2명은 36.7%, 3명은 12.9%, 4명은 5.6%, 5명 이상은 4.7%로 2019년에 비해 가구원수가 1명인 비율이 증가하고 3명 이상인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수급자는 2명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이용자는 1명이 45.2%, 2명은 31.2%, 3명은 12.6% 등으로 나타났다. 80세 미만 이용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원수는 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이용자는 1명인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가구원수는 2명인 비율이 36.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1명인 비율이 46.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이용자는 가구원수가 2명인 비율이 46.7%로 다른 인정등급을 받은 이용자에 비해 높았으며, 2등급인 이용자도 2명과 3명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는 1명인 비율이 4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에서 방문요양 이용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은 42.6%, 2명은 36.8%, 3명은 12.1% 등이었으며, 방문간호 이용자는 가구원수가 2명인 비율이 45.7%로 높게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가구원수가 1명인 비율이 32.4%, 2명 33.8%, 3명 15.8%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은 36.0%, 2명은 36.3%였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가구원수가 1명(43.9%)과 2명(37.0%)인 비율이 높았다.

가구 내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1명이 91.0%, 2명은 8.7%, 3명은 0.2%로 201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1명이 85.0%, 2명은 15.0%였으며, 여성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1명이 93.3%, 2명은 6.3%, 3명은 0.3%, 4명 이상 0.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9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1명인 비율이 높은 반면 80~89세 이용자의 경우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2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와 1등급인 이용자의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1명인 비율이 각각 90% 수준으로 다른 인정등급을 받은 이용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1명인 비율이 94.6%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경우 가구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2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본인 또는 대리응답)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원 수(본인 포함)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명)	
전체	40.2	36.7	12.9	5.6	4.7	100.0	(2,687)
성별							
남성	26.7	51.3	13.4	4.6	4.0	100.0	(733)
여성	45.2	31.2	12.6	5.9	5.0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27.3	41.8	20.0	9.1	1.8	100.0	(56)
65~69세	33.6	50.4	12.2	1.5	2.3	100.0	(132)
70~74세	35.4	43.2	10.2	5.3	5.8	100.0	(206)
75~79세	32.8	45.3	10.9	4.9	6.0	100.0	(383)
80~84세	42.9	37.9	9.9	4.2	5.1	100.0	(743)
85~89세	44.5	29.6	14.4	7.2	4.4	100.0	(724)
90세 이상	40.7	31.2	17.6	6.6	3.8	100.0	(443)
지역							
대도시	36.7	36.8	14.4	6.5	5.7	100.0	(974)
중소도시	37.9	36.4	13.8	5.8	6.1	100.0	(824)
농어촌	46.2	36.9	10.2	4.4	2.4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0.0	46.7	21.3	6.7	5.3	100.0	(75)
2등급	17.2	44.4	25.4	8.3	4.7	100.0	(168)
3등급	29.9	40.9	15.5	6.4	7.3	100.0	(672)
4등급	46.3	34.4	10.8	4.8	3.7	100.0	(1,422)
5등급	50.2	32.3	8.2	5.4	3.9	100.0	(331)
인지지원등급	52.6	26.3	15.8	0.0	5.3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42.6	36.8	12.1	5.2	3.3	100.0	(1,823)
방문목욕	40.3	39.0	12.4	4.1	4.1	100.0	(316)
방문간호	28.3	45.7	15.2	8.7	2.2	100.0	(46)
주야간보호	32.4	33.8	15.8	7.6	10.4	100.0	(500)
단기보호	50.0	50.0	0.0	0.0	0.0	100.0	(3)
치매 여부							
예	36.0	36.3	15.8	6.9	4.9	100.0	(1,283)
아니오	43.9	37.0	10.2	4.3	4.6	100.0	(1,404)
2019년	34.0	36.0	15.1	7.5	7.4	100.0	(3,055)

주: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표 3-27〉 (본인 또는 대리응답)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본인 포함)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4명	계(명)	
전체	91.0	8.7	0.2	0.0	100.0	(2,687)
성별						
남성	85.0	15.0	0.0	0.0	100.0	(733)
여성	93.3	6.3	0.3	0.1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92.9	7.1	0.0	0.0	100.0	(56)
65~69세	97.0	3.0	0.0	0.0	100.0	(132)
70~74세	92.7	7.3	0.0	0.0	100.0	(206)
75~79세	92.2	7.3	0.5	0.0	100.0	(383)
80~84세	90.3	9.7	0.0	0.0	100.0	(743)
85~89세	89.4	10.2	0.4	0.0	100.0	(724)
90세 이상	91.2	8.6	0.0	0.2	100.0	(443)
지역						
대도시	90.5	9.5	0.0	0.0	100.0	(974)
중소도시	91.3	8.4	0.2	0.1	100.0	(824)
농어촌	91.5	8.1	0.4	0.0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9.3	10.7	0.0	0.0	100.0	(75)
2등급	94.6	5.4	0.0	0.0	100.0	(168)
3등급	90.0	9.5	0.4	0.0	100.0	(672)
4등급	91.4	8.4	0.1	0.1	100.0	(1,422)
5등급	90.0	10.0	0.0	0.0	100.0	(331)
인지지원등급	89.5	10.5	0.0	0.0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90.8	8.9	0.3	0.0	100.0	(1,823)
방문목욕	87.9	12.1	0.0	0.0	100.0	(316)
방문간호	91.3	8.7	0.0	0.0	100.0	(46)
주야간보호	94.0	5.8	0.0	0.2	100.0	(500)
단기보호	100.0	0.0	0.0	0.0	100.0	(3)
치매 여부						
예	91.3	8.3	0.3	0.1	100.0	(1,283)
아니오	90.8	9.0	0.1	0.0	100.0	(1,404)
2019년	91.3	8.4	0.3	-	100.0	(3,055)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재가급여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43.3%, 아파트 40.0%,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14.9%, 기타는 1.8%로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이용자는 아파트 44.1%, 단독주택 38.7%, 연립 및 다세대주택 15.7% 등이었으며, 여성 이용자는 단독주택 45.0%, 아파트 38.5%, 연립 및 다세대주택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5~89세 연령대의 이용자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연령대의 이용자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3%,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8.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1등급인 이용자부터 3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반면, 4등급 이용자와 5등급 이용자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45.9%와 4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7.4%, 단독주택 31.6%,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5.8%, 기타는 5.3%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보면, 방문요양 이용자는 단독주택(40.3%)과 아파트(41.3%)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방문목욕 이용자는 단독주택(70.9%)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문간호 이용자는 연립이나 아파트 거주 비율(46.7%)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4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5.4%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1.3%는 단독주택, 41.2%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 유형[1)]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2)]	계(명)
전체	43.3	40.0	14.9	1.8	100.0 (2,687)
성별					
남성	38.7	44.1	15.7	1.5	100.0 (733)
여성	45.0	38.5	14.6	1.8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21.4	46.4	32.1	0.0	100.0 (56)
65~69세	27.3	56.8	12.9	3.0	100.0 (132)
70~74세	29.5	47.3	20.3	2.9	100.0 (206)
75~79세	36.5	45.6	16.4	1.6	100.0 (383)
80~84세	45.0	37.4	16.2	1.5	100.0 (743)
85~89세	50.8	37.1	10.8	1.4	100.0 (724)
90세 이상	48.0	35.1	14.4	2.5	100.0 (443)
지역					
대도시	24.5	51.3	21.7	2.5	100.0 (974)
중소도시	27.0	54.5	16.1	2.3	100.0 (824)
농어촌	78.9	14.2	6.4	0.6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2.0	56.0	9.3	2.7	100.0 (75)
2등급	36.3	47.6	14.9	1.2	100.0 (168)
3등급	38.5	41.9	16.5	3.1	100.0 (672)
4등급	45.9	38.0	15.1	1.1	100.0 (1,422)
5등급	48.5	37.3	12.1	2.1	100.0 (331)
인지지원등급	31.6	47.4	15.8	5.3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40.3	41.3	16.4	2.0	100.0 (1,823)
방문목욕	70.9	20.3	7.9	0.9	100.0 (316)
방문간호	37.8	46.7	15.6	0.0	100.0 (46)
주야간보호	37.4	47.4	13.8	1.4	100.0 (500)
단기보호	33.3	33.3	33.3	0.0	100.0 (3)
치매 여부					
예	45.4	38.7	14.1	1.7	100.0 (1,283)
아니오	41.3	41.2	15.7	1.9	100.0 (1,404)
2019년	45.8	39.1	13.7	1.4	100.0 (3,055)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비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등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가 64.3%, 보증금 있는 월세는 12.4%, 전세는 11.1%, 무상은 10.1%, 보증금 없는 월세는 2.1%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자가 비율이 감소하고 전세 및 무상 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이용자는 자가가 68.2%, 전세 11.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0.8% 등이었으며, 여성 이용자는 자가 62.8%, 보증금 있는 월세는 13.0%, 전세는 1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9세 이하 이용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90세 이상 이용자는 자가 비율이 67.3%로 다른 연령대의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 자가 비율이 75.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17.7%와 14.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이용자는 자가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이용자는 자가 비율이 각각 67.1%, 67.1%, 그리고 68.4%로 다른 인정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자가 비율이 71.8%와 73.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요양 이용자는 자가 60.5%,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 13.9%, 전세 12.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자가 비율은 66.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1.6%, 전세는 10.6% 등의 순이었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는 자가 비율이 62.0%, 보증금 있는 월세는 13.2%, 전세 11.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9〉 (본인 또는 대리응답)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명)	
전체	64.3	11.1	12.4	2.1	10.1	100.0	(2,687)
성별							
남성	68.2	11.1	10.8	1.5	8.5	100.0	(733)
여성	62.8	11.1	13.0	2.4	10.7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60.7	10.7	14.3	8.9	5.4	100.0	(56)
65~69세	53.4	14.5	17.6	6.1	8.4	100.0	(132)
70~74세	55.6	13.2	21.0	2.9	7.3	100.0	(206)
75~79세	64.6	9.1	15.4	1.6	9.4	100.0	(383)
80~84세	66.8	12.3	11.1	1.3	8.5	100.0	(743)
85~89세	64.4	9.9	11.6	2.5	11.6	100.0	(724)
90세 이상	67.3	10.8	7.9	0.9	13.1	100.0	(443)
지역							
대도시	55.5	16.5	17.7	2.0	8.3	100.0	(974)
중소도시	63.2	11.8	14.6	1.5	9.0	100.0	(824)
농어촌	75.1	4.4	4.6	2.8	13.1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6.8	10.8	17.6	2.7	12.2	100.0	(75)
2등급	67.1	13.2	10.8	1.2	7.8	100.0	(168)
3등급	64.0	11.8	12.4	1.2	10.7	100.0	(672)
4등급	63.9	11.1	11.9	2.8	10.3	100.0	(1,422)
5등급	67.1	8.5	14.2	1.2	9.1	100.0	(331)
인지지원등급	68.4	5.3	21.1	0.0	5.3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60.5	12.2	13.9	2.7	10.6	100.0	(1,823)
방문목욕	71.8	7.0	8.9	1.3	11.1	100.0	(316)
방문간호	65.2	10.9	13.0	2.2	8.7	100.0	(46)
주야간보호	73.1	9.4	9.4	0.6	7.4	100.0	(500)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100.0	(3)
치매 여부							
예	66.7	10.6	11.6	1.7	9.3	100.0	(1,283)
아니오	62.0	11.5	13.2	2.6	10.8	100.0	(1,404)
2019년	67.2	9.2	13.4	2.0	8.3	100.0	(3,055)

주: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현재 거주 공간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분석하면,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은 36.0%,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41.2%,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29.0%,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나 설치가 된 주택은 52.7%,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현관의 폭을 갖춘 주택은 56.1%,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인 주택은 44.8%,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은 10.7%,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은 47.4%로 나타났다.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 재가급여 수급자가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낮았으며, 69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인 재가급여 수급자가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이용자의 안전손잡이 설치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대도시 거주,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2등급과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그리고 치매가 아닌 재가급여 수급자의 주거내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65세 미만과 85~89세 미만인 수급자의 설치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거주,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이용하는 급여유형이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인 재가급여 이용자,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거공간에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 매트, 시트지 등이 설치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85~89세 미만의 수급자,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이 방문요양이거나 방문간호인 수급자의 주택내 미끄럼방지 등이 설치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 59.2%, 여성 54.9%였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62.7%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의 너비를 갖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특성은 남성 46.0%, 여성 44.3%였으며, 연령대와 치매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등에서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의 너비인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남성 10.2%, 여성 10.9%였으며, 65~69세 미만과 85~89세 미만 연령대에서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수급자의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이 14.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11.0%), 방문간호(13.0%)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긴급연락장치 설치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이 51.7%, 여성이 45.8%였으며, 65세 미만(57.1%)과 65~69세 미만(58.8%) 연령대에서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60.8%가 실외 경사로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64.0%가 실외 경사로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외 경사로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 진단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실내 문턱 없음	욕실/화장실 안전손잡이	욕실/화장실 이외 공간의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휠체어 이동 가능한 현관 폭	휠체어 이동가능한 방안 문	긴급 연락 장치	실외 경사로
전체	(2,687)	36.0	41.2	29.0	52.7	56.1	44.8	10.7	47.4
성별									
남성	(733)	41.3	42.3	27.7	52.3	59.2	46.0	10.2	51.7
여성	(1,955)	34.1	40.8	29.5	52.8	54.9	44.3	10.9	45.8
연령대									
65세 미만	(56)	42.9	50.0	32.7	42.9	58.9	46.4	12.5	57.1
65~69세	(132)	42.4	41.7	29.5	52.7	55.3	44.7	15.2	58.8
70~74세	(206)	38.8	41.7	27.7	46.1	55.8	47.1	12.1	51.0
75~79세	(383)	37.5	41.3	26.1	48.6	57.6	43.1	6.5	51.4
80~84세	(743)	37.1	40.6	28.7	52.8	56.6	45.4	10.9	47.2
85~89세	(724)	33.3	41.9	31.8	57.2	54.6	44.9	12.8	44.1
90세 이상	(443)	33.6	39.6	27.3	53.0	56.4	43.6	8.8	43.7
지역									
대도시	(974)	42.7	44.7	33.1	57.2	57.1	44.8	11.1	54.2
중소도시	(824)	38.8	38.5	26.8	52.2	62.7	50.7	10.4	60.8
농어촌	(889)	26.1	39.9	26.4	48.3	48.9	39.1	10.6	27.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	42.7	34.7	34.7	54.7	65.3	58.7	14.7	64.0
2등급	(168)	31.5	48.2	34.3	54.4	64.9	51.2	10.1	54.2
3등급	(672)	44.6	48.4	31.3	56.4	63.3	53.0	11.0	51.0
4등급	(1,422)	33.3	39.9	29.1	52.1	52.3	41.3	10.5	44.7
5등급	(331)	30.6	31.8	20.0	46.8	50.8	36.0	10.6	44.7
인지지원등급	(19)	42.1	15.8	26.3	42.1	63.2	52.6	10.0	52.6
급여유형									
방문요양	(1,823)	37.1	43.3	30.6	54.9	57.0	45.4	11.0	48.3
방문목욕	(316)	25.3	40.3	27.0	44.0	47.3	35.8	9.5	31.3
방문간호	(46)	34.8	43.5	30.4	54.3	61.7	50.0	13.0	50.0
주야간보호	(500)	38.8	34.0	24.0	50.0	57.8	47.6	10.4	54.2
단기보호	(3)	50.0	33.3	33.3	66.7	50.0	50.0	0.0	50.0
치매진단 여부									
예	(1,283)	34.6	39.9	27.3	53.8	53.7	44.0	8.3	45.9
아니오	(1,404)	37.3	42.5	30.5	51.7	58.3	45.5	12.9	48.9
2019년	(3,055)	29.0	-	-	46.7	-	-	-	52.9

주: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나. 일상생활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과 이용자 가족의 대리응답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개월간 처방전에 따른 약 복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문항에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의 88.1%는 처방전에 따라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1~2번은 제 시간에 복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7%, 일주일에 3~4번은 제 시간에 복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1개월간 처방전에 따라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이용자(90.0%)가 여성 이용자(87.3%)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89.4%), 65세 미만(89.8%), 75~79세(89.0%)의 이용자가 제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제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서는 1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96.8%)와 2등급인 이용자(92.1%)가 다른 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90.5%)가 다른 재가급여유형의 이용자에 비해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방문목욕 이용자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 여부에서는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87.0%)가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89.0%)에 비해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3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처방전에 따른 약 복용 현황

(단위: %, 명)

특성	처방전 따라 복용	일주일에 1~2번 제 시간 복용 못함	일주일에 3~4번 제 시간 복용 못함	일주일에 5~6번 제 시간 복용 못함	처방전 따라 거의 복용 못함	복용 약 없음	계(명)	
전체	88.1	6.7	2.4	0.7	1.1	1.0	100.0	(2,518)
성별								
남성	90.0	4.4	3.4	0.6	1.0	0.6	100.0	(703)
여성	87.3	7.6	2.1	0.8	1.2	1.1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89.8	0.0	8.2	0.0	2.0	0.0	100.0	(50)
65~69세	89.4	4.9	.8	1.6	1.6	1.6	100.0	(123)
70~74세	85.7	10.2	.5	2.0	1.5	0.0	100.0	(196)
75~79세	89.0	8.8	1.4	0.3	.6	0.0	100.0	(363)
80~84세	88.0	6.4	2.6	0.9	1.3	0.9	100.0	(699)
85~89세	87.8	6.3	3.5	0.6	.7	1.0	100.0	(680)
90세 이상	88.7	5.4	2.2	0.0	1.2	2.5	100.0	(406)
지역								
대도시	87.6	7.3	2.3	0.4	1.4	1.0	100.0	(922)
중소도시	88.8	6.7	1.7	0.9	.8	1.1	100.0	(758)
농어촌	87.9	6.1	3.2	0.7	1.1	1.0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6.8	1.6	0.0	0.0	0.0	1.6	100.0	(62)
2등급	92.1	1.2	1.2	0.0	3.0	2.4	100.0	(163)
3등급	90.6	4.9	2.4	0.5	.6	1.1	100.0	(635)
4등급	87.0	7.9	2.4	0.9	1.0	0.8	100.0	(1,336)
5등급	83.3	9.5	4.2	0.7	1.6	0.7	100.0	(305)
인지지원등급	75.0	12.5	6.3	0.0	6.3	0.0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87.7	7.1	2.4	0.8	1.0	0.9	100.0	(1,728)
방문목욕	85.8	8.3	2.6	0.3	1.7	1.3	100.0	(303)
방문간호	88.9	6.7	2.2	0.0	0.0	2.2	100.0	(44)
주야간보호	90.5	4.5	2.5	0.5	.9	1.1	100.0	(441)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0.0	100.0	(2)
치매 여부								
예	87.0	7.8	2.9	0.5	1.1	0.7	100.0	(1,171)
아니오	89.0	5.9	2.0	0.8	1.0	1.3	100.0	(1,347)
2019년	86.4	6.7	2.6	0.6	0.9	2.8	100.0	(2,866)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6.1%로 2019년 6.2%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6.5%, 여성 이용자의 6.0%가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5~79세 이용자는 7.4%, 65~69세의 재가급여 이용자가 7.3%로 가장 높았으며, 85~89세 수급자는 5.1%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6.6%로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2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7.4%)의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인정등급이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병의원이나 약국 미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 이용자(6.8%)가 의료기관 미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의료기관 미이용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6.0%,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의 6.2%가 동행인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회 50.3%, 2회 34.8%, 3회 이상 14.9%였으며,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3회 이상 비율이 21.8%에서 14.9%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3회 이상의 비율(16.5%)이 남성 이용자(10.9%)보다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1회가 100.0%로 나타나고, 3회 이상 비율은 85~89세 이용자가 2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1회(63.0%)가 가장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2회(42.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이용자는 1회와 2회 비율이 각각 50.0%였으며, 5등급인 이용자는 1회 비율이 78.6%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급여유형에서 방문간호 이용자는 1회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요양 이용자는 1회 48.7%, 2회 36.8%, 3회 이상 14.5%를 보였다. 치매진단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횟수가 1회인 비율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45.9%로 나타났다.

〈표 3-3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6.1	93.9	100.0 (2,518)
성별			
남성	6.5	93.5	100.0 (703)
여성	6.0	94.0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6.0	94.0	100.0 (50)
65~69세	7.3	92.7	100.0 (123)
70~74세	6.1	93.9	100.0 (196)
75~79세	7.4	92.6	100.0 (363)
80~84세	6.6	93.4	100.0 (699)
85~89세	5.1	94.9	100.0 (680)
90세 이상	5.4	94.6	100.0 (406)
지역			
대도시	6.0	94.0	100.0 (922)
중소도시	6.6	93.4	100.0 (758)
농어촌	6.0	94.0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5	93.5	100.0 (62)
2등급	7.4	92.6	100.0 (163)
3등급	6.3	93.7	100.0 (635)
4등급	6.3	93.7	100.0 (1,336)
5등급	4.6	95.4	100.0 (305)
인지지원등급	6.3	93.8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6.8	93.2	100.0 (1,728)
방문목욕	6.3	93.7	100.0 (303)
방문간호	4.5	95.5	100.0 (44)
주야간보호	3.6	96.4	100.0 (441)
단기보호	0.0	100.0	100.0 (2)
치매 여부			
예	6.0	94.0	100.0 (1,171)
아니오	6.2	93.8	100.0 (1,347)
2019년	6.2	93.8	100.0 (2,866)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표 3-3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횟수

(단위: %, 명)

특성	1회	2회	3회 이상	계(명)
전체	50.3	34.8	14.9	100.0 (155)
성별				
남성	56.5	32.6	10.9	100.0 (46)
여성	47.7	35.8	16.5	100.0 (109)
연령대				
65세 미만	100.0	0.0	0.0	100.0 (3)
65~69세	77.8	22.2	0.0	100.0 (9)
70~74세	46.2	46.2	7.7	100.0 (13)
75~79세	55.6	25.9	18.5	100.0 (27)
80~84세	41.3	45.7	13.0	100.0 (46)
85~89세	52.9	26.5	20.6	100.0 (34)
90세 이상	45.5	36.4	18.2	100.0 (22)
지역				
대도시	63.0	24.1	13.0	100.0 (54)
중소도시	42.0	40.0	18.0	100.0 (50)
농어촌	44.0	42.0	14.0	100.0 (5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0.0	50.0	0.0	100.0 (4)
2등급	50.0	50.0	0.0	100.0 (12)
3등급	46.2	48.7	5.1	100.0 (39)
4등급	47.6	29.8	22.6	100.0 (84)
5등급	78.6	7.1	14.3	100.0 (14)
인지지원등급	100.0	0.0	0.0	100.0 (1)
급여유형				
방문요양	48.7	36.8	14.5	100.0 (117)
방문목욕	52.6	31.6	15.8	100.0 (19)
방문간호	100.0	0.0	0.0	100.0 (2)
주야간보호	56.3	25.0	18.8	100.0 (16)
단기보호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55.7	30.0	14.3	100.0 (70)
아니오	45.9	38.8	15.3	100.0 (85)
2019년	47.7	30.4	21.8	100.0 (177)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 또는 가족이 대리 응답한 2,518명 중 지난 1개월 동안 동행해 줄 사람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5명의 자료를 분석

재가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식사준비(상 차리기, 요리 등) 18.8%, 없음 18.5%, 심리정서적 문제(외로움, 무료함, 불안 등) 14.1%, 외출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남성 이용자가 외출이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성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에 비해 식사 준비, 식사, 가사활동의 어려움을 높게 응답하였다. 65세 미만 이용자는 목욕이나 외출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연령대의 이용자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75~79세 이용자는 통증, 80~84세 이용자는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외출과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식사 준비, 통증, 세면이나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어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외출의 어려움, 2등급 이용자는 통증이 높았으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5%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여유형에서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외출, 통증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1)]

(단위: %, 명)

특성	식사 준비	식사	가사 활동	세면, 화장실	목욕	외출	통증	심리. 정서	기타	없음	계(명)	
전체	18.8	5.4	7.8	5.7	6.0	12.3	9.8	14.1	1.5	18.5	100.0	(2,518)
성별												
남성	14.4	3.8	6.0	7.5	7.4	14.4	9.0	17.1	1.7	18.8	100.0	(703)
여성	20.5	6.0	8.5	5.0	5.5	11.5	10.1	13.0	1.5	18.4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9.8	3.9	3.9	3.9	15.7	19.6	11.8	9.8	3.9	17.6	100.0	(50)
65~69세	19.5	4.1	11.4	3.3	5.7	12.2	10.6	16.3	4.1	13.0	100.0	(123)
70~74세	23.4	3.6	8.1	2.5	6.6	14.7	10.7	10.7	1.5	18.3	100.0	(196)
75~79세	18.1	5.2	6.6	7.4	8.2	14.8	13.5	11.0	0.5	14.6	100.0	(363)
80~84세	20.7	4.9	9.0	4.9	4.3	12.3	8.0	16.1	2.7	17.1	100.0	(699)
85~89세	16.8	6.9	7.8	6.6	5.4	9.3	9.9	13.7	0.4	23.1	100.0	(680)
90세 이상	17.9	5.4	5.9	6.6	6.9	13.0	8.8	15.9	1.0	18.6	100.0	(406)
지역												
대도시	17.5	5.4	8.1	5.1	8.0	12.0	9.1	16.5	1.6	16.6	100.0	(922)
중소도시	18.3	5.8	6.3	5.1	5.1	14.0	8.6	13.5	2.2	21.0	100.0	(758)
농어촌	20.6	4.9	8.8	7.0	4.6	10.8	11.8	12.0	0.8	18.5	100.0	(839)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9.7	6.5	4.8	9.7	11.3	21.0	3.2	16.1	4.8	12.9	100.0	(62)
2등급	9.1	7.9	7.9	10.3	9.7	8.5	13.3	12.1	1.8	19.4	100.0	(163)
3등급	17.6	4.2	5.5	7.2	6.3	14.0	8.5	15.4	1.7	19.6	100.0	(635)
4등급	19.4	5.3	8.4	4.8	6.1	12.9	11.4	13.7	1.4	16.6	100.0	(1,336)
5등급	24.9	6.6	10.8	3.6	2.3	6.9	5.6	13.4	1.0	24.9	100.0	(305)
인지지원등급	25.0	6.3	6.3	0.0	0.0	0.0	6.3	25.0	6.3	25.0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17.1	6.0	7.5	5.3	6.2	12.7	11.4	14.0	1.7	18.2	100.0	(1,728)
방문목욕	21.8	5.3	9.6	9.6	2.3	13.5	9.2	11.6	0.3	16.8	100.0	(303)
방문간호	15.9	4.5	6.8	6.8	6.8	13.6	11.4	15.9	0.0	18.2	100.0	(44)
주야간보호	23.7	3.4	7.7	4.5	7.7	9.7	4.1	16.3	2.0	21.0	100.0	(44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치매 여부												
예	18.9	6.1	7.4	5.5	7.7	10.8	7.3	16.6	1.3	18.4	100.0	(1,171)
아니오	18.5	4.7	8.2	5.9	4.6	13.5	12.1	12.0	1.8	18.6	100.0	(1,347)
2019년[3)]	-		-	-		-	-	-	-	-	-	-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모든 것이 어려움, 두려움, 배우자 또는 가족의 돌봄으로 어려움 없음 등
3) 2019년과 2022년 보기문항 변동폭이 커서 2019년 분석 값은 기입하지 않음(① 식사, ②가사활동, ③일상활동, ④ 외출, ⑤통증, ⑥무료함, ⑦기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시간이나 요일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28.9%였으며, 2019년의 26.8%보다는 다소 높아진 결과이다. 남성 이용자(26.3%)보다는 여성 이용자(29.9%)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높았다. 65세 미만의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을 받은 이용자와 2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각각 1.6%와 4.9%에 불과하였으며, 5등급인 이용자와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이용자는 각각 46.7%와 62.5%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에 따른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방문요양 28.4%, 방문목욕 29.0%, 방문간호 22.2%, 주야간보호 31.7%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33.8%)가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23.3%)에 비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시간이나 요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소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질문하였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 1,790명 중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0%였으며, 배우자 26.2%, 딸 26.2%, 아들 21.1%, 유급 도우미 8.7%, 며느리 7.8%, 기타 6.9%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없음' 비율이 12.0%에서 3.0%로 감소하였으며, 아들과 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평소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성은 배우자가 54.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딸이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79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8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아들이나 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유급 도우미의 활용이 11.4%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이용자는 배우자(51.6%)의 비율이 높았으며, 2등급인 이용자는 배우자(33.5%)와 딸(29.0%)의 비율이 높았다. 5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는 아들과 딸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유형에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였고,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에 비해 딸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3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시간이나 요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 1,734명이 2순위에 대해 응답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들 23.7%, 기타 26.7%, 딸 19.3%, 유급 도우미 12.6%, 며느리 11.2%, 없음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기타(6.9%)는 2순위에서는 2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배우자 비율은 2순위에서는 낮아졌으며, 1순위와 마찬가지로 2순위에서도 아들과 딸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5〉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 외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 여부

(단위: %, 명)

특성	가능	불가능	계(명)
전체	28.9	71.1	100.0 (2,518)
성별			
남성	26.3	73.7	100.0 (703)
여성	29.9	70.1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22.0	78.0	100.0 (50)
65~69세	26.0	74.0	100.0 (123)
70~74세	29.9	70.1	100.0 (196)
75~79세	27.8	72.2	100.0 (363)
80~84세	29.6	70.4	100.0 (699)
85~89세	32.8	67.2	100.0 (680)
90세 이상	23.6	76.4	100.0 (406)
지역			
대도시	27.8	72.2	100.0 (922)
중소도시	26.6	73.4	100.0 (758)
농어촌	32.2	67.8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6	98.4	100.0 (62)
2등급	4.9	95.1	100.0 (163)
3등급	19.3	80.7	100.0 (635)
4등급	33.3	66.7	100.0 (1,336)
5등급	46.7	53.3	100.0 (305)
인지지원등급	62.5	37.5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28.4	71.6	100.0 (1,728)
방문목욕	29.0	71.0	100.0 (303)
방문간호	22.2	77.8	100.0 (44)
주야간보호	31.7	68.3	100.0 (441)
단기보호	0.0	100.0	100.0 (2)
치매 여부			
예	23.3	76.7	100.0 (1,171)
아니오	33.8	66.2	100.0 (1,347)
2019년	26.8	73.2	100.0 (2,866)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표 3-36〉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소 도와주는 사람(1순위)[1)]

(단위: %, 명)

특성	없음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유급 도우미	기타[2)]	계(명)	
전체	3.0	26.2	21.1	7.8	26.2	8.7	6.9	100.0	(1,790)
성별									
남성	2.1	54.2	13.9	4.4	13.1	6.8	5.4	100.0	(518)
여성	3.4	14.8	24.0	9.2	31.6	9.5	7.5	100.0	(1,273)
연령대									
65세 미만	7.7	48.7	5.1	0.0	7.7	12.8	17.9	100.0	(39)
65~69세	3.3	51.1	11.1	3.3	15.6	5.6	10.0	100.0	(90)
70~74세	4.4	53.3	12.4	1.5	11.7	6.6	10.2	100.0	(137)
75~79세	3.8	50.4	14.9	1.9	17.2	4.2	7.6	100.0	(262)
80~84세	3.0	26.6	20.3	8.5	24.2	10.6	6.7	100.0	(492)
85~89세	2.4	12.1	27.2	8.1	32.9	11.8	5.5	100.0	(456)
90세 이상	1.9	4.8	27.3	16.1	39.2	6.1	4.5	100.0	(311)
지역									
대도시	3.3	26.9	16.4	6.5	26.7	11.4	8.9	100.0	(666)
중소도시	3.6	27.0	21.8	7.7	27.4	7.6	4.9	100.0	(555)
농어촌	1.9	24.6	25.9	9.5	24.6	6.7	6.7	100.0	(56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51.6	12.9	9.7	22.6	1.6	1.6	100.0	(62)
2등급	1.3	33.5	13.5	7.1	29.0	11.0	4.5	100.0	(155)
3등급	2.1	30.0	20.3	8.8	25.1	6.6	7.0	100.0	(513)
4등급	3.4	22.5	22.6	7.6	26.0	10.1	7.9	100.0	(890)
5등급	6.7	19.0	27.0	5.5	29.4	6.7	5.5	100.0	(163)
인지지원등급	0.0	16.7	0.0	0.0	50.0	16.7	16.7	100.0	(6)
급여유형									
방문요양	3.7	26.5	20.5	6.7	24.8	10.4	7.4	100.0	(1,236)
방문목욕	1.9	33.6	19.6	9.8	20.6	7.5	7.0	100.0	(214)
방문간호	2.9	34.3	17.1	8.6	28.6	5.7	2.9	100.0	(35)
주야간보호	0.7	19.1	25.1	10.6	35.6	3.3	5.6	100.0	(303)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1.2	22.5	21.1	8.0	34.5	7.1	5.6	100.0	(899)
아니오	4.8	30.1	21.0	7.5	18.0	10.3	8.3	100.0	(891)
2019년	12.0	28.3	16.8	8.3	19.8	8.9	5.8	100.0	(2,098)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1,790명의 자료를 분석
2) 사위, 손자녀, 친인척, 이웃이나 지인 등이 포함됨

〈표 3-37〉 (수급자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소 도와주는 사람(2순위)[1)]

(단위: %, 명)

특성	없음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유급 도우미	기타[2)]	계(명)	
전체	4.2	2.3	23.7	11.2	19.3	12.6	26.7	100.0	(1,734)
성별									
남성	4.7	3.4	28.3	7.7	24.7	10.5	20.8	100.0	(506)
여성	4.0	1.9	21.7	12.6	17.2	13.4	29.2	100.0	(1,229)
연령대									
65세 미만	8.6	8.6	11.4	2.9	25.7	14.3	28.6	100.0	(35)
65~69세	5.7	8.0	26.1	2.3	22.7	14.8	20.5	100.0	(88)
70~74세	6.9	1.5	24.4	5.3	22.1	18.3	21.4	100.0	(131)
75~79세	2.0	3.2	27.5	9.6	22.3	12.7	22.7	100.0	(251)
80~84세	5.2	1.9	22.4	10.3	22.9	12.2	25.2	100.0	(477)
85~89세	2.2	1.8	23.8	16.1	15.9	11.0	29.1	100.0	(446)
90세 이상	5.2	1.0	22.6	12.8	13.8	12.1	32.5	100.0	(305)
지역									
대도시	5.8	2.6	22.6	9.5	19.1	15.1	25.3	100.0	(643)
중소도시	2.4	1.9	25.2	10.6	22.2	11.9	25.7	100.0	(536)
농어촌	4.1	2.5	23.7	13.6	16.7	10.4	29.0	100.0	(55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1	0.0	33.9	4.8	9.7	22.6	21.0	100.0	(62)
2등급	2.6	3.9	27.1	7.7	23.9	15.5	19.4	100.0	(155)
3등급	3.4	2.0	23.2	12.4	19.4	10.6	29.1	100.0	(501)
4등급	4.5	2.7	22.5	10.3	19.4	13.5	27.1	100.0	(861)
5등급	5.3	1.3	23.7	17.8	18.4	7.2	26.3	100.0	(152)
인지지원등급	0.0	0.0	42.9	14.3	0.0	14.3	28.6	100.0	(7)
급여유형									
방문요양	4.5	2.3	22.4	10.3	19.7	14.2	26.6	100.0	(1,190)
방문목욕	2.9	2.4	26.7	12.4	19.0	10.0	26.7	100.0	(210)
방문간호	2.9	2.9	29.4	8.8	17.6	11.8	26.5	100.0	(34)
주야간보호	3.7	2.3	26.1	14.4	18.7	8.0	26.8	100.0	(299)
단기보호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
치매 여부									
예	3.5	2.7	24.0	11.2	16.7	12.3	29.7	100.0	(887)
아니오	5.0	2.0	23.3	11.2	22.1	12.9	23.6	100.0	(848)
2019년	0.7	3.7	29.7	12.1	18.7	12.0	23.0	100.0	(1,471)

주: 1)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 1,790명 중 해당 문항의 2순위까지 응답한 1,734명의 자료를 분석
2) 사위, 손자녀, 친인척, 이웃이나 지인 등이 포함됨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제외한 외출을 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46.1%였으며, 2019년의 45.6%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재가급여 수급자는 지난 1년간 외출한 적이 있는 비율은 42.8%, 여성의 47.4%였으며, 70세 미만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약 50.0% 이상이 외출 경험이 있지만, 75~79세 연령대와 90세 이상 이용자는 외출 경험이 40.0% 초반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외출 경험이 50.1%로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외출 경험은 4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이용자와 2등급인 이용자의 외출 경험은 각각 9.5%와 28.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등급인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의 외출 경험률은 각각 59.3%와 75.0%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자의 외출 경험은 36.4%로 다른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외출 경험은 47.5%,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외출 경험은 44.9%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한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20.8%, 주 1~2회는 23.8%, 월 1~3회는 29.6%, 연 6~11회는 6.2%, 연 4~5회는 6.3%, 연 1~3회는 13.2%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주 3회 이상 비율이 23.0%에 20.8%로 감소한 반면, 월 1~3회 비율이 23.9%에서 29.6%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5세 미만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3회 이상 외출 빈도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연 1~3회 비율은 80~84세 연령대와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외출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대도시 거주 이용자는 월 1~3회 비율이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 1~3회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월 1~3회 비율이 높았으며, 2등급과 3등급인 이용자는 월 1~3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와 5등급인 이용자는 주 1~2회와 월 1~3회의 비율이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급여유형에서는 방문목욕 이용자는 주 3회 이상이 31.9%,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월 1~3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주 3회 이상의 외출 빈도가 22.2%로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주 3회 외출 빈도(1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경험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46.1	53.9	100.0 (2,518)
성별			
남성	42.8	57.2	100.0 (703)
여성	47.4	52.6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44.0	56.0	100.0 (50)
65~69세	51.2	48.8	100.0 (123)
70~74세	49.5	50.5	100.0 (196)
75~79세	40.5	59.5	100.0 (363)
80~84세	48.2	51.8	100.0 (699)
85~89세	47.9	52.1	100.0 (680)
90세 이상	41.4	58.6	100.0 (406)
지역			
대도시	46.7	53.3	100.0 (922)
중소도시	50.1	49.9	100.0 (758)
농어촌	41.8	58.2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5	90.5	100.0 (62)
2등급	28.8	71.2	100.0 (163)
3등급	40.2	59.8	100.0 (635)
4등급	49.4	50.6	100.0 (1,336)
5등급	59.3	40.7	100.0 (305)
인지지원등급	75.0	25.0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44.9	55.1	100.0 (1,728)
방문목욕	38.5	61.5	100.0 (303)
방문간호	36.4	63.6	100.0 (44)
주야간보호	57.1	42.9	100.0 (441)
단기보호	0.0	100.0	100.0 (2)
치매 여부			
예	47.5	52.5	100.0 (1,171)
아니오	44.9	55.1	100.0 (1,347)
2019년	45.6	54.4	100.0 (2,866)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표 3-3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 6~11회	연 4~5회	연 1~3회	계(명)	
전체	20.8	23.8	29.6	6.2	6.3	13.2	100.0	(1,161)
성별								
남성	19.3	27.2	32.9	2.0	7.3	11.3	100.0	(301)
여성	21.4	22.6	28.6	7.7	5.9	13.8	100.0	(860)
연령대								
65세 미만	31.8	27.3	22.7	4.5	9.1	4.5	100.0	(22)
65~69세	17.5	23.8	34.9	4.8	4.8	14.3	100.0	(63)
70~74세	28.9	22.7	30.9	8.2	3.1	6.2	100.0	(97)
75~79세	23.0	27.7	28.4	4.7	2.7	13.5	100.0	(148)
80~84세	22.6	22.8	24.6	6.5	7.1	16.3	100.0	(337)
85~89세	20.2	23.5	32.1	6.1	7.0	11.0	100.0	(327)
90세 이상	11.9	23.2	33.3	6.5	8.9	16.1	100.0	(168)
지역								
대도시	20.0	23.4	34.1	6.5	6.3	9.7	100.0	(431)
중소도시	20.3	26.8	26.8	5.5	5.5	15.0	100.0	(380)
농어촌	22.8	21.1	27.1	6.6	7.1	15.4	100.0	(35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0.0	0.0	0.0	40.0	0.0	40.0	100.0	(5)
2등급	10.9	19.6	34.8	13.0	0.0	21.7	100.0	(46)
3등급	16.0	21.5	34.4	6.6	8.6	12.9	100.0	(256)
4등급	20.9	25.2	28.1	5.5	7.4	12.9	100.0	(659)
5등급	29.3	23.8	27.1	6.1	1.1	12.7	100.0	(181)
인지지원등급	33.3	25.0	41.7	0.0	0.0	0.0	100.0	(12)
급여유형								
방문요양	21.5	25.1	28.6	5.3	6.7	12.8	100.0	(776)
방문목욕	31.9	17.2	25.9	3.4	2.6	19.0	100.0	(116)
방문간호	23.5	23.5	23.5	11.8	5.9	11.8	100.0	(17)
주야간보호	13.5	23.0	34.9	9.9	6.7	11.9	100.0	(252)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19.6	22.0	29.5	8.5	6.7	13.7	100.0	(555)
아니오	22.0	25.5	29.8	4.1	6.0	12.7	100.0	(605)
2019년	23.0	25.2	23.9	5.3	5.7	16.9	100.0	(1,308)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 중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제외한 외출을 한 적이 있는 1,161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간 외출한 적이 있는 1,161명의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주된 외출 목적지를 질문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된 외출 장소는 집주변 골목이나 공원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이나 쇼핑 장소는 18.3%, 가족행사 또는 모임 15.4%, 사회복지기관 7.7%, 종교기관 6.4%, 기타 3.5%, 공공행정기관 1.8%로 나타났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여성 이용자에 비해 집주변 골목이나 공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에 비해 가족행사 또는 가족모임, 사회복지기관과 종교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집주변이나 공원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외식이나 쇼핑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집주변 골목이나 공원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외식이나 쇼핑으로 인한 외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인 이용자는 집주변 골목이나 공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는 외식이나 쇼핑을 위한 외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 방문간호 이용자는 집주변 골목이나 공원의 비율이 5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외식이나 쇼핑을 위한 외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가족모임이나 행사 또는 외식이나 쇼핑을 위한 외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외출 장소

(단위: %, 명)

특성	사회복지기관	공공행정기관	종교기관	집주변 골목·공원	가족 행사 장소	외식·쇼핑	기타[2]	계(명)	
전체	7.7	1.8	6.4	46.9	15.4	18.3	3.5	100.0	(1,161)
성별									
남성	3.3	3.0	6.0	54.3	9.0	21.0	3.3	100.0	(301)
여성	9.2	1.4	6.5	44.3	17.7	17.4	3.6	100.0	(860)
연령대									
65세 미만	18.2	4.5	4.5	36.4	4.5	22.7	9.1	100.0	(22)
65~69세	1.6	4.8	3.2	55.6	15.9	17.5	1.6	100.0	(63)
70~74세	11.2	0.0	9.2	50.0	8.2	14.3	7.1	100.0	(97)
75~79세	7.5	0.0	5.4	56.5	10.9	15.6	4.1	100.0	(148)
80~84세	8.6	3.0	7.1	43.2	17.8	17.2	3.3	100.0	(337)
85~89세	7.3	1.5	7.0	45.3	15.3	19.6	4.0	100.0	(327)
90세 이상	5.4	1.8	4.2	44.6	20.2	22.6	1.2	100.0	(168)
지역									
대도시	7.2	1.2	5.1	51.0	16.9	16.0	2.6	100.0	(431)
중소도시	5.0	1.6	8.2	45.5	15.5	19.2	5.0	100.0	(380)
농어촌	11.1	2.9	6.3	43.1	13.4	20.0	3.1	100.0	(35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60.0	40.0	0.0	0.0	100.0	(5)
2등급	0.0	4.3	4.3	59.6	14.9	8.5	8.5	100.0	(46)
3등급	2.0	1.6	5.9	44.9	19.1	21.1	5.5	100.0	(256)
4등급	10.2	2.1	6.4	46.1	15.2	17.1	2.9	100.0	(659)
5등급	8.3	0.0	8.8	48.6	11.0	20.4	2.8	100.0	(181)
인지지원등급	8.3	0.0	0.0	50.0	8.3	33.3	0.0	100.0	(12)
급여유형									
방문요양	7.0	1.6	6.6	49.1	14.7	16.8	4.3	100.0	(776)
방문목욕	12.9	3.4	4.3	52.6	10.3	14.7	1.7	100.0	(116)
방문간호	6.3	0.0	6.3	56.3	6.3	25.0	0.0	100.0	(17)
주야간보호	7.1	2.0	6.7	37.7	20.2	24.2	2.0	100.0	(252)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5.4	1.4	7.0	46.0	16.0	20.0	4.1	100.0	(555)
아니오	9.7	2.1	5.8	47.7	14.9	16.8	3.0	100.0	(605)
2019년	9.2	-	10.0	47.6	-	22.0	11.2	100.0	(1,308)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 중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제외한 외출을 한 적이 있는 1,161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는 '공공행정기관(17명, 1.3)'을 포함한 수치이며, 비동거 가족이나 친인척 집, 나들이 등이 해당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으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8.0%, 현물지원은 17.4%, 식사 지원은 9.4%, 보건의료서비스는 7.7%, 이동지원 4.7%, 주거 지원 2.6%, 여가지원 0.6%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8.4%였으며, 75세 미만 이용자에서 현금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서는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금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이용자의 비율이 각각 8.7%와 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지원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여성이 18.4%로 남성의 14.9%보다 다소 높았으며, 65세 미만과 70~74세 연령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용자와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물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65~69세 및 70~74세 연령대의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식사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서는 4등급인 이용자와 5등급인 이용자가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보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가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보다 식사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복지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 이용자는 8.1%, 여성 이용자는 7.5%였으며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14.3%, 65~69세 이용자 9.8%, 70~74세 이용자가 9.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8.5%)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5등급인 이용자와 인지지원등급 이용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유형에서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비율이 10.2%로 높았으며, 치매의 진단 여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비율은 7.6%와 7.8%로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를 보면, 남성 이용자의 6.0%, 여성 이용자의 4.2%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이용자가 1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0~74세 이용자 6.6%, 80~84세 이용자 4.9%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이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낮았으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방문간호 이용자,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4.8%) 집단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남성 이용자는 1.7%, 여성 이용자는 2.9%였으며 65세 미만과 65~69세 연령대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주거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이용자, 그리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이용자의 집단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치매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2.4%,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의 2.7%가 지역사회로부터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로부터 여가지원서비스를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의 0.6%, 여성 이용자의 0.6%였으며, 65세 미만 이용자의 4.0%,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의 6.3%가 여가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4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또는 복지기관의 지원[1)]

(단위: %, 명)

특성	응답 사례수	현금 지원[2)]	현물 지원[3)]	식사 지원[4)]	보건의료 서비스	이동 지원[5)]	주거 지원[6)]	여가지원
전체	(2,518)	8.0	17.4	9.4	7.7	4.7	2.6	0.6
성별								
남성	(703)	7.0	14.9	8.7	8.1	6.0	1.7	0.6
여성	(1,815)	8.4	18.4	9.7	7.5	4.2	2.9	0.6
연령대								
65세 미만	(50)	10.0	32.0	8.2	14.3	12.0	6.0	4.0
65~69세	(123)	12.1	19.5	15.3	9.8	4.8	4.9	0.8
70~74세	(196)	11.2	22.4	14.3	9.7	6.6	1.5	0.0
75~79세	(363)	6.6	15.7	8.8	7.2	4.7	3.9	0.8
80~84세	(699)	8.2	17.0	8.3	7.4	4.9	1.0	0.6
85~89세	(680)	7.1	17.8	9.1	7.5	4.0	2.6	0.0
90세 이상	(406)	8.1	14.3	8.4	6.4	3.9	3.4	0.0
지역								
대도시	(922)	9.5	18.8	11.9	7.3	3.1	2.0	0.5
중소도시	(758)	6.5	14.5	7.7	7.3	6.2	2.4	0.4
농어촌	(839)	7.8	18.5	8.2	8.5	4.9	3.5	0.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2)	1.6	7.9	8.1	1.6	12.7	0.0	0.0
2등급	(163)	2.4	13.4	6.1	6.7	9.8	0.0	0.0
3등급	(635)	7.5	12.9	7.1	5.3	5.7	2.0	0.3
4등급	(1,336)	9.1	19.6	10.7	8.1	3.7	3.1	0.9
5등급	(305)	8.9	21.3	11.1	12.5	2.6	2.6	0.0
인지지원등급	(15)	0.0	20.0	0.0	13.3	6.3	12.5	6.3
급여유형								
방문요양	(1,728)	8.7	18.6	10.4	7.8	5.2	2.4	0.6
방문목욕	(303)	8.3	21.8	10.6	10.2	5.9	4.0	0.7
방문간호	(44)	8.9	24.4	11.1	6.8	6.7	4.4	0.0
주야간보호	(441)	5.0	9.3	4.5	5.9	1.8	2.3	0.7
단기보호	(2)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1,171)	7.2	16.8	8.4	7.6	4.4	2.4	0.3
아니오	(1,347)	8.8	18.0	10.3	7.8	4.8	2.7	0.8
2019년	(2,866)	5.1	12.5	6.1	12.3	3.4	2.8	1.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2) 현금지원: 후원금, 냉난방비 등을 의미하며, 기초연금은 제외
3) 현물지원: 쌀, 생필품 등
4) 식사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5) 이동지원: 차량지원, 무료 택시 등
6) 주거지원: 도배, 장판, 주택개조 등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이 가능한 1,526명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6.5%,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비율은 1.8%,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등을 경험한 비율은 0.3%, 다른 사람이 수급자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0.6%,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이용자는 0.5%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응답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의 3.4%, 여성 이용자의 3.3%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이 12.1%, 65~69세 이용자는 4.1%, 70~74세 이용자는 3.6%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타인의 의견 무시나 대화 기피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2.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3.0%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별로는 1등급인 이용자의 9.5%,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의 11.1% 등이 타인의 의견 무시나 대화 기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목욕 이용자의 3.3%, 방문요양 이용자의 3.2%, 방문간호 이용자의 4.5%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3%, 치매 질환이 없는 이용자는 3.5%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의 8.6%, 여성 이용자의 5.8%였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의 18.2%, 75~79세 이용자의 8.6%, 65~69세 이용자의 8.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8.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5.3%,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6.2%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과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치매 여부에 따른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비율은 남성 2.2%, 여성 1.6%였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6.1%)의 언어적 학대 경험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농어촌 거주 수급자에 비해 언어적 학대에 노출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4등급과 5등급인 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유형에서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4.5%가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등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재가급여 수급자의 0.3%였으며 남성 이용자가 0.5%로 여성 이용자 0.3%보다 높았으며, 80~84세 연령대, 주야간보호 이용자 계층에서 성적 학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응답자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0.6%였으며, 남성의 1.0%, 여성의 0.4%로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80~84세 1.5%, 85~89세 0.7%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0.7%, 중소도시 0.2%, 농어촌 지역 0.9%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1.2%가 신체적 학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가 있는 이용자의 0.9%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0.5%였으며, 70~74세 이용자의 1.4%,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인 이용자의 0.7%,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2〉 (본인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 경험

(단위: %, 명)

특성	응답 사례수	의견무시나 대화 기피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전체	(1,526)	3.4	6.5	1.8	0.3	0.6	0.5
성별							
남성	(407)	3.4	8.6	2.2	0.5	1.0	0.5
여성	(1,118)	3.3	5.8	1.6	0.3	0.4	0.4
연령대							
65세 미만	(33)	12.1	18.2	6.1	0.0	0.0	0.0
65~69세	(73)	4.1	8.2	4.1	0.0	0.0	0.0
70~74세	(139)	3.6	8.6	4.3	0.0	0.0	1.4
75~79세	(234)	3.8	7.3	1.3	0.0	0.0	0.0
80~84세	(409)	3.4	4.4	2.0	0.7	1.5	0.7
85~89세	(416)	3.1	7.7	0.5	0.5	0.7	0.5
90세 이상	(222)	1.8	4.1	1.4	0.0	0.0	0.0
지역							
대도시	(539)	4.6	8.0	2.0	0.2	0.7	0.6
중소도시	(419)	2.4	5.3	2.4	0.2	0.2	0.2
농어촌	(569)	3.0	6.2	1.2	0.5	0.9	0.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1)	9.5	0.0	0.0	0.0	0.0	0.0
2등급	(63)	1.6	4.8	0.0	0.0	0.0	0.0
3등급	(344)	2.6	4.1	0.9	0.0	0.0	0.0
4등급	(894)	3.4	7.3	2.1	0.4	0.7	0.7
5등급	(194)	4.6	9.3	2.6	0.5	1.5	0.5
인지지원등급	(9)	11.1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방문요양	(1,050)	3.2	7.3	1.5	0.2	0.6	0.4
방문목욕	(212)	3.3	5.6	1.4	0.5	0.5	0.5
방문간호	(22)	4.5	4.5	4.5	0.0	0.0	0.0
주야간보호	(241)	4.6	4.1	2.9	0.8	1.2	0.8
단기보호	(1)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542)	3.3	6.1	1.7	0.2	0.9	0.2
아니오	(894)	3.5	6.8	1.9	0.4	0.5	0.6
2019년	(1,312)	6.7	10.5	-	-	1.7	-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이 응답한 1,526명의 자료를 분석
2)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경제적 학대 문항은 2022년 신규 문항임

건강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경우 거주지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에 대해 본인응답이 가능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질문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49.8%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28.7%, 요양병원 입원 17.8%, 자녀 또는 친인척의 집으로 이사는 3.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응답 형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대에서는 일정한 응답의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응답자는 농어촌 거주 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76.2%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인 이용자의 경우, 자녀 또는 친인척의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비율이 1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이용 유형별 특성을 보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39.4%)과 자녀 또는 친인척의 집으로 이하겠다는 응답(8.7%)이 타 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33.0%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52.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3〉 (본인응답) 건강악화 시 거주지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 계속 거주	자녀 또는 친인척 집으로 이사	노인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	계(명)	
전체	49.8	3.7	28.7	17.8	100.0	(1,526)
성별						
남성	49.0	2.7	28.9	19.4	100.0	(408
여성	50.1	4.1	28.5	17.3	100.0	(1,118)
연령대						
65세 미만	45.5	6.1	18.2	30.3	100.0	(33)
65~69세	43.1	0.0	34.7	22.2	100.0	(73)
70~74세	54.0	5.0	20.1	20.9	100.0	(139)
75~79세	44.4	4.3	28.2	23.1	100.0	(234)
80~84세	57.7	2.2	27.1	13.0	100.0	(409)
85~89세	45.0	5.3	32.0	17.8	100.0	(416)
90세 이상	50.0	3.2	31.1	15.8	100.0	(222)
지역						
대도시	49.1	3.3	27.9	19.7	100.0	(539)
중소도시	48.7	5.5	25.5	20.3	100.0	(419)
농어촌	51.2	2.8	31.9	14.1	100.0	(56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6.2	0.0	14.3	9.5	100.0	(21)
2등급	58.7	6.3	12.7	22.2	100.0	(63)
3등급	40.9	2.9	35.9	20.3	100.0	(344)
4등급	52.3	3.8	27.5	16.4	100.0	(894)
5등급	47.9	4.6	27.8	19.6	100.0	(194)
인지지원등급	50.0	12.5	25.0	12.5	100.0	(9)
급여유형						
방문요양	52.7	2.8	26.5	18.0	100.0	(1,049)
방문목욕	54.0	2.8	27.7	15.5	100.0	(213
방문간호	54.5	4.5	22.7	18.2	100.0	(22)
주야간보호	32.8	8.7	39.4	19.1	100.0	(24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44.1	5.0	33.0	17.9	100.0	(542)
아니오	52.9	3.0	26.3	17.8	100.0	(894)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이 응답한 1,526명의 자료를 분석

2. 재가급여 이용현황

가. 급여이용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보면,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 24.3%, 기관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 14.7%,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4.5%, 물리적 환경 12.6%, 인력수준 11.8%, 비용 11.0%, 전문서비스 6.9%, 기타 4.1%로 나타났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여성 이용자에 비해 평판이나 평가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 수급자는 인력수준을 남성 이용자에 비해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판이나 평가, 인력수준을 우선시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전문서비스를 우선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이용자는 비용과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을 우선시하였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이용자는 인력수준이나 평가나 평판을 우선시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인 이용자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지인의 소개나 추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집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으며, 방문간호는 비용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다른 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나 추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4〉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1)]

(단위: %, 명)

특성	비용	물리적 환경	인력 수준	평판·평가	거리	소개 및 추천	전문서비스	기타[2)]	계(명)	
전체	11.0	12.6	11.8	14.7	14.5	24.3	6.9	4.1	100.0	(2,518)
성별										
남성	11.1	12.0	9.7	18.9	14.8	22.2	7.0	4.3	100.0	(703)
여성	11.0	12.9	12.7	13.0	14.4	25.1	6.9	4.1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8.2	14.3	6.1	18.4	16.3	26.5	6.1	4.1	100.0	(50)
65~69세	17.9	11.4	13.0	9.8	14.6	22.0	7.3	4.1	100.0	(123)
70~74세	15.8	11.2	6.6	17.9	11.2	24.5	7.1	5.6	100.0	(196)
75~79세	11.0	10.5	13.5	16.6	12.4	23.8	6.6	5.5	100.0	(363)
80~84세	10.4	12.0	14.3	13.4	15.7	23.1	7.4	3.6	100.0	(699)
85~89세	11.0	14.0	9.3	13.7	15.1	26.8	5.9	4.3	100.0	(680)
90세 이상	7.9	13.8	13.3	16.5	14.5	23.2	7.9	3.0	100.0	(406)
지역										
대도시	10.0	11.6	14.3	17.2	12.6	24.6	5.0	4.7	100.0	(922)
중소도시	11.8	13.5	9.6	12.8	14.4	25.8	6.2	5.9	100.0	(758)
농어촌	11.3	12.9	11.1	13.6	16.9	22.6	9.7	1.9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6.1	11.3	9.7	12.9	12.9	29.0	3.2	4.8	100.0	(62)
2등급	8.0	8.6	16.6	19.6	15.3	18.4	6.7	6.7	100.0	(163)
3등급	10.5	12.1	14.0	16.5	14.0	23.7	4.7	4.4	100.0	(635)
4등급	11.5	12.4	11.3	13.4	16.3	23.8	7.3	3.9	100.0	(1,336)
5등급	10.5	16.8	7.9	14.1	7.2	30.6	9.9	3.0	100.0	(305)
인지지원등급	0.0	20.0	6.7	6.7	33.3	13.3	13.3	6.7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11.4	9.4	13.0	15.3	14.1	25.7	7.1	4.1	100.0	(1,728)
방문목욕	11.5	8.5	11.5	15.1	11.8	29.8	8.2	3.6	100.0	(303)
방문간호	15.6	8.9	13.3	13.3	11.1	24.4	8.9	4.4	100.0	(44)
주야간보호	8.8	28.1	7.5	12.2	18.6	14.9	5.2	4.8	100.0	(44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치매 여부										
예	9.9	15.2	11.9	14.5	15.6	20.6	7.7	4.6	100.0	(1,171)
아니오	12.0	10.4	11.8	14.8	13.6	27.5	6.2	3.7	100.0	(1,347)
2019년[3)]	11.4	6.4	26.1	5.6	10.1	34.7	-	5.8	100.0	(1,312)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규모, 운영주체 등이 포함됨
3) 2019년 조사에서는 '본인 응답'만 가능한 문항이었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응답 허용 범위가 '본인과 가족'으로 변경되어 2019년 결과와 2022년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인요양보호사 이용현황과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현황을 질문하였다. 방문요양 이용률은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2,687명) 대비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 이용자 비율로 가족인요양보호사 이용자와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자, 그리고 중복 이용자를 모두 합한 값이다. 가족인요양보호사 및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자는 32명으로 재가급여 수급자의 1.2%에 해당된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 이용률은 77.8%로 2019년 79.3%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76.5%, 여성 78.3%였으며, 7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83~84% 수준으로 75세 이상 이용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방문요양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의 방문요양 이용률은 97.3%이며, 5등급은 57.4%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보다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은 18.3%였으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남성 수급자는 27.6%, 여성 14.8%였으며, 65세 미만 이용자가 36.4%, 70~74세 이용자 23.8% 등으로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과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한 일수는 월 평균 20.1일이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1시간으로 나타났다.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의 59.5%로 남성은 48.9%, 여성은 63.5%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연령대와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70.0%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일수는 평균 16.8일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한달 평균 이용일수가 19.4일로 다른 인정등급을 받은 이용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루 평균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2.9시간으로 성별이나 연령대, 그리고 치매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수급자에 비해 하루 평균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수급자는 하루 평균 3.3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 이용 현황[1)]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재가급여 전체 이용자 수	방문요양 이용률[2)]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용			일반요양보호사 이용		
			이용률	평균 이용일수[3)]	평균 이용시간[3)]	이용률	평균 이용일수[3)]	평균 이용시간[3)]
전체 백분율	100.0	77.8	18.3	20.1	1.1	59.5	16.8	2.9
(사례수)	(2,687)	(2,091)						
성별								
남성	(733)	76.5	27.6	21.2	1.1	48.9	17.1	2.8
여성	(1,955)	78.3	14.8	19.3	1.1	63.5	16.7	2.9
연령대								
65세 미만	(56)	83.6	36.4	14.6	1.1	47.3	15.8	2.9
65~69세	(132)	84.8	20.5	17.6	1.1	64.4	17.0	3.0
70~74세	(206)	84.5	23.8	23.0	1.1	60.7	16.4	2.8
75~79세	(383)	73.9	22.5	23.6	1.2	51.4	16.9	2.8
80~84세	(743)	75.8	14.5	19.6	1.1	61.2	16.7	2.9
85~89세	(724)	77.2	14.8	19.2	1.1	62.5	16.8	2.8
90세 이상	(443)	79.5	21.4	18.9	1.1	58.0	17.1	2.8
지역								
대도시	(974)	80.3	21.6	20.4	1.1	58.7	16.6	3.0
중소도시	(824)	73.3	20.4	19.0	1.2	52.9	16.9	2.9
농어촌	(889)	79.3	12.8	21.1	1.1	66.5	17.0	2.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	97.3	29.3	20.9	1.1	68.0	19.4	3.3
2등급	(168)	87.0	28.6	20.5	1.1	58.3	16.7	3.3
3등급	(672)	82.3	23.4	20.9	1.1	58.9	16.8	2.9
4등급	(1,422)	79.3	16.5	19.8	1.1	62.9	16.9	2.8
5등급	(331)	57.4	9.1	17.0	1.1	48.3	15.4	2.7
인지지원등급	(19)	0.0	0.0			0.0		
치매 여부								
예	(1,283)	68.7	20.7	20.1	1.1	47.9	16.6	2.9
아니오	(1,404)	86.1	16.1	20.1	1.1	70.0	16.9	2.9
2019년	(3,055)	79.3	-	-	-	-	-	-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방문요양 이용률: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대비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 이용자 비율로 가족인요양보호사 이용자와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자, 그리고 중복 이용자를 모두 합한 값임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전체의 21.8%였으며 남성 24.3%, 여성 20.9%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방문목욕 이용률이 20% 이상이며,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인 이용자의 26.7%, 2등급인 이용자의 31.0%, 3등급인 이용자의 22.0%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 여부에 따라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20.0%,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23.4%가 방문목욕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을 이용한 일수는 평균 3.4일로 여성보다는 남성 수급자의 이용일수가 다소 많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이용일수가 3.7일로 다른 인정등급인 수급자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방문목욕 이용시간은 1.0시간으로 성별, 연령대, 지역,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 여부 등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9%였으며,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4.5%,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3.6%였다. 65~69세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6.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4.3%로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24.0%로 월등히 높았으며, 치매 여부에 따른 방문간호 이용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달 평균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일수는 평균 4.0일이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인 이용자는 6.5일로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한달 평균 2.9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방문간호 이용시간은 0.7시간으로 70~74세 연령대와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를 제외하고 1회 평균 1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 동안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20.5%였으며,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19.0%,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21.1%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75세 이상인 집단에서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20%를 상회하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26.0%로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의 재가급여 이용자는 17.0%만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서는 인지지원 등급 100.0%, 5등급 41.1%, 4등급 19.4% 등으로 나타났으며,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31.0%로 치매가 없는 재

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이용률 11.0%보다 높았다.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일수는 평균 18.0일로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17.8일,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18.0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한달 평균 20.1일을 이용하였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28.0일을 이용하였으며, 인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한달 평균 12.5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8.1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4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 이용 현황[1)]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재가급여 전체 이용자 수	방문목욕 이용률[2)]	평균 이용일수[3)]	평균 이용시간[3)]
전체	백분율	100.0	21.8	3.4	1.0
	(사례수)	(2,687)	(585)	(585)	(585)
성별					
	남성	(733)	24.3	3.5	1.0
	여성	(1,955)	20.9	3.2	1.0
연령대					
	65세 미만	(56)	17.9	3.5	1.1
	65~69세	(132)	13.6	3.1	1.0
	70~74세	(206)	15.0	3.5	1.0
	75~79세	(383)	21.7	3.6	1.1
	80~84세	(743)	25.5	3.2	1.0
	85~89세	(724)	21.0	3.3	1.0
	90세 이상	(443)	23.0	3.3	0.9
지역					
	대도시	(974)	12.6	3.4	0.9
	중소도시	(824)	14.8	3.5	1.1
	농어촌	(889)	38.4	3.2	1.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	26.7	3.7	1.0
	2등급	(168)	31.0	3.5	1.0
	3등급	(672)	22.0	3.5	1.0
	4등급	(1,422)	21.6	3.3	1.0
	5등급	(331)	17.8	3.0	0.9
	인지지원등급	(19)	0.0	0.0	0.0
치매 여부					
	예	(1,283)	20.0	3.3	1.0
	아니오	(1,404)	23.4	3.4	1.0
2019년		(3,055)	22.1	3.5	1.1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방문목욕 이용률: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대비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 이용자 비율임
3)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 평균 이용일수, 이용시간은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있는 585명의 자료를 분석함
4) 괄호 안은 명수를 의미함

〈표 3-4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 이용 현황[1)]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재가급여 전체 이용자 수	방문간호 이용률[2)]	평균 이용일수[3)]	평균 이용시간[3)]
전체	백분율	100.0	3.9	4.0	0.7
	(사례수)	(2,687)	(105)	(105)	(105)
성별					
	남성	(733)	4.5	4.0	0.8
	여성	(1,955)	3.6	4.0	0.7
연령대					
	65세 미만	(56)	1.8	4.3	0.8
	65~69세	(132)	6.9	4.8	0.4
	70~74세	(206)	4.4	4.7	1.2
	75~79세	(383)	3.9	4.4	0.4
	80~84세	(743)	3.6	4.0	0.7
	85~89세	(724)	3.7	3.7	0.9
	90세 이상	(443)	3.6	3.2	0.6
지역					
	대도시	(974)	4.3	4.3	0.7
	중소도시	(824)	3.8	3.8	0.8
	농어촌	(889)	3.5	3.9	0.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	24.0	2.9	0.6
	2등급	(168)	8.3	4.5	0.7
	3등급	(672)	4.8	4.4	0.6
	4등급	(1,422)	2.4	3.5	0.8
	5등급	(331)	2.1	6.5	1.2
	인지지원등급	(19)	0.0	0.0	0.0
치매 여부					
	예	(1,283)	3.8	4.2	0.8
	아니오	(1,404)	4.0	3.8	0.6
2019년		(3,055)	4.4	5.0	0.9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방문간호 이용률: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대비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 이용자 비율임
3)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 평균 이용일수, 이용시간은 방문간호 이용자 105명의 자료를 분석함
4) 괄호 안은 명수를 의미함

〈표 3-4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야간보호 이용 현황[1)]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재가급여 전체 이용자 수	주야간보호 이용률[2)]	평균 이용일수[3)]	평균 이용시간[3)]
전체	백분율	100.0	20.5	18.0	8.1
	(사례수)	(2,687)	(552)	(552)	(552)
성별					
	남성	(733)	19.0	17.8	8.10
	여성	(1,955)	21.1	18.0	8.15
연령대					
	65세 미만	(56)	18.2	20.1	7.85
	65~69세	(132)	14.4	17.0	8.03
	70~74세	(206)	14.1	14.9	7.71
	75~79세	(383)	21.1	17.1	8.17
	80~84세	(743)	22.3	17.8	8.18
	85~89세	(724)	21.5	18.5	8.13
	90세 이상	(443)	20.3	18.9	8.25
지역					
	대도시	(974)	19.2	17.9	8.24
	중소도시	(824)	26.0	17.5	8.06
	농어촌	(889)	17.0	18.7	8.1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	0.0	28.0	8.00
	2등급	(168)	7.7	18.3	8.26
	3등급	(672)	16.2	17.6	8.13
	4등급	(1,422)	19.4	17.9	8.14
	5등급	(331)	41.1	19.1	8.21
	인지지원등급	(19)	100.0	12.5	7.65
치매 여부					
	예	(1,283)	31.0	18.1	8.19
	아니오	(1,404)	11.0	17.5	8.01
2019년		(3,055)	19.9	20.4	8.3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2) 주야간보호이용률: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대비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 이용자 비율임
3)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평균 일수, 이용시간은 주야간보호 이용자 552명의 자료를 분석함
4) 괄호 안은 명수를 의미함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22.2%였으며,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미이용률이 높았으며, 75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미이용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미이용률이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낮을수록 방문요양 미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방문요양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인지율은 76.5%였으며, 65세 미만과 70~74세 연령대,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집단에서 방문요양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방문요양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8.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9세 미만 연령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그리고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요양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목욕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78.2%였으며, 7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목욕 미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목욕 인지율은 66.9%로 방문요양 인지율 76.5%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방문목욕 인지율은 65~69세 연령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그리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39.1%가 향후 방문목욕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 의향이 높았으며, 65세 미만과 70~79세 연령대인 재가급여 이용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집단에서 방문목욕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미이용자 현황[1)]

(단위: %, 명)

특성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 미이용자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 미이용자		
		미이용률	방문요양 인지율[1)]	향후 이용의향[1)]	미이용률	방문목욕 인지율[2)]	향후 이용의향[2)]
전체	백분율	22.2	76.5	48.6	78.2	66.9	39.1
	(사례수)	(597)	(456)	(290)	(2,102)	(1,407)	(822)
성별							
	남성	23.5	74.4	51.2	75.7	66.3	41.1
	여성	21.7	77.4	47.6	79.1	67.2	38.4
연령대							
	65세 미만	16.4	66.7	55.6	82.1	68.9	43.5
	65~69세	15.2	85.0	57.9	86.4	71.7	33.3
	70~74세	15.5	65.6	40.6	85.0	63.4	44.6
	75~79세	26.1	76.0	51.0	78.3	65.7	41.7
	80~84세	24.2	78.3	46.4	74.5	67.6	39.5
	85~89세	22.8	76.4	49.1	79.0	67.0	38.0
	90세 이상	20.5	75.8	49.5	77.0	66.9	36.5
지역							
	대도시	19.7	76.6	45.1	87.4	63.7	35.3
	중소도시	26.7	75.9	47.7	85.2	66.0	40.6
	농어촌	20.7	76.8	53.5	61.6	73.2	43.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7	50.0	0.0	73.3	73.2	38.2
	2등급	13.0	85.7	42.9	69.0	68.1	38.8
	3등급	17.7	77.5	51.3	78.0	64.8	42.0
	4등급	20.7	75.8	48.6	78.4	67.0	36.4
	5등급	42.6	77.3	48.2	82.2	68.8	45.2
	인지지원등급	100.0	68.4	42.1	100.0	68.4	31.6
치매 여부							
	예	31.3	76.1	45.5	80.0	67.9	41.7
	아니오	13.9	77.3	54.9	76.6	66.0	36.7
2019년		20.7	72.0	36.8	77.9	68.9	37.5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 미이용자 597명의 자료를 분석
2)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목욕 미이용자 2,102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96.1%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그리고 치매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방문간호 미이용률이 7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인지율은 54.3%로 69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70~74세 연령대의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인지율은 47.0%로 가장 낮았다.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향후 방문간호 이용 의향은 41.9%였으며, 성별, 거주지역, 그리고 치매 여부에 따라는 방문간호 이용 의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65~69세 그리고 9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지난 1개월 동안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79.5%였으며,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81.0%, 여성 수급자는 78.9%로 나타났다. 75세 미만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미이용률이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미이용률이 높게 분석되었다. 주야간보호 인지율은 60.9%였으며, 성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 여부에 따른 주야간보호 인지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65~69세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인지율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인지율은 57.9%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향후 주야간보호 이용 의향은 32.6%였으며,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는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이용 의향이 높았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와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향후 주야간보호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미이용자 현황[1)]

(단위: %, 명)

특성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 미이용자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 미이용자		
		미이용률	방문간호 인지율[2)]	향후 이용의향[2)]	미이용률	주야간보호 인지율[2)]	향후 이용의향[2)]
전체	백분율	96.1	54.3	41.9	79.5	60.9	32.6
	(사례수)	(2,583)	(1,404)	(1,082)	(2.135)	(1,301)	(696)
성별							
	남성	95.5	53.6	41.8	81.0	60.0	30.7
	여성	96.4	54.6	41.9	78.9	61.3	33.4
연령대							
	65세 미만	98.2	60.0	48.1	81.8	68.9	37.0
	65~69세	93.1	61.5	33.6	85.6	70.8	26.8
	70~74세	95.6	47.0	45.2	85.9	53.7	32.8
	75~79세	96.1	52.4	46.7	78.9	61.6	32.8
	80~84세	96.4	56.4	42.2	77.7	63.2	34.2
	85~89세	96.3	55.6	41.9	78.5	60.1	34.4
	90세 이상	96.4	51.2	37.1	79.7	57.5	28.3
지역							
	대도시	95.7	54.7	41.4	80.8	57.9	32.3
	중소도시	96.2	57.0	42.2	74.0	62.3	30.5
	농어촌	96.5	51.5	42.1	83.0	63.1	3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6.0	59.6	42.1	100.0	64.0	38.7
	2등급	91.7	53.9	45.2	92.3	62.8	33.3
	3등급	95.2	57.0	46.1	83.8	61.9	32.4
	4등급	97.6	52.5	40.0	80.6	60.0	32.1
	5등급	97.9	55.7	40.7	58.9	61.0	33.8
	인지지원등급	100.0	57.9	36.8	0.0	0.0	0.0
치매 여부							
	예	96.2	55.3	42.6	69.0	61.4	32.8
	아니오	96.0	53.4	41.2	89.0	60.6	32.5
2019년		95.6	54.9	38.9	80.1	56.5	26.1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간호 미이용자 2,583명의 자료를 분석
2)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중 주야간보호 미이용자 2,135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간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0.8%에 불과하였으며,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단기보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연령대를 보면 65세 미만이 1.8%, 65~69세 3.0%, 70~74세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1.3%가 단기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와 4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단기보호 이용률은 각각 2.7%와 1.1%였으며,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단기보호 이용률은 0.9%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단기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총 이용 횟수는 2.6회이었으며, 80~84세와 9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의 총 이용 횟수는 3.4회와 3.5회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총 이용횟수는 4.0회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와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 횟수가 각각 6.7회와 4.8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간 단기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총 이용일수는 16.1일로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7.7일,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23.5일로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 일수가 월등히 많았다.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평균 48.5일, 70~74세 27.3일, 90세 이상 20.2일 등을 이용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평균 27.3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47.0일,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35.2일 등을 이용하였으며,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평균 17.0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기보호급여에 대한 인지율과 향후 이용 의향을 질문하였다. 지난 1년간 단기보호급여 미이용자의 27.8%는 단기보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향후 이용 의향은 30.5%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연령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단기보호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단기보호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할 의향은 9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단기보호급여 이용 여부[1)]

(단위: %, 명)

특성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한적 없음		계(명)	
	이용률	총이용 횟수	총이용 일수	단기보호 인지율	향후 이용의향		
전체	0.8	2.6	16.1	27.8	30.5	100.0	(2,687)
성별							
남성	1.4	2.6	7.7	30.0	30.6	100.0	(733)
여성	0.6	2.8	23.5	26.9	30.4	100.0	(1,955)
연령대							
65세 미만	1.8	2.9	48.5	30.9	29.1	100.0	(56)
65~69세	3.0	1.5	4.3	30.7	28.1	100.0	(132)
70~74세	1.0	3.6	27.3	26.0	31.9	100.0	(206)
75~79세	0.5	1.4	14.4	28.1	30.2	100.0	(383)
80~84세	0.4	3.4	18.5	25.4	29.6	100.0	(743)
85~89세	0.7	2.9	11.8	29.4	30.0	100.0	(724)
90세 이상	0.9	3.5	20.2	28.2	33.2	100.0	(443)
지역							
대도시	0.7	4.0	27.2	30.2	30.2	100.0	(974)
중소도시	1.3	1.8	9.3	29.3	32.1	100.0	(824)
농어촌	0.2	2.9	15.3	23.8	29.3	100.0	(88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7	2.1	4.7	37.0	30.1	100.0	(75)
2등급	0.6	3.5	47.0	27.4	24.0	100.0	(168)
3등급	0.3	4.8	35.2	31.7	32.8	100.0	(672)
4등급	1.1	2.4	12.3	25.8	29.8	100.0	(1,422)
5등급	0.0	6.7	76.1	26.6	32.0	100.0	(331)
인지지원등급	0.0	0.0	0.0	21.1	26.3	100.0	(19)
치매 여부							
예	0.9	2.8	17.0	33.5	32.5	100.0	(1,283)
아니오	0.6	2.6	14.8	22.5	28.7	100.0	(1,404)
2019년	1.1	-	-	-	-	100.0	(3,055)

주: 본인응답과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의 자료를 분석

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급여 이용자의 재가급여 이용 형태를 분석하면,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는 55.1%, 방문목욕만 이용한 수급자는 3.6%, 주야간보호만 이용한 수급자는 17.2%로 나타났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시에 이용한 수급자는 16.5%,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한 수급자는 2.8%,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이 이용한 수급자는 2.2% 등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방문요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방문목욕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비율은 75세 미만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80~84세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 이용률이 높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이용 형태를 보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르면, 방문목욕 이용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률이 62.2%로 높았으며, 방문간호 이용자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이용률이 55.6%, 기타 유형이 35.6%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26.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비율이 62.8%, 방문요양+방문목욕 18.1%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3-5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재가급여 이용행태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간호	기타	계(명)	
전체	55.1	3.6	17.2	16.5	2.8	2.2	2.5	100.0	(2,685)
성별									
남성	53.2	5.2	16.1	17.2	2.2	3.0	3.1	100.0	(731)
여성	55.8	3.0	17.7	16.3	3.1	1.9	2.4	100.0	(1,953)
연령대									
65세 미만	62.5	1.8	14.3	14.3	3.6	1.8	1.8	100.0	(56)
65~69세	66.7	2.3	11.4	9.1	3.0	4.5	3.0	100.0	(132)
70~74세	66.7	1.4	12.1	12.6	1.4	2.9	2.9	100.0	(207)
75~79세	54.7	4.4	19.5	14.8	1.0	1.8	3.6	100.0	(384)
80~84세	49.6	4.6	18.5	19.5	3.5	2.3	2.0	100.0	(742)
85~89세	55.1	2.8	18.5	16.6	2.8	1.7	2.6	100.0	(724)
90세 이상	54.6	4.1	15.6	16.9	3.8	2.5	2.5	100.0	(443)
지역									
대도시	65.2	2.4	16.2	8.4	2.7	2.4	2.8	100.0	(972)
중소도시	56.2	2.9	22.1	10.6	3.4	2.4	2.3	100.0	(822)
농어촌	42.9	5.5	14.0	31.0	2.4	1.8	2.5	100.0	(888)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56.0	1.3	0.0	18.7	0.0	16.0	8.0	100.0	(75)
2등급	56.5	4.2	5.4	22.6	1.2	3.0	7.1	100.0	(168)
3등급	59.3	3.7	13.0	15.9	2.5	2.5	3.0	100.0	(671)
4등급	57.2	3.7	15.7	16.8	3.2	1.6	1.7	100.0	(1,420)
5등급	39.5	3.0	38.0	14.0	3.0	.6	1.8	100.0	(329)
인지지원등급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9)
급여유형									
방문요양	80.3	0.4	0.3	13.6	2.4	1.8	1.3	100.0	(1,824)
방문목욕	1.9	27.9	0.6	62.2	0.0	0.3	7.0	100.0	(315)
방문간호	6.7	0.0	0.0	2.2	0.0	55.6	35.6	100.0	(45)
주야간보호	1.0	0.0	91.0	0.0	6.6	0.0	1.4	100.0	(500)
치매 여부									
예	46.5	3.2	26.2	14.9	4.0	2.3	3.0	100.0	(1,283)
아니오	62.8	3.9	9.0	18.1	1.8	2.2	2.2	100.0	(1,405)
2019년	55.7	3.6	15.5	16.5	3.6	2.4	2.7	100.0	(3,046)

주: 단기보호 이용자를 제외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5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한 달 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평균 12.3만 원으로 '없음' 16.6%, 10만 원 미만 27.4%, 10~20만 원 미만 37.0%, 20만 원 이상 19.0%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없음' 비율이 20.1%에서 16.6%로 감소한 반면 20만 원 이상이 13.6%에서 19.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12.1만 원,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12.4만 원이었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평균 9.9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80~84세 재가급여 이용자는 평균 13.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 11.8만 원, 중소도시 13.2만 원, 농어촌 지역 1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14.1만 원,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13.4만 원,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 12.4만 원 등이었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방문요양 이용자는 10.5만 원이었으며, 방문목욕 이용자는 8.5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21.5만 원, 단기보호 이용자는 39.7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한달 평균 장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은 13.8만 원이었으며,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한달 평균 1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달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1)]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10만 원 미만	10~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금액[2)]
전체	16.6	27.4	37.0	19.0	100.0	(2,687)	12.3
성별							
남성	15.7	29.1	37.7	17.5	100.0	(733)	12.1
여성	17.0	26.7	36.8	19.5	100.0	(1,955)	12.4
연령대							
65세 미만	29.1	32.7	23.6	14.5	100.0	(56)	9.9
65~69세	28.0	32.6	25.8	13.6	100.0	(132)	10.1
70~74세	30.4	23.7	33.3	12.6	100.0	(206)	10.0
75~79세	20.4	20.4	41.3	18.0	100.0	(383)	12.3
80~84세	13.5	24.9	39.3	22.3	100.0	(743)	13.4
85~89세	14.1	29.0	37.8	19.1	100.0	(724)	12.4
90세 이상	11.3	34.5	35.1	19.1	100.0	(443)	12.5
지역							
대도시	20.4	24.9	37.7	16.9	100.0	(974)	11.8
중소도시	16.4	27.3	31.8	24.5	100.0	(824)	13.2
농어촌	12.7	30.0	41.2	16.1	100.0	(889)	12.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3.5	28.4	28.4	29.7	100.0	(75)	14.1
2등급	12.0	26.9	37.1	24.0	100.0	(168)	13.4
3등급	17.3	25.7	37.5	19.5	100.0	(672)	12.4
4등급	17.6	28.7	38.7	15.0	100.0	(1,422)	11.7
5등급	14.8	24.2	31.7	29.3	100.0	(331)	13.7
인지지원등급	5.3	47.4	21.1	26.3	100.0	(19)	13.0
급여유형							
방문요양	19.6	29.7	41.6	9.2	100.0	(1,823)	10.5
방문목욕	19.0	44.9	27.5	8.5	100.0	(316)	8.5
방문간호	21.7	30.4	37.0	10.9	100.0	(46)	9.6
주야간보호	3.8	7.8	26.8	61.6	100.0	(500)	21.5
단기보호	0.0	0.0	0.0	100.0	0.0	(3)	39.7
치매 여부							
예	13.1	27.1	33.1	26.7	100.0	(1,283)	13.8
아니오	19.8	27.6	40.6	12.0	100.0	(1,404)	11.0
2019년	20.1	26.9	39.3	13.6	100.0	(3,055)	11.1

주: 1)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2,687명(전체 수급자의 54.5%)의 자료를 분석
2) 본인부담금이 없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평균 본인부담금액 산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69.2%였으며, 2019년 54.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이용률은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 69.6%,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 69.1%로 비슷했으며, 연령대에서는 65~69세(73.4%)와 90세 이상(72.2%)에서 복지용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70~74세 연령대에서 복지용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률이 71.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률이 87.1%와 8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률이 77.8%로 높은 반면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률은 55.8%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67.5%,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70.7%가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개수는 1개 22.7%, 2개 23.8%, 3개 19.0%, 4개 13.0%, 5개 이상 21.4%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1개 비율이 낮아지고 5개 이상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가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2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3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5개 이상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9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는 1개 22.5%, 2개 19.8%, 3개 17.7%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5개 이상이 25.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1개 또는 2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2개 비율이 38.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지지원등급과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5개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2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이용자는 5개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치매 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복지용구 개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5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69.2	30.8	100.0 (2,518)
성별			
남성	69.6	30.4	100.0 (703)
여성	69.1	30.9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64.0	36.0	100.0 (50)
65~69세	73.4	26.6	100.0 (123)
70~74세	62.2	37.8	100.0 (196)
75~79세	67.8	32.2	100.0 (363)
80~84세	71.2	28.8	100.0 (699)
85~89세	67.8	32.2	100.0 (680)
90세 이상	72.2	27.8	100.0 (406)
지역			
대도시	69.8	30.2	100.0 (922)
중소도시	71.5	28.5	100.0 (758)
농어촌	66.5	33.5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7.1	12.9	100.0 (62)
2등급	87.7	12.3	100.0 (163)
3등급	74.5	25.5	100.0 (635)
4등급	68.4	31.6	100.0 (1,336)
5등급	49.5	50.5	100.0 (305)
인지지원등급	43.8	56.3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72.1	27.9	100.0 (1,728)
방문목욕	71.0	29.0	100.0 (303)
방문간호	77.8	22.2	100.0 (44)
주야간보호	55.8	44.2	100.0 (441)
단기보호	50.0	50.0	100.0 (2)
치매 여부			
예	67.5	32.5	100.0 (1,171)
아니오	70.7	29.3	100.0 (1,347)
2019년	54.1	45.9	100.0 (2,866)

주: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표 3-55〉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개수

(단위: %, 명)

특성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명)	
전체	22.7	23.8	19.0	13.0	21.4	100.0	(1,743)
성별							
남성	23.7	29.2	14.5	12.5	20.0	100.0	(489)
여성	22.3	21.7	20.8	13.2	21.9	100.0	(1,254)
연령대							
65세 미만	21.9	18.8	6.3	25.0	28.1	100.0	(32)
65~69세	22.0	26.4	20.9	14.3	16.5	100.0	(91)
70~74세	22.1	23.0	18.9	13.9	22.1	100.0	(122)
75~79세	24.4	27.2	16.7	15.0	16.7	100.0	(246)
80~84세	21.4	22.8	20.4	12.6	22.6	100.0	(499)
85~89세	24.1	25.6	20.0	9.1	21.3	100.0	(461)
90세 이상	22.5	19.8	17.7	16.0	23.9	100.0	(293)
지역							
대도시	19.0	20.5	19.3	16.0	25.2	100.0	(643)
중소도시	25.5	26.6	18.3	10.7	19.0	100.0	(542)
농어촌	24.4	24.8	19.6	11.8	19.4	100.0	(55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4.1	38.9	13.0	5.6	18.5	100.0	(54)
2등급	23.6	20.1	9.0	22.9	24.3	100.0	(144)
3등급	21.1	21.3	17.9	14.7	25.1	100.0	(475)
4등급	23.0	25.1	20.0	11.4	20.5	100.0	(912)
5등급	25.7	21.7	27.6	11.2	13.8	100.0	(152)
인지지원등급	28.6	14.3	28.6	0.0	28.6	100.0	(7)
급여유형							
방문요양	21.1	24.2	18.9	13.8	21.9	100.0	(1,246)
방문목욕	25.0	20.8	16.7	14.4	23.1	100.0	(216)
방문간호	17.6	20.6	23.5	14.7	23.5	100.0	(34)
주야간보호	29.7	24.8	20.7	7.7	17.1	100.0	(24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21.9	25.7	18.7	12.8	20.9	100.0	(790)
아니오	23.4	22.2	19.3	13.2	21.8	100.0	(953)
2019년	31.5	26.6	17.3	12.2	12.5	100.0	(1,551)

주: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743명의 자료를 분석

현재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복지용구 이용자의 72.2%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22.7%, 만족하지 않는다 5.1%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9%에서 5.1%로 다소 높아졌다. 남성 복지용구 이용자의 68.9%, 여성 복지용구 이용자의 73.5%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세 미만 복지용구 이용자의 48.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세 이상 복지용구 이용자의 만족도는 78.8%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복지용구 이용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이용자의 만족도가 83.3%로 높은 반면 5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이용자의 만족도는 6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여이용 유형에서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복지용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치매가 없는 수급자에 비해 복지용구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75명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복지용구 미이용자의 56.7%는 '필요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29.9%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69세 연령대와 75~79세 연령대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아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65~69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성능이 좋지 않아서와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잘 몰라서'가 33.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낮을수록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아서'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방문목욕 이용자의 경우 '잘 몰라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 여부에 따른 복지용구 미사용 이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복지용구 이용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명)
전체	72.2	22.7	5.1	100.0 (1,743)
성별				
남성	68.9	28.1	3.1	100.0 (489)
여성	73.5	20.6	5.9	100.0 (1,254)
연령대				
65세 미만	48.5	24.2	27.3	100.0 (32)
65~69세	74.4	25.6	0.0	100.0 (91)
70~74세	61.0	30.1	8.9	100.0 (122)
75~79세	68.2	25.3	6.5	100.0 (246)
80~84세	71.5	23.3	5.2	100.0 (499)
85~89세	75.2	21.3	3.5	100.0 (461)
90세 이상	78.8	17.4	3.8	100.0 (293)
지역				
대도시	71.1	24.7	4.2	100.0 (643)
중소도시	71.8	20.5	7.7	100.0 (542)
농어촌	73.8	22.4	3.8	100.0 (55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4.5	14.5	10.9	100.0 (54)
2등급	76.9	18.9	4.2	100.0 (144)
3등급	71.5	23.4	5.1	100.0 (475)
4등급	72.0	22.3	5.7	100.0 (912)
5등급	69.5	29.1	1.3	100.0 (152)
인지지원등급	83.3	16.7	0.0	100.0 (7)
급여유형				
방문요양	71.1	23.2	5.8	100.0 (1,246)
방문목욕	72.4	24.3	3.3	100.0 (216)
방문간호	77.1	17.1	5.7	100.0 (34)
주야간보호	76.8	19.5	3.7	100.0 (246)
단기보호	100.0	0.0	0.0	100.0 (0)
치매 여부				
예	74.3	20.8	4.9	100.0 (790)
아니오	70.5	24.2	5.2	100.0 (953)
2019년	72.3	23.8	3.9	100.0 (1,551)

주: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743명의 자료를 분석

〈표 3-57〉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복지용구 미사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불필요	잘 몰라서	다양하지 않음	성능 미흡	색상이나 디자인 불만족	가격 부담	기타	계(명)
전체	56.7	29.9	2.9	1.6	0.2	3.8	4.8	100.0 (775)
성별								
남성	60.0	26.5	2.8	0.5	0.9	6.5	2.8	100.0 (215)
여성	55.3	31.1	3.0	2.1	0.0	2.8	5.5	100.0 (562)
연령대								
65세 미만	64.7	29.4	0.0	0.0	0.0	0.0	5.9	100.0 (17)
65~69세	54.5	27.3	3.0	6.1	0.0	6.1	3.0	100.0 (33)
70~74세	62.2	27.0	1.4	2.7	1.4	2.7	2.7	100.0 (74)
75~79세	46.6	41.4	6.9	.9	0.0	3.4	.9	100.0 (116)
80~84세	61.7	25.4	1.0	1.5	0.0	2.0	8.5	100.0 (201)
85~89세	55.7	29.9	3.6	.9	0.5	5.4	4.1	100.0 (221)
90세 이상	56.1	28.1	3.5	2.6	0.0	4.4	5.3	100.0 (114)
지역								
대도시	59.7	29.9	3.2	2.2	0.0	1.8	3.2	100.0 (278)
중소도시	53.0	33.6	2.3	1.4	0.5	5.5	3.7	100.0 (217)
농어촌	56.2	27.0	3.2	1.4	0.4	4.6	7.1	100.0 (281)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37.5	37.5	0.0	0.0	0.0	0.0	25.0	100.0 (8)
2등급	61.9	14.3	19.0	0.0	0.0	4.8	0.0	100.0 (21)
3등급	44.8	38.7	3.1	3.7	0.0	5.5	4.3	100.0 (163)
4등급	55.5	30.6	2.8	1.4	0.2	3.8	5.7	100.0 (422)
5등급	71.2	21.6	1.3	0.7	0.7	2.0	2.6	100.0 (153)
인지지원등급	88.9	11.1	0.0	0.0	0.0	0.0	0.0	100.0 (9)
급여유형								
방문요양	56.2	28.8	2.7	2.1	0.0	3.9	6.2	100.0 (482)
방문목욕	48.9	36.4	3.4	1.1	0.0	5.7	4.5	100.0 (88)
방문간호	60.0	30.0	0.0	0.0	0.0	10.0	0.0	100.0 (10)
주야간보호	61.2	29.6	3.1	1.0	1.0	2.6	1.5	100.0 (19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55.9	29.7	3.7	1.3	0.5	3.4	5.5	100.0 (381)
아니오	57.4	30.5	2.3	1.8	0.0	4.1	4.1	100.0 (394)

주: 1)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75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게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지게 되면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49.8%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나 친인척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3.7%, 요양병원에 입원하겠다는 17.8%,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28.7%로 나타났다.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와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의향인 비율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80~84세 재가급여 이용자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57.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51.2%, 자녀나 친인척의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 48.7%, 자녀나 친인척 집으로 이사 5.5%, 노인요양시설 입소 25.5%, 요양병원 입원 20.3%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2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응답이 22.2%로 다른 인정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자녀나 친인척의 집으로 이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은 44.1%로 다소 낮은 반면,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52.9%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8〉 (본인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 유형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자녀/친인척 집으로 이사	노인요양 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	계(명)	
전체	49.8	3.7	28.7	17.8	100.0	(1,526)
성별						
남성	49.0	2.7	28.9	19.4	100.0	(408)
여성	50.1	4.1	28.5	17.3	100.0	(1,118)
연령대						
65세 미만	45.5	6.1	18.2	30.3	100.0	(33)
65~69세	43.1	0.0	34.7	22.2	100.0	(72)
70~74세	54.0	5.0	20.1	20.9	100.0	(139)
75~79세	44.4	4.3	28.2	23.1	100.0	(234)
80~84세	57.7	2.2	27.1	13.0	100.0	(409)
85~89세	45.0	5.3	32.0	17.8	100.0	(416)
90세 이상	49.5	3.2	31.1	15.8	100.0	(222)
지역						
대도시	49.1	3.3	27.9	19.7	100.0	(538)
중소도시	48.7	5.5	25.5	20.3	100.0	(419)
농어촌	51.2	2.8	31.9	14.1	100.0	(56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6.2	0.0	14.3	9.5	100.0	(21)
2등급	58.7	6.3	12.7	22.2	100.0	(63)
3등급	40.9	2.9	35.9	20.3	100.0	(345)
4등급	52.3	3.8	27.5	16.4	100.0	(895)
5등급	47.9	4.6	27.8	19.6	100.0	(194)
인지지원등급	50.0	12.5	25.0	12.5	100.0	(8)
급여유형						
방문요양	52.7	2.8	26.5	18.0	100.0	(1,049)
방문목욕	54.0	2.8	27.7	15.5	100.0	(213)
방문간호	54.5	4.5	22.7	18.2	100.0	(22)
주야간보호	32.8	8.7	39.4	19.1	100.0	(24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44.1	5.0	33.0	17.9	100.0	(542)
아니오	52.9	3.0	26.3	17.8	100.0	(985)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자 1,526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다. 장기요양 만족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이 가능한 1,012명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방문요양 이용시간이나 이용일수,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만족도는 만족 89.3%, 보통 8.8%, 만족하지 않음 1.9%로 2019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방문요양 이용자보다 여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장기요양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80~84세, 90세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6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수준이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인 2등급과 3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이 90% 이상인 반면 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69.2%로 낮은 수준이었다. 치매가 있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88.5%, 치매가 없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89.5%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의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 보통 18.9%, 만족하지 않음 11.2%로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방문요양 이용자에 비해 남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65~69세와 70~74세의 방문요양 이용자 만족도가 특히 낮았으며, 75~79세 연령대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46.2%로 매우 낮은 반면 인정등급이 2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80.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치매 여부에 따른 방문요양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본인응답) 방문요양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1,012)	89.3	8.8	1.9	100.0	69.9	18.9	11.2	100.0
성별									
남성	(233)	88.4	9.0	2.6	100.0	67.0	21.5	11.6	100.0
여성	(779)	89.5	8.7	1.8	100.0	70.7	18.1	11.2	100.0
연령대									
65세 미만	(16)	75.0	12.5	12.5	100.0	62.5	25.0	12.5	100.0
65~69세	(51)	84.3	11.8	3.9	100.0	48.0	30.0	22.0	100.0
70~74세	(93)	81.7	16.1	2.2	100.0	59.8	25.0	15.2	100.0
75~79세	(155)	89.7	6.5	3.9	100.0	76.1	12.3	11.6	100.0
80~84세	(271)	92.3	6.6	1.1	100.0	74.5	16.6	8.9	100.0
85~89세	(280)	88.6	10.4	1.1	100.0	72.9	18.9	8.2	100.0
90세 이상	(146)	93.2	6.2	.7	100.0	64.6	21.1	14.3	100.0
지역									
대도시	(346)	87.3	10.7	2.0	100.0	65.0	22.3	12.7	100.0
중소도시	(271)	95.2	2.6	2.2	100.0	71.5	14.1	14.4	100.0
농어촌	(396)	86.9	11.6	1.5	100.0	73.0	19.2	7.8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3)	69.2	15.4	15.4	100.0	46.2	30.8	23.1	100.0
2등급	(45)	91.1	8.9	0.0	100.0	80.0	15.6	4.4	100.0
3등급	(223)	93.7	3.6	2.7	100.0	70.3	14.4	15.3	100.0
4등급	(620)	89.4	9.4	1.3	100.0	70.0	20.3	9.7	100.0
5등급	(110)	81.8	15.5	2.7	100.0	67.3	19.1	13.6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288)	88.5	10.1	1.4	100.0	69.1	20.1	10.8	100.0
아니오	(724)	89.5	8.3	2.2	100.0	70.3	18.2	11.5	100.0
2019년	(1,088)	89.8	8.8	1.4	100.0	-	-	-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을 이용한 1,012명의 자료를 분석

방문요양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방문요양 이용자의 8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11.4%, 만족하지 않음 2.1%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4.8%에서 88.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85.0%, 여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86.9%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5세 미만 방문요양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7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91.5%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84.1%, 농어촌 지역 85.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69.2%로 낮은 반면, 인정등급이 3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9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5.4%, 치매가 없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7.0%로 조사되었다.

방문요양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보면, 만족 85.8%, 보통 12.1%, 만족하지 않음 2.1%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79.2%에서 8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83.3%, 여성 방문요양 이용자의 8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65세 미만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62.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75~79세 및 90세 이상 연령대의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가 91.9%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82.9%, 농어촌 지역 방문요양 이용자 84.5%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가 69.2%로 가장 낮았으며, 2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는 86.7%, 3등급인 방문요양 이용자 88.3%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83.0%, 그렇지 않은 방문요양 이용자의 만족도는 86.9%로 조사되었다.

〈표 3-60〉 (본인응답) 방문요양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1,012)	88.5	11.4	2.1	100.0	85.8	12.1	2.1	100.0
성별									
남성	(233)	85.0	13.2	1.7	100.0	83.3	15.9	.9	100.0
여성	(779)	86.9	10.9	2.2	100.0	86.5	11.0	2.4	100.0
연령대									
65세 미만	(16)	75.0	12.5	12.5	100.0	62.5	25.0	12.5	100.0
65~69세	(51)	82.4	17.6	0.0	100.0	70.6	29.4	0.0	100.0
70~74세	(93)	81.7	16.1	2.2	100.0	79.6	18.3	2.2	100.0
75~79세	(155)	87.7	9.7	2.6	100.0	89.7	5.2	5.2	100.0
80~84세	(271)	89.3	8.9	1.8	100.0	86.7	11.4	1.8	100.0
85~89세	(280)	85.0	12.5	2.5	100.0	87.1	11.8	1.1	100.0
90세 이상	(146)	88.4	10.9	.7	100.0	89.0	10.3	.7	100.0
지역									
대도시	(346)	84.1	12.7	3.2	100.0	82.9	14.5	2.6	100.0
중소도시	(271)	91.5	7.8	.7	100.0	91.9	6.7	1.5	100.0
농어촌	(396)	85.4	12.6	2.0	100.0	84.3	13.6	2.0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3)	69.2	30.8	0.0	100.0	69.2	30.8	0.0	100.0
2등급	(45)	84.1	15.9	0.0	100.0	86.7	13.3	0.0	100.0
3등급	(223)	92.8	6.3	.9	100.0	88.3	9.9	1.8	100.0
4등급	(620)	85.3	12.4	2.3	100.0	86.0	11.8	2.3	100.0
5등급	(110)	83.6	12.7	3.6	100.0	80.9	16.4	2.7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288)	85.4	12.2	2.4	100.0	83.0	14.9	2.1	100.0
아니오	(724)	87.0	11.0	1.9	100.0	86.9	10.9	2.2	100.0
2019년	(1,088)	74.8	22.4	2.8	100.0	79.2	19.5	1.4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을 이용한 1,012명의 자료를 분석

방문목욕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이 조사에 응답한 382명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은 89.9%, 보통 9.6%, 만족하지 않음 0.5%로 분석되었으며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8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91.1%로 조사되었다. 연령대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높았으며, 65세 미만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가 87.5%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각각 90.2%와 91.5%인 반면 대도시 거주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3.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0.0%, 5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4.8%로 다른 인정등급의 이용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치매가 있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9.6%, 치매가없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90.3%로 분석되었다.

방문목욕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9.6%, 보통 16.0%, 만족하지 않는다 4.5%로 조사되었다. 남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3%였지만 여성 방문목욕 이용자는 78.9%에 그쳐 여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이용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방문목욕 이용자의 방문목욕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이며, 그 외 연령대의 이용자 집단에서는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8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각각 80.3%와 83.3%였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66.7%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과 4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인정등급이 2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100.0%로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78.9%)와 치매가 없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79.9%)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61〉 (본인응답) 방문목욕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382)	89.9	9.6	0.5	100.0	79.6	16.0	4.5	100.0
성별									
남성	(112)	87.5	11.6	0.9	100.0	81.3	14.3	4.5	100.0
여성	(269)	91.1	8.6	0.4	100.0	78.9	16.7	4.4	100.0
연령대									
65세 미만	(8)	87.5	12.5	0.0	100.0	87.5	12.5	0.0	100.0
65~69세	(9)	100.0	0.0	0.0	100.0	77.8	11.1	11.1	100.0
70~74세	(23)	95.7	4.3	0.0	100.0	73.9	26.1	0.0	100.0
75~79세	(53)	88.7	9.4	1.9	100.0	76.9	15.4	7.7	100.0
80~84세	(127)	86.6	12.6	0.8	100.0	79.5	16.5	3.9	100.0
85~89세	(105)	90.5	8.6	1.0	100.0	79.8	15.4	4.8	100.0
90세 이상	(59)	91.5	8.5	0.0	100.0	81.7	15.0	3.3	100.0
지역									
대도시	(74)	83.8	14.9	1.4	100.0	66.7	20.0	13.3	100.0
중소도시	(61)	90.2	9.8	0.0	100.0	80.3	14.8	4.9	100.0
농어촌	(247)	91.5	8.1	0.4	100.0	83.3	15.0	1.6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	80.0	20.0	0.0	100.0	80.0	20.0	0.0	100.0
2등급	(17)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86)	90.7	9.3	0.0	100.0	75.6	16.3	8.1	100.0
4등급	(229)	90.0	9.2	0.9	100.0	79.0	17.5	3.5	100.0
5등급	(46)	84.8	15.2	0.0	100.0	80.4	15.2	4.3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134)	89.6	9.7	0.7	100.0	78.9	16.5	4.5	100.0
아니오	(247)	90.3	9.3	0.4	100.0	79.9	15.7	4.4	100.0
2019년	(290)	92.2	7.0	0.8	100.0	-	-	-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 이용자 382명의 자료를 분석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에 대한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방문목욕 이용자는 89.0%, 보통 10.1%, 만족하지 않음 0.9%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2019년 85.1%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86.6%, 여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9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5~69세와 70~74세 연령대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65세 미만과 80~84세 미만 연령대의 방문목욕 이용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0.3%, 90.7%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0.0%로 가장 낮은 반면 인정등급이 2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0%로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방문목욕 이용자와 치매가 없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8.8%로 동일하였다.

방문목욕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7.5%, 보통 11.4%, 만족하지 않음 1.1%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만족한다는 응답 85.1%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4.8%, 여성 방문목욕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88.5%로 분석되었다. 75~79세와 80~84세 방문목욕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65~69세, 70~74세 연령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0.2%, 89.4%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79.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80.0%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정등급이 2등급인 방문목욕 이용자의 만족도는 100.0%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6.5%, 치매가 없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3%로 나타났다.

〈표 3-62〉 (본인응답) 방문목욕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전체	(382)	89.0	10.1	0.9	100.0	87.5	11.4	1.1	100.0
성별									
남성	(112)	86.6	13.4	0.0	100.0	84.8	15.2	0.0	100.0
여성	(269)	90.0	8.9	1.1	100.0	88.5	10.0	1.5	100.0
연령대									
65세 미만	(8)	87.5	12.5	0.0	100.0	87.5	12.5	0.0	100.0
65~69세	(9)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70~74세	(23)	95.7	4.3	0.0	100.0	95.7	4.3	0.0	100.0
75~79세	(53)	90.4	9.6	0.0	100.0	84.6	15.4	0.0	100.0
80~84세	(127)	85.9	13.3	0.8	100.0	85.9	13.3	.8	100.0
85~89세	(105)	88.6	8.6	2.9	100.0	87.5	9.6	2.9	100.0
90세 이상	(59)	89.8	10.2	0.0	100.0	88.1	10.2	1.7	100.0
지역									
대도시	(74)	81.3	14.7	4.0	100.0	79.7	16.2	4.1	100.0
중소도시	(61)	90.3	9.7	0.0	100.0	90.2	9.8	0.0	100.0
농어촌	(247)	90.7	8.9	0.4	100.0	89.4	10.2	0.4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	80.0	20.0	0.0	100.0	80.0	20.0	0.0	100.0
2등급	(17)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86)	88.5	11.5	0.0	100.0	88.4	11.6	0.0	100.0
4등급	(229)	88.6	10.0	1.3	100.0	86.9	11.4	1.7	100.0
5등급	(46)	87.0	13.0	0.0	100.0	86.7	13.3	0.0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134)	88.8	10.4	0.7	100.0	86.5	12.8	0.8	100.0
아니오	(247)	88.8	10.0	1.2	100.0	88.3	10.5	1.2	100.0
2019년	(290)	85.1	12.9	1.9	100.0	85.1	12.3	2.6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 이용자 382명의 자료를 분석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 응답이 가능한 4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방문간호 이용자의 92.1%가 만족한다는 응답하였으며, 보통 6.8%, 만족하지 않음 1.1%로 나타났으며, 2019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인 83.9%보다 만족도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85.7%, 여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91.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89.5%,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95.0%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92.3%, 치매가 없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91.4%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76.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17.2%, 만족하지 않음 6.7%로 분석되었다. 남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61.5%만이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82.4%가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78.9%,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71.4%가 방문간호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치매가 있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84.6%, 치매가 없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나 이용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73.5%로 나타났다.

〈표 3-63〉 (본인응답) 방문간호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전체	(47)	92.1	6.8	1.1	100.0	76.1	17.2	6.7	100.0
성별									
남성	(14)	85.7	14.3	0.0	100.0	61.5	30.8	7.7	100.0
여성	(35)	91.4	5.7	2.9	100.0	82.4	11.8	5.9	100.0
연령대									
65세 미만	(1)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65~69세	(2)	100.0	0.0	0.0	100.0	50.0	0.0	50.0	100.0
70~74세	(4)	75.0	25.0	0.0	100.0	75.0	25.0	0.0	100.0
75~79세	(9)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80~84세	(9)	100.0	0.0	0.0	100.0	60.0	30.0	10.0	100.0
85~89세	(13)	92.3	7.7	0.0	100.0	84.6	7.7	7.7	100.0
90세 이상	(9)	88.9	11.1	0.0	100.0	66.7	33.3	0.0	100.0
지역									
대도시	(19)	89.5	10.5	0.0	100.0	78.9	15.8	5.3	100.0
중소도시	(7)	85.7	14.3	0.0	100.0	75.0	12.5	12.5	100.0
농어촌	(20)	95.0	5.0	0.0	100.0	71.4	23.8	4.8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	80.0	20.0	0.0	100.0	80.0	20.0	0.0	100.0
2등급	(3)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15)	93.3	6.7	0.0	100.0	73.3	20.0	6.7	100.0
4등급	(21)	95.2	4.8	0.0	100.0	77.3	18.2	4.5	100.0
5등급	(2)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13)	92.3	7.7	0.0	100.0	84.6	7.7	7.7	100.0
아니오	(35)	91.4	5.7	2.9	100.0	73.5	20.6	5.9	100.0
2019년	(51)	83.9	14.5	1.7	100.0	-	-	-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를 이용한 47명의 자료를 분석함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 응답이 가능한 4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문간호 이용자의 85.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13.2%, 만족하지 않음 1.5%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2019년 73.0%에서 2022년 85.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76.9%, 여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88.2%가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가 있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2.3%, 치매가 없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2.4%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9.7%였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8.4%,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9.5%에서 89.7%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4.6%, 여성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1.2%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방문간호 이용자의 88.9%, 중소도시 거주 방문간호 이용자의 85.7%, 농어촌 지역 거주 방문간호 이용자의 95.0%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1.7%, 치매가 없는 방문간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6%로 나타났다.

〈표 3-64〉 (본인응답) 방문간호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47)	85.3	13.2	1.5	100.0	89.7	8.4	1.9	100.0
성별									
남성	(14)	76.9	23.1	0.0	100.0	84.6	15.4	0.0	100.0
여성	(35)	88.2	8.8	2.9	100.0	91.2	5.9	2.9	100.0
연령대									
65세 미만	(1)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65~69세	(2)	50.0	50.0	0.0	100.0	100.0	0.0	0.0	100.0
70~74세	(4)	75.0	25.0	0.0	100.0	75.0	25.0	0.0	100.0
75~79세	(9)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80~84세	(9)	88.9	11.1	0.0	100.0	88.9	0.0	11.1	100.0
85~89세	(13)	76.9	23.1	0.0	100.0	92.3	7.7	0.0	100.0
90세 이상	(9)	88.9	11.1	0.0	100.0	88.9	11.1	0.0	100.0
지역									
대도시	(19)	89.5	10.5	0.0	100.0	88.9	11.1	0.0	100.0
중소도시	(7)	85.7	14.3	0.0	100.0	85.7	14.3	0.0	100.0
농어촌	(20)	80.0	20.0	0.0	100.0	95.0	5.0	0.0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	80.0	20.0	0.0	100.0	80.0	20.0	0.0	100.0
2등급	(3)	66.7	33.3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15)	86.7	13.3	0.0	100.0	93.3	6.7	0.0	100.0
4등급	(21)	85.7	14.3	0.0	100.0	90.9	9.1	0.0	100.0
5등급	(2)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치매 여부									
예	(13)	92.3	7.7	0.0	100.0	91.7	8.3	0.0	100.0
아니오	(35)	82.4	14.7	2.9	100.0	88.6	8.6	2.9	100.0
2019년	(51)	73.0	25.3	1.7	100.0	69.5	29.4	1.1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를 이용한 47명의 자료를 분석함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이 조사에 응답한 262명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4.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5.5%, 만족하지 않음 0.0%로 나타났다. 2019년의 만족도 비율 94.0%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3.3%, 여성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4.6%가 주야간보호기관 직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도가 92.0%로 대도시(95.6%) 또는 농어촌 지역(95.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4.4%, 치매가 없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5.0%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0.9%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7%는 보통이다, 2.4%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8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1.1%가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주야간보호 이용자와 65~69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이용일수와 이용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도는 87.6%였으며, 중소도시 93.1%, 농어촌 지역 92.9%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이용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90.8%, 5등급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95.7%로 분석되었다. 치매가 있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이나 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90.7%, 치매가 없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도는 90.1%로 나타났다.

〈표 3-65〉 (본인응답) 주야간보호 이용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이용시간·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전체	(262)	94.5	5.5	0.0	100.0	90.9	6.7	2.4	100.0
성별									
남성	(60)	93.3	6.7	0.0	100.0	88.3	8.3	3.3	100.0
여성	(202)	94.6	5.4	0.0	100.0	91.1	6.4	2.5	100.0
연령대				0.0					
65세 미만	(4)	75.0	25.0	0.0	100.0	75.0	25.0	0.0	100.0
65~69세	(11)	90.9	9.1	0.0	100.0	72.7	9.1	18.2	100.0
70~74세	(11)	90.9	9.1	0.0	100.0	90.9	0.0	9.1	100.0
75~79세	(33)	93.9	6.1	0.0	100.0	94.1	2.9	2.9	100.0
80~84세	(85)	94.1	5.9	0.0	100.0	88.2	9.4	2.4	100.0
85~89세	(74)	97.3	2.7	0.0	100.0	93.2	5.5	1.4	100.0
90세 이상	(44)	93.2	6.8	0.0	100.0	93.2	6.8	0.0	100.0
지역									
대도시	(90)	95.6	4.4	0.0	100.0	87.6	7.9	4.5	100.0
중소도시	(87)	92.0	8.0	0.0	100.0	93.1	6.9	0.0	100.0
농어촌	(85)	95.3	4.7	0.0	100.0	92.9	4.7	2.4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2등급	(3)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37)	86.5	13.5	0.0	100.0	89.2	10.8	0.0	100.0
4등급	(143)	95.8	4.2	0.0	100.0	90.8	7.0	2.1	100.0
5등급	(70)	95.7	4.3	0.0	100.0	95.7	4.3	0.0	100.0
인지지원등급	(9)	88.9	11.1	0.0	0.0	55.6	0.0	44.4	0.0
치매 여부									
예	(161)	94.4	5.6	0.0	100.0	90.7	6.2	3.1	100.0
아니오	(100)	95.0	5.0	0.0	100.0	90.1	7.9	2.0	100.0
2019년	(197)	94.0	5.6	4.0	100.0	-	-	-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262명의 자료를 분석함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이 조사에 응답한 262명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응답자의 93.7%였으며, 보통 6.3%, 만족하지 않음 0.0%로 조사되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82.8%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및 70~74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도가 각각 75.0%와 8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대도시 거주 주야간보호 이용자 94.4%, 중소도시 93.1%, 농어촌 지역 94.1%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만족도가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치매가 있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만족도는 93.8%, 치매가 없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93.1%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3.9%였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6.1%,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야간보호 이용자는 0.0%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9년 90.4%였다. 남성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1.7%, 여성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4.6%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65세 미만과 70~74세 미만 연령대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2.1%, 중소도시 거주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4.3%, 농어촌 지역 거주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9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4.4%, 치매가 없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3.1%로 나타났다.

〈표 3-66〉 (본인응답) 주야간보호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명)
전체	(262)	93.7	6.3	0.0	100.0	93.9	6.1	0.0	100.0
성별									
남성	(60)	91.7	8.3	0.0	100.0	91.7	8.3	0.0	100.0
여성	(202)	94.1	5.9	0.0	100.0	94.6	5.4	0.0	100.0
연령대									
65세 미만	(4)	75.0	25.0	0.0	100.0	75.0	25.0	0.0	100.0
65~69세	(11)	90.9	9.1	0.0	100.0	90.9	9.1	0.0	100.0
70~74세	(11)	83.3	16.7	0.0	100.0	83.3	16.7	0.0	100.0
75~79세	(33)	97.1	2.9	0.0	100.0	97.1	2.9	0.0	100.0
80~84세	(85)	92.9	7.1	0.0	100.0	92.9	7.1	0.0	100.0
85~89세	(74)	94.6	5.4	0.0	100.0	95.9	4.1	0.0	100.0
90세 이상	(44)	93.2	6.8	0.0	100.0	93.2	6.8	0.0	100.0
지역									
대도시	(90)	94.4	5.6	0.0	100.0	92.1	7.9	0.0	100.0
중소도시	(87)	93.1	6.9	0.0	100.0	94.3	5.7	0.0	100.0
농어촌	(85)	94.1	5.9	0.0	100.0	96.5	3.5	0.0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등급	(3)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3등급	(37)	89.2	10.8	0.0	100.0	89.2	10.8	0.0	100.0
4등급	(143)	93.7	6.3	0.0	100.0	93.7	6.3	0.0	100.0
5등급	(70)	95.7	4.3	0.0	100.0	95.7	4.3	0.0	100.0
인지지원등급	(9)	88.9	11.1	0.0	0.0	88.9	11.1	0.0	0.0
치매 여부									
예	(161)	93.8	6.2	0.0	100.0	94.4	5.6	0.0	100.0
아니오	(100)	93.1	6.9	0.0	100.0	93.1	6.9	0.0	100.0
2019년	(197)	82.8	16.4	0.8	100.0	90.4	9.2	0.4	100.0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262명의 자료를 분석함

지난 1년간 단기보호를 이용한 재가급여 이용자 중 본인 응답이 가능한 7명을 대상으로 단기보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97.7%가 단기보호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2.3%,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조사되었다.

〈표 3-67〉 (본인응답) 단기보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명)
전체	97.7	2.3	0.0	100.0 (7)
성별				
남성	100.0	0.0	0.0	100.0 (1)
여성	100.0	0.0	0.0	100.0 (6)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0.0	0.0 (0)
65~69세	100.0	0.0	0.0	100.0 (2)
70~74세	100.0	0.0	0.0	100.0 (2)
75~79세	0.0	0.0	0.0	100.0 (0)
80~84세	100.0	0.0	0.0	100.0 (2)
85~89세	100.0	0.0	0.0	100.0 (1)
90세 이상	0.0	0.0	0.0	0.0 (0)
지역				
대도시	100.0	0.0	0.0	100.0 (1)
중소도시	100.0	0.0	0.0	100.0 (4)
농어촌	100.0	0.0	0.0	100.0 (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0.0 (0)
2등급	0.0	0.0	0.0	0.0 (0)
3등급	100.0	0.0	0.0	100.0 (1)
4등급	100.0	0.0	0.0	100.0 (6)
5등급	0.0	0.0	0.0	0.0 (0)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100.0	0.0	0.0	100.0 (4)
아니오	100.0	0.0	0.0	100.0 (3)
2019년	44.6	55.4	0.0	100.0 (8)

주: 재가급여 이용자이면서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자 중 지난 1년간 단기보호를 이용한 7명의 자료를 분석함

라. 재가급여 이용자의 코로나19 경험

지난 1년간(2021.7.1.~2022.6.3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 여부, 밀접 접촉자로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여부,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25.9%,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8%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를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4명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한 적이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전체의 71.6%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 23.5%,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 26.9%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80~84세와 85~89세 재가급여 이용자가 각각 29.2%와 27.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69세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31.3%)과 인지지원등급(33.3%)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율이 47.2%로 높았으며,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28.1%)가 그렇지 않은 재가급여 이용자(24.1%)에 비해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2021.7.1.~2022.6.30.) 밀접 접촉자로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 남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2.8%, 여성 재가급여 이용자는 4.2%로 남성보다 여성의 자가격리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격리 비율은 70~74세 5.6%, 65~69세 4.8%, 90세 이상 4.4% 등이었으며, 대도시 거주 재가급여 이용자의 4.4%, 중소도시 거주 재가급여 이용자의 3.0%, 농어촌지역 거주 재가급여 이용자의 3.9%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25.0%, 1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6.3%, 5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5.9% 등이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6.3%가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으며,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4%가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지난 1년간 코로나19 관련 경험(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확진 경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코로나19 관련 경험없음
전체	25.9 (653)	3.8 (97)	71.6 (1,802)
성별			
남성	23.5	2.8	74.8
여성	26.9	4.2	70.3
연령대			
65세 미만	24.0	0.0	76.0
65~69세	20.2	4.8	78.0
70~74세	25.0	5.6	71.9
75~79세	24.2	3.0	74.2
80~84세	29.2	3.9	68.4
85~89세	27.4	3.5	70.0
90세 이상	21.9	4.4	74.7
지역			
대도시	25.6	4.4	72.2
중소도시	27.4	3.0	70.1
농어촌	24.9	3.9	72.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3.8	6.3	71.0
2등급	31.3	1.2	67.5
3등급	22.8	4.1	74.7
4등급	26.3	3.2	71.6
5등급	28.2	5.9	68.5
인지지원등급	33.3	25.0	46.7
급여유형			
방문요양	21.7	3.4	76.1
방문목욕	20.1	2.6	78.2
방문간호	20.5	2.3	77.3
주야간보호	47.2	6.3	49.0
단기보호	50.0	0.0	50.0
치매 여부			
예	28.1	4.4	69.3
아니오	24.1	3.4	73.5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2)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모두 경험한 응답자는 34명임
3)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년간(2021.7.1.~2022.6.30.)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28.8%로 조사되었으며, 남성 재가급여 수급자의 22.6%, 여성 재가급여 수급자의 31.2%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 90세 이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세 미만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16.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거주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차이를 보면, 인지지원등급(56.3%), 1등급(33.3%), 5등급(31.8%)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54.2%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31.5%, 치매가 없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26.6%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는 평균 11.5로 남성 재가급여 수급자는 평균 9.5일, 여성 재가급여 수급자는 평균 12.0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65~69세, 80~84세, 85~8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가 10일을 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가 12.4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지원등급과 3등급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가 각각 15.0일과 14.3일이었으며, 급여유형에서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급여유형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가 12.3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수는 12.2일로 분석되었다.

〈표 3-69〉 (본인 및 가족 대리응답) 재가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지 못한 경험

(단위: %, 일, 명)

특성	코로나19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 있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 없음	계(명)	
	이용못한 비율	이용못한 일수			
전체	28.8	11.5	71.2	100.0	(2,518)
성별					
남성	22.6	9.5	77.4	100.0	(703)
여성	31.2	12.0	68.8	100.0	(1,815)
연령대					
65세 미만	16.0	12.1	84.0	100.0	(50)
65~69세	26.8	10.1	73.2	100.0	(123)
70~74세	33.2	8.2	66.8	100.0	(196)
75~79세	27.3	9.6	72.7	100.0	(363)
80~84세	28.4	12.9	71.6	100.0	(699)
85~89세	29.4	13.3	70.6	100.0	(680)
90세 이상	30.2	9.7	69.8	100.0	(406)
지역					
대도시	28.5	10.2	71.5	100.0	(922)
중소도시	29.9	12.4	70.1	100.0	(758)
농어촌	28.2	11.9	71.8	100.0	(83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3.3	10.0	66.7	100.0	(62)
2등급	29.9	12.1	70.1	100.0	(163)
3등급	24.0	14.3	76.0	100.0	(635)
4등급	29.8	10.8	70.2	100.0	(1,336)
5등급	31.8	9.4	68.2	100.0	(305)
인지지원등급	56.3	15.0	43.8	100.0	(15)
급여유형					
방문요양	23.7	12.3	76.3	100.0	(1,728)
방문목욕	22.4	9..8	77.6	100.0	(303)
방문간호	22.7	11.2	77.3	100.0	(44)
주야간보호	54.2	10.5	45.8	100.0	(441)
단기보호	0.0	9.7	100.0	100.0	(2)
치매 여부					
예	31.5	12.2	68.5	100.0	(1,171)
아니오	26.6	10.7	73.4	100.0	(1,347)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년간(2021.7.1.~2022.6.30.)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 726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54.6%는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되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23.5%는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14.6%는 본인이나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중단/거절하였으며, 10.1%는 장기요양 이용자가 감염이 우려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감염이 우려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이 남성 재가급여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75세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확진으로 서비스를 중단을 요청한 비율이 높은 반면, 70~74세 연령대에서는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33.3%는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2등급인 수급자의 60.4%는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되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자의 경우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이 40.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 여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코로나19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본인/가족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 요청	본인/가족확진으로 기관/종사자가 서비스 중단/거절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감염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	정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 일시 중단	사례수
전체	54.6	14.6	23.5	10.1	8.9	(726)
성별						
남성	56.6	14.5	22.0	5.7	10.1	(159)
여성	54.1	14.6	23.8	11.3	8.6	(567)
연령대						
65세 미만	37.5	12.5	25.0	0.0	25.0	(8)
65~69세	55.9	11.8	29.4	8.8	5.9	(34)
70~74세	41.5	10.8	38.5	6.2	4.6	(65)
75~79세	59.6	15.2	20.4	6.1	10.1	(99)
80~84세	53.8	15.7	21.1	15.7	12.1	(199)
85~89세	58.8	17.0	19.0	11.5	7.0	(199)
90세 이상	53.7	11.4	27.6	5.7	8.1	(123)
지역						
대도시	53.8	15.2	28.5	9.5	8.0	(262)
중소도시	55.5	13.7	21.1	11.9	8.8	(227)
농어촌	54.9	14.4	20.3	9.3	10.1	(23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7.1	0.0	33.3	19.0	0.0	(21)
2등급	60.4	12.2	25.0	6.3	4.2	(48)
3등급	56.2	11.8	21.6	11.8	10.5	(153)
4등급	54.0	17.4	24.1	8.0	8.3	(398)
5등급	54.6	11.2	20.4	14.4	11.2	(97)
인지지원등급	22.2	12.5	22.2	33.3	33.3	(9)
급여유형						
방문요양	52.1	14.9	25.4	9.3	7.1	(409)
방문목욕	61.8	16.4	22.1	11.8	5.9	(68)
방문간호	54.5	9.1	40.0	9.1	9.1	(11)
주야간보호	57.1	13.4	19.7	11.3	13.0	(239)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
치매 여부						
예	55.8	13.3	23.3	12.2	9.8	(369)
아니오	53.4	16.0	23.7	8.1	7.8	(358)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장기요양요원의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응답 또는 가족의 대리응답 2,518명 중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26명의 자료를 분석함
2) 2022년 신규 문항임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 현황

1. 일반 특성

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현황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거주했던 장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 가정은 71.1%, (요양)병원 14.6%, 다른 노인요양시설 10.4%, 기타 0.4%, 모름 3.5%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일반가정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비율은 증가한 반면 병원이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전원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일반 가정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비율이 2%p 높은 반면 다른 요양시설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전원한 비율은 2%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미만의 시설급여 이용자는 다른 연령대의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요양)병원이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전원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전원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일반 가정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보다는 (요양)병원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전원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비해 일반 가정에서 현재 시설로 입소한 비율이 높은 반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현재 시설로 전원한 비율이 노인공동생활가정 거주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거주했던 장소는 일반가정 67.2%, (요양)병원 17.9%, 다른 노인요양시설 10.4%, 기타 0.7%, 모름 3.7%로 조사되었다.

〈표 3-71〉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 장소[1)]

(단위: %, 명)

특성	일반 가정	(요양) 병원	다른 노인요양시설	기타[2)]	모름	계(명)	
전체	71.1	14.6	10.4	0.4	3.5	100.0	(740)
성별							
남성	72.0	14.9	8.7	0.6	3.7	100.0	(161)
여성	70.8	14.5	10.9	0.3	3.5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47.8	21.7	26.1	0.0	4.3	100.0	(24)
65~69세	75.0	12.5	8.3	0.0	4.2	100.0	(24)
70~74세	71.4	18.4	8.2	0.0	2.0	100.0	(49)
75~79세	69.6	13.9	8.9	1.3	6.3	100.0	(79)
80~84세	69.4	15.0	11.0	0.6	4.0	100.0	(172)
85~89세	71.7	17.0	9.0	0.0	2.4	100.0	(212)
90세 이상	74.0	9.9	11.0	0.6	4.4	100.0	(180)
지역							
대도시	70.4	16.1	10.1	0.5	3.0	100.0	(198)
중소도시	71.1	15.4	10.5	0.0	3.0	100.0	(267)
농어촌	71.6	12.7	10.5	0.7	4.4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6.7	21.7	10.0	1.7	10.0	100.0	(59)
2등급	67.1	18.7	11.6	0.0	2.6	100.0	(154)
3등급	70.6	13.6	11.7	0.8	3.4	100.0	(265)
4등급	76.9	11.6	8.3	0.4	2.9	100.0	(242)
5등급	83.3	11.1	5.6	0.0	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7	14.0	8.8	0.0	3.5	100.0	(57)
노인요양시설	70.9	14.6	10.4	0.4	3.7	100.0	(682)
치매 여부							
예	71.8	13.8	10.4	0.5	3.5	100.0	(607)
아니오	67.2	17.9	10.4	0.7	3.7	100.0	(133)
2019년[3)]	61.2	19.4	14.1	2.6	2.7	100.0	(1,288)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에는 부모, 친인척 및 지인의 집 등이 포함됨
3) 2019년의 보기 문항에 있던 '사회복지생활시설(1.7%)'은 2022년 보기 문항에서 제외함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일반 가정에서 생활했다고 응답한 시설급여 이용자 526명을 대상으로 입소하기 전 가구형태를 질문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 37.4%, 독거가구 37.3%, 부부가구 17.8%,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6.0%, 기타 1.6%로 분석되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2년 조사에서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비율은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29.3%는 독거가구, 42.2%는 부부가구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41.8%, 독거가구 비율이 39.6%로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기타 비율이 18.2%로 높았으며, 65~69세와 70~74세 시설급여 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각각 40.7%로 높았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독거가구 39.1%, 자녀동거가구 32.0%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비율이 15.2%로 다른 인정등급의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독거가구 비율이 45.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전 독거가구 비율이 40.5%, 자녀동가구 38.1% 등이었으며,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독거가구 37.1%, 자녀동거가구 37.3%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 전 독거가구 비율이 42.9%인 반면,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 전 독거가구 비율은 35.9%로 나타났다.

〈표 3-7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기 전 가구형태[1)]

(단위: %, 명)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기타[2)]	계(명)	
전체	37.3	17.8	37.4	6.0	1.6	100.0	(526)
성별							
남성	29.3	42.2	22.4	2.6	3.4	100.0	(116)
여성	39.6	10.8	41.8	6.8	1.0	100.0	(410)
연령대							
65세 미만	36.4	18.2	27.3	0.0	18.2	100.0	(11)
65~69세	38.9	33.3	16.7	0.0	11.1	100.0	(18)
70~74세	26.5	35.3	35.3	2.9	0.0	100.0	(34)
75~79세	45.5	27.3	21.8	3.6	1.8	100.0	(55)
80~84세	35.0	24.2	33.3	5.8	1.7	100.0	(120)
85~89세	36.4	13.2	43.0	6.6	.7	100.0	(152)
90세 이상	40.3	6.0	46.3	7.5	0.0	100.0	(134)
지역							
대도시	37.9	12.9	40.7	7.1	1.4	100.0	(140)
중소도시	34.9	16.9	40.7	5.8	1.6	100.0	(189)
농어촌	39.1	21.8	32.0	5.6	1.5	100.0	(19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6.4	21.2	27.3	15.2	0.0	100.0	(34)
2등급	28.8	19.2	43.3	7.7	1.0	100.0	(104)
3등급	35.3	15.5	43.9	3.7	1.6	100.0	(187)
4등급	45.4	18.4	28.6	5.9	1.6	100.0	(185)
5등급	31.3	18.8	50.0	0.0	0.0	100.0	(15)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5	11.9	38.1	4.8	4.8	100.0	(42)
노인요양시설	37.1	18.2	37.3	6.0	1.4	100.0	(483)
치매 여부							
예	35.9	18.1	38.7	6.2	1.1	100.0	(436)
아니오	42.9	16.5	30.8	5.5	4.4	100.0	(90)
2019년	34.2	14.5	40.7	8.5	2.1	100.0	(788)

주: 1)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 일반 가정에서 거주한 시설급여 이용자 526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형제자매와 동거, 부모와 동거, 비혈연 관계인 자와 동거 등

현재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시설급여 이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평균 입원기간을 질문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평균 1.8년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9년 1.7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2.1년,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 평균 1.7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2.9년, 90세 이상 시설급여 이용자 2.2년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2.0년, 중소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 1.9년, 농어촌 지역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 1.5년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2.6년을 (요양)병원에 입원했었으며,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 1.6년, 3등급과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1.8년을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입소전 1.5년을 입원했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평균 1.8년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1.8년,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1.7년을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던 시설급여 이용자 77명을 대상으로 평균 입소 기간을 질문하였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입소전에 약 3.1년을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4년,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1년을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6.4년,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0년을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했으며, 대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4년, 중소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1년, 농어촌 지역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0년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5년,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4.0년,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0년 등이었으며,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0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평균 3.2년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2년,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1년을 다른 요양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기 전 병원이나 시설 평균 입원·입소기간

(단위: 명, 년)

특성	(요양)병원	다른 노인요양시설
평균 입원·입소기간(년)	1.8	3.1
사례수(명)	(108)	(77)
성별		
남성	2.1	3.4
여성	1.7	3.1
연령대		
65세 미만	2.9	6.4
65~69세	1.9	4.0
70~74세	1.8	2.5
75~79세	1.1	1.7
80~84세	1.8	2.8
85~89세	1.6	2.9
90세 이상	2.2	3.3
지역		
대도시	2.0	3.4
중소도시	1.9	3.1
농어촌	1.5	3.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6	3.5
2등급	1.6	4.0
3등급	1.8	3.0
4등급	1.8	2.7
5등급	0.8	0.9
인지지원등급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	3.0
노인요양시설	1.8	3.2
치매 여부		
예	1.8	3.2
아니오	1.7	3.1
2019년	1.7	2.3

주: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시설급여 이용자 108명, 그리고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했다고 응답한 시설급여 이용자 77명의 자료를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전 재가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38.9%,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49.8%, 모름 11.2%였으며,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입소 전 재가급여 이용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보다는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재가급여 이용률이 높았으며, 70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가급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45.2%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에 재가급여를 이용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41.2%,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38.8%,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39.8% 등이 입소 전 재가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5.7%,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9.1%가 입소 전에 재가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40.1%,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3.3%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에 재가급여를 이용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4〉 (본인 또는 대리응답)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모름	계(명)	
전체	38.9	49.8	11.2	100.0	(526)
성별					
남성	34.5	55.2	10.3	100.0	(116)
여성	40.2	48.3	11.5	100.0	(410)
연령대					
65세 미만	25.0	66.7	8.3	100.0	(11)
65~69세	27.8	50.0	22.2	100.0	(18)
70~74세	33.3	58.3	8.3	100.0	(34)
75~79세	41.1	48.2	10.7	100.0	(55)
80~84세	35.0	54.2	10.8	100.0	(120)
85~89세	43.4	46.1	10.5	100.0	(152)
90세 이상	41.0	47.0	11.9	100.0	(134)
지역					
대도시	30.0	54.3	15.7	100.0	(140)
중소도시	39.2	49.7	11.1	100.0	(189)
농어촌	45.2	46.7	8.1	100.0	(19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1.2	50.0	8.8	100.0	(34)
2등급	38.8	50.5	10.7	100.0	(104)
3등급	39.8	49.5	10.8	100.0	(187)
4등급	38.2	50.5	11.3	100.0	(185)
5등급	31.3	43.8	25.0	100.0	(15)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5.7	54.8	9.5	100.0	(42)
노인요양시설	39.1	49.5	11.4	100.0	(483)
치매 여부					
예	40.1	49.1	10.8	100.0	(436)
아니오	33.3	53.3	13.3	100.0	(90)
2019년	42.4	52.6	5.0	100.0	(788)

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 일반 가정에서 거주했던 시설급여 이용자 526명의 자료를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전 재가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 205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재가급여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방문요양은 69.9%, 방문목욕 11.5%, 방문간호 3.4%, 주야간보호 29.9%, 단기보호 1.7%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방문목욕 이용률은 감소하고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요양을 이용한 시설급여 이용자를 보면, 남성 65.0%, 여성 70.9%였으며, 65~69세, 70~74세,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9.0%, 중소도시 70.3%, 농어촌 70.5%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과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입소전 방문요양을 이용한 비율이 다른 인정등급의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의 60.0%,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의 70.5%가 입소 전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67.8%,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83.3%가 입소 전 방문요양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목욕을 이용한 시설급여 이용자는 남성 10.0%, 여성 12.1%였으며, 70세 미만의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방문목욕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21.4%,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7.1%가 입소 전 방문목욕을 이용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입소 전 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방문간호를 이용한 시설급여 이용자는 3.4%였으며, 남성 2.6%, 여성 3.6%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방문간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29.9%로 남성 32.5%, 여성 29.1%였으며, 65~69세 연령대에서 입소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과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2.0%,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

자의 16.7%가 입소 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소 전 단기보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1.7%로 남성보다는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와 70~74세 시설급여 이용자, 대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 등의 단기보호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이용경험이 있는 재가급여(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체	(205)	69.9	11.5	3.4	29.9	1.7
성별						
남성	(40)	65.0	10.0	2.6	32.5	0.0
여성	(165)	70.9	12.1	3.6	29.1	1.8
연령대						
65세 미만	(2)	50.0	0.0	33.3	33.3	0.0
65~69세	(4)	75.0	0.0	0.0	40.0	0.0
70~74세	(11)	72.7	8.3	0.0	25.0	8.3
75~79세	(23)	69.6	13.6	4.5	27.3	0.0
80~84세	(42)	64.3	9.8	4.8	34.1	2.4
85~89세	(66)	69.7	10.6	1.5	30.3	1.5
90세 이상	(55)	74.5	14.5	3.6	27.3	1.8
지역						
대도시	(42)	69.0	7.1	2.4	31.0	2.4
중소도시	(74)	70.3	6.8	5.4	29.7	1.4
농어촌	(88)	70.5	17.0	2.2	29.5	2.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4)	71.4	21.4	7.1	21.4	0.0
2등급	(40)	75.0	17.1	2.5	22.0	2.5
3등급	(75)	73.3	10.7	5.3	27.0	1.4
4등급	(71)	64.8	8.3	2.8	36.6	1.4
5등급	(5)	40.0	20.0	0.0	60.0	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	60.0	6.7	0.0	33.3	6.7
노인요양시설	(190)	70.5	11.6	3.7	29.5	1.6
치매 여부						
예	(174)	67.8	10.3	3.4	32.0	1.7
아니오	(30)	83.3	16.7	0.0	16.7	0.0
2019년	(334)	70.3	13.3	3.7	27.8	1.7

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재가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05명의 자료를 분석

나. 시설 생활 특성

현재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기간은 1~2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각 21.1%로 가장 많았으며, 2~3년 미만 17.9%, 1년 미만 17.7%, 3~4년 미만 13.0%, 4~5년 미만 9.2%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년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22.1% → 17.7%)와 1년~2년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26.6% → 21.1%)로 감소한 반면,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1~2년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5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5년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는 1년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4.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기간이 5년 이상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입소기간이 5년 이상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인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31.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이 22.4%로 노인요양시설의 17.3%보다 높았으며, 입소기간이 5년 이상 비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2%, 노인요양시설 21.4%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19.3%가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입소하고 있는 반면,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29.3%가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기간

(단위: %, 명)

특성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계(명)	
전체	17.7	21.1	17.9	13.0	9.2	21.1	100.0	(740)
성별								
남성	18.8	26.9	17.5	12.5	6.9	17.5	100.0	(161)
여성	17.5	19.6	18.0	13.1	9.9	22.0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16.7	25.0	16.7	8.3	8.3	25.0	100.0	(24)
65~69세	24.0	20.0	24.0	12.0	8.0	12.0	100.0	(24)
70~74세	13.7	23.5	13.7	17.6	13.7	17.6	100.0	(49)
75~79세	21.3	22.5	17.5	12.5	8.8	17.5	100.0	(79)
80~84세	18.0	23.3	18.6	12.2	8.7	19.2	100.0	(172)
85~89세	19.2	22.5	17.8	12.2	8.0	20.2	100.0	(212)
90세 이상	14.4	15.6	18.3	13.9	11.1	26.7	100.0	(180)
지역								
대도시	15.2	18.7	18.2	13.6	9.1	25.3	100.0	(198)
중소도시	17.6	21.7	16.9	13.1	10.1	20.6	100.0	(267)
농어촌	19.3	22.3	18.6	12.8	8.4	18.6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9	13.6	22.0	5.1	11.9	35.6	100.0	(59)
2등급	13.5	18.1	17.4	12.3	10.3	28.4	100.0	(154)
3등급	17.4	19.3	18.2	14.4	10.6	20.1	100.0	(265)
4등급	21.1	26.4	16.5	13.6	6.6	15.7	100.0	(242)
5등급	31.6	26.3	21.1	15.8	5.3	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4	20.7	17.2	13.8	8.6	17.2	100.0	(57)
노인요양시설	17.3	21.1	18.0	12.9	9.2	21.4	100.0	(682)
치매 여부								
예	18.0	21.6	18.2	13.5	9.4	19.3	100.0	(607)
아니오	16.5	18.8	16.5	10.5	8.3	29.3	100.0	(133)
2019년	22.1	26.6	17.0	11.1	7.5	15.7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실 규모를 보면, 1인실 3.8%, 2인실 16.5%, 3인실 23.5%, 4인실 56.2%로 2019년에 조사된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1인실과 2인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수급자의 58.5%는 4인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70~74세와 75~79세 연령대에서 1인실 이용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4인실 이용률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1

인실이나 2인실 이용비율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68.3%, 2등급 시설급여 이용자의 57.8%, 3등급 시설급여 이용자의 54.3% 등이 4인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4등급과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인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0%가 1인실을 이용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1인실 비율인 3.5%의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가진 시설급여 이용자의 55.6%, 그리고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59.0%는 4인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실 규모

(단위: %, 명)

특성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계(명)
전체	3.8	16.5	23.5	56.2	100.0 (740)
성별					
남성	6.9	19.4	25.6	48.1	100.0 (161)
여성	2.9	15.7	22.8	58.5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4.3	17.4	21.7	56.5	100.0 (24)
65~69세	4.2	12.5	25.0	58.3	100.0 (24)
70~74세	2.0	14.3	24.5	59.2	100.0 (49)
75~79세	2.5	11.4	32.9	53.2	100.0 (79)
80~84세	4.6	17.9	22.5	54.9	100.0 (172)
85~89세	3.8	19.0	21.3	55.9	100.0 (212)
90세 이상	3.9	15.5	22.1	58.6	100.0 (180)
지역					
대도시	3.0	13.6	23.7	59.6	100.0 (198)
중소도시	3.8	19.5	21.4	55.3	100.0 (267)
농어촌	4.7	15.3	25.1	54.9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1.7	20.0	68.3	100.0 (59)
2등급	3.2	16.2	22.7	57.8	100.0 (154)
3등급	4.2	17.4	24.2	54.3	100.0 (265)
4등급	4.5	16.9	24.0	54.5	100.0 (242)
5등급	5.0	20.0	25.0	5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0	26.3	35.1	31.6	100.0 (57)
노인요양시설	3.5	15.7	22.4	58.4	100.0 (682)
치매 여부					
예	3.6	16.7	24.1	55.6	100.0 (607)
아니오	4.5	15.7	20.9	59.0	100.0 (133)
2019년	3.3	18.2	23.5	55.0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한 빈도를 보면, 주 3회 이상 2.7%, 주 1~2회 6.2%, 월 1~3회 33.1%, 년 6~11회 10,3%, 년 4~5회 15.7%, 년 1~3회 20.6%, 방문한적이 없음 11.4%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방문 빈도가 줄어들어 방문한 적이 없다는 비율도 2019년 4.3%에서 2022년 11.4%로 증가하였으며, 년 1~3회 비율은 2019년 6.2%에서 2022년에는 년 20.6%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가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년 1~3회와 방문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년 1~3회(39.1%)와 방문한적이 없음(26.1%)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월 1~3회 비율이 37.6%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년 6~11회 방문은 7.5%로 다른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가족이나 지인 방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년 1~3회 33.3%, 방문없음 18.3%로 나타났으며,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방문 비율이 5.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3.4%, 주 1~2회 8.6%, 월 1~3회 31.0% 등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2.6%, 주 1~2회 6.1%, 월 1~3회 33.2%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 빈도는 주 3회 이상 2.3%,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 빈도는 주 1~2회 4.4%, 월 1~3회 30.4%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3-7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가족이나 지인 방문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방문 없음	계(명)	
전체	2.7	6.2	33.1	10.3	15.7	20.6	11.4	100.0	(740)
성별									
남성	1.9	3.7	28.4	11.1	14.8	24.7	15.4	100.0	(161)
여성	2.9	7.1	34.4	10.0	15.9	19.5	10.2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17.4	4.3	13.0	39.1	26.1	100.0	(24)
65~69세	0.0	8.3	25.0	0.0	29.2	16.7	20.8	100.0	(24)
70~74세	2.0	2.0	38.0	10.0	10.0	24.0	14.0	100.0	(49)
75~79세	1.3	7.6	32.9	13.9	11.4	16.5	16.5	100.0	(79)
80~84세	3.5	7.5	34.7	8.1	17.9	17.9	10.4	100.0	(172)
85~89세	3.3	8.5	31.1	11.3	15.1	20.3	10.4	100.0	(212)
90세 이상	2.8	3.9	35.6	11.7	16.1	22.2	7.8	100.0	(180)
지역									
대도시	3.0	5.1	32.3	11.6	14.6	21.7	11.6	100.0	(198)
중소도시	2.6	7.5	37.6	7.5	14.7	18.8	11.3	100.0	(267)
농어촌	2.2	6.2	29.3	12.0	17.8	21.4	11.2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7	5.0	21.7	6.7	13.3	33.3	18.3	100.0	(59)
2등급	5.2	5.9	34.6	8.5	17.0	20.9	7.8	100.0	(154)
3등급	1.5	6.4	32.6	11.0	16.3	19.7	12.5	100.0	(265)
4등급	2.5	5.8	36.8	11.6	14.9	17.8	10.7	100.0	(242)
5등급	0.0	10.5	26.3	10.5	21.1	21.1	10.5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4	8.6	31.0	8.6	15.5	22.4	10.3	100.0	(57)
노인요양시설	2.6	6.1	33.2	10.4	15.7	20.5	11.4	100.0	(682)
치매 여부									
예	2.3	6.6	33.7	10.4	15.8	20.5	10.7	100.0	(607)
아니오	4.4	4.4	30.4	9.6	15.6	21.5	14.1	100.0	(133)
2019년	10.0	25.0	41.0	8.4	5.0	6.2	4.3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영상 통화 포함)를 한 빈도를 보면, 주 3회 이상 12.8%, 주 1~2회 11.4%, 월 1~3회 27.4%, 년 6~11회 5.0%, 년 4~5회 6.2%, 년 1~3회 8.1%, 통화한 적이 없음 29.0%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와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 간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4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80~84세, 85~89세 연령대에서 주 3회 이상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14.6%가 주 3회 이상 통화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통화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30.0%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46.7%,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31.2%가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등급, 4등급,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주 3회 이상 통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0%, 14.1%, 1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주 3회 이상 15.3%, 주 1~2회 11.9%, 월 1~3회 30.5% 등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12.6%, 주 1~2회 11.3%, 월 1~3회 27.1%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통화한 적이 없는 비율이 30.1%였으며,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통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7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가족이나 지인 등과 통화 (영상 통화 포함)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통화 없음	계(명)	
전체	12.8	11.4	27.4	5.0	6.2	8.1	29.0	100.0	(740)
성별									
남성	12.5	10.0	27.5	5.6	6.9	8.8	28.8	100.0	(161)
여성	12.9	11.7	27.4	4.8	6.0	7.9	29.1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4.3	4.3	26.1	8.7	0.0	13.0	43.5	100.0	(24)
65~69세	4.3	8.7	30.4	4.3	8.7	13.0	30.4	100.0	(24)
70~74세	10.2	6.1	28.6	4.1	6.1	10.2	34.7	100.0	(49)
75~79세	12.7	13.9	30.4	7.6	3.8	6.3	25.3	100.0	(79)
80~84세	15.6	11.6	25.4	4.0	5.2	8.7	29.5	100.0	(172)
85~89세	16.0	12.7	28.8	5.2	6.6	6.6	24.1	100.0	(212)
90세 이상	8.9	11.1	26.1	5.0	7.8	8.3	32.8	100.0	(180)
지역									
대도시	14.6	12.1	23.7	6.1	7.6	8.6	27.3	100.0	(198)
중소도시	12.0	13.1	29.2	4.5	4.9	7.1	29.2	100.0	(267)
농어촌	12.3	9.0	28.5	4.7	6.5	9.0	30.0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0	6.7	21.7	5.0	5.0	10.0	46.7	100.0	(59)
2등급	11.7	11.0	26.0	5.8	5.2	9.1	31.2	100.0	(154)
3등급	14.0	11.3	27.2	5.7	6.0	9.1	26.8	100.0	(265)
4등급	14.1	13.3	29.9	4.1	6.6	5.4	26.6	100.0	(242)
5등급	16.7	5.6	27.8	5.6	11.1	11.1	22.2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3	11.9	30.5	5.1	5.1	6.8	25.4	100.0	(57)
노인요양시설	12.6	11.3	27.1	5.1	6.3	8.3	29.3	100.0	(682)
치매 여부									
예	11.0	11.2	27.5	5.4	6.6	8.2	30.1	100.0	(607)
아니오	21.1	12.0	27.1	3.8	4.5	7.5	24.1	100.0	(133)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이용자 중 본인 응답이 가능한 174명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시설급여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비율은 2.0%,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등을 경험한 비율은 0.3%, 다른 사람이 수급자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0.9%,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이용자는 0.3%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경험을 한 비율은 남성 7.3%, 여성 4.5%였으며,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의 14.3%, 70~7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8.3%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경우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경험이 14.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은 남성 2.4%, 여성 1.5%였으며,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14.3%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 경험은 남성 2 5.%, 여성 1.5%였으며, 80~85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5.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8%,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2.4% 등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2.4%, 80~8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2.5%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경험은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2.4%,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0.7%였으며, 75~7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5.0%, 80~8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2.5%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학대는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2.4%, 80~8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2.5%,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4.3%,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0.8%로 분석되었다.

〈표 3-80〉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 경험

(단위: %, 명)

특성	응답 사례수	의견무시나 대화 기피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전체	(174)	4.7	1.2	2.0	0.3	0.9	0.3
성별							
남성	(41)	7.3	2.4	2.5	2.4	2.4	2.4
여성	(134)	4.5	1.5	1.5	0.0	0.7	0.0
연령대							
65세 미만	(7)	14.3	0.0	0.0	0.0	0.0	0.0
65~69세	(4)	0.0	0.0	0.0	0.0	0.0	0.0
70~74세	(12)	8.3	0.0	0.0	0.0	0.0	0.0
75~79세	(20)	5.0	0.0	0.0	0.0	5.0	0.0
80~84세	(39)	5.1	2.5	5.0	2.5	2.5	2.5
85~89세	(49)	4.1	0.0	2.0	0.0	0.0	0.0
90세 이상	(44)	2.3	2.3	2.2	0.0	0.0	0.0
지역							
대도시	(48)	4.2	0.0	2.1	0.0	0.0	0.0
중소도시	(52)	1.9	1.9	3.8	1.9	1.9	1.9
농어촌	(75)	8.0	1.3	1.4	0.0	1.4	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	14.3	14.3	14.3	14.3	14.3	14.3
2등급	(30)	6.7	0.0	3.2	0.0	0.0	0.0
3등급	(69)	2.9	0.0	1.4	0.0	0.0	0.0
4등급	(62)	3.2	1.6	1.6	0.0	1.6	0.0
5등급	(5)	0.0	0.0	0.0	0.0	0.0	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	7.7	0.0	0.0	0.0	0.0	0.0
노인요양시설	(162)	4.9	1.2	1.9	0.6	1.2	0.6
치매 여부							
예	(124)	5.6	1.6	2.4	0.8	0.8	0.8
아니오	(51)	3.9	0.0	0.0	0.0	0.0	0.0
2019년	(93)	7.5	4.3	-	-	5.4	-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본인응답자 174명의 자료를 분석함
2)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경제적 학대 문항은 2022년 신규 문항임

2. 시설급여 이용 현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시설급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게 질문하였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우선시 되는 사항은 물리적 환경이 30.5%,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4.6%, 장기요양기관의 평판이나 평가 14.3%, 주변의 소개나 추천 13.6%, 비용 10.0%, 인력수준 7.6%, 전문서비스 제공 여부 5.4%, 기타 4.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 비율이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74세 연령대는 장기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90세 이상 연령대는 비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나 평판이나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등급과 관련해서는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34.6%, 소개 및 추천 19.2% 등의 순이었으며,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29.2%, 장기요양기관까지의 거리 20.2%,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29.2%,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38.7%, 소개나 추천 16.1%, 평가나 평판 12.9% 등으로 높았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물리적 환경 30.0%, 평가나 평판 14.7%, 기관까지의 거리 14.7%, 소개나 추천 13.4%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인력수준, 기관의 평가나 평판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1)]

(단위: %, 명)

특성	비용	물리적 환경	인력 수준	평판·평가	거리	소개 및 추천	전문 서비스	기타[2)]	계(명)	
전체	10.0	30.5	7.6	14.3	14.6	13.6	5.4	4.2	100.0	(421)
성별										
남성	11.5	21.8	8.0	13.8	14.9	17.2	5.7	6.9	100.0	(87)
여성	9.6	32.6	7.5	14.4	14.4	12.6	5.4	3.6	100.0	(334)
연령대										
65세 미만	18.2	36.4	0.0	0.0	0.0	36.4	0.0	9.1	100.0	(11)
65~69세	0.0	30.0	10.0	10.0	10.0	20.0	10.0	10.0	100.0	(10)
70~74세	6.1	18.2	12.1	18.2	21.2	15.2	6.1	3.0	100.0	(33)
75~79세	10.9	32.6	6.5	15.2	10.9	15.2	6.5	2.2	100.0	(46)
80~84세	10.1	35.4	7.1	12.1	13.1	13.1	5.1	4.0	100.0	(99)
85~89세	7.8	33.6	7.8	14.7	17.2	9.5	5.2	4.3	100.0	(116)
90세 이상	13.3	24.8	7.6	15.2	15.2	14.3	4.8	4.8	100.0	(105)
지역										
대도시	12.1	31.8	9.3	15.0	11.2	11.2	4.7	4.7	100.0	(107)
중소도시	11.1	35.9	7.2	10.5	15.7	12.4	3.9	3.3	100.0	(153)
농어촌	8.0	24.1	6.8	17.3	15.4	16.0	7.4	4.9	100.0	(162)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5	34.6	7.7	7.7	7.7	19.2	3.8	7.7	100.0	(26)
2등급	10.1	29.2	5.6	12.4	20.2	11.2	6.7	4.5	100.0	(89)
3등급	9.7	29.2	7.8	14.9	13.0	16.2	5.8	3.2	100.0	(154)
4등급	9.4	33.8	7.2	15.1	14.4	11.5	4.3	4.3	100.0	(139)
5등급	18.2	9.1	18.2	18.2	9.1	18.2	9.1	0.0	100.0	(11)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7	38.7	3.2	9.7	12.9	16.1	3.2	6.5	100.0	(31)
노인요양시설	9.8	30.0	7.8	14.7	14.7	13.4	5.4	4.1	100.0	(387)
치매 여부										
예	9.8	30.3	8.3	14.7	13.8	13.8	5.2	4.3	100.0	(327)
아니오	10.5	30.5	5.3	12.6	16.8	13.7	6.3	4.2	100.0	(95)

주: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응답한 421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규모,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 등이 포함
3) 2019년 조사에서는 '본인 응답'만 가능한 문항이었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응답 허용 범위가 '본인과 가족'으로 변경되어 2019년 분석 결과와 2022년 분석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2019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지난 1개월 동안 시설급여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와 이용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99.8%가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주당 평균 1.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서비스 이용률과 이용횟 수에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장기요양인정등급별, 급여유형이나 치매 여부에 따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강관리와 관련하여 시설급여 이용자의 96.6%가 하루 평균 2.7회의 구강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95.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97.1%가 구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65~69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는 100.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0~74세 시설급여 이용자는 93.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 96.5%, 중소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 95.1%, 농어촌 지역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의 97.8%가 구강관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93.2%가 구강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급여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97.2%, 그리고 치매가 없는 수급자의 94.0%가 구강관리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이용 여부와 이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69.4%가 주당 평균 2.2회의 물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68.1%,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69.8%가 물리 또는 작업치료를 받고 있으며,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의 75.0%, 75~7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72.2%, 85~8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71.1% 등이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물리(작업)치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59.3%만이 물리(작업)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인정등급의 수급자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다.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67.7%,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70.9%,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70.7%,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73.7%가 물리(작업)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2〉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목욕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전체	99.8	1.2	0.2	100.0 (740)
성별				
남성	99.4	1.2	0.6	100.0 (161)
여성	99.8	1.2	0.2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100.0	1.2	0.0	100.0 (24)
65~69세	100.0	1.2	0.0	100.0 (24)
70~74세	100.0	1.3	0.0	100.0 (49)
75~79세	100.0	1.2	0.0	100.0 (79)
80~84세	99.4	1.2	0.6	100.0 (172)
85~89세	99.5	1.2	0.5	100.0 (212)
90세 이상	100.0	1.2	0.0	100.0 (180)
지역				
대도시	100.0	1.2	0.0	100.0 (198)
중소도시	100.0	1.2	0.0	100.0 (267)
농어촌	99.6	1.2	0.4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00.0	1.2	0.0	100.0 (59)
2등급	99.4	1.2	0.6	100.0 (154)
3등급	99.6	1.2	0.4	100.0 (265)
4등급	100.0	1.2	0.0	100.0 (242)
5등급	100.0	1.2	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0	1.3	0.0	100.0 (57)
노인요양시설	99.9		0.1	100.0 (682)
치매 여부				
예	100.0	1.2	0.0	100.0 (607)
아니오	99.2	1.2	0.8	100.0 (133)
2019년	99.4	1.3	0.6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표 3-83〉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구강관리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하루 평균 이용 횟수		
전체	96.6	2.7	3.4	100.0 (740)
성별				
남성	95.0	2.7	5.0	100.0 (161)
여성	97.1	2.7	2.9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95.8	2.8	4.2	100.0 (24)
65~69세	100.0	2.8	0.0	100.0 (24)
70~74세	93.9	2.8	6.1	100.0 (49)
75~79세	97.5	2.7	2.5	100.0 (79)
80~84세	96.5	2.7	3.5	100.0 (172)
85~89세	96.7	2.7	3.3	100.0 (212)
90세 이상	96.7	2.6	3.3	100.0 (180)
지역				
대도시	96.5	2.7	3.5	100.0 (198)
중소도시	95.1	2.7	4.9	100.0 (267)
농어촌	97.8	2.7	2.2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3.2	2.7	6.8	100.0 (59)
2등급	96.1	2.7	3.9	100.0 (154)
3등급	96.6	2.7	3.4	100.0 (265)
4등급	97.1	2.8	2.9	100.0 (242)
5등급	100.0	2.7	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6.5	2.6	3.5	100.0 (57)
노인요양시설	96.6	2.7	3.4	100.0 (682)
치매 여부				
예	97.2	2.7	2.8	100.0 (607)
아니오	94.0	2.7	6.0	100.0 (133)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3-84〉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물리(작업)치료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전체	69.4	2.2	30.6	100.0	(740)
성별					
남성	68.1	2.2	31.9	100.0	(161)
여성	69.8	2.2	30.2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75.0	2.3	25.0	100.0	(24)
65~69세	62.5	2.3	37.5	100.0	(24)
70~74세	65.3	2.3	34.7	100.0	(49)
75~79세	72.2	2.2	27.8	100.0	(79)
80~84세	69.4	2.3	30.6	100.0	(172)
85~89세	71.1	2.1	28.9	100.0	(212)
90세 이상	67.2	2.2	32.8	100.0	(180)
지역					
대도시	70.7	2.1	29.3	100.0	(198)
중소도시	67.4	2.4	32.6	100.0	(267)
농어촌	70.2	2.1	29.8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9.3	2.1	40.7	100.0	(59)
2등급	67.7	2.2	32.3	100.0	(154)
3등급	70.9	2.2	29.1	100.0	(265)
4등급	70.7	2.2	29.3	100.0	(242)
5등급	73.7	2.4	26.3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8	2.9	63.2	100.0	(57)
노인요양시설	72.1	2.2	27.9	100.0	(682)
치매 여부					
예	69.8	2.2	30.2	100.0	(607)
아니오	67.7	2.2	32.3	100.0	(133)
2019년	70.2	2.5	29.8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 동안 시설급여 이용자의 83.9%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기능회복훈련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4.6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기능회복훈련을 받는 비율이 87.5%에서 83.9%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5.6%,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3.4%가 기능회복훈련을 받고 있으며,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기능회복훈련을 받는 비율이 7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기능회복훈련 비율이 8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71.7%가 기능회복훈련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86.0%,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85.3%가 기능회복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3%가 기능회복 훈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82.2%가 인지기능증진서비스(회상프로그램, 문장 만들기 등)를 주당 평균 2.6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9년의 86.7%가 인지기능서비스를 주당 평균 3.4회 받는 것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2.6%,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2.0%가 인지기능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65~69세와 80~84세의 시설급여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증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중증에 가까울수록 인지기능증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2.4%가 인지기능증진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2%,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4%가 인지기능증진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여가활동서비스(음악, 미술, 원예, 문화공연 등)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시설급여 이용자는 전체의 81.7%로 주당 평균 2.1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3.1%,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1.3%가 참여하였으며,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여가활동서비스 이용률(79.2%)이 다른 연령대의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여가활동서비스 이용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61.7%만이 여가활동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77.4%, 3등급인 시설

급여 이용자의 82.6%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5.4%,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2.3%가 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85〉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1]: 기능회복훈련[2]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전체	83.9	4.6	16.1	100.0	(740)
성별					
남성	85.6	4.4	14.4	100.0	(161)
여성	83.4	4.7	16.6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87.0	4.5	13.0	100.0	(24)
65~69세	79.2	4.5	20.8	100.0	(24)
70~74세	83.7	4.9	16.3	100.0	(49)
75~79세	87.3	4.6	12.7	100.0	(79)
80~84세	81.5	4.6	18.5	100.0	(172)
85~89세	85.8	4.7	14.2	100.0	(212)
90세 이상	82.8	4.6	17.2	100.0	(180)
지역					
대도시	82.8	4.5	17.2	100.0	(198)
중소도시	83.1	4.7	16.9	100.0	(267)
농어촌	85.5	4.7	14.5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1.7	4.3	28.3	100.0	(59)
2등급	83.1	4.7	16.9	100.0	(154)
3등급	85.3	4.5	14.7	100.0	(265)
4등급	86.0	4.8	14.0	100.0	(242)
5등급	84.2	4.4	15.8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8.9	4.5	21.1	100.0	(57)
노인요양시설	84.3	4.6	15.7	100.0	(682)
치매 여부					
예	84.5	4.7	15.5	100.0	(607)
아니오	81.2	4.4	18.8	100.0	(133)
2019년	87.5	4.7	12.5	100.0	(1,288)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기능회복훈련은 신체기능훈련(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등), 기본동작훈련(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등),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동작, 배설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등)이 해당됨

〈표 3-86〉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1]: 인지기능증진 서비스[2]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전체	82.2	2.6	17.8	100.0 (740)
성별				
남성	82.6	2.6	17.4	100.0 (161)
여성	82.0	2.6	18.0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83.3	2.6	16.7	100.0 (24)
65~69세	79.2	3.0	20.8	100.0 (24)
70~74세	83.7	2.4	16.3	100.0 (49)
75~79세	83.5	2.7	16.5	100.0 (79)
80~84세	79.2	2.8	20.8	100.0 (172)
85~89세	84.9	2.5	15.1	100.0 (212)
90세 이상	80.6	2.5	19.4	100.0 (180)
지역				
대도시	79.8	2.5	20.2	100.0 (198)
중소도시	82.8	2.6	17.2	100.0 (267)
농어촌	83.3	2.6	16.7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3.3	2.6	36.7	100.0 (59)
2등급	79.2	2.6	20.8	100.0 (154)
3등급	83.8	2.5	16.2	100.0 (265)
4등급	86.4	2.7	13.6	100.0 (242)
5등급	89.5	3.2	10.5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8.9	3.3	21.1	100.0 (57)
노인요양시설	82.4	2.5	17.6	100.0 (682)
치매 여부				
예	83.2	2.6	16.8	100.0 (607)
아니오	77.4	2.4	22.6	100.0 (133)
2019년	86.7	3.4	13.3	100.0 (1,288)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기능증진서비스는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인지자극 활동, 음악활동 등의 집단 프로그램이 해당됨

〈표 3-87〉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1]: 여가활동 서비스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전체	81.7	2.1	18.3	100.0 (740)
성별				
남성	83.1	2.1	16.9	100.0 (161)
여성	81.3	2.1	18.7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83.3	2.7	16.7	100.0 (24)
65~69세	79.2	2.2	20.8	100.0 (24)
70~74세	83.7	2.0	16.3	100.0 (49)
75~79세	81.0	2.2	19.0	100.0 (79)
80~84세	80.9	2.3	19.1	100.0 (172)
85~89세	83.9	1.9	16.1	100.0 (212)
90세 이상	80.0	1.9	20.0	100.0 (180)
지역				
대도시	80.8	2.1	19.2	100.0 (198)
중소도시	80.9	2.1	19.1	100.0 (267)
농어촌	82.9	2.1	17.1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1.7	2.2	38.3	100.0 (59)
2등급	77.4	2.0	22.6	100.0 (154)
3등급	82.6	2.0	17.4	100.0 (265)
4등급	88.0	2.2	12.0	100.0 (242)
5등급	89.5	1.9	10.5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5.4	2.3	24.6	100.0 (57)
노인요양시설	82.3	2.1	17.7	100.0 (682)
치매 여부				
예	82.4	2.1	17.6	100.0 (607)
아니오	78.4	1.9	21.6	100.0 (133)
2019년	78.1	2.6	29.1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년 동안 건물 밖 산책을 한 적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46.7%로 2019년 58.5%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54.2%)와 85~89세 시설급여 이용자(50.9%)의 건물 밖 산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세 미만(45.8%), 90세 이상(42.2%)의 연령대에서 산책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시설급여 이용자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산책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보다는 3등급~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건물 밖 산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36.8%,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47.6%가 지난 1년 동안 건물 밖 산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46.6%,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47.4%가 산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야유회나 나들이를 간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의 9.0%로 2019년 36.1%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야유회나 나들이를 간 적이 있는 경우, 연 평균 2.6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10.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6%가 야유회에 참여하였으며, 65~69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의 20.8%, 85~8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11.8%가 지난 1년간 나들이나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0.0%,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9.5%,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9.8% 등이 야유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0%,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9.1%가 지난 1년간 야유회에 간 적이 있었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7%,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9.8%가 지난 1년간 야유회나 나들이를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8〉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건물 밖 산책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월평균 이용 횟수		
전체	46.7	5.6	53.3	100.0 (740)
성별				
남성	47.8	6.5	52.2	100.0 (161)
여성	46.5	5.3	53.5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45.8	7.4	54.2	100.0 (24)
65~69세	54.2	5.8	45.8	100.0 (24)
70~74세	46.9	6.1	53.1	100.0 (49)
75~79세	46.8	4.3	53.2	100.0 (79)
80~84세	45.9	6.2	54.1	100.0 (172)
85~89세	50.9	5.8	49.1	100.0 (212)
90세 이상	42.2	4.7	57.8	100.0 (180)
지역				
대도시	32.3	4.4	67.7	100.0 (198)
중소도시	38.6	4.8	61.4	100.0 (267)
농어촌	65.1	6.4	34.9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0.5	5.1	69.5	100.0 (59)
2등급	41.3	4.5	58.7	100.0 (154)
3등급	49.8	5.5	50.2	100.0 (265)
4등급	50.8	6.0	49.2	100.0 (242)
5등급	50.0	8.5	5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8	6.8	63.2	100.0 (57)
노인요양시설	47.6	5.5	52.4	100.0 (682)
치매 여부				
예	46.6	5.7	53.4	100.0 (607)
아니오	47.4	5.1	52.6	100.0 (133)
2019년	58.5	6.3	41.5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표 3-89〉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야유회 또는 나들이

(단위: %, 명, 회)

특성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연평균 이용 횟수		
전체	9.0	2.6	91.0	100.0 (740)
성별				
남성	10.0	2.4	90.0	100.0 (161)
여성	8.6	2.6	91.4	100.0 (579)
연령대				
65세 미만	8.3	5.8	91.7	100.0 (24)
65~69세	20.8	1.8	79.2	100.0 (24)
70~74세	4.1	3.2	95.9	100.0 (49)
75~79세	7.6	1.7	92.4	100.0 (79)
80~84세	8.7	2.2	91.3	100.0 (172)
85~89세	11.8	2.8	88.2	100.0 (212)
90세 이상	6.7	2.6	93.3	100.0 (180)
지역				
대도시	6.6	2.5	93.4	100.0 (198)
중소도시	7.1	2.3	92.9	100.0 (267)
농어촌	12.7	2.7	87.3	100.0 (27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4	2.2	96.6	100.0 (59)
2등급	9.0	2.7	91.0	100.0 (154)
3등급	9.8	2.5	90.2	100.0 (265)
4등급	9.5	2.4	90.5	100.0 (242)
5등급	10.0	4.4	90.0	100.0 (19)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0	2.6	93.0	100.0 (57)
노인요양시설	9.1	2.6	90.9	100.0 (682)
치매 여부				
예	8.7	2.4	91.3	100.0 (607)
아니오	9.8	3.3	90.2	100.0 (133)
2019년	36.1	2.7	63.9	100.0 (1,288)

주: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담을 포함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한 비용은 평균 46.3만 원이었으며, 2019년 38.1만 원에 보다 약 8만 원이 증가하였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의 16.8%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5세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의 54.2%, 65~6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33.3%, 70~7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24.5%가 시설급여 이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24.7%, 중소도시 12.0%, 농어촌 15.6%가 시설급여 이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8.6%,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19.2%가 시설급여 이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19.3%,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16.7%가 시설급여 이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비용을 보면,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3.3만 원,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7.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65세 미만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22.7만 원, 65~69세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3.9만 원이었으며, 90세 이상 시설급여 이용자는 49.4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의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비용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약 47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4.5만 원,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3.5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39.9만 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평균 46.8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평균 46.8만 원,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월평균 44.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0〉 (본인 또는 대리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시설급여 이용에 대한 납부 비용[1)]

(단위: %, 명)

특성	없음	0.1~30만 원 미만	30~50만 원 미만	50~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만 원)[2)]
전체	16.8	7.5	24.7	29.9	21.1	100.0	(740)	46.3
성별								
남성	18.8	11.3	20.6	28.8	20.6	100.0	(161)	43.4
여성	16.2	6.4	25.9	30.2	21.2	100.0	(579)	47.0
연령대								
65세 미만	54.2	12.5	4.2	16.7	12.5	100.0	(24)	22.7
65~69세	33.3	12.5	12.5	25.0	16.7	100.0	(24)	33.9
70~74세	24.5	4.1	24.5	30.6	16.3	100.0	(49)	41.7
75~79세	17.9	10.3	20.5	29.5	21.8	100.0	(79)	44.6
80~84세	13.9	6.9	25.4	33.5	20.2	100.0	(172)	47.5
85~89세	14.2	7.1	28.9	27.5	22.3	100.0	(212)	48.3
90세 이상	13.3	6.1	25.6	31.7	23.3	100.0	(180)	49.4
지역								
대도시	24.7	5.1	20.7	28.8	20.7	100.0	(198)	43.4
중소도시	12.0	7.9	20.7	31.2	28.2	100.0	(267)	51.8
농어촌	15.6	8.7	31.3	29.8	14.5	100.0	(275)	43.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8.6	5.1	22.0	27.1	27.1	100.0	(59)	47.3
2등급	15.5	7.7	23.2	30.3	23.2	100.0	(154)	47.2
3등급	15.0	6.8	25.6	31.6	21.1	100.0	(265)	47.3
4등급	19.2	8.3	25.4	28.3	18.8	100.0	(242)	44.5
5등급	15.8	10.5	21.1	36.8	15.8	100.0	(19)	43.5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	-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3	10.5	26.3	33.3	10.5	100.0	(57)	39.9
노인요양시설	16.7	7.2	24.5	29.6	22.0	100.0	(682)	46.8
치매 여부								
예	16.2	6.8	25.4	30.9	20.8	100.0	(607)	46.8
아니오	19.5	10.5	21.1	25.6	23.3	100.0	(133)	44.0
2019년	24.7	6.7	27.7	32.2	8.6	100.0	(1,288)	38.1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740명의 자료를 분석
2)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하는 금액이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를 포함하여 평균 비용 산출

시설급여 제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본인 응답이 가능한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질문하였다.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식사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77.9%, 보통이다 20.9%, 만족하지 않는다 1.4%로 201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2.5%,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9.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집단에서 식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66.7%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식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5.0%, 중소도시 78.8%, 농어촌 지역 78,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83.9%로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3%가 식사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4%,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4%가 식사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7%는 만족한다, 18.1%는 보통, 나머지 1.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8.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1.3%가 목욕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65세 미만(71.4%)과 80~84세(75.0%)의 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8%,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0%가 목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목욕서비스 만족도가 87.1%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3%,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7%가 목욕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9.0%,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6.0%가 목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세면, 구강관리, 몸단장 등 청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본인응답이 가능한 174명 중 청결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171명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지난 1개월간 청결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9.1%, 만족하지 않는다는 0.6%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8.9%,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1.1%가 청결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90.0%가 청결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3%,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4%가 청결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5%,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3%가 청결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91〉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식사 및 목욕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식사				목욕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174)	77.9	20.7	1.4	100.0	80.7	18.1	1.2	100.0
성별									
남성	(40)	72.5	22.5	5.0	100.0	78.0	19.5	2.4	100.0
여성	(134)	79.1	20.1	0.7	100.0	81.3	17.9	0.7	100.0
연령대									
65세 미만	(6)	66.7	33.3	0.0	100.0	71.4	28.6	0.0	100.0
65~69세	(4)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70~74세	(12)	83.3	16.7	0.0	100.0	90.9	9.1	0.0	100.0
75~79세	(20)	85.0	15.0	0.0	100.0	94.7	5.3	0.0	100.0
80~84세	(39)	74.4	25.6	0.0	100.0	75.0	25.0	0.0	100.0
85~89세	(49)	77.6	20.4	2.0	100.0	81.6	16.3	2.0	100.0
90세 이상	(45)	75.6	22.2	2.2	100.0	77.8	20.0	2.2	100.0
지역									
대도시	(48)	75.0	22.9	2.1	100.0	76.6	23.4	0.0	100.0
중소도시	(52)	78.8	19.2	1.9	100.0	80.8	19.2	0.0	100.0
농어촌	(74)	78.4	20.3	1.4	100.0	84.0	13.3	2.7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	50.0	50.0	0.0	100.0	50.0	50.0	0.0	100.0
2등급	(31)	83.9	16.1	0.0	100.0	87.1	12.9	0.0	100.0
3등급	(69)	76.8	20.3	2.9	100.0	78.6	18.6	2.9	100.0
4등급	(63)	79.4	20.6	0.0	100.0	82.5	17.5	0.0	100.0
5등급	(5)	80.0	20.0	0.0	100.0	80.0	20.0	0.0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	76.9	23.1	0.0	100.0	83.3	16.7	0.0	100.0
노인요양시설	(161)	78.3	20.5	1.2	100.0	80.7	18.0	1.2	100.0
치매 여부									
예	(124)	77.4	21.0	1.6	100.0	79.0	19.4	1.6	100.0
아니오	(51)	78.4	19.6	2.0	100.0	86.0	14.0	0.0	100.0
2019년	(290)	78.9	19.5	1.6	100.0	85.3	12.3	2.3	100.0

주: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분석

〈표 3-92〉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청결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명)
전체	80.3	19.1	0.6	100.0 (171)
성별				
남성	78.9	21.1	0.0	100.0 (38)
여성	81.1	18.2	0.8	100.0 (132)
연령대				
65세 미만	66.7	33.3	0.0	100.0 (6)
65~69세	100.0	0.0	0.0	100.0 (4)
70~74세	91.7	8.3	0.0	100.0 (12)
75~79세	85.0	15.0	0.0	100.0 (20)
80~84세	76.3	23.7	0.0	100.0 (38)
85~89세	80.9	17.0	2.1	100.0 (47)
90세 이상	79.5	20.5	0.0	100.0 (44)
지역				
대도시	74.5	25.5	0.0	100.0 (47)
중소도시	80.4	19.6	0.0	100.0 (51)
농어촌	83.8	14.9	1.4	100.0 (74)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7.1	42.9	0.0	100.0 (7)
2등급	90.0	10.0	0.0	100.0 (30)
3등급	79.1	19.4	1.5	100.0 (67)
4등급	80.3	19.7	0.0	100.0 (61)
5등급	80.0	20.0	0.0	100.0 (5)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3.3	16.7	0.0	100.0 (12)
노인요양시설	80.4	19.0	0.6	100.0 (158)
치매 여부				
예	78.5	20.7	0.8	100.0 (121)
아니오	84.3	15.7	0.0	100.0 (51)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 중 청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171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7.7%였으며, 보통이다 19.3%, 만족하지 않는다 3.0%로 조사되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76.3%,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78.0%였으며,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연령대의 시설급여 이용자의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69.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9.2%,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1%가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대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50.0%,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86.2%, 3등급인 76.9% 등이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대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8%,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4%가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5.4%,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3%가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증진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77.5%, 보통이다 20.2%, 만족하지 않는다 2.3%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2.5%,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8.9%가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0~79세 연령대에서는 만족도가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0.2%,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9.2%,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1%가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42.9%로 가장 낮았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5.0%,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6%가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9%,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0%가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93〉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 증진 및 간호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기능회복·물리·작업·인지기능 증진[1]				간호의료서비스[2]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77.7	19.3	3.0	100.0	77.5	20.2	2.3	100.0
성별								
남성	76.3	21.1	2.6	100.0	72.5	25.0	2.5	100.0
여성	78.0	18.9	3.1	100.0	78.9	18.8	2.3	100.0
연령대								
65세 미만	66.7	33.3	0.0	100.0	57.1	28.6	14.3	100.0
65~69세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70~74세	90.9	9.1	0.0	100.0	90.9	9.1	0.0	100.0
75~79세	94.4	5.6	0.0	100.0	90.0	10.0	0.0	100.0
80~84세	72.2	25.0	2.8	100.0	71.8	28.2	0.0	100.0
85~89세	76.6	19.1	4.3	100.0	77.6	18.4	4.1	100.0
90세 이상	73.8	21.4	4.8	100.0	72.7	22.7	4.5	100.0
지역								
대도시	69.6	28.3	2.2	100.0	70.2	25.5	4.3	100.0
중소도시	79.2	16.7	4.2	100.0	79.2	18.9	1.9	100.0
농어촌	83.1	14.1	2.8	100.0	81.1	17.6	1.4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0.0	33.3	16.7	100.0	42.9	42.9	14.3	100.0
2등급	86.2	13.8	0.0	100.0	83.9	12.9	3.2	100.0
3등급	76.9	20.0	3.1	100.0	75.4	21.7	2.9	100.0
4등급	76.3	20.3	3.4	100.0	79.0	19.4	1.6	100.0
5등급	100.0	0.0	0.0	100.0	66.7	33.3	0.0	100.0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8	18.2	0.0	100.0	75.0	16.7	8.3	100.0
노인요양시설	77.4	19.4	3.2	100.0	77.6	20.5	1.9	100.0
치매 여부								
예	75.4	21.2	3.4	100.0	77.9	19.7	2.5	100.0
아니오	83.3	14.6	2.1	100.0	78.0	20.0	2.0	100.0
2019년	77.0	21.3	1.7	100.0	83.5	15.6	0.9	100.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5명의 자료를 분석

2)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173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1개월 간 이용한 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77.3%, 보통이다 20.7%, 만족하지 않는다 2.1%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68.6%,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0.0%가 여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5~79세 연령대에서는 만족도가 94.1%로 가장 높았으며, 80~84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68.8%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2.5%,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2%,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2.1%가 여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40.0%로 가장 낮은 반면,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85.2%로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2.7%,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1%가 여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5.0%,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4%가 여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청결, 시설 설비, 면적 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 78.6%, 보통이다 20.5%, 만족하지 않는다 0.9%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7.5%,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9.1%가 시설의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였다. 70~74세와 75~79세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의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0.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8%,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2.7%가 시설의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과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8.9%가 시설의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7.2%,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0%가 시설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94〉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지난 1개월간 이용한 여가활동 및 시설환경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여가활동[1]				시설환경[2]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계
전체	77.3	20.7	2.1	100.0	78.6	20.5	0.9	100.0
성별								
남성	68.6	31.4	0.0	100.0	77.5	20.0	2.5	100.0
여성	80.0	17.4	2.6	100.0	79.1	20.1	0.7	100.0
연령대								
65세 미만	75.0	25.0	0.0	100.0	66.7	33.3	0.0	100.0
65~69세	75.0	25.0	0.0	100.0	75.0	25.0	0.0	100.0
70~74세	81.8	18.2	0.0	100.0	91.7	8.3	0.0	100.0
75~79세	94.1	5.9	0.0	100.0	90.0	10.0	0.0	100.0
80~84세	68.8	31.3	0.0	100.0	75.0	25.0	0.0	100.0
85~89세	75.6	20.0	4.4	100.0	77.6	20.4	2.0	100.0
90세 이상	78.4	18.9	2.7	100.0	75.0	25.0	0.0	100.0
지역								
대도시	72.5	25.0	2.5	100.0	70.8	29.2	0.0	100.0
중소도시	76.2	21.4	2.4	100.0	80.8	19.2	0.0	100.0
농어촌	82.1	16.4	1.5	100.0	82.7	16.0	1.3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0.0	60.0	0.0	100.0	50.0	50.0	0.0	100.0
2등급	85.2	14.8	0.0	100.0	83.9	16.1	0.0	100.0
3등급	72.4	24.1	3.4	100.0	78.3	20.3	1.4	100.0
4등급	80.4	17.9	1.8	100.0	79.0	21.0	0.0	100.0
5등급	80.0	20.0	0.0	100.0	100.0	0.0	0.0	100.0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7	18.2	9.1	100.0	76.9	23.1	0.0	100.0
노인요양시설	77.1	20.7	2.1	100.0	78.9	20.5	0.6	100.0
치매 여부								
예	75.0	22.2	2.8	100.0	77.2	22.0	0.8	100.0
아니오	81.4	18.6	0.0	100.0	84.0	16.0	0.0	100.0
2019년	-	-	-	100.0	82.6	15.8	1.6	100.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 중 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한 151명의 자료를 분석
2)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분석

본인 응답이 가능한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81.4%가 직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17.6%, 만족하지 않는다 1.0%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0.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2.1%가 장기요양직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80~84세,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장기요양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2.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0%,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5.3%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과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6%,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9%가 장기요양직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9.8%,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3%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80.4%, 보통 19.1%, 만족하지 않음 0.1%로 조사되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84.2%에서 2022년 80.4%로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77.5%,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1.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80~84세,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4.5%,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9.0%,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0%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95〉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장기요양기관 직원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만족	보통	만족하지않음	계
전체	(174)	81.4	17.6	1.0	100.0	80.4	19.1	0.6	100.0
성별									
남성	(40)	80.0	20.0	0.0	100.0	77.5	22.5	0.0	100.0
여성	(134)	82.1	17.2	0.7	100.0	81.3	17.9	0.7	100.0
연령대									
65세 미만	(6)	71.4	28.6	0.0	100.0	66.7	33.3	0.0	100.0
65~69세	(4)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70~74세	(12)	91.7	8.3	0.0	100.0	91.7	8.3	0.0	100.0
75~79세	(20)	94.7	5.3	0.0	100.0	94.7	5.3	0.0	100.0
80~84세	(39)	75.0	25.0	0.0	100.0	74.4	25.6	0.0	100.0
85~89세	(49)	81.6	16.3	2.0	100.0	81.6	16.3	2.0	100.0
90세 이상	(45)	77.3	20.5	2.3	100.0	77.3	22.7	0.0	100.0
지역									
대도시	(48)	72.3	25.5	2.1	100.0	74.5	25.5	0.0	100.0
중소도시	(52)	83.0	17.0	0.0	100.0	81.1	18.9	0.0	100.0
농어촌	(74)	85.3	13.3	1.3	100.0	83.8	14.9	1.4	100.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	57.1	42.9	0.0	100.0	42.9	57.1	0.0	100.0
2등급	(31)	87.1	12.9	0.0	100.0	87.1	12.9	0.0	100.0
3등급	(69)	79.7	18.8	1.4	100.0	78.3	20.3	1.4	100.0
4등급	(63)	82.3	16.1	1.6	100.0	82.3	17.7	0.0	100.0
5등급	(5)	100.0	0.0	0.0	100.0	83.3	16.7	0.0	100.0
인지지원등급	(0)	0.0	0.0	0.0	0.0	0.0	0.0	0.0	0.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	84.6	15.4	0.0	100.0	76.9	23.1	0.0	100.0
노인요양시설	(161)	80.9	17.9	1.2	100.0	80.2	19.1	0.6	100.0
치매 여부									
예	(124)	79.8	18.5	1.6	100.0	79.0	20.2	0.8	100.0
아니오	(51)	84.3	15.7	0.0	100.0	84.0	16.0	0.0	100.0
2019년	(290)	88.8	10.5	0.7	100.0	84.2	15.1	0.7	100.0

주: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분석

노인요양시설에서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시설급여 이용자의 6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5.0%, 만족하지 않는다 4.5%로 나타났다.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65.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5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에서는 70~74세, 85~89세,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65~69세 및 75~79세 시설급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63.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63.5%,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57.3%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가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2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 58.1%, 3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 60.9%, 4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 62.9%, 5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60.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69.2%,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59.6%가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58.9%,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64.0%가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6〉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다른 수급자와의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명)
전체	60.5	35.0	4.5	100.0 (174)
성별				
남성	65.0	27.5	7.5	100.0 (40)
여성	59.0	37.3	3.7	100.0 (134)
연령대				
65세 미만	66.7	16.7	16.7	100.0 (6)
65~69세	75.0	25.0	0.0	100.0 (4)
70~74세	58.3	25.0	16.7	100.0 (12)
75~79세	73.7	26.3	0.0	100.0 (20)
80~84세	64.1	35.9	0.0	100.0 (39)
85~89세	59.2	38.8	2.0	100.0 (49)
90세 이상	52.3	38.6	9.1	100.0 (45)
지역				
대도시	63.8	31.9	4.3	100.0 (48)
중소도시	63.5	34.6	1.9	100.0 (52)
농어촌	57.3	36.0	6.7	100.0 (74)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2.9	42.9	14.3	100.0 (6)
2등급	58.1	35.5	6.5	100.0 (31)
3등급	60.9	34.8	4.3	100.0 (69)
4등급	62.9	33.9	3.2	100.0 (63)
5등급	60.0	40.0	0.0	100.0 (5)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9.2	23.1	7.7	100.0 (13)
노인요양시설	59.6	36.0	4.3	100.0 (161)
치매 여부				
예	58.9	36.3	4.8	100.0 (124)
아니오	64.0	32.0	4.0	100.0 (51)
2019년	68.7	27.5	3.8	100.0 (29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전체 수급자의 5.2%, 시설급여 이용자의 22.5%)의 자료를 분석

2) 불만족 이유로는 치매증상이 심한 노인과의 생활 불편, 입소노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 등으로 제시됨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85.5%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크지 않아 남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5.0%, 여성 시설급여 이용자의 85.8%가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65~69세와 75~79세 연령대에서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도 모두 80% 이상이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0.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92.3%,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4.0%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시설급여 이용자의 66.7%만이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시설급여 이용자는 현재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를 상회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76.9%,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5.8%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치매가 있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3.7%, 치매가 없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90.0%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94.9%는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녀 또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5.1%는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자는 0.0%로 나타났다.

〈표 3-97〉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거주 의향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85.5	14.5	100.0	(174)
성별				
남성	85.0	15.0	100.0	(40)
여성	85.8	14.2	100.0	(134)
연령대				
65세 미만	83.3	16.7	100.0	(6)
65~69세	100.0	0.0	100.0	(4)
70~74세	83.3	16.7	100.0	(12)
75~79세	94.7	5.3	100.0	(20)
80~84세	82.5	17.5	100.0	(39)
85~89세	83.7	16.3	100.0	(49)
90세 이상	86.4	13.6	100.0	(45)
지역				
대도시	80.9	19.1	100.0	(48)
중소도시	92.3	7.7	100.0	(52)
농어촌	84.0	16.0	100.0	(74)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6.7	33.3	100.0	(6)
2등급	83.9	16.1	100.0	(31)
3등급	84.3	15.7	100.0	(69)
4등급	87.3	12.7	100.0	(63)
5등급	100.0	0.0	100.0	(5)
인지지원등급			100.0	(0)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6.9	23.1	100.0	(13)
노인요양시설	85.8	14.2	100.0	(161)
치매 여부				
예	83.7	16.3	100.0	(124)
아니오	90.0	10.0	100.0	(51)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3-98〉 (본인응답) 시설급여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생활하고 싶은 장소

(단위: %, 명)

살던 집 또는 자녀/친인척의 집	다른 노인요양시설	(요양) 병원	계(명)	
94.9	5.1	0.0	100.0	(2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한 174명 중 노인요양시설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25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제4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현황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장기요양실태조사 당시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996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장기요양 미이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일반 가정이 71.2%, (요양)병원 28.6%, 기타 0.2%이며, 2019년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 가정에 생활하는 비율이 52.2%에서 71.2%로 증가하였다. 남성 미이용자의 76.1%, 여성 미이용자의 68.7%가 일반 가정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65세 미만 미이용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80~84세와 65~69세 미이용자는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72.5%,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73.6%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의 86.3%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미이용자의 55.4%, 3등급인 미이용자의 33.5% 등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요양)병원 입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의 63.9%,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의 79.0%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특성	일반 가정	(요양)병원	기타	계(명)
전체	71.2	28.6	0.2	100.0 (996)
성별				
남성	76.1	23.9	0.0	100.0 (331)
여성	68.7	31.0	0.3	100.0 (665)
연령대				
65세 미만	54.3	45.7	0.0	100.0 (46)
65~69세	75.0	25.0	0.0	100.0 (44)
70~74세	69.5	30.5	0.0	100.0 (95)
75~79세	66.5	33.5	0.0	100.0 (171)
80~84세	79.7	20.3	0.0	100.0 (246)
85~89세	71.5	27.6	0.8	100.0 (246)
90세 이상	67.8	32.2	0.0	100.0 (149)
지역				
대도시	68.7	31.3	0.0	100.0 (394)
중소도시	72.5	27.5	0.0	100.0 (356)
농어촌	73.6	25.6	0.8	100.0 (2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3.7	86.3	0.0	100.0 (73)
2등급	44.6	55.4	0.0	100.0 (83)
3등급	65.8	33.5	0.7	100.0 (274)
4등급	78.2	21.8	0.0	100.0 (358)
5등급	94.8	5.2	0.0	100.0 (133)
인지지원등급	100.0	0.0	0.0	100.0 (74)
치매진단 여부				
예	63.9	35.7	0.4	100.0 (518)
아니오	79.0	21.0	0.0	100.0 (478)
2019년	52.2	47.2	0.6	100.0 (1,263)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의 자료를 분석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 중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응답한 285명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을 질문하였다. 1~3년 미만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비율은 34.3%, 3~5년 미만 26.6%, 1년 미만 20.0%, 5~10년 미만은 12.8% 등이었으며, 평균 3.7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년 미만 및 1~3년 미만 입원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3~5년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요양)병원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20.0%로 다른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은 (요양)병원에 5~10년 미만 입원하고 있는 비율이 2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미이용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5~10년 미만 입원한 비율이 높았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의 37.8%가

1~3년 미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는 3~5년 미만이 29.3%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3-10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현 (요양)병원 입원자의 입원 기간

(단위: %, 명)

특성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명)		평균 (년)
전체	20.0	34.3	26.6	12.8	6.3	100.0	(285)	3.7
성별								
남성	19.0	43.0	15.2	12.7	10.1	100.0	(79)	3.9
여성	20.4	30.6	31.1	13.1	4.9	100.0	(206)	3.6
연령대								
65세 미만	10.0	30.0	30.0	10.0	20.0	100.0	(20)	5.6
65~69세	18.2	63.6	0.0	18.2	0.0	100.0	(11)	2.2
70~74세	21.4	35.7	28.6	7.1	7.1	100.0	(28)	4.0
75~79세	26.3	40.4	12.3	17.5	3.5	100.0	(57)	3.3
80~84세	32.0	32.0	32.0	4.0	0.0	100.0	(50)	2.2
85~89세	17.4	34.8	27.5	8.7	11.6	100.0	(69)	4.0
90세 이상	8.0	24.0	40.0	24.0	4.0	100.0	(50)	4.2
지역								
대도시	17.1	39.8	27.6	10.6	4.9	100.0	(123)	3.4
중소도시	17.3	35.7	28.6	14.3	4.1	100.0	(98)	3.3
농어촌	28.6	22.2	20.6	15.9	12.7	100.0	(63)	4.8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5	20.6	39.7	27.0	3.2	100.0	(63)	4.2
2등급	17.4	34.8	30.4	13.0	4.3	100.0	(46)	3.1
3등급	16.3	40.2	28.3	8.7	6.5	100.0	(92)	3.5
4등급	33.3	34.6	14.1	7.7	10.3	100.0	(78)	3.9
5등급	33.3	66.7	0.0	0.0	0.0	100.0	(6)	1.2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	-
치매진단 여부								
예	18.4	37.8	25.4	13.0	5.4	100.0	(185)	3.5
아니오	23.2	27.3	29.3	12.1	8.1	100.0	(99)	3.9
2019년	27.6	40.2	17.5	9.7	5.0	100.0	(596)	2.8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요양)병원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285명의 자료를 분석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 중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응답한 285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간 입원비(간병비 포함)를 질문하였다. 월평균 입원비는 약 113.6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 12.4%, 50~75만 원 미만 23.6%, 75~100만 원 미만 18.0%, 100~150만 원 미만 30..5%, 150만 원 이상 15.5%로 나타났다. 남성 미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37.7만 원, 여성 미이용자의 경우 104.4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미이용자의 월평균 입원비가 80.6만 원으로 가장 적었

으며, 70~74세 미이용자는 평균 162.1만 원, 75~79세 미이용자는 월평균 141.2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미이용자는 월평균 130.1만 원을 부담하여 타 지역에 비해 입원비가 많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의 월평균 입원비는 137.4만 원으로 다른 인정등급의 미이용자에 비해 많았으며, 5등급인 미이용자의 월평균 입원비가 74.4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에 비해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의 월평균 입원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현 (요양)병원 입원자의 지난 한 달간 (요양)병원 입원비

(단위: %, 명)

특성	50만 원 미만	50~75만 원 미만	75~100 만 원 미만	100~150 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만원)
전체	12.4	23.6	18.0	30.5	15.5	100.0	(285)	113.6
성별								
남성	10.1	20.3	12.7	30.4	26.6	100.0	(79)	137.7
여성	13.1	25.2	19.9	30.6	11.2	100.0	(206)	104.4
연령대								
65세 미만	30.0	20.0	10.0	40.0	0.0	100.0	(20)	80.6
65~69세	45.5	0.0	0.0	36.4	18.2	100.0	(11)	114.5
70~74세	14.3	0.0	14.3	42.9	28.6	100.0	(28)	162.1
75~79세	10.5	22.8	7.0	36.8	22.8	100.0	(57)	141.2
80~84세	0.0	32.0	22.0	28.0	18.0	100.0	(50)	105.9
85~89세	14.5	33.3	14.5	26.1	11.6	100.0	(69)	96.9
90세 이상	8.3	22.9	41.7	18.8	8.3	100.0	(50)	97.1
지역								
대도시	13.8	19.5	23.6	18.7	24.4	100.0	(123)	130.1
중소도시	14.3	20.4	10.2	45.9	9.2	100.0	(98)	102.2
농어촌	6.3	36.5	19.0	28.6	9.5	100.0	(63)	99.4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7	12.9	12.9	37.1	27.4	100.0	(63)	137.4
2등급	8.7	21.7	17.4	34.8	17.4	100.0	(46)	102.8
3등급	11.0	33.0	24.2	25.3	6.6	100.0	(92)	95.7
4등급	16.7	21.8	15.4	32.1	14.1	100.0	(78)	125.3
5등급	33.3	33.3	0.0	0.0	33.3	100.0	(6)	74.4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0)	-
치매진단 여부								
예	11.3	28.5	21.0	24.2	15.1	100.0	(185)	109.6
아니오	15.0	15.0	12.0	42.0	16.0	100.0	(99)	121.1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요양)병원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285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 중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709명을 대상으로 가구 형태를 질문하였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25.8%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가구였으며, 부부가구 32.8%, 자녀동거가구 33.5%,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5.6%, 기타 2.4%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부부가구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 및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 미이용자의 17.0%가 독거가구였으며, 부부가구 55.7%, 자녀동거가구 18.6% 등이었으며, 여성 미이용자의 30.6%가 독거가구이며, 부부가구 19.9%, 자녀동거가구 41.8% 등으로 나타나 남성 미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미이용자는 독거가구 및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연령대에서는 부부가 비율이, 그리고 85~89세 및 90세 이상 미이용자의 경우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는 부부가구 40.0%, 자녀동거가구 40.0% 등이었으며, 2등급인 미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40.5%, 부부가구 27.0%, 독거가구 21.6%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는 독거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는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는 부부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0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현재 가구형태(일반 가정 응답자)

(단위: %, 명)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 가구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기타	계(명)	
전체	25.8	32.8	33.5	5.6	2.4	100.0	(709)
성별							
남성	17.0	55.7	18.6	4.3	4.3	100.0	(253)
여성	30.6	19.9	41.8	6.3	1.3	100.0	(457)
연령대							
65세 미만	16.7	16.7	16.7	8.3	41.7	100.0	(24)
65~69세	25.0	46.9	28.1	0.0	0.0	100.0	(32)
70~74세	18.5	52.3	23.1	3.1	3.1	100.0	(65)
75~79세	30.1	42.5	22.1	5.3	0.0	100.0	(113)
80~84세	28.2	37.4	25.1	8.2	1.0	100.0	(195)
85~89세	23.3	27.3	44.9	4.5	0.0	100.0	(176)
90세 이상	26.7	9.9	55.4	5.9	2.0	100.0	(101)
지역							
대도시	26.2	31.0	35.4	4.8	2.6	100.0	(271)
중소도시	24.8	31.8	35.3	5.0	3.1	100.0	(258)
농어촌	26.1	36.7	28.3	7.8	1.1	100.0	(18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40.0	40.0	20.0	0.0	100.0	(10)
2등급	21.6	27.0	40.5	5.4	5.4	100.0	(37)
3등급	12.2	32.0	45.3	8.3	2.2	100.0	(181)
4등급	30.4	37.1	26.1	3.9	2.5	100.0	(280)
5등급	27.8	30.2	34.1	4.8	3.2	100.0	(126)
인지지원등급	44.0	24.0	26.7	5.3	0.0	100.0	(75)
치매진단 여부							
예	22.4	30.8	38.1	6.9	1.8	100.0	(331)
아니오	28.6	34.5	29.7	4.2	2.9	100.0	(377)
2019년	24.3	29.8	34.4	9.9	1.7	100.0	(660)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 중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미이용자 가구의 가구주는 미이용자 본인 49.8%, 배우자 21.4%, 아들이나 며느리 16.5%, 딸이나 사위 11.5%, 기타 0.9%로 분석되었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아들이나 며느리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미이용자의 경우,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미이용자는 본인 39.7%, 배우자 22.3%, 아들이나 며느리 21.6%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75~79세와 80~84세인 미이용자의 경우, 본인인 가구주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5~69세와 70~74세인 미이용자는 배우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이용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에 비해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는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50%를 상회하였으며,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에 비해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가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주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	계(명)	
전체	49.8	21.4	16.5	11.5	0.9	100.0	(709)
성별							
남성	68.1	19.9	7.2	3.2	1.6	100.0	(253)
여성	39.7	22.3	21.6	15.9	0.4	100.0	(457)
연령대							
65세 미만	50.0	25.0	0.0	0.0	25.0	100.0	(24)
65~69세	45.5	48.5	0.0	6.1	0.0	100.0	(32)
70~74세	30.3	50.0	13.6	6.1	0.0	100.0	(65)
75~79세	56.3	25.9	10.7	7.1	0.0	100.0	(113)
80~84세	54.8	19.8	13.7	11.7	0.0	100.0	(195)
85~89세	50.6	16.5	19.9	13.1	0.0	100.0	(176)
90세 이상	46.5	0.0	33.7	19.8	0.0	100.0	(101)
지역							
대도시	46.7	22.6	17.0	13.7	0.0	100.0	(271)
중소도시	49.0	21.4	16.0	12.1	1.6	100.0	(258)
농어촌	55.8	19.3	16.6	7.2	1.1	100.0	(18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0.0	40.0	20.0	0.0	0.0	100.0	(10)
2등급	40.5	21.6	10.8	27.0	0.0	100.0	(37)
3등급	37.4	24.7	21.4	15.4	1.1	100.0	(181)
4등급	52.1	21.1	15.7	9.6	1.4	100.0	(280)
5등급	55.6	20.6	13.5	10.3	0.0	100.0	(126)
인지지원등급	67.6	12.2	14.9	5.4	0.0	100.0	(75)
치매진단 여부							
예	45.0	21.1	16.9	15.7	1.2	100.0	(331)
아니오	54.1	21.5	16.2	7.7	0.5	100.0	(377)
2019년	48.0	18.7	23.0	9.2	1.1	100.0	(660)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 가구의 가구원 수는 1명이 25.8%, 2명 45.9%, 3명 15.6%, 4명 이상 12.7%로 2019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 미이용자에 비해 여성 미이용자는 가구원 수가 1명인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 미이용자는 여성 미이용자에 비해 가구원 수가 2명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70~74세 미이용자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85세~89세, 그리고 9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가구원 수가 3명인 비율이 24.4%와 2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 및 3등급인 미이용자는 가구원수가 3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는 가구원 수가 1명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원 수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명)
전체	25.8	45.9	15.6	12.7	100.0 (709)
성별					
남성	17.0	61.7	11.1	10.3	100.0 (253)
여성	30.6	37.2	18.2	14.0	100.0 (457)
연령대					
65세 미만	16.7	58.3	0.0	25.0	100.0 (24)
65~69세	25.0	46.9	21.9	6.3	100.0 (32)
70~74세	18.2	62.1	9.1	10.6	100.0 (65)
75~79세	29.8	49.1	7.9	13.2	100.0 (113)
80~84세	28.2	46.7	11.3	13.8	100.0 (195)
85~89세	23.3	39.2	24.4	13.1	100.0 (176)
90세 이상	27.0	39.0	24.0	10.0	100.0 (101)
지역					
대도시	26.4	42.0	17.8	13.8	100.0 (271)
중소도시	24.8	48.1	15.9	11.2	100.0 (258)
농어촌	26.1	48.9	11.7	13.3	100.0 (18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40.0	20.0	40.0	100.0 (10)
2등급	21.6	54.1	10.8	13.5	100.0 (37)
3등급	12.2	44.8	29.3	13.8	100.0 (181)
4등급	30.4	47.5	11.1	11.1	100.0 (280)
5등급	27.8	45.2	13.5	13.5	100.0 (126)
인지지원등급	44.0	41.3	5.3	9.3	100.0 (75)
치매진단 여부					
예	22.3	44.0	20.2	13.6	100.0 (331)
아니오	28.6	47.7	11.7	11.9	100.0 (377)
2019년	24.3	42.0	16.6	17.1	100.0 (660)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가구 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인정자 수는 1명이 93.1%, 2명이 6.9%로 남성 미이용자 가구의 경우 인정자 수가 2명인 비율이 11.1%로 여성 미이용자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85~89세인 미이용자 가구의 경우 인정자 수가 2명인 비율이 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이용자 가구에 인정자 수가 2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미이용자의 경우 가구 내 인정자 수가 2명인 비율이 10.8%로 다른 인정등급을 받은 미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 가구의 경우 2명인 비율이 7.5%,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 가구의 경우 2명인 비율이 6.4%로 나타났다.

〈표 3-105〉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가구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본인 포함)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계(명)
전체	93.1	6.9	100.0 (709)
성별			
남성	88.9	11.1	100.0 (253)
여성	95.4	4.6	100.0 (457)
연령대			
65세 미만	100.0	0.0	100.0 (24)
65~69세	100.0	0.0	100.0 (32)
70~74세	92.4	7.6	100.0 (65)
75~79세	92.9	7.1	100.0 (113)
80~84세	92.3	7.7	100.0 (195)
85~89세	91.5	8.5	100.0 (176)
90세 이상	94.1	5.9	100.0 (101)
지역			
대도시	92.2	7.8	100.0 (271)
중소도시	96.1	3.9	100.0 (258)
농어촌	90.1	9.9	100.0 (18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00.0	0.0	100.0 (10)
2등급	89.2	10.8	100.0 (37)
3등급	96.1	3.9	100.0 (181)
4등급	91.4	8.6	100.0 (280)
5등급	92.9	7.1	100.0 (126)
인지지원등급	93.2	6.8	100.0 (75)
치매 여부			
예	92.5	7.5	100.0 (331)
아니오	93.6	6.4	100.0 (377)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 미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35.6%, 아파트 44.6%,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8.1%, 기타 1.4%로 2019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감소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미이용자는 여성 미이용자에 비해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반면 여성 미이용자는 남성 미이용자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65~69세, 85세 이상 미이용자의 50.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59.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의 80.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등급인 미이용자의 40.5%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는 연립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106〉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주택 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계(명)	
전체	35.6	44.8	18.1	1.4	100.0	(709)
성별						
남성	30.2	48.4	19.8	1.6	100.0	(253)
여성	38.7	42.7	17.3	1.3	100.0	(457)
연령대						
65세 미만	16.0	60.0	24.0	0.0	100.0	(24)
65~69세	34.4	53.1	12.5	0.0	100.0	(32)
70~74세	34.8	42.4	16.7	6.1	100.0	(65)
75~79세	43.4	41.6	15.0	0.0	100.0	(113)
80~84세	32.7	35.2	30.1	2.0	100.0	(195)
85~89세	35.2	51.1	12.5	1.1	100.0	(176)
90세 이상	38.6	51.5	9.9	0.0	100.0	(101)
지역						
대도시	23.7	46.7	28.1	1.5	100.0	(271)
중소도시	24.4	59.7	15.1	0.8	100.0	(258)
농어촌	69.1	21.0	7.7	2.2	100.0	(180)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80.0	20.0	0.0	100.0	(10)
2등급	40.5	37.8	21.6	0.0	100.0	(37)
3등급	33.7	45.3	19.9	1.1	100.0	(181)
4등급	37.9	46.8	14.6	0.7	100.0	(280)
5등급	35.4	47.2	15.7	1.6	100.0	(126)
인지지원등급	33.8	31.1	29.7	5.4	100.0	(75)
치매진단 여부						
예	37.0	45.5	15.1	2.4	100.0	(331)
아니오	34.4	44.2	20.9	0.5	100.0	(377)
2019년	44.4	41.3	13.7	0.6	100.0	(660)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질문하였다.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은 33.3%,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28.5%,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14.8%,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나 설치가 된 주택은 43.6%,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현관의 폭을 갖춘 주택은 50.8%,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인 주택은 43.8%,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은 7.1%,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은 49.4%로 나타났다.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 재가급여 수급자가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낮았으며, 80~84세 미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내 문턱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미이용자가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이용자의 안전손잡이 설치비율이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5~69세,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인 미이용자, 그리고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의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65~69세와 75~79세 미만인 미이용자의 설치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 거주,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과 3등급인 미이용자,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미이용자의 주거공간에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타일, 매트, 시트지 등이 설치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주거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용구를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65~69세 미만,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 또는 3등급인 미이용자의 주택내 미끄럼방지 등이 설치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는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연령대에서는 70~74세, 85~89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57.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 4등급, 그리고 5등급인 경우,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의 너비를 갖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특성은 남성 42.1%, 여성 44.9%였으며, 75~79세와 80~84세 미이용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 그리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인 미이용자 등에서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의 너비인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이용자 남성 5.2%, 여성 8.1%였으며, 70~74세 연령대에서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주택 내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2등급과 4등급인 미이용자의 긴급연락장치 설치 비율이 각각 10.8%와 10.0%로 다른 장기요양인정등급인 미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이용자는 남성이 51.2%, 여성이 48.6%였으며, 65세 미만과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64.3%가 실외 경사로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의 60.0%가 실외 경사로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의 48.8%,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의 50.0%가 외 경사로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7〉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거주자의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실내 문턱 없음	욕실/화장실 안전손잡이	욕실/화장실 이외 공간의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휠체어 이동 가능한 현관 폭	휠체어 이동가능한 방안 문	긴급 연락 장치	실외 경사로
전체	(709)	33.3	28.5	14.8	43.6	50.8	43.8	7.1	49.4
성별									
남성	(253)	37.3	27.0	15.1	36.9	51.6	42.1	5.2	51.2
여성	(457)	31.3	29.3	14.7	47.5	50.3	44.9	8.1	48.6
연령대									
65세 미만	(24)	33.3	32.0	16.0	44.0	52.0	41.7	8.0	68.0
65~69세	(32)	37.5	42.4	21.2	48.5	54.5	28.1	0.0	53.1
70~74세	(65)	28.8	25.8	13.6	45.5	36.4	26.2	12.1	43.1
75~79세	(113)	26.5	31.6	20.4	37.2	53.1	47.8	8.8	46.5
80~84세	(195)	40.8	28.1	13.3	40.8	54.3	48.5	7.1	43.4
85~89세	(176)	32.0	24.0	12.5	47.2	46.3	41.5	4.5	51.7
90세 이상	(101)	29.7	29.7	15.0	47.0	57.4	51.5	7.9	59.4
지역									
대도시	(271)	43.0	31.7	14.4	47.8	50.4	40.4	5.2	47.8
중소도시	(258)	32.2	32.2	16.3	47.3	57.8	54.7	8.5	64.3
농어촌	(180)	20.4	18.8	13.3	32.0	41.4	33.7	7.7	30.9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0)	20.0	40.0	0.0	60.0	40.0	40.0	0.0	60.0
2등급	(37)	43.2	41.7	27.0	37.8	59.5	54.1	10.8	45.9
3등급	(181)	35.4	39.8	20.4	50.8	44.2	40.9	2.2	47.5
4등급	(280)	31.1	26.4	13.2	39.6	53.2	42.3	10.0	53.0
5등급	(126)	32.3	15.7	8.7	44.4	52.8	45.7	4.8	48.8
인지지원등급	(75)	35.1	22.7	14.9	41.3	51.4	48.6	9.5	41.3
치매진단 여부									
예	(331)	34.3	20.5	11.5	41.4	49.4	44.7	7.5	48.8
아니오	(377)	32.5	35.7	17.8	45.6	52.0	43.1	6.6	50.0
2019년	(660)	28.7	-	-	32.5	-	-	-	55.7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709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도 일부 보기문항 변동으로 2019년 응답 비율을 제시하지 못함

지난 3개월 동안 미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수발을 도와주는 사람(1순위)은 배우자 27.1%, 딸 21.6%, 간병인이나 도우미 19.3%, 아들 18.1%, 며느리 4.7%, 없음 3.6%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간병인이나 도우미 비율이 감소한 반면, 배우자, 아들, 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미이용자의 경우 배우자가 도와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높은 반면, 여성 미이용자는 배우자보다는 아들, 딸, 간병인이나 도우미 비율이 남성 미이용자에 비해 높았다. 65~69세 미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세 미만자는 친인척 비율이 27.3%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경우 간병인이나 도우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배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경우 간병인이나 도우미 비율이 61.1%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4등급인 미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의 경우, 딸이나 간병인/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는 배우자나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08〉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3개월 동안 일상생활 및 신체수발 도와주는 사람(1순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인척	간병인·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없음	계(명)
전체	27.1	18.1	4.7	21.6	0.0	0.8	2.8	19.3	1.0	1.0	3.6	100.0 (996)
성별												
남성	52.1	9.3	3.0	10.2	0.0	0.6	4.5	12.3	3.0	0.6	4.2	100.0 (331)
여성	14.7	22.4	5.6	27.2	0.0	0.9	2.0	22.7	0.0	1.2	3.3	100.0 (665)
연령대												
65세 미만	27.3	13.6	0.0	9.1	0.0	0.0	27.3	9.1	4.5	4.5	4.5	100.0 (46)
65~69세	51.2	4.7	4.7	4.7	0.0	0.0	0.0	20.9	9.3	0.0	4.7	100.0 (44)
70~74세	44.2	9.5	2.1	8.4	0.0	0.0	9.5	24.2	0.0	0.0	2.1	100.0 (95)
75~79세	32.0	14.8	3.6	20.1	0.0	0.0	1.2	23.7	0.0	1.2	3.6	100.0 (171)
80~84세	33.3	18.3	4.9	18.3	0.0	1.6	2.0	14.6	0.8	0.8	5.3	100.0 (246)
85~89세	19.9	21.5	5.7	29.3	0.0	0.8	0.0	17.5	0.8	0.8	3.7	100.0 (246)
90세 이상	5.3	26.0	8.0	33.3	0.0	1.3	0.0	24.7	0.0	1.3	0.0	100.0 (149)
지역												
대도시	23.6	21.6	5.6	20.1	0.0	1.0	2.3	22.3	0.5	0.0	3.0	100.0 (394)
중소도시	27.5	15.4	2.8	26.7	0.0	1.1	3.1	17.7	1.7	0.6	3.4	100.0 (356)
농어촌	32.2	16.3	6.1	16.3	0.0	0.0	3.3	16.7	0.8	3.3	4.9	100.0 (2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9.4	5.6	5.6	5.6	0.0	0.0	2.8	61.1	0.0	0.0	0.0	100.0 (73)
2등급	12.0	13.3	0.0	26.5	0.0	0.0	2.4	43.4	0.0	2.4	0.0	100.0 (83)
3등급	29.6	19.3	2.2	20.1	0.0	0.0	1.5	20.8	0.7	2.2	3.6	100.0 (274)
4등급	32.7	16.2	5.3	21.2	0.0	1.1	5.0	13.7	0.6	.6	3.6	100.0 (358)
5등급	24.1	27.1	8.3	29.3	0.0	0.0	0.0	3.0	1.5	0.0	6.8	100.0 (133)
인지지원등급	21.3	22.7	9.3	25.3	0.0	5.3	2.7	2.7	5.3	0.0	5.3	100.0 (74)
치매진단 여부												
예	22.4	19.7	4.8	24.5	0.0	1.2	1.2	23.0	0.4	1.2	1.7	100.0 (518)
아니오	32.3	16.4	4.6	18.4	0.0	0.4	4.4	15.3	1.7	0.8	5.7	100.0 (478)
2019년	21.0	12.8	4.7	11.4	0.3	0.7	1.9	30.2	1.5	5.5	10.0	100.0 (1,256)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의 자료를 분석

지난 3개월 동안 미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수발을 도와주는 사람(2순위)은 아들(26.4%)과 딸(20.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며느리 10.7%, 이웃이나 지인 9.2%, 간병인이나 도우미 6.9%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아들이나 며느리 비율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간병인이나 도우미, 이웃이나 지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성 미이용자는 여성 미이용자에 비해 아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미이용자는 남성 비이용자에 비해 며느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65세 미만 미이용자는 간병인이나 도우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5~69세 미이용자는 아들 비율이 41.5%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이웃이나 지인, 없음 비율이 타 지역 미이용자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는 며느리나 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09〉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3개월 동안 일상생활 및 신체수발 도와주는 사람(2순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인척	간병인 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없음	계(명)	
전체	4.5	26.4	10.7	20.2	5.1	4.7	4.0	6.9	9.2	1.9	6.2	100.0	(960)
성별													
남성	7.6	31.5	4.4	20.8	1.9	2.2	4.4	7.6	11.0	1.9	6.6	100.0	(317)
여성	3.0	23.9	13.8	19.9	6.7	6.1	3.9	6.7	8.2	2.0	5.9	100.0	(644)
연령대													
65세 미만	4.7	9.3	0.0	18.6	0.0	0.0	9.3	20.9	9.3	9.3	18.6	100.0	(43)
65~69세	9.8	41.5	0.0	17.1	0.0	4.9	0.0	0.0	9.8	0.0	17.1	100.0	(41)
70~74세	4.3	20.4	2.2	24.7	4.3	0.0	0.0	14.0	18.3	2.2	9.7	100.0	(93)
75~79세	5.5	29.1	13.3	17.6	7.9	1.2	2.4	6.1	14.5	1.2	1.2	100.0	(165)
80~84세	3.0	26.7	10.8	21.6	3.9	6.0	6.5	6.9	6.9	.9	6.9	100.0	(232)
85~89세	5.9	29.1	11.8	17.3	6.8	7.2	1.7	3.8	7.6	2.5	6.3	100.0	(237)
90세 이상	2.7	23.3	17.3	23.3	5.3	6.7	8.0	6.7	4.0	1.3	1.3	100.0	(150)
지역													
대도시	5.0	22.7	13.8	17.2	1.6	4.7	4.7	9.1	10.7	2.3	8.1	100.0	(383)
중소도시	3.5	29.9	7.8	20.6	7.8	4.6	5.5	4.9	8.7	1.7	4.9	100.0	(345)
농어촌	5.1	26.8	10.2	24.3	6.8	5.1	.9	6.4	7.7	1.7	5.1	100.0	(235)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5	22.5	15.5	28.2	2.8	5.6	2.8	2.8	0.0	5.6	5.6	100.0	(71)
2등급	4.8	33.7	4.8	13.3	4.8	7.2	12.0	7.2	7.2	4.8	0.0	100.0	(83)
3등급	4.5	27.7	9.8	17.8	4.5	3.0	5.7	4.9	13.6	1.5	6.8	100.0	(264)
4등급	4.3	22.8	11.5	21.6	4.3	6.9	2.0	6.9	10.1	1.2	8.4	100.0	(347)
5등급	4.8	27.2	8.8	24.0	8.8	1.6	0.0	11.2	8.8	1.6	3.2	100.0	(125)
인지지원등급	0.0	32.4	16.9	12.7	7.0	2.8	8.5	12.7	2.8	0.0	4.2	100.0	(71)
치매진단 여부													
예	4.1	23.5	11.2	22.4	6.3	6.9	4.3	8.0	7.5	1.8	4.1	100.0	(510)
아니오	5.1	29.7	10.2	17.7	3.8	2.2	3.5	5.8	11.3	2.2	8.4	100.0	(451)
2019년	7.6	34.5	15.9	22.2	2.6	2.8	2.6	5.6	3.0	2.6	0.5	100.0	(866)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일반 가정 또는 (요양)병원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960명의 자료를 분석(2순위 미응답자 제외)

장기요양 미이용자의 47.5%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은 받은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21.8%는 방문요양, 15.3%는 복지용구, 5.0%는 방문목욕, 4.5%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적이 없는 미이용자의 특성은 남성, 65~69세와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의 비율이 높았다. 방문요양을 이용한 적이 있는 미용자는 여성, 90세 이상 또는 70~74세, 농어촌 거주 미이용자, 그리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이거나 3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10〉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후 이용한 적 있는 장기요양급여(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복지용구	없다
전체	21.8	5.0	1.1	4.1	0.2	0.5	4.5	15.3	47.5
성별									
남성	20.6	3.5	1.3	2.5	0.6	1.3	3.7	19.5	58.9
여성	27.2	6.8	1.3	5.7	0.0	0.3	5.8	16.6	52.3
연령대									
65세 미만	17.8	0.0	0.0	8.9	0.0	4.6	9.4	13.9	59.3
65~69세	5.0	10.4	0.0	5.1	0.0	0.0	0.0	24.8	64.9
70~74세	29.1	4.4	2.1	4.4	0.0	2.2	11.0	22.4	46.3
75~79세	28.9	2.5	0.0	4.9	0.0	0.0	6.1	17.4	53.9
80~84세	27.1	4.6	1.9	5.6	0.0	0.0	2.6	17.5	52.8
85~89세	20.6	8.6	0.8	4.0	0.7	0.0	5.5	18.9	57.4
90세 이상	30.1	7.6	2.7	2.7	0.0	1.3	4.1	11.5	54.1
지역									
대도시	25.5	3.7	2.2	6.1	0.0	1.1	5.3	17.6	51.6
중소도시	23.1	4.7	0.6	4.2	0.5	0.0	4.7	19.6	56.6
농어촌	27.2	10.4	0.8	3.0	0.0	0.8	5.6	14.5	56.1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1.9	5.8	2.8	3.2	0.0	2.9	20.2	20.4	45.0
2등급	18.6	16.5	0.0	0.0	0.0	0.0	4.6	21.5	55.1
3등급	30.7	5.1	1.4	4.3	0.7	.8	7.4	15.4	50.8
4등급	27.3	4.6	1.9	5.0	0.0	.6	2.9	20.6	51.1
5등급	17.7	6.2	0.0	5.0	0.0	0.0	0.0	13.0	65.8
인지지원등급	7.2	0.0	0.0	9.8	0.0	0.0	2.7	12.0	73.0
치매진단 여부									
예	26.2	7.3	1.6	6.9	0.0	0.8	5.9	14.6	56.3
아니오	23.8	4.0	0.9	2.2	0.4	0.4	4.3	20.8	52.6
2019년	22.2	5.9	1.4	5.7	0.2	0.3	5.8	12.4	46.2

주: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의 자료를 분석(중복응답)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20.9%, 가족돌봄으로 충분해서 16.1%,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어서 9.6%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외 도움을 꺼리는 미이용자는 85~89세, 중소도시 거주, 장기요양인정등급이 5등급인 미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원입원으로 인한 미이용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65세 미만 미이용자, 대도시 거주,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미이용자, 그리고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11〉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특성	가족 외 도움 꺼림	가족 돌봄 충분	타인 도움 필요 없음	경제적 부담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 불만족	병원 입원	병원 선호	장기요양 등급 미리 판정	기타	계(명)
전체	30.0	16.1	9.6	8.9	4.3	20.9	2.9	3.6	3.6	100.0 (996)
성별										
남성	30.2	18.4	11.2	11.5	3.6	16.9	1.8	2.4	3.9	100.0 (331)
여성	29.8	15.1	8.9	7.7	4.5	22.9	3.5	4.2	3.5	100.0 (665)
연령대										
65세 미만	22.7	4.5	9.1	9.1	13.6	31.8	0.0	4.5	4.5	100.0 (46)
65~69세	20.5	15.9	9.1	20.5	4.5	25.0	0.0	0.0	4.5	100.0 (44)
70~74세	25.0	17.7	19.8	2.1	4.2	26.0	0.0	5.2	0.0	100.0 (95)
75~79세	22.2	14.6	12.3	9.4	2.3	26.3	4.7	5.3	2.9	100.0 (171)
80~84세	32.8	16.2	6.9	11.7	5.7	13.0	2.8	4.5	6.5	100.0 (246)
85~89세	38.9	15.4	6.9	6.1	4.9	19.0	2.4	4.0	2.4	100.0 (246)
90세 이상	28.0	20.7	9.3	9.3	0.0	23.3	5.3	0.0	4.0	100.0 (149)
지역										
대도시	30.3	12.5	10.4	8.7	5.6	23.4	3.8	3.8	1.5	100.0 (394)
중소도시	33.9	18.8	7.0	7.0	3.6	18.8	2.2	2.0	6.7	100.0 (356)
농어촌	23.6	18.3	12.2	12.2	3.3	19.9	2.4	5.7	2.4	100.0 (246)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5.6	2.8	5.6	0.0	5.6	72.2	5.6	0.0	2.8	100.0 (73)
2등급	18.3	20.7	2.4	4.9	0.0	41.5	7.3	2.4	2.4	100.0 (83)
3등급	30.7	17.9	7.7	6.9	2.2	26.6	3.6	2.2	2.2	100.0 (274)
4등급	33.0	15.6	10.1	12.6	6.7	13.7	2.2	3.6	2.5	100.0 (358)
5등급	41.0	20.9	9.7	4.5	3.7	0.0	0.0	8.2	11.9	100.0 (133)
인지지원등급	28.9	11.8	26.3	19.7	5.3	0.0	0.0	5.3	2.6	100.0 (74)
치매진단여부										
예	29.6	13.7	9.3	8.1	4.4	23.8	4.4	2.3	4.3	100.0 (518)
아니오	30.5	18.7	9.9	9.9	4.0	17.9	1.3	4.8	2.9	100.0 (478)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도 보기문항이 변경되어 2019년 응답 결과 제시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가족돌봄으로 충분해서 23.0%, 병원 선호 18.2%, 가족외 도움을 꺼려해서 12.0%, 나중을 위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미리 받았을 뿐 아직은 서비스가 필요없어서 11.5%, 경제적 부담 11.1%,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서 10.2%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돌봄이 충분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는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80~84세와 85~89세, 3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미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12〉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

(단위: %, 명)

특성	가족 외 도움 꺼림	가족 돌봄 충분	타인 도움 필요 없음	경제적 부담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 불만족	병원 입원	병원 선호	장기요양 등급 미리 판정	기타	계(명)
전체	12.0	23.0	10.2	11.1	6.4	3.7	18.2	11.5	3.9	100.0 (939)
성별										
남성	13.3	26.5	9.4	9.4	4.5	1.9	14.9	16.8	3.2	100.0 (309)
여성	11.4	21.3	10.7	12.1	7.2	4.5	19.7	8.9	4.3	100.0 (629)
연령대										
65세 미만	17.9	15.4	5.1	10.3	0.0	10.3	25.6	5.1	10.3	100.0 (39)
65~69세	22.5	22.5	5.0	10.0	0.0	5.0	22.5	12.5	0.0	100.0 (40)
70~74세	6.5	22.8	10.9	21.7	4.3	0.0	22.8	8.7	2.2	100.0 (92)
75~79세	9.0	21.7	9.6	11.4	6.0	5.4	20.5	12.7	3.6	100.0 (166)
80~84세	14.5	25.4	12.3	9.2	6.1	3.9	11.0	13.6	3.9	100.0 (228)
85~89세	8.5	24.8	11.1	8.1	9.8	2.6	19.2	9.8	6.0	100.0 (234)
90세 이상	16.5	20.1	8.6	12.2	5.8	2.9	19.4	12.9	1.4	100.0 (139)
지역										
대도시	8.1	24.3	12.7	10.2	4.9	4.6	21.3	11.3	2.7	100.0 (371)
중소도시	13.5	21.7	7.6	14.7	6.4	4.6	16.2	9.8	5.5	100.0 (327)
농어촌	16.3	23.0	9.6	7.9	8.8	.8	16.3	13.8	3.3	100.0 (239)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2.9	2.9	2.9	5.7	0.0	11.4	62.9	8.6	2.9	100.0 (70)
2등급	15.8	5.3	5.3	18.4	2.6	5.3	36.8	5.3	5.3	100.0 (76)
3등급	10.4	24.6	7.8	8.6	8.2	2.2	21.3	12.3	4.5	100.0 (268)
4등급	11.1	26.5	10.2	13.9	7.8	3.3	12.0	11.4	3.6	100.0 (332)
5등급	18.0	31.1	17.2	10.7	6.6	4.1	1.6	7.4	3.3	100.0 (122)
인지지원등급	18.3	25.4	18.3	7.0	2.8	0.0	0.0	25.4	2.8	100.0 (71)
치매진단여부										
예	14.0	22.2	8.1	9.1	6.3	6.1	20.3	10.4	3.5	100.0 (492)
아니오	9.8	23.9	12.3	13.4	6.3	1.1	15.9	12.8	4.5	100.0 (447)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 중 2순위까지 응답한 939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도 보기문항이 변경되어 2019년 응답 결과 제시하지 않음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1순위는 방문요양 38.1%, 노인요양시설 19.1%, 없음 16.4%, 주야간보호 7.8%, 방문목욕 6.5%, 복지용구 6.3%, 방문간호 5.0% 등으로 나타났다. 80~84세와 65~69세 연령대, 대도시 거주, 장기요양인정등급이 4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치매가 없는 미이용자의 경우 방문요양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이용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90세 이상,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미이용자, 그리고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로 나타났다.

〈표 3-113〉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1순위)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없음	계(명)	
전체	38.1	6.5	5.0	7.8	0.8	6.3	19.1	16.4	100.0	(996)
성별										
남성	38.8	4.8	6.7	8.2	0.6	7.9	17.3	15.8	100.0	(331)
여성	37.7	7.4	4.1	7.7	0.9	5.4	20.2	16.7	100.0	(665)
연령대										
65세 미만	37.8	8.9	8.9	4.4	0.0	4.4	17.8	17.8	100.0	(46)
65~69세	40.5	9.5	4.8	9.5	0.0	4.8	16.7	14.3	100.0	(44)
70~74세	45.2	2.2	4.3	2.2	4.3	4.3	20.4	17.2	100.0	(95)
75~79세	39.4	8.8	1.2	10.6	0.0	4.7	17.6	17.6	100.0	(171)
80~84세	47.1	5.3	6.1	9.0	0.0	5.3	15.6	11.5	100.0	(246)
85~89세	30.1	4.1	6.9	10.2	0.8	7.7	20.7	19.5	100.0	(246)
90세 이상	31.8	10.8	2.7	2.7	1.4	8.8	25.0	16.9	100.0	(149)
지역										
대도시	42.4	5.6	5.6	7.4	1.0	5.1	19.5	13.5	100.0	(394)
중소도시	34.6	7.6	4.5	7.6	1.1	5.6	22.5	16.6	100.0	(356)
농어촌	36.6	6.5	4.5	8.9	0.0	8.9	13.8	20.7	100.0	(24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6	2.8	11.1	2.8	0.0	11.1	40.3	26.4	100.0	(73)
2등급	20.5	9.6	2.4	4.8	0.0	12.0	24.1	26.5	100.0	(83)
3등급	38.2	6.2	7.3	3.6	1.5	4.4	22.2	16.7	100.0	(274)
4등급	44.3	7.8	4.5	7.8	0.6	4.7	15.9	14.5	100.0	(358)
5등급	40.9	6.1	1.5	14.4	1.5	8.3	15.9	11.4	100.0	(133)
인지지원등급	52.7	2.7	2.7	20.3	0.0	6.8	2.7	12.2	100.0	(74)
치매진단 여부										
예	30.1	5.8	5.6	9.3	1.5	5.6	24.3	17.8	100.0	(518)
아니오	46.7	7.3	4.4	6.3	0.0	6.9	13.6	14.9	100.0	(478)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2순위는 방문목욕 19.3%, 복지용구 17.1%, 방문간호 16.4%, 방문요양 15.7%, 노인요양시설 15.2%, 주야간보호 11.8%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 미이용자는 방문목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미이용자는 남성에 비해 방문간호나 복지용구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5세 미만 미이용자는 주야간보호를, 65~69세 미이용자는 방문목욕을, 75~79세 미이용자는 방문간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이용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미이용자는 방문요양을, 2등급인 미이용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치매가 있는 미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미이용자에 비해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4〉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2순위)

(단위: %, 명)

특성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요양 시설	없음	계(명)	
전체	15.7	19.3	16.4	11.8	2.9	17.1	15.2	1.6	100.0	(833)
성별										
남성	16.1	22.6	14.3	11.1	4.7	14.7	14.3	2.2	100.0	(279)
여성	15.3	17.5	17.5	12.3	2.0	18.4	15.7	1.3	100.0	(554)
연령대										
65세 미만	10.8	10.8	35.1	16.2	0.0	16.2	10.8	0.0	100.0	(37)
65~69세	18.4	23.7	18.4	5.3	0.0	10.5	10.5	13.2	100.0	(38)
70~74세	16.5	24.1	11.4	15.2	2.5	16.5	11.4	2.5	100.0	(79)
75~79세	12.0	17.6	23.9	2.8	2.8	16.9	23.9	0.0	100.0	(142)
80~84세	16.2	22.7	18.5	13.9	2.8	13.9	11.1	.9	100.0	(216)
85~89세	16.8	13.8	11.7	13.8	2.6	24.5	15.8	1.0	100.0	(196)
90세 이상	17.6	22.4	9.6	12.8	4.8	14.4	16.8	1.6	100.0	(125)
지역										
대도시	16.7	15.0	17.0	12.3	4.7	18.5	13.2	2.6	100.0	(341)
중소도시	14.1	19.9	19.5	13.8	2.0	16.5	12.8	1.3	100.0	(297)
농어촌	16.3	25.5	10.7	7.7	1.0	16.3	22.4	0.0	100.0	(19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4.1	11.1	7.4	3.7	3.7	31.5	18.5	0.0	100.0	(54)
2등급	16.7	13.3	10.0	10.0	0.0	18.3	28.3	3.3	100.0	(60)
3등급	11.0	20.2	18.9	15.4	5.3	11.4	17.1	.9	100.0	(228)
4등급	18.9	22.5	16.6	7.8	1.3	19.5	10.4	2.9	100.0	(307)
5등급	11.8	16.8	22.7	14.3	0.0	16.8	17.6	0.0	100.0	(119)
인지지원등급	16.9	20.0	7.7	23.1	7.7	13.8	10.8	0.0	100.0	(65)
치매진단 여부										
예	18.1	14.6	16.0	10.8	3.1	19.5	16.7	1.4	100.0	(426)
아니오	13.3	24.1	17.0	12.8	2.7	14.7	13.8	1.7	100.0	(407)

주: 1)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996명 중 2순위까지 응답한 833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 미이용자 중 본인응답이 가능한 464명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 미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미이용자는 13.1%,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등을 경험한 비율은 0.0%, 다른 사람이 수급자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미이용자는 0.0%,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미이용자는 0.8%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 미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 기피를 경험한 미이용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 미이용자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에서는 65~69세 비율이 높으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4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 집단에서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 미이용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 기피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남성 미이용자 17.8%, 여성 미이용자 10.9%였으며, 연령대에서는 65세 미만 33.3%, 70~74세 21.2%, 90세 이상 16.9%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가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3등급인 미이용자의 19.1%, 4등급인 미이용자의 12.1%, 5등급을 받은 미이용자의 17.7%,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 미이용자의 4.8%가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미이용자는 0.0%, 여성 미이용자는 3.2%였으며, 연령대에서는 75~79세 6.6%, 85~89세 1.8%, 90세 이상 3.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2.0%, 중소도시 2.9%, 농어촌 지역 1.6%였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3등급인 미이용자의 2.9%, 4등급인 미이용자의 2.2%,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미이용자의 4.8%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미이용자는 1.3%, 여성 미이용자는 0.6%였으며, 75~79세인 연령대에서 4.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1.0%,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1.6%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는 3등급인 미이용자의 1.5%,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미이용자의 4.8%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5〉 (본인 응답) 급여 미이용자의 지난 1년 동안 학대경험

(단위: %, 명)

특성	응답 사례수	의견무시나 대화 기피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전체	(464)	5.7	13.1	2.2	0.0	0.0	0.8
성별							
남성	(152)	7.9	17.8	0.0	0.0	0.0	1.3
여성	(312)	4.5	10.9	3.2	0.0	0.0	0.6
연령대							
65세 미만	(12)	0.0	33.3	0.0	0.0	0.0	0.0
65~69세	(20)	21.1	0.0	0.0	0.0	0.0	0.0
70~74세	(52)	0.0	21.2	0.0	0.0	0.0	0.0
75~79세	(90)	8.8	11.1	6.6	0.0	0.0	4.4
80~84세	(121)	4.1	13.2	0.0	0.0	0.0	0.0
85~89세	(110)	5.5	9.1	1.8	0.0	0.0	0.0
90세 이상	(59)	6.8	16.9	3.4	0.0	0.0	0.0
지역							
대도시	(201)	3.5	7.5	2.0	0.0	0.0	1.0
중소도시	(139)	7.2	20.9	2.9	0.0	0.0	0.0
농어촌	(123)	7.3	13.0	1.6	0.0	0.0	1.6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5)	0.0	0.0	0.0	0.0	0.0	0.0
2등급	(28)	0.0	0.0	0.0	0.0	0.0	0.0
3등급	(136)	5.9	19.1	2.9	0.0	0.0	1.5
4등급	(182)	7.2	12.1	2.2	0.0	0.0	0.0
5등급	(62)	3.2	17.7	0.0	0.0	0.0	0.0
인지지원등급	(42)	9.5	4.8	4.8	0.0	0.0	4.8
치매 여부							
예	(196)	5.6	10.7	2.0	0.0	0.0	1.0
아니오	(268)	5.6	14.9	2.2	0.0	0.0	0.7
2019년	(205)	6.8	14.1	-	-	0.0	-

주: 1) 재가급여 이용자 중 대리응답을 제외한 본인이 응답한 464명의 자료를 분석
2)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경제적 학대 문항은 2022년 신규 문항임

제4장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결과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제 4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조사결과

본 장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파악한 일반현황 및 급여 이용 경험과 만족도, 향후 제도 개선사항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급여 유형별(재가·시설)로 구분하여 가족의 돌봄 제공과 급여 이용 만족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항목 등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급여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일반 현황

1. 가구 및 주거 특성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2,978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급여유형별 비율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80.0%,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20.0%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38.6%, 여성이 61.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34.3%, 60대 33.5%, 70대 12.3%, 40대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50대 이상에 포진하였다. 응답자의 65.3%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종사상지위로는 상용근로자 45.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9%, 임시 근로자 15.8%, 일용근로자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5.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9.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5.7% 등의 순이며, 응답자의 19.0%는 이용자의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재가·시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모두 여성의 비율이 63.2%, 53.9%로 높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87.2%로 시설급여(8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중 64.0%, 70.6%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상용근로자 43.7%, 임시근로자

16.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7% 등의 순이나,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상용근로자 5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6%, 임시근로자 13.1% 등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모두 200만원 미만(48.0%, 35.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7.7%, 24.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소득구간별로 그 구성비를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돌봄을 위해 퇴직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19.5%가,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16.8%가 이에 해당하였다.

〈표 4-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2022년			2019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계(명)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계(명)
전체	100.0 (2,382)	100.0 (595)	100.0 (2,978)	100.0 (2,723)	100.0 (1,070)	100.0 (3,794)
이용자의 급여이용 유형						
재가급여	100.0	0.0	80.0 (2,382)	100.0	0.0	71.8 (2,723)
시설급여	0.0	100.0	20.0 (595)	0.0	100.0	28.2 (1,070)
성별						
남성	36.8	46.1	38.6 (1,150)	39.0	47.4	41.3 (1,568)
여성	63.2	53.9	61.4 (1,828)	61.0	52.6	58.7 (2,225)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4	0.3	0.4 (11)	0.5	0.5	0.5 (19)
30~39세	1.3	2.4	1.5 (44)	2.2	2.6	2.3 (88)
40~49세	11.2	13.3	11.6 (346)	12.6	15.7	13.5 (512)
50~59세	33.5	37.5	34.3 (1,022)	33.6	38.7	35.0 (1,329)
60~69세	33.2	35.0	33.5 (998)	27.4	31.5	28.5 (1,082)
70~79세	13.0	9.4	12.3 (366)	13.9	8.5	12.4 (468)
80세 이상	7.5	2.2	6.4 (190)	9.8	2.5	7.8 (294)
경제활동 유무						
예	64.0	70.6	65.3 (1,944)	57.4	65.6	49.7 (2,266)
아니오	36.0	29.4	34.7 (1,034)	42.6	34.4	40.3 (1,527)
종사상 지위[2]						
상용근로자	43.7	52.7	45.7 (888)	-	-	- -
임시근로자	16.5	13.1	15.8 (307)	-	-	- -
일용근로자	11.0	6.9	10.1 (196)	-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7	16.6	15.9 (309)	-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6	7.1	8.3 (161)	-	-	- -
무급가족종사자	4.5	3.6	4.3 (83)	-	-	-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4	15.6	24.2 (722)	29.7	18.0	26.4 (1,000)
100~200만원 미만	21.6	19.5	21.2 (631)	24.0	25.0	24.2 (919)
200~300만원 미만	17.7	24.9	19.1 (569)	20.8	24.9	21.9 (832)
300~400만원 미만	15.4	16.8	15.7 (467)	11.1	14.5	12.1 (458)
400~500만원 미만	9.3	12.1	9.8 (293)	6.6	8.8	7.2 (273)
500~600만원 미만	5.1	5.7	5.2 (156)	3.6	4.6	3.9 (146)
600만원 이상	4.5	5.4	4.7 (141)	4.3	4.3	4.3 (163)
이용자 돌봄을 위한 퇴직 유무						
예	19.5	16.8	19.0 (565)	18.6	16.1	17.9 (678)
아니오	80.5	83.2	81.0 (2,413)	81.4	83.9	82.1 (3,116)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944명에 대해 조사된 값임. 2019년에는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진행되는 분석에 있어서는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급여 이용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가 기재되며, 본문 내에서 응답자는 이용자의 가족을, 이용자는 실제 급여 이용자를 뜻한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응답자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딸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아들 29.0%, 배우자 16.9%, 며느리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부모-자녀 관계에 해당하였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이용자와의 관계를 달리하였다. 즉, 남성인 경우에는 아들(75.1%), 배우자(17.1%) 등의 순, 여성인 경우에는 딸(60.6%), 며느리(17.7%), 배우자(16.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70세를 전후로 차이가 발견된다. 응답자의 연령이 70대 이상인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9세에서는 59.8%, 80세 이상에서는 92.1%를 차지한다. 반면 70세 미만의 경우(30세 미만 제외), 전체적인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딸과 아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배우자 39.6%, 딸 24.0%, 아들 21.8% 등의 순을 차지한 반면, 여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딸 41.8%, 아들 31.6%, 며느리 11.9% 등의 순을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가족조사의 경우, 이용자와 동거하거나(재가급여 한정) 또는 비동거 가족일지라도 이용자의 돌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당 응답결과는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용자의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구성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80세를 전후로 차이가 있다. 즉, 80세 이상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딸과 아들, 배우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80세 미만에 있어서는 배우자, 딸, 아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의 경우 딸(33.9%), 배우자(28.6%), 아들(25.0%)로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용자의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딸(38.1%), 아들(26.0%), 배우자(19.7%) 등의 순인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아들(41.0%), 딸(33.4%), 며느리(12.9%) 등의 순으로 급여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표 4-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응답 가족과의 관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인척	계(명)	
전체	16.9	29.0	10.9	37.2	0.9	1.3	3.8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7.1	75.1	0.0	0.0	2.3	1.6	4.0	100.0	(1,150)
여성	16.7	0.0	17.7	60.6	0.0	1.2	3.7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9.1	0.0	9.1	0.0	81.8	0.0	100.0	(11)
30~39세	0.0	27.3	2.3	34.1	0.0	34.1	2.3	100.0	(44)
40~49세	0.6	37.4	11.6	45.2	0.0	4.3	0.9	100.0	(346)
50~59세	1.3	33.2	15.7	47.8	0.8	0.1	1.2	100.0	(1,022)
60~69세	9.5	33.2	10.3	40.1	1.5	0.0	5.4	100.0	(998)
70~79세	59.8	13.9	4.9	12.0	0.8	0.0	8.5	100.0	(366)
80세 이상	92.1	0.5	0.5	1.1	0.0	0.0	5.8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9.6	21.8	7.9	24.0	1.2	0.0	5.5	100.0	(1,944)
여성	8.9	31.6	11.9	41.8	0.8	1.8	3.2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48.2	7.1	0.0	10.7	3.6	0.0	30.4	100.0	(56)
65~69세	48.4	16.1	0.8	25.8	0.0	0.0	8.9	100.0	(124)
70~74세	39.0	20.7	3.8	24.9	0.0	1.4	10.3	100.0	(213)
75~79세	34.9	24.5	4.4	31.0	1.3	0.0	3.9	100.0	(387)
80~84세	15.5	28.3	11.1	39.1	1.0	1.2	3.9	100.0	(822)
85~89세	6.9	33.4	12.8	43.2	0.7	1.9	1.0	100.0	(826)
90세 이상	2.2	34.8	18.8	39.7	1.1	2.0	1.5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9.3	24.6	8.1	41.0	0.7	1.1	5.0	100.0	(982)
중소도시	18.3	27.4	11.4	37.4	1.3	1.2	3.0	100.0	(951)
농어촌	13.2	34.7	13.0	33.4	0.6	1.6	3.5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8.6	25.0	8.9	33.9	0.0	0.0	3.6	100.0	(112)
2등급	17.5	33.6	12.0	31.5	1.0	1.0	3.4	100.0	(292)
3등급	19.7	28.0	11.6	35.0	1.0	1.7	3.0	100.0	(836)
4등급	15.4	28.5	9.9	39.5	0.9	1.4	4.4	100.0	(1,423)
5등급	11.6	31.6	13.3	38.2	1.0	0.3	4.0	100.0	(301)
인지지원등급	6.7	26.7	13.3	46.7	0.0	0.0	6.7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9.7	26.0	10.4	38.1	0.9	1.3	3.7	100.0	(2,382)
시설급여	5.7	41.0	12.9	33.4	0.8	1.5	4.5	100.0	(595)
2019년	20.3	30.1	12.9	30.7	0.8	1.5	3.8	100.0	(3,794)

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응답가족과 이용자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이용자와 동거 중인 경우 40.3%, 비동거 중인 경우 59.7%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앞선 분석결과(이용자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70세를 전후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현재 동거 중인 비율이 70~79세 68.3%, 80세 이상 90.0%로 70세 미만 연령대(30세 미만 제외)와 경향성을 달리한다. 70세 이상의 경우, 이용자와 응답자(이용자의 가족)간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다수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동거 중인 경우는 남성 이용자 가족은 50.2%에 달하는 반면, 여성 이용자 가족은 36.9%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이용자의 연령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에서는 비동거 중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80세 미만 집단에서는 동거 중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령대에 따른 동거여부의 차이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지역별, 등급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전체적인 경향성과 유사하다. 이용자의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중 50.4%는 가족과 동거 중이나, 49.6%는 떨어져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비동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자와 이용자 간 거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32.9%는 이용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며, 다음으로 같은 시군구에 거주 27.4%, 다른 시도에 거주 24.7%, 같은 시도에 거주 14.9% 순으로 나타나 약 1/3은 이용자와 비교적 근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으나, 4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이용자와 동일 읍면동 거주 비율이 가장 높다(30세 미만 40.0%, 30~39세 41.4%).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타 시도 거주 30.3%, 동일 읍면동 거주 27.9%, 동일 시군구 거주 2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이용자 가족은 동일 읍면동 거주 34.2%, 동일 시군구 거주 27.9%, 타 시도 거주 23.2% 등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거주지역 차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과 유사하나, 65세 미만인 경우 동일 읍면동 거주 비율이 51.9%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가족인 경우, 타 시도 거주 33.8%, 동일 읍면동 거주 27.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가족에 비해 가족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자립적 생활이 어려운 1등급 이용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39.0%로 타 등급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반면 타 시도에 거주한다

는 비율은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다. 1등급 이용자의 가족인 경우 동 응답이 16.9%인 반면, 5등급 이용자의 가족은 29.4%로 등급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급여 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일 읍면동 거주 35.3%, 타 시도 거주 27.3%인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동 응답이 28.0%, 19.6%로 급여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40.3	59.7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2.3	57.7	100.0 (1,150)
여성	39.1	60.9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4.5	45.5	100.0 (11)
30~39세	34.1	65.9	100.0 (44)
40~49세	26.9	73.1	100.0 (346)
50~59세	28.6	71.4	100.0 (1,022)
60~69세	37.4	62.6	100.0 (998)
70~79세	68.3	31.7	100.0 (366)
80세 이상	90.0	10.0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50.2	49.8	100.0 (1,944)
여성	36.9	63.1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2.6	47.4	100.0 (56)
65~69세	58.9	41.1	100.0 (124)
70~74세	52.1	47.9	100.0 (213)
75~79세	51.0	49.0	100.0 (387)
80~84세	36.4	63.6	100.0 (822)
85~89세	34.8	65.2	100.0 (826)
90세 이상	37.0	63.0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9.0	51.0	100.0 (982)
중소도시	41.3	58.7	100.0 (951)
농어촌	31.2	68.8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7.3	52.7	100.0 (112)
2등급	39.9	60.1	100.0 (292)
3등급	43.4	56.6	100.0 (836)
4등급	38.4	61.6	100.0 (1,423)
5등급	37.9	62.1	100.0 (301)
인지지원등급	42.9	57.1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50.4	49.6	100.0 (2,382)
시설급여	0.0	100.0	100.0 (595)
2019년	41.6	58.4	100.0 (3,794)

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표 4-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와 이용자의 거주 지역[1)2)]

(단위: %, 명)

특성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계(명)	
전체	32.9	27.4	14.9	24.7	100.0	(1,777)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7.9	29.0	15.8	27.3	100.0	(663)
여성	35.9	26.5	14.3	23.2	100.0	(1,115)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40.0	20.0	20.0	20.0	100.0	(5)
30~39세	41.4	20.7	24.1	13.8	100.0	(29)
40~49세	27.0	30.6	18.7	23.8	100.0	(252)
50~59세	31.6	26.8	15.5	26.0	100.0	(730)
60~69세	36.5	26.3	12.0	25.2	100.0	(624)
70~79세	31.9	30.2	16.4	21.6	100.0	(116)
80세 이상	31.6	42.1	15.8	10.5	100.0	(19)
이용자의 성별						
남성	27.9	25.8	15.9	30.3	100.0	(383)
여성	34.2	27.9	14.6	23.2	100.0	(1,393)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1.9	18.5	3.7	25.9	100.0	(27)
65~69세	33.3	19.6	23.5	23.5	100.0	(51)
70~74세	33.7	36.6	16.8	12.9	100.0	(101)
75~79세	30.7	28.6	16.9	23.8	100.0	(189)
80~84세	28.9	28.3	16.6	26.2	100.0	(523)
85~89세	35.6	23.9	14.1	26.3	100.0	(539)
90세 이상	34.2	30.1	11.6	24.1	100.0	(34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8.9	26.7	18.2	16.2	100.0	(591)
중소도시	34.6	33.5	11.1	20.8	100.0	(558)
농어촌	27.4	23.4	15.4	33.8	100.0	(71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9.0	35.6	8.5	16.9	100.0	(59)
2등급	29.0	34.1	17.6	19.3	100.0	(176)
3등급	32.6	30.9	14.4	22.2	100.0	(473)
4등급	33.4	24.8	15.0	26.8	100.0	(876)
5등급	31.6	23.5	15.5	29.4	100.0	(187)
인지지원등급	50.0	12.5	25.0	12.5	100.0	(8)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35.3	22.8	14.5	27.3	100.0	(1,183)
시설급여	28.0	36.6	15.8	19.6	100.0	(596)
2019년	27.5	33.8	14.2	24.6	100.0	(2,215)

주: 1) 이용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용자 가족 1,777명의 자료를 분석
2)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구형태가 부부가구 또는 자녀동거가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고 비동거 가족이 응답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장기요양급여 이용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 주야간보호기관과 같은 공급기관 확대와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관련하여 치매전담 기관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인지 및 이용 여부를 파악하였다.

우선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지 여부를 확인할 결과, 응답자의 41.3%만이 알고 있었으며 이중 16.7%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46.2%)이 남성(33.5%)에 비해 인지율이 더 높다. 연령에 있어서는 비교적 연령이 높아질수록(70세 이상 제외),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

이용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이용자 가족(41.9%)의 인지율이 남성 이용자 가족(39.8%)에 비해 근소히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있어서는 80세인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시설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80~84세 40.3%, 85~89세 44.4%, 90세 이상 44.8%). 이용자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3등급 44.4%, 4등급 41.3%, 5등급 37.9% 등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고,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인지율이 41.9%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39.2%)보다 높다.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16.7%)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 역시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 30~39세 연령군에서 이용률이 36.4%로 높긴 하나, 응답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65세 미만 이용률이 25.9%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75~79세가 21.1%를 차지하였다. 이외의 연령대는 전체적 경향성과 유사하게 10% 내외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 이용자가 18.5%로 도시

거주 이용자(대도시 15.0%, 중소도시 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인지율은 3~5등급 이용자 가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실제 이용률에 있어서는 2등급이 21.1%로 가장 높고 4·5등급 16.7%, 3등급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25.3%로 재가급여 이용자(14.6%)보다 높다.

〈표 4-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41.3	58.7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3.5	66.5	100.0 (1,150)
여성	46.2	53.8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7.3	72.7	100.0 (11)
30~39세	25.0	75.0	100.0 (44)
40~49세	35.8	64.2	100.0 (346)
50~59세	43.2	56.8	100.0 (1,022)
60~69세	46.0	54.0	100.0 (998)
70~79세	38.8	61.2	100.0 (366)
80세 이상	25.8	74.2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9.8	60.2	100.0 (1,944)
여성	41.9	58.1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47.4	52.6	100.0 (56)
65~69세	37.9	62.1	100.0 (124)
70~74세	39.4	60.6	100.0 (213)
75~79세	33.2	66.8	100.0 (387)
80~84세	40.3	59.7	100.0 (822)
85~89세	44.4	55.6	100.0 (826)
90세 이상	44.8	55.2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2.1	57.9	100.0 (982)
중소도시	40.8	59.2	100.0 (951)
농어촌	41.0	59.0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4.8	65.2	100.0 (112)
2등급	37.3	62.7	100.0 (292)
3등급	44.4	55.6	100.0 (836)
4등급	41.3	58.7	100.0 (1,423)
5등급	37.9	62.1	100.0 (301)
인지지원등급	60.0	40.0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41.9	58.1	100.0 (2,382)
시설급여	39.2	60.8	100.0 (595)
2019년	27.1	72.9	100.0 (3,794)

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표 4-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6.7	83.3	100.0 (1,230)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6.4	83.6	100.0 (385)
여성	16.7	83.3	100.0 (845)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100.0 (3)[2]
30~39세	36.4	63.6	100.0 (11)
40~49세	15.3	84.7	100.0 (124)
50~59세	17.9	82.1	100.0 (441)
60~69세	16.1	83.9	100.0 (459)
70~79세	17.5	82.5	100.0 (143)
80세 이상	8.0	92.0	100.0 (50)
이용자의 성별			
남성	15.3	84.7	100.0 (307)
여성	16.9	83.1	100.0 (92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5.9	74.1	100.0 (27)
65~69세	15.2	84.8	100.0 (46)
70~74세	10.7	89.3	100.0 (84)
75~79세	21.1	78.9	100.0 (128)
80~84세	18.4	81.6	100.0 (332)
85~89세	14.4	85.6	100.0 (368)
90세 이상	16.3	83.7	100.0 (246)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5.0	85.0	100.0 (414)
중소도시	16.0	84.0	100.0 (388)
농어촌	18.5	81.5	100.0 (428)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2.5	87.5	100.0 (40)
2등급	21.1	78.9	100.0 (109)
3등급	15.9	84.1	100.0 (371)
4등급	16.7	83.3	100.0 (588)
5등급	16.7	83.3	100.0 (114)
인지지원등급	0.0	100.0	100.0 (9)[2]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4.6	85.4	100.0 (997)
시설급여	25.3	74.7	100.0 (233)
2019년	4.2	95.8	100.0 (1,028)

주: 1)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인지하고 있는 1,2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음으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기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었으며 이중 21.8%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다는 인지율 및 이용률이 높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50.8%)이 남성(35.0%)에 비해 인지율이 더 높다. 연령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30대 50.0%, 60대 49.8%, 50대 46.2% 등의 순으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기관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85~89세 48.4%, 90세 이상 46.3%, 65세 미만 45.6% 등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 역시 적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대도시 이용자 가족의 인지율이 45.6%로 농어촌(44.6%), 중소도시(43.9%)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기관의 공급 분포에 따른 차이로 간주된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기관의 주요 대상층인 인지지원 등급(53.3%) 및 3~5등급(45.7%, 45.7%, 45.2%)이용자 가족에게서 인지율이 높다.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인지율이 45.7%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40.7%)보다 높다.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21.8%)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여성(23.0%)의 이용률이 남성(19.1%)에 비해 높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비교적 50세 미만의 연령대(30세 미만 제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30대 40.9%, 40대 26.3% 등의 순이다.

이용자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65세 미만 26.9%, 80~84세 24.7%, 70~74세 22.5%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이용자가 23.0%로 중소도시(22.2%), 농어촌(20.4%) 이용자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주요 이용층인 인지지원 등급(50.0%), 5등급(35.3%), 4등급(22.1%)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단, 인지지원 등급 이용자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률이 22.6%로 시설급여 이용자(18.6%)보다 높다.

〈표 4-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44.7	55.3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5.0	65.0	100.0 (1,150)
여성	50.8	49.2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9.1	90.9	100.0 (11)
30~39세	50.0	50.0	100.0 (44)
40~49세	38.7	61.3	100.0 (346)
50~59세	46.2	53.8	100.0 (1,022)
60~69세	49.8	50.2	100.0 (998)
70~79세	42.5	57.5	100.0 (366)
80세 이상	25.8	74.2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44.6	55.4	100.0 (1,944)
여성	44.7	55.3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45.6	54.4	100.0 (56)
65~69세	33.1	66.9	100.0 (124)
70~74세	41.8	58.2	100.0 (213)
75~79세	38.1	61.9	100.0 (387)
80~84세	45.4	54.6	100.0 (822)
85~89세	48.4	51.6	100.0 (826)
90세 이상	46.3	53.7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5.6	54.4	100.0 (982)
중소도시	43.9	56.1	100.0 (951)
농어촌	44.6	55.4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8.4	61.6	100.0 (112)
2등급	38.1	61.9	100.0 (292)
3등급	45.7	54.3	100.0 (836)
4등급	45.7	54.3	100.0 (1,423)
5등급	45.2	54.8	100.0 (301)
인지지원등급	53.3	46.7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45.7	54.3	100.0 (2,382)
시설급여	40.7	59.3	100.0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4-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이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21.8	78.2	100.0 (1,33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9.1	80.9	100.0 (403)
여성	23.0	77.0	100.0 (9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100.0 (1)[2)]
30~39세	40.9	59.1	100.0 (22)
40~49세	26.3	73.7	100.0 (133)
50~59세	20.6	79.4	100.0 (472)
60~69세	22.7	77.3	100.0 (498)
70~79세	19.2	80.8	100.0 (156)
80세 이상	14.3	85.7	100.0 (49)
이용자의 성별			
남성	21.8	78.2	100.0 (344)
여성	21.8	78.2	100.0 (98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6.9	73.1	100.0 (26)
65~69세	21.4	78.6	100.0 (42)
70~74세	22.5	77.5	100.0 (89)
75~79세	20.9	79.1	100.0 (148)
80~84세	24.7	75.3	100.0 (373)
85~89세	19.5	80.5	100.0 (401)
90세 이상	21.7	78.3	100.0 (25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0	77.0	100.0 (448)
중소도시	22.2	77.8	100.0 (418)
농어촌	20.4	79.6	100.0 (465)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6	88.4	100.0 (43)
2등급	20.5	79.5	100.0 (112)
3등급	17.5	82.5	100.0 (383)
4등급	22.1	77.9	100.0 (651)
5등급	35.3	64.7	100.0 (136)
인지지원등급	50.0	50.0	100.0 (8)[2)]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22.6	77.4	100.0 (1,090)
시설급여	18.6	81.4	100.0 (242)

주: 1)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1,3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치매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8일 제공되는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2%가 알고 있었으며 이중 14.1%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31.5%)이 남성(17.8%)에 비해 인지율이 월등히 더 높다. 연령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비교적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의 가족이 28.7%, 여성 이용자의 가족이 25.4%로 남성 이용자 가족에게서 인지율이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있어서는 65세를 전후로 차이가 뚜렷하다. 즉, 이용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응답자 중 40.4%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은 전체적 경향성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도시 이용자 가족의 인지율이 29.4%로 중소도시(27.9%), 농어촌(21.7%)에 비해 확연히 높다. 거주지역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간주된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할 때, 3등급 이용자의 가족(29.7%), 4등급(26.4%), 1등급(25.9%) 등의 순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 급여유형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나,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인지율이 26.5%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25.2%)보다 근소하게 높다.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14.1%)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응답자 중 여성(14.9%)의 이용률이 남성(11.7%)에 비해 높다. 응답자의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30대의 경우 66.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답자 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가 낮다.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60대 16.2%, 40대 13.0%, 50대 12.5% 등의 순으로 높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인지율과 달리 여성 이용자 가족의 이용률이 15.0%로 남성 이용자(11.7%)보다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저연령대(65세 미만, 65~69세)이용자 가족의 이용률이 17.4%, 18.2%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이용자 가족의 이용률이 15.2%로 중소도시(13.6%), 농어촌(13.7%)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할 때, 1등급(17.2%), 4등급(15.2%), 2등급(14.7%) 등의 순으로 높지만 경향성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률이 14.3%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13.4%)에 비해 약간 높다.

종합할 때, 치매전담 기관 또는 치매가족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44.7%),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41.3%), 치매가족 휴가제(26.2%) 순으로 인지율이 높고, 이용률은 21.8%, 16.7%, 14.1%에 그쳐 인지율의 1/2~1/3 수준에 불과하다. 응답자 및 이용자의 주요 특성별 경향성 차이는 대다수 두드러지지 않으나, 거주지역(도시 및 농어촌)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다. 즉, 지역별 전담기관의 분포 등에 따라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가족휴가제 인지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26.2	73.8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7.8	82.2	100.0 (1,150)
여성	31.5	68.5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18.2	81.8	100.0 (11)
30~39세	18.2	81.8	100.0 (44)
40~49세	26.7	73.3	100.0 (346)
50~59세	26.7	73.3	100.0 (1,022)
60~69세	28.5	71.5	100.0 (998)
70~79세	27.5	72.5	100.0 (366)
80세 이상	11.0	89.0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28.7	71.3	100.0 (1,944)
여성	25.4	74.6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40.4	59.6	100.0 (56)
65~69세	26.6	73.4	100.0 (124)
70~74세	24.5	75.5	100.0 (213)
75~79세	21.7	78.3	100.0 (387)
80~84세	28.0	72.0	100.0 (822)
85~89세	26.5	73.5	100.0 (826)
90세 이상	25.7	74.3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9.4	70.6	100.0 (982)
중소도시	27.9	72.1	100.0 (951)
농어촌	21.7	78.3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5.9	74.1	100.0 (112)
2등급	25.8	74.2	100.0 (292)
3등급	29.7	70.3	100.0 (836)
4등급	26.4	73.6	100.0 (1,423)
5등급	15.6	84.4	100.0 (301)
인지지원등급	46.7	53.3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26.5	73.5	100.0 (2,382)
시설급여	25.2	74.8	100.0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4-1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4.1	85.9	100.0 (781)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1.7	88.3	100.0 (205)
여성	14.9	85.1	100.0 (576)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100.0 (2)[2)]
30~39세	66.7	33.3	100.0 (9)[2)]
40~49세	13.0	87.0	100.0 (92)
50~59세	12.5	87.5	100.0 (273)
60~69세	16.2	83.8	100.0 (284)
70~79세	11.0	89.0	100.0 (100)
80세 이상	4.8	95.2	100.0 (21)
이용자의 성별			
남성	11.7	88.3	100.0 (222)
여성	15.0	85.0	100.0 (55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7.4	82.6	100.0 (23)
65~69세	18.2	81.8	100.0 (33)
70~74세	5.8	94.2	100.0 (52)
75~79세	13.1	86.9	100.0 (84)
80~84세	13.9	86.1	100.0 (230)
85~89세	16.4	83.6	100.0 (219)
90세 이상	12.8	87.2	100.0 (14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5.2	84.8	100.0 (289)
중소도시	13.6	86.4	100.0 (265)
농어촌	13.7	86.3	100.0 (227)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7.2	82.8	100.0 (29)
2등급	14.7	85.3	100.0 (75)
3등급	12.5	87.5	100.0 (248)
4등급	15.2	84.8	100.0 (375)
5등급	10.6	89.4	100.0 (47)
인지지원등급	28.6	71.4	100.0 (7)[2)]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4.3	85.7	100.0 (631)
시설급여	13.4	86.6	100.0 (149)

주: 1)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7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자를 확인한 결과, 자녀 중 한 명 33.7%, 자녀의 공동부담 24.0%, 본인부담금 면제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약 1/2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단독, 공동)이 남성 응답자가 62.3%로 여성 응답자 54.8%에 비해 높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66.9%, 40대 65.3%, 60대 61.7% 등의 순으로,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높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단독, 공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63.0%가 이에 해당한 반면 남성 이용자 가족은 42.4%로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 역시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18.3%로 여성 이용자 가족(12.2%)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진다. 이용자가 90세 이상인 경우 동 비율은 74.0%이며, 85~89세 63.9%, 80~84세 59.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농어촌 이용자 가족에게서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65.9%로 중소도시(55.8%), 대도시(50.7%)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2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64.2%, 5등급 59.0%, 3등급 5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1등급 이용자의 가족은 5.4%인 반면 5등급은 17.0%이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자녀 부담 비율이 66.3%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55.5%)에 비해 높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1〉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면제	이용자	배우자	자녀 중 한 명	자녀들 공동	이용자 및 가족	기타[2)]	계(명)	
전체	15.7	13.8	9.6	33.7	24.0	2.7	0.5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4.1	10.5	10.3	39.2	23.1	2.5	0.3	100.0	(1,150)
여성	16.7	15.9	9.3	30.2	24.6	2.7	0.7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7.3	0.0	9.1	18.2	36.4	9.1	0.0	100.0	(11)
30~39세	37.8	6.7	0.0	17.8	15.6	13.3	8.9	100.0	(44)
40~49세	16.2	14.8	2.3	35.7	29.6	0.9	0.6	100.0	(346)
50~59세	13.3	14.0	2.4	37.3	29.6	2.9	0.4	100.0	(1,022)
60~69세	14.9	14.1	6.4	38.0	23.7	2.4	0.4	100.0	(998)
70~79세	21.0	14.2	29.0	23.2	10.4	1.9	0.3	100.0	(366)
80세 이상	15.3	11.1	43.2	13.2	12.6	4.7	0.0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15.5	18.3	20.1	23.2	19.2	2.9	0.8	100.0	(1,944)
여성	15.8	12.2	6.0	37.3	25.7	2.6	0.4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5.1	8.8	40.4	8.8	1.8	3.5	1.8	100.0	(56)
65~69세	27.2	11.2	32.0	17.6	8.0	3.2	0.8	100.0	(124)
70~74세	25.5	20.8	20.3	15.6	15.6	1.4	0.9	100.0	(213)
75~79세	17.1	10.9	19.9	28.2	21.7	2.3	0.0	100.0	(387)
80~84세	14.3	14.5	8.1	34.8	24.3	3.3	0.7	100.0	(822)
85~89세	13.8	16.0	3.4	35.7	28.2	2.5	0.4	100.0	(826)
90세 이상	11.5	10.0	1.6	46.1	27.9	2.4	0.5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9.7	14.9	11.4	32.8	17.9	2.5	0.8	100.0	(982)
중소도시	14.7	14.8	11.7	32.1	23.7	2.5	0.4	100.0	(951)
농어촌	12.8	12.0	6.1	36.0	29.9	2.9	0.3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6.2	5.4	23.4	27.9	25.2	1.8	0.0	100.0	(112)
2등급	14.8	4.8	12.0	35.7	28.5	3.1	1.0	100.0	(292)
3등급	17.2	11.0	9.7	35.0	23.0	3.2	0.8	100.0	(836)
4등급	15.8	17.2	8.5	31.4	24.8	2.1	0.2	100.0	(1,423)
5등급	12.7	17.0	7.7	40.0	19.0	3.3	0.3	100.0	(301)
인지지원등급	6.7	20.0	0.0	46.7	20.0	0.0	6.7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5.1	15.7	11.2	35.0	20.5	2.0	0.5	100.0	(2,382)
시설급여	18.1	6.4	3.5	28.4	37.9	5.4	0.3	100.0	(595)
2019년	18.1	13.4	10.0	33.3	24.4	-	1.1	100.0	(3,79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에는 '모르겠음' 포함됨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교육 또는 정보에 대해 파악한 결과(복수응답), 교육 또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46.3%, 필요시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32.0%, 정기적인 가족 상담 24.8%, 노인 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또는 정보 18.4%, 노인의 안전생활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1/2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정보 구득 또는 교육 경험이 부재하고, 수급자 상태 또는 가족 상담과 같은 한정적 수준의 교육(정보)에 국한되어 그 내용이 다양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또는 정보 구득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교육 또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약 1/2을 차지하며,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30.5%, 가족 상담 22.5% 등의 응답에 집중된 반면 여성 응답자는 교육 또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1.4%,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32.9%, 가족 상담 26.2%, 인권보호 교육 23.1%, 안전생활 21.6%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경향성과 유사하나, 80세 이상 제외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환자 돌봄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 구득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30대 14.7%, 70대 18.0%).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이 여성 이용자 가족에 비해 전 항목에서 교육 또는 정보를 구득한 비율이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구득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동 비율이 24.3%인 반면, 90세 이상인 경우에는 34.6%이다. 고령의 이용자일수록 건강 및 기능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 이용자의 가족인 경우, 타 등급에 비해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 구득율이 40.1%로 가장 높다(인지지원등급 제외). 앞서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증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능상태 확인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급여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에게서 수급자 상태에 대한 정보(39.9%), 가족 상담(32.8%) 경험률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보다 높다(30.0%, 22.8%).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원활한 접촉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정보 구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나 정보

(단위: %, 명)

특성	정기적 가족 상담	수급자 상태 정보	노인 인권 보호	안전 교육	가족관계 증진교육	치매 교육	없음	계(명)
전체	24.8	32.0	18.4	17.5	8.5	15.0	46.3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2.5	30.5	10.9	10.9	5.0	9.1	54.0	(1,150)
여성	26.2	32.9	23.1	21.6	10.8	18.7	41.4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3.8	31.1	0.0	0.0	0.0	0.0	68.9	(11)
30~39세	34.0	34.1	19.1	13.4	16.8	14.7	41.1	(44)
40~49세	24.1	33.1	19.7	15.0	6.2	14.3	50.3	(346)
50~59세	27.4	34.8	16.8	16.1	8.6	13.8	46.4	(1,022)
60~69세	25.3	33.5	19.8	20.1	9.8	17.0	42.2	(998)
70~79세	19.7	25.0	22.5	19.8	7.2	18.0	45.9	(366)
80세 이상	17.9	19.9	10.4	13.1	7.1	7.1	59.8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25.5	31.7	22.8	22.3	8.9	18.1	42.9	(1,944)
여성	24.5	32.1	16.9	15.8	8.4	13.9	47.5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9.0	24.3	31.4	23.2	14.2	25.4	44.6	(56)
65~69세	19.3	24.8	19.1	24.8	9.6	19.3	45.1	(124)
70~74세	26.3	26.4	13.4	10.7	6.8	11.4	55.3	(213)
75~79세	24.2	31.0	15.8	15.4	8.3	14.8	47.0	(387)
80~84세	23.3	31.4	18.3	17.0	8.9	15.8	47.4	(822)
85~89세	26.5	34.4	19.7	18.7	8.7	13.7	45.1	(826)
90세 이상	25.1	34.6	19.0	18.1	7.8	15.2	42.7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4.5	29.7	20.6	20.2	9.3	17.0	44.1	(982)
중소도시	22.3	28.9	19.2	18.6	8.1	14.6	47.5	(951)
농어촌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3.0	40.1	17.8	21.7	9.3	16.4	46.8	(112)
2등급	22.3	31.2	16.1	13.4	6.5	11.7	47.6	(292)
3등급	26.0	33.2	22.4	22.4	10.5	15.3	44.1	(836)
4등급	25.5	31.3	18.2	16.9	8.6	15.8	45.9	(1,423)
5등급	21.8	29.3	11.5	9.2	4.1	13.1	52.4	(301)
인지지원등급	14.9	44.3	9.2	9.2	9.2	9.2	50.8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22.8	30.0	18.8	18.5	9.3	15.9	46.9	(2,382)
시설급여	32.8	39.9	16.7	13.3	5.5	11.3	43.8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이며, 중복응답임
2)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매우)만족하며, 보통 21.3%, (매우)불만족은 2.1%에 그쳤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비교적 연령대가 낮을수록(30세 미만 제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는 80.7%가 (매우)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79세는 동 비율이 71.7%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 중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만족율이 78.2%로 여성 이용자 가족(75.9%)에 근소히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경향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85~89세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만족율이 80.1%로 가장 높다. 지역별 차이 역시 크지 않으며,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76.7%, 77.7%)에 비해 농어촌 이용자 가족의 만족율이 75.3%로 약간 낮다. 이용자의 등급과 관련해서는 전체 등급에서 전반적인 만족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급여유형별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율(77.6%)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율(76.2%)에 비해 근소히 높다.

〈표 4-1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나 정보의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12.2	64.4	21.3	1.7	0.4	3.9	100.0	(1,600)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1.3	65.4	21.0	2.3	0.0	3.9	100.0	(529)
여성	12.6	63.8	21.5	1.5	0.7	3.9	100.0	(1,072)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33.3	66.7	0.0	0.0	3.5	100.0	(3)
30~39세	19.2	61.5	19.2	0.0	0.0	3.9	100.0	(26)
40~49세	12.8	62.8	23.8	0.6	0.0	3.9	100.0	(172)
50~59세	13.7	65.7	19.3	1.3	0.0	3.9	100.0	(548)
60~69세	9.9	65.9	21.6	1.4	1.2	3.8	100.0	(578)
70~79세	11.1	60.6	23.2	5.1	0.0	3.8	100.0	(198)
80세 이상	18.4	56.6	22.4	2.6	0.0	3.9	100.0	(76)
이용자의 성별								
남성	11.1	67.1	17.7	2.7	1.4	3.8	100.0	(441)
여성	12.6	63.3	22.7	1.4	0.1	3.9	100.0	(1,160)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2.5	53.1	28.1	6.3	0.0	3.7	100.0	(32)
65~69세	8.7	63.8	21.7	0.0	5.8	3.7	100.0	(69)
70~74세	8.3	59.4	29.2	2.1	1.0	3.7	100.0	(96)
75~79세	15.1	61.5	22.9	0.5	0.0	3.9	100.0	(205)
80~84세	11.8	62.7	21.9	3.5	0.2	3.8	100.0	(434)
85~89세	11.2	68.9	18.7	1.1	0.0	3.9	100.0	(454)
90세 이상	14.3	64.0	20.4	1.0	0.3	3.9	100.0	(31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2.4	64.3	20.2	2.6	0.5	3.9	100.0	(549)
중소도시	12.8	64.9	20.2	1.6	0.4	3.9	100.0	(499)
농어촌	11.4	63.9	23.4	0.9	0.4	3.9	100.0	(551)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7	63.3	20.0	5.0	0.0	3.8	100.0	(60)
2등급	16.4	59.9	20.4	3.3	0.0	3.9	100.0	(152)
3등급	12.7	64.8	20.4	1.3	0.9	3.9	100.0	(466)
4등급	11.2	64.9	22.3	1.6	0.1	3.9	100.0	(771)
5등급	11.8	65.3	20.8	1.4	0.7	3.9	100.0	(144)
인지지원등급	14.3	71.4	14.3	0.0	0.0	3.9	100.0	(7)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1.5	64.7	21.3	2.0	0.4	3.9	100.0	(1,265)
시설급여	14.7	62.9	21.3	0.9	0.3	3.9	100.0	(33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 중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교육 및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600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희망하는 교육 또는 정보에 대해 파악한 결과,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정보가 없다는 응답이 38.0%, 치매 환자 돌봄 교육 22.3%, 가족관계 개선 관련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자원과 관련한 정보가 각각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및 정보를 중심으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에게서 치매 환자 돌봄 교육(24.6%) 및 가족관계 개선 관련 교육(15.5%)의 욕구가 남성 응답자보다 높다(18.5%, 11.6%).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30세 미만 제외)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정보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노인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관련한 정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즉, 이용자 가족의 연령대가 적을수록 기본적인 돌봄 제공과 관련한 정보 이외 노인인권, 지역사회 활용 가능 자원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 구득의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자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적다. 다만 연령대별로 이용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지역사회 연계 자원과 관련한 정보를(21.1%), 65~69세인 경우 가족관계 개선 관련 교육(16.1%)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치매환자 돌봄과 관련한 교육 욕구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등급별로 희망하는 교육(정보)내용에 있어서,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욕창 예방 및 낙상 방지 등 안전생활 교육이 15.3%로 가장 높은 반면, 타 등급 이용자 가족은 치매환자 돌봄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 등급별 차이가 있다. 중증 이용자의 경우, 기능상태 악화에 따라 와상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과 비교하여 치매환자 돌봄(23.1%), 지역사회 자원 연계(14.4%)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시설급여: 18.8%, 12.2%).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교육(7.2%)에 대한 욕구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급여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보 및 교육내용 등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4-1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향후 희망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정보

(단위: %, 명)

특성	가족관계 교육	치매 교육	안전 교육	노인인권 보호	지역사회 자원	없음	계(명)	
전체	14.0	22.3	8.7	3.1	14.0	38.0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1.6	18.5	8.5	3.2	13.7	44.5	100.0	(1,150)
여성	15.5	24.6	8.8	3.1	14.2	33.8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8.2	0.0	9.1	18.2	54.5	100.0	(11)
30~39세	8.9	11.1	11.1	8.9	22.2	37.8	100.0	(44)
40~49세	17.3	22.5	8.7	4.6	12.4	34.4	100.0	(346)
50~59세	13.1	25.1	8.9	2.8	15.5	34.5	100.0	(1,022)
60~69세	14.3	23.5	8.6	3.2	13.7	36.6	100.0	(998)
70~79세	14.4	16.6	7.6	2.2	12.8	46.3	100.0	(366)
80세 이상	11.1	13.7	10.0	2.1	10.5	52.6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14.4	19.2	10.5	1.8	11.3	42.9	100.0	(1,944)
여성	13.8	23.3	8.1	3.6	14.9	36.2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8.8	17.5	8.8	7.0	21.1	36.8	100.0	(56)
65~69세	16.1	14.5	16.1	1.6	12.9	38.7	100.0	(124)
70~74세	14.6	15.0	11.7	5.6	13.6	39.4	100.0	(213)
75~79세	14.2	24.1	8.3	2.1	10.1	41.2	100.0	(387)
80~84세	11.8	23.5	8.4	2.8	16.2	37.3	100.0	(822)
85~89세	14.6	25.2	8.9	3.1	13.5	34.6	100.0	(826)
90세 이상	15.7	19.9	6.0	3.5	13.7	41.2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3.2	23.4	8.7	2.2	13.9	38.5	100.0	(982)
중소도시	16.1	22.1	7.9	3.2	13.5	37.3	100.0	(951)
농어촌	12.7	21.4	9.4	4.0	14.6	37.9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1.7	14.4	15.3	7.2	10.8	40.5	100.0	(112)
2등급	11.7	20.3	11.3	3.8	12.4	40.5	100.0	(292)
3등급	13.3	20.9	8.6	3.1	15.6	38.5	100.0	(836)
4등급	14.7	22.6	8.2	3.0	13.8	37.8	100.0	(1,423)
5등급	15.6	28.6	6.3	2.3	13.3	33.9	100.0	(301)
인지지원등급	13.3	26.7	6.7	6.7	13.3	33.3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13.9	23.1	9.4	2.1	14.4	37.0	100.0	(2,382)
시설급여	14.1	18.8	6.0	7.2	12.2	41.6	100.0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3. 만족도

장기요양급여의 궁극적 목적은 수급자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있다.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용자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4가지 차원(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사회 참여 활동 향상)에 대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89.1%,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 86.7%, 사회 참여 활동 향상 78.5%,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78.0% 순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체적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는 응답이 더 높다(30대 97.7%, 70대 83.6%).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90.2%로 남성 이용자 가족(85.7%)에 비해 근소히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으나, 이용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율이 93.1%로 타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농어촌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90.6%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근소히 높다(87.4%, 89.1%). 이용자의 등급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며, 급여 유형에 따라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율이 94.6%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87.6%)에 비해 높다. 시설입소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점에서 신체수발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표 4-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단위:%, 명)

특성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43.9	45.2	9.1	1.5	0.3	4.3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5.3	44.6	9.1	0.9	0.3	4.3	100.0	(1,150)
여성	43.1	45.5	9.2	1.9	0.4	4.3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0.0	70.0	10.0	0.0	0.0	4.1	100.0	(11)
30~39세	50.0	47.7	2.3	0.0	0.0	4.5	100.0	(44)
40~49세	45.7	45.1	7.8	1.2	0.3	4.4	100.0	(346)
50~59세	46.6	43.9	7.9	1.1	0.5	4.4	100.0	(1,022)
60~69세	41.2	47.8	9.0	1.8	0.2	4.3	100.0	(998)
70~79세	39.3	44.3	14.2	1.6	0.5	4.2	100.0	(366)
80세 이상	48.7	38.2	10.5	2.6	0.0	4.3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40.6	45.1	11.9	2.3	0.0	4.2	100.0	(1,944)
여성	45.0	45.2	8.2	1.2	0.5	4.3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4.5	58.6	6.9	0.0	0.0	4.3	100.0	(56)
65~69세	39.5	47.6	8.1	4.8	0.0	4.2	100.0	(124)
70~74세	39.2	49.5	9.9	0.9	0.5	4.3	100.0	(213)
75~79세	42.0	40.9	14.8	1.8	0.5	4.2	100.0	(387)
80~84세	44.6	45.1	9.5	0.9	0.0	4.3	100.0	(822)
85~89세	47.0	43.1	8.1	1.6	0.2	4.4	100.0	(826)
90세 이상	43.5	47.8	6.2	1.6	0.9	4.3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2.8	44.6	11.2	1.1	0.3	4.3	100.0	(982)
중소도시	44.3	44.8	8.2	2.1	0.6	4.3	100.0	(951)
농어촌	44.5	46.1	8.0	1.3	0.1	4.3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2.0	39.3	14.3	3.6	0.9	4.2	100.0	(112)
2등급	44.5	46.2	6.8	2.1	0.3	4.3	100.0	(292)
3등급	41.2	46.0	10.4	1.6	0.7	4.3	100.0	(836)
4등급	44.5	45.5	8.4	1.3	0.2	4.3	100.0	(1,423)
5등급	48.3	41.7	9.3	0.7	0.0	4.4	100.0	(301)
인지지원등급	35.7	57.1	7.1	0.0	0.0	4.3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42.2	45.4	10.1	1.8	0.4	4.3	100.0	(2,382)
시설급여	50.6	44.0	5.2	0.2	0.0	4.5	100.0	(595)
2019년	51.8	41.7	5.4	1.0	0.1	-	100.0	(3,79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평균은 1(전혀 도움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한 값임. 2019년에는 동 수치 제시하지 않음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비교적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신적 부양 부담 역시 완화된다는 응답률이 높다. 30대의 경우 동 응답이 97.8%에 달하며, 7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81.5% 수준이다.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87.8%로 남성 이용자 가족(83.3%)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서는 80세를 전후로 차이가 있다. 이용자가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65세 미만: 91.2%, 75~79세: 80.3%),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80~84세: 86.9%, 90세 이상: 89.8%) 가족의 정신적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는 응답률이 높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농어촌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88.3%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약간 높다(85.4%, 86.0%).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은 적은 편이다. 다만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정신적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는 응답이 82.2%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발견된 결과로, 중증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급여 유형에 따라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율이 92.5%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85.3%)에 비해 높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과 비교하여 상시적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정신적 부양부담 완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42.2	44.5	10.4	2.6	0.3	4.3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3.9	43.7	10.3	1.9	0.3	4.3	100.0	(1,150)
여성	41.0	45.0	10.6	3.1	0.3	4.2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7.3	63.6	9.1	0.0	0.0	4.2	100.0	(11)
30~39세	48.9	48.9	2.2	0.0	0.0	4.5	100.0	(44)
40~49세	44.2	43.4	9.8	2.3	0.3	4.3	100.0	(346)
50~59세	44.5	44.4	8.7	2.1	0.3	4.3	100.0	(1,022)
60~69세	40.2	46.4	10.3	2.9	0.2	4.2	100.0	(998)
70~79세	38.3	43.2	15.3	2.7	0.5	4.2	100.0	(366)
80세 이상	43.4	37.6	14.3	4.8	0.0	4.2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8.6	44.7	13.5	3.2	0.0	4.2	100.0	(1,944)
여성	43.4	44.4	9.4	2.4	0.4	4.3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6.8	54.4	8.8	0.0	0.0	4.3	100.0	(56)
65~69세	37.9	47.6	8.1	6.5	0.0	4.2	100.0	(124)
70~74세	36.6	47.4	13.1	2.3	0.5	4.2	100.0	(213)
75~79세	38.6	41.7	15.0	4.1	0.5	4.1	100.0	(387)
80~84세	42.3	44.6	11.1	2.1	0.0	4.3	100.0	(822)
85~89세	44.9	43.0	9.3	2.5	0.2	4.3	100.0	(826)
90세 이상	44.3	45.5	7.7	2.2	0.4	4.3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2.1	43.3	12.7	1.5	0.3	4.3	100.0	(982)
중소도시	43.3	42.7	9.6	4.0	0.4	4.2	100.0	(951)
농어촌	41.1	47.2	9.1	2.5	0.1	4.3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3.8	38.4	9.8	7.1	0.9	4.2	100.0	(112)
2등급	44.5	42.8	9.9	2.7	0.0	4.3	100.0	(292)
3등급	39.8	43.8	13.3	2.6	0.5	4.2	100.0	(836)
4등급	42.3	45.7	9.3	2.5	0.2	4.3	100.0	(1,423)
5등급	45.5	44.5	8.6	1.3	0.0	4.3	100.0	(301)
인지지원등급	42.9	50.0	7.1	0.0	0.0	4.3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40.5	44.8	11.3	3.1	0.3	4.2	100.0	(2,382)
시설급여	49.0	43.5	6.9	0.7	0.0	4.4	100.0	(595)
2019년	51.4	40.9	6.4	1.2	0.2	-	100.0	(3,79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평균은 1(전혀 도움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한 값임. 2019년에는 동 수치 제시하지 않음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전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다. 30대의 경우 동 응답이 83.8%인 반면, 50대 78.6%, 80세 이상은 70.7%로 나타난다.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와 마찬가지로 80세를 전후로 U자형 결과를 나타낸다. 즉,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는 응답이 80세까지 점차 낮아지다 80세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농어촌 이용자 가족이 79.6%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근소하게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인지지원등급 제외)로는 대체로 인정등급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는 비율이 낮다. 즉, 5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78.7%인 반면 1등급 이용자 가족은 70.8% 수준이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액 역시 높아질 뿐 아니라 급여 이외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급여 유형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분석결과와 달리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78.2%,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77.3%가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4-1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35.6	42.4	17.1	4.3	0.6	4.1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5.9	41.6	18.1	3.8	0.6	4.1	100.0	(1,150)
여성	35.4	42.9	16.4	4.6	0.7	4.1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40.0	50.0	10.0	0.0	0.0	4.3	100.0	(11)
30~39세	41.9	41.9	14.0	2.3	0.0	4.2	100.0	(44)
40~49세	38.2	40.2	17.1	4.0	0.6	4.1	100.0	(346)
50~59세	36.4	42.2	16.4	4.3	0.7	4.1	100.0	(1,022)
60~69세	33.7	45.3	16.3	4.1	0.5	4.1	100.0	(998)
70~79세	32.5	43.2	18.3	4.6	1.4	4.0	100.0	(366)
80세 이상	40.3	30.4	22.5	6.8	0.0	4.1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4.9	43.8	16.6	4.5	0.1	4.1	100.0	(1,944)
여성	35.8	41.9	17.2	4.3	0.8	4.1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1.0	55.2	10.3	3.4	0.0	4.1	100.0	(56)
65~69세	35.5	43.5	12.1	8.1	0.8	4.1	100.0	(124)
70~74세	31.9	41.8	19.7	5.2	1.4	4.0	100.0	(213)
75~79세	32.1	42.0	20.2	5.4	0.3	4.0	100.0	(387)
80~84세	36.0	41.6	19.3	3.2	0.0	4.1	100.0	(822)
85~89세	38.1	41.7	14.9	4.8	0.5	4.1	100.0	(826)
90세 이상	35.5	43.7	15.7	3.5	1.6	4.1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6.7	42.3	16.7	3.9	0.5	4.1	100.0	(982)
중소도시	34.5	40.6	18.1	6.2	0.6	4.0	100.0	(951)
농어촌	35.5	44.1	16.5	3.1	0.9	4.1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4.5	36.3	21.2	7.1	0.9	4.0	100.0	(112)
2등급	34.6	42.1	17.8	5.5	0.0	4.1	100.0	(292)
3등급	33.3	43.5	17.6	4.4	1.1	4.0	100.0	(836)
4등급	37.2	42.2	15.9	4.1	0.6	4.1	100.0	(1,423)
5등급	35.7	43.0	18.7	2.7	0.0	4.1	100.0	(301)
인지지원등급	31.3	43.8	18.8	6.3	0.0	4.0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35.0	43.2	17.0	4.1	0.7	4.1	100.0	(2,382)
시설급여	38.0	39.3	17.0	5.4	0.3	4.1	100.0	(595)
2019년	42.5	38.3	14.2	4.1	0.9	-	100.0	(3,79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평균은 1(전혀 도움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한 값임. 2019년에는 동 수치 제시하지 않음

사회 참여 활동 양상과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에게서 (매우)도움된다는 응답이 81.1%로 여성 응답자(76.9%)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율이 높다. 이는 이전 분석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이며, 30대의 경우 동 응답이 86.3%인 반면, 50대 82.1%, 80세 이상은 66.3% 수준이다.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80.3%로 남성 이용자 가족에 비해 73.5%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연령대보다는 중증도, 급여유형 등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 이용자 가족은 81.0%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77.1%, 77.5%)에 비해 긍정적 응답율이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3~5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율이 높다. 즉, 3등급 74.0%, 4등급 80.2%, 5등급 84.4% 순이다. 즉, 비교적 신체·인지기능이 양호할수록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가족의 사회참여 활동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 유형과 관련해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긍정적 응답율이 87.5%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76.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율과 마찬가지로, 시설입소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부담이 적은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동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가족의 사회 참여 활동 향상

(단위: %, 명)

특성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36.7	41.8	15.7	4.3	1.4	4.1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8.2	42.9	14.3	3.7	1.0	4.1	100.0	(1,150)
여성	35.8	41.1	16.6	4.6	1.8	4.1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0.0	50.0	30.0	0.0	0.0	3.9	100.0	(11)
30~39세	47.7	38.6	9.1	4.5	0.0	4.3	100.0	(44)
40~49세	39.0	43.4	12.4	3.5	1.7	4.2	100.0	(346)
50~59세	39.4	42.7	13.8	2.8	1.3	4.2	100.0	(1,022)
60~69세	34.4	43.8	15.3	5.0	1.4	4.1	100.0	(998)
70~79세	32.7	39.0	20.7	4.6	3.0	3.9	100.0	(366)
80세 이상	36.3	30.0	24.7	8.9	0.0	3.9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3.9	39.6	20.0	4.5	2.1	4.0	100.0	(1,944)
여성	37.7	42.6	14.2	4.2	1.2	4.1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3.2	53.6	14.3	8.9	0.0	3.9	100.0	(56)
65~69세	29.8	36.3	21.8	10.5	1.6	3.8	100.0	(124)
70~74세	34.7	42.7	14.6	3.3	4.7	4.0	100.0	(213)
75~79세	33.6	38.8	19.9	5.7	2.1	4.0	100.0	(387)
80~84세	37.8	42.1	16.0	3.3	0.9	4.1	100.0	(822)
85~89세	39.3	41.3	14.3	4.1	1.0	4.1	100.0	(826)
90세 이상	37.3	43.9	13.7	3.6	1.5	4.1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6.2	40.9	17.1	4.5	1.3	4.1	100.0	(982)
중소도시	37.9	39.6	14.7	5.7	2.1	4.1	100.0	(951)
농어촌	36.2	44.8	15.2	2.8	1.0	4.1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0.4	38.4	18.8	8.0	4.5	3.8	100.0	(112)
2등급	38.5	42.6	11.3	6.5	1.0	4.1	100.0	(292)
3등급	34.5	39.5	19.0	4.7	2.3	4.0	100.0	(836)
4등급	37.6	42.6	14.8	3.9	1.1	4.1	100.0	(1,423)
5등급	39.7	44.7	13.7	2.0	0.0	4.2	100.0	(301)
인지지원등급	33.3	53.3	13.3	0.0	0.0	4.2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35.2	41.2	16.7	5.2	1.8	4.0	100.0	(2,382)
시설급여	43.0	44.5	11.9	0.7	0.0	4.3	100.0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평균은 1(전혀 도움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한 값임. 2019년에는 동 수치 제시하지 않음
3) 2022년 신규 문항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86.2%는 현재의 제도에 (매우)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용자 가족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과 맞물리는 결과라 하겠다.

제도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여성의 만족도가 86.8%로 남성(85.2%)에 비해 근소히 높다. 가족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0대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86.8%, 80세 이상은 81.7%로 소폭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자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6.3%로 남성 이용자 가족(85.6%)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80.7%로 나타났다. 현 제도에서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환으로 인정된 항목에 한해 제도권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연령대가 체감하는 제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6.7%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86.4%, 대도시 85.4% 순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5등급 이용자 가족(88.7%), 1등급(87.4%), 2등급(86.3%)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5등급 신설과 함께 치매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1·2등급 중증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도 이용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급여유형에 따라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9.4%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의 만족도(85.3%)보다 높다. 급여유형에 따른 경향성은 앞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한 문항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표 4-19〉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9.0	57.2	11.7	1.9	0.3	4.1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9.6	55.6	12.4	2.2	0.3	4.1	100.0	(1,150)
여성	28.6	58.2	11.2	1.7	0.3	4.1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90.9	9.1	0.0	0.0	3.9	100.0	(11)
30~39세	38.6	61.4	0.0	0.0	0.0	4.4	100.0	(44)
40~49세	26.9	61.8	9.8	1.4	0.0	4.1	100.0	(346)
50~59세	30.5	56.3	11.4	1.5	0.3	4.2	100.0	(1,022)
60~69세	28.1	58.4	11.4	1.9	0.2	4.1	100.0	(998)
70~79세	26.9	54.3	15.2	3.3	0.3	4.1	100.0	(366)
80세 이상	32.5	49.2	13.6	3.7	1.0	4.1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28.5	57.1	12.7	1.6	0.1	4.1	100.0	(1,944)
여성	29.1	57.2	11.3	2.0	0.4	4.1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6.3	54.4	15.8	3.5	0.0	4.1	100.0	(56)
65~69세	22.6	65.3	10.5	1.6	0.0	4.1	100.0	(124)
70~74세	26.8	55.4	17.4	0.5	0.0	4.1	100.0	(213)
75~79세	26.4	57.9	13.2	2.6	0.0	4.1	100.0	(387)
80~84세	29.7	57.1	11.2	1.2	0.7	4.1	100.0	(822)
85~89세	32.2	55.3	10.2	2.3	0.1	4.2	100.0	(826)
90세 이상	27.5	58.7	11.3	2.4	0.2	4.1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6.9	58.5	12.6	1.5	0.5	4.1	100.0	(982)
중소도시	31.4	55.0	10.5	2.7	0.3	4.2	100.0	(951)
농어촌	28.8	57.9	11.8	1.5	0.0	4.1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6.1	61.3	9.0	1.8	1.8	4.1	100.0	(112)
2등급	30.6	55.7	11.3	2.4	0.0	4.1	100.0	(292)
3등급	28.3	57.6	11.7	2.0	0.4	4.1	100.0	(836)
4등급	28.6	57.1	12.2	1.9	0.2	4.1	100.0	(1,423)
5등급	32.9	55.8	10.3	1.0	0.0	4.2	100.0	(301)
인지지원등급	21.4	64.3	14.3	0.0	0.0	4.1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28.7	56.6	12.3	2.1	0.3	4.1	100.0	(2,382)
시설급여	29.9	59.5	9.2	1.0	0.3	4.2	100.0	(595)
2019년	35.0	49.1	12.2	3.4	0.3	-	100.0	(3,794)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평균은 1(전혀 도움 되지 않음)~ 5(매우 도움)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한 값임. 2019년에는 동 수치 제시하지 않음

4. 학대 인지(목격) 경험 및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지난 1년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가 부적절한 경험(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측면 등)을 한 것을 인지(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총 6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 기피 2.0%, 적절한 돌봄이나 도움 미제공 1.9%,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0.5%, 밀치거나 때림 0.3%, 성희롱적 발언 등 0.2%, 금전 갈취 0.1% 순이다.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 적절한 돌봄이나 도움 미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 유효 응답수가 매우 적어(10명 미만) 세부 특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의 통계적 실효성이 낮으므로 추가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한 것을 목격 또는 인지한 적이 있다는 응답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연령대 및 등급에 따른 응답차가 있다. 즉, 인지기능 상태 등에 따라 비교적 가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 또는 3~5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동 응답 비율이 약간 높다.

이용자에게 적절한 돌봄이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 또는 인지한 적이 있다는 응답과 관련하여, 응답자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다. 다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65세 미만 이용자의 가족(4.3%), 5등급 이용자의 가족(3.1%)에게서 상대적으로 동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기 두 응답 역시 사례수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4-20〉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가 겪은 부적절한 경험 목격(인지) 여부

(단위: %, 명)

특성	의견 무시	적절한 돌봄 미제공	모욕적 비난	성희롱 등[2)]	밀치거나 때림[2)]	금전 갈취 등[2)]
전체	2.0 (54)	1.9 (50)	0.5 (14)	0.2 (4)	0.3 (8)	0.1 (1)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4	1.4	0.4	0.3	0.1	0.1
여성	2.4	2.2	0.6	0.1	0.1	0.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9.1	0.0	0.0	0.0	0.0	0.0
30~39세	0.0	2.4	0.0	0.0	0.0	0.0
40~49세	0.3	1.9	0.3	0.3	0.6	0.3
50~59세	2.1	1.3	0.5	0.0	0.2	0.1
60~69세	3.0	2.8	0.6	0.3	0.2	0.0
70~79세	0.4	1.1	0.7	0.0	0.7	0.0
80세 이상	2.7	1.7	0.0	0.0	0.0	0.0
이용자의 성별						
남성	1.6	1.9	0.2	0.2	0.2	0.0
여성	2.2	1.9	0.6	0.2	0.3	0.1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4.3	4.3	0.0	0.0	0.0	0.0
65~69세	0.9	0.9	0.0	0.0	0.0	0.0
70~74세	2.9	4.0	0.6	0.6	0.6	0.0
75~79세	0.3	2.7	0.3	0.0	0.0	0.3
80~84세	2.1	1.1	0.7	0.1	0.4	0.1
85~89세	3.0	2.4	0.4	0.3	0.1	0.0
90세 이상	1.0	1.2	0.8	0.2	0.6	0.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8	1.5	0.5	0.0	0.4	0.0
중소도시	2.5	2.1	0.7	0.4	0.4	0.1
농어촌	1.9	1.8	0.4	0.2	0.2	0.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0	1.0	1.0	1.0	1.0	0.0
2등급	1.5	1.8	0.4	0.0	0.4	0.4
3등급	2.3	2.5	0.6	0.3	0.4	0.1
4등급	2.1	1.3	0.5	0.2	0.2	0.0
5등급	2.1	3.1	0.7	0.0	0.0	0.0
인지지원등급	0.0	0.0	0.0	0.0	0.0	0.0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2.0	1.9	0.5	0.1	0.2	0.0
시설급여	2.0	1.7	0.8	0.3	0.7	0.3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316명을 제외한 2,662명의 자료중 목격(인지) 경험한 비율을 의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며, 세부항목별 분석은 제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를 돌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파악한 결과,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48.4%, 돌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증가 23.5%,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18.8%, 돌봄 비용 증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돌봄 부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를 지적한 응답이 26.7%로 남성 응답자(18.4%)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응답차는 크지 않은 편이나, 40~50대에서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보고하였다(20.3%, 21.3%).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돌봄 부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31.6%),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의 경우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21.7%)이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65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9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향성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경우 스트레스 증가(29.9%), 돌봄 비용 증가(5.2%)에 대한 응답이 중소도시, 농어촌 이용자 가족의 응답보다 높다. 이용자의 등급과 관련해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31.5%로 5등급 이용자 가족(56.0%)에 비해 24.5% 낮게 나타났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볼 때,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27.9%), 돌봄 스트레스 증가(26.1%), 돌봄 비용 증가(7.2%)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여유형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에 있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53.3%가 해당하는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28.7%로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에 따른 조치가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돌봄 스트레스 증가를(27.7%),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58.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4-2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이용자 돌봄 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가족간 갈등	스트레스 가중	수급자와 마찰	돌봄 비용 증가	자유로운 만남 제한	없음	계(명)	
전체	3.8	23.5	1.5	4.0	18.8	48.4	100.0	(2,97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4	18.4	1.4	4.7	19.7	52.4	100.0	(1,150)
여성	4.0	26.7	1.6	3.6	18.2	45.9	100.0	(1,82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36.4	0.0	18.2	9.1	36.4	100.0	(11)
30~39세	4.5	22.7	0.0	2.3	18.2	52.3	100.0	(44)
40~49세	4.6	20.9	2.9	4.1	20.3	47.2	100.0	(346)
50~59세	4.7	21.0	1.0	5.0	21.3	47.0	100.0	(1,022)
60~69세	2.9	25.5	1.6	3.2	18.6	48.2	100.0	(998)
70~79세	3.3	28.4	1.6	4.1	14.2	48.4	100.0	(366)
80세 이상	3.1	20.4	2.1	2.1	12.6	59.7	100.0	(190)
이용자의 성별								
남성	3.9	24.9	2.2	4.4	17.2	47.4	100.0	(1,944)
여성	3.7	23.0	1.4	3.9	19.3	48.7	100.0	(1,03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3	31.6	0.0	5.3	8.8	49.1	100.0	(56)
65~69세	2.4	28.5	3.3	5.7	8.1	52.0	100.0	(124)
70~74세	5.2	25.4	1.9	3.3	16.9	47.4	100.0	(213)
75~79세	4.7	29.2	2.3	5.7	15.0	43.2	100.0	(387)
80~84세	2.8	19.6	1.3	4.3	19.5	52.6	100.0	(822)
85~89세	4.1	23.6	1.0	3.7	20.6	47.0	100.0	(826)
90세 이상	4.0	22.4	1.6	2.6	21.7	47.6	100.0	(549)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0	29.9	1.7	5.2	12.9	46.3	100.0	(982)
중소도시	3.7	21.9	1.9	3.9	23.6	45.1	100.0	(951)
농어촌	3.6	18.9	1.1	3.1	19.8	53.5	100.0	(1,0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4	26.1	1.8	7.2	27.9	31.5	100.0	(112)
2등급	4.5	17.1	0.7	4.1	31.8	41.8	100.0	(292)
3등급	3.6	24.2	1.7	3.8	20.7	46.0	100.0	(836)
4등급	3.5	24.2	1.3	3.9	16.1	51.0	100.0	(1,423)
5등급	4.0	22.5	3.0	4.0	10.6	56.0	100.0	(301)
인지지원등급	6.7	26.7	6.7	6.7	6.7	46.7	100.0	(15)
이용자의 급여이용유형								
재가급여	3.8	27.7	1.8	4.4	8.9	53.3	100.0	(2,382)
시설급여	3.5	6.5	0.5	2.3	58.4	28.7	100.0	(595)

주: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2,97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제2절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본 절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2,382명)을 중심으로 돌봄 제공 및 부담 정도, 재가급여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자 돌봄 의향 및 재가급여 개선 항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돌봄 제공 및 부담 정도

지난 1년간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서비스를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신체수발 지원 측면에서 제공 횟수와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1.0%는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주 1~2회 15.1%, 월 1~3회 7.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빈번히 이용자와 가족간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3회 이상의 정서적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72.3%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남성 응답자는 68.8%로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정서적 지원 제공 차이가 나타난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86.5%로 이용자와 배우자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이용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근 1년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다.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7.1%로,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1.2%)에 비해 5.9%가 높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빈번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주3회 이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89.7%로 5등급 이용자 가족(63.3%)에 비해 26.4% 높다.

지난 1년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정서적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4.3%, 보통 26.8%, (매우) 부담된다 18.9%로 나타나 약 1/2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20.0%로 남성 응답자 16.9%에 비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빈번히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다. 단,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응답에 있어서는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61.4%로 30대(51.6%)와 비교하여 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20.6%로 여성 이용자 가족(18.4%)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응답이 42.1%로 타 연령대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응답 사례수 자체가 많지는 않으나, 이들 연령대의 가족이 체감하는 돌봄 제공 부담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도시권 이용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22.3%, 18.7%)이 농어촌 이용자의 가족(15.8%)보다 높다.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20.6%로 가장 높다. 즉, 이용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가족이 체감하는 부담정도를 시사한다.

〈표 4-22〉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단위:%,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71.0	15.1	7.4	1.9	1.7	2.9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68.8	16.7	8.2	1.6	1.4	3.3	100.0 (876)
여성	72.3	14.1	7.0	2.1	1.9	2.7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40.0	50.0	10.0	0.0	0.0	0.0	100.0 (9)[2]
30~39세	56.7	33.3	10.0	0.0	0.0	0.0	100.0 (30)
40~49세	71.5	15.0	6.7	1.9	2.6	2.2	100.0 (267)
50~59세	67.3	20.3	8.0	1.5	1.3	1.8	100.0 (799)
60~69세	69.2	14.2	10.1	1.9	1.8	2.8	100.0 (790)
70~79세	78.0	7.4	2.9	3.2	1.9	6.5	100.0 (310)
80세 이상	86.5	4.5	1.7	1.7	1.7	3.9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71.1	15.3	6.8	1.5	1.7	3.6	100.0 (647)
여성	71.0	15.0	7.7	2.0	1.7	2.6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73.8	7.1	9.5	0.0	2.4	7.1	100.0 (42)
65~69세	75.7	12.1	2.8	1.9	2.8	4.7	100.0 (107)
70~74세	77.9	7.0	5.2	3.5	2.9	3.5	100.0 (173)
75~79세	75.2	13.5	5.8	1.5	1.2	2.8	100.0 (325)
80~84세	68.2	16.5	9.3	1.3	1.3	3.4	100.0 (685)
85~89세	71.6	15.7	6.0	2.3	1.5	2.8	100.0 (649)
90세 이상	66.7	17.7	10.0	2.0	2.5	1.2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70.7	15.5	5.5	1.4	2.5	4.3	100.0 (832)
중소도시	75.2	12.1	7.3	1.2	0.7	3.6	100.0 (730)
농어촌	67.7	17.2	9.5	3.0	1.7	0.9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9.7	4.4	1.5	0.0	2.9	1.5	100.0 (69)
2등급	79.6	10.2	3.6	0.6	2.4	3.6	100.0 (166)
3등급	76.6	12.8	4.8	2.2	0.5	3.0	100.0 (623)
4등급	67.6	16.7	8.5	1.9	2.3	3.0	100.0 (1,224)
5등급	63.3	18.5	12.6	2.8	0.7	2.1	100.0 (286)
인지지원등급	78.6	7.1	14.3	0.0	0.0	0.0	100.0 (15)
2019년	72.7	14.0	8.3	1.4	1.8	1.8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3〉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의 부담 정도: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3.8	15.1	26.8	31.1	23.2	100.0	(2,313)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1	13.8	27.8	32.6	22.7	100.0	(846)
여성	4.2	15.8	26.3	30.2	23.5	100.0	(1,466)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33.3	55.6	11.1	0.0	100.0	(9)[2)]
30~39세	0.0	19.4	29.0	22.6	29.0	100.0	(31)
40~49세	4.6	16.5	27.3	31.5	20.0	100.0	(260)
50~59세	3.1	14.0	27.8	30.6	24.6	100.0	(785)
60~69세	3.8	15.5	26.3	33.1	21.3	100.0	(767)
70~79세	5.5	13.8	29.0	27.2	24.5	100.0	(290)
80세 이상	3.5	16.4	18.7	32.7	28.7	100.0	(171)
이용자의 성별							
남성	3.4	17.2	26.8	32.9	19.7	100.0	(623)
여성	4.0	14.4	26.7	30.4	24.5	100.0	(1,690)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5.8	26.3	26.3	10.5	21.1	100.0	(38)
65~69세	2.9	11.8	27.5	32.4	25.5	100.0	(102)
70~74세	5.4	15.0	30.5	25.7	23.4	100.0	(167)
75~79세	5.1	16.5	27.8	31.0	19.6	100.0	(316)
80~84세	3.0	14.2	26.3	30.0	26.5	100.0	(661)
85~89세	3.3	14.6	26.1	33.0	23.0	100.0	(631)
90세 이상	3.0	16.2	26.0	34.1	20.7	100.0	(396)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3	19.0	30.4	27.6	19.7	100.0	(796)
중소도시	5.8	12.9	23.5	32.3	25.4	100.0	(705)
농어촌	2.5	13.3	26.1	33.3	24.8	100.0	(81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4	13.2	38.2	23.5	17.6	100.0	(68)
2등급	1.9	15.0	26.9	31.3	25.0	100.0	(160)
3등급	4.8	15.2	24.8	31.6	23.5	100.0	(604)
4등급	3.4	16.0	26.0	30.9	23.8	100.0	(1,186)
5등급	3.9	11.4	32.0	32.4	20.3	100.0	(281)
인지지원등급	0.0	20.0	20.0	33.3	26.7	100.0	(15)
2019년	6.1	17.4	29.7	30.3	16.5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 중 지난 1년간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2,31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9.6%는 월 1~3회, 28.3%는 주3회 이상, 18.1%는 주1~2회 등의 순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응답자의 46.4%는 주1회 이상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1회 이상의 일상생활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 응답 역시 약간 높다. 앞서 정서적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이용자 간 관계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유한 결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 이용자 가족에게서 동 응답(주1회 이상)은 47.3%로 남성 이용자 가족(44.3%)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다빈도 일상생활 지원 제공률 차이는 적다. 다만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5.3%~10.1% 정도는 이용자에게 최근 1년간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대를 감안할 때, 병원 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는 적절한 돌봄 제공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조사시기상(최근 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인지, 혹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부차적인 돌봄 제공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51.1%, 46.9%)이 농어촌 이용자의 가족(41.4%)보다 보다 빈번히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이용자의 경우, 가족과 원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지원 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급 이용자의 경우 병원 동행 등과 같은 의료적 욕구 대응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3회 이상 일상생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42.6%로 5등급 이용자 가족(23.0%)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일상생활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41.5%, 보통 29.8%, (매우) 부담된다 28.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30.8%로 남성 응답자 25.3%에 비해 높아 정서적 지원 제공부담과 마찬가지로 여성 수발자들의 돌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부담을 높게 평가하였다. 80세 이상에서는 동 응답이 37.2%로 30~39세의 11.5%와 비교하여 약 3배 수준이다. 응답자 역시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유추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아울러 40~49세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35.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30세 미만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제외). 해당 연령대의 경우, 경제활동 종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40대 응답자 중 80.0%(전체 65.6%))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상생활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 이용자 가족에게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34.0%로 여성 이용자 가족(26.6%)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경우 57.9%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은 동 응답이 26.8%로 나타나, 이용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용자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정도(31.0%, 30.7%)가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정도(24.7%)에 비해 높다.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자 및 가족간 근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빈번하게 병원 동행 및 외출 등을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등급에 있어서는 앞서 정서적 지원 제공과 마찬가지로, 인정등급이 높아질수록 가족이 느끼는 일상생활 지원 부담이 높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16.4%로 5등급 이용자 가족(3.4%)에 비해 13.0%p 높다.

〈표 4-24〉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지원

(단위:%,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28.3	18.1	29.6	8.2	7.1	8.7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5.4	20.5	29.9	7.9	7.8	8.6	100.0 (876)
여성	30.0	16.7	29.4	8.4	6.7	8.8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30.0	0.0	40.0	0.0	0.0	30.0	100.0 (9)[2]
30~39세	33.3	13.3	30.0	10.0	0.0	13.3	100.0 (30)
40~49세	24.4	19.2	34.6	6.4	8.3	7.1	100.0 (267)
50~59세	26.0	20.7	30.0	8.1	7.0	8.1	100.0 (799)
60~69세	28.1	19.6	30.4	8.2	7.2	6.5	100.0 (790)
70~79세	34.2	10.6	25.8	10.0	5.5	13.9	100.0 (310)
80세 이상	34.3	12.9	23.6	7.9	9.0	12.4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29.5	14.8	32.3	7.0	9.3	7.1	100.0 (647)
여성	27.9	19.4	28.6	8.6	6.2	9.3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1.0	19.0	14.3	14.3	11.9	9.5	100.0 (42)
65~69세	29.0	18.7	21.5	8.4	7.5	15.0	100.0 (107)
70~74세	32.0	15.1	24.4	9.9	5.8	12.8	100.0 (173)
75~79세	30.2	16.7	30.2	8.3	6.2	8.3	100.0 (325)
80~84세	27.7	15.8	31.5	7.7	7.2	10.1	100.0 (685)
85~89세	27.4	20.6	28.8	8.2	7.7	7.2	100.0 (649)
90세 이상	27.3	20.5	33.3	7.3	6.5	5.3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3.9	17.2	24.0	8.1	6.0	10.8	100.0 (832)
중소도시	27.3	19.6	30.4	6.7	6.3	9.7	100.0 (730)
농어촌	23.7	17.7	34.5	9.6	8.8	5.7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2.6	10.3	7.4	8.8	10.3	20.6	100.0 (69)
2등급	36.7	13.9	27.1	7.8	6.0	8.4	100.0 (166)
3등급	31.4	16.7	28.8	8.2	7.1	7.9	100.0 (623)
4등급	26.0	19.5	30.7	7.9	6.7	9.1	100.0 (1,224)
5등급	23.0	19.5	32.8	9.4	8.4	7.0	100.0 (286)
인지지원등급	35.7	14.3	35.7	7.1	7.1	0.0	100.0 (15)
2019년	37.8	15.3	26.5	5.5	8.1	6.8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부담정도: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5.4	23.3	29.8	26.1	15.4	100.0	(2,17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9	21.4	28.9	29.9	16.0	100.0	(800)
여성	6.3	24.5	30.3	23.9	15.0	100.0	(1,374)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42.9	57.1	0.0	0.0	100.0	(7)[2]
30~39세	0.0	11.5	26.9	42.3	19.2	100.0	(26)
40~49세	6.0	29.8	27.4	26.2	10.5	100.0	(248)
50~59세	3.8	20.7	32.6	25.8	17.1	100.0	(733)
60~69세	5.1	21.4	31.1	27.5	14.9	100.0	(739)
70~79세	5.6	29.9	27.2	22.4	14.9	100.0	(268)
80세 이상	13.5	23.7	17.9	26.3	18.6	100.0	(156)
이용자의 성별							
남성	6.0	28.0	28.1	26.3	11.6	100.0	(601)
여성	5.1	21.5	30.4	26.0	16.8	100.0	(1,574)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7.9	50.0	21.1	10.5	10.5	100.0	(38)
65~69세	4.4	35.2	24.2	24.2	12.1	100.0	(91)
70~74세	7.4	24.2	29.5	22.8	16.1	100.0	(149)
75~79세	8.4	26.5	27.9	27.2	10.1	100.0	(298)
80~84세	5.4	22.2	31.0	24.8	16.6	100.0	(616)
85~89세	4.2	19.8	31.1	27.2	17.8	100.0	(602)
90세 이상	4.5	22.3	29.6	28.8	14.9	100.0	(38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5.8	25.2	33.9	21.8	13.3	100.0	(743)
중소도시	6.7	24.0	28.2	24.1	17.0	100.0	(659)
농어촌	3.9	20.8	27.2	32.1	16.0	100.0	(77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6.4	20.0	38.2	10.9	14.5	100.0	(55)
2등급	5.3	29.8	29.1	21.2	14.6	100.0	(151)
3등급	7.0	24.6	28.6	25.8	14.1	100.0	(574)
4등급	4.5	23.5	28.8	27.1	16.2	100.0	(1,113)
5등급	3.4	17.5	35.4	28.4	15.3	100.0	(268)
인지지원등급	0.0	13.3	26.7	33.3	26.7	100.0	(15)
2019년	9.6	26.5	30.1	21.3	12.6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 중 지난 1년간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2,1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지원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49.0%는 주3회 이상, 18.0%는 주1~2회, 12.3%는 월1~3회 등의 순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1회 이상의 가사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의 제공률이 69.6%로 남성 응답자(62.3%)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40세 이후 연령대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0대의 경우 동 응답이 59.5%인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73.4%로 나타나,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역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위한 가사 지원을 빈번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주1회 이상 가사 지원 제공률이 69.7%로 나타나, 여성 이용자 가족(66.0%)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저하가 가속화되는 80세 이후 연령대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사 지원 제공률(주1회 이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응답에 있어 80~84세 이용자의 가족은 64.6%, 85~89세는 65.5%, 90세 이상은 69.4%로 나타났다. 아울러 90세 이상 이용자의 가족 중 10.2%는 일상생활 지원 제공과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가사 지원 제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들(74.0%, 69.0%)이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57.9%)에 비해 주1회 이상 빈번히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및 가족간 물리적 접근성 차이에 따른 결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인정등급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가족을 통한 가사 지원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주3회 이상 제공한다는 비율이 75.4%로 5등급 이용자 가족(41.6%)에 비해 33.8%p 높다.

지난 1년간 가사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41.9%, 보통 31.2%, (매우) 부담된다 26.7%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 지원 제공에 대해 (매우)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부담 정도가 28.3%로 여성 응답자(26.0%)에 비해 근소히 높다. 50세 이후 연령대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담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50대는 22.3%였던 반면 80세 이상은 37.5%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물리적 부담이 뒤따르는 가사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28.8%로 여성 이용자 가족(26.0%)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들(28.8%, 26.3%)이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25.1%)에 비해 부담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가사 지원 제공 횟수 분석결과와 맞물리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정서적, 일상생활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증 등급 이용자 가족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1등급 이용자 가족은 동 응답이 9.2%, 5등급 이용자 가족은 6.7%로 이용자 기능상태에 따라 가족의 부담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49.0	18.0	12.3	4.1	4.7	11.9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3.6	18.7	13.5	4.5	5.4	14.4	100.0	(876)
여성	52.1	17.5	11.7	3.8	4.4	10.5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40.0	30.0	10.0	0.0	0.0	20.0	100.0	(9)[2)]
30~39세	48.4	12.9	29.0	0.0	6.5	3.2	100.0	(30)
40~49세	40.4	19.1	13.9	6.0	6.4	14.2	100.0	(267)
50~59세	44.6	21.0	13.8	4.6	6.0	10.0	100.0	(799)
60~69세	49.6	17.1	12.0	4.4	4.9	11.9	100.0	(790)
70~79세	64.7	9.7	6.1	2.9	1.0	15.5	100.0	(310)
80세 이상	52.5	20.9	12.4	0.0	1.7	12.4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55.2	14.5	11.0	2.9	5.1	11.3	100.0	(647)
여성	46.7	19.3	12.8	4.5	4.6	12.2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73.8	4.8	7.1	0.0	2.4	11.9	100.0	(42)
65~69세	57.0	11.2	9.3	0.0	2.8	19.6	100.0	(107)
70~74세	50.9	13.3	12.7	1.7	5.8	15.6	100.0	(173)
75~79세	54.3	17.5	11.0	3.1	5.2	8.9	100.0	(325)
80~84세	45.0	19.6	14.6	5.1	5.0	10.8	100.0	(685)
85~89세	46.4	19.1	11.1	5.7	4.3	13.4	100.0	(649)
90세 이상	50.2	19.2	12.4	3.0	5.0	10.2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52.4	21.6	8.9	2.8	2.9	11.4	100.0	(832)
중소도시	51.6	17.4	10.5	2.6	4.9	12.9	100.0	(730)
농어촌	43.2	14.7	17.4	6.6	6.5	11.6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75.4	10.1	5.8	0.0	2.9	5.8	100.0	(69)
2등급	60.6	15.8	7.3	1.2	3.0	12.1	100.0	(166)
3등급	54.2	19.9	9.9	4.3	2.9	8.8	100.0	(623)
4등급	45.3	17.0	13.6	4.8	5.5	13.8	100.0	(1,224)
5등급	41.6	21.0	15.7	2.8	7.0	11.9	100.0	(286)
인지지원등급	35.7	28.6	21.4	0.0	7.1	7.1	100.0	(15)
2019년	55.7	14.2	11.6	3.2	5.1	10.3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7〉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6.4	20.3	31.2	26.0	15.9	100.0	(2,099)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1	21.2	30.9	25.6	15.3	100.0	(751)
여성	6.1	19.9	31.4	26.3	16.3	100.0	(1,350)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25.0	75.0	0.0	0.0	100.0	(8)[2]
30~39세	6.9	13.8	31.0	24.1	24.1	100.0	(29)
40~49세	6.6	21.0	36.7	26.2	9.6	100.0	(229)
50~59세	4.2	18.1	30.6	29.8	17.4	100.0	(719)
60~69세	5.7	20.1	31.6	25.9	16.7	100.0	(696)
70~79세	7.7	27.6	27.2	21.8	15.7	100.0	(261)
80세 이상	18.1	19.4	29.7	18.7	14.2	100.0	(155)
이용자의 성별							
남성	7.5	21.3	32.4	24.9	13.9	100.0	(574)
여성	6.0	20.0	30.8	26.5	16.7	100.0	(1,52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8.9	27.0	16.2	13.5	24.3	100.0	(37)
65~69세	3.5	25.9	29.4	27.1	14.1	100.0	(85)
70~74세	6.8	19.0	34.0	23.8	16.3	100.0	(147)
75~79세	11.1	22.9	28.3	28.6	9.1	100.0	(297)
80~84세	5.4	20.0	31.8	24.4	18.5	100.0	(611)
85~89세	6.6	17.8	32.0	27.6	16.0	100.0	(562)
90세 이상	3.9	21.3	31.9	26.3	16.6	100.0	(36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5.6	23.2	33.3	23.5	14.4	100.0	(736)
중소도시	8.0	18.3	31.3	25.0	17.3	100.0	(635)
농어촌	5.9	19.2	29.1	29.5	16.3	100.0	(725)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9.2	16.9	35.4	27.7	10.8	100.0	(65)
2등급	5.5	24.0	28.8	24.0	17.8	100.0	(146)
3등급	8.6	20.1	32.9	23.4	15.0	100.0	(568)
4등급	5.2	20.9	31.0	27.3	15.6	100.0	(1,055)
5등급	6.7	17.5	28.6	27.4	19.8	100.0	(252)
인지지원등급	0.0	25.0	33.3	25.0	16.7	100.0	(12)
2019년	8.1	21.3	33.9	22.4	14.3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 중 지난 1년간 이용자에게 가사지원을 제공한 2,09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 수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주3회 이상, 15.5%는 주1~2회, 12.7%는 월1~3회 등의 순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3회 이상의 신체 수발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의 제공률이 52.6%로 남성 응답자(47.8%)에 비해 높다. 전반적으로 여성 수발자의 이용자에 대한 돌봄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이후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 수발 지원 역시 빈번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세 이상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역시 고령임에 따른 결과로 간주된다 .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주3회 이상 신체 수발 지원 제공률이 57.0%로 나타나, 여성 이용자 가족(48.5%)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 발견이 어렵다. 단, 80~84세 이용자의 가족 중 12.2%, 85~89세 13.2%, 90세 이상 9.7%는 최근 1년간 신체 수발 지원 제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같은 결과가 조사시기의 영향인지 혹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들(54.1%, 53.4%)이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45.1%)에 비해 주3회 이상 신체 수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수발 지원 빈도가 높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주3회 이상 제공한다는 비율이 80.9%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5등급 이용자 가족은 42.7%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신체 수발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8.4%, (매우) 부담된다 34.6%, 보통 27.2% 순이다.

신체 수발 지원 제공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응답에 있어 70~79세 42.4%, 80세 이상 45.1%로 40~49세의 35.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례수는 적지만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경우 67.6%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들(38.4%, 33.6%)이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31.2%)에 비해 부담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등급에 따른 부담 정도는 이전 분석결과와 달리 경향성의 차이가 적다. 동 응답의 경우(인지지원등급 제외), 5등급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25.5%로 가장 적은 반면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3등급 이용자 가족(39.3%)으로 제시되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정서적 지원(71.0%), 신체 수발 지원(50.8%), 가사 지원(49.0%), 일상생활 지원(28.3%) 순으로 이용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빈번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3회 이상 기준).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남성, 고령, 중증 이용자일수록 돌봄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고, 물리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신체 수발 지원)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이용자일수록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에 따른 부담 정도는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돌봄 제공 횟수에 상응하였으며, 특히 여성 수발자의 돌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8〉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50.8	15.5	12.7	3.7	5.2	12.2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7.8	15.7	11.7	4.0	5.9	15.0	100.0 (876)
여성	52.6	15.5	13.2	3.5	4.7	10.6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44.4	22.2	11.1	0.0	0.0	22.2	100.0 (9)[2]
30~39세	54.8	19.4	16.1	0.0	6.5	3.2	100.0 (30)
40~49세	47.2	11.6	16.1	3.0	7.5	14.6	100.0 (267)
50~59세	45.6	17.8	15.1	5.3	5.3	11.0	100.0 (799)
60~69세	49.0	15.9	12.3	3.9	6.7	12.2	100.0 (790)
70~79세	66.9	10.9	7.4	1.0	1.3	12.5	100.0 (310)
80세 이상	59.0	16.9	6.7	2.2	1.1	14.0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57.0	12.8	11.7	3.1	3.9	11.4	100.0 (647)
여성	48.5	16.5	13.0	3.9	5.6	12.4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71.4	7.1	4.8	0.0	2.4	14.3	100.0 (42)
65~69세	60.2	8.3	10.2	0.0	3.7	17.6	100.0 (107)
70~74세	55.5	9.8	9.2	4.0	4.0	17.3	100.0 (173)
75~79세	58.3	15.3	10.1	3.7	4.6	8.0	100.0 (325)
80~84세	45.3	17.3	14.7	4.1	6.3	12.2	100.0 (685)
85~89세	48.5	16.9	12.0	4.5	4.9	13.2	100.0 (649)
90세 이상	50.9	16.0	15.2	3.0	5.2	9.7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54.1	17.7	11.1	2.5	4.2	10.5	100.0 (832)
중소도시	53.4	14.8	10.1	3.4	4.8	13.5	100.0 (730)
농어촌	45.1	14.1	16.4	5.1	6.6	12.7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80.9	8.8	2.9	0.0	0.0	7.4	100.0 (69)
2등급	69.3	10.2	6.0	2.4	4.2	7.8	100.0 (166)
3등급	57.9	18.8	7.9	2.2	4.2	9.1	100.0 (623)
4등급	45.1	15.0	15.6	4.8	6.0	13.6	100.0 (1,224)
5등급	42.7	15.7	16.1	3.1	5.6	16.8	100.0 (286)
인지지원등급	40.0	20.0	20.0	0.0	6.7	13.3	100.0 (15)
2019년	56.7	12.8	12.0	3.4	4.9	10.1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9〉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단위:%,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9.1	25.5	27.2	23.7	14.7	100.0	(2,093)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9	26.4	27.4	24.3	14.0	100.0	(745)
여성	9.7	24.9	27.0	23.3	15.1	100.0	(1,348)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28.6	71.4	0.0	0.0	100.0	(7)[2]
30~39세	6.9	10.3	20.7	44.8	17.2	100.0	(29)
40~49세	7.5	28.2	28.2	25.6	10.6	100.0	(227)
50~59세	6.6	24.2	27.9	24.6	16.7	100.0	(712)
60~69세	9.1	24.4	28.1	24.4	14.1	100.0	(694)
70~79세	14.0	28.4	25.5	17.7	14.4	100.0	(271)
80세 이상	15.0	30.1	20.3	20.3	14.4	100.0	(153)
이용자의 성별							
남성	11.9	27.2	27.2	21.8	11.9	100.0	(573)
여성	8.0	24.8	27.2	24.3	15.7	100.0	(1,521)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6.2	51.4	10.8	5.4	16.2	100.0	(37)
65~69세	6.8	30.7	22.7	31.8	8.0	100.0	(88)
70~74세	9.1	30.1	29.4	19.6	11.9	100.0	(143)
75~79세	15.7	26.3	23.0	25.3	9.7	100.0	(300)
80~84세	8.0	26.3	26.0	22.3	17.3	100.0	(600)
85~89세	7.8	20.2	31.3	24.5	16.2	100.0	(563)
90세 이상	7.2	25.7	28.5	24.3	14.4	100.0	(36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9.8	28.6	27.1	22.1	12.3	100.0	(745)
중소도시	10.8	22.8	28.4	22.0	16.0	100.0	(631)
농어촌	6.8	24.4	26.1	26.7	15.9	100.0	(716)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7.5	17.5	28.6	28.6	7.9	100.0	(63)
2등급	9.2	26.8	24.2	24.8	15.0	100.0	(153)
3등급	11.1	28.2	26.6	19.7	14.4	100.0	(568)
4등급	7.9	25.8	26.7	24.6	14.9	100.0	(1,057)
5등급	7.1	18.4	32.6	26.8	15.1	100.0	(239)
인지지원등급	7.7	30.8	23.1	23.1	15.4	100.0	(13)
2019년	12.5	22.6	28.8	19.9	13.2	100.0	(2,723)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 중 지난 1년간 이용자에게 신체수발 지원을 제공한 2,09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재가급여 이용 만족도

지난 1개월(지난 1년(단기보호))간 이용자가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만족도를 네 가지 차원(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 및 일수, 서비스 내용, 전반)에서 파악하였다.

가.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1,384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8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1.0%, 서비스 내용 88.1%, 이용시간 및 일수 73.3%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항목별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만족도에 있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2.2%로 여성 응답자(90.1%)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한다(80세 이상 제외). 40~49세 응답자의 경우 93.8%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0~79세 응답자는 88.9%로 소폭 낮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3.3%로 여성 이용자 가족(90.5%)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91.4%, 92.8%)가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89.3%)에 비해 높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관련한 만족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95.6%로 전 등급에서 가장 높다. 중증 수급자일 경우, 고강도의 신체수발 지원 등이 필연적이므로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 시간 및 이용 일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74.1%로 여성 응답자(72.7%)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적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이용 시간 및 이용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76.5%로 여성 이용자 가족(72.4%)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족도의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다. 65~69세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0.7%인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은 72.8%로 연령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발 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자 등급과 관련해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불만족율이 15.2%로 타 등급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앞서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량의 만족도 차이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89.3%로 여성 응답자(87.0%)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70세를 전후로 만족도가 감소하다 이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30세 미만 제외). 이용자의 가족 역시 고령일수록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므로,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신체수발, 가사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내용 대한 만족도는 90.6%로 여성 이용자 가족(87.2%)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 및 지역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적다. 이용자 등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6.3%로 타 등급에 비해 높다. 5등급 이용자의 경우, 경증치매 이외 신체기능 등은 양호한 상태라는 점에서 그들의 가족 역시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에 국한된 현재의 방문요양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련의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방문요양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응답자 연령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70세를 전후로 차이가 있다. 즉, 70세까지는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만족도가 상승하는 U자형을 띤다(30세 미만 제외). 이는 앞서 서비스 내용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 역시 고령에 접어듦에 따라 적절한 돌봄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전반적 만족도는 91.2%로 여성 이용자 가족(85.4%)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연령군별로는 65~69세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자 등급과 관련해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5.1%로 타 등급에 비해 낮다. 중증 이용자일 경우, 현재의 지원 외에 추가적인 수발 지원 등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들의 가족에게서 이같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0-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직원)

(단위:%,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6.6	44.4	7.4	1.3	0.2	100.0	(1,384)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6.2	46.0	6.7	1.1	0.0	100.0	(613)
여성	47.0	43.1	8.0	1.6	0.4	100.0	(773)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5.0	37.5	37.5	0.0	0.0	100.0	(8)[2)]
30~39세	40.9	59.1	0.0	0.0	0.0	100.0	(22)
40~49세	46.6	47.2	5.0	1.2	0.0	100.0	(161)
50~59세	46.3	45.5	7.2	0.8	0.2	100.0	(475)
60~69세	46.7	42.4	8.4	2.0	0.4	100.0	(450)
70~79세	44.8	44.1	11.2	0.0	0.0	100.0	(143)
80세 이상	52.0	41.6	3.2	3.2	0.0	100.0	(12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6.0	47.3	6.7	0.0	0.0	100.0	(298)
여성	46.9	43.6	7.6	1.7	0.3	100.0	(1,086)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0.0	38.9	11.1	0.0	0.0	100.0	(18)
65~69세	42.5	54.8	2.7	0.0	0.0	100.0	(73)
70~74세	43.4	46.5	10.1	0.0	0.0	100.0	(99)
75~79세	47.7	41.1	7.3	4.0	0.0	100.0	(151)
80~84세	45.8	46.1	6.9	0.7	0.5	100.0	(419)
85~89세	48.9	40.3	8.1	2.5	0.3	100.0	(395)
90세 이상	46.1	46.5	7.0	0.0	0.4	100.0	(23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4.0	47.4	6.5	2.2	0.0	100.0	(464)
중소도시	50.1	42.7	5.3	1.3	0.5	100.0	(379)
농어촌	46.4	42.9	9.8	0.7	0.2	100.0	(5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4.3	41.3	4.3	0.0	0.0	100.0	(46)
2등급	49.0	42.3	6.7	1.9	0.0	100.0	(104)
3등급	48.5	43.0	7.1	1.1	0.3	100.0	(365)
4등급	45.1	45.0	8.5	1.2	0.1	100.0	(740)
5등급	44.5	47.7	3.1	3.1	1.6	100.0	(128)

주: 1) 방문요양 이용자의 가족 1,3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0-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6.5	36.8	13.8	10.4	2.5	100.0	(1,384)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5.5	38.6	11.9	10.3	3.8	100.0	(613)
여성	37.3	35.4	15.4	10.5	1.4	100.0	(773)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5.0	37.5	12.5	0.0	25.0	100.0	(8)[2)]
30~39세	31.8	59.1	0.0	9.1	0.0	100.0	(22)
40~49세	38.5	36.0	18.0	5.6	1.9	100.0	(161)
50~59세	37.6	35.2	13.3	12.0	1.9	100.0	(475)
60~69세	32.4	33.9	18.0	13.1	2.7	100.0	(450)
70~79세	39.4	43.7	6.3	7.0	3.5	100.0	(143)
80세 이상	43.2	42.4	6.4	5.6	2.4	100.0	(125)
이용자의 성별							
남성	37.9	38.6	13.1	8.7	1.7	100.0	(298)
여성	36.1	36.3	14.0	10.9	2.7	100.0	(1,086)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8.9	27.8	11.1	22.2	0.0	100.0	(18)
65~69세	34.2	46.6	6.8	8.2	4.1	100.0	(73)
70~74세	32.7	41.8	11.2	12.2	2.0	100.0	(99)
75~79세	40.1	32.2	15.8	8.6	3.3	100.0	(151)
80~84세	34.0	40.7	13.9	8.6	2.9	100.0	(419)
85~89세	39.6	31.5	15.0	12.4	1.5	100.0	(395)
90세 이상	35.5	37.3	14.0	10.1	3.1	100.0	(23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2.3	40.7	14.9	11.2	0.9	100.0	(464)
중소도시	39.6	32.2	12.4	12.1	3.7	100.0	(379)
농어촌	37.9	36.5	14.0	8.7	2.9	100.0	(5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3.5	26.1	15.2	13.0	2.2	100.0	(46)
2등급	35.2	39.0	16.2	7.6	1.9	100.0	(104)
3등급	35.0	34.2	15.6	10.7	4.6	100.0	(365)
4등급	37.3	38.0	12.6	10.7	1.4	100.0	(740)
5등급	34.4	38.3	14.1	10.2	3.1	100.0	(128)

주: 1) 방문요양 이용자의 가족 1,3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0-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2.8	45.3	9.7	1.9	0.3	100.0	(1,384)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2.7	46.6	7.9	2.8	0.0	100.0	(613)
여성	42.8	44.2	11.2	1.2	0.6	100.0	(773)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8.6	14.3	28.6	28.6	0.0	100.0	(8)[2)]
30~39세	40.9	59.1	0.0	0.0	0.0	100.0	(22)
40~49세	43.8	50.6	4.4	1.3	0.0	100.0	(161)
50~59세	42.7	44.8	10.9	1.3	0.2	100.0	(475)
60~69세	41.9	43.7	11.8	1.8	0.9	100.0	(450)
70~79세	42.0	45.5	9.8	2.8	0.0	100.0	(143)
80세 이상	46.4	45.6	4.8	3.2	0.0	100.0	(12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2.8	47.8	8.4	1.0	0.0	100.0	(298)
여성	42.6	44.6	10.1	2.2	0.5	100.0	(1,086)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7.8	38.9	22.2	11.1	0.0	100.0	(18)
65~69세	42.5	53.4	4.1	0.0	0.0	100.0	(73)
70~74세	41.0	45.0	11.0	3.0	0.0	100.0	(99)
75~79세	44.4	43.0	8.6	4.0	0.0	100.0	(151)
80~84세	41.1	48.8	8.4	1.2	0.5	100.0	(419)
85~89세	45.1	39.7	12.9	1.8	0.5	100.0	(395)
90세 이상	43.0	47.8	7.0	1.7	0.4	100.0	(23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9.7	49.0	8.6	2.6	0.0	100.0	(464)
중소도시	47.1	40.5	10.0	1.3	1.1	100.0	(379)
농어촌	42.3	45.4	10.3	1.8	0.2	100.0	(5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8.9	34.0	17.0	0.0	0.0	100.0	(46)
2등급	46.7	44.8	6.7	0.0	1.9	100.0	(104)
3등급	41.3	48.1	9.3	1.4	0.0	100.0	(365)
4등급	42.0	44.7	10.9	2.3	0.1	100.0	(740)
5등급	45.3	44.5	3.9	4.7	1.6	100.0	(128)

주: 1) 방문요양 이용자의 가족 1,3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0-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요양(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1.3	45.4	11.0	2.0	0.3	100.0	(1,384)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0.4	46.7	10.1	2.8	0.0	100.0	(613)
여성	42.0	44.2	11.6	1.4	0.6	100.0	(773)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5.0	37.5	12.5	25.0	0.0	100.0	(8)[2)]
30~39세	40.9	59.1	0.0	0.0	0.0	100.0	(22)
40~49세	41.0	49.7	8.1	1.2	0.0	100.0	(161)
50~59세	42.6	43.5	11.6	2.1	0.2	100.0	(475)
60~69세	38.8	45.2	14.0	1.1	0.9	100.0	(450)
70~79세	43.7	45.1	8.5	2.8	0.0	100.0	(143)
80세 이상	44.4	46.0	6.3	3.2	0.0	100.0	(12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1.9	49.3	8.1	0.7	0.0	100.0	(298)
여성	41.1	44.3	11.8	2.4	0.5	100.0	(1,086)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8.9	27.8	22.2	11.1	0.0	100.0	(18)
65~69세	42.5	50.7	6.8	0.0	0.0	100.0	(73)
70~74세	39.4	46.5	8.1	6.1	0.0	100.0	(99)
75~79세	43.7	39.1	13.2	4.0	0.0	100.0	(151)
80~84세	39.5	49.5	8.9	1.7	0.5	100.0	(419)
85~89세	43.3	39.7	15.2	1.3	0.5	100.0	(395)
90세 이상	40.2	50.7	7.9	0.9	0.4	100.0	(23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7.9	49.1	10.8	2.2	0.0	100.0	(464)
중소도시	46.0	41.0	10.6	1.3	1.1	100.0	(379)
농어촌	41.0	45.2	11.4	2.2	0.2	100.0	(54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4.7	40.4	14.9	0.0	0.0	100.0	(46)
2등급	43.4	45.3	7.5	1.9	1.9	100.0	(104)
3등급	41.9	44.1	12.3	1.6	0.0	100.0	(365)
4등급	40.1	46.1	11.6	2.0	0.1	100.0	(740)
5등급	43.0	46.9	5.5	3.1	1.6	100.0	(128)
2019년	54.0	36.1	6.3	3.5	0.2	100.0	(2,140)

주: 1) 방문요양 이용자의 가족 1,384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나.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542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8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2.4%, 서비스 내용 89.7%, 이용 시간 및 일수 83.1%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항목별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만족도에 있어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 역시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만족도가 98.2%에 이른다. 이용자의 가족 역시 고령이므로, 일정 정도의 물리적 힘이 요구되는 신체수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3.9%로 여성 이용자 가족(91.5%)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75세 이상의 후기노인들에게서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후기노인의 신체 및 기능상태 고려시, 신체수발 지원에 있어 일정 정도의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95.8%)가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86.2%, 88.5%)에 비해 높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간 만족도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등급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며,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 및 이용 일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84.5%로 여성 응답자(8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뚜렷치 않으나, 60~69세 연령대의 만족도가 79.2%로 타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낮다.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용자의 가족 등이 이를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현재 서비스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86.5%로 여성 이용자 가족(81.8%)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적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앞서 분석내용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85.6%)가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78.5%, 81.4%)에 비해 높다. 가용자원 및 대체 서비스 유무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자 등급에 따른 차이는 적으나, 1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불만족율이 5.9%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약간 높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전 항목들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경향성 차이는 뚜렷치 않은 편이며, 60~69세 응답자의 만족도가 85.8%로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90.8%로 여성 이용자 가족(89.2%)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적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92.4%)가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85.2%, 86.0%)에 비해 높다. 가용자원 및 대체 서비스 유무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94.1%로 가장 높다. 중증 이용자 신체수발 지원 부담과 관련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의 특성상 방문목욕 차량 이용 여부 이외에 서비스 내용의 편차를 가늠할만한 사항이 적다는 점에서, 세부 특성별 만족도의 편차 역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방문목욕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응답자 연령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70세까지는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요양의 전반적 만족도와도 유사한 결과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 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수발 지원 부담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으며,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전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이 차이가 뚜렷하다. 즉,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92.9%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84.4%, 8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용자 등급과 관련해서는 5등급(94.4%), 1등급(94.1%), 2등급(92.5%) 이용자의 가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뚜렷한 경향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4-31-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장기요양기관 직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9.9	42.5	6.9	0.7	0.0	100.0	(54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6.7	45.8	6.7	0.9	0.0	100.0	(225)
여성	52.1	40.1	7.3	0.6	0.0	100.0	(31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75.0	25.0	0.0	0.0	100.0	(4)[2)]
30~39세	36.4	54.5	9.1	0.0	0.0	100.0	(11)
40~49세	61.4	34.1	4.5	0.0	0.0	100.0	(44)
50~59세	54.1	39.9	6.0	0.0	0.0	100.0	(183)
60~69세	42.6	44.4	10.7	2.4	0.0	100.0	(169)
70~79세	50.0	44.7	5.3	0.0	0.0	100.0	(76)
80세 이상	56.4	41.8	1.8	0.0	0.0	100.0	(55)
이용자의 성별							
남성	57.9	36.0	6.1	0.0	0.0	100.0	(164)
여성	46.4	45.1	7.4	1.1	0.0	100.0	(37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8)[2)]
65~69세	42.9	50.0	7.1	0.0	0.0	100.0	(14)
70~74세	32.3	45.2	22.6	0.0	0.0	100.0	(31)
75~79세	45.8	48.6	5.6	0.0	0.0	100.0	(72)
80~84세	51.6	40.7	7.7	0.0	0.0	100.0	(182)
85~89세	50.3	42.7	4.2	2.8	0.0	100.0	(143)
90세 이상	55.8	37.9	6.3	0.0	0.0	100.0	(9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7.1	49.1	12.1	1.7	0.0	100.0	(116)
중소도시	56.6	31.9	9.7	1.8	0.0	100.0	(113)
농어촌	52.2	43.6	4.1	0.0	0.0	100.0	(31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9.4	64.7	5.9	0.0	0.0	100.0	(17)
2등급	47.2	47.2	1.9	3.8	0.0	100.0	(53)
3등급	50.3	42.7	7.0	0.0	0.0	100.0	(143)
4등급	48.7	42.5	8.0	0.7	0.0	100.0	(275)
5등급	63.0	31.5	5.6	0.0	0.0	100.0	(54)

주: 1) 방문목욕 이용자의 가족 5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1-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4.3	38.8	12.3	4.5	0.1	100.0	(54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1.6	42.9	12.8	2.7	0.0	100.0	(225)
여성	46.1	35.7	11.9	6.0	0.3	100.0	(31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4)[2]
30~39세	36.4	54.5	0.0	9.1	0.0	100.0	(11)
40~49세	53.5	37.2	4.7	4.7	0.0	100.0	(44)
50~59세	45.7	35.9	12.5	5.4	0.5	100.0	(183)
60~69세	38.7	40.5	16.7	4.2	0.0	100.0	(169)
70~79세	45.5	41.6	10.4	2.6	0.0	100.0	(76)
80세 이상	50.9	33.3	10.5	5.3	0.0	100.0	(55)
이용자의 성별							
남성	51.5	35.0	11.0	2.5	0.0	100.0	(164)
여성	41.4	40.4	12.7	5.3	0.3	100.0	(37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62.5	37.5	0.0	0.0	0.0	100.0	(8)[2]
65~69세	42.9	50.0	0.0	7.1	0.0	100.0	(14)
70~74세	32.3	38.7	25.8	3.2	0.0	100.0	(31)
75~79세	41.1	41.1	15.1	2.7	0.0	100.0	(72)
80~84세	44.8	42.0	9.9	3.3	0.0	100.0	(182)
85~89세	44.1	32.9	13.3	9.1	0.7	100.0	(143)
90세 이상	49.5	36.8	10.5	3.2	0.0	100.0	(9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4.5	44.0	17.2	3.4	0.9	100.0	(116)
중소도시	52.2	29.2	15.0	3.5	0.0	100.0	(113)
농어촌	45.2	40.4	9.2	5.1	0.0	100.0	(31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9.4	52.9	11.8	5.9	0.0	100.0	(17)
2등급	42.3	42.3	11.5	3.8	0.0	100.0	(53)
3등급	43.1	38.2	15.3	2.8	0.7	100.0	(143)
4등급	44.2	38.8	11.6	5.4	0.0	100.0	(275)
5등급	54.5	30.9	9.1	5.5	0.0	100.0	(54)

주: 1) 방문목욕 이용자의 가족 5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1-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7.9	41.8	9.0	1.2	0.1	100.0	(54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6.7	42.7	8.4	1.8	0.4	100.0	(225)
여성	48.7	40.9	9.4	0.9	0.0	100.0	(31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4)[2]
30~39세	36.4	63.6	0.0	0.0	0.0	100.0	(11)
40~49세	58.1	34.9	7.0	0.0	0.0	100.0	(44)
50~59세	51.4	39.3	8.7	0.5	0.0	100.0	(183)
60~69세	42.3	43.5	11.3	3.0	0.0	100.0	(169)
70~79세	48.7	43.4	7.9	0.0	0.0	100.0	(76)
80세 이상	50.0	39.3	8.9	0.0	1.8	100.0	(55)
이용자의 성별							
남성	54.6	36.2	9.2	0.0	0.0	100.0	(164)
여성	45.1	44.1	9.0	1.6	0.3	100.0	(37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62.5	37.5	0.0	0.0	0.0	100.0	(8)[2]
65~69세	42.9	57.1	0.0	0.0	0.0	100.0	(14)
70~74세	32.3	45.2	22.6	0.0	0.0	100.0	(31)
75~79세	43.1	44.4	9.7	1.4	1.4	100.0	(72)
80~84세	50.3	42.0	7.7	0.0	0.0	100.0	(182)
85~89세	47.2	40.8	8.5	3.5	0.0	100.0	(143)
90세 이상	53.7	37.9	8.4	0.0	0.0	100.0	(9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6.5	48.7	13.0	1.7	0.0	100.0	(116)
중소도시	53.5	32.5	11.4	2.6	0.0	100.0	(113)
농어촌	50.0	42.4	6.7	0.6	0.3	100.0	(31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9.4	64.7	5.9	0.0	0.0	100.0	(17)
2등급	45.3	41.5	9.4	3.8	0.0	100.0	(53)
3등급	44.8	47.6	7.0	0.7	0.0	100.0	(143)
4등급	48.4	40.0	10.5	0.7	0.4	100.0	(275)
5등급	61.1	27.8	7.4	3.7	0.0	100.0	(54)

주: 1) 방문목욕 이용자의 가족 5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1-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목욕(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7.3	42.6	9.1	0.7	0.3	100.0	(54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5.1	45.5	8.5	0.9	0.0	100.0	(225)
여성	48.7	40.6	9.4	0.6	0.6	100.0	(31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4)[2]
30~39세	36.4	54.5	9.1	0.0	0.0	100.0	(11)
40~49세	58.1	34.9	7.0	0.0	0.0	100.0	(44)
50~59세	50.3	41.0	7.7	1.1	0.0	100.0	(183)
60~69세	41.7	44.0	11.9	1.2	1.2	100.0	(169)
70~79세	48.7	43.4	7.9	0.0	0.0	100.0	(76)
80세 이상	50.0	41.1	8.9	0.0	0.0	100.0	(55)
이용자의 성별							
남성	53.9	35.8	10.3	0.0	0.0	100.0	(164)
여성	44.2	45.5	8.7	1.1	0.5	100.0	(37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62.5	37.5	0.0	0.0	0.0	100.0	(8)[2]
65~69세	42.9	50.0	7.1	0.0	0.0	100.0	(14)
70~74세	32.3	45.2	22.6	0.0	0.0	100.0	(31)
75~79세	43.1	48.6	8.3	0.0	0.0	100.0	(72)
80~84세	49.4	42.8	7.8	0.0	0.0	100.0	(182)
85~89세	46.2	40.6	9.1	2.8	1.4	100.0	(143)
90세 이상	52.6	38.9	8.4	0.0	0.0	100.0	(9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5.3	49.1	13.8	1.7	0.0	100.0	(116)
중소도시	54.0	31.9	10.6	1.8	1.8	100.0	(113)
농어촌	49.0	43.9	7.0	0.0	0.0	100.0	(31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9.4	64.7	5.9	0.0	0.0	100.0	(17)
2등급	45.3	47.2	3.8	0.0	3.8	100.0	(53)
3등급	46.2	44.8	7.7	1.4	0.0	100.0	(143)
4등급	47.3	40.4	11.6	0.7	0.0	100.0	(275)
5등급	57.4	37.0	5.6	0.0	0.0	100.0	(54)
2019년	57.0	35.6	4.2	2.7	0.5	100.0	(610)

주: 1) 방문목욕 이용자의 가족 54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 방문간호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98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8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2.3%, 서비스 내용 88.6%, 이용시간 및 일수 73.4%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항목별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의 사례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전반적인 유의가 필요하다.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만족도에 있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4.5%로 여성(91.8%)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3.5%로 여성 이용자 가족(91.1%)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군별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0~84세 이용자의 가족 만족도가 96.0%인 반면 90세 이상 만족도는 86.7%로, 연령대 증가에 따라 발현되는 의료적 욕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응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90.0%)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91.9%, 96.7%)에 비해 약간 낮다. 방문간호 기관의 경우 2021년말 기준 559개소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인력수급 등이 더욱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견 가능한 결과로 간주된다.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긴 어려우며, 3등급(96.7%), 1등급(94.1%)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이용 시간 및 이용 일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77.1%로 남성 응답자(6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 비율에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80세 이상 제외) 서비스량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낮다(40대 58.3%, 50대 42.3%, 60대 30.3%, 70대 29.4%).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여성 이용자 가족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74.3%로 남성 이용자 가족(68.8%)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별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70~74세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75.0%인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의 경우 68.8%로 집단간 차이가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연령 증가에 따라 발현되는 의료적 욕구 역시 증대한다는 점에서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량에 대한 만족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71.0%로 대도시지역 이용자 가족(78.9%)에 비하여 낮다.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는 등급별 사례수가 많지 않긴 하나, 1~2등급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각각 83.3%, 84.6%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하여 높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3.4%로 남성(8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이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경향성은 적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93.8%로 여성 이용자 가족(86.4%)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별 차이에 있어서는 후기노인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75~79세 83.4%, 80~84세 84.6%, 85~89세 92.3%로 고령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동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만족도 항목들과 달리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역별, 등급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일련의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방문간호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응답자(88.7%)의 만족도가 남성 응답자(83.3%)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90.6%)의 만족도가 여성 이용자 가족(84.8%)에 비해 높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84.2%)에게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이용자 등급과 관련해서는 3등급(90.3%), 1등급(89.5%), 2·5등급(85.7%) 이용자의 가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사례수 등을 고려할 때 해석의 유의가 필요하다.

〈표 4-32-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직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1.9	50.3	7.2	0.6	0.0	100.0	(9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1.7	52.8	5.6	0.0	0.0	100.0	(36)
여성	42.6	49.2	8.2	0.0	0.0	100.0	(6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30~3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40~49세	63.6	36.4	0.0	0.0	0.0	100.0	(11)
50~59세	51.9	37.0	11.1	0.0	0.0	100.0	(27)
60~69세	36.4	57.6	6.1	0.0	0.0	100.0	(33)
70~79세	31.3	62.5	6.3	0.0	0.0	100.0	(16)
80세 이상	50.0	50.0	0.0	0.0	0.0	100.0	(6)[2]
이용자의 성별							
남성	38.7	54.8	6.5	0.0	0.0	100.0	(31)
여성	43.3	47.8	7.5	1.5	0.0	100.0	(6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65~69세	33.3	66.7	0.0	0.0	0.0	100.0	(9)[2]
70~74세	37.5	50.0	12.5	0.0	0.0	100.0	(8)[2]
75~79세	63.6	36.4	0.0	0.0	0.0	100.0	(11)
80~84세	36.0	60.0	4.0	0.0	0.0	100.0	(25)
85~89세	46.2	42.3	11.5	0.0	0.0	100.0	(26)
90세 이상	40.0	46.7	13.3	0.0	0.0	100.0	(1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0.5	51.4	8.1	0.0	0.0	100.0	(37)
중소도시	29.0	67.7	3.2	0.0	0.0	100.0	(31)
농어촌	56.7	33.3	10.0	0.0	0.0	100.0	(3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2.9	41.2	5.9	0.0	0.0	100.0	(17)
2등급	25.0	66.7	8.3	0.0	0.0	100.0	(12)
3등급	41.9	54.8	3.2	0.0	0.0	100.0	(31)
4등급	37.9	51.7	10.3	0.0	0.0	100.0	(29)
5등급	66.7	33.3	0.0	0.0	0.0	100.0	(6)[2]

주: 1) 방문간호 이용자의 가족 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2-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6.0	37.4	20.3	5.7	0.5	100.0	(9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6.1	30.6	22.2	11.1	0.0	100.0	(36)
여성	36.1	41.0	19.7	3.3	0.0	100.0	(6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100.0	(0)[2]
30~3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40~49세	58.3	33.3	8.3	0.0	0.0	100.0	(11)
50~59세	42.3	26.9	26.9	3.8	0.0	100.0	(27)
60~69세	30.3	42.4	18.2	9.1	0.0	100.0	(33)
70~79세	29.4	35.3	29.4	5.9	0.0	100.0	(16)
80세 이상	33.3	50.0	16.7	0.0	0.0	100.0	(6)[2]
이용자의 성별							
남성	31.3	37.5	28.1	3.1	0.0	100.0	(31)
여성	37.9	36.4	16.7	7.6	1.5	100.0	(6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65~69세	33.3	55.6	11.1	0.0	0.0	100.0	(9)[2]
70~74세	25.0	50.0	12.5	12.5	0.0	100.0	(8)[2]
75~79세	66.7	8.3	16.7	8.3	0.0	100.0	(11)
80~84세	28.0	36.0	32.0	4.0	0.0	100.0	(25)
85~89세	34.6	42.3	15.4	7.7	0.0	100.0	(26)
90세 이상	37.5	31.3	25.0	6.3	0.0	100.0	(1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4.2	44.7	10.5	10.5	0.0	100.0	(37)
중소도시	24.1	44.8	27.6	3.4	0.0	100.0	(31)
농어촌	48.4	22.6	25.8	3.2	0.0	100.0	(3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4.4	38.9	11.1	5.6	0.0	100.0	(17)
2등급	23.1	61.5	7.7	7.7	0.0	100.0	(12)
3등급	38.7	25.8	25.8	9.7	0.0	100.0	(31)
4등급	33.3	33.3	30.0	3.3	0.0	100.0	(29)
5등급	33.3	50.0	16.7	0.0	0.0	100.0	(6)[2]

주: 1) 방문간호 이용자의 가족 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2-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서비스 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9.8	48.8	10.5	0.9	0.0	100.0	(9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5.1	45.9	16.2	2.7	0.0	100.0	(36)
여성	41.7	51.7	6.7	0.0	0.0	100.0	(6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100.0	(0)[2]
30~3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40~49세	63.6	36.4	0.0	0.0	0.0	100.0	(11)
50~59세	44.4	37.0	18.5	0.0	0.0	100.0	(27)
60~69세	36.4	57.6	6.1	0.0	0.0	100.0	(33)
70~79세	29.4	52.9	17.6	0.0	0.0	100.0	(16)
80세 이상	50.0	50.0	0.0	0.0	0.0	100.0	(6)[2]
이용자의 성별							
남성	37.5	56.3	6.3	0.0	0.0	100.0	(31)
여성	40.9	45.5	12.1	1.5	0.0	100.0	(6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65~69세	33.3	66.7	0.0	0.0	0.0	100.0	(9)[2]
70~74세	37.5	50.0	12.5	0.0	0.0	100.0	(8)[2]
75~79세	66.7	16.7	16.7	0.0	0.0	100.0	(11)
80~84세	34.6	50.0	11.5	3.8	0.0	100.0	(25)
85~89세	38.5	53.8	7.7	0.0	0.0	100.0	(26)
90세 이상	37.5	50.0	12.5	0.0	0.0	100.0	(1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0.5	51.4	8.1	0.0	0.0	100.0	(37)
중소도시	26.7	56.7	16.7	0.0	0.0	100.0	(31)
농어촌	53.3	36.7	10.0	0.0	0.0	100.0	(3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7.4	42.1	10.5	0.0	0.0	100.0	(17)
2등급	30.8	61.5	7.7	0.0	0.0	100.0	(12)
3등급	40.0	50.0	10.0	0.0	0.0	100.0	(31)
4등급	37.9	44.8	17.2	0.0	0.0	100.0	(29)
5등급	42.9	57.1	0.0	0.0	0.0	100.0	(6)[2]

주: 1) 방문간호 이용자의 가족 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2-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방문간호(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9.2	47.7	12.2	0.9	0.0	100.0	(9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6.1	47.2	16.7	0.0	0.0	100.0	(36)
여성	40.3	48.4	9.7	1.6	0.0	100.0	(6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2]
30~3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40~49세	58.3	33.3	8.3	0.0	0.0	100.0	(11)
50~59세	44.4	37.0	18.5	0.0	0.0	100.0	(27)
60~69세	34.4	53.1	12.5	0.0	0.0	100.0	(33)
70~79세	29.4	64.7	5.9	0.0	0.0	100.0	(16)
80세 이상	33.3	50.0	16.7	0.0	0.0	100.0	(6)[2]
이용자의 성별							
남성	37.5	53.1	9.4	0.0	0.0	100.0	(31)
여성	40.9	43.9	13.6	1.5	0.0	100.0	(6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65~69세	33.3	66.7	0.0	0.0	0.0	100.0	(9)[2]
70~74세	37.5	50.0	12.5	0.0	0.0	100.0	(8)[2]
75~79세	61.5	30.8	7.7	0.0	0.0	100.0	(11)
80~84세	34.6	50.0	15.4	0.0	0.0	100.0	(25)
85~89세	38.5	46.2	15.4	0.0	0.0	100.0	(26)
90세 이상	40.0	46.7	13.3	0.0	0.0	100.0	(15)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9.5	44.7	15.8	0.0	0.0	100.0	(37)
중소도시	26.7	63.3	10.0	0.0	0.0	100.0	(31)
농어촌	51.7	37.9	10.3	0.0	0.0	100.0	(3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7.4	42.1	10.5	0.0	0.0	100.0	(17)
2등급	28.6	57.1	14.3	0.0	0.0	100.0	(12)
3등급	41.9	48.4	9.7	0.0	0.0	100.0	(31)
4등급	37.9	44.8	17.2	0.0	0.0	100.0	(29)
5등급	28.6	57.1	14.3	0.0	0.0	100.0	(6)[2]
2019년	49.6	41.5	7.3	1.6	0.0	100.0	(124)

주: 1) 방문간호 이용자의 가족 98명의 자료를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라.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512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9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93.5%, 서비스 내용 93.4%, 이용시간 및 일수 88.2%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항목별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응답자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5.7%가 여성 응답자(92.2%)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94.1%로 여성 이용자(93.1%)에 비해 약간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야간보호 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낮게 나타났다. 75~79세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는 97.3%였던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92.8%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이용자의 만족도가 95.4%로 중소도시(92.6%), 농어촌(92.1%) 지역 이용자에 비해 높다. 주야간보호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3~5등급을 중심으로 볼 때, 만족도의 편차는 크지 않다.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0.8%로 여성 응답자(8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40대(92.7%) 혹은 70세 이후 고령자(70~79세 97.7%, 80세 이상 93.8%)에게서 서비스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량에 대한 만족도가 89.6%로 여성 이용자(87.8%)에 비해 약간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명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차이 역시 적은 편이다. 등급별 차이 역시 적은 편이며, 주야간보호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4등급(90.3%), 5등급(88.1%) 순으로 서비스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95.8%로 여성(92.3%)에 비해 높다. 응답자의 연령대와 관련한 경향성 차이는

적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94.2%로 여성 이용자 가족(93.1%)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 연령대별로는 70세 이후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대체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긴 하나, 70~74세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는 92.4%였던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95.2%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94.7%로 중소도시(93.5%), 농어촌(91.4%)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등급별 차이는 이전 항목들과 유사한 경향이다.

일련의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별 차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응답자(96.4%)의 만족도가 여성 응답자(91.6%)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대체로 80세 이후 연령대에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기관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역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고령인 이용자 가족에게서 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93.6%, 95.1%)가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89.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주요 이용층인 3~5등급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표 4-33-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기관 직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50.2	43.3	6.0	0.5	0.0	100.0	(51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50.0	45.7	2.4	1.8	0.0	100.0	(164)
여성	50.1	42.1	7.7	0.0	0.0	100.0	(349)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2]
30~39세	80.0	20.0	0.0	0.0	0.0	100.0	(5)[2]
40~49세	42.6	54.4	1.5	1.5	0.0	100.0	(68)
50~59세	53.8	38.6	7.1	0.5	0.0	100.0	(210)
60~69세	47.9	43.8	8.3	0.0	0.0	100.0	(169)
70~79세	45.5	52.3	0.0	2.3	0.0	100.0	(44)
80세 이상	53.3	33.3	13.3	0.0	0.0	100.0	(1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6.3	47.8	5.9	0.0	0.0	100.0	(136)
여성	51.5	41.6	6.1	0.8	0.0	100.0	(37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8)[2]
65~69세	31.3	31.3	37.5	0.0	0.0	100.0	(16)
70~74세	50.0	42.3	7.7	0.0	0.0	100.0	(26)
75~79세	41.9	55.4	1.4	1.4	0.0	100.0	(74)
80~84세	54.2	40.0	5.8	0.0	0.0	100.0	(155)
85~89세	54.1	39.9	5.4	0.7	0.0	100.0	(148)
90세 이상	46.4	46.4	6.0	1.2	0.0	100.0	(8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8.0	47.4	4.1	0.6	0.0	100.0	(171)
중소도시	50.0	42.6	6.4	1.0	0.0	100.0	(202)
농어촌	52.5	39.6	7.9	0.0	0.0	100.0	(13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0.0	0.0	0.0	(0)[2]
2등급	46.2	38.5	15.4	0.0	0.0	100.0	(13)
3등급	52.0	41.2	5.9	1.0	0.0	100.0	(102)
4등급	48.8	45.7	5.0	0.4	0.0	100.0	(258)
5등급	53.2	38.1	7.9	0.8	0.0	100.0	(126)
인지지원등급	33.3	60.0	6.7	0.0	0.0	100.0	(15)

주: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가족 5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3-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5.5	42.7	8.6	3.2	0.1	100.0	(51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6.0	44.8	6.1	3.1	0.0	100.0	(164)
여성	45.1	41.7	9.8	3.2	0.3	100.0	(349)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2]
30~39세	50.0	0.0	33.3	16.7	0.0	100.0	(5)[2]
40~49세	41.2	51.5	4.4	2.9	0.0	100.0	(68)
50~59세	49.0	37.1	10.0	3.3	0.5	100.0	(210)
60~69세	42.0	44.4	10.1	3.6	0.0	100.0	(169)
70~79세	44.4	53.3	2.2	0.0	0.0	100.0	(44)
80세 이상	50.0	43.8	6.3	0.0	0.0	100.0	(1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1.5	48.1	8.1	2.2	0.0	100.0	(136)
여성	47.1	40.7	8.5	3.5	0.3	100.0	(37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7.5	50.0	12.5	0.0	0.0	100.0	(8)[2]
65~69세	31.3	31.3	37.5	0.0	0.0	100.0	(16)
70~74세	50.0	34.6	11.5	3.8	0.0	100.0	(26)
75~79세	38.7	53.3	6.7	1.3	0.0	100.0	(74)
80~84세	49.0	38.7	8.4	3.9	0.0	100.0	(155)
85~89세	49.7	40.9	4.0	4.7	0.7	100.0	(148)
90세 이상	39.8	48.2	9.6	2.4	0.0	100.0	(8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0.9	47.4	7.6	4.1	0.0	100.0	(171)
중소도시	45.5	42.6	10.4	1.5	0.0	100.0	(202)
농어촌	50.7	37.1	7.1	4.3	0.7	100.0	(13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0.0	0.0	0.0	(0)[2]
2등급	50.0	33.3	0.0	16.7	0.0	100.0	(13)
3등급	45.5	40.6	11.9	2.0	0.0	100.0	(102)
4등급	44.4	45.9	6.2	3.5	0.0	100.0	(258)
5등급	48.4	39.7	10.3	1.6	0.0	100.0	(126)
인지지원등급	26.7	40.0	20.0	6.7	6.7	100.0	(15)

주: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가족 5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 규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3-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7.8	45.6	6.1	0.6	0.0	100.0	(51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6.7	49.1	4.2	0.0	0.0	100.0	(164)
여성	48.3	44.0	6.9	0.9	0.0	100.0	(349)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2]
30~39세	80.0	20.0	0.0	0.0	0.0	100.0	(5)[2]
40~49세	39.7	57.4	2.9	0.0	0.0	100.0	(68)
50~59세	51.9	39.5	8.6	0.0	0.0	100.0	(210)
60~69세	43.2	49.7	5.3	1.8	0.0	100.0	(169)
70~79세	50.0	50.0	0.0	0.0	0.0	100.0	(44)
80세 이상	60.0	26.7	13.3	0.0	0.0	100.0	(1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4.9	49.3	3.7	2.2	0.0	100.0	(136)
여성	48.8	44.3	6.9	0.0	0.0	100.0	(37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8)[2]
65~69세	31.3	37.5	18.8	12.5	0.0	100.0	(16)
70~74세	46.2	46.2	7.7	0.0	0.0	100.0	(26)
75~79세	40.0	54.7	4.0	1.3	0.0	100.0	(74)
80~84세	53.5	39.4	7.1	0.0	0.0	100.0	(155)
85~89세	49.0	45.0	6.0	0.0	0.0	100.0	(148)
90세 이상	43.4	51.8	4.8	0.0	0.0	100.0	(8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5.9	48.8	3.5	1.8	0.0	100.0	(171)
중소도시	46.5	47.0	6.4	0.0	0.0	100.0	(202)
농어촌	51.8	39.6	8.6	0.0	0.0	100.0	(13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0.0	0.0	0.0	(0)[2]
2등급	46.2	38.5	15.4	0.0	0.0	100.0	(13)
3등급	46.5	44.6	6.9	2.0	0.0	100.0	(102)
4등급	47.9	47.5	4.2	0.4	0.0	100.0	(258)
5등급	49.2	42.1	8.7	0.0	0.0	100.0	(126)
인지지원등급	33.3	60.0	6.7	0.0	0.0	100.0	(15)

주: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가족 5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3-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주야간보호(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47.0	46.1	6.5	0.4	0.0	100.0	(51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47.0	49.4	3.7	0.0	0.0	100.0	(164)
여성	46.8	44.8	7.8	0.6	0.0	100.0	(349)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2)[2]
30~39세	80.0	20.0	0.0	0.0	0.0	100.0	(5)[2]
40~49세	39.7	57.4	2.9	0.0	0.0	100.0	(68)
50~59세	51.4	39.5	9.0	0.0	0.0	100.0	(210)
60~69세	42.9	50.6	5.4	1.2	0.0	100.0	(169)
70~79세	45.5	54.5	0.0	0.0	0.0	100.0	(44)
80세 이상	60.0	26.7	13.3	0.0	0.0	100.0	(15)
이용자의 성별							
남성	43.4	50.0	5.1	1.5	0.0	100.0	(136)
여성	48.3	44.8	6.9	0.0	0.0	100.0	(377)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50.0	50.0	0.0	0.0	0.0	100.0	(8)[2]
65~69세	31.3	37.5	18.8	12.5	0.0	100.0	(16)
70~74세	48.1	40.7	11.1	0.0	0.0	100.0	(26)
75~79세	38.7	58.7	2.7	0.0	0.0	100.0	(74)
80~84세	51.9	40.9	7.1	0.0	0.0	100.0	(155)
85~89세	49.7	43.0	7.4	0.0	0.0	100.0	(148)
90세 이상	42.2	53.0	4.8	0.0	0.0	100.0	(84)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3.3	50.3	5.3	1.2	0.0	100.0	(171)
중소도시	46.3	48.8	4.9	0.0	0.0	100.0	(202)
농어촌	52.5	37.4	10.1	0.0	0.0	100.0	(13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0.0	0.0	0.0	0.0	0.0	(0)[2]
2등급	46.2	38.5	15.4	0.0	0.0	100.0	(13)
3등급	47.5	44.6	5.9	2.0	0.0	100.0	(102)
4등급	46.1	48.8	5.0	0.0	0.0	100.0	(258)
5등급	50.0	41.3	8.7	0.0	0.0	100.0	(126)
인지지원등급	35.7	57.1	7.1	0.0	0.0	100.0	(15)
2019년	57.5	37.2	4.2	1.1	0.0	100.0	(560)

주: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가족 51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마. 단기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사례수는 16명으로, 만족도 분석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다.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83.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84.0%, 서비스 내용 83.8%,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58.2% 순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성별 분석에 대한 해석은 생략한다.

〈표 4-34-①〉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직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2.9	51.1	15.9	0.0	0.2	100.0	(16)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5.0	25.0	0.0	0.0	0.0	100.0	(4)[2]
여성	18.2	63.6	18.2	0.0	0.0	100.0	(1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30~39세	0.0	0.0	0.0	0.0	0.0	0.0	(0)[2]
40~49세	33.3	66.7	0.0	0.0	0.0	100.0	(3)[2]
50~59세	50.0	0.0	50.0	0.0	0.0	100.0	(4)[2]
60~69세	28.6	71.4	0.0	0.0	0.0	100.0	(7)[2]
70~79세	0.0	0.0	0.0	0.0	0.0	0.0	(0)[2]
80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6.7	50.0	33.3	0.0	0.0	100.0	(6)[2]
여성	44.4	55.6	0.0	0.0	0.0	100.0	(9)[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2]
65~6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0~74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5~7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80~84세	0.0	0.0	100.0	0.0	0.0	100.0	(2)[2]
85~8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90세 이상	25.0	75.0	0.0	0.0	0.0	100.0	(4)[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5.0	25.0	50.0	0.0	0.0	100.0	(4)[2]
중소도시	33.3	66.7	0.0	0.0	0.0	100.0	(9)[2]
농어촌	50.0	50.0	0.0	0.0	0.0	100.0	(2)[2]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00.0	0.0	0.0	0.0	100.0	(2)[2]
2등급	0.0	100.0	0.0	0.0	0.0	100.0	(1)[2]
3등급	50.0	50.0	0.0	0.0	0.0	100.0	(2)[2]
4등급	40.0	40.0	20.0	0.0	0.0	100.0	(10)
5등급	0.0	0.0	0.0	0.0	0.0	0.0	(0)[2]

주: 1) 단기보호 이용자의 가족 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4-②〉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2.6	25.6	29.1	12.6	0.2	100.0	(16)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5.0	25.0	0.0	0.0	0.0	100.0	(4)[2]
여성	18.2	27.3	36.4	18.2	0.0	100.0	(1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30~39세	0.0	0.0	0.0	0.0	0.0	0.0	(0)[2]
40~49세	33.3	0.0	66.7	0.0	0.0	100.0	(3)[2]
50~59세	50.0	0.0	50.0	0.0	0.0	100.0	(4)[2]
60~69세	28.6	42.9	0.0	28.6	0.0	100.0	(7)[2]
70~79세	0.0	0.0	0.0	0.0	0.0	0.0	(0)[2]
80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6.7	50.0	33.3	0.0	0.0	100.0	(6)[2]
여성	44.4	11.1	22.2	22.2	0.0	100.0	(9)[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2]
65~6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0~74세	0.0	0.0	100.0	0.0	0.0	100.0	(2)[2]
75~7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80~84세	0.0	0.0	100.0	0.0	0.0	100.0	(2)[2]
85~8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90세 이상	25.0	25.0	0.0	50.0	0.0	100.0	(4)[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5.0	25.0	50.0	0.0	0.0	100.0	(4)[2]
중소도시	33.3	22.2	22.2	22.2	0.0	100.0	(9)[2]
농어촌	50.0	50.0	0.0	0.0	0.0	100.0	(2)[2]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00.0	0.0	0.0	0.0	100.0	(2)[2]
2등급	0.0	100.0	0.0	0.0	0.0	100.0	(1)[2]
3등급	50.0	50.0	0.0	0.0	0.0	100.0	(2)[2]
4등급	40.0	0.0	40.0	20.0	0.0	100.0	(10)
5등급	0.0	0.0	0.0	0.0	0.0	0.0	(0)[2]

주: 1) 단기보호 이용자의 가족 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4-③〉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서비스 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2.9	50.9	15.6	0.5	0.2	100.0	(16)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5.0	25.0	0.0	0.0	0.0	100.0	(4)[2]
여성	18.2	63.6	18.2	0.0	0.0	100.0	(1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30~39세	0.0	0.0	0.0	0.0	0.0	0.0	(0)[2]
40~49세	33.3	66.7	0.0	0.0	0.0	100.0	(3)[2]
50~59세	50.0	0.0	50.0	0.0	0.0	100.0	(4)[2]
60~69세	28.6	71.4	0.0	0.0	0.0	100.0	(7)[2]
70~79세	0.0	0.0	0.0	0.0	0.0	0.0	(0)[2]
80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6.7	50.0	33.3	0.0	0.0	100.0	(6)[2]
여성	44.4	55.6	0.0	0.0	0.0	100.0	(9)[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2]
65~6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0~74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5~7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80~84세	0.0	0.0	100.0	0.0	0.0	100.0	(2)[2]
85~8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90세 이상	25.0	75.0	0.0	0.0	0.0	100.0	(4)[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5.0	25.0	50.0	0.0	0.0	100.0	(4)[2]
중소도시	33.3	66.7	0.0	0.0	0.0	100.0	(9)[2]
농어촌	50.0	50.0	0.0	0.0	0.0	100.0	(2)[2]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00.0	0.0	0.0	0.0	100.0	(2)[2]
2등급	0.0	100.0	0.0	0.0	0.0	100.0	(1)[2]
3등급	50.0	50.0	0.0	0.0	0.0	100.0	(2)[2]
4등급	40.0	40.0	20.0	0.0	0.0	100.0	(10)
5등급	0.0	0.0	0.0	0.0	0.0	0.0	(0)[2]

주: 1) 단기보호 이용자의 가족 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34-④〉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단기보호(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명)	
전체	32.9	50.9	15.6	0.5	0.2	100.0	(16)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75.0	25.0	0.0	0.0	0.0	100.0	(4)[2]
여성	18.2	63.6	18.2	0.0	0.0	100.0	(1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0.0	0.0	0.0	0.0	(0)[2]
30~39세	0.0	0.0	0.0	0.0	0.0	0.0	(0)[2]
40~49세	33.3	66.7	0.0	0.0	0.0	100.0	(3)[2]
50~59세	50.0	0.0	50.0	0.0	0.0	100.0	(4)[2]
60~69세	28.6	71.4	0.0	0.0	0.0	100.0	(7)[2]
70~79세	0.0	0.0	0.0	0.0	0.0	0.0	(0)[2]
80세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6.7	50.0	33.3	0.0	0.0	100.0	(6)[2]
여성	44.4	55.6	0.0	0.0	0.0	100.0	(9)[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1)[2]
65~69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0~74세	0.0	100.0	0.0	0.0	0.0	100.0	(2)[2]
75~7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80~84세	0.0	0.0	100.0	0.0	0.0	100.0	(2)[2]
85~89세	100.0	0.0	0.0	0.0	0.0	100.0	(2)[2]
90세 이상	25.0	75.0	0.0	0.0	0.0	100.0	(4)[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5.0	25.0	50.0	0.0	0.0	100.0	(4)[2]
중소도시	33.3	66.7	0.0	0.0	0.0	100.0	(9)[2]
농어촌	50.0	50.0	0.0	0.0	0.0	100.0	(2)[2]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00.0	0.0	0.0	0.0	100.0	(2)[2]
2등급	0.0	100.0	0.0	0.0	0.0	100.0	(1)[2]
3등급	50.0	50.0	0.0	0.0	0.0	100.0	(2)[2]
4등급	40.0	40.0	20.0	0.0	0.0	100.0	(10)
5등급	0.0	0.0	0.0	0.0	0.0	0.0	(0)[2]
2019년	34.0	37.7	15.1	6.3	6.8	100.0	(33)

주: 1) 단기보호 이용자의 가족 16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바. 불만족 사유

이용한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하여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229명), 그 이유를 복수응답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75.1%는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하였으며, 필요한 시간(야간, 주말 등)에 이용이 어려워서 32.8%,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13.8%, 필요한 서비스(전문적인 의료 또는 간호)를 받지 못해서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 가족의 다수는 필요시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서비스량 불충분 및 필요한 시간대에 이용 어려움)를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하였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 여성 응답자는 남성과 비교하여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불만족을(16.1%) 높게 지적하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 미제공(8.4%), 필요한 시간대 이용 어려움(34.2%)을 여성 응답자에 비해 높게 지적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파악한 결과, 전체적 경향성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 항목들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40대 응답자는 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12.6%), 50대 응답자는 필요한 시간대 이용의 어려움(39.2%)을 타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지적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서비스 이용 욕구 역시 다양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서비스량 불충분(82.5%) 또는 필요한 시간대 이용 어려움(42.7%)등을 높게 지적한 반면 여성 이용자 가족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불만(16.0%)을 높게 지적하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서비스량 불충분은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에게서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지 및 기능상태 저하에 따라 다양한 수발 욕구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량 불충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경우, 장기요양 직원에 대한 불만(16.8%) 또는 필요한 서비스 미제공(11.7%)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지적하였다. 반면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의 경우, 필요한 시간대 이용의 어려움(42.5%)을 높게 지적하여 지역간 차이를 나타낸다. 농어촌지역 이용자의 경우, 가족과 원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등급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4-3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급여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불만	재가급여 이용시간 불충분	재가급여 내용의 제한성	재가급여 낮은 질적 수준	필요한 시간에 이용어려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기타[3]	계(명)
전체	13.8	75.1	6.5	4.8	32.8	2.8	0.9	(229)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0.9	75.6	8.4	5.3	34.2	3.7	1.9	(102)
여성	16.1	74.8	5.0	4.4	31.6	2.1	0.0	(12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2)[2]
30~39세	0.0	76.3	4.5	0.0	23.7	0.0	0.0	(4)[2]
40~49세	12.6	81.0	3.8	12.6	36.4	0.1	0.0	(17)
50~59세	8.6	79.5	6.3	1.5	39.2	4.1	2.3	(84)
60~69세	18.6	70.5	5.0	3.1	28.1	2.4	0.0	(91)
70~79세	5.0	74.7	10.6	10.8	21.2	0.0	0.0	(18)
80세 이상	17.9	67.7	1.6	5.3	27.8	6.5	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3.8	82.5	7.9	0.0	42.7	2.9	0.0	(41)
여성	16.0	73.5	6.2	5.8	30.7	2.8	1.0	(188)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45.8	8.3	0.0	95.8	0.0	45.8	(4)[2]
65~69세	0.0	64.8	0.0	0.0	36.7	0.0	0.0	(12)
70~74세	15.2	78.8	0.0	11.7	29.7	0.0	0.0	(17)
75~79세	25.6	71.1	0.0	11.6	36.4	2.6	0.0	(24)
80~84세	15.2	81.7	5.8	6.1	35.8	0.7	0.0	(57)
85~89세	17.0	68.2	6.6	0.0	33.5	4.1	0.0	(76)
90세 이상	3.1	86.6	16.2	7.1	17.5	6.1	0.0	(38)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6.8	76.4`	11.7	5.4	24.7	2.8	0.0	(75)
중소도시	11.0	72.4	0.5	3.0	30.0	0.2	2.7	(71)
농어촌	13.4	76.4	7.0	5.8	42.5	5.1	0.0	(83)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2.6	72.1	4.7	25.6	4.6	2.6	0.0	(8)[2]
2등급	14.2	56.8	6.6	1.2	33.5	5.3	0.0	(13)
3등급	12.9	77.6	8.3	0.9	35.9	8.2	2.9	(67)
4등급	13.5	77.9	6.8	7.0	32.9	0.0	0.0	(118)
5등급	23.0	63.2	0.0	0.0	34.1	0.1	0.0	(21)
인지지원등급	0.0	100.0	0.0	0.0	0.0	0.0	0.0	(1)[2]
2019년	12.4	47.4	7.1	4.3	18.7	8.0	2.1	(149)

주: 1) 장기요양급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29명의 자료를 분석(중복응답)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기타에는 '생각해 본 적 없음, 모르겠음 등'이 포함됨

3. 향후 이용자 돌봄 의향 및 재가급여 개선

재가급여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시 돌봄 장소에 대해 파악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39.3%, 현재 집 29.5%, 요양병원 25.3%,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 근처 4.5%,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에 있어 노인요양시설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성 응답자가 41.0%로 남성 응답자(36.2%)에 비해 높은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응답은 남성 응답자가 32.8%로 여성 응답자(27.7%)에 비해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희망하는 응답은 50대가 42.9%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응답은 80세 이상이 46.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30세 미만 제외).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노화에 따른 수발 가능 정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나 요양병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 이용자 가족(27.4%)이 여성 이용자 가족(24.5%)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 이용자 가족의 응답이 45.2%로 타 연령대의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동 응답의 경우, 65~69세 이용자 가족의 경우 36.1%였던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은 26.7%이다. 고령 이용자일수록 상시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응답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응답에 있어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비율이 32.6%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26.6%, 29.0%)보다 높다. 등급에 따라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대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응답이(1등급: 51.5%, 5등급: 23.8%),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응답이(1등급: 13.2%, 5등급: 46.5%)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는 서비스 제공자 외 가족 돌봄 제공에 대한 부담, 급여유형(시설·재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증 이용자 가족의 재가급여에 대한 선호, 경증 이용자 가족의 시설급여에 대한 선호 경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4-36〉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 건강상태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	자녀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	노인요양 시설	요양병원	기타[3]	계(명)	
전체	29.5	4.5	39.3	25.3	1.4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2.8	2.9	36.2	26.3	1.9	100.0	(876)
여성	27.7	5.4	41.0	24.8	1.1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77.8	0.0	11.1	11.1	0.0	100.0	(9)[2]
30~39세	26.7	6.7	36.7	30.0	0.0	100.0	(30)
40~49세	28.6	3.8	38.7	27.1	1.9	100.0	(267)
50~59세	22.9	6.1	42.9	26.2	1.9	100.0	(799)
60~69세	27.5	4.6	39.7	26.8	1.4	100.0	(790)
70~79세	41.6	2.9	37.7	16.8	1.0	100.0	(310)
80세 이상	46.6	0.6	25.8	26.4	0.6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29.8	1.2	40.2	27.4	1.4	100.0	(647)
여성	29.4	5.7	38.9	24.5	1.4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3.3	0.0	45.2	21.4	0.0	100.0	(42)
65~69세	36.1	0.9	38.9	22.2	1.9	100.0	(107)
70~74세	31.4	4.1	37.2	24.4	2.9	100.0	(173)
75~79세	33.5	2.2	35.4	28.0	0.9	100.0	(325)
80~84세	30.8	6.7	37.1	24.1	1.3	100.0	(685)
85~89세	26.0	3.8	41.5	27.1	1.5	100.0	(649)
90세 이상	26.7	5.2	42.9	23.9	1.2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2.6	3.5	40.0	23.0	1.0	100.0	(832)
중소도시	26.6	4.5	39.6	27.3	2.1	100.0	(730)
농어촌	29.0	5.5	38.3	25.9	1.3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1.5	2.9	13.2	29.4	2.9	100.0	(69)
2등급	42.8	0.6	34.9	19.9	1.8	100.0	(166)
3등급	29.6	3.7	39.1	26.4	1.3	100.0	(623)
4등급	27.9	5.1	39.7	26.3	1.1	100.0	(1,224)
5등급	23.8	5.9	46.5	21.3	2.4	100.0	(286)
인지지원등급	26.7	6.7	46.7	20.0	0.0	100.0	(15)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19년도와 비교하여 선택지 변경으로 인해 비교 불가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기타에는 '생각해 본 적 없음, 모르겠음 등'이 포함됨

지속적인 재가 거주를 위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재가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기존 재가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가 36.5%로 가장 높고, 1일 다회서비스와 같은 제공형태 다양화 18.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8.0%, 단기보호기관 확대 13.5%, 치매전담기관 확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나, 1일 다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은 남성 응답자가 20.8%로 여성 응답자(16.8%)보다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기존 재가서비스량 확대는 30대(51.7%), 1일 다회서비스 제공은 40대(24.3%) 응답자에게서 높다. 비교적 저연령대의 응답자(이용자 가족)는 서비스량 확대 및 제공방식 다양화 등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 이용자 가족에게서 기존 서비스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8.6%로 여성 이용자 가족(35.6%)에 비해 높은 반면 1일 다회서비스 필요에 대한 응답은 여성 이용자 가족이 18.9%로 남성 이용자 가족(1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기존 재가서비스량 확대에 대한 응답이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에게서 41.4%로 타 연령대 가족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1일 다회서비스 필요에 대한 응답은 70~74세 이용자의 가족 27.7%, 65~69 이용자의 가족 25.0% 순으로 높다. 이용자 연령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결과로 간주된다.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은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에게서 20.9%로 중소도시(17.0%), 농어촌(16.1%)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2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기존 서비스량 확대(40.6%), 방문간호 기관 확대(27.3%)에 대한 응답이, 1등급 이용자 가족은 단기보호 확대(22.1%)에 대한 응답이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중증 등급일수록 수발지원 및 의료적 처치 등에 대한 욕구가 보다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 이용자의 가족들 역시 이로 인한 돌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표 4-37〉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치매 전담 기관 확대	1일 다회 서비스	방문 간호 제공 기관 확대	단기 보호 확대	기존 재가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기타[3]	계(명)	
전체	11.7	18.3	18.0	13.5	36.5	2.1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1.7	20.8	17.0	11.4	36.5	2.6	100.0	(876)
여성	11.7	16.8	18.6	14.7	36.5	1.8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22.2	0.0	22.2	33.3	22.2	0.0	100.0	(9)[2]
30~39세	0.0	17.2	20.7	6.9	51.7	3.4	100.0	(30)
40~49세	12.4	24.3	15.7	13.5	31.5	2.6	100.0	(267)
50~59세	11.4	19.9	19.1	12.8	35.2	1.6	100.0	(799)
60~69세	12.5	16.5	16.6	14.3	38.9	1.1	100.0	(790)
70~79세	8.4	16.8	19.4	13.9	38.5	2.9	100.0	(310)
80세 이상	14.7	13.6	19.8	13.0	33.3	5.6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10.8	16.7	17.8	13.6	38.6	2.5	100.0	(647)
여성	12.0	18.9	18.1	13.4	35.6	2.0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6.7	19.0	23.8	9.5	26.2	4.8	100.0	(42)
65~69세	6.5	25.0	17.6	14.8	35.2	0.9	100.0	(107)
70~74세	11.0	27.7	12.7	13.9	30.6	4.0	100.0	(173)
75~79세	12.3	18.7	19.3	15.0	29.4	5.2	100.0	(325)
80~84세	11.1	18.5	17.2	11.8	39.9	1.5	100.0	(685)
85~89세	11.9	16.8	21.0	14.5	35.6	0.3	100.0	(649)
90세 이상	13.2	14.0	15.5	13.2	41.4	2.7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0.8	19.6	20.9	13.2	34.7	0.7	100.0	(832)
중소도시	12.6	15.6	17.0	13.6	37.7	3.4	100.0	(730)
농어촌	11.6	19.4	16.1	13.5	37.1	2.3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5.9	17.6	20.6	22.1	33.8	0.0	100.0	(69)
2등급	10.9	12.7	27.3	6.7	40.6	1.8	100.0	(166)
3등급	9.1	19.7	20.8	12.8	35.4	2.1	100.0	(623)
4등급	11.4	18.8	15.9	14.3	37.2	2.5	100.0	(1,224)
5등급	19.6	17.1	14.3	13.3	34.3	1.4	100.0	(286)
인지지원등급	21.4	7.1	28.6	7.1	35.7	0.0	100.0	(15)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기타에는 '생각해 본 적 없음, 모르겠음 등'이 포함됨

지속적인 재가 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30.1%, 방문형 의료서비스 26.1%, 이동 지원 22.3%, 주택 수리 지원 10.4%, 야간 순회 서비스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남성 응답자가 35.4%로 여성 응답자(27.1%)에 비해 높고, 병원 방문 및 외출에 필요한 차량지원에 대한 욕구는 여성 응답자(24.4%)가 남성 응답자(1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욕구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차량 지원에 대한 욕구는 70세 이상의 응답자에게서(70대 28.4%, 80세 이상 28.7%), 방문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비교적 저연령대의 응답자(30대 33.3%, 40대 26.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 이용자 가족은 이동 지원(26.7%)을 여성 이용자 가족(20.6%)에 비해, 여성 이용자 가족은 식사 및 영양관리서비스(32.0%)를 남성 이용자 가족(25.2%)에 비해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80세 이상 이용자의 가족들에게서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70세 미만의 비교적 저연령대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높게 나타나(65세 미만 31.0%, 65~69세 36.4%)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의 가족들의 경우,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과 비교하여 주택수리 지원(13.4%), 야간 순회서비스(9.8%)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많다는 점,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과의 낮은 접근성 등에 따라 이같은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 이용자 가족은 방문형 의료서비스(43.5%), 2등급 이용자 가족은 이동 지원(29.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등급 이용자 가족은 식사 및 영양관리서비스(34.6%)에 대한 욕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표 4-38〉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식사 영양 서비스	차량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야간 순회 서비스	방문형 의료 서비스	기타[3]	계(명)	
전체	30.1	22.3	10.4	8.7	26.1	2.4	100.0	(2,382)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5.4	18.6	9.9	7.8	25.2	3.1	100.0	(876)
여성	27.1	24.4	10.7	9.2	26.5	2.0	100.0	(1,507)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30.0	0.0	20.0	10.0	30.0	10.0	100.0	(9)[2]
30~39세	3.3	30.0	10.0	16.7	33.3	6.7	100.0	(30)
40~49세	31.6	22.9	6.8	10.2	26.7	1.9	100.0	(267)
50~59세	30.7	21.2	11.5	8.8	26.5	1.4	100.0	(799)
60~69세	32.4	19.2	11.1	9.5	25.2	2.5	100.0	(790)
70~79세	23.2	28.4	10.3	6.8	26.5	4.8	100.0	(310)
80세 이상	32.0	28.7	7.3	5.1	24.7	2.2	100.0	(178)
이용자의 성별								
남성	25.2	26.7	9.9	8.8	26.5	2.9	100.0	(647)
여성	32.0	20.6	10.7	8.6	25.9	2.2	100.0	(1,735)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1.4	33.3	4.8	7.1	31.0	2.4	100.0	(42)
65~69세	22.4	28.0	4.7	5.6	36.4	2.8	100.0	(107)
70~74세	27.7	29.5	12.7	5.8	19.7	4.6	100.0	(173)
75~79세	26.9	22.2	13.0	11.1	24.1	2.8	100.0	(325)
80~84세	30.4	23.4	11.1	7.7	25.6	1.8	100.0	(685)
85~89세	34.2	19.2	9.7	9.5	25.4	2.0	100.0	(649)
90세 이상	30.2	19.5	9.5	9.0	28.9	3.0	100.0	(401)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30.5	23.4	8.1	7.9	28.2	1.8	100.0	(832)
중소도시	29.3	24.6	9.7	8.3	25.4	2.6	100.0	(730)
농어촌	30.5	19.0	13.4	9.8	24.4	2.9	100.0	(820)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17.4	24.6	7.2	5.8	43.5	1.4	100.0	(69)
2등급	19.3	29.5	10.8	8.4	28.3	3.6	100.0	(166)
3등급	26.2	24.9	7.7	9.1	29.9	2.2	100.0	(623)
4등급	33.2	20.6	11.2	8.4	24.1	2.5	100.0	(1,224)
5등급	34.6	19.2	12.9	9.8	21.3	2.1	100.0	(286)
인지지원등급	40.0	13.3	13.3	13.3	20.0	0.0	100.0	(15)

주: 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2,3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문항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기타에는 '생각해 본 적 없음, 모르겠음 등'이 포함됨

제3절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본 절에서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595명)을 중심으로 돌봄 제공 및 부담 정도, 시설급여 이용 만족도, 시설급여 개선 항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돌봄 제공 및 부담 정도

지난 1년간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서비스를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측면에서 제공 횟수와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는 월 1~3회 32.8%, 주 1회 이상(주1~2회, 3회 이상) 32.6%, 연 5회 이하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중 약 2/3는 월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연5회 이하 또는 지난 1년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24.8%를 차지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결과이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1회 이상의 정서적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34.3%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남성 응답자는 30.5%로 약간의 차이를 둔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70세를 전후로 경향성을 달리한다. 사례수가 적은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70세까지는 주1회 이상 빈번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70대 이후 70~79세 응답자는 22.8%, 80세 이상 응답자는 25.0%로 70세 이전 응답자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 아울러 7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정서적 지원 교류가 거의 없다는 비율(연5회 이하 및 없음) 역시 높게 나타난다(31.5%, 41.7%).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이용자 성별에 따라 여성 이용자의 가족에게서 주1회 이상보다 빈번한 정서적 지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29.8%, 여성 33.4%).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주1회 이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응답 역시 높다.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비율이 28.5%로 경향성을 달리한다. 이용자 연령대 감안시,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정서적 교류가 원활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동 연령대 이용자 가족에게서 교류가 거의 없다는 비율(연5회 이하 및 없음) 역시 27.2%라는 점에서, 정서적 고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적절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지역별로는 주1회 이상 정서적 지원 비율이 농어촌지역 이용자의 가족의 경우 281.%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낮다(33.8%, 36.5%). 등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빈번한 정서적 지원 비율이 낮다. 아울러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연 5회 이하 또는 최근 1년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40.9%를 차지한다. 이용자 연령대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게 중증 이용자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정서적 고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9〉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 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14.7	17.9	32.8	9.8	15.1	9.7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14.5	16.0	34.2	10.5	15.3	9.5	100.0 (275)
여성	15.0	19.3	31.5	9.3	15.0	10.0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0.0	50.0	0.0	0.0	100.0 (2)[3]
30~39세	13.3	13.3	40.0	13.3	6.7	13.3	100.0 (15)
40~49세	13.9	19.0	31.6	11.4	16.5	7.6	100.0 (79)
50~59세	14.8	18.4	33.2	9.9	13.5	10.3	100.0 (223)
60~69세	16.8	18.3	32.7	8.2	16.3	7.7	100.0 (208)
70~79세	8.8	14.0	33.3	12.3	14.0	17.5	100.0 (57)
80세 이상	8.3	16.7	25.0	8.3	25.0	16.7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4.5	15.3	30.6	11.3	15.3	12.9	100.0 (124)
여성	14.8	18.6	33.3	9.5	14.8	8.9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6.3	6.3	37.5	12.5	18.8	18.8	100.0 (16)
65~69세	11.1	16.7	33.3	11.1	11.1	16.7	100.0 (18)
70~74세	17.5	7.5	30.0	15.0	17.5	12.5	100.0 (40)
75~79세	12.9	22.6	29.0	9.7	19.4	6.5	100.0 (62)
80~84세	15.3	19.7	35.0	8.0	12.4	9.5	100.0 (137)
85~89세	16.4	20.9	32.2	8.5	14.7	7.3	100.0 (177)
90세 이상	12.9	15.6	32.7	11.6	15.6	11.6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16.6	17.2	29.8	9.3	17.9	9.3	100.0 (151)
중소도시	15.3	21.2	32.9	9.0	11.3	10.4	100.0 (222)
농어촌	12.9	15.2	34.4	11.2	17.0	9.4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8	13.6	29.5	9.1	22.7	18.2	100.0 (44)
2등급	15.3	15.3	32.3	12.1	14.5	10.5	100.0 (124)
3등급	16.0	16.9	35.7	8.0	15.0	8.5	100.0 (213)
4등급	15.1	21.6	31.2	9.5	14.1	8.5	100.0 (199)
5등급	13.3	13.3	26.7	20.0	13.3	13.3	100.0 (15)
2019년	18.0	28.9	37.4	6.5	6.5	2.7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정서적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5.7%, 보통 34.8%, (매우) 부담된다 9.4%로 나타나 약 1/2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10.0%로 남성 응답자 8.8%에 비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빈번히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도 역시 높은 경향이다.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는 여성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10.1%로 남성 이용자 가족(7.3%)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10.1%, 9.6%)가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8.9%)에 비해 약간 높으나, 사례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용자 등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인정등급이 낮을수록 부담 정도 역시 낮은 경향이다.

〈표 4-40〉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0.7	8.7	34.8	37.3	18.4	100.0	(53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0.8	8.0	34.5	37.8	18.9	100.0	(249)
여성	0.7	9.3	34.9	37.0	18.0	100.0	(289)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50.0	0.0	50.0	100.0	(2)[3]
30~39세	0.0	0.0	41.7	16.7	41.7	100.0	(12)
40~49세	1.4	8.1	35.1	40.5	14.9	100.0	(74)
50~59세	0.0	8.5	34.5	37.5	19.5	100.0	(200)
60~69세	1.0	9.8	34.2	37.3	17.6	100.0	(193)
70~79세	2.1	8.5	34.0	38.3	17.0	100.0	(47)
80세 이상	0.0	9.1	45.5	36.4	9.1	100.0	(11)
이용자의 성별							
남성	1.8	5.5	34.9	38.5	19.3	100.0	(109)
여성	0.5	9.6	34.7	36.8	18.4	100.0	(429)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7.7	53.8	23.1	15.4	100.0	(13)
65~69세	0.0	6.7	53.3	33.3	6.7	100.0	(15)
70~74세	2.8	5.6	38.9	33.3	19.4	100.0	(36)
75~79세	0.0	12.1	31.0	41.4	15.5	100.0	(58)
80~84세	0.8	9.8	32.0	38.5	18.9	100.0	(122)
85~89세	0.0	8.5	32.9	39.6	18.9	100.0	(164)
90세 이상	1.5	7.6	36.4	34.1	20.5	100.0	(132)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0.7	9.4	33.3	39.9	16.7	100.0	(138)
중소도시	1.5	8.1	34.8	37.9	17.7	100.0	(198)
농어촌	0.0	8.9	36.0	35.0	20.2	100.0	(203)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10.8	35.1	35.1	18.9	100.0	(37)
2등급	0.9	7.1	37.5	38.4	16.1	100.0	(112)
3등급	1.0	8.8	33.5	38.1	18.6	100.0	(194)
4등급	0.5	9.2	34.8	35.9	19.6	100.0	(184)
5등급	0.0	7.1	28.6	42.9	21.4	100.0	(14)
2019년	2.5	16.3	36.4	33.4	11.5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 중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538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1.4%는 지난 1년간 없음, 26.3%는 월 1~3회, 20.5%는 연5회 이하, 연 6~11회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약 1/2은 연5회 이하로 드물게 일상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시기상,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급여 이용자와 가족간 접촉이 어려웠다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 1회 이상 일상생활 지원 제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가 37.8%로 남성 응답자(35.8%)에 비해 약간 높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70세까지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후 연령대의 경우, 해당 사례수가 매우 적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 차이 역시 적은 편이다. 다만 연5회 이하 또는 지난 1년간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0~84세 52.6%, 85~89세 50.0%, 90세 이상 55.4%를 차지한다. 고령 이용자의 경우, 병원 이용 등이 빈번할 수 있음에도 지난 1년간 가족을 통한 지원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기간 시설입소자의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의 가족(30.8%)이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38.8%, 42.0%)에 비해 월1회 이상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비율이 낮다. 이는 가족과 원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간 이동이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의 등급별로는 연5회 이하 또는 지난 1년간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1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72.1%로 높다. 앞서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분석에서와 같이, 중증 혹은 고령 이용자일수록 동 기간동안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 차원에서의 접촉 제한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동 기간 가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경험 축소(또는 부재)가 중증 혹은 고령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 횟수: 병원 동행,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연 6~11회	연5회 이하	없음	계(명)
전체	3.4	7.1	26.3	11.4	20.5	31.4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3	7.7	24.8	9.9	22.3	32.1	100.0 (275)
여성	3.4	6.8	27.6	12.4	18.9	30.7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50.0	0.0	50.0	0.0	100.0 (2)[3]
30~39세	0.0	0.0	35.7	7.1	21.4	35.7	100.0 (15)
40~49세	3.8	6.4	26.9	14.1	20.5	28.2	100.0 (79)
50~59세	3.6	7.6	25.9	10.7	17.9	34.4	100.0 (223)
60~69세	3.9	7.2	29.0	10.6	22.7	26.6	100.0 (208)
70~79세	1.8	7.0	15.8	14.0	24.6	36.8	100.0 (57)
80세 이상	0.0	8.3	16.7	8.3	16.7	5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4.8	4.8	27.4	11.3	22.6	29.0	100.0 (124)
여성	3.0	7.6	25.8	11.4	19.9	32.2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6.3	25.0	6.3	18.8	43.8	100.0 (16)
65~69세	5.9	5.9	29.4	11.8	5.9	41.2	100.0 (18)
70~74세	5.0	2.5	30.0	7.5	20.0	35.0	100.0 (40)
75~79세	1.6	9.8	31.1	13.1	19.7	24.6	100.0 (62)
80~84세	3.6	7.3	25.5	10.9	19.0	33.6	100.0 (137)
85~89세	3.4	9.0	27.5	10.1	20.8	29.2	100.0 (177)
90세 이상	2.7	4.7	23.0	14.2	23.6	31.8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0	9.2	27.6	7.9	17.8	35.5	100.0 (151)
중소도시	5.9	7.7	28.4	12.2	19.4	26.6	100.0 (222)
농어촌	2.2	5.4	23.2	12.5	23.7	33.0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3	4.7	16.3	4.7	23.3	48.8	100.0 (44)
2등급	2.4	7.2	28.0	12.0	16.8	33.6	100.0 (124)
3등급	3.8	7.5	25.0	10.8	22.2	30.7	100.0 (213)
4등급	4.0	6.5	29.6	12.1	20.6	27.1	100.0 (199)
5등급	0.0	7.7	15.4	23.1	23.1	30.8	100.0 (15)
2019년	8.1	13.7	33.0	9.3	17.7	18.1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최근 1년간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일상생활 지원 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1.1%, 보통 32.7%, (매우) 부담된다 16.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18.4%로 남성 응답자 13.5%에 비해 높아 정서적 지원 제공 부담과 유사한 경향을 드러낸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경향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제공 빈도수가 높은 연령대(30~40대)에서 부담 정도 역시 높은 경향이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17.5%로 남성 이용자 가족(12.5%)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가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경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이용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18.1%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정도(13,4%, 16.0%)에 비해 높다. 시설의 위치가 가족과 원거리임을 감안할 때, 해석 가능한 측면이다. 이용자 등급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다.

〈표 4-42〉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부담 정도: 병원 동행,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명)	
전체	2.6	13.6	32.7	34.5	16.6	100.0	(408)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7	10.8	33.3	34.4	18.8	100.0	(186)
여성	2.7	15.7	32.3	34.5	14.8	100.0	(223)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50.0	0.0	50.0	100.0	(2)[3]
30~39세	0.0	0.0	28.6	28.6	42.9	100.0	(7)[3]
40~49세	3.5	15.8	29.8	36.8	14.0	100.0	(57)
50~59세	2.0	16.3	32.7	32.0	17.0	100.0	(147)
60~69세	2.6	13.1	32.0	37.3	15.0	100.0	(153)
70~79세	5.7	5.7	34.3	31.4	22.9	100.0	(35)
80세 이상	0.0	12.5	50.0	25.0	12.5	100.0	(8)[3]
이용자의 성별							
남성	2.3	10.2	33.0	38.6	15.9	100.0	(88)
여성	2.8	14.7	32.5	33.4	16.6	100.0	(320)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2.5	12.5	37.5	12.5	25.0	100.0	(8)[3]
65~69세	0.0	18.2	45.5	27.3	9.1	100.0	(11)
70~74세	0.0	7.7	30.8	38.5	23.1	100.0	(26)
75~79세	4.4	20.0	33.3	26.7	15.6	100.0	(45)
80~84세	3.3	15.4	31.9	35.2	14.3	100.0	(91)
85~89세	0.8	12.8	33.6	35.2	17.6	100.0	(125)
90세 이상	2.0	11.0	31.0	38.0	18.0	100.0	(100)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0.0	13.4	32.0	38.1	16.5	100.0	(97)
중소도시	4.3	11.7	32.7	34.6	16.7	100.0	(162)
농어촌	2.7	15.4	33.6	31.5	16.8	100.0	(14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0.0	4.8	33.3	38.1	23.8	100.0	(21)
2등급	1.2	15.7	33.7	34.9	14.5	100.0	(83)
3등급	3.4	12.9	30.6	37.4	15.6	100.0	(147)
4등급	2.8	15.2	33.8	31.0	17.2	100.0	(145)
5등급	0.0	0.0	40.0	40.0	20.0	100.0	(10)
2019년	4.1	19.4	33.3	28.5	14.8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 중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 408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시설급여 이용 만족도

지난 1개월간 시설급여 이용자가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와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식사, 목욕 및 청결, 신체 및 인지기능 증진, 간호 및 의료, 시설 환경, 장기요양기관 직원, 비용(7종))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들은 83.1%가 시설급여에 대해 (매우)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시설 환경(86.2%), 장기요양기관 직원(85.6%), 목욕 및 청결서비스(85.0%), 간호 및 의료서비스(83.6%), 식사서비스(79.5%), 신체 및 인지기능 증진서비스(77.6%), 비용(62.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환경 및 인력, 신체수발 지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지출 발생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 식사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항목별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만족함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급여의 식사 서비스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81.0%로 여성 응답자(78.4)%에 비해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진다. 동 응답에 있어 40대의 만족도는 78.2%이었던 것에 비해, 70대의 만족도는 82.1%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대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대체로 저작 및 연하기능이 저하된 80세 이상 이용자의 가족들은 식사 서비스에 대해 80% 내외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2.8%로 농어촌 지역(79.1%), 대도시 지역(75.5%)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등급별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대체로 식사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4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응답이 23.5%인 반면 1등급 이용자 가족은 34.9%로 11.4% p 높다.

〈표 4-43-①〉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식사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4.6	54.9	17.5	2.6	0.3	4.0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4.1	56.9	17.2	1.5	0.4	4.0	100.0	(275)
여성	25.0	53.4	17.8	3.4	0.3	4.0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50.0	0.0	0.0	3.4	100.0	(2)[3]
30~39세	21.4	50.0	28.6	0.0	0.0	3.9	100.0	(15)
40~49세	21.8	56.4	16.7	5.1	0.0	3.9	100.0	(79)
50~59세	25.6	53.4	18.4	2.2	0.4	4.0	100.0	(223)
60~69세	25.4	56.0	15.8	2.4	0.5	4.0	100.0	(208)
70~79세	25.0	57.1	16.1	1.8	0.0	4.1	100.0	(57)
80세 이상	23.1	53.8	23.1	0.0	0.0	4.1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2.0	57.7	16.3	3.3	0.8	4.0	100.0	(124)
여성	25.2	54.2	17.8	2.5	0.2	4.0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8.8	56.3	12.5	6.3	6.3	3.9	100.0	(16)
65~69세	11.8	70.6	11.8	5.9	0.0	3.9	100.0	(18)
70~74세	22.5	52.5	20.0	5.0	0.0	3.9	100.0	(40)
75~79세	27.9	52.5	18.0	1.6	0.0	4.1	100.0	(62)
80~84세	24.6	53.6	20.3	0.7	0.7	4.0	100.0	(137)
85~89세	27.0	52.2	18.0	2.8	0.0	4.0	100.0	(177)
90세 이상	22.3	58.1	15.5	3.4	0.7	4.0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2	52.3	20.5	3.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25.8	57.0	14.5	2.3	0.5	4.1	100.0	(222)
농어촌	24.6	54.5	18.3	2.2	0.4	4.0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4.9	39.5	20.9	4.7	0.0	4.1	100.0	(44)
2등급	23.2	59.2	15.2	1.6	0.8	4.0	100.0	(124)
3등급	24.4	55.9	16.0	3.3	0.5	4.0	100.0	(213)
4등급	23.5	54.0	19.5	2.5	0.5	4.0	100.0	(199)
5등급	26.7	60.0	13.3	0.0	0.0	4.1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나. 목욕 및 청결서비스 만족도

시설급여의 목욕 및 청결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86.1%로 여성 응답자(8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다. 40대 응답자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1.3%이었던 것에 비하여 70세 응답자의 만족도는 85.7%이다.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는 여성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85.2%로 남성 이용자 가족(83.2%)에 비해 높다.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지역별로는 앞선 항목의 만족도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이용자 가족이 목욕 및 청결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87.7%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대도시 81.4%, 농어촌 83.9%)에 비해 높다. 등급별로는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목욕 및 청결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비율이 36.4%이었던 반면 4등급 이용자 가족은 24.0%로 나타났다. 중증 등급일수록 신체 수발 지원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족들 역시 그에 상응한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3-②〉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목욕 및 청결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5.5	59.5	14.1	0.6	0.2	4.1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5.5	60.6	13.5	0.4	0.0	4.1	100.0	(275)
여성	25.5	58.6	14.6	0.9	0.3	4.1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50.0	0.0	0.0	3.5	100.0	(2)[3]
30~39세	21.4	57.1	21.4	0.0	0.0	4.1	100.0	(15)
40~49세	21.3	60.0	16.3	1.3	1.3	4.0	100.0	(79)
50~59세	26.0	58.3	14.8	0.4	0.4	4.1	100.0	(223)
60~69세	27.4	60.1	12.0	0.5	0.0	4.1	100.0	(208)
70~79세	25.0	60.7	14.3	0.0	0.0	4.1	100.0	(57)
80세 이상	25.0	66.7	8.3	0.0	0.0	4.1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3.2	60.0	16.0	0.0	0.8	4.1	100.0	(124)
여성	26.1	59.1	13.8	0.8	0.2	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3.3	80.0	6.7	0.0	0.0	4.1	100.0	(16)
65~69세	11.8	76.5	11.8	0.0	0.0	4.0	100.0	(18)
70~74세	25.6	56.4	17.9	0.0	0.0	4.0	100.0	(40)
75~79세	32.8	52.5	14.8	0.0	0.0	4.2	100.0	(62)
80~84세	24.3	58.8	16.9	0.0	0.0	4.1	100.0	(137)
85~89세	28.8	57.1	12.4	1.1	0.6	4.1	100.0	(177)
90세 이상	22.4	63.3	12.9	0.7	0.7	4.1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8	57.6	16.6	1.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25.3	62.4	11.8	0.5	0.0	4.1	100.0	(222)
농어촌	26.3	57.6	15.2	0.4	0.4	4.1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6.4	43.2	18.2	0.0	2.3	4.1	100.0	(44)
2등급	25.6	62.4	11.2	0.8	0.0	4.1	100.0	(124)
3등급	24.5	60.4	14.2	0.9	0.0	4.1	100.0	(213)
4등급	24.0	59.5	15.5	0.5	0.5	4.1	100.0	(199)
5등급	26.7	66.7	6.7	0.0	0.0	4.2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다.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 만족도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와 기능회복훈련, 인지 기능 증진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시설급여의 신체, 인지 기능 증진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앞선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79.6%로 여성 응답자(7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 역시 높다. 40대 응답자의 경우 73.4%가 신체, 인지 기능 증진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70대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82.1%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이용자 가족이 신체, 인지 기능 증진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79.2%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대도시 76.3%, 농어촌 77.1%)에 비해 높다. 등급별로는 이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비율이 32.6%로 4등급 이용자 가족은 21.5%로 약 10% 높게 나타났다.

〈표 4-43-③〉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3.5	54.1	20.8	1.5	0.1	4.0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3.4	56.2	19.7	0.7	0.0	4.0	100.0	(275)
여성	23.6	52.2	21.7	2.2	0.3	4.0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0.0	50.0	0.0	3.2	100.0	(2)[3]
30~39세	21.4	42.9	35.7	0.0	0.0	3.9	100.0	(15)
40~49세	21.5	51.9	26.6	0.0	0.0	3.9	100.0	(79)
50~59세	22.8	54.9	20.1	1.8	0.4	4.0	100.0	(223)
60~69세	25.0	53.4	20.2	1.4	0.0	4.0	100.0	(208)
70~79세	25.0	57.1	16.1	1.8	0.0	4.1	100.0	(57)
80세 이상	23.1	61.5	15.4	0.0	0.0	4.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19.5	57.7	22.0	0.8	0.0	4.0	100.0	(124)
여성	24.4	53.2	20.6	1.7	0.2	4.0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3.3	66.7	20.0	0.0	0.0	3.9	100.0	(16)
65~69세	5.6	77.8	11.1	5.6	0.0	3.9	100.0	(18)
70~74세	20.0	50.0	27.5	2.5	0.0	3.9	100.0	(40)
75~79세	29.0	48.4	22.6	0.0	0.0	4.1	100.0	(62)
80~84세	22.6	54.0	21.9	1.5	0.0	4.0	100.0	(137)
85~89세	27.0	52.8	18.0	2.2	0.0	4.1	100.0	(177)
90세 이상	20.8	55.0	22.1	1.3	0.7	4.0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0	53.3	21.7	1.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23.1	56.1	19.0	1.8	0.0	4.0	100.0	(222)
농어촌	24.2	52.9	21.5	1.3	0.0	4.0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2.6	37.2	30.2	0.0	0.0	4.0	100.0	(44)
2등급	22.2	57.9	18.3	1.6	0.0	4.0	100.0	(124)
3등급	23.9	55.4	19.2	1.4	0.0	4.0	100.0	(213)
4등급	21.5	54.0	22.0	2.0	0.5	4.0	100.0	(199)
5등급	21.4	57.1	21.4	0.0	0.0	4.0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라. 간호 및 의료 서비스 만족도

시설 내에서 이용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계약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 내 간호(조무)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하여 응답자(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84.7%로 여성 응답자(82.6%)에 비해 높다. 응답자 연령대별로 뚜렷한 경향성은 적은 편이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에게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5.3%로 여성 이용자 가족(83.3%)에 비해 높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적은 편이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65~69세 이용자 가족에게서 88.9%로 타 연령대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이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에게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6.0%로 대도시(80.0%), 농어촌(83.9%)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상대적으로 의료적 욕구가 높은 1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6.4%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④〉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간호 및 의료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5.9	57.7	15.0	1.2	0.2	4.1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4.7	60.0	13.8	1.1	0.4	4.1	100.0	(275)
여성	26.8	55.8	15.9	1.2	0.3	4.1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50.0	50.0	0.0	2.8	100.0	(2)[3]
30~39세	28.6	50.0	14.3	0.0	7.1	4.0	100.0	(15)
40~49세	26.9	59.0	14.1	0.0	0.0	4.1	100.0	(79)
50~59세	25.4	56.7	16.1	1.3	0.4	4.1	100.0	(223)
60~69세	26.0	59.6	13.0	1.4	0.0	4.1	100.0	(208)
70~79세	26.8	55.4	17.9	0.0	0.0	4.1	100.0	(57)
80세 이상	23.1	61.5	15.4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1.1	64.2	13.8	0.8	0.0	4.1	100.0	(124)
여성	27.2	56.1	15.3	1.3	0.2	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5.0	62.5	12.5	0.0	0.0	4.1	100.0	(16)
65~69세	5.6	83.3	5.6	5.6	0.0	4.0	100.0	(18)
70~74세	27.5	57.5	12.5	0.0	2.5	4.1	100.0	(40)
75~79세	35.5	50.0	12.9	1.6	0.0	4.2	100.0	(62)
80~84세	24.1	56.9	18.2	0.7	0.0	4.0	100.0	(137)
85~89세	28.2	55.9	14.1	1.7	0.0	4.1	100.0	(177)
90세 이상	23.5	59.1	16.1	0.7	0.7	4.1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5.3	54.7	18.0	1.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25.8	60.2	12.7	1.4	0.0	4.1	100.0	(222)
농어촌	26.5	57.4	15.2	0.9	0.0	4.1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6.4	43.2	20.5	0.0	0.0	4.2	100.0	(44)
2등급	24.6	59.5	14.3	1.6	0.0	4.1	100.0	(124)
3등급	26.3	57.7	14.1	1.4	0.5	4.1	100.0	(213)
4등급	23.5	59.0	16.0	1.0	0.5	4.1	100.0	(199)
5등급	28.6	64.3	7.1	0.0	0.0	4.2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마. 시설의 환경 만족도

시설 내부의 청결도 , 침실 면적 등과 같은 일련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 응답자(87.3%)의 만족도가 여성 응답자(85.1%)에 비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경향이다. 40대 응답자가 시설 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2.3%이었던 반면, 70대 응답자는 동 응답이 89.4%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적은 편이다. 지역별 차이와 관련하여 시설 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30.4%)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28.5%), 대도시(24.0%) 지역 이용자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비교군에 따른 상대적 편차로 간주된다. 등급별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이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1등급 이용자 가족이 39.5%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표 4-43-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시설의 환경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8.0	58.2	13.0	0.5	0.4	4.1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6.9	60.4	12.4	0.0	0.4	4.1	100.0	(275)
여성	29.0	56.1	13.4	0.9	0.6	4.1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0	0.0	0.0	4.0	100.0	(2)[3]
30~39세	26.7	53.3	13.3	0.0	6.7	4.0	100.0	(15)
40~49세	25.3	57.0	15.2	1.3	1.3	4.1	100.0	(79)
50~59세	27.7	58.5	12.9	0.4	0.4	4.1	100.0	(223)
60~69세	28.7	57.4	13.4	0.5	0.0	4.1	100.0	(208)
70~79세	29.8	59.6	10.5	0.0	0.0	4.2	100.0	(57)
80세 이상	23.1	61.5	15.4	0.0	0.0	4.1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3.2	62.4	12.8	0.8	0.8	4.1	100.0	(124)
여성	29.2	56.8	13.1	0.4	0.4	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8.8	75.0	0.0	6.3	0.0	4.1	100.0	(16)
65~69세	11.8	82.4	5.9	0.0	0.0	4.0	100.0	(18)
70~74세	28.2	56.4	12.8	0.0	2.6	4.1	100.0	(40)
75~79세	35.5	48.4	16.1	0.0	0.0	4.2	100.0	(62)
80~84세	25.7	59.6	14.0	0.7	0.0	4.1	100.0	(137)
85~89세	31.5	54.5	13.5	0.0	0.6	4.2	100.0	(177)
90세 이상	25.0	60.8	12.8	0.7	0.7	4.1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4.0	58.7	16.7	0.0	0.7	4.1	100.0	(151)
중소도시	28.5	60.2	10.9	0.5	0.0	4.2	100.0	(222)
농어촌	30.4	55.8	12.9	0.4	0.4	4.2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9.5	44.2	16.3	0.0	0.0	4.2	100.0	(44)
2등급	27.2	59.2	12.8	0.0	0.8	4.1	100.0	(124)
3등급	27.4	59.4	11.8	0.9	0.5	4.1	100.0	(213)
4등급	26.5	58.5	14.0	0.5	0.5	4.1	100.0	(199)
5등급	26.7	66.7	6.7	0.0	0.0	4.3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바.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전문성 및 친절성 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경향이다. 40대 응답자가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1.0%이었던 반면, 70대 응답자는 동 응답이 87.5%로 전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적다.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의 경우 81.5%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중소도시 88.3%, 농어촌 86.1%)에 비해 낮다. 세부 항목별 시설급여 만족도에 있어서도 지역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서비스와 이용자 가족간 욕구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결과인지, 혹은 비교군이 되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여 나타난 상대적 편차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등급별로는 이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36.4%로 타 등급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다.

〈표 4-43-⑥〉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8.9	56.7	13.3	0.8	0.2	4.1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7.4	58.8	12.4	1.1	0.4	4.1	100.0	(275)
여성	30.2	54.8	14.0	0.6	0.3	4.2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50.0	0.0	0.0	3.6	100.0	(2)[3]
30~39세	33.3	46.7	13.3	0.0	6.7	4.1	100.0	(15)
40~49세	26.6	54.4	17.7	1.3	0.0	4.1	100.0	(79)
50~59세	29.0	56.7	12.9	0.9	0.4	4.1	100.0	(223)
60~69세	29.3	57.2	12.5	1.0	0.0	4.2	100.0	(208)
70~79세	28.6	58.9	10.7	1.8	0.0	4.2	100.0	(57)
80세 이상	28.6	57.1	14.3	0.0	0.0	4.1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7.2	58.4	13.6	0.8	0.0	4.1	100.0	(124)
여성	29.4	56.1	13.3	0.8	0.2	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8.6	64.3	7.1	0.0	0.0	4.2	100.0	(16)
65~69세	16.7	72.2	11.1	0.0	0.0	4.0	100.0	(18)
70~74세	30.0	47.5	17.5	2.5	2.5	4.1	100.0	(40)
75~79세	37.7	45.9	14.8	1.6	0.0	4.2	100.0	(62)
80~84세	25.9	59.3	14.8	0.0	0.0	4.1	100.0	(137)
85~89세	32.0	54.5	12.4	1.1	0.0	4.2	100.0	(177)
90세 이상	24.8	61.1	12.1	1.3	0.7	4.1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4.5	57.0	16.6	1.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30.8	57.5	10.9	0.9	0.0	4.2	100.0	(222)
농어촌	30.0	56.1	13.5	0.4	0.0	4.2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6.4	50.0	13.6	0.0	0.0	4.3	100.0	(44)
2등급	29.6	58.4	10.4	1.6	0.0	4.2	100.0	(124)
3등급	28.6	55.4	15.0	0.5	0.5	4.1	100.0	(213)
4등급	26.6	58.3	14.1	0.5	0.5	4.1	100.0	(199)
5등급	33.3	60.0	6.7	0.0	0.0	4.3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사. 비용 만족도

시설급여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 비용 지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 응답자가 64.1%로 남성 응답자(61.6%)에 비해 높다.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적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이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4.5%로 여성 이용자 가족(62.5%)에 비해 약간 높다. 이용자 연령과 관련해서는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에게서 동 비율이 가장 낮은 59.2%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시설 입소기간이 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비용 부담 발생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이전 항목들과 달리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의 만족율이 58.5%로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65.8%, 65.1%)에 비해 낮다. 인정등급에 따른 차이는 적다.

〈표 4-43-⑦〉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비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3.0	39.8	27.9	8.4	0.9	3.8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1.5	40.1	29.6	8.4	0.4	3.7	100.0	(275)
여성	24.4	39.7	26.6	8.1	1.3	3.8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0.0	50.0	50.0	0.0	2.8	100.0	(2)[3]
30~39세	28.6	35.7	21.4	14.3	0.0	3.8	100.0	(15)
40~49세	21.8	43.6	30.8	3.8	0.0	3.8	100.0	(79)
50~59세	23.3	39.0	29.1	8.1	0.4	3.8	100.0	(223)
60~69세	23.0	40.2	27.3	8.6	1.0	3.8	100.0	(208)
70~79세	23.2	41.1	21.4	12.5	1.8	3.7	100.0	(57)
80세 이상	23.1	30.8	38.5	7.7	0.0	3.8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1.8	42.7	23.4	11.3	0.8	3.8	100.0	(124)
여성	23.4	39.1	29.1	7.6	0.8	3.8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33.3	46.7	13.3	6.7	0.0	4.0	100.0	(16)
65~69세	12.5	62.5	18.8	6.3	0.0	3.8	100.0	(18)
70~74세	22.5	37.5	17.5	20.0	2.5	3.6	100.0	(40)
75~79세	24.6	36.1	31.1	8.2	0.0	3.8	100.0	(62)
80~84세	20.4	40.1	31.4	6.6	1.5	3.7	100.0	(137)
85~89세	27.0	39.3	25.3	7.9	0.6	3.8	100.0	(177)
90세 이상	20.4	38.8	32.0	7.5	1.4	3.7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0	42.8	23.0	9.9	1.3	3.8	100.0	(151)
중소도시	23.5	41.6	26.2	8.1	0.5	3.8	100.0	(222)
농어촌	22.3	36.2	33.0	7.6	0.9	3.7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0.2	34.9	23.3	9.3	2.3	3.8	100.0	(44)
2등급	21.4	39.7	31.0	7.9	0.0	3.8	100.0	(124)
3등급	23.5	39.9	28.2	7.0	1.4	3.8	100.0	(213)
4등급	21.5	41.0	26.5	10.0	1.0	3.7	100.0	(199)
5등급	26.7	33.3	26.7	13.3	0.0	3.7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아. 전반적인 만족도

일련의 항목을 종합한 시설급여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남성 응답자의 응답이 83.6%로 여성 응답자(82.7%)에 비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높다. 30대 응답자의 경우, 동 응답이 78.5%이었던 반면 70대 응답자는 84.2%이다. 비교적 저연령대의 응답자(이용자 가족)일수록 서비스 욕구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의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적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에게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5.0%로 대도시(80.9%), 농어촌(83.0%)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시설급여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1등급 이용자 가족의 경우 동 비율이 32.6%인 반면 4등급 이용자 가족은 21.0% 수준이다.

〈표 4-43-⑧〉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지난 1개월간 장기요양급여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평균)	계(명)	
전체	24.3	58.8	16.3	0.5	0.1	4.1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3.4	60.2	16.1	0.4	0.0	4.1	100.0	(275)
여성	25.2	57.5	16.5	0.6	0.3	4.1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50.0	0.0	0.0	3.6	100.0	(2)[3]
30~39세	21.4	57.1	14.3	7.1	0.0	4.0	100.0	(15)
40~49세	21.8	62.8	15.4	0.0	0.0	4.1	100.0	(79)
50~59세	25.2	57.2	17.1	0.0	0.5	4.1	100.0	(223)
60~69세	24.4	58.4	16.7	0.5	0.0	4.1	100.0	(208)
70~79세	24.6	59.6	14.0	1.8	0.0	4.1	100.0	(57)
80세 이상	16.7	75.0	8.3	0.0	0.0	4.1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2.8	60.2	17.1	0.0	0.0	4.0	100.0	(124)
여성	24.7	58.4	16.1	0.6	0.2	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20.0	73.3	6.7	0.0	0.0	4.1	100.0	(16)
65~69세	11.1	77.8	11.1	0.0	0.0	4.0	100.0	(18)
70~74세	24.4	53.7	19.5	2.4	0.0	4.0	100.0	(40)
75~79세	32.8	50.8	16.4	0.0	0.0	4.2	100.0	(62)
80~84세	21.9	58.4	19.0	0.7	0.0	4.0	100.0	(137)
85~89세	27.1	57.1	15.3	0.6	0.0	4.1	100.0	(177)
90세 이상	22.3	61.5	14.9	0.7	0.7	4.1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3.7	57.2	17.1	1.3	0.7	4.0	100.0	(151)
중소도시	24.5	60.5	14.5	0.5	0.0	4.1	100.0	(222)
농어촌	24.7	58.3	17.0	0.0	0.0	4.1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32.6	46.5	20.9	0.0	0.0	4.1	100.0	(44)
2등급	25.4	59.5	14.3	0.8	0.0	4.1	100.0	(124)
3등급	24.5	59.0	16.0	0.5	0.0	4.1	100.0	(213)
4등급	21.0	60.5	17.5	0.5	0.5	4.0	100.0	(199)
5등급	26.7	60.0	13.3	0.0	0.0	4.2	100.0	(15)
2019년	27.8	54.2	13.5	4.3	0.2	-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향후 돌봄 장소 및 시설급여 개선

이용자의 건강 호전시 집에서 모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파악한 결과, 그렇다는 25.2%, 그렇지 않다는 74.8%로 나타났다. 집에서 모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25.9%)는 여성 응답자(24.6%)에 비해 집으로 모실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집으로 모실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동 응답에 대해 40대 응답자는 27.8%가 긍정의 의사를 표한 반면 70대는 22.8%로 나타났다. 응답자연령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돌봄 부담을 달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는 여성 이용자의 가족(25.9%)이 남성 이용자 가족(22.6%)에 비해 더 높은 긍정의 의사를 밝혔다. 이용자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지역별 차이와 관련해서는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24.5%)이 중소도시(25.8%), 농어촌(25.1%) 지역 이용자 가족과 비교하여, 집으로 모실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등급별 차이 역시 적다 .

집으로 모실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한 결과,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68.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기적인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에서 받기 어려워서라는 의견이 16.7%, 자택의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7.2%,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부담 때문에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에 있어서는 남성 응답자(74.5%)의 비율이 여성 응답자(64.3%)에 비해 높다. 반면 의료, 건강 관리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기 어려워서(17.8%),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부담 때문에(7.5%)라는 응답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15.3%, 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사례수가 적긴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80세 이상의 고령 응답자에게서 9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가족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할 때, 자택에서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사례수가 적긴 하나, 자택 주거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0세 이상 이용자의 가족에게

서 9.7%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즉, 현재 거주하는 시설과 비교하여 고령의 이용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불편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71.1%)에게서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응답이 중소도시(67.7%), 농어촌(68.0%)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사례수가 적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의료 및 건강 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등급(25.8%), 2등급(21.1%) 이용자 가족에 비해 4등급 이용자 가족은 동 비율이 12.8%로 나타나, 중증 이용자의 재가보호에 있어 상시적인 의료 및 건강관리 욕구 해결에 대해 가족들이 더 우려함을 알 수 있다.

〈표 4-44〉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이용자의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25.2	74.8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25.9	74.1	100.0 (275)
여성	24.6	75.4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100.0 (2)[3]
30~39세	28.6	71.4	100.0 (15)
40~49세	27.8	72.2	100.0 (79)
50~59세	25.6	74.4	100.0 (223)
60~69세	24.5	75.5	100.0 (208)
70~79세	22.8	77.2	100.0 (57)
80세 이상	23.1	76.9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22.6	77.4	100.0 (124)
여성	25.9	74.1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2.5	87.5	100.0 (16)
65~69세	27.8	72.2	100.0 (18)
70~74세	35.0	65.0	100.0 (40)
75~79세	23.0	77.0	100.0 (62)
80~84세	27.2	72.8	100.0 (137)
85~89세	23.7	76.3	100.0 (177)
90세 이상	23.6	76.4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24.5	75.5	100.0 (151)
중소도시	25.8	74.2	100.0 (222)
농어촌	25.1	74.9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5.6	74.4	100.0 (44)
2등급	24.8	75.2	100.0 (124)
3등급	25.5	74.5	100.0 (213)
4등급	25.1	74.9	100.0 (199)
5등급	14.3	85.7	100.0 (15)
2019년	25.4	74.6	100.0 (1,070)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45〉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수급자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택 주거환경 불편	돌봄 제공자 부재	돌봄 비용 문제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편	보호자의 심리, 정서적 부담	계(명)	
전체	7.2	68.7	1.7	16.7	5.7	100.0	(446)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5.4	74.4	1.5	15.3	3.4	100.0	(203)
여성	8.7	64.3	1.7	17.8	7.5	100.0	(24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2)[3]
30~39세	0.0	70.0	10.0	20.0	0.0	100.0	(10)
40~49세	7.0	64.9	0.0	21.1	7.0	100.0	(57)
50~59세	6.1	70.9	0.6	15.8	6.7	100.0	(165)
60~69세	8.2	67.7	1.9	17.1	5.1	100.0	(158)
70~79세	9.3	62.8	4.7	16.3	7.0	100.0	(43)
80세 이상	0.0	90.0	10.0	0.0	0.0	100.0	(10)
이용자의 성별							
남성	6.3	68.8	2.1	17.7	5.2	100.0	(96)
여성	7.4	68.6	1.7	16.3	6.0	100.0	(350)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91.7	0.0	8.3	0.0	100.0	(12)
65~69세	0.0	69.2	7.7	15.4	7.7	100.0	(13)
70~74세	8.0	64.0	0.0	28.0	0.0	100.0	(25)
75~79세	2.2	76.1	0.0	13.0	8.7	100.0	(46)
80~84세	7.0	70.0	2.0	13.0	8.0	100.0	(100)
85~89세	7.4	63.7	2.2	20.7	5.9	100.0	(135)
90세 이상	9.7	69.9	1.8	15.0	3.5	100.0	(113)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7.9	71.1	1.8	16.7	2.6	100.0	(114)
중소도시	7.9	67.7	1.2	17.1	6.1	100.0	(164)
농어촌	6.5	68.0	1.8	16.0	7.7	100.0	(169)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6.5	64.5	0.0	25.8	3.2	100.0	(31)
2등급	6.3	66.3	1.1	21.1	5.3	100.0	(95)
3등급	7.6	70.9	2.5	15.2	3.8	100.0	(158)
4등급	7.4	69.6	1.4	12.8	8.8	100.0	(148)
5등급	8.3	66.7	0.0	25.0	0.0	100.0	(12)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 중 건강호전시 수급자를 집에서 모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4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문항임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시설급여 기관의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가족은 돌봄인력 확대 43.8%, 간호사 및 의사 등 의료 인력 배치 강화 23.4%, 치매 전담 시설의 확대 22.5%, 1~2인실 제공 5.7%, 기타 4.7% 순으로 개선을 희망하였다. 이용자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의료 인력(간호사, 계약의사 등)에 대한 배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의료 인력 강화(25.5%)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여성 응답자(21.5%)에 비해 높게 언급하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45.8%)는 돌봄 인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남성 응답자(41.6%)와 비교하여 더 높게 지적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 발견이 어려우나, 치매 전담시설 확대에 대한 의견은 50~60대 연령대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 응답에 있어 50대는 23.2%,60대는 23.1%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의료 인력 확대(26.6%)에 대한 의견을 여성 이용자 가족(22.5%)에 비해 높게 언급하였다. 여성 이용자 가족은 돌봄 인력 확대(44.2%), 치매 전담 시설 확대(23.8%)를 남성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지적하여, 이용자 성별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용자 연령과 관련한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이용자 가족이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돌봄 인력 확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더 높게 지적하였다. 동 응답은 대도시(47.3%), 중소도시(44.1%), 농어촌(41.3%)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의료 인력 강화에 대한 응답은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이 25.6%로 타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보다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등급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의료 인력 강화에 대한 의견은 3등급 이상 이용자 가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동 응답에 대해 3등급(25.8)%, 2등급(23.2%), 1등급(2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6〉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시설급여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시설 및 인력 관리 측면

(단위: %, 명)

특성	1-2인실 제공	돌봄인력 확대	의료인력 강화	치매전담시설 확대	기타[4]	계(명)
전체	5.7	43.8	23.4	22.5	4.7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6.6	41.6	25.5	21.9	4.4	100.0 (275)
여성	5.0	45.8	21.5	22.7	5.0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0.0	50.0	0.0	50.0	0.0	100.0 (2)[3]
30~39세	7.7	61.5	15.4	15.4	0.0	100.0 (15)
40~49세	7.7	47.4	19.2	21.8	3.8	100.0 (79)
50~59세	5.4	39.7	25.9	23.2	5.8	100.0 (223)
60~69세	4.8	44.7	23.1	23.1	4.3	100.0 (208)
70~79세	5.3	47.4	22.8	19.3	5.3	100.0 (57)
80세 이상	7.7	38.5	30.8	23.1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8.1	42.7	26.6	16.9	5.6	100.0 (124)
여성	5.1	44.2	22.5	23.8	4.5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12.5	43.8	25.0	6.3	12.5	100.0 (16)
65~69세	5.3	42.1	10.5	26.3	15.8	100.0 (18)
70~74세	5.0	45.0	20.0	25.0	5.0	100.0 (40)
75~79세	4.9	36.1	24.6	29.5	4.9	100.0 (62)
80~84세	7.3	45.3	21.9	21.9	3.6	100.0 (137)
85~89세	5.6	44.1	25.4	20.9	4.0	100.0 (177)
90세 이상	4.1	44.2	24.5	22.4	4.8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4.7	47.3	18.7	24.7	4.7	100.0 (151)
중소도시	6.4	44.1	24.1	19.5	5.9	100.0 (222)
농어촌	5.4	41.3	25.6	24.2	3.6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4.5	43.2	22.7	18.2	11.4	100.0 (44)
2등급	4.8	47.2	23.2	20.0	4.8	100.0 (124)
3등급	6.6	42.7	25.8	19.7	5.2	100.0 (213)
4등급	5.0	42.7	21.1	28.1	3.0	100.0 (199)
5등급	13.3	46.7	20.0	20.0	0.0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문항임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기타에는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됨

시설급여 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가족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 38.9%,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 27.0%, 기능 훈련 및 재활서비스 12.9%, 양질의 식사서비스 6.6%, 임종기 돌봄 관련 서비스 6.2%, 여가 활동 및 나들이 5.7%, 기타 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약 1/2은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의료 욕구에 대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이용자의 가족)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41.6%)에 대한 개선을 여성 응답자(36.4%)와 비교하여 더 높게 지적하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치매, 뇌졸중 등 전문의료 특화서비스(28.3%)와 기능 훈련 및 재활 서비스(13.7%)에 대한 개선을 더 높게 희망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적은 편이나,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60대(31.3%)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성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의료 및 간호서비스(39.5%) 및 전문의료 특화서비스(28.2%)에 대한 개선을 여성 이용자 가족(38.6%, 26.5%)에 비해 더 많이 희망하였다. 이용자 연령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더 높게 지적하였다. 동 응답의 경우, 70~74세 이용자의 가족은 30.0%로 나타난 반면 90세 이상 이용자의 가족은 44.6%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 또는 기능훈련,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은 24.3%가 희망한 반면 70~74세 이용자 가족은 35.0%로 나타났다.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90세 이상 이용자 가족은 8.8%였으나, 70~74세 이용자 가족은 20.0%를 차지하였다. 인지 및 신체기능 상태가 더 저하되기 전에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이 전문적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에게서 식사서비스(7.9%), 임종기 돌봄 관련 서비스(9.2%)에 대한 응답이 타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지역 이용자 가족의 경우,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29.9%), 기능 훈련 및 재활서비스(15.2%)를 도시 지역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게 희망하였다. 등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중증 등급 이용자 가족에게서 의료 관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등급(42.9%), 1등급(40.9%) 이용자 가족이,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에 대해서는 1등급(31.8%) 이용자 가족이 개선 필요성을 높게 지적하였다.

〈표 4-47〉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시설급여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서비스 질 측면

(단위: %, 명)

특성	양질의 식사 서비스	상시적 의료(간호) 서비스	전문 의료 특화 서비스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	임종기 돌봄 서비스	여가활동 및 나들이	기타[4]	계(명)
전체	6.6	38.9	27.0	12.9	6.2	5.7	2.8	100.0 (595)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6.6	41.6	25.2	12.0	6.6	5.8	2.2	100.0 (275)
여성	6.5	36.4	28.3	13.7	5.9	5.6	3.4	100.0 (321)
응답 가족의 연령대								
30세 미만	50.0	0.0	0.0	50.0	0.0	0.0	0.0	100.0 (2)[3]
30~39세	6.7	46.7	20.0	13.3	13.3	0.0	0.0	100.0 (15)
40~49세	8.9	40.5	21.5	13.9	5.1	7.6	2.5	100.0 (79)
50~59세	5.4	37.8	26.6	14.0	6.3	6.8	3.2	100.0 (223)
60~69세	6.7	40.4	31.3	9.6	5.3	4.8	1.9	100.0 (208)
70~79세	7.1	35.7	21.4	16.1	10.7	3.6	5.4	100.0 (57)
80세 이상	8.3	41.7	33.3	16.7	0.0	0.0	0.0	100.0 (12)
이용자의 성별								
남성	5.6	39.5	28.2	12.9	4.8	5.6	3.2	100.0 (124)
여성	6.8	38.6	26.5	13.0	6.6	5.7	2.8	100.0 (472)
이용자의 연령대								
65세 미만	0.0	46.7	26.7	20.0	0.0	0.0	6.7	100.0 (16)
65~69세	11.8	29.4	29.4	11.8	5.9	5.9	5.9	100.0 (18)
70~74세	5.0	30.0	35.0	20.0	5.0	2.5	2.5	100.0 (40)
75~79세	8.2	39.3	24.6	14.8	4.9	4.9	3.3	100.0 (62)
80~84세	5.1	36.2	25.4	14.5	6.5	9.4	2.9	100.0 (137)
85~89세	8.4	38.2	29.2	12.4	5.1	4.5	2.2	100.0 (177)
90세 이상	6.1	44.6	24.3	8.8	8.8	5.4	2.0	100.0 (147)
이용자의 거주지역								
대도시	7.9	37.5	25.7	11.2	9.2	5.3	3.3	100.0 (151)
중소도시	6.8	40.9	25.0	11.8	5.5	5.5	4.5	100.0 (222)
농어촌	5.4	37.9	29.9	15.2	4.9	5.8	0.9	100.0 (224)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2.3	40.9	31.8	9.1	6.8	4.5	4.5	100.0 (44)
2등급	5.6	42.9	24.6	15.1	4.8	4.8	2.4	100.0 (124)
3등급	6.1	37.1	27.2	14.1	8.5	4.7	2.3	100.0 (213)
4등급	8.5	37.0	28.0	11.5	5.0	7.5	2.5	100.0 (199)
5등급	0.0	50.0	14.3	7.1	7.1	7.1	14.3	100.0 (15)

주: 1)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5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문항임
2) 인지지원등급 제외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기타에는 '비용 부담 완화, 이용자 상태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 제공, 자유로운 식사시간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됨

제5장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특성
제2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제3절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대응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제 5 장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특성

1.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특성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조사하였다. 응답 기관의 일반 특성을 보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유형은 재가급여 78.7%, 시설급여 21.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야간보호 16.7%, 방문목욕 12.4%, 노인요양시설(10~29명) 8.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6%, 노인요양시설(30~49명) 3.2%, 방문간호 1.7% 순이다. 단기보호 제공기관은 0.2%로 가장 낮았다.

운영주체는 개인 운영이 83.6%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법인 12.0%, 영리법인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2% 순으로 높았다. 비영리법인에는 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지만, 대도시 36.7%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농어촌 소재의 기관은 26.2%로 가장 적었다.

응답 기관의 위치는 상업·업무 지역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역 40.6%, 비주거·비상업 지역 14.3%, 산지지역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응답 기관의 일반 특성[1)]

(단위: %, 개소)

특성	2019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54	100.0	1,953	100.0
급여유형				
방문요양	883	45.2	932	47.7
방문목욕	266	13.6	241	12.4
방문간호	31	1.6	34	1.7
주야간보호	287	14.7	326	16.7
단기보호	10	0.5	4	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6	8.5	122	6.2
노인요양시설(10~29명)	146	7.5	160	8.2
노인요양시설(30~49명)	67	3.4	62	3.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8	5.0	71	3.6
운영주체				
개인	1,479	75.7	1,633	83.6
영리법인	48	2.5	81	4.2
비영리법인[2)]	425	21.8	235	1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타)[3)]	1	0.1	4	0.2
지역				
대도시	726	37.1	717	36.7
중소도시	704	36.0	725	37.1
농어촌	524	26.8	511	26.2
기관의 위치				
주거지역	842	43.1	793	40.6
상업·업무지역	743	38.0	863	44.2
비주거·비상업지역	339	17.3	279	14.3
산지지역	30	1.6	13	0.7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19년은 기타임

2.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전체 응답자 중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50~59세(40.1%), 60~69세(25.5%), 40~49세(19.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48.0%)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30.6%), 대학원 졸업 이상(19.9%), 고등학교 졸업 이하(1.4%) 순이었다. 보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95.0%)와 요양보호사(58.5%)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11.5%), 간호사(5.5%) 순이었다. 응답자가 현 소속기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1~5년 미만(49.7%)이 가장 많고 5~10년 미만(22.6%), 10년 이상(14.1%), 1년 미만(13.6%) 순으로 많았다. 또한 현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33.9%), 1~5년 미만(32.0%), 5~10년 미만(29.3%)등의 순으로 높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1~5년 미만(47.7%), 5~10년 미만(23.8%%), 10년 이상(16.8%), 1년 미만(11.8%)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을 제공급여를 기준으로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특성으로는 재가기관과 시설기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재가기관의 여성비율(70.5%)이 시설기관(62.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재가기관과 시설기관 모두 50대의 비율이 각각 41.3%, 35.7%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미만의 연령군은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 35.3%로 시설급여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 시설급여 응답자가 재가급여 응답자에 비해 낮은 연령군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제공급여와 무관하게 대학교 졸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비율은 시설기관에서 더 높았다. 재가기관 시설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두 급여 모두 사회복지사(재가 95.3%, 시설 93.8%), 요양보호사(재가 59.9%, 시설 53.1%), 간호조무사(재가 10.3%, 시설 16.1%), 간호사(재가 5.4%, 시설 6.0%)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가 현재 소속기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가기관과 시설기관 모두 1~5년 미만이 4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현 소속기관 근무기간은 재가기관과 시설기관 모두 1~5년 미만(재가 49.1%, 시설 42.4%)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재가 23.8%, 시설 23.6%), 10년 이상(재가 16.1%, 시설 19.0%)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장기요양기관 총 근무기간은 재가기관은 1~5년 미만이 33.3%, 10년 이상이 32.5%를 차지한 반면, 시설기관은 10년 이상이 39.3%, 5~10년 미만이 27.7%로 시설기관 응답자의 장기요양기관 근속년수가 더 많았다.

〈표 5-2〉 응답자(시설장)의 일반 특성[1)]

(단위: %, 명)

특성	재가기관	시설기관	계(명)	
전체	78.8 100.0(1,539)	21.2 100.0(415)	100.0	(1,953)
성별				
남성	29.5	37.1	31.1	(607)
여성	70.5	62.9	68.9	(1,346)
연령대				
30세 미만	2.7	2.7	2.7	(53)
30~39세	8.5	9.2	8.6	(169)
40~49세	18.8	23.4	19.8	(386)
50~59세	41.3	35.7	40.1	(784)
60~69세	25.7	25.1	25.5	(499)
70세 이상	3.0	4.1	3.2	(63)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1.7	1.4	(28)
전문대(2년제, 3년제) 졸업	32.9	22.2	30.6	(598)
대학교 졸업	47.2	51.1	48.0	(938)
대학원 졸업 이상	18.5	25.1	19.9	(389)
보유 자격증(중복 응답)				
사회복지사	95.3	93.8	95.0	(1,856)
의사	.8	.7	.8	(15)
치과의사	.1	0.0	.1	(1)
한의사	.1	0.0	.1	(2)
간호사	5.4	6.0	5.5	(108)
간호조무사	10.3	16.1	11.5	(225)
요양보호사	59.9	53.1	58.5	(1,143)
물리치료사	.2	.5	.3	(5)
작업치료사	.2	.5	.3	(5)
현 소속기관 시설장 근무기간				
1년 미만	12.0	19.3	13.6	(265)
1~5년 미만	51.5	42.9	49.7	(970)
5~10년 미만	22.4	23.1	22.6	(441)
10년 이상	14.0	14.7	14.1	(276)
현 소속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	10.9	14.9	11.8	(230)
1~5년 미만	49.1	42.4	47.7	(931)
5~10년 미만	23.8	23.6	23.8	(464)
10년 이상	16.1	19.0	16.8	(327)
장기요양기관 총 근무기간				
1년 미만	4.5	5.8	4.8	(93)
1~5년 미만	33.3	27.2	32.0	(626)
5~10년 미만	29.7	27.7	29.3	(572)
10년 이상	32.5	39.3	33.9	(663)
2019년	75.6	24.4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현 소속기관 시설장 근무기간, 장기요양기관 총 근무기관은 조사시점인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산출함

제2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1.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황

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

응답 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기관 중에서 개인운영이 8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8.7%, 영리법인 4.1%, 기타법인 3.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2% 순으로 높았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개인운영 기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기보호는 100.0% 개인운영기관이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2.6%가 개인운영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 운영(32.4%)이 높았다. 한편, 재가기관 내에서도 방문형 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개인운영 외에 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이용형 기관인 주야간보호는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15.6%로 타 재가급여유형기관에 비해 높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야간보호 0.6%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4%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개인운영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소도시에서 개인운영 기관의 비중이 87.2%로 가장 높았다(대도시 82.8%, 농어촌 79.7%). 또한 개인운영 다음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 11.5%가 사회복지법인으로 타 급여유형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3〉 응답 기관의 운영 주체[1)]

(단위: % , 개소)

특성	개인	영리 법인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계(개소)	
전체	83.6	4.1	8.7	3.4	0.2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89.3	4.8	3.9	2.0	0.0	100.0	(932)
방문목욕	87.6	4.1	4.1	4.1	0.0	100.0	(241)
방문간호	85.7	5.7	5.7	2.9	0.0	100.0	(34)
주야간보호	74.2	4.3	15.6	5.2	0.6	100.0	(326)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2.6	2.5	4.9	0.0	0.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82.0	1.9	11.8	4.3	0.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75.8	1.6	19.4	3.2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2.4	4.2	47.9	14.1	1.4	100.0	(71)
지역							
대도시	82.8	6.0	7.9	3.1	0.1	100.0	(717)
중소도시	87.2	2.5	7.5	2.9	0.0	100.0	(725)
농어촌	79.7	3.9	11.5	4.3	0.6	100.0	(511)
2019년	75.7	2.5	10.6	11.2	0.1[3)]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3) 2019년에는 '기타'에 해당하는 값임

나. 장기요양기관의 단독 및 병설 운영 현황

응답 기관의 운영형태를 단독운영과 병설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단독이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1개의 급여유형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병설운영이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2개 이상의 급여유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과의 병설 등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단독 운영 기관이 77.9%이며, 병설기관은 22.1%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단기보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단독운영비율이 높았다. 특히, 주야간보호(39.6%), 방문목욕(31.4%), 방문간호(29.4%)의 경우 타 급여유형에 비해 병설운영의 비율이 높았다. 단독 운영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방문요양으로 86.1%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30~49명) 83.9%,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3.1%, 노인요양시설(30~49명)이 85.1%로 가장 높았다. 한편, 단기보호의 경우 단독운영 25.0%, 병설운영 75.0%로 대부분 병설 운영기관임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단독의 급여유형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 급여유형 제공 비율은 개인 80.6%, 영리법인 79.0%, 비영리법인 59.6%로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단독운영의 비율이 대도시 82.7%, 중소도시 76.5%, 농어촌 73.2%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단독운영 비율이 높았다.

〈표 5-4〉 응답 기관의 단독 및 병설 운영 현황[1)]

(단위: % , 개소)

특성	단독	병설	계(개소)	
전체	77.9	22.1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86.1	13.9	100.0	(932)
방문목욕	68.6	31.4	100.0	(241)
방문간호	70.6	29.4	100.0	(34)
주야간보호	60.4	39.6	100.0	(326)
단기보호	25.0	75.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6.2	23.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80.0	20.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83.9	16.1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3.1	16.9	100.0	(71)
운영주체				
개인	80.6	19.4	100.0	(1,633)
영리법인	79.0	21.0	100.0	(81)
비영리법인[2)]	59.6	40.4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5.0	75.0	100.0	(4)
지역				
대도시	82.7	17.3	100.0	(717)
중소도시	76.5	23.5	100.0	(725)
농어촌	73.2	26.8	100.0	(511)
2019년	61.7	38.3	100.0	(1,953)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은 병설운영 장기요양기관 429개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병설형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병설운영 중인 기관이 83.7%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13.8%, 의료기관과 병설 2.3%,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급여유형과 무관하게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 운영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노인요양시설(10~29명), 노인요양시설(30~49명)에서는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시설(10~29명)과 주야간보호는 타급여유형에 비해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이 각각 18.2%, 17.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90.0%) 다음으로 의료기관과의 병설이 10.0%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과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의료기관과 병설의 비율이 각각 11.1%와 9.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운영주체의 특성과 무관하게 장기요양기관과 병설로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 93.7%, 영리법인 94.4%, 비영리법인 49.5% 순이었다. 한편,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이 45.3%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의료기관과 병설의 비율이 각각 50.0%로 동일하였다.

지역별로는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비율은 대도시 18.7%, 농어촌 14.7%, 중소도시 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응답기관의 병설 형태[1)]

(단위: %, 개소)

특성	장기요양기관과 병설	장기요양기관 이외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의료기관과 병설	기타[2)]	계(개소)	
전체	83.7	13.8	2.3	0.2	100.0	(429)
급여유형						
방문요양	82.3	14.6	3.1	0.0	100.0	(130)
방문목욕	88.2	10.5	1.3	0.0	100.0	(76)
방문간호	90.0	0.0	10.0	0.0	100.0	(10)
주야간보호	81.3	17.2	.8	0.8	100.0	(128)
단기보호	100.0	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3.1	6.9	0.0	0.0	100.0	(29)
노인요양시설(10~29명)	78.8	18.2	3.0	0.0	100.0	(33)
노인요양시설(30~49명)	77.8	11.1	11.1	0.0	100.0	(9)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1.8	9.1	9.1	0.0	100.0	(11)
운영주체						
개인	93.7	4.7	1.3	0.3	100.0	(316)
영리법인	94.4	5.6	0.0	0.0	100.0	(18)
비영리법인[3)]	49.5	45.3	5.3	0.0	100.0	(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50.0	50.0	0.0	100.0	(2)
지역						
대도시	81.3	18.7	0.0	0.0	100.0	(123)
중소도시	85.9	9.4	4.1	0.6	100.0	(170)
농어촌	83.8	14.7	1.5	0.0	100.0	(136)
2019년	83.5	14.6	0.8	1.0	100.0	(748)

주: 1) 병설운영이라고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42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요양보호사교육원, 장애인활동지원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은 병설운영 장기요양기관 429개소를 대상으로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병설운영 장기요양기관에서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이 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야간보호 58.1%, 방문목욕 47.7%, 노인요양시설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급여유형별 병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급여유형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기관에서 타 급여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목욕이 62.3%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가 41.5%이다. 그 외 방문간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을 병설로 운영하는 비율은 낮다. 방문목욕기관에서 타 급여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이 96.1%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1.1%, 방문간호 14.5% 등이다. 시설급여는 6% 미만으로 매우 낮다. 방문간호기관에서 타 급여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이 90.9%, 방문목욕이 50.0%, 주야간보호가 10.0%이며, 시설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25.0%와 66.7%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병설로 타 급여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유형은 주야간보호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요양 42.9%, 단기보호 24.1%, 방문목욕 10.3% 등의 순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요양의 비율이 높았다. 시설급여에서는 방문간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운영주체별 병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급여유형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기관과 영리법인은 방문요양(80% 이상),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50% 이상)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방문요양(60.4%), 주야간보호 64.2%, 노인요양시설 41.1%로 운영주체별 병설운영기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병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급여유형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문요양을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기관, 방문목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병설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은 노인요양시설을 병설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6〉 장기요양기관의 병설 운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중복응답)[1)]

(단위: %, 개소)

특성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시설
전체	백분율	77.4	47.7	7.7	58.1	4.0	13.2	24.8
	(사례수)	(333)	(206)	(33)	(251)	(17)	(57)	(107)
급여유형								
방문요양		100.0	62.3	7.0	41.5	0.0	3.1	11.5
방문목욕		96.1	100.0	14.5	21.1	0.0	1.3	5.3
방문간호		90.9	50.0	100.0	10.0	0.0	0.0	0.0
주야간보호		64.8	24.0	2.3	100.0	5.5	16.3	25.6
단기보호		0.0	0.0	0.0	25.0	100.0	66.7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9	10.3	0.0	51.7	24.1	100.0	3.4
노인요양시설(10~29명)		50.0	18.2	0.0	68.8	0.0	0.0	100.0
노인요양시설(30~49명)		50.0	20.0	0.0	60.0	0.0	0.0	100.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3.3	16.7	0.0	58.3	0.0	0.0	100.0
운영주체								
개인		82.2	51.4	7.9	55.9	5.1	17.1	20.3
영리법인		88.2	58.8	22.2	58.8	0.0	5.9	17.6
비영리법인[2)]		60.4	32.6	6.3	64.2	1.1	1.1	4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6.7	33.3	0.0	100.0	0.0	0.0	0.0
지역								
대도시		74.8	41.1	5.6	54.0	6.5	17.7	20.3
중소도시		78.2	43.5	10.6	62.4	4.1	13.5	25.3
농어촌		78.8	58.4	7.3	56.9	2.2	8.8	27.7
2019년		83.7	61.4	7.5	42.0	3.4	11.2	18.0

주: 1) 병설운영이라고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42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병설운영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 개수를 분석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급여유형 수는 2.3종이었으며, 전체 응답기관 중 2종의 급여를 운영하는 기관이 5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종 37.3%, 1종 6.7%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에서 정의한 병설운영은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 외에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 의료기관과의 병설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병설운영기관이라 하더라도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1종일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58.1%)과 비영리법인(46.9%)은 2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52.9%)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66.7%)는 3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 급여유형 개수는 영리법인이 2.5개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법인이 2.1개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2종과 3종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 급여유형 개수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2.4개로 대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장기요양기관의 병설 운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 개수(조사대상 급여유형 포함)[1)]

(단위: %, 개소, 종)

특성	1종	2종	3종	4종	5종 이상	계 (개소)		평균(종)
전체	6.7	54.9	37.3	0.9	0.2	100.0	(429)	2.3
운영주체								
개인	1.9	58.1	38.4	1.3	0.3	100.0	(316)	2.4
영리법인	0.0	47.1	52.9	0.0	0.0	100.0	(18)	2.5
비영리법인[3)]	22.9	46.9	30.2	0.0	0.0	100.0	(95)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3.3	0.0	66.7	0.0	0.0	100.0	(2)	2.2
지역						100.0		
대도시	9.7	63.7	24.2	1.6	0.8	100.0	(123)	2.2
중소도시	5.3	52.0	42.7	0.0	0.0	100.0	(170)	2.4
농어촌	5.8	50.4	42.3	1.5	0.0	100.0	(136)	2.4
2019년	10.9	65.7	20.3	3.0	0.2	100.0	(748)	2.2

주: 1) 병설운영 장기요양기관 42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장기요양기관과의 병설 외에 장기요양기관 이외 사회복지시설과의 병설, 의료기관과의 병설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1종일 수 있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 현황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 현황은 주당 운영 일수와 1일 운영 시간 두가지로 살펴보았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일수는 주 6일 운영이 78.9%로 가장 많았으며, 주 7일 11.6%, 주 5일 이하 9.5%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은 5일 이하의 비율이 22.1%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개인은 6일이 81.9%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았다.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주 7일 운영 기관이 5.9%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주 5일 이하의 비율이 13.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농어촌은 주 7일이 18.4%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5-8〉 주야간보호기관의 주당 운영 일수[1)2)]

(단위: %, 개소)

특성	5일 이하	6일	7일	계	(개소)
전체	9.5	78.9	11.6	100.0	(326)
운영주체					
개인	4.9	81.9	13.2	100.0	(243)
영리법인	14.3	71.4	14.3	100.0	(14)
비영리법인[4)]	22.1	72.1	5.9	100.0	(6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100.0	(2)
지역					
대도시	13.3	79.6	7.1	100.0	(113)
중소도시	6.3	81.9	11.8	100.0	(127)
농어촌	9.2	72.4	18.4	100.0	(87)

주: 1) 주야간보호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22년 신규 문항임

주야간보호기관의 평균 운영시간은 1일 10.4시간이다. 운영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은 27.2%,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7.0%, 12시간 이상 16.0%, 9시간 미만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일 평균 10.4시간~10.7시간동안 운영하였다. 개인과 영리법인은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이 38.8%와 42.9%로 가장 높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39.4%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시간은 운영주체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과 영리법인은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각각 23.6%와 28.6%로 높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12시간 이상이 30.3%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0.7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운영하였으며, 농어촌은 10.0시간으로 타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는 12시간 이상이 27.7%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각각 27.3%와 35.6%로 높았다. 또한 농어촌은 12시간 이상의 비율이 1.1%로 매우 낮았다.

〈표 5-9〉 주야간보호기관의 일일 운영 시간[1)]

(단위: %, 개소, 시간)

특성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	(개소)	평균 운영 시간
전체	4.9	27.2	34.9	17.0	16.0	100.0	(326)	10.4
운영주체								
개인	5.0	23.6	38.8	20.2	12.4	100.0	(243)	10.4
영리법인	0.0	28.6	42.9	14.3	14.3	100.0	(14)	10.7
비영리법인[2)]	4.5	39.4	19.7	6.1	30.3	100.0	(68)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0	50.0	0.0	0.0	0.0	100.0	(2)	8.7
지역								
대도시	8.0	20.5	33.0	10.7	27.7	100.0	(113)	10.7
중소도시	2.3	27.3	33.6	20.3	16.4	100.0	(127)	10.5
농어촌	4.6	35.6	37.9	20.7	1.1	100.0	(87)	10.0

주: 1) 주야간보호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22년 신규 문항임

2. 장기요양기관의 물리적 특성 현황

가. 장기요양기관의 점유 형태

응답 기관의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대표 등) 소유 30.3%, 법인 소유 9.2%, 전세 6.3%, 국가 및 지자체 소유 1.6%,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 소유 비율이 높았다. 특히나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과 단기보호는 66.1%~77.1%정도로 월세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이지만, 월세의 비율은 48.3%로 타 급여에 비해 낮고, 개인(대표 등) 소유 30.5%, 법인 소유 9.8% 등으로 많았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을 제외하고는 개인(대표 등)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법인 소유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개인(대표 등) 소유 다음으로 전세(30.6%), 월세(17.5%), 법인소유(5.0%)로 시설급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운영 기관은 월세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소유도 34.4%로 높게 나타났다. 영리법인 운영 기관은 월세가 50.6%로 가장 높았고, 법인소유 19.8%, 개인(대표 등)소유 18.5%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은 법인 소유의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월세 18.3%, 국가 및 지자체 10.6% 순이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은 1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월세의 비율이 각각 60.8%와 52.8%로 가장 높은 반면, 농어촌은 개인(대표 등)소유가 40.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임대의 비율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은 타 지역에 비해 개인(대표 등)소유(40.3%)와 법인소유(14.1%)의 비율이 높았다.

〈표 5-10〉 응답 기관의 점유 형태[1)]

(단위: %, 개소)

특성	개인(대표 등) 소유	법인 소유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전세	월세	기타[2)]	계 (개소)	
전체	30.3	9.2	1.6	6.3	51.9	0.6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8.6	5.5	0.0	6.0	69.2	0.6	100.0	(932)
방문목욕	23.6	3.3	0.8	5.4	66.1	0.8	100.0	(241)
방문간호	11.4	2.9	0.0	8.6	77.1	0.0	100.0	(34)
주야간보호	30.5	9.8	6.2	4.3	48.3	0.9	100.0	(326)
단기보호	25.0	0.0	0.0	0.0	75.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7.1	5.0	0.0	30.6	17.4	0.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80.0	17.5	1.3	0.0	0.6	0.6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77.4	21.0	1.6	0.0	0.0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4.7	56.9	8.3	0.0	0.0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34.4	1.1	0.1	6.8	57.1	0.4	100.0	(1,633)
영리법인	18.5	19.8	0.0	11.1	50.6	0.0	100.0	(81)
비영리법인[3)]	6.0	62.1	10.6	1.3	18.3	1.7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100.0	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22.0	7.8	1.4	7.1	60.8	0.8	100.0	(717)
중소도시	31.4	7.3	1.7	6.6	52.8	0.1	100.0	(725)
농어촌	40.3	14.1	1.8	4.7	38.4	0.8	100.0	(511)
2019년	34.1	11.1	3.6	5.5	44.3	1.4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무상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나.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기관의 물리적 특성

응답기관의 건물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로 건립된 건물이 5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거 또는 업무용 건물이 30.8%, 주거용 건물 5.5%, 의료시설 5.3%, 다른 용도(호텔, 고시원 등) 건물을 용도 변경한 건물 3.8%, 공공기관 또는 복지관 건물 3.1%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81.7%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로 건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는 각각 34.4%와 33.3%만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단기보호 66.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5.1%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의 분포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13.1%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의료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11.3%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로 건립된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비영리법인이 82.0%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과 영리법인은 각각 43.4%와 40.0%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에서도 개인은 38.4%, 영리법인은 40.0%로 유사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은 3.4%로 매우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용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42.7%와 74.8%로 가장 높았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11〉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형태[1)]

(단위: %, 개소)

특성	장기요양 급여 제공 용도	주거용	공공 기관, 복지기관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	의료 시설	다른 용도 (호텔, 고시원 등) 건물을 용도변경	기타[4)]	계 (개소)	
전체	51.6	5.5	3.1	30.8	5.3	3.8	0.0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33.3	0.0	0.0	66.7	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4.4	13.1	.8	45.1	3.3	3.3	0.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52.8	3.1	4.3	29.8	5.6	4.3	0.0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48.4	1.6	4.8	30.6	11.3	3.2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81.7	1.4	2.8	7.0	2.8	4.2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43.4	7.2	1.9	38.4	4.7	4.4	0.0	100.0	(318)
영리법인	40.0	0.0	10.0	40.0	10.0	0.0	0.0	100.0	(10)
비영리법인[3)]	82.0	1.1	6.7	3.4	5.6	1.1	0.0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34.5	6.2	3.5	47.8	5.3	2.7	0.0	100.0	(113)
중소도시	42.7	5.5	2.4	37.8	7.9	3.7	0.0	100.0	(164)
농어촌	74.8	5.6	3.5	9.1	2.1	4.9	0.0	100.0	(143)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문항 수정으로 2019년 결과와 직접비교 불가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기타: 폐교 등

응답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최고 층수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5~10층 미만이 24.0%로 가장 많았으며, 3층 21.1%, 1층 18.1%, 4층 17.8%, 2층 16.4%, 10층 이상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층의 비율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3층(23.1%)과 5~10층 미만(22.5%),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5~10층 미만(36.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4층(34.7%)과 3층(31.9%)의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 최고층수를 살펴보면, 개인운영 기관은 1층(21.6%)과 5~10층 미만(27.9%)의 비율이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3층(27.3%)의 비율이 높고 그 외 층수는 비율이 유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3층(42.7%)과 4층(23.6%)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은 1층의 비율이 38.2%, 3층이 23.6%로 높은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5~10층 미만(대도시 37.2%, 중소도시 31.3%)과 4층(대도시 21.2%, 중소도시 20.9%), 3층(대도시 19.5%, 중소도시 19.6%) 순으로 많았다.

〈표 5-12〉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사용하는 최고층수[1)]

(단위: %, 층)

특성	1층	2층	3층	4층	5~10층 미만	10층 이상	계 (개소)	
전체	18.1	16.4	21.1	17.8	24.0	2.6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0.0	25.0	25.0	25.0	25.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2	15.6	12.3	11.5	19.7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5.0	21.9	23.1	13.1	22.5	4.4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1.6	15.9	20.6	22.2	36.5	3.2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8	5.6	31.9	34.7	23.6	1.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21.6	16.3	14.7	16.6	27.9	2.8	100.0	(318)
영리법인	9.1	18.2	27.3	18.2	9.1	18.2	100.0	(10)
비영리법인[2)]	5.6	15.7	42.7	23.6	12.4	0.0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100.0	0.0	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4.4	12.4	19.5	21.2	37.2	5.3	100.0	(113)
중소도시	9.8	16.6	19.6	20.9	31.3	1.8	100.0	(164)
농어촌	38.2	19.4	23.6	11.8	6.3	0.7	100.0	(143)
2019년	18.8	20.7	19.4	17.5	22.5	1.0	100.0	(486)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관 중 18.1%는 기관이 1층이면서 단층이거나 또는 복층이지만 생활실이 1층인 경우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 없는 건물이며, 62.5%는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0.5%가 단층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곳이며, 14.9%만이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이 높으며,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91.5%가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의 설치율이 83.1%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은 1층인 경우가 21.7%로 높았고, 침상이동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기관의 비율이 21.7%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해당없음이 38.5%로 가장 높았고, 설치율은 44.1%로 낮았다.

〈표 5-13〉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여부[1)]

(단위: %, 개소)

특성	있다	없다	해당 없음[3)]	계 (개소)	
전체	62.5	19.3	18.1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50.0	5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4.6	14.9	40.5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57.8	27.3	14.9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77.4	21.0	1.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91.5	5.6	2.8	100.0	(71)
운영주체					
개인	56.6	21.7	21.7	100.0	(318)
영리법인	70.0	20.0	10.0	100.0	(10)
비영리법인[2)]	83.1	11.2	5.6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73.5	22.1	4.4	100.0	(113)
중소도시	71.2	19.0	9.8	100.0	(164)
농어촌	44.1	17.5	38.5	100.0	(143)
2019년	60.0	40.0	-	100.0	(394)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1층이면서 단층인 경우 또는 복층이지만 생활실이 1층인 경우
4) 2019년은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중 사용건물이 단층(1층) 건물인 경우를 제외한 394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2022년 결과와 직접 비교 어려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침실 개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5~10개 미만 28.5%, 5개 미만 20.8%, 10~15개 미만 19.4%, 20~30개 미만 13.4%, 15~20개 미만 10.3%, 30~40개 미만 4.8%, 40~50개 미만 1.9%, 50개 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는 먼저 단기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침실개수가 5개 미만인 비중이 각각 75.0%, 67.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5~10개 미만인 시설의 비율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5개 미만의 비율이 35.0%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15~20개 미만인 경우가 43.5%로 가장 높고 10~15개 미만(32.3%)과 20~30개 미만(19.4%)인 경우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침실 개수가 15개 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20~30개 미만인 경우가 50.7%로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운영 기관은 5개~10개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높으며, 영리법인은 5~10개와 20~30개 미만이 각각 30.0%로 높았다. 비영리법인은 20~30개 미만인 경우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5~10개 미만 18.0%, 10~15개 미만, 15~20개 미만, 30~40개 미만은 각각 14.6%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소재 기관은 5개 미만인 경우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5~10개 미만인 경우가 각각 27.6%, 3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4〉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개수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5개 미만	5~10개 미만	10~15개 미만	15~20개 미만	20~30개 미만	30~40개 미만	40~50개 미만	50개 이상	계 (개)	
전체	20.8	28.5	19.4	10.3	13.4	4.8	1.9	1.0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7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7.2	29.5	3.3	0.0	0.0	0.0	0.0	0.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3	51.3	35.0	5.6	5.0	1.3	0.6	0.0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0.0	0.0	32.3	43.5	19.4	1.6	1.6	1.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0.0	0.0	0.0	11.3	50.7	23.9	8.5	5.6	100.0	(71)
운영주체										
개인	25.8	31.4	21.1	9.1	8.8	1.9	1.3	0.6	100.0	(318)
영리법인	20.0	30.0	10.0	10.0	30.0	0.0	0.0	0.0	100.0	(10)
비영리법인[3)]	3.4	18.0	14.6	14.6	28.1	14.6	4.5	2.2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지역										
대도시	28.6	22.3	21.4	8.9	11.6	4.5	2.7	0.0	100.0	(113)
중소도시	21.5	27.6	19.6	9.8	13.5	4.9	2.5	0.6	100.0	(164)
농어촌	14.0	34.3	17.5	11.9	14.7	4.9	0.7	2.1	100.0	(143)
2019년	26.3	27.6	16.3	9.6	11.9	4.4	2.3	1.6	100.0	(486)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침실유형별 평균 침실개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관의 침실개수는 평균 13.4개로 이중 1인실 1.3개, 2인실 3.7개, 3인실 3.0개, 4인실 5.4개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31.2개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4인실의 개수가 가장 많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인실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이 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1.0개, 영리법인 17.2개, 개인 10.9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비영리법인에서 모든 유형의 생활실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14.4개, 중소도시 13.3개, 대도시 12.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실과 2인실은 농어촌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표 5-15〉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유형별 평균 침실개수[1)2)]

(단위: 개)

특성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계
전체	1.3	3.7	3.0	5.4	13.4
급여유형					
단기보호	0.6	1.0	1.5	2.0	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	1.6	1.2	0.7	4.5
노인요양시설(10~29명)	1.1	3.4	2.4	3.9	10.8
노인요양시설(30~49명)	1.4	4.9	4.1	7.4	17.8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2	7.4	6.3	15.2	31.2
운영주체					
개인	1.2	3.2	2.6	3.9	10.9
영리법인	1.6	3.6	3.9	8.1	17.2
비영리법인[3)]	1.7	5.7	4.4	10.2	2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3	5.1	1.8	13.8	21.0
지역					
대도시	1.1	3.2	3.0	5.0	12.4
중소도시	1.2	3.5	3.0	5.6	13.3
농어촌	1.6	4.5	3.0	5.3	14.4
2019년	1.1	3.2	2.8	5.4	12.6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관의 침실 유형별 평균 입소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입소자 수는 29.5명으로 이중 4인실 16.1명, 3인실 6.6명, 2인실 5.8명, 1인실 1.0명이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는 4인실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고, 1인실의 이용자수가 가장 적었다. 한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인실(2.7명), 2인실(2.5명), 4인실(2.0명), 1인실(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소자 수가 6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법인 51.4명, 영리법인 37.6명, 개인 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인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1인실 이용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1.4명으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많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위치한 기관의 입소자 수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실 이용자는 농어촌이 1.3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표 5-16〉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침실유형별 평균 입소자 수[1)2)]

(단위: 명)

특성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합계
전체	1.0	5.8	6.6	16.1	29.5
급여유형					
단기보호	0.5	1.1	2.8	4.9	9.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8	2.5	2.7	2.0	8.0
노인요양시설(10~29명)	0.8	5.1	5.3	10.4	21.6
노인요양시설(30~49명)	1.0	7.6	9.5	21.8	39.9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9	11.6	13.9	48.7	76.1
운영주체					
개인	0.9	5.0	5.7	11.3	22.9
영리법인	1.4	4.7	7.7	23.7	37.6
비영리법인[3)]	1.4	8.6	9.7	31.8	5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3	9.2	3.7	48.4	61.6
지역					
대도시	0.8	5.3	6.8	16.3	29.2
중소도시	0.9	5.2	6.7	16.5	29.2
농어촌	1.3	6.9	6.4	15.5	30.0
2019년	1.0	5.3	7.2	18.4	31.9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현황

본 조사에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1,953개의 이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 기관의 이용자는 평균 33.7명이며, 10~29명 36.7%, 30~49명 23.8%, 9명 이하 18.6%, 50~69명 10.6%, 70~99명 7.0%, 100명 이상 3.3%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 평균 이용자 수는 방문형 급여의 경우 평균 35~37명 수준이었으며, 주야간보호는 27.4명, 단기보호 9.3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0명, 노인요양시설(10~29명) 21.6명, 노인요양시설(30~49명) 39.9명,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6.1명이다. 급여유형별 이용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10~29명의 비율이 각각 36.4%, 35.3%,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방문목욕과 단기보호는 9명 이하의 비율이 각각 31.1%, 75.0%로 높았다. 또한, 방문형급여유형의 경우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비율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하가 98.4%로 높았으나, 정원을 넘어서는 10~29명도 1.6%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10~29명이 91.9%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명 이하가 3.7%, 정원을 넘어서는 30~49명이 4.3%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30~49명이 93.5%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을 넘어서는 50~69명의 비율이 1.6%, 10~29명이 4.8%로 나타났다. 한편,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50~69명이 43.1%, 70~99명이 37.5%, 100명 이상이 13.9%로 나타났으며, 정원 이하의 30~49명도 5.6%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평균 이용자 수는 영리법인이 4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 법인 41.9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0.4명, 개인 32.0명 순으로 많았다. 운영주체별 이용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과 무관하게 10~29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30~49명도 높게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29명이 100.0%이다. 개인은 30~49명, 9명 이하 순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영리법인은 50~69명, 9명이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비영리 법인은 30~49명, 50~69명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아 운영주체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평균 이용자 수는 농촌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이용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기관에서 10~29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 기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9명 이하(20.6%)와 30~49명(24.5%)이 높은 수준이었고, 농

어촌은 50~69명(11.4%), 100명 이상(4.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7〉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현황[1)2)3)]

(단위: %, 개소)

특성	평균	9명 이하	10~29명	30~49명	50~69명	70~99명	100명 이상	계 (개소)	
전체	33.7	18.6	36.7	23.8	10.6	7.0	3.3	100.0	(1,953)
급여유형[3)]									
방문요양	37.2	12.3	36.4	25.1	13.7	8.7	3.8	100.0	(932)
방문목욕	35.6	31.1	18.7	23.2	11.6	8.7	6.6	100.0	(241)
방문간호	37.7	20.6	35.3	17.6	11.8	8.8	5.9	100.0	(34)
주야간보호	27.4	11.3	51.4	30.9	4.6	1.2	0.6	100.0	(326)
단기보호	9.3	75.0	25.0	0.0	0.0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0	98.4	1.6	0.0	0.0	0.0	0.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1.6	3.7	91.9	4.3	0.0	0.0	0.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39.9	0.0	4.8	93.5	1.6	0.0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6.1	0.0	0.0	5.6	43.1	37.5	13.9	100.0	(71)
운영주체								100.0	
개인	32.0	19.9	37.1	24.5	9.7	6.4	2.4	100.0	(1,633)
영리법인	43.9	13.6	24.7	24.7	21.0	8.6	7.4	100.0	(81)
비영리법인[4)]	41.9	11.0	38.1	18.6	13.1	11.0	8.1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0.4	0.0	100.0	0.0	0.0	0.0	0.0	100.0	(4)
지역								100.0	
대도시	33.3	20.6	34.4	24.5	9.9	7.8	2.6	100.0	(717)
중소도시	33.1	17.5	38.8	23.9	10.9	5.9	3.0	100.0	(725)
농어촌	35.2	17.1	37.1	22.7	11.4	7.5	4.3	100.0	(511)
2019년	31.0	24.0	36.6	20.5	8.7	7.7	2.4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노인요양시설 규모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조사 시점(2019년 9월)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응답기관의 이용자 현황을 장기요양등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등급 47.2%, 3등급 27.5%, 5등급 10.6%, 2등급 9.1%, 1등급 4.3%, 인지지원등급 0.9%, 등급외 0.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4등급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요양은 55.8%가 4등급으로 나타나 급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3등급의 비율이 36%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등급(30%~33%)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방문간호는 1~2등급의 비율이 25%를 상회하여 타 급여유형에 비해 중증의 대상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즉, 방문형급여유형과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보다 경증의 이용자가 많은 한편,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중증 이용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5등급자(26.3%)와 인지지원등급(3.6%)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보호의 경우도 인지지원등급이 2.4%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복지용구이기 때문이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운영주체에서는 4등급이 4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3등급이 25~29% 수준으로 높았다. 국가 및 지방자차치단체는 등급외자(12.2%)와 인지지원등급(4.6%)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등급별 이용자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8〉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이용자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계	(개소)
전체	4.3	9.1	27.5	47.2	10.6	0.9	0.5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2.6	6.0	25.6	55.8	9.5	0.4	0.2	100.0	(932)
방문목욕	6.0	11.6	28.9	45.0	8.2	0.2	0.1	100.0	(241)
방문간호	12.7	13.0	26.6	41.1	6.4	0.2	0.0	100.0	(34)
주야간보호	0.7	3.2	20.7	44.6	26.3	3.6	0.9	100.0	(326)
단기보호	3.5	15.7	33.7	34.6	8.9	2.4	1.2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3	19.3	36.2	30.2	2.9	0.3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8.2	18.8	36.9	32.9	2.1	0.1	1.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9.1	18.5	36.3	33.1	2.0	0.1	0.9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3	19.2	36.7	30.8	2.1	0.4	1.4	100.0	(71)
운영주체								100.0	
개인	4.2	8.9	27.4	47.9	10.4	0.8	0.4	100.0	(1,633)
영리법인	5.2	9.3	25.9	48.0	10.9	0.6	0.1	100.0	(81)
비영리법인[3)]	4.7	10.7	28.9	42.1	11.7	1.2	0.8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5	7.8	27.0	29.4	16.4	4.6	12.2	100.0	(4)
지역								100.0	
대도시	4.6	9.7	28.7	47.4	8.6	0.7	0.4	100.0	(717)
중소도시	4.0	8.8	27.4	46.5	12.0	1.0	0.4	100.0	(725)
농어촌	4.2	8.8	26.2	47.9	11.4	0.9	0.7	100.0	(511)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으로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성 75.0%, 남성 25.0%로 여성이 약 3배가량 많았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80% 이상 수준이었고, 이외의 기관에서는 80% 미만이었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여성이 70% 이상이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이 85.0%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사한 비율을 보여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9〉 장기요양기관의 성별 이용자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남성	여성	계 (개소)	
전체	25.0	75.0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25.2	74.8	100.0	(932)
방문목욕	29.4	70.6	100.0	(241)
방문간호	31.5	68.5	100.0	(34)
주야간보호	25.3	74.7	100.0	(326)
단기보호	23.3	76.7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6	82.4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2.1	77.9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22.4	77.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2.6	77.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25.3	74.7	100.0	(1,633)
영리법인	25.2	74.8	100.0	(81)
비영리법인[3)]	22.7	77.3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5.0	85.0	100.0	(4)
지역				
대도시	26.5	73.5	100.0	(717)
중소도시	25.2	74.8	100.0	(725)
농어촌	22.3	77.7	100.0	(511)
2019년	25.8	74.2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으로는 치매진단 여부별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치매는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의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이용자는 50.2%이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형급여 제공기관에서는 치매 이용자는 40% 미만 수준인 반면, 주야간보호는 69.4%,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79.3%~87.3%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과 영리법인은 치매환자 비율이 50% 미만인 반면, 비영리법인은 66.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70.7%가 치매환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50% 이상이 치매인 반면, 대도시는 50% 미만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치매환자 비율이 높았다.

〈표 5-20〉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진단 여부별 이용자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치매	치매 아님	계 (명)	
전체	50.2	49.8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33.5	66.5	100.0	(932)
방문목욕	36.5	63.5	100.0	(241)
방문간호	36.1	63.9	100.0	(34)
주야간보호	69.4	30.6	100.0	(326)
단기보호	87.3	12.7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6	18.4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82.5	17.5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79.3	20.7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0.1	19.9	100.0	(71)
운영주체				
개인	48.0	52.0	100.0	(1,633)
영리법인	46.1	53.9	100.0	(81)
비영리법인[3)]	66.4	33.6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0.7	29.3	100.0	(4)
지역				
대도시	46.6	53.4	100.0	(717)
중소도시	51.1	48.9	100.0	(725)
농어촌	54.0	46.0	100.0	(511)
2019년	50.6	49.4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인력 수는 평균 23.1명이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인력 수 분포를 살펴보면, 10~29명(41.5%), 5~9명(19.1%), 30~49명(17.3%), 5명 미만(11.3%), 50명 이상(10.8%) 순이었다.

급여유형별로는 평균 직원 수는 방문요양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는 11명내외, 방문간호 5명, 단기보호는 7명 수준이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은 10~29명(42.7%), 30~49명(25.7%), 50명 이상(16.9%)로 직원이 10명 이상인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은 5명 미만(37.3%), 5~9명(33.2%)으로 9명 이하가 70% 이상이었다. 한편, 주야간보호는 10~29명(60.1%), 5~9명(34.7%), 5명 미만(3.7%) 순으로 30명 미만이 98.5%로 대부분이었다. 단기보호는 5~9명(50.0%), 5명 미만과 10~29명이 각 25.0%로 모든 단기보호기관은 직원이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평균 직원 수는 영리법인이 27.1명 가장 많았으며, 개인 23.3명, 비영리법인 19.5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1.3명 순이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운영 기관은 10~29명(29.6%), 30~49명(18.3%), 5~9명(18.2%) 순이었고, 영리법인운영 기관은 10~29명(29.6%), 5~9명(22.5%), 50명 이상(25.4%) 순이었다. 비영리법인은 10~29명(41.8%), 5~9명(25.3%) 순으로 많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9명과 10~29명이 각각 50%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직원수는 대도시가 25.6명, 중소도시 23.0명, 농어촌이 19.2명 순이었다. 인력 수 분포 구간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10~29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높은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는 30~49명의 비율이 19.3%로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5~9명이 19.9%와 20.4%로 높았다.

〈표 5-21〉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1)2)]

(단위: 명, %, 개소)

특성	평균	5명 미만	5~9명	10~29명	30~49명	50명 이상	계 (개소)
전체	23.1	11.3	19.1	41.5	17.3	10.8	100.0 (1,535)
급여유형							
방문요양	30.8	5.0	9.7	42.7	25.7	16.9	100.0 (931)
방문목욕	11.8	37.3	33.2	16.6	9.1	3.7	100.0 (241)
방문간호	5.0	69.7	24.2	6.1	0.0	0.0	100.0 (33)
주야간보호	11.5	3.7	34.7	60.1	1.5	0.0	100.0 (326)
단기보호	7.1	25.0	50.0	25.0	0.0	0.0	100.0 (4)
운영주체							
개인	23.3	10.9	18.2	42.0	18.3	10.6	100.0 (1,318)
영리법인	27.1	14.1	22.5	29.6	8.5	25.4	100.0 (71)
비영리법인[3)]	19.5	13.0	25.3	41.8	13.7	6.2	100.0 (14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3	0.0	50.0	50.0	0.0	0.0	100.0 (2)
지역							
대도시	25.6	11.6	17.5	37.8	19.3	13.9	100.0 (606)
중소도시	23.0	10.7	19.9	41.7	17.1	10.7	100.0 (563)
농어촌	19.2	12.0	20.4	47.0	14.4	6.3	100.0 (368)
2019년	20.7	14.3	21.2	40.0	17.3	7.2	100.0 (1,478)

주: 1) 재가급여 제공기관 1,535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1) 방문형급여 제공기관

방문형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문형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26.3명이며, 방문요양 30.8명, 방문목욕 11.8명, 방문간호 5.0명 순이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영리법인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26.6명, 개인 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은 영리법인이 3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욕은 개인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간호는 비영리법인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직원 수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급여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동일한 이용자 수라도 급여유형에 따라 직원 수의 분포가 상이하였다. 이용자 수가 100명 이상인 방문요양은 직원이 평균 78.7명인 것에 비해, 방문목욕은 19.5명, 방문간호는 15.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방문간호의 경우 타 급여유형과 달리 이용자 수에 따른 직원 수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서 직원수가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대도시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26.2명, 농어촌 21.4명 순이었다. 방문요양의 경우 대도시의 직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중소도시의 직원 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중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직원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방문형급여 제공기관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직원은 평균 7.3명이었으며, 전체 직원 수 대비 28.4%이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37.9%, 방문목욕 31.2%, 방문요양 27.3%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개인기관의 60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7.5명이고, 그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는 평균 수는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많았으며, 비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60시간 미만 직원 수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비율도 31.2%로 가장 높았다.

급여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경우,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개인기관에서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이용자 수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50~69명인 기관의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0.2%로 다른 지역 소재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방문목욕 기관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에서는 영리법인이 3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9명 이하인 기관의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비율이 40.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22.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방문간호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방문간호 인력의 40% 이상이 60시간 미만 근로직원으로 타 급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50~69명인 기관의 60시간 미만 직원 수 비율이 57.2%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22〉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직원 (명)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직원 수 대비(%)				평균 (명)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전체 평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전체	
전체	30.8	11.8	5.0	26.3	27.3	31.2	37.9	28.4	7.3
운영주체									
개인	30.3	12.2	4.8	26.1	28.0	30.7	36.9	28.7	7.5
영리법인	37.1	4.5	5.0	30.5	19.4	39.4	44.2	23.6	6.0
비영리법인[3)]	33.2	11.7	6.9	26.6	23.6	32.3	45.6	26.6	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
이용자 수									
9명 이하	6.5	6.9	2.5	6.5	26.3	40.0	37.0	31.9	2.3
10~29명	18.8	8.7	3.5	17.2	28.8	29.9	28.8	28.9	4.9
30~49명	32.4	11.7	4.7	27.9	26.0	25.4	47.4	26.3	7.6
50~69명	47.0	16.7	6.3	40.5	30.3	22.2	57.2	29.6	12.0
70~99명	65.4	24.1	6.5	55.6	23.5	30.4	20.5	24.8	13.4
100명 이상	78.7	19.5	15.1	58.1	22.2	30.4	44.7	25.7	16.7
지역구분									
대도시	34.3	9.8	5.0	29.1	30.2	34.1	40.6	31.2	8.9
중소도시	30.4	14.8	5.3	26.2	27.4	34.0	36.4	29.1	7.2
농어촌	25.1	10.2	3.9	21.4	21.9	22.8	34.8	22.3	4.6
2019년	28.5	8.3	3.9	- [4)]	16.8	19.3	23.1	17.7	7.2

주: 1) 방문형급여 제공기관 1,207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19년과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비교치 미제시(2019년은 평균의 합, 2020년은 각 급여유형 합의 평균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30.8명으로 시설장 1.0명, 사회복지사 1.4명, 요양보호사 28.4명, 기타 0.1명이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운영기관이 3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1.9명, 요양보호사 34.1명으로 다른 운영주체보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많았다. 이와 반대로 개인운영 기관은 총 30.3명으로 사회복지사 1.3명, 요양보호사 28.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용자 수에서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도 많았으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직원 수가 34.3명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많았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수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요양보호사는 대도시 31.8명, 중소도시 27.9명, 농어촌 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8.5명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며, 전체 직원의 27.3%, 요양보호사의 30.3%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였다.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의 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보호사와 전체 직원 모두 개인이 각각 30.9%, 28.0%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이용자 수별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평균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높았으나, 비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9명 이하, 10~29명, 50~69명인 기관에서 32%정도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며, 전체 직원 중 60시간 미만 근로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이용자 수 50~69명 기관으로 30.3%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이 5.4명으로 가장 적었다. 비율에서도 대도시가 요양보호사와 전체 직원 모두 60시간 미만 직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3〉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직원 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5)]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3)]	전체	직원 수 대비(%)		평균(명)
						요양보호사	전체 직원	
전체	1.0	1.4	28.4	0.1	30.8	30.3	27.3	8.5
운영주체								
개인	1.0	1.3	28.0	0.1	30.3	30.9	28.0	8.6
영리법인	1.0	1.9	34.1	0.1	37.1	23.7	19.4	7.0
비영리법인[4)]	1.0	1.8	30.3	0.1	33.2	26.6	23.6	7.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수								
9명 이하	1.0	0.3	5.2	0.0	6.5	32.8	26.3	2.0
10~29명	1.0	0.8	17.0	0.1	18.8	32.1	28.8	5.3
30~49명	1.0	1.5	29.8	0.1	32.4	28.1	26.0	8.5
50~69명	1.0	2.1	43.7	0.1	47.0	32.0	30.3	13.9
70~99명	1.0	2.7	61.6	0.1	65.4	24.8	23.5	16.2
100명 이상	1.0	3.3	74.3	0.1	78.7	24.7	22.2	23.2
지역								
대도시	1.0	1.4	31.8	0.0	34.3	33.0	30.2	10.4
중소도시	1.0	1.4	27.9	0.1	30.4	30.5	27.4	8.2
농어촌	1.0	1.2	22.9	0.1	25.1	25.0	21.9	5.4
2019년	1.0	1.4	26.0	0.1	28.5	18.5	16.8	4.8

주: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932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관리인, 사무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직원수가 1 이상인 직종만을 제시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11.8명으로 시설장 1.0명, 요양보호사 10.7명, 기타 0.2명이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운영기관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이 10.4명이었다. 이 차이는 요양보호사 수에서 발생하며, 개인 운영기관은 요양보호사가 11명, 비영리법인은 10.4명, 영리법인은 3.2명이다. 이용자 수에서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도 많았으며, 요양보호사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100명 이상에서는 17.7명으로 70~99명 운영기관의 22.9명에 비해 적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직원 수가 14.8명으로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많았다.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3.5명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며, 전체 직원의 31.2%, 요양보호사의 39.6%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다.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의 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직원 수 대비 비율에 따르면, 영리법인 운영기관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는 58.5%가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이었으며, 전체 직원 중 39.4%가 이에 해당하여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용자 수별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50~69명 기관에서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9명 이하인 기관에서 52.1%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며, 전체 직원 중에는 40.0%가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타 기관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이 2.2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비율에서는 대도시가 요양보호사와 전체 직원 모두 60시간 미만 직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4〉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직원 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5)]		
					직원 수 대비(%)		평균 (명)
	시설장	요양 보호사	기타[3)]	전체	요양 보호사	전체	
전체	1.0	10.7	0.2	11.8	39.6	31.2	3.5
운영주체							
개인	1.0	11.0	0.1	12.2	38.4	30.7	3.7
영리법인	1.0	3.2	0.3	4.5	58.5	39.4	2.0
비영리법인[4)]	1.0	10.4	0.3	11.7	44.4	32.3	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수							
9명 이하	1.0	5.9	0.1	6.9	52.1	40.0	2.9
10~29명	1.0	7.7	0.1	8.7	37.1	29.9	2.6
30~49명	1.0	10.5	0.2	11.7	31.3	25.4	4.1
50~69명	1.0	15.5	0.2	16.7	29.1	22.2	4.6
70~99명	1.0	22.9	0.3	24.1	35.0	30.4	4.4
100명 이상	1.0	17.7	0.8	19.5	39.6	30.4	4.0
지역							
대도시	1.0	8.7	0.2	9.8	45.4	34.1	3.4
중소도시	1.0	13.7	0.1	14.8	41.6	34.0	4.6
농어촌	1.0	8.9	0.2	10.2	28.9	22.8	2.2
2019년	1.0	7.2	0.1	8.3	20.8	18.1	1.5

주: 1) 방문목욕급여 제공기관 241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관리인, 사무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직원수가 1 이상인 직종만을 제시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평균 5.0명으로 시설장 1.0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1.8명이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이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리법인 5.0명, 개인 4.8명이다. 직종별 인원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전체 6.9명 중 간호조무사가 4.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영리법인은 간호사가 3.2명으로 가장 많다.

이용자 수에서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도 많았으며,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간호사 수는 50~69명 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직원 수가 5.3명으로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많았으나 간호사 수는 대도시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9명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며, 전체 직원의 37.9%, 간호사의 57.4%, 간호조무사의 46.1%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다.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의 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원 수 대비 비율도 비영리법인이 45.6%로 가장 높았다. 60시간 미만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운영주체는 영리법인(68.4%)이며, 간호조무사는 비영리법인이 75.1%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수별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50~69명 기관에서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가 50~69명인 기관의 경우 간호사 중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75.0%로 매우 높았으며 간호조무사는 9명 이하에서 67.4%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가 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이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5-25〉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직원 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5)]				
							직원 수 대비(%)				평균 (명)
	시설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기타[3)]	전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전체	
전체	1.0	2.1	1.8	0.0	0.0	5.0	57.4	46.1	0.0	37.9	1.9
운영주체											
개인	1.0	2.0	1.7	0.0	0.0	4.8	56.7	41.8	0.0	36.9	1.6
영리법인	1.0	3.2	0.7	0.0	0.2	5.0	68.4	66.7	0.0	44.2	1.8
비영리법인[4)]	1.0	1.5	4.3	0.0	0.1	6.9	57.5	75.1	0.0	45.6	5.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수											
9명 이하	1.0	1.2	0.4	0.0	0.0	2.5	66.6	67.4	0.0	37.0	1.0
10~29명	1.0	1.8	0.6	0.0	0.1	3.5	48.9	26.7	0.0	28.8	1.1
30~49명	1.0	2.2	1.5	0.0	0.0	4.7	64.9	60.2	0.0	47.4	2.2
50~69명	1.0	3.5	1.8	0.0	0.0	6.3	75.0	50.3	0.0	57.2	3.7
70~99명	1.0	2.6	2.9	0.0	0.0	6.5	23.7	25.9	0.0	20.5	1.0
100명 이상	1.0	2.1	11.7	0.0	0.3	15.1	58.8	50.8	0.0	44.7	2.4
지역											
대도시	1.0	2.3	1.7	0.0	0.0	5.0	58.2	52.9	0.0	40.6	2.0
중소도시	1.0	1.9	2.4	0.0	0.0	5.3	57.1	42.6	0.0	36.4	1.9
농어촌	1.0	2.2	0.7	0.0	0.1	3.9	56.1	36.7	0.0	34.8	1.5
2019년	1.0	1.8	0.7	0.0	0.4	3.9	33.3	42.9	-	23.1	0.9

주: 1) 방문간호급여 제공기관 31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관리인, 사무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월 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수는 직종별 월 60시간 미만 근로직원수가 1 이상인 직종만을 제시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재가급여기관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관은 정원이 있는 재가급여로 방문형급여와 특성이 상이하기에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야간보호기관의 전체 직원 수는 평균 11.5명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운영주체는 11.3~11.5명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용자 수별로는 이용자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11.9명, 대도시 1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비율은 전체 직원의 10.3%였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이 13.6%로 다른 운영주체 기관에 비해 높았으며,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7~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용자 수별로는 30~49명이 11.6%로 가장 많았으며, 9명 이하는 5.8%로 나타났으나,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은 6.6% 가장 적었다.

단기보호기관의 전체 직원 수는 평균 7.1명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수에 따른 직원 수는 이용자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7.4명, 중소도시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기관에서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직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3.2%로 주야간보호기관(10.3%)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 3.6%였으며, 그 외 운영주체는 0.0%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별로는 10~29명과 9명 이하에서 각각 3.6%와 3.3%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4.6%, 농어촌 2.5%로 나타났다.

〈표 5-26〉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직원(명)	월 1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직원(명)	월 160시간 미만 근로 직원(%)
전체	11.5	10.3	7.1	3.2
운영주체				
개인	11.5	9.6	7.2	3.6
영리법인	13.5	5.8	5.0	0.0
비영리법인[3)]	11.3	13.6	5.0	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4	5.7	7.0	0.0
이용자 수				
9명 이하	5.8	5.8	5.6	3.3
10~29명	9.9	10.4	9.6	3.6
30~49명	14.7	11.6	14.9	0.0
50명 이상	18.6	10.2		
지역구분				
대도시	10.7	11.1	7.4	4.6
중소도시	11.9	12.0	5.1	0.0
농어촌	12.0	6.6	8.8	2.5
2019년	10.3	5.8	6.7	3.0

주: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326개소, 단기보호기관 2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44.5%(평균 5.5명), 사회복지사 15.4%(평균 1.7명), 시설장과 간호조무사(평균 1.0명)가 각각 10.4%과 10.0%, 보조원(운전원)이 8.7%(평균 1.0명), 조리원 5.9%(평균 0.7명), 사무원 3.1%(평균 0.4명), 간호사 1%(평균 0.1명), 물리치료사 0.5%(평균 0.1명),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이번 조사대상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른 운영주체의 기관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51.0%로 높게 나타났다(개인 44.9%, 비영리법인 4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19.6%)와 보조원(16.1%)의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직원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용자 수별로는 직원배치기준상 이용자 수와 연동되는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직종의 직원 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9명 이하 시설에서는 시설장,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10명 미만의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운전원) 등이 의무배치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요양보호사(45.4%)와 사회복지사(16.2%)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지역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5-27〉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원)	기타[3)]	계(명)
전체(%)		10.4	15.4	1.0	10.0	0.5	0.0	44.5	3.1	5.9	8.7	0.4	100.0 (11.5)
평균(명)		1.0	1.7	0.1	1.0	0.1	0.0	5.5	0.4	0.7	1.0	0.0	
운영주체													
	개인	10.4	15.3	1.1	10.1	0.1	0.0	44.9	3.0	5.7	8.8	0.3	100.0 (11.5)
	영리법인	8.5	12.8	0.4	9.4	0.5	0.0	51.0	4.1	4.1	6.2	2.6	100.0 (13.5)
	비영리법인[4)]	10.6	15.8	0.8	9.9	2.0	0.0	42.0	2.8	6.7	8.4	0.4	100.0 (1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2	19.6	3.5	5.7	0.0	0.0	24.0	12.7	9.2	16.1	0.0	100.0 (11.4)
이용자 수													
	9명 이하	19.3	13.9	2.1	16.6	1.2	0.0	36.9	0.4	7.1	2.1	0.5	100.0 (5.8)
	10~29명	10.9	17.0	0.8	10.4	0.5	0.0	41.3	1.3	6.2	10.7	0.4	100.0 (9.9)
	30~49명	7.2	13.7	0.9	7.7	0.4	0.0	49.9	6.4	5.1	8.2	0.4	100.0 (14.7)
	50명 이상	5.8	12.7	0.7	6.8	0.5		56.3	6.1	4.5	6.0	0.3	100.0 (18.6)
지역													
	대도시	11.2	14.5	0.9	10.7	0.7	0.0	43.9	3.2	5.4	8.7	0.2	100.0 (10.7)
	중소도시	9.7	16.2	0.9	9.5	0.6	0.0	45.4	3.2	5.2	8.8	0.4	100.0 (11.9)
	농어촌	10.2	15.3	1.2	9.9	0.2	0.0	43.8	2.8	7.5	8.4	0.6	100.0 (12.0)
2019년	전체(%)	9.7	15.5	1.0	9.7	1.0	1.0	41.7	3.9	7.8	8.7	0.0	100.0 (10.3)
	평균(명)	1.0	1.6	0.1	1.0	0.1	0.1	4.3	0.4	0.8	0.9	0.0	

주: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관리인, 주방보조, 시설관리, 영양사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47.7%(평균 3.6명), 간호조무사 14.9%(평균 0.9명), 조리원 9.7%(평균 0.7명), 사회복지사 8.7%(평균 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른 운영주체의 기관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26.2%로 가장 낮았으며(개인 49.2%, 영리법인 4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2.9%),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은 간호조무사(26.2%)의 비율이 높았다.

이용자 수별로는 직원배치기준상 이용자 수와 연동되는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

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직종의 직원 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49.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물리치료사는 농어촌에서만 2.4%가 도출되어 농어촌에서만 채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28〉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기타[3)]	계(명)	
전체( )		15.0	8.7	1.6	14.9	0.3	0.0	47.7	9.7	1.3	100.0	(7.1)
평균(명)		0.9	0.6	0.1	0.9	0.0	0.1	3.6	0.7	0.1		
운영주체												
개인		14.9	8.1	1.8	14.2	0.4	0.0	49.2	9.9	1.2	100.0	(7.2)
영리법인		0.0	20.0	0.0	20.0	0.0	0.0	40.0	20.0	0.0	100.0	(5.0)
비영리법인[4)]		21.5	13.2	0.0	26.2	0.0	0.0	26.2	0.0	4.7	100.0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4.3	14.3	0.0	14.3	0.0	0.0	42.9	14.3	0.0	100.0	(7.0)
이용자 수												
9명 이하		17.6	8.9	1.5	16.7	0.3	0.0	42.9	9.5	1.3	100.0	(5.6)
10~29명		9.4	8.5	1.7	11.7	0.0	0.0	56.8	10.2	1.6	100.0	(9.6)
30~49명		7.2	7.2	2.6	4.7	2.6	0.0	68.5	7.2	0.0	100.0	(14.9)
지역												
대도시		13.9	7.0	1.2	14.8	0.0	0.0	49.9	11.2	1.3	100.0	(7.4)
중소도시		18.7	12.5	3.2	15.2	0.0	0.0	43.2	6.0	1.3	100.0	(5.1)
농어촌		13.5	10.3	0.6	14.7	2.4	0.0	45.0	8.5	1.8	100.0	(8.2)
2019년	전체(%)	14.9	9.0	1.5	13.4	1.5	0.0	46.3	10.4	1.5	100.0	(6.7)
	평균(명)	1.0	0.6	0.1	0.9	0.1	0.0	3.1	0.7	0.1		

주: 1)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 4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운전원, 위생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나. 시설급여 제공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20.5명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10~29명 기관 46.6%, 5~9명 31.9%, 30~49명 14.0%, 50명 이상 7.0%, 5명 미만 0.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5~9명 기관은 96.7%, 5명 미만은 1.7%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10~29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10~29명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는 30~49명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50명 이상은 40.8%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직원 수가 4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법인 35.6명, 영리법인 25.7명, 개인 15.9명 순으로 많았다. 개인운영 기관에서는 10~29명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영리법인은 5~9명이 40.0%로 가장 많았다. 비영리법인은 10~29명이 37.1%로 가장 많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0명 이상이 100.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도 10~29명이 40% 이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9〉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1)2)]

(단위: %, 명, 개소)

특성	평균(명)	5명 미만	5~9명	10~29명	30~49명	50명 이상	계 (개소)
전체	(20.5)	0.5	31.9	46.6	14.0	7.0	100.0 (414)
급여유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6)	1.7	96.7	1.7	0.0	0.0	100.0 (121)
노인요양시설(10~29명)	(14.9)	0.0	9.4	90.0	0.6	0.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26.8)	0.0	0.0	75.8	24.2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1.3)	0.0	0.0	0.0	59.2	40.8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5.9)	0.6	38.4	49.8	8.9	2.2	100.0 (315)
영리법인	(25.7)	0.0	40.0	30.0	20.0	10.0	100.0 (10)
비영리법인[3)]	(35.6)	0.0	7.9	37.1	31.5	23.6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6.2)	0.0	0.0	0.0	0.0	100.0	100.0 (1)
지역							
대도시	(20.9)	0.0	36.4	42.7	11.8	9.1	100.0 (110)
중소도시	(20.2)	0.6	29.2	48.4	15.5	6.2	100.0 (100)
농어촌	(20.5)	0.7	30.8	47.6	14.0	7.0	100.0 (161)
2019년	-	1.3	35.0	40.0	12.8	10.9	100.0 (477)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022.07.01.기준 조사 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의 전체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직원 수는 평균 20.5명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6명, 노인요양시설은 26.3명이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6.2명, 비영리법인 35.6명, 영리법인 25.7명, 개인 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영리법인(7.2명)이 개인(6.6명)과 비영리법인(6.5명)보다 많았고, 노인요양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46.2명), 비영리법인(37.6명)의 직원 수가 많았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는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직원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균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노인요양시설은 대도시가 29.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직원 수가 많았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에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직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시설급여 제공기관 직원 중 16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3.6%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5%, 노인요양시설은 3.2%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기관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직원의 비율이 4.6%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5.7%), 대도시(4.8%), 중소도시(3.0%)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직원의 비율이 33.0%, 영리법인이 10.4%로 다른 두 운영주체가 2% 미만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용자 수별로는 9명 이하인 기관이 10.7%로 가장 높았으며, 70인 이상 기관에서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4.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30〉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직원(명)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직원			
				직원 수 대비(%)			평균(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전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전체	
전체	6.6	26.3	20.5	4.5	3.2	3.6	0.6
운영주체							
개인	6.6	21.2	15.9	4.6	2.9	3.5	0.4
영리법인	7.2	33.5	25.7	3.3	10.4	8.3	0.9
비영리법인[3)]	6.5	37.6	35.6	2.5	2.7	2.7	0.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46.2	46.2	0.0	33.0	33.0	17.5
이용자 수							
9명 이하	6.6	7.5	6.6	4.5	10.7	4.8	0.3
10~29명	7.0	14.7	14.7	0.0	4.4	4.3	0.6
30~49명	0.0	27.1	27.1	0.0	0.6	0.6	0.2
50~69명	0.0	41.2	41.2	0.0	2.5	2.5	1.3
70~99명	0.0	53.3	53.3	0.0	0.0	0.0	0.0
100명 이상	0.0	84.0	84.0	0.0	0.0	0.0	0.0
지역구분							
대도시	6.6	29.1	20.9	4.8	1.3	2.6	0.3
중소도시	6.5	25.0	20.2	3.0	4.8	4.3	0.8
농어촌	6.7	25.8	20.5	5.7	2.7	3.5	0.5
2019년	6.1	29.3	-[5)]	3.3	1.4	1.7	0.6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노인요양시설 4개소, 주야간보호 6개소
5) 2019년과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비교치 미제시(2019년은 평균의 합, 2022년은 각 급여유형 합의 평균임)

다음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종별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요양보호사 51.9%(3.4명), 시설장 15.7%(1.0명), 간호조무사 14.4%(0.9명), 사회복지사 8.0%(0.5명), 조리원 7.7%(0.5명) 등의 순이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현황은 특성별로 별다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종별 직원 현황[1)2)]

(단위: %, 명)

특성(전체)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기타[3)]	계(명)	
전체(%)		15.7	0.2	8.0	1.6	14.4	0.1	51.9	7.7	0.5	100	(6.6)
평균(명)		1.0	0.0	0.5	0.1	0.9	0.0	3.4	0.5	0.0		
운영주체												
개인		15.7	0.1	8.2	1.7	14.3	0.0	51.9	7.5	0.6	100.0	(6.6)
영리법인		14.2	0.0	7.5	0.0	14.2	0.0	50.0	14.2	0.0	100.0	(7.2)
비영리법인[4)]		16.2	1.3	4.2	0.0	16.2	1.3	53.0	7.8	0.0	100.0	(6.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이용자 수												
9명 이하		15.7	0.2	8.0	1.6	14.4	0.1	51.8	7.6	0.5	100.0	(6.6)
10~29명		14.3	0.0	4.8	0.0	14.3	0.0	57.1	9.5	0.0	100.0	(7.0)
지역												
대도시		15.6	0.2	6.3	2.9	13.4	0.2	52.3	8.5	0.6	100.0	(6.6)
중소도시		16.0	0.2	8.8	1.1	15.1	0.0	51.5	6.9	0.3	100.0	(6.5)
농어촌		15.4	0.2	8.7	0.9	14.7	0.0	51.8	7.6	0.6	100.0	(6.7)
2019년	전체(%)	17.2	1.7	8.6	1.7	15.5	0.0	55.2	-	3.4	100.0	(6.1)
	평균(명)	1.0	0.1	0.5	0.1	0.9	0.0	3.2	-	0.2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2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계약의사, 안전관리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2019년은 조리원을 기타에 포함하였음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직종별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26.3명으로 요양보호사 65.1%(17.2명), 사회복지사 8.3%(1.9명), 간호조무사 7.4%(1.8명), 조리원 5.8%(1.5명), 시설장 5.3%(1.0명) 등의 순이었다.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앞서 살펴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3:1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2.5:1이기 때문이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평균 직원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영리법인 37.6명, 영리법인 33.5명, 개인 21.2명 순이었다. 직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요양보호사는 63~65% 수준이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의 비중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이 이용자 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직원 수가 많다. 요양보호사의 비중은 9명 이하 기관(46.6%)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약 65% 이상으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들의 분포는 지역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32〉 노인요양시설의 직종별 직원 현황[1)2)3)]

(단위: %, 명)

특성(전체)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기타[4)]	계(명)
전체(%)	5.3	1.5	8.3	0.9	7.4	0.9	0.7	65.1	0.8	0.7	5.8	1.3	0.9	0.2	100.0 (26.3)
평균(명)	1.0	0.4	1.9	0.3	1.8	0.3	0.2	17.2	0.3	0.3	1.5	0.5	0.4	0.1	
운영주체															
개인	6.0	1.4	9.0	0.6	8.0	0.7	0.8	65.6	0.4	0.4	5.3	1.0	0.7	0.2	100.0 (21.2)
영리법인	4.9	1.5	6.6	2.4	6.3	0.8	0.8	64.4	1.3	0.9	6.2	1.0	1.7	1.1	100.0 (33.5)
비영리법인[5)]	3.8	1.7	7.0	1.6	6.2	1.5	0.7	63.9	1.6	1.2	6.9	2.0	1.5	0.3	100.0 (37.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5	1.2	4.8	0.6	7.3	2.5	0.0	63.5	3.6	2.5	7.9	2.5	1.2	0.0	100.0 (46.2)
이용자 수															
9명 이하	13.6	1.4	13.6	0.0	15.0	0.0	0.0	46.6	0.0	0.0	8.3	0.0	0.0	1.4	100.0 (7.5)
10~29명	7.2	1.4	10.0	0.6	7.6	0.2	0.2	65.6	0.1	0.2	5.8	0.5	0.4	0.1	100.0 (14.7)
30~49명	3.8	1.0	7.4	1.1	7.2	2.0	1.8	65.0	0.7	0.9	5.4	2.6	0.7	0.4	100.0 (27.1)
50~69명	2.5	2.5	5.3	1.3	6.8	1.8	0.9	64.5	2.6	1.7	5.6	1.9	2.6	0.1	100.0 (41.2)
70~99명	1.9	1.9	5.1	1.6	6.6	1.4	0.8	66.6	2.1	1.5	5.8	2.1	2.1	0.4	100.0 (53.3)
100명 이상	1.2	1.2	5.0	2.2	6.7	1.6	0.8	67.1	2.0	1.3	6.5	2.3	1.8	0.2	100.0 (84.0)
지역															
대도시	4.8	1.4	8.2	1.1	7.0	0.8	0.8	66.0	0.8	0.6	5.9	1.3	0.7	0.2	100.0 (29.1)
중소도시	5.4	1.4	8.4	0.9	7.6	1.0	0.8	65.5	0.7	0.7	5.2	1.3	0.9	0.2	100.0 (25.0)
농어촌	5.5	1.6	8.4	0.8	7.5	1.0	0.6	64.0	0.8	0.7	6.4	1.3	1.1	0.3	100.0 (25.8)
2019년 전체(%)	3.4	1.7	6.1	1.7	6.1	1.4	0.7	66.3	1.4	1.0	6.5	1.7	1.4	0.7	100.0 (29.3)
2019년 평균(명)	1.0	0.5	1.8	0.5	1.8	0.4	0.2	19.5	0.4	0.3	1.9	0.5	0.4	0.2	

주: 1) 노인요양시설 294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위생원과 조리원을 위탁급식, 위탁세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0명으로 조사함
4) 기타: 촉탁의사, 주방보조원, 운전원, 상담사 등
5)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 시설급여 및 주야간·단기보호기관의 인력 추가배치 현황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청구가 아닌 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3.8%로 평균 3.7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예산으로 직원을 추가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급여유형은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53.5%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용인원도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50.0%와 45.2%로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비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채용 평균인원이 4.9명과 5.6명으로 타 운영주체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추가채용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추가채용하는 직종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21.7%, 간호(조무)사 15.1%, 조리원 14.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를 추가채용하는 기관의 평균 채용인원은 1.3명으로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추가채용비율이 35.2%로 높았으며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추가채용비율 및 추가채용 평균 인원 수가 많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고, 평균 인원도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타 지역에 비해 추가채용 비율이 높고 평균 인원도 많았다.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평균 1.2명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 비율이 33.8%로 가장 높으며, 평균 인원도 1.5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많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채용비율이 높았지만, 평균 인원은 영리법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추가채용비율이 17.0%로 가장 높았다.

요양보호사는 전체 기관의 29.0%가 평균 2.8명을 추가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36.6%가 요양보호사를 추가채용하였으며,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추가채용기관 비율이 높고, 평균 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영리법인에서 추가채용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채용한 평균 인원은 비영리법인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조리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4.1%로 조리원을 추가채

용하는 기관의 경우, 평균 1.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23.9%는 조리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급여유형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균 인원도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원 추가채용 비율은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높았으나, 평균 인원은 비영리법인이 1.3명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조리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비율이 17.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평균 채용인원은 지역별 유사한 인원을 보였다.

그 외 직종은 11.4%가 평균 1.5명을 추가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채용 비율은 주야간보호가 17.8%로 가장 높지만, 평균인원은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추가채용 비율과 인원이 모두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은 농어촌의 추가채용 비율이 높지만, 평균 인원은 대도시가 높았다.

〈표 5-33〉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자체예산으로 직원 추가채용 여부 및 평균 인원[1)2)]

(단위: %, 명)

특성	전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그 외 직종[5)]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추가 채용 여부	평균 인원
전체	43.8	3.7	21.7	1.3	15.1	1.2	29.0	2.8	14.1	1.2	11.4	1.5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46.9	3.2	20.9	1.3	12.2	1.1	29.1	2.3	13.2	1.0	17.8	1.4
단기보호	25.0	2.6	0.0	1.0	0.0	1.0	25.0	1.8	0.0	1.0	0.0	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3.9	2.8	13.9	1.1	13.9	1.0	24.8	2.1	12.4	1.0	2.5	1.0
노인요양시설(10~29명)	40.0	4.1	23.1	1.3	13.1	1.1	28.8	3.4	13.8	1.3	5.0	1.3
노인요양시설(30~49명)	46.8	4.1	23.8	1.3	17.7	1.5	29.0	3.4	12.9	1.4	12.9	1.4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3.5	5.7	35.2	1.7	33.8	1.5	36.6	3.7	23.9	1.4	11.3	2.2
운영주체												
개인	43.4	3.3	20.7	1.3	13.6	1.1	28.6	2.6	12.3	1.1	10.5	1.4
영리법인	50.0	3.4	15.4	1.1	16.0	1.4	36.0	2.7	20.0	1.1	12.0	1.3
비영리법인[3)]	45.2	4.9	26.8	1.5	20.4	1.3	29.9	3.3	19.1	1.3	15.3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5.0	5.6	25.0	1.5	25.0	1.0	25.0	2.6	25.0	1.0	0.0	0.0
지역												
대도시	44.2	3.6	20.9	1.3	15.1	1.2	29.2	2.8	12.9	1.2	11.6	1.6
중소도시	42.1	3.6	20.7	1.3	13.8	1.1	29.0	2.7	12.4	1.1	10.7	1.5
농어촌	45.9	3.8	23.9	1.4	17.0	1.2	29.1	2.9	17.3	1.2	12.6	1.3
2019년	42.7	3.8	22.4	1.3	14.1	1.3	24.2	2.9	16.9	1.3	-	-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기관 74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추가 채용기관 중 채용인원 평균
5) 그 외 직종: 계약의사, 관리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원, 위생원, 영양사, 운전사 등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법정 직원배치기준 외에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직종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56.3%, 사회복지사 16.6%, 없음 8.3%, 조리원 5.8%, 사무원 3.7%, 간호조무사 2.7%, 간호사 2.2%, 물리치료사 2.0%, 위생원 0.8%, 작업치료사, 영양사 기타 각각 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모든 급여유형에서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추가 채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컸다. 단기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66.7%로 높게 나타나, 다른 급여유형 제공기관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추가 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33.3%)도 다른 급여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인 이상의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53.6%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사는 24.6%로 높아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도가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추가 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요양보호사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100.0%), 영리법인(64.0%), 개인(56.7%), 비영리법인(50.3%)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사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21.7%), 개인(15.3%), 영리법인(1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을 가장 크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소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58.8%라고 응답해 요양보호사의 추가 채용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20.1%)도 다른 지역(중소도시 16.6%, 대도시 12.8%)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4〉 장기요양기관의 법정 직원배치기준 외 추가채용 필요 직종(1순위)[1)2)]

(단위: %, 개소)

특성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기타[3)]	없음	계 (개소)
전체	16.6	2.2	2.7	2.0	0.5	56.3	3.7	0.5	5.8	0.8	0.5	8.3	100.0 (746)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16.0	1.9	4.3	2.2	0.6	53.4	3.4	1.2	6.8	0.9	0.9	8.3	100.0 (324)
단기보호	0.0	0.0	0.0	0.0	0.0	66.7	0.0	0.0	0.0	0.0	0.0	33.3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9	1.7	1.7	3.3	0.0	57.9	3.3	0.0	5.8	0.8	0.0	10.7	100.0 (121)
노인요양시설(10~29명)	15.2	3.2	1.3	1.3	0.6	61.4	3.2	0.0	6.3	0.6	0.6	6.3	100.0 (158)
노인요양시설(30~49명)	18.0	1.6	1.6	1.6	0.0	57.4	6.6	0.0	1.6	1.6	0.0	9.8	100.0 (6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4.6	2.9	1.4	1.4	1.4	53.6	4.3	0.0	4.3	0.0	0.0	5.8	100.0 (69)
운영주체													
개인	15.3	2.1	2.9	2.5	0.5	56.7	3.0	0.9	5.9	0.9	0.7	8.6	100.0 (561)
영리법인	12.0	4.0	4.0	4.0	4.0	64.0	0.0	0.0	4.0	0.0	0.0	4.0	100.0 (25)
비영리법인[4)]	21.7	3.2	2.5	0.6	0.6	50.3	5.1	0.0	5.7	1.9	0.0	8.3	100.0 (15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3)
지역													
대도시	12.8	2.2	3.5	1.8	1.3	58.8	1.3	1.3	8.0	0.9	0.0	8.0	100.0 (226)
중소도시	16.6	2.4	3.1	2.8	0.3	56.1	4.2	0.3	5.2	1.0	1.0	6.9	100.0 (289)
농어촌	20.1	2.6	1.3	1.7	0.0	52.4	4.8	0.4	4.8	0.9	0.4	10.5	100.0 (229)
2019년	22.4	3.3	3.9	3.8	2.2	40.5	3.7	0.3	5.4	1.5	0.7	12.3	100.0 (774)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기관 74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운전원, 관리인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라.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공식인력 현황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비공식 인력 활용 여부 및 해당 인력의 도움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은 전체 기관 중 38.3%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활동하는 기관의 79.7%는 해당 인력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 42.4%, 도움됨 37.3%)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25.0%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도움 정도에 대해 단기보호는 10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 기관에서 도움정도가 87.5%로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71.4%로 가장 낮았지만, 매우 도움됨의 비율은 47.6%로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에서의 근무비율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정도도 비영리법인이 84.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의 근무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정도도 81.4%로 가장 높았다.

〈표 5-35〉 지난 3개월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사회복무요원[2]

(단위: %, 개소)

특성	사회복무요원[1]	도움정도[4]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혀도움 안됨	계 (개소)	
전체	38.3 (160)	42.4	37.3	14.6	3.2	2.5	100.0	(160)
급여유형								
단기보호	25.0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4	47.6	23.8	23.8	4.8	0.0	100.0	(21)
노인요양시설(10~29명)	40.6	40.6	40.6	14.1	1.6	3.1	100.0	(64)
노인요양시설(30~49명)	40.3	45.8	41.7	12.5	0.0	0.0	100.0	(24)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67.6	39.6	37.5	12.5	6.3	4.2	100.0	(48)
운영주체								
개인	30.2	40.0	35.8	17.9	3.2	3.2	100.0	(95)
영리법인	36.4	40.0	40.0	20.0	0.0	0.0	100.0	(5)
비영리법인[3]	67.0	44.1	40.7	10.2	3.4	1.7	100.0	(5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도시	34.5	42.5	37.5	12.5	5.0	2.5	100.0	(40)
중소도시	38.7	39.7	34.9	20.6	3.2	1.6	100.0	(63)
농어촌	40.3	42.4	39.0	11.9	3.4	3.4	100.0	(59)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응답한 160개소의 자료를 분석
5) 2022년 신규 문항임

다음으로 유급프로그램 강사는 전체 기관 중 13.1%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유급프로그램강사가 활동하는 기관의 89.1%는 해당 인력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 56.4%, 도움됨 32.7%)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25.0%에 유급프로그램 강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 노인요양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유급프로그램 강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도움정도에 대해 단기보호와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10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0.0%로 급여유형 중 가장 낮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에서의 근무비율이 14.6%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정도도 비영리법인이 92.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근무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나, 도움정도는 농어촌이 94.1%로 가장 높았다.

〈표 5-36〉 지난 3개월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유급 프로그램 강사[2)3)]

(단위: %, 개소)

특성	유급 프로그램 강사[1)]	도움정[14)]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계 (개소)	
전체	13.1 (55)	56.4	32.7	7.3	1.8	1.8	100.0	(55)
급여유형								
단기보호	25.0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3	53.3	26.7	6.7	6.7	6.7	100.0	(15)
노인요양시설(10~29명)	11.9	50.0	40.0	10.0	0.0	0.0	100.0	(20)
노인요양시설(30~49명)	14.3	62.5	37.5	0.0	0.0	0.0	100.0	(8)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5.5	63.6	27.3	9.1	0.0	0.0	100.0	(11)
운영주체								
개인	12.6	51.2	36.6	7.3	2.4	2.4	100.0	(41)
영리법인	9.1	0.0	0.0	0.0	0.0	0.0	0.0	(1)
비영리법인[5)]	14.6	61.5	30.8	7.7	0.0	0.0	100.0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도시	14.2	56.3	31.3	6.3	6.3	0.0	100.0	(16)
중소도시	12.9	47.6	42.9	9.5	0.0	0.0	100.0	(21)
농어촌	11.9	64.7	29.4	0.0	0.0	5.9	100.0	(17)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유급프로그램강사가 있다고 응답한 55개소의 자료를 분석
5) 2022년 신규 문항임

다음으로 개인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전체 기관 중 25.7%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개인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는 기관의 88.9%는 해당 인력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 50.9%, 도움됨 38.0%)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20.0%에 개인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도움정도에 대해 단기보호는 10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5.8%로 급여유형 중 가장 낮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에서의 활동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정도는 영리법인이 100.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매우도움됨은 비영리법인이 62.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활동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정도도 92.7%로 가장 높았다.

〈표 5-37〉 지난 3개월간 시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 내 비공식인력 활동 여부: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2)]

(단위: %, 개소)

특성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1)]	도움정도[4)]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계	(개소)
전체	25.7 (108)	50.9	38.0	8.3	1.9	0.9	100.0	(108)
급여유형								
단기보호	20.0	100.0	0.0	0.0	0.0	0.0	100.0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3.0	42.9	42.9	7.1	3.6	3.6	100.0	(28)
노인요양시설(10~29명)	25.0	50.0	40.0	7.5	2.5	0.0	100.0	(40)
노인요양시설(30~49명)	22.6	50.0	35.7	14.3	0.0	0.0	100.0	(14)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5.2	60.0	32.0	8.0	0.0	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23.0	46.6	41.1	9.6	1.4	1.4	100.0	(73)
영리법인	20.0	50.0	50.0	0.0	0.0	0.0	100.0	(2)
비영리법인[3)]	36.0	62.5	31.3	6.3	0.0	0.0	100.0	(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	-	-	-	-	-	-
지역								
대도시	22.8	44.0	44.0	12.0	0.0	0.0	100.0	(25)
중소도시	25.2	58.5	26.8	12.2	2.4	0.0	100.0	(41)
농어촌	29.2	48.8	43.9	2.4	2.4	2.4	100.0	(41)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다고 응답한 108개소의 자료를 분석
5) 2022년 신규 문항임

5. 장기요양기관 인력 관리 현황

가. 직원복지 현황

기관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별 평균 가입인원은 산재보험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보험 20.9명, 건강보험 17.8명, 국민연금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는 가입요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50대임을 고려할 때 타 사회보험에 비해 가입 직원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급여유형별로는 직원수가 많은 기관유형에서 가입자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개인에 비해 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직원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큰 경향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38〉 사회보험 가입 직원 수

(단위: 명, 개소)

특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소)
기관별 평균 가입인원수	10.5	17.8	20.9	22.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0.8	21.3	27.3	29.2	(932)
방문목욕	6.4	10.6	13.5	14.5	(241)
방문간호	3.3	4.9	6.8	8.1	(34)
주야간보호	9.1	11.6	11.3	11.5	(326)
단기보호	4.0	6.5	6.0	6.2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9	6.1	5.5	5.6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9.5	14.8	13.8	14.2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18.3	26.4	25.4	26.1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6.6	51.1	50.1	51.1	(71)
운영주체					
개인	9.4	16.7	20.0	21.2	(1,633)
영리법인	13.8	22.2	24.8	26.1	(81)
비영리법인[3]	16.7	23.9	25.6	26.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2.3	23.2	23.0	23.1	(4)
지역					
대도시	10.2	18.6	22.6	24.0	(717)
중소도시	10.5	17.6	20.7	22.0	(725)
농어촌	10.8	17.0	18.6	19.2	(511)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 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복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기관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수당 및 관련 직원복지(경조사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포상휴가 등)로 전체 기관 중 86.3%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지원 54.1%,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41.5%,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장비 지원 21.3%, 노동조합 또는 직원 협의체 운영 8.7%, 동호회 활동 지원 2.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원이 없는 기관은 4.8%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급여유형에서 수당 및 직원 복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순위의 경우 기관유형별 차이를 보이는데, 재가급여기관은 교육 등 자기개발 지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시설급여기관은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은 노동조합 또는 직원협의체 운영 비율이 40.8%로 타 기관에 비해 높았으며, 방문형기관은 직원복지가 없는 비율이 주야간보호 및 시설급여기관에 비해 높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수당 및 직원복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순위는 교육 등 자기개발지원이었다. 비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타 운영주체에 비해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에서 농어촌의 비율이 49.7%로 대도시 33.9%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5-39〉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복지 현황

(단위: %, 개소)

특성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 장비 지원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수당 및 직원 복지	노동조합 또는 직원 협의체 운영	없음	기타	개소
전체	41.5	21.3	54.1	2.7	86.3	8.7	4.8	1.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30.2	13.1	49.5	1.6	85.1	7.7	6.3	1.2	(932)
방문목욕	30.7	20.3	52.1	3.7	86.8	12.0	6.2	0.8	(241)
방문간호	29.4	11.8	50.0	2.9	80.0	8.8	8.8	0.0	(34)
주야간보호	40.2	16.0	59.3	2.1	89.6	7.1	3.4	0.6	(326)
단기보호	50.0	25.0	50.0	0.0	75.0	0.0	0.0	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6	29.5	57.4	1.7	86.9	3.3	1.7	1.6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73.9	44.4	59.0	3.8	82.5	3.1	1.3	0.6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74.6	50.0	61.3	3.2	90.3	8.1	0.0	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0.1	69.0	76.1	13.9	93.0	40.8	1.4	1.4	(71)
운영주체									
개인	39.7	20.1	51.7	1.7	85.9	6.9	5.0	1.2	(1,633)
영리법인	32.9	21.0	56.8	1.2	88.9	11.1	6.2	0.0	(81)
비영리법인[3]	55.7	29.4	69.4	9.8	88.6	20.0	3.4	0.8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25.0	75.0	0.0	100.0	50.0	0.0	0.0	(4)
지역									
대도시	33.9	19.5	53.7	2.6	85.1	7.5	6.8	0.8	(717)
중소도시	43.2	21.0	53.9	1.7	85.9	9.8	3.3	1.5	(725)
농어촌	49.7	24.1	55.2	4.3	88.8	8.8	4.1	0.8	(511)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중복응답
5) 2022년 신규 문항임

나. 직원의 근무기간 현황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기관에 사회복지사(92.2%)와 요양보호사(99.0%)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평균 2.8년, 요양보호사는 2.3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전체 기관 중 9.4%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평균 3.3년이며, 간호조무사는 39.8%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2.6년이다. 물리(작업)치료사는 9.6%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3.6년이며, 조리원은 26.8%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평균 2.2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종은 28.9%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평균 2.2년 근무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80%이상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방문간호 기관 중 52.9%의 기관에서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평균 근무기간은 2.8년이며,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3.6년), 비영리법인(3.7년), 농어촌 지역(3.1년)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었다.

간호사는 기관유형별로 근무비율이 상이하였으며, 방문간호기관의 88.2%에 간호사가 근무하며, 평균 근무기간은 3.3년이다. 간호사의 근속기간이 가장 긴 기관은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이 4.2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근속기간은 5.1년이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서는 거의 근무하지 않았으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은 90%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가장 오래 근무한 기관유형은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으로 3.6년이며,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년으로 가장 길고,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시설이 3.1년으로 길었다.

물리(작업)치료사는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100% 근무하고 있었으며 재가기관에서는 10%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기간이 가장 긴 급여유형은 방문요양에서 6.5년이지만, 기관수가 매우 적으며,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로 4.6년이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각각 5.7년과 5.5년으로 길었으며, 개인 및 영리법인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무하고있으며,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에서의 근무기간이 4.2년으로 가장 길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2년으로 가장 길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근무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길었다.

조리원은 방문형 재가급여를 제외한 기관의 50%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에서의 근무기간이 3.5년으로 가장 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근무기간이 4.7년으로 가장 길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큰 기관, 비영리기관에서의 근속년수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5-40〉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

(단위: %, 년)

특성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그 외 직종[4]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유무	기간
전체	92.2	2.8	9.4	3.3	39.8	2.6	9.6	3.6	99.0	2.3	26.8	2.2	28.9	2.2
급여유형														
방문요양	92.5	2.8	2.3	2.8	6.4	2.2	0.6	6.5	100.0	2.1	4.4	2.0	10.3	2.1
방문목욕	84.6	2.8	3.3	3.7	5.0	2.6	0.4	5.0	99.6	2.3	4.6	1.2	23.2	2.5
방문간호	52.9	3.4	88.2	3.3	41.2	2.3	2.9	1.9	47.1	2.4	2.9	2.4	11.8	2.2
주야간보호	98.8	2.2	13.5	2.5	90.5	2.1	9.2	3.1	100.0	2.1	59.8	1.9	77.5	1.8
단기보호	80.0	3.5	0.0	3.9	100.0	3.2	0.0	2.6	100.0	2.5	75.0	2.0	25.0	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1	3.2	10.7	3.5	91.8	2.8	0.8	2.7	100.0	2.9	54.1	2.0	6.1	2.9
노인요양시설(10~29명)	98.8	2.9	9.4	3.3	93.8	2.8	10.0	1.4	100.0	2.6	66.3	2.3	24.2	2.9
노인요양시설(30~49명)	100.0	2.8	27.4	3.7	96.8	3.0	100.0	3.0	100.0	3.1	69.8	2.4	69.4	2.3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0.0	3.6	50.7	4.2	98.6	3.6	100.0	4.6	100.0	4.2	80.3	3.5	90.0	4.1
운영주체														
개인	91.7	2.6	7.8	2.7	36.3	2.3	6.1	2.1	99.0	2.1	22.8	1.7	24.6	2.0
영리법인	92.6	2.6	8.6	1.8	37.8	2.3	8.5	2.1	97.5	2.5	20.7	2.2	23	1.9
비영리법인[3]	94.5	3.7	20.8	4.9	63.8	3.8	34.0	5.5	99.6	3.8	55.5	3.4	28.4	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2.5	50.0	5.1	75.0	4.3	33.3	5.7	100.0	5.2	100.0	4.7	58.6	6.5
지역														
대도시	91.2	2.7	8.4	3.4	31.8	2.5	7.3	3.6	98.7	2.1	20.9	2.2	22.1	2.3
중소도시	91.3	2.6	10.8	3.0	41.4	2.3	10.8	3.8	99.0	2.2	25.2	2.1	31.0	2.2
농어촌	94.5	3.1	9.2	3.6	48.6	3.1	11.3	3.3	99.2	2.8	37.2	2.3	35.3	2.5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022.07.01.기준 조사 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그 외 직종: 위생원, 관리원, 사무원, 영양사, 안전기사, 운전원 등
5)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6개월간 퇴사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퇴사한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84.5%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직원의 퇴사 발생률이 높은 기관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으로 98.6%의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지난 6개월간 퇴사직원이 있었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 96.8%, 방문요양 88.7%, 노인요양시설(10~29명) 85.6%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퇴사 발생률이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 84.0%, 비영리법인 7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6.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87.0%, 중소도시 85.1%, 농어촌 80.4%로 대도시지역에서의 퇴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퇴사한 직원이 있는 기관의 평균 인원을 살펴보면, 평균 5.9명의 직원이 지난 6개월간 퇴사를 하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0.3명, 간호조무사 0.2명, 조리원 0.1명, 그 외 직원 0.1명의 순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요양 7.8명, 노인요양시설(30~49명) 6.0명, 방문목욕 5.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퇴사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급여의 경우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전 직종에서의 퇴사직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의 퇴사인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리법인 5.9명, 비영리법인 3.9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퇴사 수가 가장 많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사인원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매우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퇴사자 수가 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7.1명, 농어촌 4.8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퇴사자수가 지역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는 7.4명, 중소도시는 6.2명 농어촌은 3.7명으로 도시의 규모가 큰 경우 퇴사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1〉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6개월간 직원 퇴사 현황[1)2)]

(단위: %, 명)

특성	전체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그 외 직원
	비율	평균 인원[4)]							
전체	84.5	5.9	0.3	0.0	0.2	0.0	5.1	0.1	0.1
급여유형									
방문요양	88.7	7.8	0.3	0.0	0.0	0.0	7.5	0.0	0.0
방문목욕	75.9	5.2	0.2	0.0	0.0	0.0	4.9	0.0	0.1
방문간호	61.8	3.2	0.2	0.4	0.2	0.0	2.4	0.0	0.0
주야간보호	82.2	3.1	0.5	0.0	0.3	0.0	1.8	0.2	0.3
단기보호	75.0	1.7	0.2	0.1	0.2	0.1	0.9	0.2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0	1.8	0.2	0.1	0.3	0.0	1.0	0.2	0.0
노인요양시설(10~29명)	85.6	3.7	0.4	0.1	0.3	0.0	2.6	0.3	0.1
노인요양시설(30~49명)	96.8	6.0	0.5	0.1	0.7	0.2	3.9	0.5	0.3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8.6	8.4	0.7	0.2	0.9	0.1	5.1	0.7	0.5
운영주체									
개인	85.7	6.2	0.3	0.0	0.2	0.0	5.4	0.1	0.1
영리법인	84.0	5.9	0.4	0.1	0.2	0.0	5.0	0.1	0.1
비영리법인[5)]	77.1	3.9	0.3	0.0	0.3	0.0	2.7	0.2	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6.7	1.6	0.4	0.0	0.1	0.0	1.1	0.0	0.0
지역									
대도시	87.0	7.1	0.3	0.0	0.1	0.0	6.4	0.1	0.1
중소도시	85.1	6.1	0.4	0.0	0.2	0.0	5.2	0.1	0.1
농어촌	80.4	3.8	0.3	0.0	0.2	0.0	3.0	0.2	0.1
2019년	76.1	6.6	-	-	-	-	-	-	-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평균인원

다. 장기요양인력의 교육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41.5%, 필요하다 44.0%, 보통이다 9.0%, 필요하지 않다 4.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로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의 합)이 85.5%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급여유형에서 매우 필요 또는 필요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없거나 2%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 중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매우 필요하다가 54.9%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필요와 필요의 합은 90.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이 약 38% 수준으로 모든 급여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방문요양은 매우 필요와 필요의 합 역시도 급여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낮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대부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매우필요와 필요의 합이 84.6%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의 합)이 중소도시(88.3%), 농어촌(86.5%), 대도시(8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니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5-42〉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개소)	
전체	41.5	44.0	9.0	4.5	1.0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38.2	44.1	11.1	5.5	1.2	100.0	(932)
방문목욕	38.6	47.3	9.1	4.1	0.8	100.0	(241)
방문간호	47.1	41.2	5.9	5.9	0.0	100.0	(34)
주야간보호	47.5	42.3	6.1	2.8	1.2	100.0	(326)
단기보호	50.0	50.0	0.0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5.5	41.3	8.3	4.1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40.3	47.8	8.2	3.1	.6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47.5	44.3	3.3	4.9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4.9	35.2	5.6	2.8	1.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39.7	44.9	9.5	4.8	1.0	100.0	(1,633)
영리법인	52.4	37.8	8.5	1.2	0.0	100.0	(81)
비영리법인[2)]	49.8	38.7	6.0	3.4	2.1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0	50.0	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40.3	41.2	11.0	6.3	1.3	100.0	(717)
중소도시	42.1	46.2	7.2	3.4	1.1	100.0	(725)
농어촌	42.3	44.2	9.2	3.5	.8	100.0	(511)
2019년	38.4	47.6	7.3	6.5	0.3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응답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장 21.1%, 사회복지사 20.3%, 간호(조무)사 1.3%, 사무국장 1.2%, 물리(작업)치료사 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급여유형에서 요양보호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급여유형의 경우 시설규모가 큰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교육 필요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방문목욕과 방문목욕에서의 비율도 높았다.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급여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시설급여기관은 시설장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는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 욕구가 높았다. 또한 방문간호는 타 급여유형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교육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요양보호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기타는 현저히 낮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로 응답하여 가장 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리법인(22.2%), 비영리법인(18.4%)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시설장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있어서는 개인(21.2%), 비영리법인(20.6%), 영리법인(1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타 직종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5-43〉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1]

(단위: %, 개소)

특성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기타[2]	계 (개소)	
전체	21.1	1.2	20.3	1.3	0.9	55.2	0.0	100.0	(1,843)
급여유형									
방문요양	20.3	0.8	19.4	.2	1.5	57.7	0.0	100.0	(870)
방문목욕	14.4	0.9	23.1	.9	0.4	60.3	0.0	100.0	(229)
방문간호	21.2	3.0	18.2	12.1	0.0	45.5	0.0	100.0	(33)
주야간보호	25.0	1.9	27.6	1.9	0.0	43.6	0.0	100.0	(312)
단기보호	25.0	0.0	25.0	0.0	0.0	5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0	0.9	12.9	3.4	1.7	56.0	0.0	100.0	(116)
노인요양시설(10~29명)	24.8	1.3	18.3	2.6	0.7	52.3	0.0	100.0	(153)
노인요양시설(30~49명)	20.7	1.7	15.5	1.7	0.0	60.3	0.0	100.0	(58)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9.1	2.9	10.3	1.5	0.0	66.2	0.0	100.0	(68)
운영주체									
개인	21.2	1.2	20.2	1.3	0.9	55.1	0.0	100.0	(1,536)
영리법인	19.8	0.0	22.2	1.2	2.5	54.3	0.0	100.0	(81)
비영리법인[3]	20.6	1.8	18.4	1.8	0.9	56.5	0.0	100.0	(2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50.0	0.0	0.0	5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23.2	1.1	20.2	1.1	0.8	53.7	0.0	100.0	(663)
중소도시	19.2	0.7	21.4	1.0	1.0	56.6	0.0	100.0	(692)
농어촌	20.7	2.0	18.6	2.0	1.2	55.4	0.0	100.0	(489)
2019년	17.4	1.5	20.6	1.9	0.3	58.0	0.3	100.0	(1,822)

주: 1)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84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사무원, 운전원, 상담사, 조리원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은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양성 및 교육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로 1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실무중심의 교육내용 개편'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이 17.3%,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확대 및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접근성 확대'가 각각 9.3%, '양질의 전문강사 양성' 4.2%, '교육시간대의 다양화' 4.1%, '기타' 0.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급여유형에서 '실무중심의 교육 내용 개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30~49명)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및 교육시간 확대'가 22.9%로 높았다. 3순위 응답는 기관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모든 운영주체에서 '실무중심의 교육내용 개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0.0%로 나타났다. 2순위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운영주체에서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3순위는 운영주체별로 상이하였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실무중심의 교육내용 개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5-44〉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교육 개선사항(1순위)[1)]

(단위: %, 개소)

특성	실무 중심의 교육내용 개편	양질의 전문강사 양성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및 교육시간 확대	교육 시간대의 다양화	교육 접근성 확대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기타[2)]	계 (개소)	
전체	55.3	4.2	9.3	4.1	9.3	17.3	0.4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56.3	4.4	7.8	4.8	12.1	14.1	0.4	100.0	(932)
방문목욕	60.2	2.9	11.6	4.1	5.8	14.5	0.8	100.0	(241)
방문간호	60.0	2.9	11.4	2.9	11.4	11.4	0.0	100.0	(34)
주야간보호	50.3	5.8	9.8	3.1	7.7	23.3	0.0	100.0	(326)
단기보호	66.7	0.0	0.0	0.0	0.0	33.3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1.2	4.1	5.8	2.5	7.4	28.1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57.1	3.1	9.3	3.7	6.8	19.3	0.6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51.6	1.6	11.3	4.8	4.8	25.8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51.4	4.3	22.9	2.9	4.3	14.3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55.5	4.2	8.6	4.4	9.3	17.6	0.4	100.0	(1,633)
영리법인	50.6	8.6	4.9	7.4	13.6	14.8	0.0	100.0	(81)
비영리법인3)	54.9	3.0	15.7	1.7	8.9	15.7	0.0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0.0	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56.3	5.3	9.4	4.7	9.2	14.2	0.8	100.0	(717)
중소도시	57.9	2.2	8.4	3.4	10.5	17.5	0.0	100.0	(725)
농어촌	50.2	5.5	10.5	4.3	8.0	21.1	0.4	100.0	(511)
2019년	23.2	2.1	7.3	4.1	3.4	-	1.2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요양보호사 실습 강화, 다문화 여성들을 활용한 교육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19년과 보기항목이 달라져, 직접 비교 어려움. 2019년에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개선' 17.9%, '치매전문교육을 양성교육에 포함' 27.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의무화' 9.2%가 포함되었음

앞선 질문은 장기요양요원 전반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다음의 내용은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 개선사항 관련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강화' 29.3%, '경력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마련' 19.2%, '직무교육 의무화' 17.7%, '기타' 2.2%의 순이었다.

급여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방문형 기관과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기관은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10~29명),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실습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순위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방문형 기관과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기관은 '실습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직무교육 의무화'였다. 즉, 방문형 기관과 이용형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영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주체들은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영리법인은 '실습강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타 운영주체와 달리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은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실습강화'의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다.

〈표 5-45〉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 개선사항[1)]

(단위: %, 개소)

특성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	실습 강화	직무교육 의무화	경력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마련	기타[2)]	계 (개소)	
전체	31.7	29.3	17.7	19.2	2.2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34.7	27.7	15.7	20.0	2.0	100.0	(932)
방문목욕	38.8	21.9	16.9	21.1	1.2	100.0	(241)
방문간호	35.3	23.5	14.7	23.5	2.9	100.0	(34)
주야간보호	23.9	35.0	17.5	20.9	2.8	100.0	(326)
단기보호	33.3	33.3	33.3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0	36.4	19.0	16.5	4.1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8.8	31.3	25.0	12.5	2.5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21.0	37.1	22.6	19.4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1.0	28.2	25.4	14.1	1.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31.9	29.6	17.4	18.7	2.3	100.0	(1,633)
영리법인	29.6	35.8	16.0	16.0	2.5	100.0	(81)
비영리법인3)	30.1	25.4	20.3	22.9	1.3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6.7	0.0	0.0	33.3	0.0	100.0	(4)
지역							
대도시	32.6	30.7	16.3	18.4	2.0	100.0	(717)
중소도시	29.7	32.0	17.2	18.3	2.8	100.0	(725)
농어촌	33.1	23.7	20.0	21.7	1.6	100.0	(511)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스트레스관리, 실무중심 교육, 다양한 상황별 대처방안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6. 시설급여 및 주야간·단기보호기관 인력의 근무 현황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교대가 44.5%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3교대(20.2%), 24시간 근무+2일 휴무(16.0%), 주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13.3%), 24시간 격일제(2.4%), 4교대(2.4%),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모든 기관에서 2교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2교대 48.4%, 3교대 19.2%, 24시간 근무+2일 휴무 12.4% 순이었고, 노인요양시설(30~49명)은 2교대 53.2%, 3교대 21.0%, 24시간 근무+2일 휴무 11.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2교대 39.4%, 3교대 35.2%, 주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 8.5% 순이었다. 주로 노인요양시설은 2교대와 3교대를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교대 37.7%, 24시간 근무+2인 휴무 29.5%, 주야간 근무자 별도채용 16.4%이며, 단기보호는 2교대 50.0%, 24시간 근무+2인 휴무와 주야간 근무자 별도채용 각각 25.0%이다.

운영주체별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2교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은 37.1%, 영리법인은 24시간 근무+2인 휴무, 24시간 격일제, 주야간 근무자 별도채용 각각 18.2%, 개인은 24시간 근무+2일 휴무(18.9%)와 주야간 근무자 별도채용(15.4%)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2교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교대제의 비율이 높고, 농어촌은 24시간 근무+2일 휴무의 비율이 높았다.

〈표 5-46〉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6개월간 요양보호사 근무형태[1)2)]

(단위: %, 개소)

특성	24시간 근무 +2일 휴무	24시간 격일제	2교대	3교대	4교대	주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	기타[3)]	계 (개소)	
전체	16.0	2.4	44.5	20.2	2.4	13.3	1.2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25.0	0.0	50.0	0.0	0.0	25.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9.5	2.5	37.7	12.3	0.8	16.4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2.4	2.5	48.4	19.9	1.9	14.3	0.6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11.3	1.6	53.2	21.0	1.6	9.7	1.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4.2	2.8	39.4	35.2	7.0	8.5	2.8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8.9	2.2	44.7	16.0	1.9	15.4	0.9	100.0	(318)
영리법인	18.2	18.2	36.4	9.1	0.0	18.2	0.0	100.0	(10)
비영리법인[4)]	5.6	2.2	44.9	37.1	3.4	4.5	2.2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14.9	2.6	44.7	24.6	2.6	8.8	1.8	100.0	(113)
중소도시	13.0	1.9	46.3	21.6	1.9	14.2	1.2	100.0	(164)
농어촌	20.3	2.8	42.0	15.4	2.1	16.1	1.4	100.0	(143)
2019년	24.0	5.6	39.7	15.6	1.7	10.9	2.6	100.0	(486)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3교대+2일 유무, 2교대+주간, 주야간 복합근무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중 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야간보호와 시설급여·단기보호 제공기관의 주간과 야간에 각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와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7명,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8명이고,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는 주간 6.0명, 야간 7.7명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야간보호는 평균 5.1명의 요양보호사가 주간, 0.2명의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근무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주간은 5.8명, 야간은 11.9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다만, 주야간보호는 22시까지만 운영하기며, 야간에 기관을 운영하는 수급자 수는 현원보다 적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보호는 1.6명의 요양보호사가 주간에 근무하며, 야간 근무자는 1.5명이다. 단기보호 요양보호사는 주야간 모두 1인당 6.1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7명의 요양보호사가 주간에 1.2명의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근무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주간 5.3명, 야간 7.0명의 수급자를 관리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주야간 근무 요양보호사가 많지만,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수 역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의 주야간 근무 요양보호사가 각각 8.6명과 4.2명으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많지만,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는 주간에는 개인운영기관이 5.9명, 야간에는 영리법인이 6.6명으로 적다.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주간근무 요양보호사 수와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는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야간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가 농어촌은 8.3명인 반면, 중소도시는 7.2명으로 야간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47〉 장기요양기관(주야간, 단기보호, 시설급여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주·야간 근무 인원[1)]

(단위: %, 명)

특성	주간근무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수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3)]	요양보호사 수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3)]
전체	5.7	6.0	2.8	7.7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5.1	5.8	0.2	11.9
단기보호	1.6	6.1	1.5	6.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5.3	1.2	7.0
노인요양시설(10~29명)	4.6	5.8	3.8	6.9
노인요양시설(30~49명)	8.5	7.0	6.8	8.3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6.1	8.0	12.2	8.8
운영주체				
개인	4.9	5.9	2.4	7.2
영리법인	7.2	6.7	2.8	6.6
비영리법인[2)]	8.6	6.5	4.2	9.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0	9.2	2.6	10.8
지역				
대도시	5.7	6.0	2.6	7.8
중소도시	5.6	6.1	2.9	7.2
농어촌	5.9	6.1	2.9	8.3

주: 1)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급여제공기관 74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조사표의 내용을 연구진 별도 계산
4)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야간근무 운영 형태는 교대제 66.7%, 야간전담 근무자 19.9%, 교대제+야간전담 근무자 12.7%, 기타 0.7%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급여유형에서 교대제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보호가 75.0%,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이 72.9%로 다른 급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야간전담자의 비율이 각각 25.0%, 29.5%로 높았다. 교대제+야간전담 근무자 비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전체 유형에서 11~14%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운영 기관은 교대제 63.5%로 비영리법인 77.3%와 영리법인 72.7%에 비해 낮은 반면, 야간전담 근무자는 개인 21.7%, 영리법인 18.2%, 비영리법인 11.4%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두 교대제, 야간전담 근무자, 교대제+야간전담 근무자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48〉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야간근무 운영 형태[1)2)]

(단위: %, 개소)

특성	교대제	야간전담 근무자	교대제+ 야간전담 근무자	기타[3)]	계 (개소)	
전체	66.7	19.9	12.7	0.7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75.0	25.0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5.7	29.5	13.1	1.6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70.6	16.3	12.5	0.6	10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71.0	17.7	11.3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72.9	12.9	14.3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63.5	21.7	13.8	0.9	100.0	(318)
영리법인	72.7	18.2	9.1	0.0	100.0	(10)
비영리법인[4)]	77.3	11.4	10.2	1.1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10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69.9	16.8	12.4	0.9	100.0	(113)
중소도시	67.5	17.8	13.5	1.2	100.0	(164)
농어촌	62.9	24.5	11.9	0.7	100.0	(143)
2019년	66.3	17.2	15.0	1.5	100.0	(486)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시설장 전담, 24시간 근무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다음은 지난 1개월간 1일 평균 야간근무 인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기관의 1일 평균 야간근무 인원은 3.6명이며, 1명과 2명 각각 24.8%, 6명 이상이 18.8%, 3명이 16.0%, 4~6명 미만 15.7%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단기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의 비율이 각각 50.0%,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2명의 비율이 46.3%로 높았다. 한편, 노인요양시설(30~49명) 4~6명 미만이 47.1%,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은 6명 이상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야간근무인원은 단기보호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인원수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운영 기관은 1명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리법인은 1명과 6명 이상이 각각 27.3%로 높았으며, 비영리법인은 6명 이상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야간근무인원은 영리법인 6.8명, 비영리법인 5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9명, 개인 3.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명과 2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인원도 3.6명으로 유사하여 지역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표 5-49〉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1일 평균 야간근무 인원[1)2)]

(단위: %, 개소, 명)

특성	1명	2명	3명	4~6명 미만	6명 이상	계 (개소)		평균 (명)
전체	24.8	24.8	16.0	15.7	18.8	100.0	(419)	3.6
급여유형								
단기보호	50.0	25.0	25.0	0.0	0.0	100.0	(3)	1.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8	19.7	6.6	0.0	0.0	100.0	(122)	1.3
노인요양시설(10~29명)	7.5	46.9	27.5	12.5	5.6	100.0	(161)	2.8
노인요양시설(30~49명)	0.0	6.5	21.0	46.8	25.8	100.0	(62)	4.9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0.0	0.0	1.4	23.6	75.0	100.0	(71)	8.3
운영주체								
개인	29.9	26.1	17.3	13.2	13.5	100.0	(318)	3.1
영리법인	27.3	9.1	18.2	18.2	27.3	100.0	(10)	6.8
비영리법인[3)]	5.7	22.7	10.2	25.0	36.4	100.0	(89)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100.0	100.0	(1)	4.9
지역								
대도시	30.1	22.1	15.0	14.2	18.6	100.0	(113)	3.6
중소도시	21.6	28.4	14.2	16.7	19.1	100.0	(164)	3.6
농어촌	24.3	22.9	18.8	16.0	18.1	100.0	(143)	3.6
2019년	26.9	23.5	16.2	14.9	18.6	100.0	(486)	3.3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이외 직종의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72.9%는 요양보호사 이외의 야간근무 직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를 하는 직종으로는 시설장이 17.2%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4.8%, 사무국장 2.2%, 기타 1.2%이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70% 이상이 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 직종이 없으며, 단기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직종이 있다면, 대부분의 급여유형에서는 시설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급여유형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은 시설장의 야간근무 비율은 타 급여유형에 비해 적은 반면, 사무국장의 비율은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개인(72.3%)과 비영리법인(76.4%)의 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 직종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54.5%로 낮았다. 그 외 직종의 비율은 시설장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소재의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외 직종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비율이 69.4%로 가장 낮았으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무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5-50〉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지난 1개월간 요양보호사 외 야간근무 직종[1)]

(단위: %, 개소)

특성	없음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기타[3)]	(개소)
전체	72.9	17.2	2.2	4.8	4.8	1.2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60.0	25.0	0.0	0.0	0.0	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0.7	28.9	.8	3.3	3.3	.8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79.4	13.8	1.3	6.3	6.3	.6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79.0	14.5	1.6	4.8	4.8	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74.6	7.0	7.0	4.2	4.2	4.2	(71)
운영주체							
개인	72.3	19.2	1.9	5.0	5.0	.9	(318)
영리법인	54.5	27.3	9.1	9.1	9.1	0.0	(10)
비영리법인[4)]	76.4	10.1	3.4	4.5	4.5	2.2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0.0	0.0	0.0	(1)
지역							
대도시	72.6	17.7	1.8	4.4	4.4	.9	(113)
중소도시	76.1	17.2	1.2	2.5	2.5	1.2	(164)
농어촌	69.4	17.5	3.5	7.7	7.7	1.4	(143)
2019년	83.6	-	-	-	-	-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관리인, 사무원, 조리원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2019년과 문항 구조가 상이하여 직접 비교 불가

7. 시설급여 및 주야간·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현황

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현황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항목별 제공여부를 살펴보면, 식사 재료비 99.5%, 간식비 85.0%, 경관 유동식 42.6%, 2인실 29.8%, 1인실 28.2%, 이미용비 22.4%, 기타 0.5% 순으로 높았다.

비급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사재료비는 급여유형, 운영주체, 지역 등의 특성과 무관하게 99% 이상의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비의 경우, 단기보호는 100.0%로 비급여를 받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의 비율이 83.8%로 가장 낮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이 79.8%로 간식비를 받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비율이 81.3%로 가장 낮았다.

경관유동식은 다른 비급여 항목에 비해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이 63.6%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각각 40.9% 47.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48.5%, 대도시 45.1%, 농어촌 34.3%순으로 경관유동식 비급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실과 2인실은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영주체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비율이 둘 다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1인실 22.4%, 2인실 24.5%로 가장 낮았다.

이미용비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은 보였으며,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이 28.1%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비율이 24.5%로 높았다.

〈표 5-51〉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식사 재료비	간식비	경관 유동식	1인실	2인실	이미용비	기타[3)]	(개소)
전체	99.5 (417)	85.0 (356)	42.6 (179)	28.2 (118)	29.8 (125)	22.4 (94)	0.5 (1)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100.0	100.0	25.0	25.0	25.0	25.0	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9.2	85.2	23.1	23.0	18.9	18.9	0.5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99.4	83.8	44.7	26.3	30.6	24.8	0.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100.0	87.1	55.6	35.5	38.7	16.1	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00.0	84.5	60.6	35.2	39.4	28.2	0.0	(71)
운영주체								
개인	99.4	86.5	40.9	28.5	29.9	20.8	0.5	(318)
영리법인	100.0	90.9	63.6	27.3	30.0	27.3	0.0	(10)
비영리법인[4)]	100.0	79.8	47.2	27.0	29.2	28.1	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50.0	0.0	0.0	0.0	0.0	0.0	(1)
지역								
대도시	100.0	87.7	45.1	30.7	31.0	22.1	0.0	(113)
중소도시	99.4	85.9	48.5	31.3	33.7	24.5	0.5	(164)
농어촌	99.3	81.3	34.3	22.4	24.5	20.8	0.0	(143)
2019년	98.2	83.4	38.0	25.8	30.9	31.9	0.6	-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급여 항목별 제공여부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을 산출함
3) 기타: 가정간호, 계약의진료비, 약제비, 목욕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이미용비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0원으로 조사함

비급여 항목별로 평균 금액을 살펴보았다. 1인실 8,421원, 2인실 5,519원, 식사재료비 2,775원, 경관유동식 2,657원, 이미용비 1,293원, 간식비 853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사재료비는 급여유형별로는 단기보호기관이 3,28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에서 2,913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2,553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식비의 경우, 단기보호기관이 1,064원, 영리법인과 개인이 907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906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75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관유동식은 단기보호기관이 2,762원, 영리법인이 3,18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2,837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실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11,034원으로 다른 급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601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이 9,654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영리법인은 18,053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8,502원으로 가장 높았다.

2인실은 단기보호가 7,79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이 10,328원으로 가장 높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개인이 5,077원으로 가정 낮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은 4,449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대도시는 7,481원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미용비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1,62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2,659원, 비영리법인은 689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1,11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대체로 급여유형에 있어서는 단기보호기관이 높은 수준이었고,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운영기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가장 낮은 편이다.

〈표 5-52〉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1)2)]

(단위: 원, 개소)

특성	식사 재료비(1식)	간식비 (1회)	경관 유동식 (1식)	1인실 (1일)	2인실 (1일)	이미용비 (1회)	(개소)
전체	2,775	853	2,657	8,421	5,519	1,293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3,285	1,064	2,762	9,254	7,799	1,32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04	913	2,637	6,601	4,563	1,486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733	836	2,635	7,193	4,337	1,010	(161)
노인요양시설(30~49명)	2,796	860	2,738	10,116	6,718	1,293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771	768	2,639	11,034	7,230	1,629	(71)
운영주체							
개인	2,834	907	2,737	7,771	5,077	1,473	(318)
영리법인	2,913	907	3,187	18,053	10,328	2,659	(10)
비영리법인[4)]	2,552	638	2,326	9,654	6,519	689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532	671			3,000		(1)
지역							
대도시	2,926	906	2,837	8,457	7,481	1,270	(113)
중소도시	2,865	895	2,726	8,502	4,932	1,117	(164)
농어촌	2,553	759	2,363	8,256	4,449	1,551	(143)
2019년	2,494	749	2,118	9,335	5,062	770	-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419개소 중 각 항목별 해당되는 기관의 평균값
2) 식사재료비, 경관유동식은 1식 기준
3) 1인실, 2인실은 1일 기준
4) 간식비, 이미용비는 1회 기준
5)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나.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현황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항목별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식사 재료비 99.7%, 간식비 86.8%,기저귀 7.1%, 기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사재료비는 급여유형, 운영주체, 지역 등의 특성과 무관하게 99%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영리법인의 92.9%가 간식비를 받고 있었으며, 비영리법인 88.2%, 개인 86.0%로 개인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80.7%로 타 지역에 비해 간식비를 받는 비율이 낮았다.

기저귀 비용을 비급여로 받는 기관은 비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0.0%였으며, 영리법인이 14.3%, 개인이 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이 9.2%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가 4.5%로 가장 적었다.

〈표 5-53〉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현황[1)2)]

(단위: %, 개소)

특성	식사 재료비	간식비	기저귀	기타[3)]	(개소)
전체	99.7 (325)	86.8 (283)	7.1 (23)	0.3 (5)	(326)
운영주체					
개인	99.6	86.0	8.7	0.2	(243)
영리법인	100.0	92.9	14.3	0.0	(14)
비영리법인[4)]	100.0	88.2	0.0	0.9	(6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0.0	0.0	(2)
지역					
대도시	99.1	88.4	4.5	0.0	(113)
중소도시	100.0	89.8	7.8	0.4	(127)
농어촌	100.0	80.7	9.2	0.4	(87)

주: 1) 주야간보호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급여 항목별 제공여부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을 산출함
3) 기타: 개인용품, 이미용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비급여 항목별로 주야간보호기관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았다. 식재료비가 2,7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저기 1,783원, 간식비 798원 순이었다.

식사재료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영리법인이 3,494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이 2,659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2,904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이 2,581원으로 가장 적었다.

간식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비영리법인이 85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767원, 영리법인 729원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817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이 783원으로 가장 적었다. 즉,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대도시일수록 비용이 높았으며, 농어촌일수록 비용이 적었다.

기저귀 비용의 경우 개인은 1,874원, 영리법인은 902원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1,111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도시는 2,819원으로 중소도시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54〉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제공 평균 금액[1)2)]

(단위: 원, 개소)

특성	식사재료비 (1식)	간식비 (1회)	기저귀 (1일)	(개소)
전체	2,736	798	1,783	(326)
운영주체				
개인	2,659	767	1,874	(243)
영리법인	3,494	729	902	(14)
비영리법인[3)]	2,813	855	-	(6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3,822	2,463	-	(2)
지역				
대도시	2,904	817	2,819	(113)
중소도시	2,696	790	1,111	(127)
농어촌	2,581	783	1,882	(87)

주: 1) 주야간보호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식사재료비는 1식, 간식비는 1회 기준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제3절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대응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1.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사고

가. 수급자의 안전사고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안전사고(낙상, 교통사고, 흡인성 폐렴, 감염성 질환, 질식, 학대신고 등)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기관 중 안전사고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21.0%이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주야간보호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보호 25.0%인 반면, 방문형 급여인 방문요양은 12.4%, 방문목욕은 13.3%, 방문간호는 8.8%로 방문형 급여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았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경우, 규모가 큰 기관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즉,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6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30~49명) 46.8%, 노인요양시설(10~29명) 3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6.2% 순이었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4개소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다음으로는 비영리법인 29.2%, 영리법인 23.5%, 개인 19.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소재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20.8%, 대도시 19.4% 순이었다.

〈표 5-55〉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여부[1)2)]

(단위: %, 개소)

특성	있다	없다	계 (개소)	
전체	21.0	79.0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2.4	87.6	100.0	(932)
방문목욕	13.3	86.7	100.0	(241)
방문간호	8.8	91.2	100.0	(34)
주야간보호	30.4	69.6	100.0	(326)
단기보호	25.0	75.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6.2	73.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32.5	67.5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46.8	53.2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63.4	36.6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9.5	80.5	100.0	(1,633)
영리법인	23.5	76.5	100.0	(81)
비영리법인[3)]	29.2	70.8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5.0	25.0	100.0	(4)
지역				
대도시	19.4	80.6	100.0	(717)
중소도시	20.8	79.2	100.0	(725)
농어촌	23.2	76.8	100.0	(511)
2019년	19.6	80.4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응답자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고 응답한 기관에 한해 안전사고의 총 건수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안전사고는 2.0건이며, 1건이 58.8%로 가장 높았고, 2건 24.3%, 3~5건 미만 11.3%, 5~10건 미만 4.4%, 10건 이상 1.2%로 1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비교적 적었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방문간호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을 제외하고는 1건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는 1건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2건과 3건이 각각 22.2%로 동일하였으며, 타 급여유형에 비해 5~10건 미만과 10건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사고 발생건수에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급여는 2.0~1.5건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1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타 운영주체에 비해 2건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나 5~10건 미만, 10건 이상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사고 건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9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2.8건로 동일하며, 개인이 1.8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2.3건으로 평균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가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표 5-56〉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총 건수[1)2)]

(단위: %, 개소, 건)

특성	1건	2건	3~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계 (개소)		평균 (건)
전체	58.8	24.3	11.3	4.4	1.2	100.0	(408)	2.0
급여유형								
방문요양	62.9	24.1	9.5	3.4	0.0	100.0	(116)	1.6
방문목욕	69.7	12.1	18.2	0.0	0.0	100.0	(33)	1.5
방문간호	66.7	33.3	0.0	0.0	0.0	100.0	(3)	2.0
주야간보호	60.6	24.2	9.1	5.1	1.0	100.0	(99)	1.8
단기보호	50.0	50.0	0.0	0.0	0.0	100.0	(2)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2	19.4	3.2	3.2	0.0	100.0	(31)	1.5
노인요양시설(10~29명)	52.9	35.3	7.8	3.9	0.0	100.0	(51)	1.8
노인요양시설(30~49명)	57.1	25.0	17.9	0.0	0.0	100.0	(28)	1.9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3.3	22.2	22.2	13.3	8.9	100.0	(45)	4.7
운영주체								
개인	62.1	24.0	9.8	3.5	0.6	100.0	(317)	1.8
영리법인	55.0	20.0	20.0	5.0	0.0	100.0	(20)	2.8
비영리법인[3)]	43.5	27.5	17.4	8.7	2.9	100.0	(69)	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0	0.0	0.0	50.0	0.0	100.0	(2)	2.9
지역								
대도시	61.2	23.7	10.8	3.6	0.7	100.0	(139)	1.8
중소도시	55.3	24.0	13.3	5.3	2.0	100.0	(150)	2.3
농어촌	59.7	25.2	9.2	5.0	0.8	100.0	(119)	2.0
2019년	57.7	18.8	11.9	7.0	4.6	100.0	(383)	2.8

주: 1) 수급자의 안전사고가 있다고 응답한 408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건수를 안전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면 식중독이 1개 기관에서 2.0건이 발생하였으며, 낙상은 362개 기관에서 평균 1.8건, 흡인성 폐렴은 22개 기관에서 평균 1.7건, 감염성 질환은 11개 기관에서 1.7건, 질식은 17개 기관에서 1.4건, 교통사고는 38개 기관에서 1.3건, 노인학대 신고는 9개 기관에서 1.2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수치는 각 유형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관에서 발생건 건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 3.7건, 교통사고 2.4건, 흡인성 폐렴 2.7건, 기타 6.6건으로 대부분의 안전사고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 노인요양시설(10~29명)이 3.5건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식중독은 주야간보호 1개 기관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9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2.8건으로 높았다. 낙상은 영리법인이 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고는 비영리법인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2.3건, 농어촌 2건, 대도시 1.8건으로 나타났다.

〈표 5-57〉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안전사고 유형별 평균 건수[1)2)]

(단위: %, 건)

특성		낙상	교통사고	질식	흡인성 폐렴	감염성 질환	식중독	노인학대 신고	기타[3)]	전체
전체	발생건수	1.8	1.3	1.4	1.7	1.7	2.0	1.2	1.9	2.0
	발생기관수	(362)	(38)	(17)	(22)	(11)	(1)	(9)	(18)	(408)
급여유형										
방문요양		1.5	1.1	1.5	1.5	2.0	0.0	0.0	1.0	1.6
방문목욕		1.5	1.0	1.0	1.0	0.0	0.0	0.0	1.0	1.5
방문간호		2.0	0.0	0.0	0.0	0.0	0.0	0.0	0.0	2.0
주야간보호		1.5	1.4	1.7	1.7	1.0	2.0	1.0	1.0	1.8
단기보호		1.6	0.0	0.0	1.0	1.0	0.0	0.0	0.0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	1.0	1.0	1.0	1.0	0.0	1.5	1.0	1.5
노인요양시설(10~29명)		1.6		1.0	1.0	3.5	0.0	1.0	1.0	1.7
노인요양시설(30~49명)		1.8	1.0	1.2	1.0	1.0	0.0	1.0		1.9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7	2.4	1.6	2.7	1.5	0.0	1.3	6.6	4.7
운영주체										
개인		1.6	1.2	1.3	1.6	1.8	2.0	1.2	1.0	1.8
영리법인		2.8		1.0	1.0	1.0	0.0	2.0	0.0	2.8
비영리법인		2.2	1.4	1.6	2.4	2.0	0.0	1.0	6.6	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2	2.0	2.0	0.0	0.0	0.0	0.0	0.0	2.9
지역										
대도시		1.7	1.2	1.2	1.4	1.0	0.0	1.2	1.1	1.8
중소도시		1.9	1.4	1.6	1.8	2.4	0.0	1.0	3.7	2.3
농어촌		1.7	1.2	1.3	1.8	1.7	2.0	1.4	1.9	2.0
2019년		2.3	0.1	0.0	0.2	0.2		0.0	0.0	2.8

주: 1) 수급자의 안전사고가 있다고 응답한 408개소 중 각각의 유형별 발생 빈도를 응답한 기관별 발생 건수로 안전사고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 전체로 본 2019년과 경향성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골절, 화상, 찰과상 등

다음으로 수급자의 안전사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낙상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하였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낙상 발생 건수는 평균 1.8건으로 1건 63.7%, 2건 23.5%, 3건 6.1%, 4~6건 4.4%, 6건 이상 2.2% 순이었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을 제외하고는 1건이 50%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평균 2건 미만의 분포를 보인다. 한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1건 37.2%, 2건 25.6%, 3건 16.3%, 6건 이상 11.6%, 4~6건 미만 9.3%로 발생 건수가 많은 기관의 비율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으며, 평균 건수도 3.7%로 매우 높다. 6건 이상인 비율은 주야간보호 2.3%, 노인요양시설(10~29명) 2.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6%이며, 그 외 기관은 6건 미만으로 낙상이 발생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1건의 비율이 대부분 가장 높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1건이 46.0%로 높지만 2건의 비율이 31.7%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으며, 4건 이상의 비율이 12.7%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평균 발생건수는 영리법인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이 1건이었으며 2건 미만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은 6건 이상이 4.0%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었으나, 평균 발생건수는 중소도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5-58〉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낙상 건수[1)2)]

(단위: %, 건)

특성	1건	2건	3건	4~6건 미만	6건 이상	계(명)		평균(건)
전체	63.7	23.5	6.1	4.4	2.2	100.0	(362)	1.8
급여유형								
방문요양	66.7	22.6	6.5	4.3	0.0	100.0	(93)	1.5
방문목욕	64.3	21.4	10.7	3.6	0.0	100.0	(28)	1.5
방문간호	66.7	33.3	0.0	0.0	0.0	100.0	(3)	2.0
주야간보호	72.7	18.2	3.4	3.4	2.3	100.0	(88)	1.5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100.0	(1)	1.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9.3	13.8	0.0	6.9	0.0	100.0	(29)	1.4
노인요양시설(10~29명)	57.1	38.8	0.0	2.0	2.0	100.0	(49)	1.6
노인요양시설(30~49명)	59.3	25.9	11.1	3.7	0.0	100.0	(27)	1.8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7.2	25.6	16.3	9.3	11.6	100.0	(43)	3.7
운영주체								
개인	67.9	22.0	4.7	4.3	1.1	100.0	(277)	1.6
영리법인	57.9	15.8	21.1	0.0	5.3	100.0	(19)	2.8
비영리법인[3)]	46.0	31.7	9.5	4.8	7.9	100.0	(6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0.0	0.0	100.0	(2)	1.2
지역								
대도시	64.2	23.3	7.5	4.2	0.8	100.0	(120)	1.7
중소도시	60.3	26.2	5.7	5.0	2.8	100.0	(141)	1.9
농어촌	67.3	19.8	5.9	3.0	4.0	100.0	(101)	1.7
전체	62.5	18.8	7.6	4.3	6.9	100.0	(349)	2.3

주: 1) 수급자의 낙상사고가 있다고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362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지난 1년 동안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응답기관 중에서 배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9.8%이며,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는 기관의 평균 배상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형 급여의 경우 발생 비율이 방문요양 11.7%, 방문목욕 12.4%, 방문간호 5.9%로 타 급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지만, 30.1%와 25.0%의 비율을 보여, 재가급여 내에서도 급여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급여 기관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60.6%, 노인요양시설(30~49명) 41.9%, 노인요양시설(10~29명) 3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0% 순이었다. 그러나 평균 발생 건수는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이 1.9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급여유형에서 1.3~1.5건으로 손해배상 발생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손해배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4개소)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 28.1%, 영리법인 23.2%로 법인 기관에서 손해배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은 18.3%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영리법인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법인 1.6건, 개인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 건수도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는 19.2%, 대도시는 18.7%가 손해 배상 경험이 있었다.

〈표 5-59〉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1)2)]

(단위: %, 개소, 건)

특성	있다		없다	계 (개소)	
	비율	평균[4)]			
전체	19.8	1.4	80.2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1.7	1.4	88.3	100.0	(932)
방문목욕	12.4	1.4	87.6	100.0	(241)
방문간호	5.9	1.3	94.1	100.0	(34)
주야간보호	30.1	1.4	69.9	100.0	(326)
단기보호	25.0	1.5	75.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0	1.3	76.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30.0	1.4	70.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41.9	1.4	58.1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60.6	1.9	39.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8.3	1.4	81.7	100.0	(1,633)
영리법인	23.2	1.9	76.8	100.0	(81)
비영리법인[3)]	28.1	1.6	71.9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5.0	1.2	25.0	100.0	(4)
지역					
대도시	18.7	1.4	81.3	100.0	(717)
중소도시	19.2	1.4	80.8	100.0	(725)
농어촌	22.3	1.5	77.7	100.0	(511)
2019년	12.1	1.4	87.9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86개소의 평균 발생 건수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대응방식을 보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 기관은 73.1%, 장기요양기관 예산으로 처리한 기관은 25.8%, 기타 7.5%로 많은 수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일부는 기관 예산이나 민간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 기관의 예산으로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응한 기관은 방문요양과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영리법인과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60〉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방식(중복응답)[1)2)]

(단위: %, 개소)

특성	사례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처리	기관 예산 처리	기타[3)]
전체	(386)	73.1	25.8	7.5
급여유형				
방문요양	(109)	65.7	29.4	7.3
방문목욕	(30)	83.3	16.7	6.7
방문간호	(2)	66.7	0.0	0.0
주야간보호	(98)	73.5	26.5	8.2
단기보호	(1)	100.0	50.0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9)	75.9	17.2	6.9
노인요양시설(10~29명)	(48)	75.0	25.0	10.4
노인요양시설(30~49명)	(26)	76.9	19.2	7.7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43)	76.7	32.6	4.7
운영주체				
개인	(299)	73.0	25.1	8.0
영리법인	(19)	68.4	33.3	0.0
비영리법인[4)]	(66)	72.7	27.3	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100.0	0.0	0.0
지역				
대도시	(134)	70.9	25.4	8.2
중소도시	(139)	74.6	24.5	10.1
농어촌	(114)	72.8	28.1	3.5
2019년	(237)	90.5	9.7	5.2

주: 1) 손해배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38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시설장 개인비용 처리, 수급자 또는 가족 개인처리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나. 직원의 안전사고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 기관의 12.2%는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원이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횟수는 평균 1.4회였다.

급여유형별로 보면 직원의 업무 상 질병 또는 상해를 경험한 기관의 비율은 단기보호 0.0%, 주야간보호 8.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0%로 세 기관의 비율이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방문형 기관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발생률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모두 평균 이상의 발생률을 보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직원의 질병이나 상해 경험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평균 발생빈도는 단기보호를 제외하면 방문간호가 1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 발생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이 있는 기관의 비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4개소)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 15.7%, 개인 12.1%, 영리법인 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평균 발생 건수는 영리법인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직원의 업무 상 질병 및 상해 경험의 비율은 중소도시 12.8%, 농어촌 12.5%, 대도시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발생 건수는 대도시가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표 5-61〉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 여부[1)2)]

(단위: %, 건, 개소)

특성	있다		없다	계 (개소)	
	비율	평균			
전체	12.2	1.4	87.8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0.6	1.2	89.4	100.0	(932)
방문목욕	13.7	1.4	86.3	100.0	(241)
방문간호	11.8	1.0	88.2	100.0	(34)
주야간보호	8.9	1.6	91.1	100.0	(326)
단기보호	0.0	5.5	10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0	1.3	91.0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5.0	1.4	85.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19.4	1.4	80.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8.0	1.5	62.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2.1	1.3	87.9	100.0	(1,633)
영리법인	7.3	1.6	92.7	100.0	(81)
비영리법인[3)]	15.7	1.5	84.3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100.0	100.0	(4)
지역					
대도시	11.4	1.2	88.6	100.0	(717)
중소도시	12.8	1.4	87.2	100.0	(725)
농어촌	12.5	1.4	87.5	100.0	(511)
2019년	10.5	1.4	89.5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업무상으로 상해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응 방식을 질문한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기관 예산으로 처리 14.1%,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 12.2%, 직원의 개인비용 8.8%, 기타 8.8%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형 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은 60% 이상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반면, 주야간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4.8%와 27.3%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타 기관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처리 비율이 낮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산재보험, 장기요양기관예산, 직원개인비용의 비율이 27.3%로 동일하며, 주야간보호는 산재보험 44.8%,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 21.4%, 개인비용 17.9% 등으로 타 기관과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운영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비율이 모든 운영주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영리법인은 83.3%를 산재보험에서 처리하였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예산(29.7%)과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24.3%)으로 처리한 비율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대도시가 74.4%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63.4%, 농어촌 56.3%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농어촌이 24.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12.8%, 대도시 4.9%의 순으로 많았다.

〈표 5-62〉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 경험에 대한 대응방식(중복응답)[1)2)]

(단위: %, 개소)

특성	사례수	산재보험	장기요양 기관예산	직원의 개인비용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	기타[3)]
전체	(239)	65.3	14.1	8.8	12.2	8.8
급여유형						
방문요양	(99)	71.7	8.0	7.1	7.1	13.1
방문목욕	(33)	72.7	17.6	6.1	18.2	3.0
방문간호	(4)	75.0	0.0	25.0	0.0	0.0
주야간보호	(29)	44.8	13.8	17.9	21.4	13.8
단기보호	(0)	0.0	0.0	0.0	0.0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	27.3	27.3	27.3	18.2	0.0
노인요양시설(10~29명)	(24)	66.7	12.5	4.2	16.7	4.2
노인요양시설(30~49명)	(12)	66.7	25.0	8.3	8.3	8.3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7)	66.7	25.9	3.7	11.1	3.7
운영주체						
개인	(197)	66.0	11.2	10.2	11.2	9.1
영리법인	(6)	83.3	0.0	0.0	16.7	0.0
비영리법인[4)]	(37)	59.5	29.7	5.4	24.3	10.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	0.0	0.0	0.0	0.0	0.0
지역						
대도시	(82)	74.4	14.6	12.2	4.9	3.7
중소도시	(93)	63.4	10.8	7.5	12.8	16.1
농어촌	(64)	56.3	17.2	9.2	24.6	4.6
전체	204	68.9	10.7	12.3	11.4	2.2

주: 1) 직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대응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기요양기관 23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기타: 상대방이 처리, 시설장이 처리 등
4)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5) 2022년 신규 문항임

2.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기관운영의 어려움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보호자 상담 및 대응, 기관 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업무, 장기요양기관 평가, 안전 설비 및 시설관리,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 인력채용별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첫째로 기관 운영 관련 사항 중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어렵다 23.7%, 어렵지 않다 19.9%, 매우 어렵다 7.6%, 전혀 어렵지 않다 6.5% 순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31.3%이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방문목욕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간호 36.4%, 방문요양 35.4%,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2.4% 등의 순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비해 수급자 상담 및 사례관리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곳을 제외하고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개인 31.7%, 비영리법인 31.1%, 영리법인 2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리법인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32.1%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대도시 35.9%로(매우 어렵다 11.0%, 어렵다 24.9%), 중소도시 30.3%(매우 어렵다 5.7%, 어렵다 24.6%), 농어촌 26.8%(매우 어렵다 5.5%, 어렵다 2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63〉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 상담 및 사례 관리[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7.6	23.7	42.3	19.9	6.5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9.6	25.8	39.4	19.0	6.2	100.0	(932)
방문목욕	9.5	29.5	36.9	19.1	5.0	100.0	(241)
방문간호	6.1	30.3	45.5	15.2	3.0	100.0	(34)
주야간보호	3.4	19.3	48.0	22.0	7.3	100.0	(326)
단기보호	0.0	25.0	50.0	25.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7	16.4	52.5	15.6	9.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4.4	18.1	45.6	25.6	6.3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4.8	21.0	46.8	22.6	4.8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9.9	22.5	40.8	18.3	8.5	100.0	(71)
운영주체							
개인	7.7	24.0	42.6	19.0	6.7	100.0	(1,633)
영리법인	6.2	21.0	34.6	32.1	6.2	100.0	(81)
비영리법인[2)]	7.7	23.4	42.1	21.7	5.1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25.0	75.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11.0	24.9	43.7	14.2	6.1	100.0	(717)
중소도시	5.7	24.6	39.9	22.9	6.9	100.0	(725)
농어촌	5.5	21.3	43.4	23.4	6.4	100.0	(511)
2019년	5.8	25.6	46.4	18.7	3.5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상담 및 대응 어려움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기관에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30.6%로(매우 어렵다 6.5%, 어렵다 24.1%)고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에서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방문간호 38.3%, 방문목욕 35.0%, 노인요양시설(30~49명) 32.8%, 방문요양 31.5% 등으로 방문형급여제공기관에서 보호자 상담 및 대응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4개소)를 제외하고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비영리법인 36.5%, 개인 30.1%, 영리법인 27.1%의 순이었다. 영리법인은 어렵지 않는 비율의 32.1%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대도시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29.1%, 농어촌 28.5%의 순이었다.

〈표 5-64〉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보호자 상담 및 대응[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6.5	24.1	41.4	20.5	7.5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5.7	25.8	40.3	20.8	7.4	100.0	(932)
방문목욕	7.4	27.6	41.2	17.7	6.2	100.0	(241)
방문간호	11.8	26.5	38.2	17.6	5.9	100.0	(34)
주야간보호	5.8	21.7	43.1	22.0	7.3	100.0	(326)
단기보호	0.0	25.0	50.0	25.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7	13.0	47.2	23.6	10.6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6.2	19.3	42.9	22.4	9.3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6.6	26.2	42.6	18.0	6.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6.9	29.6	35.2	12.7	5.6	100.0	(71)
운영주체							
개인	6.1	24.0	41.9	20.1	8.0	100.0	(1,633)
영리법인	4.9	22.2	34.6	32.1	6.2	100.0	(81)
비영리법인[2)]	10.2	26.3	39.8	19.5	4.2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25.0	75.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8.1	25.8	41.4	18.1	6.6	100.0	(717)
중소도시	4.4	24.7	40.9	22.5	7.6	100.0	(725)
농어촌	7.4	21.1	42.0	20.9	8.6	100.0	(511)
2019년	5.2	23.9	45.1	20.7	5.1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4%, 32.6%로 장기요양기관의 50.0%가 회계 및 행정 업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방문간호가 63.6%(매우 어렵다 24.2%, 어렵다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문목욕 55.4%(매우 어렵다 20.7%, 어렵다 34.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3%(매우 어렵다 17.2%, 어렵다 36.1%), 방문요양 52.3%(매우 어렵다 19.3%, 어렵다 3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9.1%(매우 어렵다 6.9%, 어렵다 22.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방문형 시설과 소규모 시설에서 회계 및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운영 기관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53.2%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비영리법인은 어렵지 않다의 비율이 28.4%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52,5%(매우 어렵다 19.2%, 어렵다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 지역이 46.5%(매우 어렵다 18.8%, 어렵다 27.7%)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적었다.

〈표 5-65〉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기관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업무[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17.4	32.6	33.8	12.6	3.6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19.3	33.0	31.4	13.6	2.7	100.0	(932)
방문목욕	20.7	34.7	28.1	13.2	3.3	100.0	(241)
방문간호	24.2	39.4	30.3	6.1	0.0	100.0	(34)
주야간보호	14.4	31.6	38.3	11.3	4.3	100.0	(326)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2	36.1	36.1	5.7	4.9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4.3	28.6	39.8	12.4	5.0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11.1	33.3	34.9	17.5	3.2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6.9	22.2	45.8	15.3	9.7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8.4	34.8	32.7	10.9	3.2	100.0	(1,633)
영리법인	13.6	18.5	43.2	19.8	4.9	100.0	(81)
비영리법인[2)]	11.4	22.5	37.7	22.5	5.9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3.3	0.0	66.7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19.2	33.3	34.0	11.1	2.4	100.0	(717)
중소도시	14.7	35.4	32.2	13.1	4.5	100.0	(725)
농어촌	18.8	27.7	35.5	14.1	3.9	100.0	(511)
2019년	26.5	35.0	25.9	9.4	3.2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19년에는 '재무회계 관리업무'로 직접비교는 어려움

장기요양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68.5%(매우 어렵다 29.4%, 어렵다 39.1%)로 나타났고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어렵지 않다 5.6%, 전혀 어렵지 않다 1.8%)이었다.

급여유형별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방문간호 76.5%(매우 어렵다 41.2%, 어렵다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30~49명) 72.1%(매우 어렵다 29.5%, 어렵다 42.6%), 주야간보호 70.1%(매우 어렵다 29.0%, 어렵다 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매우 어렵다 31.9%, 어렵다 3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개인이 69.2%(매우 어렵다 29.3%, 어렵다 39.9%)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 66.6%(매우 어렵다 29.6%, 어렵다 37.0%)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법인 65.0%(매우 어렵다 29.7%, 어렵다 35.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위치한 기관의 70.4%(매우 어렵다 33.0%, 어렵다 37.4%)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나, 대도시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표 5-66〉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장기요양기관 평가[1)]

(단위: %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29.4	39.1	24.1	5.6	1.8	100.0	(1,916)
급여유형							
방문요양	27.0	41.3	25.0	5.4	1.4	100.0	(909)
방문목욕	33.8	33.3	21.9	7.2	3.8	100.0	(237)
방문간호	41.2	35.3	17.6	2.9	2.9	100.0	(34)
주야간보호	29.0	41.1	23.4	5.6	.9	100.0	(321)
단기보호	33.3	33.3	33.3	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5.5	33.9	24.0	3.3	3.3	100.0	(121)
노인요양시설(10~29명)	29.3	37.6	26.1	5.7	1.3	100.0	(157)
노인요양시설(30~49명)	29.5	42.6	21.3	6.6	0.0	100.0	(61)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1.9	33.3	24.6	7.2	2.9	100.0	(69)
운영주체							
개인	29.3	39.9	24.0	5.1	1.8	100.0	(1,598)
영리법인	29.6	37.0	19.8	8.6	4.9	100.0	(81)
비영리법인[2)]	29.7	35.3	25.9	8.2	.9	100.0	(2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0	0.0	5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33.0	37.4	24.7	3.6	1.4	100.0	(701)
중소도시	25.7	42.0	23.2	7.2	2.0	100.0	(712)
농어촌	29.6	37.5	24.6	6.3	2.0	100.0	(504)
2019년	26.1	40.4	26.2	4.0	1.8	100.0	(1,927)

주: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경험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1,91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방문형급여 제공기관을 제외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및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렵다는 응답은 33.3%(매우 어렵다 6.7%, 어렵다 26.6%)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매우 어렵다 7.0%, 어렵다 31.0%)과 노인요양시설(30~49명)(매우 어렵다 6.3%, 어렵다 31.7%)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방문요양 34.6%(매우 어렵다 6.7%, 어렵다 27.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9%(매우 어렵다 6.7%, 어렵다 2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시설 규모가 큰 기관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물리적 규모도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48.0%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38.0%, 개인 31.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매우 어렵다 9.3%, 어렵다 27.9%로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37.2%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은 매우 어렵다 5.6%, 어렵다 2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통이 50.2%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67〉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안전설비 및 시설 관리[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6.7	26.6	47.9	14.5	4.3	100.0	(746)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6.7	27.9	46.9	13.2	5.2	100.0	(326)
단기보호	0.0	20.0	60.0	20.0	0.0	100.0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7	24.2	53.3	11.7	4.2	100.0	(120)
노인요양시설(10~29명)	6.9	21.9	51.3	17.5	2.5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6.3	31.7	41.3	17.5	3.2	100.0	(63)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7.0	31.0	40.8	15.5	5.6	100.0	(71)
운영주체							
개인	5.9	25.4	49.6	14.8	4.3	100.0	(559)
영리법인	8.0	40.0	36.0	8.0	8.0	100.0	(25)
비영리법인[2)]	9.5	28.5	43.7	14.6	3.8	100.0	(15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25.0	75.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9.3	27.9	45.6	13.3	4.0	100.0	(226)
중소도시	5.5	27.8	47.8	15.8	3.1	100.0	(291)
농어촌	5.6	23.4	50.2	14.3	6.5	100.0	(231)
2019년	6.5	27.7	49.9	12.9	3.0	100.0	(773)

주: 1) 방문형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제외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74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에 대한 기관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렵다는 응답은 41.6%(매우 어렵다 11.1%, 어렵다 30.5%)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매우 어렵다 12.7%, 어렵다 39.4%)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간호 51.5%(매우 어렵다 21.2%, 어렵다 30.3%), 노인요양시설(30~49명) 45.9%(매우 어렵다 14.8%, 어렵다 31.1%), 방문요양 43.6%(매우 어렵다 10.2%, 어렵다 3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간호의 경우 매우 어렵다의 비율이 21.2%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방문간호급여 이용자의 경우 중증인 대상자들이 많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법인 38.3%, 비영리법인 37.5%의 순이었다. 매우어렵다의 비율은 11% 수준으로 운영주체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매우 어렵다 13.7%, 어렵다 29.8%)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42.8%, 대도시 39.2%가 이용자의 병의원 동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매우어렵다의 비율이 13.7%로 타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68〉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11.1	30.5	38.5	15.5	4.3	100.0	(1,893)
급여유형							
방문요양	10.2	33.4	36.6	15.5	4.3	100.0	(899)
방문목욕	14.3	27.4	38.7	16.1	3.5	100.0	(230)
방문간호	21.2	30.3	36.4	9.1	3.0	100.0	(33)
주야간보호	9.2	25.9	39.9	19.0	6.0	100.0	(316)
단기보호	0.0	25.0	50.0	25.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7	28.9	42.1	12.4	5.8	100.0	(121)
노인요양시설(10~29명)	12.0	25.3	46.8	12.7	3.2	100.0	(158)
노인요양시설(30~49명)	14.8	31.1	36.1	14.8	3.3	100.0	(61)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2.7	39.4	32.4	14.1	1.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1.1	31.4	38.1	15.1	4.3	100.0	(1,586)
영리법인	11.1	27.2	34.6	19.8	7.4	100.0	(81)
비영리법인[2)]	11.6	25.9	41.5	17.0	4.0	100.0	(2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25.0	50.0	25.0	0.0	100.0	(4)
지역							
대도시	10.3	28.9	41.0	16.2	3.6	100.0	(691)
중소도시	9.9	32.9	37.2	15.4	4.6	100.0	(694)
농어촌	13.7	29.8	36.5	14.7	5.3	100.0	(510)

주: 1) 이용자 병원 이용 동행 경험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1,89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22년 신규 문항임

다음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운영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65.8%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8.5%(매우 어렵다 43.0%, 어렵다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문간호 75.7%(매우 어렵다 33.3%, 어렵다 42.4%), 단기보호 75.0%(매우 어렵다 50.0%, 어렵다 25.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과 방문목욕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방문목욕은 매우 어렵다의 비율이 29.5%인 반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은 23.9%로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재정 운영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기타(2개소)를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개인 67.0%, 영리법인 60.5%, 비영리법인 58.9% 순이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매우 어렵다는 비율이 24.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이 재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69.1%(매우 어렵다 31.5%, 어렵다 37.9%)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66.4%(매우 어렵다 28.9%, 어렵다 37.5%), 중소도시 61.9%(매우 어렵다 26.2%, 어렵다 35.7%) 순이었다.

〈표 5-69〉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28.9	36.9	27.6	4.8	1.8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28.2	38.8	25.4	5.2	2.4	100.0	(932)
방문목욕	29.5	28.2	31.1	9.1	2.1	100.0	(241)
방문간호	33.3	42.4	21.2	3.0	0.0	100.0	(34)
주야간보호	27.9	36.8	31.3	2.8	1.2	100.0	(326)
단기보호	50.0	25.0	25.0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0	35.5	17.4	2.5	1.7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6.4	37.1	32.7	2.5	1.3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22.6	45.2	29.0	3.2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3.9	33.8	33.8	7.0	1.4	100.0	(71)
운영주체							
개인	29.3	37.7	26.6	4.3	2.0	100.0	(1,633)
영리법인	29.6	30.9	32.1	7.4	0.0	100.0	(81)
비영리법인[2)]	24.6	34.3	31.4	7.6	2.1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0	0.0	5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31.5	37.6	26.5	3.5	1.0	100.0	(717)
중소도시	26.2	35.7	29.6	5.9	2.6	100.0	(725)
농어촌	28.9	37.5	25.8	5.3	2.5	100.0	(511)
전체	29.3	41.9	23.8	3.8	1.2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3) 2022년 신규 문항임

이용자 모집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어렵다 41.3%, 어렵다 36.7%로 전체 기관의 78.0%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의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방문간호가 85.3%(매우 어렵다 50.0%, 어렵다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문목욕 82.1%(매우 어렵다 45.2%, 어렵다 36.9%), 주야간보호 79.4%(매우 어렵다 42.1%, 어렵다 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가장 낮은 기관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60.0%(매우 어렵다 27.1%, 어렵다 32.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단기보호 66.6%(매우 어렵다 33.3%, 어렵다 33.3%)와 노인요양시설(30~49명) 69.9%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수급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영리법인 기관 81.7%(매우 어렵다 41.5%, 어렵다 40.2%), 개인기관 78.1%(매우 어렵다 42.6%, 어렵다 35.5%), 비영리법인 75.0%(매우 어렵다 32.2%, 어렵다 42.8%) 순이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0.0%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운영기관의 42.6%로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대도시 79.1%(매우 어렵다 42.6%, 어렵다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은 77.5%, 중소도시는 76.6%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높았다. 다만, 중소도시는 농어촌에 비해 매우 어렵다의 비율이 높다.

〈표 5-70〉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41.3	36.7	18.8	2.4	0.8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42.1	36.6	18.7	1.8	0.8	100.0	(932)
방문목욕	45.2	36.9	14.9	2.9	0.0	100.0	(241)
방문간호	50.0	35.3	11.8	2.9	0.0	100.0	(34)
주야간보호	41.4	38.0	18.4	1.5	.6	100.0	(326)
단기보호	33.3	33.3	33.3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5	35.5	20.7	1.7	1.7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39.4	35.6	18.8	5.0	1.3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30.2	39.7	25.4	3.2	1.6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27.1	32.9	30.0	7.1	2.9	100.0	(71)
운영주체							
개인	42.6	35.5	18.9	2.2	0.9	100.0	(1,633)
영리법인	41.5	40.2	15.9	2.4	0.0	100.0	(81)
비영리법인[2)]	32.2	42.8	19.1	4.7	1.3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50.0	50.0	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42.6	36.5	18.2	1.9	0.7	100.0	(717)
중소도시	42.3	34.3	19.9	2.8	0.7	100.0	(725)
농어촌	37.6	39.9	18.2	2.7	1.6	100.0	(511)
2019년	38.1	34.2	22.3	4.1	1.2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 모집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어렵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에 한해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였다. 하단에 제시된 표는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순위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경쟁 54.3%,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4%,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동 8.2%,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6.7%,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급여의 선호 5.1%, 기타 2.8%, 가족인 요양보호사 증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유형과 무관하게 장기요양기관 과잉경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응답이 높은 비율은 급여유형별 차이를 보이는데, 방문요양(23.7%), 방문목욕(20.2%), 방문간호(17.9%), 주야간보호(17.8%), 단기보호(5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2.3%), 노인요양시설(10~29명)(21.0%)은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이었으나, 노인요양시설(30~49명),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동이 각각 22.7%, 18.6%로 높았다. 세 번째로 응답이 높은 비율에서도 급여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방문요양(6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6.0%), 노인요양시설(10~29명)(17.6%)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용의 비율이 높았으며, 방문목욕(9.6%), 방문간호(7.1%), 주야간보호(8.1%)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노인요양시설(30~49명)(18.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11.6%)은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의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장기요양기관 과잉경쟁이라는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 내 인정자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과잉 경쟁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용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5-71〉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1순위)[1]

(단위: %, 개소)

특성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용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	장기요양 기관 과잉 경쟁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 급여의 선호	가족인 요양보호사 증가	기타[2]	계 (개소)
전체	21.4	8.2	6.7	54.3	5.1	1.4	2.8	100.0 (1,520)
급여유형								
방문요양	23.7	6.7	5.6	55.0	5.6	1.1	2.3	100.0 (733)
방문목욕	20.2	4.5	9.6	62.1	2.0	0.5	1.0	100.0 (198)
방문간호	17.9	3.6	7.1	50.0	10.7	3.6	7.1	100.0 (28)
주야간보호	17.8	4.6	8.1	58.3	5.4	2.7	3.1	100.0 (259)
단기보호	50.0	0.0	0.0	50.0	0.0	0.0	0.0	10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3	16.0	7.4	43.6	4.3	2.1	4.3	100.0 (94)
노인요양시설(10~29명)	21.0	17.6	5.9	44.5	5.9	1.7	3.4	100.0 (119)
노인요양시설(30~49명)	18.2	22.7	6.8	43.2	4.5	0.0	4.5	100.0 (44)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1.6	18.6	4.7	46.5	7.0	2.3	9.3	100.0 (43)
운영주체								
개인	22.3	8.0	6.8	53.9	5.3	1.3	2.5	100.0 (1,274)
영리법인	11.9	4.5	9.0	62.7	4.5	6.0	1.5	100.0 (67)
비영리법인[3]	18.1	10.2	6.2	54.2	4.5	1.1	5.6	100.0 (17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21.4	8.8	7.7	52.9	5.3	1.6	2.3	100.0 (569)
중소도시	20.9	8.5	5.4	55.2	5.9	1.3	2.9	100.0 (556)
농어촌	21.8	6.8	7.6	54.9	3.8	1.8	3.3	100.0 (395)
2019년	21.7	12.8	9.1	48.4	3.9	-	4.0	100.0 (1,414)

주: 1)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어렵다+매우어렵다)고 응답한 1,520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지리적 접근성,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홍보 및 인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코로나19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인력채용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기관에서는 매우 어렵다 33.5%, 어렵다 39.4%로 전체 응답기관의 72.9%가 인력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과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은 노인요양시설(30~49명)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7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이 45.7%로 가장 높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6.1%로 가장 낮다. 이는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인력 수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재가급여기관에서는 방문간호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9.4%로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개소)를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비영리법인(75.8%)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과 영리법인은 각각 72.5%와 72.9%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인력 채용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이 82.2%(매우 어렵다 43.6%, 어렵다 38.6%)로 대도시 66.5%(매우 어렵다 26.6%, 어렵다 39.9%), 중소도시 72.6%(매우 어렵다 33.0%, 어렵다 39.6%)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매우 어렵다는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72〉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인력채용[1)]

(단위: %, 개소)

특성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	(개소)
전체	33.5	39.4	21.7	4.5	1.0	100.0	(1,953)
급여유형							
방문요양	30.0	40.5	23.5	4.6	1.4	100.0	(932)
방문목욕	35.7	37.8	19.1	6.6	0.8	100.0	(241)
방문간호	38.2	41.2	17.6	2.9	0.0	100.0	(34)
주야간보호	31.8	39.8	23.9	4.6	0.0	100.0	(326)
단기보호	33.3	33.3	33.3	0.0	0.0	100.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1	36.1	23.0	3.3	1.6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40.6	40.0	15.6	2.5	1.3	100.0	(160)
노인요양시설(30~49명)	45.2	37.1	16.1	1.6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45.7	35.7	14.3	4.3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33.4	39.1	22.2	4.1	1.2	100.0	(1,633)
영리법인	34.6	38.3	18.5	8.6	0.0	100.0	(81)
비영리법인[2)]	33.2	42.6	19.1	4.7	0.4	100.0	(2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100.0	0.0	100.0	(4)
지역							
대도시	26.6	39.9	26.5	6.0	1.0	100.0	(717)
중소도시	33.0	39.6	23.5	3.0	0.8	100.0	(725)
농어촌	43.6	38.6	12.1	4.3	1.4	100.0	(511)
2019년	23.3	39.3	27.5	8.3	1.6	100.0	(1,954)

주: 1) 장기요양기관 1,953개소의 자료를 분석
2)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어렵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에 한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였다. 하단에 제시된 표는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순위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 20.6%, 높은 업무강도 18.0%,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서 10.4%, 사회적 편견 7.4%, 교대 또는 야간 근무 기피 6.0%, 기타 4.5%의 순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유형과 무관하게 낮은 급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기보호 50.0%, 주야간보호 4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9%,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40.4%의 순으로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기관별 차이를 보인다.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의 경우 방문요양(23.7%), 방문간호(25.0%), 노인요양시설(10~29명)(20.9%), 노인요양시설(30~49명)(19.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17.5%)이었으며, 높은 업무강도는 방문목욕(19.7%), 주야간보호(21.5%)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교대 또는 야간근무 기피의 비율이 17.0% 높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재가급여에 비해 교대 또는 야간근무 기피의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낮은 급여의 비율이 모든 운영주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 높은 업무강도 순으로 비율이 높고, 운영주체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급여에 따른 인력채용 어려움의 비율이 34.7%와 36.1%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에 따른 인력채용 어려움이 32.7%로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농어촌은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14.1%로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표 5-73〉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1순위)[1]

(단위: %, 개소)

특성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	낮은 급여	높은 업무강도	교대 또는 야간 근무 기피	사회적 편견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타[2]	계 (개소)
전체	20.6	33.1	18.0	6.0	7.4	10.4	4.5	100.0 (1,425)
급여유형								
방문요양	23.7	26.3	18.7	2.6	9.9	12.0	6.8	100.0 (658)
방문목욕	17.4	35.4	19.7	3.4	8.4	14.0	1.7	100.0 (178)
방문간호	25.0	25.0	17.9	0.0	14.3	10.7	7.1	100.0 (28)
주야간보호	17.6	43.8	21.5	4.3	2.6	6.4	3.9	100.0 (233)
단기보호	0.0	50.0	0.0	50.0	0.0	0.0	0.0	10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5	40.9	13.6	17.0	6.8	6.8	2.3	100.0 (88)
노인요양시설(10~29명)	20.9	37.2	12.4	14.7	5.4	8.5	0.8	100.0 (129)
노인요양시설(30~49명)	19.2	36.5	15.4	17.3	3.8	5.8	1.9	100.0 (5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7.5	40.4	14.0	14.0	1.8	10.5	1.8	100.0 (57)
운영주체								
개인	20.6	31.4	18.3	5.8	8.3	10.6	5.0	100.0 (1,183)
영리법인	21.7	33.3	20.0	5.0	10.0	10.0	0.0	100.0 (60)
비영리법인[3]	19.6	45.3	15.6	6.7	1.1	8.9	2.8	100.0 (17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0.0 (0)
지역								
대도시	16.2	34.7	19.5	7.6	7.6	7.4	7.1	100.0 (476)
중소도시	14.8	36.1	23.0	5.1	6.6	10.2	4.2	100.0 (527)
농어촌	32.7	27.9	10.3	5.0	8.1	14.1	1.9	100.0 (419)

주: 1) 인력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어렵다) 고 응답한 1,425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수급자의 욕구와 직원 욕구의 불일치,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의 과도한 요구, 고용불안정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인력 채용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어렵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력 중 인력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종에 대해 요양보호사로 응답한 기관은 71.0%였으며, 사회복지사 11.5%, 간호사 6.3%, 조리원 5.6%, 간호조무사 3.7%, 물리(작업)치료사 1.5%, 그 외 직종 0.4% 순이었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급여유형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이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단기보호(100.0%)와 방문목욕(85.3%)은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았다. 두 번째로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직종은 급여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방문요양(13.7%), 방문목욕(8.5%), 주야간보호(18.0%), 노인요양시설(10~29명)(5.4%)은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방문간호(35.7%), 노인요양시설(30~49명)(9.8%),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15.5%)는 간호사의 채용 어려움 비율 높았다.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 급여 유형의 특성에 따라 타 급여유형에 비해 간호사의 채용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운영주체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나, 개인은 73.9%, 영리법인은 64.4%, 비영리법인은 55.3%로 운영주체별 비율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운영주체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비영리 법인은 조리원(11.7%) 채용의 어려움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75.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은 사회복지사 채용의 어려움이 각각 15.6%와 12.6%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이 7.8%로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74〉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직종(1순위)[1]

(단위: %, 개소)

특성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그 외 직종[2]	계 (개소)
전체	11.5	6.3	3.7	1.5	71.0	5.6	0.4	100.0 (1,425)
급여유형								
방문요양	13.7	3.2	2.3	1.2	76.8	2.9	0.0	100.0 (658)
방문목욕	8.5	3.4	1.1	0.0	85.3	1.7	0.0	100.0 (178)
방문간호	10.7	35.7	3.6	0.0	46.4	3.6	0.0	100.0 (28)
주야간보호	18.0	11.2	8.2	0.9	47.6	12.4	1.7	100.0 (233)
단기보호	0.0	0.0	0.0	0.0	100.0	0.0	0.0	10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4	8.0	8.0	1.1	71.6	8.0	0.0	100.0 (88)
노인요양시설(10~29명)	5.4	4.7	4.7	1.6	76.7	7.0	0.0	100.0 (129)
노인요양시설(30~49명)	3.9	9.8	3.9	9.8	64.7	7.8	0.0	100.0 (5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4	15.5	1.7	5.2	58.6	13.8	1.7	100.0 (57)
운영주체								
개인	10.8	5.7	3.6	1.1	73.9	4.6	0.2	100.0 (1,183)
영리법인	10.2	8.5	8.5	0.0	64.4	5.1	3.4	100.0 (60)
비영리법인[3]	15.6	8.9	3.4	3.9	55.3	11.7	1.1	100.0 (17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0.0 (0)
지역								
대도시	15.6	4.2	3.6	.8	69.3	5.9	0.6	100.0 (476)
중소도시	6.6	7.8	2.5	1.9	75.3	5.9	0.0	100.0 (527)
농어촌	12.6	6.9	5.5	1.4	68.3	4.8	0.5	100.0 (419)

주: 1) 인력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어렵다) 고 응답한 1,425개소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사무원, 영양사, 운전원, 치매교육이수 요양보호사 등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및 대응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방문형 급여,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기관별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자 수 감소(53.0%)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29.8%,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직원 신규 채용의 어려움 10.8%,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3.6%,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2.6%, 기타 0.2%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모든 급여유형에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문간호는 72.7%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방문간호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비율이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의 경우 62.0%가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여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나 개인의 경우 타 운영주체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비율이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직원의 확진에 따른 인력공백의 비율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어촌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 농어촌에 비해 이용자 수 감소의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은 타 지역에 비해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5〉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1)2)]

(단위: %, 명)

특성	이용자 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방역 관련 추가비용 발생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기타[4)]	계 (개소)
전체	53.0	10.8	29.8	2.6	3.6	0.2	100.0 (1,207)
급여유형							
방문요양	52.4	11.5	29.8	2.1	4.0	0.2	100.0 (932)
방문목욕	52.9	9.1	31.4	4.1	2.5	0.0	100.0 (242)
방문간호	72.7	3.0	18.2	3.0	3.0	0.0	100.0 (33)
운영주체							
개인	52.6	11.6	29.2	2.7	3.7	0.2	100.0 (1,073)
영리법인	50.0	7.1	37.5	1.8	3.6	0.0	100.0 (56)
비영리법인[3)]	62.0	2.5	31.6	1.3	2.5	0.0	100.0 (7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0)
지역							
대도시	55.0	11.8	28.0	2.0	2.8	0.4	100.0 (493)
중소도시	53.6	12.2	27.6	1.8	4.8	0.0	100.0 (435)
농어촌	48.6	7.1	36.1	5.0	3.2	0.0	100.0 (280)

주: 1) 방문형급여 제공기관 1,207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기타: 이용자 모집, 이용자의 코로나 확진 등
5) 2022년 신규 문항임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자 수 감소(62.8%)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24.3%로 이 두가지 요인이 주야간보호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운영 어려움 이유의 87.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용자의 건강 악화 4.9%,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직원 신규 채용의 어려움 3.4%,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1.8%,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1.2%, 외부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0.9%, 기타 0.6%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운영주체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도시 70.5%, 중소도시 61.1%, 농어촌 56.3%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은 농어촌이 29.9%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25.4%, 대도시 18.8%의 순으로 높았다.

〈표 5-76〉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1)2)]

(단위: %, 개소)

특성	이용자 수 감소	이용자의 건강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외부지원 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기타[4)]	계 (개소)	
전체	62.8	4.9	3.4	24.3	0.9	1.2	1.8	0.6	100.0	(326)
운영주체										
개인	62.2	4.6	3.3	24.9	1.2	1.2	2.1	0.4	100.0	(241)
영리법인	64.3	7.1	0.0	28.6	0.0	0.0	0.0	0.0	100.0	(14)
비영리법인[3)]	65.7	6.0	3.0	20.9	0.0	1.5	1.5	1.5	100.0	(6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지역										
대도시	70.5	6.3	1.8	18.8	0.0	1.8	0.0	0.9	100.0	(112)
중소도시	61.1	4.0	4.8	25.4	.8	.8	2.4	0.8	100.0	(126)
농어촌	56.3	4.6	2.3	29.9	2.3	1.1	3.4	0.0	100.0	(87)

주: 1) 주야간보호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기타: 휴원시 보호자 항의 및 수급자 전원, 휴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5)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43.3%)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 어려움 17.8%, 대면 면회가 안되는 데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 14.7%,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10.8%,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직원 신규 채용의 어려움 7.0%,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2.2%, 서비스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 증가 및 정서적 문제 발생 1.9%,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1.2%, 자원봉사 등 외부 지원 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1.0%, 기타 0.2%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모든 급여유형에서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용자 감소로 인한 시설 경영의 어려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10~29명)은 대면 면회가 안되는데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모든 운영주체에서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운영주체별 어려움을 경험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어촌은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대도시 40.2%, 중소도시 44.4%),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이 어려움(대도시 21.4%, 중소도시 20.4%), 대면 면회가 안 되는 데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대도시 17.0%, 중소도시 11.1%) 등의 순이나, 농어촌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44.4%, 대면 면회가 안 되는 데 따른 이용자의 정서적 문제 발생 16.7%,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12.5%,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이 어려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77〉 시설 급여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1순위)[1)2)]

(단위: %, 개소)

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5)]	계 (개소)	
전체	10.8	14.7	7.0	43.3	1.0	1.2	2.2	17.8	1.9	0.2	100.0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10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2	13.9	7.4	45.9	1.6	0.8	1.6	18.0	1.6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12.6	18.9	5.7	39.6	.6	0.6	3.1	17.6	1.3	0.0	100.0	(159)
노인요양시설(30~49명)	11.3	9.7	9.7	43.5	0.0	1.6	1.6	19.4	3.2	0.0	100.0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1.3	11.3	7.0	46.5	1.4	2.8	1.4	15.5	2.8	0.0	100.0	(71)
운영주체												
개인	11.6	13.5	7.9	43.1	0.9	1.3	2.2	17.9	1.3	0.3	100.0	(318)
영리법인	0.0	18.2	9.1	45.5	0.0	0.0	0.0	18.2	9.1	0.0	100.0	(11)
비영리법인[3)]	9.0	15.7	5.6	42.7	1.1	2.2	2.2	18.0	3.4	0.0	100.0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지역												
대도시	9.8	17.0	7.1	40.2	0.9	1.8	0.9	21.4	0.9	0.0	100.0	(112)
중소도시	9.9	11.1	8.6	44.4	1.2	1.2	1.2	20.4	1.2	0.6	100.0	(162)
농어촌	12.5	16.7	6.3	44.4	0.7	1.4	3.5	11.8	2.8	0.0	100.0	(144)

주: 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 해당하는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①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②대면면회 불가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③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④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⑤외부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⑥방역 관련 추가비용 발생, ⑦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⑧이용자 감소로 인한 시설 경영의 어려움, ⑨서비스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 증가 및 정서적 문제 발생, ⑩기타

5) 기타: 업무량 증가, 병원이용의 어려움 등

6)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방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였던 대응방법은 방역물품(마스크, 방호복 등) 제공으로 92.6%의 기관에서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관 내 감염 관리자 지정 및 관리 강화 90.9%, 시설 환경 개선(격리실 운영, 비접촉 면회 공간 마련, 공기청정기 설치 등) 87.9%, 종사자 대상 전문적 감염 관리 교육 강화 81.6% 등의 순이다.

급여유형별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단기보호는 감염관리자 지정과 방역물품 제공은 100.0% 진행하고 있었으며, 종사자 대상 전문적 감염관리 교육 강화와 시설환경개선은 75.0%가 진행하고 있었다. 시설급여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시설 규모가 큰 기관에서 감염관리자 지정 및 방역물품 제공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종사자 대상 전문적 감염 관리 교육 강화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기관이 87.3%로 가장 높고, 시설환경개선은 노인요양시설(10~29명)이 90.7%로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대응방안을 100.0% 수행하고 있었다. 감염관리자 지정, 방역물품제공, 시설환경 개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비영리 법인이 각각 95.5%, 96.6%, 91.0%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감염관리자 지정은 영리법인(81.8%), 종사자 대상 전문적 감염 관리 교육 강화는 개인(79.9%), 방역물품 제공과 시설환경개선은 영리법인이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방역물품제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응방안별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8〉 시설 급여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코로나19로 대응 방법(중복응답)[1)2)]

(단위: % , 개소)

특성	감염 관리자 지정 및 관리 강화	종사자 감염 대상 관리 강화	전문적 교육	방역물품 제공	시설환경개선	기타[4)]	(개소)
전체	90.9	81.6	92.6	87.9	5.5	(419)	
급여유형							
단기보호	100.0	75.0	100.0	75.0	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4.4	77.7	86.9	83.6	5.7	(122)	
노인요양시설(10~29명)	93.8	83.1	93.8	90.7	4.4	(159)	
노인요양시설(30~49명)	91.9	79.0	95.2	88.7	4.8	(6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94.4	87.3	97.2	88.7	8.5	(71)	
운영주체							
개인	89.9	79.9	91.2	87.4	5.0	(318)	
영리법인	81.8	90.9	90.9	72.7	0.0	(11)	
비영리법인[3)]	95.5	86.5	96.6	91.0	7.9	(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100.0	100.0	0.0	(1)	
지역							
대도시	87.7	79.6	91.2	86.8	6.1	(112)	
중소도시	92.6	82.7	92.6	89.5	6.1	(162)	
농어촌	91.6	82.5	93.7	87.4	4.9	(144)	

주: 1)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기타: 근무시 매일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역소독 및 환기, 자발적 코호트 격리, 주기적 검사, 코로나검사비 부담, 종사자 사적모임 제한 및 사적 외출 동선 보고 등
5) 2022년 신규 문항임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력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기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관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64.0%는 이용자 병원 동행시 기관 차량 또는 추가인력을 지원하며, 56.7%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도구(인지, 재활 등)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53.3%는 원거리 교통비 외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34.5%는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8.9%는 고난도 돌봄 대상자에게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용자 병원 동행시 차량 또는 인력 추가 지원이 각각 63.8%와 6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별도의 도구를 구비하여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55.9%, 방문목욕 56.2%)과 원거리 교통비 외 추가 교통비 지원(방문요양 52.1%, 방문목욕 56.8%)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방문간호는 별도의 도구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82.4%로 매우 높았으며, 고난도 돌봄 대상자 추가 인력 투입만 29.4%로 낮고 다른 내용들은 5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고난도 돌봄 대상자 추가 인력 투입의 경우도 방문간호는 타 급여유형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유사한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방문간호는 방문형 급여 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가장 높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모든 운영주체에서 이용자 병원 동행시 추가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영리법인은 75.0%가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별도의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 운영의 경우 개인 및 영리법인은 35% 수준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비영리법인은 22.8%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난도 대상자 추가인력 투입에서도 개인 19.0%, 영리법인 25.0%에 비해 비영리법인은 11.4%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시 또는 야간방문서비스 운영은 타 지역에 비해 실시율이 낮았지만 그 외 내용들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다. 또한 원거리 교통비 외 추가 교통비 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이는 대도시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보다 근접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5-79〉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1)2)]

(단위: %, 개소)

특성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 운영	별도의 도구(인지, 재활 등)를 구비하여 서비스 제공	원거리교통비 외 추가 교통비 지원	고난도 돌봄대상자 추가인력 투입	이용자 병원 동행시 추가 지원 (차량 또는 인력)
전체	34.5 (416)	56.7 (685)	53.3 (643)	18.9 (228)	64.0 (773)
급여유형					
방문요양	34.1	55.9	52.1	18.1	63.8
방문목욕	33.6	56.2	56.8	20.2	66.4
방문간호	50.0	82.4	58.8	29.4	52.9
운영주체					
개인	35.2	57.3	54.2	19.0	63.5
영리법인	35.7	51.8	48.2	25.0	75.0
비영리법인[3)]	22.8	52.6	43.6	11.4	6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도시	34.3	54.7	37.0	16.3	59.7
중소도시	38.6	58.1	63.4	20.0	65.9
농어촌	28.2	58.4	66.2	21.7	68.7

주: 1)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기관 1,207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2.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93.9%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93.8%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45.9%이며,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있는 기관은 24.9%이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50%는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주체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영리법인튼 타 운영주체에 비해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의 비율이 낮고, 비영리법인은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보장, 개인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 제공의 비율의 낮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80〉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1)2)]

(단위: %, 개소)

특성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개인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전체	24.9 (81)	93.9 (306)	45.9 (150)	93.8 (305)
운영주체				
개인	26.4	95.5	47.1	93.8
영리법인	21.4	85.7	46.7	85.7
비영리법인[3)]	20.9	89.7	41.2	9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100.0	50.0	100.0
지역				
대도시	25.2	92.9	47.3	93.8
중소도시	23.6	96.1	43.3	91.3
농어촌	26.4	93.1	47.7	96.6

주: 1)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저염식 등)는 82.8%의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47.1%는 지역 내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은 34.3%의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송영시 노인 실종 방지 시스템(이용자 승하차 정보 문자 제공, 보호자에게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전송 등)을 마련한 기관은 2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3.7%에 불과하였다.

운영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영리법인은 타 운영주체에 비해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를 활용의 비율이 40.0%로 높으며, 치매전담실 운영 비율(7.1%)과 지역 내 병원 협력을 통한 정기적 이용자 건강관리(53.3%)의 비율도 높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의 비율이 89.7%로 타 운영주체에 비해 높다.

지역에 따라서는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의 경우 농어촌은 27.6%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으며, 그 외 항목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81〉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1)2)]

(단위: % , 개소)

특성	치매전담실 운영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송영시 노인 실종방지 시스템 마련	(지역 내 병원 협력) 정기적 이용자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저염식 등)
전체	3.7 (12)	34.3 (112)	25.5 (83)	47.1 (154)	82.8 (270)
운영주체					
개인	3.7	36.4	25.6	49.2	81.0
영리법인	7.1	40.0	28.6	53.3	78.6
비영리법인[3)]	2.9	26.5	23.5	38.2	8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0	0.0	50.0	50.0	100.0
지역					
대도시	2.7	36.6	27.7	48.2	82.1
중소도시	3.9	37.0	25.2	44.1	82.8
농어촌	3.4	27.6	23.0	50.0	83.0

주: 1)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97.8%)을 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을 실시(분기별 1회 이상)하는 비율도 94.5%로 높았다.

운영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100.0% 하고 있었으며, 개인은 98.8%, 비영리법인은 94.0%로 매우 높았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0.0%이고, 비영리법인은 95.6%, 개인은 94.6%로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85.7%로 타 운영주체보다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농어촌이 96.6%로 타 지역에 비해 적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는 중소도시가 93.8%로 가장 적었다.

〈표 5-82〉 주야간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1)2)]

(단위: % , 개소)

특성	보호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 상담 실시
전체	97.8 (318)	94.5 (308)
운영주체		
개인	98.8	94.6
영리법인	100.0	85.7
비영리법인[3)]	94.0	95.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지역		
대도시	98.2	95.5
중소도시	98.4	93.8
농어촌	96.6	94.3

주: 1)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326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3.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시설 및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관의 98.3%는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6.9%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야간 수면시 일괄 소등을 하지 않는 기관은 83.6%이며,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66.9%,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있는 기관은 31.7%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단기보호기관 전수는 자유로운 복장의 착용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로운 복장착용은 98% 이상의 기관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역시도 90% 이상의 기관에서 보장하고 있다.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식사시간 선택의 지율성은 특히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23.9%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낮았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관 중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은 두 운영주체 모두 타 운영주체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83〉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1)2)]

(단위: %, 개소)

특성	자유로운 복장 착용	야간 수면시 일괄소등하지 않음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전체	98.3 (412)	83.6 (352)	31.7 (133)	66.9 (281)	96.9 (406)
급여유형					
단기보호	100.0	75.0	25.0	50.0	1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8.4	81.0	33.6	63.9	97.5
노인요양시설(10~29명)	98.1	83.9	34.4	67.1	98.1
노인요양시설(30~49명)	98.4	84.1	30.2	74.2	93.5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98.6	87.5	23.9	66.2	95.8
운영주체					
개인	98.4	83.0	32.1	66.4	97.2
영리법인	100.0	90.9	27.3	60.0	100.0
비영리법인[3)]	97.8	86.5	30.3	69.7	9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50.0	0.0	50.0	100.0
지역					
대도시	97.4	83.2	34.5	67.3	97.4
중소도시	99.4	83.4	29.6	66.9	96.9
농어촌	98.6	84.7	31.3	67.1	96.5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은 92.3%였으며, 임종, 감염병 등을 위한 특별 침실을 마련한 기관은 89.8%, 의료서비스를 강화한 기관은 87.4%, 간호서비스를 강화한 기관은 41.1%, 유니트케어와 같은 소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20.2%, 신체 및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를 활용하는 기관은 19.3%, ICT를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은 6.2%, 치매전담실 운영 기관은 5.9%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기관에서의 비율이 높았으며, 기관의 규모가 큰 기관에서 해당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소단위 돌봄 운영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서비스 강화와 특별침실 마련은 10~29명 노인요양시설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조사대상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가 특별침실을 마련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은 타 운영주체에 비해 간호서비스를 강화한 비율(57.3%)과 ICT를 활용한 노인돌봄시스템 설치(14.6%)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간호서비스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비율이 38.5%로 적었다.

〈표 5-84〉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1)2)]

(단위: %, 개소)

특성	특별침실 마련	의료서비스 강화	간호서비스 강화	치매전담실 운영	소단위 돌봄 운영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ICT를 활용한 노인돌봄시스템 설치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저염식 등)
전체	89.8 (377)	87.4 (366)	41.1 (172)	5.9 (25)	20.2 (85)	19.3 (81)	6.2 (25)	92.3 (386)
급여유형								
단기보호	60.0	75.0	50.0	0.0	25.0	25.0	0.0	7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7.9	81.0	36.4	9.0	33.6	14.9	5.7	89.3
노인요양시설(10~29명)	96.3	90.0	35.6	4.3	14.3	14.4	2.5	93.8
노인요양시설(30~49명)	91.9	87.1	43.5	3.2	17.7	25.8	6.3	95.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95.8	93.1	59.2	6.9	12.7	31.9	15.5	93.0
운영주체								
개인	87.7	86.5	36.5	5.3	22.0	16.7	4.1	91.5
영리법인	100.0	90.9	36.4	9.1	20.0	27.3	0.0	100.0
비영리법인[3)]	97.8	89.9	57.3	6.7	13.5	27.0	14.6	9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								
대도시	86.0	85.8	42.5	7.1	19.3	20.2	8.8	91.2
중소도시	92.0	89.0	41.7	4.3	20.9	18.4	4.3	92.0
농어촌	90.9	86.7	38.5	6.3	20.3	19.6	6.3	93.0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96.0%)을 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을 실시(분기별 1회 이상)하는 비율도 96.9%로 높았다.

급여유형별로는 단기보호와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기관에서는 보호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100.0%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 상담 실시는 단기보호에서 100.0% 진행하고 있었다.

운영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영리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100.0% 하고 있었으며, 개인은 95.6%, 비영리법인은 96.6%로 매우 높았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0.0%이고, 비영리법인은 96.6%, 개인은 97.8%로 높았으며, 영리법인은 90.0%로 타 운영주체보다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대도시가 94.7%로 타 지역에 비해 적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는 농어촌이 95.1%로 가장 적었다.

〈표 5-85〉 시설 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권리보장[1)2)]

(단위: %, 개소)

특성	보호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정기적 상담 실시
전체	96.0 (402)	96.9 (408)
급여유형		
단기보호	100.0	1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4.3	97.5
노인요양시설(10~29명)	95.7	97.5
노인요양시설(30~49명)	95.2	95.2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100.0	95.8
운영주체		
개인	95.6	97.8
영리법인	100.0	90.0
비영리법인[3)]	96.6	96.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지역		
대도시	94.7	98.2
중소도시	96.3	97.5
농어촌	96.5	95.1

주: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제공기관 419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유무로 파악
2) 2022.07.01.기준 조사자료
3)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외 비영리법인 등
4) 2022년 신규 문항임

제6장

장기요양요원 조사결과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근무조건
제3절 근무환경
제4절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근무현황

제 6 장 장기요양요원 조사결과

제1절 일반 현황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성별은 남성 6.1%, 여성 93.9%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는 60~69세 48.3%, 50~59세 26.8%, 70세 이상 14.6%, 40

~49세 7.1% 순으로 나타나, 60대가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60대 이상이 62.9%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의 50.1%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25.3%는 중학교 졸업 이하, 12.1%는 전문대학교 졸업자, 10.8%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40.0%),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을 보면, 방문요양이 67.1%로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의 경우, 운영주체가 개인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이 77.0%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14.3%, 영리법인은 7.8%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특성을 비교하면, 재가기관은 여성이 94.4%로 시설기관의 여성 92.0%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재가기관의 경우 60대가 50.0%로 주를 이루고, 50대 24.2%, 70세 이상 비율이 17.8%로 나타난 반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경우 70세 이상 비율은 3.2%로 대부분 50~6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가기관 근무자는 대도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43.7%로 높은 반면, 시설기관 근무자는 농어촌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이 36.1%로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지역의 차이를 보였다.

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가 94.2%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직종은 요양보호사가 69.6%, 사회복

지사 16.6%, 간호(조무)사가 11.3% 등의 분포를 보였다. 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85.5%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방문요양이 급여 유형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주야간보호 9.6%, 방문목욕 4.4%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0.4%)와 단기보호(0.1%)는 1%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43.4%는 50명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10~29명 노인요양시설(28.2%), 30~49명 노인요양시설(20.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주체를 보면, 재가급여 제공기관 장기요양요원의 81.5%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비율은 60.6%, 비영리법인은 28.9%로 개인 대비 비영리법인 비율이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재가기관	시설기관	계(명)
전체	78.4	21.6	100.0 (4,302)
성별			
남성	5.6	8.0	6.1 (264)
여성	94.4	92.0	93.9 (4,038)
연령대			
20~29세	0.5	3.2	1.1 (46)
30~39세	1.3	5.3	2.1 (92)
40~49세	6.3	10.1	7.1 (305)
50~59세	24.2	36.1	26.8 (1,152)
60~69세	50.0	42.1	48.3 (2,077)
70세 이상	17.8	3.2	14.6 (629)
학력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7.3	18.0	25.3 (1,088)
고등학교 졸업	50.7	47.7	50.1 (2,154)
전문대 졸업	10.8	17.1	12.1 (523)
4년제 대학 졸업	9.6	14.9	10.8 (464)
대학원 이상	1.6	2.3	1.7 (74)
지역			
대도시	43.7	26.6	40.0 (1,721)
중소도시	37.1	37.3	37.1 (1,596)
농어촌	19.3	36.1	22.9 (985)
직종			
요양보호사	94.2	69.6	88.9 (3,826)
사회복지사	4.0	16.6	6.7 (289)
간호(조무)사	1.7	11.3	3.8 (162)
물리(작업)치료사	0.1	2.4	0.6 (26)
급여유형			
방문요양	85.5	-	67.1 (2,886)
방문목욕	4.4	-	3.4 (148)
방문간호	0.4	-	0.3 (12)
주야간보호	9.6	-	7.6 (325)
단기보호	0.1	-	0.1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9	1.7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	28.2	6.1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	20.6	4.4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	43.4	9.4 (403)
운영주체			
개인	81.5	60.6	77.0 (3,313)
영리법인	7.7	8.0	7.8 (335)
비영리법인	10.2	28.9	14.3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0.5	2.4	1.0 (41)

주: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증 보유(중복응답)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93.6%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보유자는 13.9%, 간호사 0.9%, 간호조무사 6.8%, 물리(작업)치료사 자격증 보유자는 0.6%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여성의 보유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자격증은 남성의 보유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0대, 70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에서는 요양보호사 76.0%, 사회복지사 40.0%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요양보호사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자격증 보유율은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서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 외에 다른 자격증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39.1%)과 간호조무사 자격증(11.4%)을 복수로 보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50.5%), 사회복지사 자격증(24.7%)을 복수로 보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증 보유 현황(중복 응답)

(단위: %)

특성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전체	93.6	2.9	11.0	0.9	6.8	0.4	0.2
성별							
남성	79.8	5.3	32.2	0.2	2.7	1.5	0.5
여성	94.5	2.8	9.6	1.0	7.0	0.4	0.2
연령대							
20~29세	18.5	24.8	70.0	3	6.5	3.2	7.3
30~39세	40.6	17.8	62.1	4.2	15.4	4.7	5.8
40~49세	76.0	6.6	33.4	2.3	17.4	2.3	0.2
50~59세	92.7	2.6	15.5	1.1	11.5	0.3	0.0
60~69세	98.8	2.0	4.6	0.5	4.0	0.1	0.0
70세 이상	99.7	1.1	1.3	0.5	1.0	0.0	0.0
지역							
대도시	95.2	3.1	9.9	0.8	5.5	0.3	0.2
중소도시	93.2	2.4	10.7	0.7	6.4	0.5	0.2
농어촌	91.2	3.5	13.4	1.3	9.7	0.6	0.3
직종							
요양보호사	100	1.7	4.8	0.2	3.2	0.0	0.0
사회복지사	39.1	20.9	86.3	0.9	11.4	0.7	0.1
간호(조무)사	50.5	0.8	23.9	17	83.3	0.1	0.1
물리(작업)치료사	16.6	1.0	15.9	0.0	3.8	65.1	35.5
운영주체							
개인	94.5	2.7	10.0	0.8	6.1	0.3	0.2
영리법인	95.3	1.3	7.8	0.5	4.8	0.4	0.1
비영리법인	87.4	5.0	18.6	1.5	11.8	1.4	0.6
국가·지방자치단체	91.8	2.1	7.2	1.5	5.4	1.4	0.1
급여유형							
방문요양	99.8	1.7	4.9	0.2	2.9	0.0	0.0
방문목욕	100	1.2	4.6	0.9	0.8	0.0	0.0
방문간호	39.8	2.2	18.8	65.6	38.8	0.0	0.0
주야간보호	70.3	7.3	41.9	1.9	18.2	1.0	0.3
단기보호	78.4	4.0	17.9	1.5	24.7	0.0	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3.5	4.3	22.0	2.3	24.8	0.0	0.0
노인요양시설(10~29명)	79.2	5.0	25.6	1.1	16.0	0.5	0.3
노인요양시설(30~49명)	80.8	4.5	20.3	1.2	14.0	2.9	2.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4.1	6.3	16.3	2.5	13.8	2.2	1.0
2019년	95.1	0.9	8.4	1.0	5.7	0.5	0.3

주: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요양보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는 20.5%, 가족인 및 일반 요양보호사와 병행 근무는 5.9%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 중에는 43.9%가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 51.9%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여 상대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는 경우는 18.9%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는 비중은 특히 40대(32.4%)와 70세 이상(34.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는 대부분 95%이상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였고, 가족인 및 일반요양보호사 병행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이 25.0%로 중소도시(19.2%), 농어촌(14.3%)에 비해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개인 시설 근무자 중 20.7%, 영리법인 근무자 중 29.6%을 차지하여 비영리법인(14.6%)과 국가·지자체(3.4%) 근무자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는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종사하는 비율이 26.1%, 24.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목욕 종사자의 경우 가족인 및 일반 요양보호사를 병행하는 비중도 12.6%로 나타났다. 반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고, 노인요양시설(10~29명)과 노인요양시설(30~49명)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100% 일반 요양보호사로 나타났다.

〈표 6-3〉 가족인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 명)

특성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	가족인 및 일반 요양보호사 병행	계(명)	
전체	20.5	73.6	5.9	100.0	(3,826)
성별					
남성	51.9	43.9	4.2	100.0	(189)
여성	18.9	75.1	6.0	100.0	(3,637)
연령대					
20~29세	0.0	100.0	0.0	100.0	(5)[1)]
30~39세	4.5	95.5	0.0	100.0	(14)
40~49세	32.4	61.5	6.1	100.0	(178)
50~59세	18.5	76.0	5.4	100.0	(982)
60~69세	16.4	77.4	6.3	100.0	(2,021)
70세 이상	34.2	60.4	5.4	100.0	(626)
지역					
대도시	25.0	70.1	4.9	100.0	(1,576)
중소도시	19.2	73.2	7.6	100.0	(1,418)
농어촌	14.3	80.9	4.8	100.0	(831)
운영주체					
개인	20.7	73.1	6.2	100.0	(3,005)
영리법인	29.6	64.6	5.8	100.0	(311)
비영리법인	14.6	81.7	3.7	100.0	(473)
국가/지자체	3.4	87.7	8.9	100.0	(36)
급여유형					
방문요양	26.1	67.0	7.0	100.0	(2,875)
방문목욕	24.6	62.8	12.6	100.0	(148)
주야간보호	0.0	98.2	1.8	100.0	(155)
단기보호	0.0	100.0	0.0	100.0	(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97.9	2.1	100.0	(48)
노인요양시설(10~29명)	0.0	100.0	0.0	100.0	(174)
노인요양시설(30~49명)	0.0	100.0	0.0	100.0	(13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0.0	99.3	0.7	100.0	(295)
2019년	19.6	74.6	5.8	100.0	(3,400)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응답자의 직종이 요양보호사인 3,826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부수입 마련'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장기요양 관련 분야가 본업이므로'가 25.0%,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가족 돌봄'이 15.1%,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려고' 1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사, 양육 이외의 시간활용'을 위해 일한다고 응답한 장기요양요원은 4.0%이었으며, '미래 노부모 돌봄 준비'는 7.1%, 새로운 취·창업 모색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장기요양 관련 분야가 본업이므로'가 33.7%, '등급인정을 받은 가족 돌봄'이 31.8%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수입 마련'이 33.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뒤로 '장기요양 관련 분야가 본업이므로' 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90% 가까이 장기요양 분야가 본업이라는 응답률을 보였으며, 본업이라는 응답률은 30대에서도 68.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해당 응답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부수입마련 응답률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등급인정을 받은 가족 돌봄 응답률은 70대 이상에서 32.0%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모두 본업으로 근무하는 비율이나 부수입 마련이라는 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농어촌에서는 등급 인정을 받은 가족 돌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삶의 만족, 보람이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67.5%, 물리(작업)치료사의 80.0%가 '본업으로 근무'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본업으로 근무'는 20.5%에 불과했고, '부수입 마련'을 위해서는 35.0%,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가족 돌봄'을 위해 근무하는 비율이 16.9%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절반(47.5%)가 본업으로 근무한다고 응답하여, 요양보호사보다는 해당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수입 마련'과 '삶의 만족, 보람'도 각각 약 19.1%로 나타났다.

〈표 6-4〉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특성	본업	부수입 마련	시간 활용	등급 인정 받은 가족 돌봄	미래 노부모 돌봄 준비	새로운 취창업 모색	삶의 만족, 보람	기타	계(명)
전체	25.0	32.4	4.0	15.1	7.1	3.6	12.6	0.2	100.0 (4,302)
성별									
남성	33.7	12.9	0.4	31.8	4.9	7.6	8.3	0.4	100.0 (264)
여성	24.5	33.7	4.3	14.0	7.2	3.3	12.9	0.1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9.1	2.2	0.0	0.0	0.0	4.3	4.3	0.0	100.0 (46)
30~39세	68.1	9.9	5.5	0.0	1.1	9.3	5.5	0.1	100.0 (92)
40~49세	32.7	18.6	8.8	11.4	7.2	6.9	13.1	1.3	100.0 (305)
50~59세	26.2	29.7	3.9	13.8	8.3	3.6	14.4	0.1	100.0 (1,152)
60~69세	23.3	37.7	3.9	12.2	7.4	3.1	12.4	0.0	100.0 (2,077)
70세 이상	14.0	32.5	2.4	32.0	4.9	2.5	11.6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24.4	33.3	3.6	16.4	8.3	3.7	10.1	0.1	100.0 (1,721)
중소도시	24.7	31.7	4.6	17.4	6.3	2.3	12.8	0.1	100.0 (1,596)
농어촌	26.7	32.1	3.9	8.9	6.0	5.3	16.7	0.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20.5	35.0	4.3	16.9	7.8	3.2	12.3	0.1	100.0 (3,826)
사회복지사	67.5	8.7	0.8	0.2	0.9	7.1	14.4	0.4	100.0 (289)
간호(조무)사	47.5	19.1	3.1	1.2	2.5	6.8	19.1	0.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0.0	8.0	0.0	0.0	0.0	4.0	8.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23.4	33.8	4.1	15.4	7.4	3.3	12.4	0.2	100.0 (3,313)
영리법인	21.4	29.2	1.8	23.7	11.7	3.4	8.8	0.0	100.0 (335)
비영리법인	35.3	27.0	4.8	8.8	2.9	5.2	15.9	0.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30.0	30.0	5.0	7.5	7.5	5.0	15.0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3	35.7	4.6	21.2	8.5	2.5	10.0	0.1	100.0 (2,886)
방문목욕	20.8	28.2	4.0	21.5	10.1	4.7	10.7	0.0	100.0 (148)
방문간호	41.7	16.7	8.3	8.3	0.0	16.7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46.5	17.7	2.1	0.5	3.6	8.0	20.9	0.7	100.0 (325)
단기보호	50.0	0.0	0.0	0.0	0.0	0.0	5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5	28.8	2.7	0.0	1.4	6.8	17.8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40.2	31.8	3.1	0.0	3.1	3.8	18.0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2.4	26.2	3.1	0.0	4.2	4.7	19.4	0.1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43.0	27.1	2.5	0.3	3.4	5.3	18.2	0.3	100.0 (403)
2019년	53.1	21.6	5.6	13.8	3.1	1.9	-	1.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조사 선택지의 문구는 2019년 문항 선택지와 다소 차이가 있음.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응답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77.0%, 비영리법인이 14.3%, 영리법인이 7.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0%로 나타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인 장기요양요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0대(79.9%)가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인 장기요양요원은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30.4%,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근무 비율이 2.5%로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1.1%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근무 장기요양요원은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8.5%로 높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사와 물리(작업)치료사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30.0%와 4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국가·지자체 운영기관 근무 비율도 3.8%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80% 이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 43.2%로, 개인 운영시설 39.9%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났다. 또한,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국가·지자체 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5.1%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장기요양요원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

(단위: %, 명)

특성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국가·지자체	계(명)
전체	77.0	7.8	14.3	1.0	100.0 (4,302)
성별					
남성	72.7	8.3	18.6	0.4	100.0 (264)
여성	77.3	7.8	14.0	1.0	100.0 (4,038)
연령대					
20~29세	65.2	2.3	30.4	0.0	100.0 (46)
30~39세	62.4	4.3	32.3	1.1	100.0 (92)
40~49세	68.9	7.2	23.3	0.6	100.0 (305)
50~59세	71.4	8.8	17.3	2.5	100.0 (1,152)
60~69세	79.9	8.0	11.7	0.4	100.0 (2,077)
70세 이상	84.5	6.4	8.9	0.2	100.0 (629)
지역					
대도시	76.6	9.3	12.6	1.4	100.0 (1,721)
중소도시	81.1	6.1	12.3	0.5	100.0 (1,596)
농어촌	71.0	7.8	20.4	0.8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8.5	8.1	12.4	1.0	100.0 (3,826)
사회복지사	65.2	4.2	30.0	0.6	100.0 (289)
간호(조무)사	66.7	6.2	25.9	1.2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46.2	7.7	42.3	3.8	100.0 (26)
소속기관 급여유형					
방문요양	82.6	7.7	9.3	0.5	100.0 (2,886)
방문목욕	81.5	9.4	8.3	0.8	100.0 (148)
방문간호	83.3	8.3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72.0	7.5	19.3	1.2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7.7	4.1	8.2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9.7	3.8	16.1	0.5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67.9	7.1	24.4	0.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9.9	11.9	43.2	5.1	100.0 (403)
2019년	71.1	9.4	19.4	0.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년 미만이 58.8%, 1년 미만이 20.9%, 5년~10년 미만이 14.5%, 10년 이상이 5.8%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1~5년 미만이 58.8%, 1년 미만이 21.2%, 5~10년 미만이 14.2%, 10년 이상이 5.7%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는 1~5년 미만이 60.7%, 1년 미만이 17.6%, 5~10년 미만이 17.4%, 10년 이상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는 1~5년 미만이 56.5%, 1년 미만이 19.9%, 5~10년 미만이 14.3%, 10년 이상이 9.3%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1~5년 미만이 56.0%, 5~10년 미만이 20.0%, 1년 미만이 16.0%, 10년 이상이 8.0%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교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3.3년으로 여성은 3.3년, 남성은 3.9년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7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3.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2.1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요원(3.8년)이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장기요양요원보다 평균 근무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와 간호(조무)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각각 4.2년과 3.8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3.3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의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개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3.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이 4.3년으로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길었으며, 방문목욕 근무 요원이 4.0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기간은 2.9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표 6-6〉 장기요양요원의 주 소속기관 근무기간

(단위: %, 명, 년)

특성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명)		평균 근무기간
전체	20.9	58.8	14.5	5.8	100.0	(4,302)	3.3
성별							
남성	18.3	52.2	19.6	9.9	100.0	(264)	3.9
여성	21.1	59.3	14.1	5.5	100.0	(4,038)	3.3
연령대							
20~29세	30.7	60.9	8.7	0.0	100.0	(46)	2.1
30~39세	16.3	65.2	17.4	1.1	100.0	(92)	3.0
40~49세	26.6	59.4	9.4	4.6	100.0	(305)	2.9
50~59세	21.4	61.3	11.7	5.5	100.0	(1,152)	3.1
60~69세	21.8	56.5	15.3	6.4	100.0	(2,077)	3.4
70세 이상	14.3	60.8	19.1	5.9	100.0	(629)	3.5
지역							
대도시	22.8	58.2	14.8	4.2	100.0	(1,721)	3.1
중소도시	20.6	61.0	13.0	5.4	100.0	(1,596)	3.2
농어촌	18.0	56.5	16.3	9.2	100.0	(985)	3.8
직종							
요양보호사	21.2	58.8	14.2	5.7	100.0	(3,826)	3.3
사회복지사	17.6	60.7	17.4	4.4	100.0	(289)	3.3
간호(조무)사	19.9	56.5	14.3	9.3	100.0	(162)	3.8
물리(작업)치료사	16.0	56.0	20.0	8.0	100.0	(26)	4.2
운영주체							
개인	21.3	60.5	14.2	4.0	100.0	(3,313)	3.1
영리법인	26.9	52.2	12.6	8.3	100.0	(335)	3.4
비영리법인	15.6	53.3	17.2	14.0	100.0	(613)	4.4
국가·지방자치단체	19.5	61.0	12.2	7.3	100.0	(41)	3.8
급여유형							
방문요양	22.2	59.0	13.6	5.2	100.0	(2,886)	3.1
방문목욕	14.8	58.3	16.9	10.1	100.0	(148)	4.0
방문간호	23.1	61.5	15.4	0.0	100.0	(12)	3.0
주야간보호	18.9	65.7	11.8	3.6	100.0	(325)	2.9
단기보호	33.3	33.3	33.3	0.0	100.0	(3)[3)]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9	56.2	15.1	6.8	100.0	(73)	3.7
노인요양시설(10~29명)	21.4	57.6	16.7	4.2	100.0	(262)	3.3
노인요양시설(30~49명)	19.8	56.8	16.7	6.8	100.0	(191)	3.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5.5	54.4	19.4	10.7	100.0	(403)	4.3
2019년	22.5	53.6	18.1	5.8	100.0	(3,734)	3.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전체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근무기간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1~5년 미만이 49.7%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22.4%, 10년 이상이 18.4%, 1년 미만이 9.5%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근무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1년 미만에서 요양보호사의 응답률이 9.5%, 사회복지사 9.6%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은 물리(작업)치료사(23.1%)와 간호(조무)사(22.2%)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에서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상으로 타 급여유형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50명이상 노인요양시설, 방문목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응답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1년 미만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해 높았고, 10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평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균 근무기간은 5.0년이었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전체 근무기간은 평균 4.8년, 여성이 5.1년으로 여성의 평균 근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평균 근무기간이 5.5년, 70세 이상이 5.7년으로 길었으며, 20대의 평균 근무기간은 2.6년으로 가장 짧은 등, 대체적으로 고연령 응답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에서의 근무기간이 5.7년으로 가장 길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물리(작업)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평균 근무기간이 5.7년으로 길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의 근무기간이 4.6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이 5.7년,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이 5.8년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과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 근로기간이 5.9년으로 다른 급여유형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표 6-7〉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 계속 근무기간

(단위: %, 명, 년)

특성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명)	평균 (년)
전체	9.5	49.7	22.4	18.4	100.0 (4,302)	5.0
성별						
남성	10.5	47.4	24.6	17.6	100.0 (264)	4.8
여성	9.4	49.8	22.2	18.5	100.0 (4,038)	5.1
연령대						
20~29세	17.4	69.6	13.0	0.0	100.0 (46)	2.6
30~39세	10.9	56.5	27.2	5.4	100.0 (92)	4.0
40~49세	18.5	54.1	19.1	8.3	100.0 (305)	3.7
50~59세	12.3	54.7	20.1	12.9	100.0 (1,152)	4.4
60~69세	7.8	46.4	23.2	22.6	100.0 (2,077)	5.5
70세 이상	4.8	46.8	25.6	22.8	100.0 (629)	5.7
지역						
대도시	10.7	50.7	21.8	16.9	100.0 (1,721)	4.8
중소도시	9.4	51.6	22.0	17.0	100.0 (1,596)	4.9
농어촌	7.6	44.8	24.1	23.5	100.0 (985)	5.7
직종						
요양보호사	9.5	49.8	21.9	18.7	100.0 (3,826)	5.1
사회복지사	9.6	52.8	25.8	11.8	100.0 (289)	4.6
간호(조무)사	8.6	43.2	25.9	22.2	100.0 (162)	5.7
물리(작업)치료사	7.7	42.3	26.9	23.1	100.0 (26)	5.7
운영주체						
개인	9.3	50.8	22.8	17.0	100.0 (3,313)	4.9
영리법인	12.7	49.8	16.3	21.2	100.0 (335)	5.1
비영리법인	8.5	44.3	23.1	24.1	100.0 (613)	5.7
국가·지방자치단체	12.2	36.6	24.4	26.8	100.0 (41)	5.8
급여유형						
방문요양	10.0	50.9	20.5	18.6	100.0 (2,886)	4.9
방문목욕	7.2	43.0	28.6	21.2	100.0 (148)	5.6
방문간호	8.3	50.0	25.0	16.7	100.0 (12)	4.8
주야간보호	10.3	57.6	20.8	11.3	100.0 (325)	4.3
단기보호	0.0	50.0	50.0	0.0	100.0 (3)[3)]	5.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5	40.5	28.4	21.6	100.0 (73)	5.7
노인요양시설(10~29명)	7.6	45.0	29.3	18.1	100.0 (262)	5.5
노인요양시설(30~49명)	9.0	47.4	25.7	17.9	100.0 (191)	5.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2	42.8	27.7	22.3	100.0 (403)	5.9
2019년	9.0	47.6	28.9	14.5	100.0 (3,734)	4.9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2절 근무조건

1. 근로계약과 고용형태

장기요양요원 응답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가 4.4%, 주임(대리)이 1.1%, 사무국장과 시설장이 각각 0.7%, 0.5%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사원의 비율이 높고 남성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사원 비율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98.7%)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관리자에서는 20대 12.8%, 30대 17.2%, 40대 11.9%로 젊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사무국장 3.2%, 주임 및 대리 4.3%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사원의 비율이 96.9%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는 사원은 58.4%,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27.0%, 사무국장 7.1%, 시설장 3.0%로 사원의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역시 중간관리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19.3%, 시설장인 경우 3.7%로 나타났다. 물리(작업)치료사는 사원 80.0%, 중간관리자 16.0%, 주임 및 대리 4.0%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87.0%가 사원, 9.9%가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어, 타 운영주체에 비해 중간관리자 비율이 높고, 사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에서는 단기보호 및 시설, 공동생활가정 응답자에서는 80~90%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야간보호의 경우 중간관리자가 15.5%로 타 급여유형에 비해 중간관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문간호는 시설장이 18.2%로 시설장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사원 비율이 각각 98.1%, 9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직위[1]

(단위: %, 명)

특성	사원 (직위없음)	주임, 대리[2]	중간 관리자[3]	사무 국장[4]	시설장	기타	계(명)	
전체	93.3	1.1	4.4	0.7	0.5	0.0	100.0	(4,302)
성별								
남성	83.5	1.5	8.7	4.4	1.6	0.3	100.0	(264)
여성	93.9	1.0	4.1	0.5	0.4	0.0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3.0	2.1	12.8	2.1	0.0	0.0	100.0	(46)
30~39세	73.1	4.3	17.2	3.2	1.1	1.1	100.0	(92)
40~49세	84.5	1.5	11.9	1.6	0.5	0.0	100.0	(305)
50~59세	91.5	1.5	5.4	0.8	0.8	0.0	100.0	(1,152)
60~69세	95.1	0.9	3.1	0.5	0.4	0.0	100.0	(2,077)
70세 이상	98.7	0.1	1.0	0.1	0.1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94.7	0.7	3.3	0.7	0.5	0.0	100.0	(1,721)
중소도시	94.0	0.9	4.3	0.5	0.4	0.0	100.0	(1,596)
농어촌	89.7	2.0	6.6	1.0	0.6	0.1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96.9	0.7	2.0	0.2	0.2	0.0	100.0	(3,826)
사회복지사	58.4	4.2	27.0	7.1	3.0	0.2	100.0	(289)
간호(조무)사	73.3	3.1	19.3	0.6	3.7	0.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0.0	4.0	16.0	0.0	0.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94.2	0.7	3.7	0.7	0.5	0.0	100.0	(3,313)
영리법인	95.9	2.5	1.0	0.6	0.0	0.0	100.0	(335)
비영리법인	87.0	2.0	9.9	0.6	0.4	0.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90.5	2.4	4.8	2.4	0.0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98.1	0.3	1.2	0.2	0.1	0.0	100.0	(2,886)
방문목욕	96.7	0.8	1.2	0.4	0.9	0.0	100.0	(148)
방문간호	72.7	0.0	9.1	0.0	18.2	0.0	100.0	(12)
주야간보호	77.2	3.5	15.5	2.3	1.4	0.2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0.0	100.0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6.1	1.4	6.9	1.4	4.2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80.7	1.1	12.1	4.5	1.5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85.9	3.1	9.4	1.0	0.0	0.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4.5	3.3	11.8	0.2	0.2	0.0	100.0	(403)
2019년	93.5	1.2	4.4	0.6	0.3	0.1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선임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포함
3)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모아 별도의 팀, 부, 과를 조직하여 해당 팀이나 과 등을 관리하는 사람. 부장, 팀장, 과장 등이 있음
4)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명시된 사무국장을 의미함
5)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6)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3.9%가 정규직이고 계약직(전일제) 12.5%, 계약직(시간제)은 53.6.%로 장기요양요원의 과반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49.0%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시간제 계약직의 비율이 54.5%로 남성(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및 30대에서는 약 81%가 정규직인 반면, 40대가 54.2%, 50대가 40.3%로 점점 비율이 감소했고, 70세 이상인 경우 18.1%에 그쳤다. 전일제 계약직에는 50대가 1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60대가 12.7%, 40대가 11.9%로 나타났다. 시간제 계약직 비율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가 58.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는 8.7%, 30대는 10.9%가 시간제 계약직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계약직의 비율이 59.9%로 다른 직종과 비교해 시간제 계약직 종사비율이 월등히 높고, 정규직은 27.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87.4%, 79.2%, 88.0%)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57.1%, 영리법인 근무 요원 54.5%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타 운영주체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비영리 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정규직이 각각 49.5%, 45.2%로 다른 운영주체와 비교해 높다.

〈표 6-9〉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

(단위: %, 명)

특성	정규직	계약직 (전일제)	계약직 (시간제)	계(명)	
전체	33.9	12.5	53.6	100.0	(4,302)
성별					
남성	49.0	11.9	39.1	100.0	(264)
여성	32.9	12.6	54.5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0.4	10.9	8.7	100.0	(46)
30~39세	81.5	7.6	10.9	100.0	(92)
40~49세	54.2	11.9	33.9	100.0	(305)
50~59세	40.3	14.4	45.3	100.0	(1,152)
60~69세	28.9	12.7	58.4	100.0	(2,077)
70세 이상	18.1	9.8	72.1	100.0	(629)
지역					
대도시	24.0	9.6	66.4	100.0	(1,721)
중소도시	36.4	13.2	50.4	100.0	(1,596)
농어촌	47.0	16.5	36.5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27.5	12.5	59.9	100.0	(3,826)
사회복지사	87.4	11.4	1.3	100.0	(289)
간호(조무)사	79.2	14.7	6.1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8.0	12.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31.2	11.7	57.1	100.0	(3,313)
영리법인	30.2	15.3	54.5	100.0	(335)
비영리법인	49.5	15.2	35.3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45.2	19.0	35.7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0	8.6	74.4	100.0	(2,886)
방문목욕	19.7	9.5	70.7	100.0	(148)
방문간호	33.3	16.7	50.0	100.0	(12)
주야간보호	76.8	19.0	4.1	100.0	(325)
단기보호	66.7	33.3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0	21.9	4.1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5.0	21.4	3.6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69.7	25.8	4.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3.4	22.9	3.7	100.0	(403)
2019년	38.1	13.4	48.5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요원의 주된 근무 장소로는 이용자 가정이 70.2%로 장기요양기관(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91.3%, 89.2%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의 경우 5.4%만이 주된 근무장소가 기관이고, 나머지 94.6%는 이용자 가정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농어촌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90%이상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100.0% 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78.6%가 이용자 가정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었다. 소속기관의 급여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응답자의 100.0%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각각 응답자의 99.1%, 99.3%, 91.7%가 이용자 가정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표 6-10〉 장기요양요원의 주된 근무장소

(단위: %, 명)

특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가정	계(명)
전체	29.8	70.2	100.0 (4,302)
성별			
남성	49.7	50.3	100.0 (264)
여성	28.5	71.5	100.0 (4,038)
연령대			
20~29세	91.3	8.7	100.0 (46)
30~39세	89.2	10.8	100.0 (92)
40~49세	53.7	46.3	100.0 (305)
50~59세	41.6	58.4	100.0 (1,152)
60~69세	23.1	76.9	100.0 (2,077)
70세 이상	5.4	94.6	100.0 (629)
지역			
대도시	21.3	78.7	100.0 (1,721)
중소도시	30.1	69.9	100.0 (1,596)
농어촌	44.2	55.8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21.4	78.6	100.0 (3,826)
사회복지사	99.7	0.3	100.0 (289)
간호(조무)사	93.1	6.9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00.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24.9	75.1	100.0 (3,313)
영리법인	29.7	70.3	100.0 (335)
비영리법인	54.4	45.6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65.9	34.1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0.9	99.1	100.0 (2,886)
방문목욕	0.7	99.3	100.0 (148)
방문간호	8.3	91.7	100.0 (12)
주야간보호	100.0	0.0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0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00.0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00.0	0.0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0.0	0.0	100.0 (403)
2019년	37.9	62.1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2022년 6월 한 달)간의 근무시간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3.3%가 주간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교대근무가 11.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저녁·야간 근무를 주로 했다는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주간근무 비율은 거의 비슷했으나, 남성의 저녁·야간 근무 5.2%로 여성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면 교대근무는 남성 9.2%, 여성 11.9%로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주간근무 비율이 20대 97.8%, 30대 95.7%, 70세 이상 91.5% 순으로 나타나, 40~60대 응답자의 주간근무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 또는 교대 근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16.1%, 60대의 13.3%가 지난 1개월 동안 주로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 보면 모든 직종에서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는 거의 대부분(99.1%) 주간근무를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81.6%가 주간근무자, 13.0%는 교대근무자, 2.8% 야간근무자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교대근무자가 4.1%, 야간근무자 3.2%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간근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서 교대근무 비율이 약 40~60% 대로 높게 나타났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경우 대부분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대[1)]

(단위: %, 명)

특성	주간근무	저녁·야간 근무	교대근무	기타[2)]	계(명)
전체	83.3	2.7	11.7	2.3	100.0 (4,302)
성별					
남성	84.0	5.2	9.2	1.5	100.0 (264)
여성	83.2	2.5	11.9	2.4	100.0 (4,038)
연령대					
20~29세	97.8	0.0	2.2	0.0	100.0 (46)
30~39세	95.7	1.1	2.2	1.1	100.0 (92)
40~49세	88.0	3.6	6.9	1.5	100.0 (305)
50~59세	79.8	1.4	16.1	2.7	100.0 (1,152)
60~69세	81.1	3.3	13.3	2.3	100.0 (2,077)
70세 이상	91.5	3.1	2.9	2.5	100.0 (629)
지역					
대도시	85.9	3.4	8.3	2.5	100.0 (1,721)
중소도시	83.4	2.5	11.6	2.6	100.0 (1,596)
농어촌	78.6	1.8	17.9	1.7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81.6	2.8	13.0	2.6	100.0 (3,826)
사회복지사	99.1	0.5	0.1	0.3	100.0 (289)
간호(조무)사	92.0	3.2	4.1	0.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99.1	0.0	0.4	0.5	100.0 (26)
운영주체					
개인	85.9	2.7	8.6	2.7	100.0 (3,313)
영리법인	79.4	2.5	16.0	2.1	100.0 (335)
비영리법인	73.1	2.7	23.5	0.7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51.2	0.0	46.3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94.2	2.7	0.0	3.1	100.0 (2,886)
방문목욕	92.7	1.3	0.0	6.0	100.0 (148)
방문간호	92.3	0.0	0.0	7.7	100.0 (12)
주야간보호	98.0	2.0	0.0	0.0	100.0 (325)
단기보호	50.0	0.0	5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	6.8	49.3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50.8	2.5	46.3	0.4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6.3	2.9	50.7	0.1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5.1	3.0	61.7	0.2	100.0 (403)
2019년	72.2	4.0	16.3	7.5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복합근무(주간+야간)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주된 근무시간대가 교대제라고 응답한 장기요양요원(504명)의 지난 1개월 동안 교대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2교대가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3교대 또한 29.9%로 나타났다.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도 10.4%를 차지하였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5.8%, 4교대와 기타근무는 2.4%, 0.9%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3교대 또는 4교대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는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기관의 경우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가 15.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가·지자체 운영기관의 경우 3교대로 근무하는 응답자가 6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급여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교대제가 37.1%로 높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응답자의 38.9%는 3교대, 3.6%는 4교대가 주된 교대제 형태라고 응답하여, 타 급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3교대 및 4교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및 직종별 차이는 관련 세부 집단의 유효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10명 미만)를 포함하고 있어, 따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았다.

〈표 6-12〉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교대제 형태[1)]

(단위: %, 명)

특성	24시간 근무+2일 휴무	24시간 격일제	2교대	3교대	4교대	기타	계(명)
전체	10.4	5.8	50.5	29.9	2.4	0.9	100.0 (504)
성별							
남성	12.0	4.0	44.0	40.0	0.0	0.0	100.0 (25)
여성	10.3	6.0	50.8	29.4	2.6	1.0	100.0 (479)
연령대							
20~29세	0.0	0.0	0.0	100.0	0.0	0.0	100.0 (1)[3)]
30~39세	0.0	0.0	50.0	50.0	0.0	0.0	100.0 (2)[3)]
40~49세	4.8	9.5	52.4	28.6	4.8	0.0	100.0 (21)
50~59세	7.4	5.0	46.5	37.8	2.6	0.8	100.0 (185)
60~69세	12.1	6.0	53.9	24.5	2.4	1.2	100.0 (277)
70세 이상	21.1	10.5	36.8	31.6	0.0	0.0	100.0 (19)
지역							
대도시	5.0	5.8	49.9	33.7	5.7	0.0	100.0 (142)
중소도시	11.4	6.0	51.1	28.4	1.2	1.9	100.0 (183)
농어촌	13.7	5.7	50.4	28.5	1.1	0.7	100.0 (176)
직종							
요양보호사	10.5	5.9	50.4	29.8	2.5	0.9	100.0 (496)
사회복지사	0.0	0.0	0.0	0.0	0.0	0.0	0.0 (0)[3)]
간호(조무)사	0.2	0.0	57.1	42.9	0.0	0.0	100.0 (7)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0.0	0.0 (0)[3)]
운영주체							
개인	15.2	6.4	53.3	23.2	1.2	0.7	100.0 (287)
영리법인	7.4	11.1	46.3	31.5	1.9	1.9	100.0 (54)
비영리법인	2.6	3.4	50.0	37.5	5.1	1.4	100.0 (144)
국가·지방자치단체	5.0	0.0	25.0	65.0	5.0	0.0	100.0 (20)
급여유형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10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7.1	5.7	40.0	17.1	0.0	0.0	100.0 (35)
노인요양시설(10~29명)	12.6	6.6	56.6	23.0	0.8	0.8	100.0 (122)
노인요양시설(30~49명)	11.5	5.2	59.4	20.8	2.1	1.0	100.0 (96)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3	5.3	46.2	38.9	3.6	0.8	100.0 (247)
2019년	15.7	4.7	43.9	32.4	2.1	1.2	100.0 (610)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교대제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504명의 자료를 분석
2)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근무시간 및 임금수준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급여유형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난 3개월간(2022년 4월~6월)의 월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무일수는 20.9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근무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근무일수가 23.4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길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3개월간 평균 근무일수가 21.0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운영주체별로 근무일수는 비슷하였고,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 21.5일로 근무일수가 길었고, 방문목욕은 17.9일, 방문간호는 15.9일, 단기보호는 17.7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107.7시간으로 여성 100.0시간보다 7.7시간 근무시간이 길었다. 연령대별로는 근무일수가 가장 길었던 70대가 근무시간은 74.2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60대가 96.8시간으로 나타났다. 20~30대 경우는 약 157시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123.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85.7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167.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물리(작업)치료사가 160.3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운영주체별 근무시간은 비영리법인 근무 응답자가 평균 127.1시간, 국가·지자체 근무 응답자가 129.4시간으로 개인, 영리법인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근무자가 177.8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이 166~169시간, 주야간보호 166.4시간, 단기보호 163.8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73시간 미만 근무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짧았다.

〈표 6-13〉 장기요양요원의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지난 3개월)[1)2)]

(단위: 일, 시간, 명)

특성	근무일수	근무시간	(명)
전체	20.9	100.5	(4,302)
성별			
남성	21.6	107.7	(264)
여성	20.9	100.0	(4,038)
연령대			
20~29세	20.6	157.4	(46)
30~39세	20.3	157.8	(92)
40~49세	20.0	115.6	(305)
50~59세	20.3	110.4	(1,152)
60~69세	20.7	96.8	(2,077)
70세 이상	23.4	74.2	(629)
지역			
대도시	21.2	85.7	(1,721)
중소도시	20.8	102.1	(1,596)
농어촌	20.7	123.6	(985)
직종			
요양보호사	21.0	92.6	(3,826)
사회복지사	20.6	167.4	(289)
간호(조무)사	20.1	156.8	(162)
물리(작업)치료사	20.1	160.3	(26)
운영주체			
개인	21.0	95.8	(3,313)
영리법인	21.0	93.7	(335)
비영리법인	20.8	127.1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0.7	129.4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21.5	72.7	(2,886)
방문목욕	17.9	70.2	(148)
방문간호	15.9	67.2	(12)
주야간보호	20.5	166.4	(325)
단기보호	17.7	163.8	(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1	177.8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9.9	168.9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9.7	166.9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0.0	167.6	(403)
2019년	20.7	107.8	(3,72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급여유형 및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하며,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의 평균값임

3) 2019년의 근무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유급초과근무시간, 무급초과근무시간의 총합임.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022년 4월부터 6월 중 근무시간이 1개월이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장기요양요원 1,316명[5]을 대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44.7%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가사와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가 12.2%로 그 뒤를 이었고, '본인이 원해서' 9.5%, '일거리가 없어서' 9.1%, '기관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해서' 8.3%, '건강이 좋지 않아서' 7.4%,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어서' 5.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최대 월 60시간만 근무가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71.8%로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60시간만 근무가 가능해서라는 의견이 63.5%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는 가사와 가족 돌봄 때문이라는 비율(28.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최대 60시간 근무 가능해서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도시의 경우 기관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채용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복수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본인이 원해서라는 의견이 각각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관에서 주15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는 비율(16.4%)이 높았고, 비영리법인 및 국가·지자체 근무 응답자의 경우 가사와 가족 돌봄 때문이라는 비율이 19.4%, 7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기관 근무 응답자수는 5명에 그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급여유형별로는 유효 응답자수를 고려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세 유형만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의 경우 복수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라는 응답률이 방문요양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문간호의 경우는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

5) 지난 3개월간 1개월이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장기요양요원 중 92.3%는 방문요양 제공자, 5.8%는 방문목욕 제공자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6-14〉 장기요양요원의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1)2)]

(단위: %, 명)

특성	가족인요양보호사 최대 월60시간 근무가능	일거리가 없어서	기관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사와 가족 돌봄	다른 직장(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기타[3)]	계(명)
전체	44.7	9.1	8.3	7.4	12.2	5.3	9.5	3.5	100.0 (1,316)
성별									
남성	71.8	3.6	2.7	0.9	12.7	0.9	4.5	2.7	100.0 (111)
여성	42.2	9.6	8.8	8.0	12.1	5.8	9.9	3.6	100.0 (1,206)
연령대									
20~29세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5)]
30~39세	0.0	0.0	42.9	14.3	28.6	0.0	0.0	14.3	100.0 (7)[5)]
40~49세	44.4	4.4	11.1	3.3	14.4	5.6	12.2	4.4	100.0 (91)
50~59세	37.6	6.6	7.4	9.9	13.4	5.9	15.1	4.0	100.0 (316)
60~69세	40.5	11.4	8.2	8.8	12.4	5.5	9.1	4.1	100.0 (619)
70세 이상	63.5	8.5	7.4	2.5	9.2	4.6	3.2	1.1	100.0 (283)
지역									
대도시	45.8	8.9	12.5	6.8	10.1	5.5	7.8	2.6	100.0 (645)
중소도시	41.6	10.7	5.1	8.9	12.0	3.6	12.9	5.1	100.0 (479)
농어촌	48.4	5.5	2.2	5.8	19.7	8.9	6.8	2.7	100.0 (193)
직종									
요양보호사	45.1	9.0	8.3	7.4	12.2	5.2	9.5	3.3	100.0 (1,303)
사회복지사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3)[5)]
간호(조무)사	0.0	20.0	10.0	10.0	10.0	20.0	20.0	10.0	100.0 (10)[5)]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운영주체									
개인	45.0	10.5	7.0	6.9	11.8	5.8	9.2	3.8	100.0 (1,072)
영리법인	47.8	3.0	16.4	5.7	6.5	3.2	15.9	1.5	100.0 (127)
비영리법인	38.3	2.9	11.6	14.3	19.4	3.6	6.1	3.6	100.0 (114)
국가·지방자치단체	25.0	0.0	0.0	0.0	75.0	0.0	0.0	0.0	100.0 (5)[5)]
급여유형									
방문요양	46.3	9.0	8.6	7.2	12.0	4.7	9.2	2.9	100.0 (1,215)
방문목욕	32.5	10.4	5.2	5.2	15.6	14.3	13.0	3.9	100.0 (76)
방문간호	0.0	26.8	14.3	0.0	14.3	28.6	14.3	0.0	100.0 (8)[5)]
주야간보호	0.0	0.0	0.0	14.3	14.3	0.0	0.0	71.4	100.0 (7)[5)]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노인요양시설(10~29명)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5)]
노인요양시설(30~49명)	0.0	0.0	0.0	33.3	33.3	0.0	0.0	33.3	100.0 (3)[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0.0	0.0	0.0	40.0	0.0	0.0	20.0	40.0	100.0 (5)[5)]
2019년	-	12.2	6.6	7.6	34.7	13.0	7.3	18.2	100.0 (1,112)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정규(소정)근무시간이 2022년 4월부터 6월 중 1개월이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1,316명의 자료를 분석

2)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 미만으로 수치가 0으로 나옴 / 3) 기타: 연차 등 휴가, 기관 휴무(폐업), 신규입사 등

4) 2019년의 "다른 직장(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선택지 응답률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와 "다른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의 합임

5)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동안 구간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50만원 미만 14.2%, 50~100만원 미만 35.4%, 100~150만원 미만 13.8%, 150~200만원 미만 20.9%, 200만원 이상 15.7%로 나타났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이 29.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50~100만원 미만 27.1%, 150~200만원 미만 23.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150~200만원 미만이 20.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150~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두 구간 합쳐서 90% 이상). 40대~ 50대의 경우 150~200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50~100만원 미만 구간이 60대의 경우 38.0%, 70대의 경우 63.6%로 두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이 4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농어촌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27.4%, 150~200만원 미만이 27.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약 40%가 월평균 임금이 50~1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90%이상이 1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근무 응답자의 48.8%, 비영리법인 근무 응답자의 34.7%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타 운영주체 근무자에 비해 200만원 이상 구간 응답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영리법인 근무자 중에서는 50~100만원미만 구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경우 50만원 미만 또는 50~100만원미만 구간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방문간호의 경우 30.8%는 50만원 미만, 30.8%는 200만원이상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구간과 가장 낮은 구간의 비율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및 30명 미만, 5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50~200만원 구간 임금을 받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명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응답자 비중이 60.9%로 가장 높았다.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은 120.7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임금이 140.5만원으로 여성 119.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 188.4만원, 30대 199.4만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그 후로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시간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역별로는 소속기관이 농어촌의 경우 149.0만원으로 대도시 103.0만원, 중소도시 122.5만원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9.9만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64.5만원으로 4가지 운영주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임금이 20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30~49명), 노인요양시설(10~29명) 약200만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15〉 장기요양요원의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평균 수령임금(지난 3개월)[1)2)]

(단위: %, 만원, 명)

특성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4.2	35.4	13.8	20.9	15.7	100.0	(4,302)	120.7
성별								
남성	17.0	27.1	3.4	23.5	29.0	100.0	(264)	140.5
여성	14.0	36.0	14.5	20.7	14.9	100.0	(4,038)	119.4
연령대								
20~29세	2.2	6.5	0.0	52.2	39.1	100.0	(46)	188.4
30~39세	1.1	5.4	1.1	40.9	51.6	100.0	(92)	199.4
40~49세	19.4	16.7	8.8	29.3	25.8	100.0	(305)	142.6
50~59세	16.6	24.0	13.8	25.6	20.1	100.0	(1,152)	132.2
60~69세	14.5	38.0	16.1	18.3	13.1	100.0	(2,077)	114.6
70세 이상	9.0	63.6	11.4	11.4	4.6	100.0	(629)	92.9
지역								
대도시	16.9	48.4	9.0	16.2	9.6	100.0	(1,721)	103.0
중소도시	14.3	30.7	18.1	21.7	15.2	100.0	(1,596)	122.5
농어촌	9.3	20.4	15.1	27.7	27.4	100.0	(985)	149.0
직종								
요양보호사	15.8	39.7	15.4	18.0	11.1	100.0	(3,826)	109.9
사회복지사	0.2	0.4	0.6	42.7	56.1	100.0	(289)	213.3
간호(조무)사	2.9	1.6	2.3	49.9	43.3	100.0	(162)	196.8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20.0	80.0	100.0	(26)	218.7
운영주체								
개인	15.4	37.6	15.2	20.0	11.7	100.0	(3,313)	114.0
영리법인	19.4	34.5	10.2	19.3	16.5	100.0	(335)	115.3
비영리법인	4.8	25.1	8.4	27.0	34.7	100.0	(613)	157.4
국가·지방자치단체	9.8	19.5	7.3	14.6	48.8	100.0	(41)	164.5
급여유형								
방문요양	19.2	50.9	19.2	8.7	2.0	100.0	(2,886)	87.2
방문목욕	33.8	30.4	12.8	11.5	11.5	100.0	(148)	94.8
방문간호	30.8	15.4	7.7	15.4	30.8	100.0	(12)	133.0
주야간보호	0.4	1.7	2.0	59.8	36.1	100.0	(325)	195.0
단기보호	0.0	0.0	0.0	66.7	33.3	100.0	(3)[3)]	18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0.0	1.4	62.5	36.1	100.0	(73)	195.6
노인요양시설(10~29명)	0.1	0.2	1.1	53.1	45.5	100.0	(262)	200.9
노인요양시설(30~49명)	0.5	0.0	2.1	50.3	47.1	100.0	(191)	200.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0.0	0.6	0.9	37.6	60.9	100.0	(403)	206.5
2019년	14.6	34.6	11.6	31.5	7.7	100.0	(3,734)	115.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급여유형 및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하며, 2022년 4월~6월까지 임금의 평균값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3개월간(2022년 4월~6월)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8.9%, 남성 0.4%로 여성이 남성보다 복수기관 근무자 비중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0.4%로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기관 근무자의 경우 복수기관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9.3%로 다른 직종에 비해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험이 많았으며, 응답자의 소속기관의 운영주체가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 중에서는 방문간호가 23.1%로 복수기관 근무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요양 11.7%, 방문간호 9.5%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359명에게 지난 3개월간 몇 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했는지에 질문한 결과, 2개소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개소 근무가 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개소 근무자 비율이 40대에서 37.5%, 70세이상에서 18.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 40대 및 70세 이상 각 연령대 해당 응답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3개소 근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이 소속 기관의 운영주체인 경우 22.6%가 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 제공 응답자의 21.4%가 3개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6〉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 동안 복수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8.3	91.7	100.0 (4,302)
성별			
남성	0.4	99.6	100.0 (264)
여성	8.9	91.1	100.0 (4,038)
연령대			
20~29세	0.0	100.0	100.0 (46)
30~39세	0.0	100.0	100.0 (92)
40~49세	2.8	97.2	100.0 (305)
50~59세	7.9	92.1	100.0 (1,152)
60~69세	10.4	89.6	100.0 (2,077)
70세 이상	6.8	93.2	100.0 (629)
지역			
대도시	10.5	89.5	100.0 (1,721)
중소도시	6.5	93.5	100.0 (1,596)
농어촌	7.6	92.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9.3	90.7	100.0 (3,826)
사회복지사	0.0	100.0	100.0 (289)
간호(조무)사	2.5	97.5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0.0	10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9.0	91.0	100.0 (3,313)
영리법인	9.1	90.9	100.0 (335)
비영리법인	4.8	95.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0.0	10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1.7	88.3	100.0 (2,886)
방문목욕	9.5	90.5	100.0 (148)
방문간호	23.1	76.9	100.0 (12)
주야간보호	0.3	99.7	100.0 (325)
단기보호	0.0	10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	98.6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0.0	10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0.6	99.4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0.2	99.8	100.0 (403)
2019년	10.5	89.5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17〉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 동안 동시 근무 장기요양기관수[1)2)3)]

(단위: %, 명)

특성	2개소	3개소	계(명)
전체	91.7	8.3	100.0 (359)
성별			
남성	100.0	0.0	100.0 (1)[5)]
여성	91.7	8.3	100.0 (359)
연령대			
30~39세	0.0	0.0	0.0 (0)[5)]
40~49세	62.5	37.5	100.0 (8)[5)]
50~59세	95.6	4.4	100.0 (91)
60~69세	93.5	6.7	100.0 (216)
70세 이상	81.4	18.6	100.0 (43)
지역			
대도시	88.7	11.3	100.0 (180)
중소도시	91.3	8.7	100.0 (104)
농어촌	100.0	0.0	100.0 (75)
직종			
요양보호사	91.8	8.2	100.0 (355)
간호(조무)사	100.0	0.0	100.0 (4)[5)]
물리(작업)치료사	0.0	0.0	100.0 (0)[5)]
운영주체			
개인	92.3	7.7	100.0 (299)
영리법인	77.4	22.6	100.0 (30)
비영리법인	100.0	0.0	100.0 (30)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0.0 (0)[5)]
급여유형			
방문요양	92.3	7.7	100.0 (338)
방문목욕	78.6	21.4	100.0 (14)
방문간호	100.0	0.0	100.0 (3)[5)]
주야간보호	100.0	0.0	100.0 (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0.0	0.0 (0)[5)]
노인요양시설(30~49명)	100.0	0.0	100.0 (1)[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0.0	0.0	100.0 (1)[5)]
2019년	95.5	4.3(0.2)	100.0 (390)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복수기관에서 동시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59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값임
3)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 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4) 2019년의 경우 4개소에서 동시 근무하는 응답자 0.2%를 포함함
5)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과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통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06.0시간으로 앞서 표본추출 대상 단일 소속기관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평균 근무시간이 6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105.9시간, 남성 107.8시간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평균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70대 이상은 79.1시간으로 60대 또는 그 미만 연령대의 경우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짧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167.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물리(작업)치료사가 160.4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이 130.5시간, 국가·지자체가 129.8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80.6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78.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27.1만원으로, 단수 기관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약 7만원정도 증가하였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40.8만원, 여성은 126.2만원으로 나타났다. 30~39세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이 199.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은 9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21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가 164.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이 96.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5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이 20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6-18〉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근무시간과 월평균 임금(복수기관 근무자 통합)[1)2)]

(단위: 시간, 만원, 명)

특성	월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	(명)
전체	106.0	127.1	(4,302)
성별			
남성	107.8	140.8	(264)
여성	105.9	126.2	(4,038)
연령대			
20~29세	157.4	188.4	(46)
30~39세	157.8	199.4	(92)
40~49세	117.7	144.8	(305)
50~59세	115.6	138.5	(1,152)
60~69세	103.6	122.3	(2,077)
70세 이상	79.1	98.5	(629)
지역			
대도시	92.2	110.4	(1,721)
중소도시	106.3	127.5	(1,596)
농어촌	129.6	155.8	(985)
직종			
요양보호사	98.8	117.0	(3,826)
사회복지사	167.4	213.3	(289)
간호(조무)사	158.1	199.0	(162)
물리(작업)치료사	160.4	218.8	(26)
운영주체			
개인	101.8	120.9	(3,313)
영리법인	99.3	121.4	(335)
비영리법인	130.5	161.3	(6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29.8	164.9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80.6	96.2	(2,886)
방문목욕	76.5	102.0	(148)
방문간호	79.1	155.9	(12)
주야간보호	166.5	195.2	(325)
단기보호	163.8	185.1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8.0	196.4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68.9	200.9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67.0	200.1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67.7	206.6	(403)
2019년	113.7	121.6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값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30.8시간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희망 근로시간이 32.6시간으로 여성보다 약 2시간 길었고, 연령별로는 20대 평균 36.7시간, 30대 평균 37.5시간으로 20~30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망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40~60대는 30시간 초반대, 70세 이상은 평균 26.4시간이 희망 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소속기관이 농어촌인 경우 희망근로시간이 33.8시간으로 길게 나타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각각 28.8시간, 31.1시간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의 희망 근로시간 평균이 39.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가 37.7시간, 물리(작업)치료사가 37.8시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희망 근로시간 평균은 29.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운영주체별로는 소속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희망 근로시간의 평균이 33.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31.4시간, 영리법인이 30.9시간, 개인이 30.3시간으로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40.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약 39시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각각 27.2시간, 27.1시간, 26.9시간으로 희망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은 47.4%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10~20시간 미만이 17.7%로 나타났다. 30~40시간 미만은 15.8%, 20~30시간 미만은 12.9%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42.8%만이 40시간 이상 근무를 희망하여, 사회복지사(87.0%), 간호(조무)사(81.3%), 물리(작업)치료사(76.0%)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급여유형에 있어서는 방문요양의 경우 29.6%만 주40시간 이상 근로를 희망하여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자 비율을 보였다.

〈표 6-19〉 장기요양요원의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명)	평균 (시간)
전체	6.3	17.7	12.9	15.8	47.4	100.0 (4,302)	30.8
성별							
남성	7.3	12.8	11.8	8.0	60.1	100.0 (264)	32.6
여성	6.2	18.0	13.0	16.3	46.5	100.0 (4,038)	30.7
연령대							
20~29세	0.0	8.7	2.2	15.2	73.9	100.0 (46)	36.7
30~39세	3.2	4.3	2.2	10.8	79.6	100.0 (92)	37.5
40~49세	11.6	13.4	9.4	9.5	56.1	100.0 (305)	31.0
50~59세	6.6	12.2	10.2	14.5	56.5	100.0 (1,152)	32.7
60~69세	5.7	18.0	14.5	17.5	44.3	100.0 (2,077)	30.5
70세 이상	5.7	31.4	16.9	16.3	29.7	100.0 (629)	26.4
지역							
대도시	6.4	22.0	15.6	16.6	39.4	100.0 (1,721)	28.8
중소도시	6.9	16.6	12.8	16.8	46.9	100.0 (1,596)	31.1
농어촌	5.1	11.9	8.4	12.6	62.0	100.0 (985)	33.8
직종							
요양보호사	6.8	19.8	14.3	16.4	42.8	100.0 (3,826)	29.8
사회복지사	1.4	0.4	1.0	10.2	87.0	100.0 (289)	39.3
간호(조무)사	3.3	2.1	2.3	11.0	81.3	100.0 (162)	37.7
물리(작업)치료사	0.0	0.0	4.0	20.0	76.0	100.0 (26)	37.8
운영주체							
개인	6.0	18.8	13.8	16.7	44.7	100.0 (3,313)	30.3
영리법인	7.6	19.1	13.7	12.2	47.4	100.0 (335)	30.9
비영리법인	6.6	11.7	7.8	13.4	60.4	100.0 (613)	33.0
국가·지방자치단체	12.2	9.8	7.3	4.9	65.9	100.0 (41)	31.4
급여유형							
방문요양	7.5	25.3	17.7	19.9	29.6	100.0 (2,886)	27.2
방문목욕	15.5	16.2	17.6	14.2	36.5	100.0 (148)	27.1
방문간호	15.4	23.1	15.4	7.7	38.5	100.0 (12)	26.9
주야간보호	1.9	0.2	1.7	7.1	89.2	100.0 (325)	39.3
단기보호	0.0	0.0	0.0	0.0	100.0	100.0 (3)[2)]	39.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	0.0	0.0	5.6	91.7	100.0 (73)	40.2
노인요양시설(10~29명)	1.5	0.4	1.5	6.1	90.4	100.0 (262)	39.5
노인요양시설(30~49명)	1.6	0.5	1.6	8.9	87.5	100.0 (191)	39.3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8	0.4	1.2	5.8	89.8	100.0 (403)	39.4
2019년	4.9	14.0	11.9	15.7	53.6	100.0 (3,731)	32.5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법정근로수당 및 법정휴가제도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한 각 법정근로수당의 소속기관 수령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휴일수당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8%로 나타났다. 반면, 28.2%는 휴일 수당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3%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밖에 대체휴무 사용은 8.9%, 기관의 지급방식 모름은 5.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휴일 수당을 받고 있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체 휴무 사용 비율은 여성(8.4%)보다 남성(16.4%)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에서는 대체 휴무사용 비율이 각각 36.2%, 3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60대에서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노게 나타났으며, 70대에서는 휴일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휴일 근무를 하지 않거나 휴일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약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휴일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27.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체 휴무 사용이 36.7%로 타 직종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절반 가까이(50.0%)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휴일수당 방식을 살펴보면, 휴일수당이 있다는 비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 요원의 경우 41.5%로 4가지 운영주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운영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의 경우 25.0%가 휴일수당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소속 요원의 경우 30% 이상이 휴일수당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해당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각각 42.4%, 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20〉 휴일수당 수령방식

(단위: %, 명)

특성	휴일 근무하지 않음	휴일 수당 있음	휴일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	휴일 수당 없음	기관의 지급방식을 모름	기타	계(명)
전체	30.3	26.8	8.9	28.2	5.7	0.0	100.0 (4,302)
성별							
남성	26.0	21.4	16.4	28.6	7.4	0.2	100.0 (264)
여성	30.6	27.2	8.4	28.2	5.6	0.0	100.0 (4,038)
연령대							
20~29세	29.8	17.0	36.2	14.9	2.1	0.0	100.0 (46)
30~39세	38.0	18.5	34.8	5.4	3.3	0.0	100.0 (92)
40~49세	31.9	24.3	21.5	16.7	5.2	0.3	100.0 (305)
50~59세	29.1	28.0	11.6	25.8	5.4	0.0	100.0 (1,152)
60~69세	31.1	29.1	6.2	28.7	4.9	0.0	100.0 (2,077)
70세 이상	27.7	20.3	1.2	41.0	9.8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32.6	24.2	7.3	29.4	6.5	0.0	100.0 (1,721)
중소도시	27.7	26.9	9.5	30.1	5.7	0.1	100.0 (1,596)
농어촌	30.3	31.3	10.8	23.1	4.4	0.1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30.4	27.5	5.9	30.1	6.1	0.0	100.0 (3,826)
사회복지사	29.7	21.9	36.7	9.9	1.3	0.5	100.0 (289)
간호(조무)사	26.1	22.1	28.5	19.8	3.6	0.1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50.0	15.4	23.1	7.7	3.8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31.0	25.0	8.0	30.0	5.9	0.1	100.0 (3,313)
영리법인	25.3	35.5	6.7	24.5	8.0	0.0	100.0 (335)
비영리법인	29.8	31.1	15.2	20.5	3.4	0.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4.6	41.5	9.8	31.7	2.4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34.8	25.3	1.1	31.9	6.9	0.0	100.0 (2,886)
방문목욕	42.4	20.1	1.3	30.2	5.4	0.7	100.0 (148)
방문간호	46.2	30.8	0.0	15.4	7.7	0.0	100.0 (12)
주야간보호	24.8	26.5	32.2	14.4	2.1	0.0	100.0 (325)
단기보호	33.3	0.0	33.3	33.3	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4	31.5	16.4	30.1	5.5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7.7	33.7	26.1	20.5	1.6	0.4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6.0	33.1	25.7	20.9	4.2	0.0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4.5	32.4	28.5	20.8	3.5	0.1	100.0 (403)
2019년	21.7	42.0	6.1	26.3	3.4	0.5	100.0 (3,067)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수령방식을 조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음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0.2%로 나타났다. 반면, 27.7%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3.4%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거나 주휴수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주 15시간 미만 근무) 응답한 비율이 18.9%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휴수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20대의 경우 69.6%가 주휴수당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70대에서는 기관의 지급방식을 모른다는 응답도 13.2%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60.4%),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률은 낮았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률은 낮았다.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주휴수당의 기관 지급방식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1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주휴수당 방식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이 있다는 비율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휴대상 수당이 아니라는 응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4.9%만이 해당되어 가장 낮은 비율은 보였다. 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41.5%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응답하여 4가지 운영주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급여 제공 요원의 경우 주휴수당 미대상자가 많아,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38.5%는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야간 및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근무 요원 중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비율은 비슷했으나,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단기보호(50.0%)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21〉 장기요양요원의 주휴수당 수령방식

(단위: %, 명)

특성	주휴수당 대상 아님	주휴수당 있음	주휴수당 없음	기관의 지급 방식을 모름	기타	계(명)
전체	13.4	50.2	27.7	8.7	0.1	100.0 (4,302)
성별						
남성	18.9	46.3	22.4	11.7	0.6	100.0 (264)
여성	13.0	50.4	28.0	8.5	0.1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7	69.6	15.2	6.5	0.0	100.0 (46)
30~39세	14.0	62.4	12.9	10.8	0.0	100.0 (92)
40~49세	12.1	58.3	22.5	7.0	0.1	100.0 (305)
50~59세	13.0	55.1	24.3	7.6	0.1	100.0 (1,152)
60~69세	13.9	48.5	29.4	8.1	0.1	100.0 (2,077)
70세 이상	13.4	39.6	33.8	13.2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18.4	45.2	27.6	8.8	0.0	100.0 (1,721)
중소도시	11.6	49.2	29.2	9.8	0.1	100.0 (1,596)
농어촌	7.6	60.4	25.1	6.7	0.2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4.3	48.0	28.7	8.9	0.1	100.0 (3,826)
사회복지사	4.4	73.3	17.1	4.9	0.3	100.0 (289)
간호(조무)사	8.7	59.3	22.8	8.6	0.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2.0	56.0	16.0	16.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4.2	48.4	28.2	9.0	0.1	100.0 (3,313)
영리법인	19.7	46.3	26.5	7.6	0.0	100.0 (335)
비영리법인	6.0	61.9	24.3	7.6	0.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4.9	48.8	41.5	4.9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1	44.6	28.9	9.4	0.0	100.0 (2,886)
방문목욕	21.6	39.9	29.7	8.1	0.7	100.0 (148)
방문간호	38.5	30.8	23.1	7.7	0.0	100.0 (12)
주야간보호	4.3	68.7	21.4	5.6	0.2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	65.8	23.3	6.8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3.5	64.1	26.6	5.4	0.4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3.5	61.7	26.0	8.8	0.0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8	62.3	25.1	8.6	0.2	100.0 (403)
2019년	8.7	60.1	25.4	5.5	0.4	100.0 (2,85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수령방식을 조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연차수당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소속기관에서 별도 연차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12.9%, 급여 내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는 14.4%, 기관이 정한 상한일 내에서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반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는 20.5%, 연차수당 대상이 아닌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무)는 16.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연차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률(24.5%)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별도 연차 수당을 받거나 급여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경우 연차 수당 대상이 아닌 응답자 비중이 23.0%, 기관의 지급방식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12.4%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기관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0.9%, 58.7%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 응답자의 경우 특히 연차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률(22.5%)과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을 모른다는 응답률(11.2%)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70.0%, 간호(조무)사의 경우 59.0%,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66.7%가 기관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한다고 응답하여,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세 직종 응답자의 상당수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을 보고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및 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응답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비영리법인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의 응답자의 경우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한다는 응답률이 타 응답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연차수당 대상이 아니거나, 연차수당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근무 요원의 경우 연차휴가로 모두 소진한다는 응답률은 39.2%,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23.0%로 타 방문급여 외 급여유형에 비해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2〉 장기요양요원의 연차수당 수령방식

(단위: %, 명)

특성	연차 수당 대상 아님	별도 연차수당 받음	급여 내 연차 수당 포함	기관이 정한 상한일수 내 수령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	연차 수당 없음	기관 수당 지급 방식 모름	기타	계(명)
전체	16.4	12.9	14.4	3.5	20.5	23.3	8.8	0.2	100.0 (4,302)
성별									
남성	24.5	10.0	8.3	2.0	32.9	15.6	5.2	1.5	100.0 (264)
여성	15.9	13.1	14.8	3.6	19.7	23.8	9.1	0.1	100.0 (4,038)
연령대									
20~29세	2.2	17.4	4.3	6.5	60.9	8.7	0.0	0.0	100.0 (46)
30~39세	10.9	8.7	5.4	5.4	58.7	8.7	2.2	0.0	100.0 (92)
40~49세	13.1	8.7	11.9	3.3	39.5	13.9	9.5	0.1	100.0 (305)
50~59세	13.9	12.3	15.3	4.5	27.4	19.1	7.6	0.1	100.0 (1,152)
60~69세	16.9	13.0	15.7	3.1	16.0	26.0	8.9	0.4	100.0 (2,077)
70세 이상	23.0	15.8	11.6	2.7	4.9	29.7	12.4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22.5	11.7	13.3	2.8	14.9	23.5	11.2	0.1	100.0 (1,721)
중소도시	13.0	12.4	15.6	3.3	21.1	25.6	8.7	0.3	100.0 (1,596)
농어촌	11.4	15.6	14.4	4.9	29.3	19.2	4.9	0.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8.1	13.2	15.4	3.3	14.9	25.2	9.7	0.2	100.0 (3,826)
사회복지사	1.2	10.6	6.7	5.1	70.0	5.0	0.9	0.6	100.0 (289)
간호(조무)사	6.2	8.7	5.6	3.7	59.0	13.7	3.1	0.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0.0	8.3	8.3	4.2	66.7	8.3	4.2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7.3	12.1	14.7	3.3	17.8	24.7	9.9	0.2	100.0 (3,313)
영리법인	22.2	12.1	15.8	1.6	16.7	23.9	7.8	0.0	100.0 (335)
비영리법인	9.0	17.2	12.1	4.6	36.8	16.3	3.9	0.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2.2	17.1	9.8	14.6	31.7	4.9	9.8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22.1	13.1	17.4	3.2	3.9	28.2	11.8	0.2	100.0 (2,886)
방문목욕	27.7	13.5	16.9	4.7	0.0	28.4	8.1	0.7	100.0 (148)
방문간호	50.0	8.3	8.3	0.0	8.3	16.7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2.8	8.9	8.5	4.6	62.6	10.4	1.8	0.3	100.0 (325)
단기보호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3)[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4	18.9	10.8	2.7	39.2	23.0	4.1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 (10~29명)	1.0	12.2	7.4	3.0	64.0	10.6	1.6	0.2	100.0 (262)
노인요양시설 (30~49명)	1.0	15.7	6.3	3.7	60.2	10.5	2.1	0.5	100.0 (191)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1.4	11.9	6.2	4.6	62.4	11.2	2.1	0.1	100.0 (403)
2019년	7.5	16.9	13.9	3.5	26.8	26.8	4.1	0.3	100.0 (2,9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수령방식을 조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연장(초과)근로수당 수령방식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3%, 연장근로수당 받음은 14.4%, 연장근로수당이 없음은 13.3%로 나타났다. 기관이 정한 상한일수 내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다가 3.6%, 기관의 수당 지급방식 모름이 5.4%, 대체휴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는 1.9%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비율이 73.1%로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 없음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6%로 높았으며, 비영리법인과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연장수당을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23.4%, 38.1%로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영리법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급여유형별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률은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에서 가장 높았고(33.2%),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방문목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23〉 장기요양요원의 연장(초과)근로수당 수령방식

(단위: %, 명)

특성	연장 근로 하지 않음	별도 연장 근로 수당 받음	기관이 정한 상한일 수 내 수령	대체 휴무를 대신 사용	연장 근로 수당 없음	기관 수당 지급 방식 모름	기타	계(명)
전체	61.3	14.4	3.6	1.9	13.3	5.4	0.0	100.0 (4,302)
성별								
남성	59.8	13.9	3.5	3.5	14.6	4.4	0.2	100.0 (264)
여성	61.4	14.4	3.6	1.8	13.3	5.4	0.0	100.0 (4,038)
연령대								
20~29세	71.1	15.6	4.4	2.2	6.7	0.0	0.0	100.0 (46)
30~39세	59.3	20.9	4.4	4.4	9.9	1.1	0.0	100.0 (92)
40~49세	57.1	15.7	6.0	5.2	10.6	5.4	0.0	100.0 (305)
50~59세	59.6	17.9	2.9	2.2	13.1	4.2	0.0	100.0 (1,152)
60~69세	63.3	13.4	4.1	1.3	13.0	4.9	0.0	100.0 (2,077)
70세 이상	60.0	9.6	1.8	1.4	17.1	10.0	0.0	100.0 (629)
지역								
대도시	62.0	13.5	2.1	1.6	13.7	7.1	0.0	100.0 (1,721)
중소도시	61.6	13.6	4.0	2.0	14.4	4.4	0.0	100.0 (1,596)
농어촌	59.7	17.3	5.5	2.4	11.1	4.1	0.0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61.6	14.0	3.4	1.5	13.6	5.9	0.0	100.0 (3,826)
사회복지사	58.6	19.2	5.1	5.2	10.6	1.3	0.0	100.0 (289)
간호(조무)사	59.0	14.9	4.5	5.4	14.5	1.7	0.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73.1	11.5	7.7	0.0	3.8	3.8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63.6	12.2	3.2	1.7	13.7	5.6	0.0	100.0 (3,313)
영리법인	57.8	16.2	2.0	1.4	15.5	7.1	0.0	100.0 (335)
비영리법인	52.4	23.4	6.0	3.8	10.8	3.5	0.0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42.9	38.1	9.5	0.0	7.1	2.4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65.6	9.6	2.3	0.9	14.8	6.8	0.0	100.0 (2,886)
방문목욕	61.5	10.1	6.1	0.7	16.9	4.1	0.7	100.0 (148)
방문간호	72.7	9.1	0.0	0.0	18.2	0.0	0.0	100.0 (12)
주야간보호	56.3	23.2	3.9	4.5	10.9	1.2	0.0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0.0	0.0	100.0 (3)[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8.9	15.1	4.1	4.1	15.1	2.7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 (10~29명)	55.3	23.0	5.4	3.1	11.4	1.7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 (30~49명)	52.9	23.8	9.3	3.1	8.8	2.1	0.0	100.0 (191)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42.4	33.2	7.7	6.3	6.9	3.4	0.0	100.0 (403)
2019년	47.9	21.7	5.5	1.8	19.5	3.0	0.6	100.0 (2,96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2019년 조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수령방식을 조사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법정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9.4%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농어촌의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42.3%로 다른 직종과 비교해 장기근속장려금 수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운영주체별로는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기관이 방문급여 재가기관에 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의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문간호 응답자의 경우 7.7%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였다.

직책수당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9%가 받지 않음이라고 답하였고, 직책수당을 받는 사람은 응답자의 3.8%에 불과했다. 남성 30대의 경우 직책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23.2%로 다른 직종과 비교해 직책수당 수령에 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직책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에서 직책수당 수령하는 비율이 다른 운영주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14.6%로 직책수당 수령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50명 이상)이 11.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기타수당이 있는 경우는 6.7%에 불과했으며, 기타수당을 받지 않음이 전체 응답자의 76.0%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령률이 약간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고,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에서 기타수당을 수령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작업)치료사에서 기타수당을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기타수당 수령에 대한 응답 비율은 5.5%로 직종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19.5%가 기타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제공 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 그 뒤로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기타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편이다.

〈표 6-24〉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여부

(단위: %, 명)

특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른다	계(명)
전체	19.4	73.4	7.1	100.0 (4,302)
성별				
남성	18.0	75.2	6.8	100.0 (264)
여성	19.5	73.3	7.2	100.0 (4,038)
연령대				
20~29세	21.7	67.4	10.9	100.0 (46)
30~39세	29.3	57.7	13.0	100.0 (92)
40~49세	21.6	69.1	9.4	100.0 (305)
50~59세	19.3	75.5	5.2	100.0 (1,152)
60~69세	19.9	73.6	6.6	100.0 (2,077)
70세 이상	15.4	74.3	10.3	100.0 (629)
지역				
대도시	14.9	75.8	9.3	100.0 (1,721)
중소도시	19.2	74.7	6.2	100.0 (1,596)
농어촌	27.7	67.3	4.9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8.0	74.5	7.5	100.0 (3,826)
사회복지사	30.4	65.1	4.5	100.0 (289)
간호(조무)사	30.1	66.3	3.7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42.3	50.0	7.7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6.0	76.5	7.5	100.0 (3,313)
영리법인	21.3	70.8	7.9	100.0 (335)
비영리법인	35.6	59.6	4.8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39.0	58.5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4.3	77.1	8.6	100.0 (2,886)
방문목욕	18.4	73.5	8.0	100.0 (148)
방문간호	7.7	76.9	15.4	100.0 (12)
주야간보호	22.5	72.0	5.5	100.0 (325)
단기보호	33.3	66.7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0	68.9	4.1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30.9	64.9	4.2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30.9	66.0	3.1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9.8	57.9	2.3	100.0 (403)
2019년	20.3	72.0	7.7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25〉 장기요양요원의 직책수당 수령 여부

(단위: %, 명)

특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른다	계(명)
전체	3.8	89.9	6.3	100.0 (4,302)
성별				
남성	7.9	86.0	6.1	100.0 (264)
여성	3.6	90.1	6.3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7	84.8	6.5	100.0 (46)
30~39세	15.2	72.8	12.0	100.0 (92)
40~49세	9.8	82.9	7.3	100.0 (305)
50~59세	5.1	90.4	4.5	100.0 (1,152)
60~69세	2.6	91.8	5.5	100.0 (2,077)
70세 이상	0.4	88.7	10.9	100.0 (629)
지역				
대도시	2.8	89.2	8.0	100.0 (1,721)
중소도시	3.2	91.3	5.5	100.0 (1,596)
농어촌	6.6	88.7	4.7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7	91.6	6.6	100.0 (3,826)
사회복지사	23.2	73.5	3.3	100.0 (289)
간호(조무)사	16.6	78.9	4.5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5.4	76.9	7.7	100.0 (26)
운영주체				
개인	3.1	90.1	6.8	100.0 (3,313)
영리법인	2.2	92.1	5.6	100.0 (335)
비영리법인	8.1	87.8	4.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9.5	85.7	4.8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0.7	91.8	7.4	100.0 (2,886)
방문목욕	2.1	90.3	7.6	100.0 (148)
방문간호	7.7	76.9	15.4	100.0 (12)
주야간보호	14.6	80.9	4.5	100.0 (325)
단기보호	0.0	100.0	0.0	100.0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	90.4	2.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9.9	86.4	3.7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8.4	88.0	3.7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3	86.1	2.6	100.0 (403)
2019년	6.6	86.2	7.2	100.0 (3,734)

주: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표 6-26〉 장기요양요원의 기타 수당 수령 여부[1)2)]

(단위: %, 명)

특성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른다	계(명)
전체	6.7	76.0	17.3	100.0 (4,302)
성별				
남성	7.6	75.3	17.1	100.0 (264)
여성	6.6	76.1	17.3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2.8	59.6	27.7	100.0 (46)
30~39세	14.1	63.0	22.8	100.0 (92)
40~49세	10.8	67.0	22.2	100.0 (305)
50~59세	8.4	75.7	15.9	100.0 (1,152)
60~69세	5.4	78.8	15.8	100.0 (2,077)
70세 이상	4.4	74.7	21.0	100.0 (629)
지역				
대도시	4.1	76.3	19.6	100.0 (1,721)
중소도시	6.5	77.3	16.2	100.0 (1,596)
농어촌	11.5	73.5	15.0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5.5	77.0	17.5	100.0 (3,826)
사회복지사	18.6	66.8	14.6	100.0 (289)
간호(조무)사	12.9	70.7	16.4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6.0	64.0	2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5.8	77.0	17.2	100.0 (3,313)
영리법인	3.8	76.0	20.2	100.0 (335)
비영리법인	12.2	71.7	16.0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9.5	61.0	19.5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4.5	77.1	18.3	100.0 (2,886)
방문목욕	4.1	79.4	16.5	100.0 (148)
방문간호	8.3	75.0	16.7	100.0 (12)
주야간보호	14.7	70.1	15.2	100.0 (325)
단기보호	0.0	10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6	76.7	13.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1.5	75.0	13.5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0.5	72.1	17.4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1	73.9	15.0	100.0 (403)
2019년	5.4	70.0	24.6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수당: 가족수당, 경력수당, 교육수당, 경조사비, 명절비, 휴가비, 상여금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소속기관에서 연차,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7%,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5.2%, 법정휴가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33.1%로 나타났다.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률은 남성보다는 여성, 20~40대 보다는 50~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타 직종에 비해 대상자가 아니거나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16.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과 개인 운영 기관에서 대상자가 아니거나 자유로운 법정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경우 2.4%만이 자유로운 법정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급여 세 유형의 경우 법정휴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50% 내외로 크게 나타났고, 방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7〉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 자유로운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대상자 아님	아니오	계(명)
전체	51.7	33.1	15.2	100.0 (4,302)
성별				
남성	55.9	32.1	12.0	100.0 (264)
여성	51.4	33.1	15.5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7.0	8.7	4.3	100.0 (46)
30~39세	86.0	8.6	5.4	100.0 (92)
40~49세	66.6	24.4	8.9	100.0 (305)
50~59세	55.7	27.7	16.7	100.0 (1,152)
60~69세	49.9	34.6	15.4	100.0 (2,077)
70세 이상	35.2	47.5	17.4	100.0 (629)
지역				
대도시	41.9	40.6	17.5	100.0 (1,721)
중소도시	53.1	31.6	15.3	100.0 (1,596)
농어촌	66.4	22.4	11.2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46.8	36.8	16.4	100.0 (3,826)
사회복지사	93.1	1.5	5.5	100.0 (289)
간호(조무)사	86.1	7.0	6.8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96.0	0.0	4.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47.7	36.7	15.6	100.0 (3,313)
영리법인	48.9	30.3	20.7	100.0 (335)
비영리법인	72.2	16.4	11.4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85.4	12.2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35.9	45.4	18.7	100.0 (2,886)
방문목욕	36.7	49.0	14.3	100.0 (148)
방문간호	33.3	58.3	8.3	100.0 (12)
주야간보호	91.0	2.4	6.6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0	6.8	19.2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88.3	2.8	8.8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93.2	1.1	5.8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1.3	2.4	6.2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655명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1순위 이유로는 대체 인력 부족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정휴가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24.6%, 급여 또는 고용상 불이익 염려 19.8%, 업무량 과다 8.6%, 상사 또는 동료 눈치 7.0%, 기관의 휴가 거부·축소 3.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기관의 휴가 거부 또는 축소라는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급여·고용상 불이익 염려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경우 대체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과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0~70대에서는 법정휴가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중소도시 및 대도시 대비 인력부족, 급여, 고용상 불이익 염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업무량 과다와 대체 인력 부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인 이상)에서 기관의 휴가 축소·거부가 주된 이유라는 응답률이 12.5%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 2순위까지 응답한 611명의 응답 결과, 2순위 이유로도 대체인력 부족이 27.8%로 가장 높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20.0%, 급여·고용상 불이익 염려 19.0%, 상사 또는 동료 눈치 12.9%, 기관의 휴가 거부·축소 8.6%, 업무량 과다 8.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운영주체별 차이는 1순위 이유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시설의 경우 정원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 과다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8〉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명)

특성	상사 또는 동료 눈치	업무량 과다	대체 인력 부족	급여, 고용상 불이익 염려	법정휴가제도 잘 몰라서	기관의 휴가 거부, 축소	기타	계(명)
전체	7.0	8.6	34.5	19.8	24.6	3.9	1.6	100.0 (655)
성별								
남성	9.4	3.1	21.9	31.3	34.4	0.0	0.0	100.0 (32)
여성	6.9	8.9	35.1	19.3	24.1	4.1	1.7	100.0 (624)
연령대								
20~29세	50.0	0.0	0.0	50.0	0.0	0.0	0.0	100.0 (2)[3]
30~39세	60.0	20.0	20.0	0.0	0.0	0.0	0.0	100.0 (5)[3]
40~49세	11.5	15.4	57.7	11.5	3.8	0.0	0.0	100.0 (27)
50~59세	7.7	11.1	40.0	19.1	18.1	2.5	1.7	100.0 (192)
60~69세	4.6	6.1	31.4	21.3	28.1	6.3	2.2	100.0 (321)
70세 이상	9.1	10.0	29.1	19.1	31.8	0.0	0.9	100.0 (109)
지역								
대도시	4.6	9.2	32.7	21.6	27.9	3.0	1.1	100.0 (302)
중소도시	9.9	8.6	33.5	14.5	24.6	5.8	3.1	100.0 (244)
농어촌	7.2	7.2	41.4	27.0	15.3	1.8	0.0	100.0 (110)
직종								
요양보호사	6.2	8.4	33.9	20.5	25.5	3.8	1.6	100.0 (628)
사회복지사	25.0	12.5	43.8	6.3	6.3	6.3	0.0	100.0 (16)
간호(조무)사	18.2	18.2	54.5	9.1	0.0	0.0	0.0	100.0 (11)
물리(작업)치료사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3]
운영주체								
개인	6.8	8.4	32.6	18.8	27.8	3.5	2.1	100.0 (516)
영리법인	7.1	15.7	40.0	18.6	14.3	4.3	0.0	100.0 (69)
비영리법인	8.6	2.9	42.9	28.6	11.4	5.7	0.0	100.0 (70)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3]
급여유형								
방문요양	4.8	8.4	31.4	22.5	27.5	3.6	1.8	100.0 (538)
방문목욕	4.5	18.2	27.3	18.2	22.7	4.5	4.5	100.0 (21)
방문간호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3]
주야간보호	23.8	14.3	42.9	4.8	9.5	4.8	0.0	100.0 (2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1	7.1	64.3	7.1	7.1	7.1	0.0	100.0 (14)
노인요양시설(10~29명)	17.4	8.7	52.2	4.3	13.0	4.3	0.0	100.0 (23)
노인요양시설(30~49명)	18.2	9.1	63.6	0.0	9.1	0.0	0.0	100.0 (1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5.0	4.2	50.0	8.3	0.0	12.5	0.0	100.0 (25)

주: 1) 장기요양응답자 4,302명 중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655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이유로는 코로나19, 휴가 사용할 이유 없음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29〉 장기요양요원의 법정휴가제도(연차, 출산휴가 등)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2순위)

(단위: %, 명)

특성	상사 또는 동료 눈치	업무량 과다	대체 인력 부족	급여, 고용상 불이익 염려	법정휴가제도 잘 몰라서	기관의 휴가 거부, 축소	기타	계(명)
전체	12.9	8.4	27.8	19.0	20.0	8.6	3.3	100.0 (611)
성별								
남성	21.7	13.0	21.7	26.1	0.0	17.4	0.0	100.0 (23)
여성	12.6	8.3	28.0	18.7	20.7	8.3	3.4	100.0 (588)
연령대								
20~29세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3]
30~39세	20.0	20.0	20.0	20.0	0.0	20.0	0.0	100.0 (5)[3]
40~49세	12.0	8.0	28.0	12.0	8.0	20.0	12.0	100.0 (25)
50~59세	14.8	12.8	29.4	16.7	21.1	5.0	0.1	100.0 (177)
60~69세	12.3	5.1	25.5	21.1	20.7	10.1	5.2	100.0 (313)
70세 이상	12.2	8.9	32.2	18.9	20.0	7.8	0.0	100.0 (90)
지역								
대도시	7.7	9.8	28.6	19.2	22.2	11.3	1.2	100.0 (272)
중소도시	12.5	5.1	29.1	21.6	21.6	5.7	4.3	100.0 (231)
농어촌	26.9	12.0	22.2	13.0	11.1	8.3	6.5	100.0 (108)
직종								
요양보호사	12.5	7.4	27.9	19.6	20.8	8.5	3.3	100.0 (581)
사회복지사	18.8	31.3	25.0	6.3	6.3	12.5	0.0	100.0 (16)
간호(조무)사	20.0	40.0	30.0	10.0	0.0	0.0	0.0	100.0 (10)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0.0	0.0	0.0 (0)[3]
운영주체								
개인	12.6	7.2	27.5	20.2	20.5	9.3	2.7	100.0 (481)
영리법인	11.3	14.5	33.9	12.9	16.1	11.3	0.0	100.0 (62)
비영리법인	16.9	12.3	24.6	15.4	20.0	0.0	10.0	100.0 (65)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0.0 (0)[3]
급여유형								
방문요양	11.4	5.2	27.9	20.7	22.7	8.4	3.8	100.0 (497)
방문목욕	19.0	9.5	33.3	19.0	14.3	4.8	0.0	100.0 (21)
방문간호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3]
주야간보호	25.0	25.0	30.0	10.0	0.0	10.0	0.0	100.0 (20)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3	18.2	18.2	9.1	18.2	9.1	0.0	100.0 (11)
노인요양시설(10~29명)	22.7	27.3	27.3	9.1	4.5	9.1	0.0	100.0 (22)
노인요양시설(30~49명)	16.7	33.3	25.0	8.3	0.0	8.3	8.3	100.0 (1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2.0	24.0	24.0	16.0	12.0	12.0	0.0	100.0 (25)

주: 1) 장기요양응답자 4,302명 중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655명 중에서 2순위까지 응답한 경우(611명)에 한해 분석
2) 기타 이유로는 코로나19, 휴가 사용할 이유 없음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4.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응답자의 45.4%였으며, 미가입(부양가족 등으로 가입)은 14.9%, 의무 가입 적용대상 아님은 39.0%, 모름 0.7%로 나타났다. 성별 가입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졌고,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미가입률과 적용대상 아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기관 응답자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국민연금 가입률은 39.6%인 반면, 간호(조무)사 87.0%, 사회복지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90%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높았으며,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87.0%), 노인요양시설(70% 이상)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79.3%, 미가입률(부양가족 등으로 가입)은 11.0%, 적용대상 아님은 9.0%, 모름은 0.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80.0%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건강보험 미가입과 적용 대상 아님에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0% 내외, 50~60대는 약 81%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미가입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종과 비교해 건강보험가입률이 76.9%로 낮았으며, 그 외 직종의 경우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급여유형중에서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및 단기보호는 가입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나, 방문급여,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88.7%였으며, 미가입은 7.9%, 적용대상 아님은 0.5%, 모름은 3.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근로시간 상관없이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시설장 제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대비 가입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에서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90%이상이 가입자이며, 대도시에서 고용보험 미가입률 및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직종별로 보면 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 가입률만 9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고, 모른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속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다(7.3%). 급여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간호에서 미가입 또는 가입대상 아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30〉 장기요양요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명)

특성	가입	미가입	적용대상 아님	모름	계(명)
전체	45.4	14.9	39.0	0.7	100.0 (4,302)
성별					
남성	44.9	12.4	42.7	0.0	100.0 (264)
여성	45.4	15.1	38.8	0.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91.3	6.5	2.2	0.0	100.0 (46)
30~39세	94.6	4.3	1.1	0.0	100.0 (92)
40~49세	73.3	10.5	15.1	1.1	100.0 (305)
50~59세	79.3	8.9	11.5	0.3	100.0 (1,152)
60~69세	30.0	16.8	52.4	0.8	100.0 (2,077)
70세 이상	10.2	24.1	65.1	0.6	100.0 (629)
지역					
대도시	38.6	17.5	43.2	0.6	100.0 (1,721)
중소도시	47.1	14.2	37.7	1.0	100.0 (1,596)
농어촌	54.5	11.5	33.9	0.1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39.6	16.6	43.1	0.7	100.0 (3,826)
사회복지사	94.5	0.4	5.1	0.0	100.0 (289)
간호(조무)사	87.0	3.7	9.3	0.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96.0	0.0	3.8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42.4	15.8	41.3	0.5	100.0 (3,313)
영리법인	43.9	12.0	43.1	1.0	100.0 (335)
비영리법인	60.3	12.3	26.2	1.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8.0	2.4	19.5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32.5	19.6	47.0	0.9	100.0 (2,886)
방문목욕	30.9	18.1	50.3	0.7	100.0 (148)
방문간호	41.7	33.3	25.0	0.0	100.0 (12)
주야간보호	87.0	2.3	10.4	0.4	100.0 (325)
단기보호	66.7	0.0	33.3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0.3	6.8	32.9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1.8	6.0	22.3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5.0	3.1	21.4	0.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5.5	2.7	21.8	0.0	100.0 (403)
2019년	41.0	4.9	53.6	0.5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31〉 장기요양요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특성	가입	미가입	적용대상 아님	모름	계(명)
전체	79.3	11.0	9.0	0.8	100.0 (4,302)
성별					
남성	68.2	18.3	13.4	0.2	100.0 (264)
여성	80.0	10.5	8.7	0.8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9.4	8.5	2.1	0.0	100.0 (46)
30~39세	93.5	5.4	1.1	0.0	100.0 (92)
40~49세	76.1	10.6	12.2	1.1	100.0 (305)
50~59세	81.4	9.0	9.4	0.3	100.0 (1,152)
60~69세	81.1	10.8	7.3	0.8	100.0 (2,077)
70세 이상	68.1	16.3	14.0	1.6	100.0 (629)
지역					
대도시	74.5	13.4	11.5	0.6	100.0 (1,721)
중소도시	80.6	9.7	8.5	1.2	100.0 (1,596)
농어촌	85.6	8.8	5.3	0.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6.9	12.2	10.0	0.9	100.0 (3,826)
사회복지사	99.7	0.2	0.0	0.1	100.0 (289)
간호(조무)사	95.9	2.9	1.2	0.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00.0	0.0	0.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8.3	11.9	9.1	0.7	100.0 (3,313)
영리법인	73.8	9.4	15.8	1.0	100.0 (335)
비영리법인	87.4	7.0	4.4	1.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87.8	4.9	7.3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71.4	15.2	12.3	1.1	100.0 (2,886)
방문목욕	66.4	14.1	18.8	0.7	100.0 (148)
방문간호	50.0	33.3	16.7	0.0	100.0 (12)
주야간보호	99.7	0.3	0.0	0.0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7.3	2.7	0.0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99.5	0.5	0.0	0.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98.9	1.1	0.0	0.0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9.2	0.7	0.0	0.1	100.0 (403)
2019년	73.5	1.9	23.0	1.7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32〉 장기요양요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특성	가입	미가입	적용대상 아님	모름	계(명)
전체	88.7	7.9	0.5	3.0	100.0 (4,302)
성별					
남성	84.2	12.2	1.6	2.0	100.0 (264)
여성	89.0	7.6	0.4	3.0	100.0 (4,038)
연령대					
20~29세	97.8	2.2	0.0	0.0	100.0 (46)
30~39세	93.5	1.1	1.1	4.3	100.0 (92)
40~49세	91.3	5.9	0.5	2.3	100.0 (305)
50~59세	92.5	5.3	0.9	1.3	100.0 (1,152)
60~69세	90.3	6.5	0.4	2.8	100.0 (2,077)
70세 이상	73.5	19.4	0.1	7.0	100.0 (629)
지역					
대도시	85.1	10.4	0.5	4.0	100.0 (1,721)
중소도시	90.6	6.2	0.4	2.8	100.0 (1,596)
농어촌	91.9	6.1	0.6	1.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87.9	8.7	0.2	3.3	100.0 (3,826)
사회복지사	95.7	0.9	3.1	0.3	100.0 (289)
간호(조무)사	94.0	2.3	3.6	0.1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00.0	0.0	0.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88.1	8.1	0.5	3.3	100.0 (3,313)
영리법인	87.2	11.6	0.0	1.2	100.0 (335)
비영리법인	93.2	4.5	0.5	1.9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82.9	9.8	0.0	7.3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85.4	10.5	0.1	4.0	100.0 (2,886)
방문목욕	82.3	12.2	0.7	4.8	100.0 (148)
방문간호	66.7	16.7	16.7	0.0	100.0 (12)
주야간보호	97.4	1.0	1.4	0.3	100.0 (325)
단기보호	100.0	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1.8	4.1	4.1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96.5	1.2	1.5	0.7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97.7	1.6	0.2	0.4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8.8	0.9	0.3	0.0	100.0 (403)
2019년	85.2	9.7	1.2	4.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3절 근무환경

1. 급여제공 과정의 부당대우 및 질환 · 사고 · 코로나 경험

가족인요양보호사로만 활동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3,5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용자 및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는 주3회 이상, 3.8%는 주1~2회, 6.2%는 월1~3회 경험하였으며, 4.8%는 년 1~3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32.5%)이 여성(21.4%)보다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 3회 미만 경험자 비율이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난과 같은 언어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30대의 경우 43%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20대의 경우 주 1회 이상(주 1~2회 + 주 3회 이상) 경험자 비율도 14.2%에 이르렀다. 지역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19.9%) 대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대비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응답자가 비난, 고함, 욕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특히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 응답자의 46.3%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급여 3유형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요양시설 소속 응답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있음	없음	계(명)
전체	4.0	3.8	6.2	1.2	1.9	4.8	21.9	78.1	100.0 (3,518)
성별									
남성	3.6	5.4	4.8	1.8	2.4	14.5	32.5	67.5	100.0 (166)
여성	4.0	3.7	6.3	1.2	1.8	4.4	21.4	78.7	100.0 (3,352)
연령대									
20~29세	4.1	10.1	8.3	0.9	1.6	18.9	43.9	56.1	100.0 (47)
30~39세	5.2	6.2	8.8	1.7	6.9	14.3	43.1	56.9	100.0 (92)
40~49세	4.7	5.3	6.4	1.2	1.2	7.8	26.6	73.4	100.0 (248)
50~59세	4.6	4.5	6.6	1.9	2.8	5.7	26.1	73.9	100.0 (970)
60~69세	3.8	3.5	5.9	0.6	1.6	3.6	19.0	80.8	100.0 (1,746)
70세 이상	2.3	1.3	5.2	2.0	0.2	2.3	13.3	86.7	100.0 (415)
지역									
대도시	3.4	3.3	6.7	1.7	1.3	5.0	21.4	78.7	100.0 (1,327)
중소도시	5.1	4.2	5.1	0.8	1.9	4.1	21.2	78.8	100.0 (1,324)
농어촌	3.0	4.0	7.1	1.0	2.8	5.7	23.6	76.3	100.0 (865)
직종									
요양보호사	3.8	3.5	6.1	1.1	1.6	3.8	19.9	80.1	100.0 (3,041)
사회복지사	4.1	6.6	6.4	2.2	4.5	12.5	36.3	63.8	100.0 (288)
간호(조무)사	5.5	4.9	6.7	1.2	2.5	10.4	31.2	68.7	100.0 (163)
물리(작업)치료사	4.0	4.0	8.0	4.0	4.0	12.0	36.0	64.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3.4	3.3	6.0	1.1	1.7	4.4	19.9	80.0	100.0 (2,689)
영리법인	5.3	3.9	3.2	0.8	0.6	3.7	17.5	82.5	100.0 (242)
비영리법인	5.9	5.7	8.2	1.9	2.6	6.9	31.2	68.9	100.0 (543)
국가·지방자치단체	7.3	9.9	7.3	2.4	9.8	9.8	46.3	53.7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2.1	1.9	5.8	1.1	1.5	2.9	15.3	84.7	100.0 (2,137)
방문목욕	0.9	3.6	3.6	0.9	2.7	5.4	17.0	83.0	100.0 (112)
방문간호	0.0	8.3	0.0	0.0	0.0	8.0	16.7	83.3	100.0 (12)
주야간보호	4.2	4.2	5.5	2.1	2.7	8.7	27.4	72.6	100.0 (32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9	4.2	8.3	0.0	1.4	5.6	26.4	73.6	100.0 (72)
노인요양시설(10~29명)	8.1	7.3	5.4	1.1	3.4	8.1	33.4	66.6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8.1	7.2	6.5	2.2	2.4	7.3	33.7	66.3	100.0 (19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1	9.4	9.4	1.2	2.1	8.1	39.3	60.6	100.0 (403)
2019년	-	-	-	-	-	-	25.2	74.8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032명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3,51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13.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4%는 주 3회 이상, 2.5%는 주1~2회, 3.7%는 월1~3회 경험하였으며, 3.2%는 연 1~3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23.0%)이 여성(12.7%)보다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20대의 경우 36.2%, 30대의 경우 39.6%가 1회 이상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중소도시 및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1회 이상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11.0%) 대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리(작업)치료사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34.6%의 신체적 부당행위 경험률을 보였으며, 단,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간호(조무)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대비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응답자가 신체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 응답자의 36.6%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급여 3유형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요양시설 소속 응답자의 경험률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6-34〉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있음	없음	계(명)
전체	2.4	2.5	3.7	0.9	0.6	3.2	13.3	86.8	100.0 (3,518)
성별									
남성	3.0	3.6	4.8	0.6	1.2	9.7	23.0	77.0	100.0 (166)
여성	2.4	2.4	3.6	0.9	0.5	2.9	12.7	87.3	100.0 (3,352)
연령대									
20~29세	4.3	4.3	6.4	2.1	2.1	17.0	36.2	63.8	100.0 (47)
30~39세	1.1	5.5	14.3	2.2	4.4	12.1	39.6	60.4	100.0 (92)
40~49세	3.2	3.1	4.7	0.6	1.1	4.9	17.6	82.4	100.0 (248)
50~59세	3.2	4.0	3.7	1.6	0.8	3.0	16.3	83.7	100.0 (970)
60~69세	2.2	1.9	3.3	0.6	0.2	2.8	11.0	88.9	100.0 (1,746)
70세 이상	0.7	0.2	1.9	0.2	0.0	0.5	3.6	96.4	100.0 (415)
지역									
대도시	2.1	2.4	3.6	0.5	0.3	2.7	11.6	88.4	100.0 (1,327)
중소도시	2.7	2.6	3.4	0.7	0.4	3.3	13.1	86.9	100.0 (1,324)
농어촌	2.4	2.6	4.2	1.9	1.1	3.8	16.0	84.1	100.0 (865)
직종									
요양보호사	2.3	2.1	3.2	0.7	0.3	2.4	11.0	89.1	100.0 (3,041)
사회복지사	2.8	4.9	6.6	2.1	2.8	9.4	28.5	71.5	100.0 (288)
간호(조무)사	4.8	4.8	6.6	2.1	1.5	5.6	25.4	74.6	100.0 (163)
물리(작업)치료사	3.8	3.8	7.7	3.8	3.8	11.5	34.6	65.4	100.0 (25)
운영주체									
개인	2.1	2.0	3.5	0.9	0.5	2.4	11.4	88.6	100.0 (2,689)
영리법인	2.1	1.2	2.5	0.4	0.0	4.1	10.3	89.7	100.0 (242)
비영리법인	4.0	4.8	5.1	0.8	1.1	6.3	22.1	78.0	100.0 (543)
국가·지방자치단체	4.9	14.6	7.3	2.4	0.0	7.3	36.6	63.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0.6	0.1	1.5	0.3	0.0	0.9	3.4	96.6	100.0 (2,137)
방문목욕	0.0	1.8	2.7	0.9	0.9	2.7	18.9	91.1	100.0 (112)
방문간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2)
주야간보호	3.6	4.3	5.9	2.5	1.5	5.9	23.7	76.2	100.0 (32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	4.1	5.5	1.4	2.7	6.8	24.7	75.3	100.0 (72)
노인요양시설(10~29명)	6.4	6.3	6.2	2.3	0.9	7.9	30.0	70.0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5.9	5.0	8.8	1.5	1.8	6.7	29.7	70.4	100.0 (19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2	9.7	9.3	1.7	1.6	7.8	37.3	62.6	100.0 (403)
2019년	-	-	-	-	-	-	16.0	84.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032명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3,51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8.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0.8%는 주 3회 이상, 1.7%는 주1~2회, 1.5%는 월1~3회 경험하였으며, 3.3%는 연1~3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언어 또는 신체적 부당행위 경향과 달리, 남성(7.2%)보다 여성(8.5%)이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성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20대의 경우 21.3%, 30대의 경우 22.0%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비교적 비슷한 경험률을 보였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6.8%) 대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리(작업)치료사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0%이 성적 부당행위 경험률을 보였으며, 단,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간호(조무)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대비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응답자가 성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 응답자의 12.5%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근로자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소속 응답자의 경험률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타 부당행위 경험과 비교해 성적 부당행위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9.6%)와 주야간보호(17.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5〉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있음	없음	계(명)	
전체	0.8	1.7	1.5	0.5	0.5	3.3	8.3	91.6	100.0	(3,518)
성별										
남성	0.6	1.2	1.8	0.0	0.0	3.6	7.2	92.8	100.0	(166)
여성	0.8	1.7	1.5	0.6	0.6	3.3	8.5	91.5	100.0	(3,352)
연령대										
20~29세	0.0	4.3	4.3	2.1	2.1	8.5	21.3	78.7	100.0	(47)
30~39세	0.0	2.2	4.4	2.2	2.2	11.0	22.0	78.0	100.0	(92)
40~49세	0.8	1.2	2.4	0.8	0.4	6.0	11.6	88.4	100.0	(248)
50~59세	1.0	2.2	2.1	1.1	0.9	4.7	12.0	88.2	100.0	(970)
60~69세	1.0	1.7	0.8	0.2	0.3	2.3	6.3	93.7	100.0	(1,746)
70세 이상	0.0	0.8	1.5	0.1	0.2	0.0	2.6	97.3	100.0	(415)
지역										
대도시	0.6	1.4	1.1	0.4	0.5	3.9	7.9	92.2	100.0	(1,327)
중소도시	1.1	2.4	1.8	0.5	0.8	2.3	8.9	91.1	100.0	(1,324)
농어촌	0.8	1.1	1.6	0.9	0.3	3.8	8.5	91.5	100.0	(865)
직종										
요양보호사	0.8	1.6	1.2	0.3	0.4	2.5	6.8	93.2	100.0	(3,041)
사회복지사	0.5	2.1	4.1	1.9	1.6	9.2	19.4	80.6	100.0	(288)
간호(조무)사	1.2	3.1	2.5	1.9	1.2	5.6	15.5	84.5	100.0	(163)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4.0	4.0	12.0	20.0	8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0.7	1.5	1.4	0.5	0.5	2.7	7.3	92.6	100.0	(2,689)
영리법인	2.0	2.0	1.2	0.4	0.0	3.7	9.4	90.6	100.0	(242)
비영리법인	0.7	2.4	2.2	0.7	0.6	5.9	12.5	87.5	100.0	(543)
국가·지방자치단체	2.5	5.0	2.5	0.0	0.0	2.5	12.5	87.5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0.3	1.2	0.7	0.1	0.3	2.0	4.6	95.4	100.0	(2,137)
방문목욕	0.0	1.8	1.8	0.9	0.0	3.6	8.0	92.0	100.0	(112)
방문간호	0.0	0.0	0.0	0.0	0.0	8.3	8.3	91.7	100.0	(12)
주야간보호	1.3	2.1	3.6	1.7	0.7	8.0	17.4	82.6	100.0	(32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	1.4	1.4	1.4	1.4	2.7	19.6	90.4	100.0	(72)
노인요양시설(10~29명)	1.9	2.5	3.0	0.5	0.5	4.0	12.4	87.5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2.8	1.4	2.5	1.0	1.3	4.7	13.7	86.3	100.0	(19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7	3.8	2.1	1.3	1.3	5.4	15.6	84.3	100.0	(403)
2019년	-	-	-	-	-	-	9.1	90.9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032명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3,51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업무 이외 활동, 초과 업무를 요구받는 등의 업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10.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는 주 3회 이상, 1.6%는 주1~2회, 2.1%는 월1~3회 경험하였으며, 3.4%는 연 1~3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성(8.5%)보다 여성(10.7%)이 업무적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주 1~2회, 주 3회 이상 빈번하게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의 성별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17.4%로 업무적 부당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60대(12.1%),20대(10.6%), 40대(9.3%), 50대(8.5%), 70대(8.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대비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외 활동 및 초과 업무 요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11.3%, 요양보호사가 10.7%로 타 직종에 비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10~11% 내외로 비슷한 경험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응답자의 16.6%가 업무 외 활동 및 초과 업무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방문요양 제공 응답자가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13.7%)을 보였다.

〈표 6-36〉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업무 이외 활동, 초과업무 등 요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있음	없음	계(명)
전체	1.2	1.6	2.1	1.1	1.1	3.4	10.5	89.4	100.0 (3,518)
성별									
남성	0.0	1.2	2.4	0.6	0.6	3.6	8.5	91.5	100.0 (166)
여성	1.3	1.7	2.1	1.1	1.1	3.4	10.7	89.3	100.0 (3,352)
연령대									
20~29세	0.0	0.0	2.1	2.1	2.1	4.3	10.6	89.4	100.0 (47)
30~39세	0.0	0.0	5.4	2.2	2.2	7.6	17.4	82.6	100.0 (92)
40~49세	1.6	0.0	4.9	0.4	0.0	2.4	9.3	90.7	100.0 (248)
50~59세	1.0	0.8	1.1	1.3	1.6	2.7	8.5	91.4	100.0 (970)
60~69세	1.5	2.2	2.6	0.9	1.2	3.7	12.1	88.0	100.0 (1,746)
70세 이상	0.8	2.5	0.3	1.6	0.0	3.1	8.3	91.8	100.0 (415)
지역									
대도시	1.4	1.5	2.3	1.7	1.0	3.8	11.7	88.2	100.0 (1,327)
중소도시	1.1	2.4	2.1	0.8	1.4	3.0	10.8	89.2	100.0 (1,324)
농어촌	1.1	0.6	1.9	0.8	0.8	3.1	8.3	91.7	100.0 (865)
직종									
요양보호사	1.3	1.7	2.2	1.1	1.2	3.2	10.7	89.3	100.0 (3,041)
사회복지사	0.6	1.0	2.0	1.9	0.9	4.9	11.3	88.7	100.0 (288)
간호(조무)사	1.0	0.7	1.4	0.9	0.4	4.3	8.7	91.4	100.0 (163)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4.0	4.0	96.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1.4	1.7	1.8	1.2	1.4	2.8	10.3	89.7	100.0 (2,689)
영리법인	0.3	2.9	1.8	0.3	0.0	5.2	10.5	89.4	100.0 (242)
비영리법인	0.7	0.6	3.9	0.7	0.2	5.7	11.8	88.2	100.0 (543)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0.0	10.3	0.0	0.0	10.3	89.7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	2.1	2.8	1.5	1.5	4.1	13.7	86.4	100.0 (2,137)
방문목욕	0.9	2.7	3.5	0.0	2.7	0.9	10.6	89.4	100.0 (112)
방문간호	0.0	0.0	8.3	0.0	0.0	8.3	16.6	83.3	100.0 (12)
주야간보호	0.6	0.8	1.3	1.2	0.5	2.9	7.3	92.7	100.0 (32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	1.4	1.4	0.0	0.0	1.4	4.1	95.9	100.0 (72)
노인요양시설(10~29명)	1.1	1.1	0.8	0.4	0.4	1.1	5.0	95.0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0.0	1.0	0.5	0.0	0.0	3.7	5.2	94.8	100.0 (19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0.5	0.2	0.5	0.3	0.4	2.1	4.0	96.0	100.0 (403)
2019년	-	-	-	-	-	-	10.1	89.9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032명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3,51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위의 4가지 유형의 부당행위 중 한 가지 유형 이상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07명에게 부당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 대응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순위 대응 방식으로 그냥 참고 일을 지속했다는 응답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 기관 보고 및 대응 요구 34.9%,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 1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그냥 참고 일했다거나 해당 이용자(가족)을 피했다는 소극적 대응은 여성에게서,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 외부기관 신고하거나, 이직 또는 해당 이용자 급여 중단 제공 응답률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공단 등에 신고 했다는 응답률이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40대는 소속기관에 보고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60대의 경우 그냥 참고 일을 지속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 응답자에게서 그냥 참고 일을 지속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근무자의 경우 협회 또는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률이 타 지역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에게서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거나(58.3%) 가능한 해당 이용자(가족)을 피하는(8.3%) 소극적 대응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의 경우 소속기관 보다는 협회 또는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대응을 요구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속기관에 보고했다는 응답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07명 중 부당한 대응 방법에 대해 2순위까지 응답을 한 8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당행위 대응방식 2순위는 그냥 참고 일 지속(27.3%),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22.5%), 가능한 해당 이용자나 가족을 피함(21.8%)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소속기관 대응 요구 15.3%, 이직 또는 해당 이용자 급여 제공 중단 4.7%, 협회 또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신고 3.0%, 공단, 지자체 등 신고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7〉 장기요양요원의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방식(1순위)

(단위: %, 명)

특성	소속기관에 보고 및 대응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협회,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노동조합 신고 및 대응요구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	이직 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급여 중단	그냥 참고 일 자속	가능한 해당 이용자나 가족을 피함	기타	계(명)
전체	34.9	0.8	1.4	0.7	13.7	0.9	45.5	1.3	0.6	100.0 (1,007)
성별										
남성	42.1	1.8	1.8	0.0	12.3	7.0	33.3	0.0	1.8	100.0 (57)
여성	34.5	0.8	1.4	0.7	13.8	0.6	46.3	1.3	0.6	100.0 (950)
연령대										
20~29세	31.8	4.5	0.0	0.0	27.3	0.0	31.8	4.5	0.0	100.0 (23)
30~39세	46.8	0.0	0.0	0.0	10.6	0.0	34.0	6.4	2.1	100.0 (46)
40~49세	41.9	1.2	1.2	1.2	11.6	0.0	38.4	1.2	3.5	100.0 (82)
50~59세	34.1	0.6	1.6	1.1	13.2	0.5	47.6	0.7	0.6	100.0 (309)
60~69세	30.4	1.0	1.2	0.7	14.8	1.6	48.9	1.2	0.1	100.0 (466)
70세 이상	50.0	0.0	3.8	0.0	10.0	0.0	35.0	1.3	0.0	100.0 (80)
지역										
대도시	31.2	0.3	1.3	0.1	15.6	1.2	48.3	1.9	0.1	100.0 (377)
중소도시	37.4	1.6	2.5	1.1	10.1	0.0	45.9	1.1	0.3	100.0 (370)
농어촌	37.3	0.8	0.0	1.2	16.5	1.9	40.8	0.8	0.8	100.0 (259)
직종										
요양보호사	34.9	0.6	1.6	0.9	13.5	1.0	46.4	0.9	0.2	100.0 (813)
사회복지사	39.8	1.7	0.1	0.0	16.3	0.9	36.9	3.4	0.8	100.0 (122)
간호(조무)사	31.0	1.7	1.7	0.0	13.8	0.0	50.0	1.7	0.0	100.0 (59)
물리(작업)치료사	25.0	0.0	0.0	0.0	8.3	0.0	58.3	8.3	0.0	100.0 (12)
운영주체										
개인	35.7	0.3	1.3	0.4	13.8	0.6	46.4	1.3	0.3	100.0 (705)
영리법인	32.3	6.2	1.5	0.0	15.4	0.0	44.6	0.0	0.0	100.0 (65)
비영리법인	34.8	1.4	0.6	1.9	13.7	2.5	42.7	1.9	0.6	100.0 (215)
국가·지방자치단체	28.6	0.0	14.3	0.0	9.5	0.0	47.6	0.0	0.0	100.0 (22)
급여유형										
방문요양	34.0	0.6	2.1	1.3	17.0	1.3	43.1	0.6	0.0	100.0 (479)
방문목욕	20.8	0.0	4.2	0.0	16.7	0.0	54.2	4.2	0.0	100.0 (24)
방문간호	33.3	0.0	0.0	0.0	33.3	0.0	33.3	0.0	0.0	100.0 (4)[3]
주야간보호	41.1	0.0	0.9	0.0	13.4	0.9	41.1	1.8	0.9	100.0 (113)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4	0.0	0.0	0.0	8.7	0.0	60.9	0.0	0.0	100.0 (24)
노인요양시설(10~29명)	34.7	2.0	0.0	0.0	12.9	0.0	49.5	1.0	0.0	100.0 (102)
노인요양시설(30~49명)	36.7	1.3	1.3	1.3	6.6	0.0	46.1	5.3	1.3	100.0 (77)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7.1	0.9	0.5	0.2	9.6	1.1	49.6	0.6	0.4	100.0 (184)
2019년	37.5	0.7	1.7	-	13.2	0.3	44.1	2.0	0.4	100.0 (1,287)

주: 1) 장기요양요원 4,302명 중 부당한 대우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07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의견으로 치매로 인한 증상이므로 이해하고 넘어감, 동료와 이야기하며 품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38〉 장기요양요원의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방식(2순위)

(단위: %, 명)

특성	소속기관에 보고 및 대응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협회,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노동조합 신고 및 대응요구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	이직 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급여 중단	그냥 참고 일 지속	가능한 해당 이용자나 가족을 피함	기타	계(명)
전체	15.3	2.4	3.0	0.7	22.5	4.7	27.3	21.8	2.3	100.0 (865)
성별										
남성	7.7	9.6	1.9	1.9	25.0	1.9	32.7	19.2	0.0	100.0 (52)
여성	15.8	2.0	3.1	0.6	22.3	4.8	27.0	21.9	2.4	100.0 (813)
연령대										
20~29세	15.8	5.3	0.0	0.0	10.5	5.3	36.8	26.3	0.0	100.0 (19)
30~39세	14.0	2.3	0.0	2.3	25.6	2.3	27.9	25.6	0.0	100.0 (43)
40~49세	8.5	2.8	1.4	0.0	31.0	2.8	29.6	21.1	2.8	100.0 (71)
50~59세	17.8	1.5	6.8	1.0	22.0	4.8	22.8	19.8	3.6	100.0 (261)
60~69세	15.2	2.0	1.8	0.5	19.8	5.3	29.2	24.9	1.3	100.0 (394)
70세 이상	10.7	5.3	0.0	0.0	32.0	4.0	32.0	10.7	5.3	100.0 (75)
지역										
대도시	14.3	2.6	4.6	0.6	20.7	6.1	23.6	24.9	2.6	100.0 (324)
중소도시	12.3	1.2	2.5	0.8	26.2	5.9	30.2	19.1	1.7	100.0 (313)
농어촌	19.4	4.0	1.3	0.4	20.3	0.9	29.1	21.6	3.1	100.0 (227)
직종										
요양보호사	16.2	2.0	3.3	0.4	22.8	4.8	27.1	21.0	2.5	100.0 (700)
사회복지사	10.7	3.9	1.9	1.0	22.3	4.9	30.1	23.3	1.9	100.0 (103)
간호(조무)사	11.5	5.8	1.9	1.9	19.2	3.8	26.9	26.9	1.9	100.0 (52)
물리(작업)치료사	11.1	0.0	0.0	0.0	22.2	0.0	22.2	44.4	0.0	100.0 (9)[3]
운영주체										
개인	13.5	2.6	3.0	0.5	22.4	5.3	27.0	23.2	2.5	100.0 (607)
영리법인	30.0	4.0	0.0	2.0	18.0	14.0	10.0	20.0	2.0	100.0 (50)
비영리법인	13.2	1.4	2.8	0.8	25.2	1.0	33.6	20.2	1.7	100.0 (188)
국가·지방자치단체	38.1	0.0	14.3	0.0	14.3	0.0	23.8	4.8	4.8	100.0 (21)
급여유형										
방문요양	15.8	2.2	4.0	0.0	27.2	6.4	25.9	16.0	2.5	100.0 (405)
방문목욕	16.7	0.0	0.0	4.2	33.3	12.5	12.5	20.8	0.0	100.0 (24)
방문간호	0.0	0.0	0.0	0.0	33.3	33.3	33.3	0.0	0.0	100.0 (3)[3]
주야간보호	9.6	3.2	2.1	1.1	23.4	2.1	28.7	28.7	1.1	100.0 (94)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3	4.8	0.0	0.0	14.3	4.8	23.8	38.1	0.0	100.0 (21)
노인요양시설(10~29명)	15.4	2.2	2.2	1.1	14.3	6.6	27.5	27.5	3.3	100.0 (91)
노인요양시설(30~49명)	9.4	3.1	0.0	0.0	15.6	0.0	37.5	32.8	1.6	100.0 (64)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8.0	2.7	3.1	1.2	17.7	0.9	29.4	23.8	3.3	100.0 (159)
2019년	23.1	7.2	2.4	-	24.9	2.4	25.6	10.7	3.8	100.0 (1,090)

주: 1) 부당한 대우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07명 중 부당한 대응 방법에 대해 2순위까지 응답을 한 865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의견으로 이용자에 대한 제제(억제제 사용 등), 이용자 퇴소 조치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소속기관에 부당대우에 대해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했다고 응답한 484명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후 소속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였다(중복 응답 가능). 그 결과, 기관이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48.2%, 수급자 또는 업무 변경이 29.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관에서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은 17.4%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휴식(휴가, 휴직) 지원(13.4%),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10.3%), 심리적 지원(10.4%)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은 특히, 70대 이상에서 24.5%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휴식 지원이, 40대에서는 치료비, 휴식, 심리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기관 근무자의 경우 기관의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2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사후 조치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제적 지원과 휴식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25.2%).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업무를 변경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39〉 장기요양요원의 소속기관의 부당대우 대응 조치

(단위: %, 명)

특성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휴식(휴가, 휴직) 지원	심리적 지원	수급자, 업무 변경	기관이 수급자 (가족)에게 이의 제기	기타	사후 조치 없었음	계(명)
전체	10.3	13.4	10.4	29.0	48.2	3.1	17.4	(484)
성별								
남성	17.2	17.9	10.3	28.6	57.1	0.0	17.2	(28)
여성	10.0	13.2	10.5	29.1	47.7	3.3	17.4	(455)
연령대								
20~29세	10.0	9.9	0.0	18.2	54.5	0.0	10.0	(10)
30~39세	10.7	33.3	11.1	17.9	59.3	0.0	14.3	(27)
40~49세	18.9	21.4	28.6	28.6	64.3	0.0	9.5	(42)
50~59세	11.2	15.3	9.1	27.6	45.4	1.4	19.8	(152)
60~69세	7.4	9.0	6.8	28.3	46.1	6.0	16.3	(204)
70세 이상	14.3	8.3	14.7	46.0	43.8	0.0	24.5	(48)
지역								
대도시	14.7	19.0	11.2	32.5	45.3	1.6	15.3	(163)
중소도시	8.7	10.9	13.6	27.4	52.7	4.6	21.7	(177)
농어촌	7.4	10.2	5.6	27.1	45.8	3.0	14.4	(144)
직종								
요양보호사	9.5	12.2	9.9	30.5	45.4	3.4	17.5	(395)
사회복지사	11.6	16.9	10.1	23.1	63.3	1.7	16.6	(60)
간호(조무)사	20.9	24.0	20.0	20.6	54.4	0.0	16.7	(24)
물리(작업)치료사	0.0	20.0	0.0	25.0	60.0	0.0	20.0	(4)[2]
운영주체								
개인	9.2	12.6	11.2	29.5	50.5	2.8	17.0	(334)
영리법인	11.3	5.4	8.3	25.1	44.4	0.0	25.2	(36)
비영리법인	14.0	20.2	8.1	30.8	39.9	6.0	15.1	(99)
국가·지방자치단체	7.1	7.1	7.1	14.3	64.3	0.0	21.4	(14)
급여유형								
방문요양	10.1	12.9	8.5	39.6	46.3	4.2	11.5	(226)
방문목욕	0.0	0.0	0.0	33.3	55.6	0.0	22.2	(9)[2]
방문간호	0.0	0.0	0.0	100.0	100.0	0.0	0.0	(1)[2]
주야간보호	9.1	19.6	14.3	23.2	67.9	1.8	12.4	(5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	20.0	10.0	10.0	50.0	0.0	30.0	(10)
노인요양시설 (10~29명)	10.0	11.8	12.0	18.0	40.0	4.1	26.0	(50)
노인요양시설 (30~49명)	5.9	17.6	11.4	11.8	50.0	5.9	29.4	(34)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14.5	11.3	12.6	19.6	45.4	0.0	23.7	(97)

주: 1) 부당대우에 대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1,2순위 중 한 번이라도)했다고 응답한 4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업무를 수행하면서 질환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근무기간과 지난 1년 이내 기간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은 전체 기간 15.4%, 지난 1년 간 10.9%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에서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간 기준으로는 직종 중 물리(작업)치료사의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요양보호사 11.3%, 물리(작업)치료사 11.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전체 기간 기준으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 기준으로는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이 전체 기간 21.4%, 지난 1년 15.0%로 제일 높다.

감염성 질환(코로나19 제외)의 경우 응답자의 3.4%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 이내에는 2.0%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감염성 질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타 연령대비 20대에서 전체 기간 기준 10.9%, 1년 이내 8.5%로 감염성 질환 경험률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감염성 질환 유경험 응답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종별로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질환 경험률이 매우 높게(11.5%) 나타났으나, 1년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에 소속된 응답자가 전체 기간 7.1%, 지난 1년 7.1%로 감염성 질환 유경험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0~49명)에서의 감염성 질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률은 전체 기간 4.6%, 1년 이내 2.5%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전체 기간, 지난 1년 기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사고 유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종보다 다치거나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에서 지난 1년 기준 4%이상 경험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심리)적 질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기간 2.4%, 지난 1년 동안 1.7%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기준 여성보다 남성, 30대, 중소도시 근무자 중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경험률을 보였고,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운영기관, 급여유형 중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질환 경험률을 보였다.

〈표 6-40〉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1)]

(단위: %, 명)

특성	근골격계 질환 경험		감염성 질환 경험		다치거나 사고 경험		정신(심리) 질환 경험		계(명)
	전체	1년 이내	전체	1년 이내	전체	1년 이내	전체	1년 이내	
전체	15.4	10.9	3.4	2.0	4.6	2.5	2.4	1.7	100.0 (4,302)
성별									
남성	11.1	7.3	4.8	2.6	4.1	2.1	2.5	2.0	100.0 (264)
여성	15.7	11.2	3.4	2.0	4.6	2.5	2.3	1.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4.3	2.2	10.9	8.5	2.2	0.0	0.2	0.2	100.0 (46)
30~39세	8.8	6.5	4.3	3.5	7.4	5.4	8.6	7.5	100.0 (92)
40~49세	8.6	5.8	3.3	2.2	4.8	2.4	2.6	2.6	100.0 (305)
50~59세	16.8	13.4	3.2	1.8	3.7	1.7	1.7	1.1	100.0 (1,152)
60~69세	17.3	11.4	4.1	2.3	5.6	3.0	2.5	1.7	100.0 (2,077)
70세 이상	11.8	8.9	1.2	0.7	2.5	2.0	2.2	2.2	100.0 (629)
지역									
대도시	13.2	8.7	3.6	1.5	3.8	1.5	2.3	1.8	100.0 (1,721)
중소도시	16.5	12.0	3.3	2.5	4.3	2.8	2.6	2.1	100.0 (1,596)
농어촌	17.5	13.1	3.4	2.2	6.3	3.8	2.0	1.1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5.9	11.3	3.0	1.7	4.5	2.5	2.4	1.8	100.0 (3,826)
사회복지사	9.6	6.5	7.0	4.5	5.2	3.0	2.2	1.7	100.0 (289)
간호(조무)사	14.1	9.4	6.9	3.7	4.6	2.6	1.4	1.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9.2	11.5	11.5	3.8	3.8	0.0	0.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5.0	10.5	3.0	1.8	4.4	2.4	2.9	2.2	100.0 (3,313)
영리법인	12.4	7.2	4.6	2.1	3.8	1.5	0.2	0.2	100.0 (335)
비영리법인	18.6	15.2	4.8	3.0	5.3	3.5	0.7	0.3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1.8	14.6	7.1	7.1	14.3	2.4	2.4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4.3	10.1	2.3	1.1	4.5	2.5	2.8	2.1	100.0 (2,886)
방문목욕	17.0	12.8	1.7	1.3	5.9	2.1	2.2	2.0	100.0 (148)
방문간호	8.3	7.7	7.7	0.0	8.3	0.0	0.0	0.0	100.0 (12)
주야간보호	16.0	11.6	4.7	3.4	6.3	4.4	2.5	1.7	100.0 (325)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7	9.6	2.5	1.1	2.7	1.4	0.6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6.0	10.9	5.6	3.0	4.1	2.1	0.9	0.9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5.5	12.9	8.1	6.1	3.3	1.4	1.8	1.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1.4	15.0	8.1	5.2	4.0	2.2	0.8	0.1	100.0 (403)
2019년	15.8	-	3.6	-	6.9	-	-	-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 간 장기요양업무 수행 중 질환이나 사고를 경험한 637명에게 관련 비용 처리 방법과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환 및 사고 비용 처리 방법(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개인비용으로 처리가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생 비용이 없다는 응답자는 19.5%, 기관에서 비용 지급 8.0%, 산업재해보험 처리는 2.7%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기관 또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의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발생한 비용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용 발생 시에는 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본인이 비용을 처리했다는 비율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큰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 처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2%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관에서 비용 지급, 간호(조무)사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의 운영주체가 개인이나 영리법인인 경우 개인이 사고 비용을 처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비율은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37.5%)에게서 타 운영주체 유형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환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이 매우 적절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 적절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7.2%로 대응이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8.2%+10.8%)고 응답한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28.5%나 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3.3%만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반면, 여성은 29.8%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에서 기관의 대응이 매우 적절 또는 적절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60~70대에서는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자의 경우 특히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36.1%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30.9%가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반면, 기관의 대응이 (매우) 적절하다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기관의 대응이 (매우) 적절하다에 대해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개인과 영리법인 소속 응답자에게서는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방문요양에서 3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1〉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 및 사고 비용처리 방법(중복 응답)[1]

(단위: %, 명)

특성	발생한 비용 없음	본인이 비용 처리	기관에서 비용 지급	산재보험처리	기타	사례수 (명)
전체	19.5	73.0	8.0	2.7	0.3	(637)
성별						
남성	30.0	56.7	19.6	6.5	0.0	(30)
여성	18.9	73.8	7.4	2.6	0.3	(606)
연령대						
20~29세	40.0	40.0	40.0	0.0	0.0	(5)[3]
30~39세	42.1	44.4	16.7	5.6	5.3	(18)
40~49세	34.9	54.1	13.5	2.7	0.0	(37)
50~59세	18.6	74.1	6.2	3.6	0.0	(182)
60~69세	17.7	75.7	7.4	2.3	0.2	(319)
70세 이상	15.0	77.0	9.3	1.1	0.0	(75)
지역						
대도시	17.5	77.1	8.4	2.7	0.5	(213)
중소도시	19.4	73.0	7.0	2.5	0.3	(250)
농어촌	22.3	67.8	8.9	2.9	0.0	(174)
직종						
요양보호사	18.4	75.2	6.6	2.1	0.1	(568)
사회복지사	26.8	53.7	26.2	7.3	2.7	(41)
간호(조무)사	30.4	54.0	8.7	8.7	0.0	(24)
물리(작업)치료사	33.3	50.0	0.0	0.0	0.0	(4)[3]
운영주체						
개인	18.3	74.7	7.3	2.7	0.1	(477)
영리법인	20.7	73.3	3.2	3.4	0.0	(30)
비영리법인	24.4	68.2	9.6	2.3	0.9	(121)
국가·지방자치단체	11.1	44.4	37.5	0.0	0.0	(9)[3]
급여유형						
방문요양	17.0	79.7	4.1	0.9	0.0	(391)
방문목욕	25.0	75.0	4.2	4.2	0.0	(23)
방문간호	50.0	50.0	0.0	0.0	0.0	(1)[3]
주야간보호	20.7	65.5	16.9	3.4	1.7	(58)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0	50.0	12.5	11.1	0.0	(9)[3]
노인요양시설(10~29명)	29.7	54.1	13.5	5.4	2.7	(37)
노인요양시설(30~49명)	20.0	65.7	14.3	8.6	0.0	(3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3.6	60.2	16.0	6.5	0.0	(81)

주: 1) 장기요양요원 4,302명 중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637명 자료를 분석
2) 기타: 수급자로 인해 다쳐서 수급자 명의의 보험처리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42〉 장기요양요원의 발생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대응의 적절성 수준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계(명)
전체	12.4	17.2	22.9	8.2	10.8	28.5	100.0 (637)
성별							
남성	26.7	13.3	36.7	3.3	16.7	3.3	100.0 (30)
여성	11.7	17.3	22.2	8.4	10.6	29.8	100.0 (606)
연령대							
20~29세	50.0	25.0	25.0	0.0	0.0	0.0	100.0 (5)
30~39세	17.6	41.2	23.5	11.8	5.9	0.0	100.0 (18)
40~49세	10.8	27.0	24.3	8.1	2.7	27.0	100.0 (37)
50~59세	15.6	17.3	22.7	6.0	12.3	26.2	100.0 (182)
60~69세	12.4	16.7	18.8	10.8	10.3	30.9	100.0 (319)
70세 이상	2.7	9.3	40.0	1.3	14.7	32.0	100.0 (75)
지역							
대도시	10.1	17.7	20.8	4.5	10.9	36.1	100.0 (213)
중소도시	13.2	16.0	23.2	8.9	9.6	29.2	100.0 (250)
농어촌	14.3	18.3	25.1	11.4	12.6	18.3	100.0 (174)
직종							
요양보호사	11.0	17.0	22.3	7.6	11.2	30.9	100.0 (568)
사회복지사	31.7	17.1	26.8	14.6	4.9	4.9	100.0 (41)
간호(조무)사	12.5	25.0	25.0	12.5	12.5	12.5	100.0 (24)
물리(작업)치료사	0.0	0.0	66.7	0.0	0.0	33.3	100.0 (4)[2]
운영주체							
개인	12.0	17.2	21.4	7.1	12.3	30.0	100.0 (477)
영리법인	6.7	13.3	40.0	3.3	6.7	30.0	100.0 (30)
비영리법인	15.0	18.3	25.0	11.7	7.5	22.5	100.0 (121)
국가·지방자치단체	22.2	11.1	11.1	33.3	0.0	22.2	100.0 (9)[2]
급여유형							
방문요양	8.3	17.0	19.4	5.6	12.1	37.6	100.0 (391)
방문목욕	13.0	17.4	21.7	4.3	17.4	26.1	100.0 (23)
방문간호	0.0	0.0	0.0	0.0	0.0	0.0	0.0 (1)[2]
주야간보호	20.0	15.0	30.0	15.0	8.3	11.7	100.0 (58)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100.0 (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1	33.3	33.3	11.1	11.1	0.0	100.0 (9)[2]
노인요양시설(10~29명)	21.1	21.1	23.7	15.8	7.9	10.5	100.0 (37)
노인요양시설(30~49명)	20.6	11.8	38.2	8.8	0.0	20.6	100.0 (35)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8.5	17.3	27.2	13.6	12.3	11.1	100.0 (81)
2019년	10.6	22.6	18.1	14.2	9.7	24.9	100.0 (865)

주: 1) 장기요양요원 4,302명 중 장기요양업무 관련 질환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637명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2021년 7월~2022년 6월)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6.8%)는 본인과 수급자(가족) 간 코로나19 상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방역 등 추가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14.9%), 근로시간 감소 또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12.5%), 이용자의 건강 상태 악화, 외부 활동 제한 등으로 돌봄 요구도 증가(11.0%)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 이상에게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소득감소, 감염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응답률이 남성에게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방역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 활동제한 및 사생활 침해는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는 방역 등 업무 과중, 대도시에서는 이용자 돌봄 요구도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에게서 소득감소의 어려움이 13.6%로 타 직종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서는 업무 과중이 약 40% 내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타 운영 주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응답자에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 관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감소 33.3%, 근로 중단에 대한 불안 16.7%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제공 응답자의 경우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52.1%)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관련 주된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어려움(소득 감소)	방역 등 추가로 업무 과중	이용자 돌봄 요구도 증가	활동 제한, 사생활 침해	근로 중단 등에 대한 불안	돌봄 제공 중 감염 두려움	기타	계(명)
전체	12.5	14.9	11.0	6.0	5.0	46.8	3.7	100.0 (4,302)
성별								
남성	8.7	18.3	12.5	9.5	4.8	40.8	5.4	100.0 (264)
여성	12.8	14.7	10.9	5.8	5.0	47.2	3.6	100.0 (4,038)
연령대								
20~29세	4.3	32.6	15.2	13.0	4.3	26.1	4.3	100.0 (46)
30~39세	5.4	38.0	5.4	8.7	6.5	34.8	1.1	100.0 (92)
40~49세	6.4	26.1	10.4	6.6	3.0	45.2	2.4	100.0 (305)
50~59세	10.1	18.2	10.5	5.5	4.4	48.0	3.4	100.0 (1,152)
60~69세	15.0	12.5	10.8	6.0	5.9	45.4	4.5	100.0 (2,077)
70세 이상	13.4	6.9	13.9	6.1	3.8	53.4	2.6	100.0 (629)
지역								
대도시	12.4	12.7	12.7	4.3	5.3	49.5	3.0	100.0 (1,721)
중소도시	14.1	14.4	10.2	6.9	5.0	44.5	4.7	100.0 (1,596)
농어촌	10.2	19.5	9.4	7.6	4.3	45.8	3.2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3.6	11.8	11.1	5.8	5.0	48.9	3.9	100.0 (3,826)
사회복지사	3.9	42.6	10.0	7.7	5.8	28.2	1.9	100.0 (289)
간호(조무)사	5.3	39.5	11.8	7.8	3.1	30.2	2.3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3.7	18.5	7.4	18.5	3.7	44.4	3.7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2.7	13.3	11.2	5.9	5.2	48.0	3.8	100.0 (3,313)
영리법인	12.7	14.8	14.1	3.9	6.1	45.8	2.5	100.0 (335)
비영리법인	10.7	23.3	8.6	8.3	3.7	41.6	3.7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4.4	22.0	9.8	4.9	0.0	39.0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5.6	6.4	11.2	5.1	5.4	52.1	4.3	100.0 (2,886)
방문목욕	20.9	8.8	10.8	4.1	6.8	45.9	2.7	100.0 (148)
방문간호	33.3	8.3	8.3	0.0	16.7	33.3	.0	100.0 (12)
주야간보호	4.1	32.3	8.7	8.5	6.9	38.0	1.6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0.0	0.0	0.0	5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	27.4	12.3	9.6	4.1	39.7	2.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4.8	35.5	11.4	8.0	3.7	34.4	2.3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2	36.3	11.0	7.2	2.9	33.8	4.4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9	38.6	11.7	9.5	1.7	32.6	2.0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의견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76명)가 다수이며, 그 밖에 백신 접종 후유증, 방호복 착용 등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2. 교육

지난 1년간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에 참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회, 지자체, 교육 기관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관련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8%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0대의 참여률이 7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기관 응답자의 참여률(78.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외부 주최 장기요양관련 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물리(치료)사의 참여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비영리법인과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외부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 보면, 각 유형별로 모두 70% 이상의 외부기관 교육 참여율을 보였으나, 방문목욕 제공 응답자가 79.3%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6-44〉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대면 및 비대면)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명)

특성	참여	미참여	계(명)
전체	72.8	27.2	100.0 (4,302)
성별			
남성	67.1	32.9	100.0 (264)
여성	73.2	26.8	100.0 (4,038)
연령대			
20~29세	60.9	39.1	100.0 (46)
30~39세	67.3	32.7	100.0 (92)
40~49세	75.1	24.9	100.0 (305)
50~59세	72.6	27.4	100.0 (1,152)
60~69세	74.4	25.6	100.0 (2,077)
70세 이상	68.8	31.2	100.0 (629)
지역			
대도시	71.4	28.6	100.0 (1,721)
중소도시	71.2	28.8	100.0 (1,596)
농어촌	78.0	22.0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2.3	27.7	100.0 (3,826)
사회복지사	77.0	23.0	100.0 (289)
간호(조무)사	77.9	22.1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68.0	32.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2.3	27.7	100.0 (3,313)
영리법인	68.4	31.6	100.0 (335)
비영리법인	77.8	22.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5.6	24.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71.6	28.4	100.0 (2,886)
방문목욕	79.3	20.7	100.0 (148)
방문간호	75.0	25.0	100.0 (12)
주야간보호	76.4	23.6	100.0 (325)
단기보호	66.7	33.3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5.4	24.6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5.1	24.9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4.2	25.8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3.8	26.2	100.0 (403)
2019년	66.2	33.8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외부 교육에 참여한 3,13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육 내용은(중복 응답 가능) 인권 및 학대 예방이 82.2%로 가장 높았고, 안전·감염 관리 59.4%, 이용자 돌봄 기술 43.3%, 기능회복 훈련 28.3%, 상담기술 21.6%,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15.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 미만 응답자가 경영 및 관리자 교육, 전산 및 컴퓨터 기기 활용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산 및 컴퓨터 기기 활용, 안전·감염 관리 교육 비율이 여성 대비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상담기술의 경우 70대, 60대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용자 돌봄기술의 경우도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전산, 컴퓨터 기기활용이 10.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특히 이용자 돌봄 기술, 상담 기술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는 경영·관리자 교육(12.2%), 전산 및 컴퓨터 활용 교육(9.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간호(조무)사는 안전 및 감염관리(66.0%), 물리(작업)치료사는 기능회복훈련 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가·지자체 소속 응답자의 경우 인권 교육 경험률이 93.5%, 안전 교육 경험률이 6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안전 및 감염관리 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30~49명, 50명 이상)의 경우는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교육도 대상 응답자의 8%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의견이 79.2%로 교육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이 만족하고 있었다. (매우)불만족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매우 만족, 만족의 합계 비율은 연령별로 비슷했으나, 30대만이 '만족한다' 38.7%, '보통이다 33.9%'로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자가 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보다 타 직종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기관의 응답자의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주야간호보, 요양시설(10~29인)이 약 80%수준으로 높게 났다.

〈표 6-45〉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내용(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이용자 돌봄 기술	기능 회복 훈련	상담 기술	안전, 감염 관리	인권 및 학대 예방	경영, 관리자 교육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건강, 스트레스 관리	기타	계(명)
전체	43.3	28.3	21.6	59.4	82.2	4.0	3.7	15.1	1.8	(3,134)
성별										
남성	42.4	30.8	26.2	62.0	86.4	6.2	8.1	15.6	2.7	(177)
여성	43.3	28.1	21.4	59.3	81.9	3.9	3.5	15.0	1.7	(2,956)
연령대										
20~29세	31.0	14.3	17.2	58.3	79.3	7.1	10.7	10.3	3.6	(28)
30~39세	17.6	16.1	13.0	53.2	77.6	8.3	6.5	11.1	7.9	(62)
40~49세	33.5	16.3	13.9	60.1	87.3	5.8	6.6	9.6	3.7	(229)
50~59세	41.8	28.4	19.0	61.1	83.9	4.8	5.5	18.3	2.2	(836)
60~69세	46.7	29.9	22.7	58.9	82.5	3.0	2.3	15.1	1.3	(1,545)
70세 이상	43.9	31.3	28.5	58.8	75.8	4.2	3.0	12.5	0.8	(433)
지역										
대도시	34.9	23.9	18.6	59.8	84.2	3.7	2.6	11.0	1.6	(1,229)
중소도시	53.7	31.4	24.1	58.1	79.5	4.4	3.6	18.7	1.6	(1,136)
농어촌	41.3	30.7	22.8	60.7	82.9	3.8	5.7	16.2	2.4	(768)
직종										
요양보호사	45.2	29.4	22.6	59.5	82.4	3.3	3.2	15.4	1.2	(2,768)
사회복지사	27.3	17.5	15.7	55.8	79.5	12.2	9.9	11.5	7.9	(222)
간호(조무)사	32.6	21.4	12.5	66.0	81.9	4.8	4.6	15.7	2.4	(126)
물리(작업)치료사	23.5	35.3	5.9	50.0	82.4	0.0	0.0	11.1	5.9	(17)
운영주체										
개인	44.0	26.9	21.2	58.5	80.9	3.5	3.3	12.8	1.8	(2,396)
영리법인	40.0	32.6	24.5	63.1	85.7	5.0	5.5	20.4	0.2	(229)
비영리법인	42.1	33.9	22.8	61.5	86.3	5.8	4.9	23.8	2.5	(477)
국가·지방자치단체	35.5	15.6	16.1	68.8	93.5	3.2	6.5	16.1	0.0	(31)
급여유형										
방문요양	46.1	28.4	24.1	58.1	81.0	3.0	2.2	14.5	1.4	(2,066)
방문목욕	44.5	34.4	24.3	59.7	79.4	3.4	4.2	16.0	0.8	(117)
방문간호	40.0	30.0	22.2	44.4	80.0	0.0	0.0	20.0	0.0	(9)[3]
주야간보호	37.4	25.9	16.2	59.2	84.1	7.2	6.6	11.8	4.8	(248)
단기보호	50.0	0.0	0.0	50.0	100.0	0.0	0.0	0.0	0.0	(2)[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3.3	25.5	16.7	67.5	83.6	7.3	7.3	16.6	1.8	(55)
노인요양시설 (10~29명)	34.0	24.6	14.2	65.6	85.1	3.7	5.8	15.9	2.2	(197)
노인요양시설 (30~49명)	34.5	28.9	19.1	63.3	86.3	9.2	8.5	19.0	2.3	(142)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40.7	29.9	15.5	62.3	86.1	5.8	8.0	18.5	1.7	(297)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134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의견으로 직종별 보수교육, 소방교육, 기관 평가 관련 교육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46〉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참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18.4	60.8	19.4	1.1	0.3	100.0 (3,134)
성별						
남성	24.1	51.6	22.7	0.8	0.7	100.0 (177)
여성	18.1	61.3	19.2	1.1	0.3	100.0 (2,956)
연령대						
20~29세	27.6	51.7	17.2	0.0	3.4	100.0 (28)
30~39세	25.8	38.7	33.9	.0	1.6	100.0 (62)
40~49세	22.2	61.1	15.0	1.6	0.1	100.0 (229)
50~59세	20.7	59.8	18.3	1.1	0.1	100.0 (836)
60~69세	16.7	61.1	20.4	1.4	0.5	100.0 (1,545)
70세 이상	16.6	65.0	18.4	0.0	0.0	100.0 (433)
지역						
대도시	13.5	62.7	21.5	1.8	0.4	100.0 (1,229)
중소도시	22.2	58.0	18.5	1.0	0.4	100.0 (1,136)
농어촌	20.8	61.7	17.3	0.2	0.0	100.0 (768)
직종						
요양보호사	18.3	61.1	19.0	1.2	0.3	100.0 (2,768)
사회복지사	21.2	55.9	22.2	0.4	0.3	100.0 (222)
간호(조무)사	15.8	62.1	21.3	0.7	0.1	100.0 (126)
물리(작업)치료사	16.7	50.0	33.3	0.0	0.0	100.0 (17)
운영주체						
개인	17.8	61.3	19.8	0.9	0.3	100.0 (2,396)
영리법인	19.9	61.7	16.7	0.3	1.4	100.0 (229)
비영리법인	20.0	57.5	19.8	2.7	0.0	100.0 (477)
국가·지방자치단체	32.3	61.3	6.5	0.0	0.0	100.0 (3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9	62.0	18.7	1.1	0.3	100.0 (2,066)
방문목욕	19.4	61.2	17.6	1.2	0.5	100.0 (117)
방문간호	22.2	55.6	22.2	0.0	0.0	100.0 (9)[2)]
주야간보호	18.8	60.7	19.1	0.9	0.5	100.0 (248)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8	61.1	22.2	1.9	0.0	100.0 (55)
노인요양시설(10~29명)	19.3	60.5	19.6	0.2	0.3	100.0 (197)
노인요양시설(30~49명)	20.7	56.2	22.3	0.9	0.0	100.0 (142)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0.5	54.4	23.4	1.7	0.0	100.0 (297)
2019년	24.3	57.3	17.1	1.2	0.0	100.0 (2,472)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134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한 미참여자에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을 받기 불안했다는 응답률이 31.9%로 가장 높았다. 교육 참여시간 부족(24.9%)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로 외부 기관의 장기요양 관련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18.0%, 참석 의향이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6%, 필요한 교육이 아니어서(내용 또는 수준 부족) 6.7%,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불안이, 남성의 경우 교육 내용이나 수준 부족, 참석 필요성 없음 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70세 이상 에서 참석 의향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27.8%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30대에서 58.6%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함, 대도시에서는 참석 의향 없음, 중소도시에서는 교육 내용 또는 수준 미흡 응답률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고, 물리(작업)치료사 중에서는 교육 내용 및 수준 부족, 참석 의향 없음 또는 필요성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만 상대적인 응답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유효 응답자가 10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표 6-47〉 장기요양요원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업무 관련 교육 미참여 주된 이유

(단위: %, 명)

특성	교육 내용, 수준 미흡	교육 참여 시간 부족	외부 기관 교육 모름	생활권 인근 교육 제공 없음	교육비 부담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 불안	참석 의향, 필요성 없음	기타	계(명)
전체	6.7	24.9	18.0	4.8	0.2	31.9	11.6	2.0	100.0 (1,168)
성별									
남성	10.5	26.7	14.0	1.2	1.2	27.9	18.6	0.0	100.0 (87)
여성	6.4	24.8	18.3	5.0	0.1	32.3	11.0	2.1	100.0 (1,082)
연령대									
20~29세	11.1	22.2	5.6	0.0	5.6	27.8	27.8	0.0	100.0 (18)
30~39세	6.9	20.7	3.4	0.0	3.4	58.6	3.4	3.4	100.0 (30)
40~49세	1.3	14.7	30.7	1.3	0.0	44.0	8.0	0.0	100.0 (76)
50~59세	9.3	27.8	16.5	5.4	0.2	29.3	8.4	3.1	100.0 (316)
60~69세	5.1	24.8	19.8	5.2	0.0	31.9	11.7	1.6	100.0 (532)
70세 이상	9.1	24.7	13.6	5.1	0.0	28.2	17.6	1.7	100.0 (197)
지역									
대도시	5.9	24.6	17.5	5.3	0.0	30.9	14.0	1.9	100.0 (492)
중소도시	9.9	25.2	19.0	3.7	0.5	29.1	10.3	2.4	100.0 (460)
농어촌	2.1	24.8	16.9	5.8	0.1	40.2	9.1	1.2	100.0 (216)
직종									
요양보호사	6.7	25.3	18.9	5.0	0.0	29.8	12.2	2.0	100.0 (1,058)
사회복지사	7.6	22.7	6.1	0.0	3.0	54.5	4.5	1.5	100.0 (66)
간호(조무)사	5.6	19.4	11.1	2.8	0.0	52.8	8.3	0.0	100.0 (36)
물리(작업)치료사	14.3	14.3	14.3	0.0	0.0	42.9	14.3	0.0	100.0 (8)[3]
운영주체									
개인	7.2	26.0	18.8	3.9	0.1	31.9	10.3	1.8	100.0 (917)
영리법인	9.6	16.0	22.6	6.7	0.6	28.0	13.4	3.0	100.0 (106)
비영리법인	2.0	24.2	10.0	8.8	0.5	35.6	16.9	2.1	100.0 (136)
국가·지방자치단체	0.0	22.2	0.0	11.1	0.0	22.2	44.4	0.0	100.0 (10)
급여유형									
방문요양	7.1	26.2	20.0	5.4	0.0	27.8	11.8	1.6	100.0 (820)
방문목욕	9.7	16.1	16.1	3.2	0.0	22.6	32.3	0.0	100.0 (31)
방문간호	0.0	0.0	33.3	0.0	0.0	66.7	0.0	0.0	100.0 (3)[3]
주야간보호	7.8	16.9	15.6	1.3	2.6	46.8	7.8	1.3	100.0 (77)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6	22.2	11.1	5.6	0.0	38.9	11.1	5.6	100.0 (18)
노인요양시설 (10~29명)	4.6	24.6	10.8	3.1	0.0	46.2	9.2	1.5	100.0 (65)
노인요양시설 (30~49명)	8.2	20.4	16.3	4.1	0.0	38.8	8.2	4.1	100.0 (49)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3.8	25.7	11.4	3.8	0.0	41.0	9.5	4.8	100.0 (105)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168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의견으로는 기관 내 교육으로 대체 또는 충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가 31.1%, 추가교육이 필요없다(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도 43.1%로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약 1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추가교육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농어촌보다 중소도시와 대도시 근무 응답자 중에서 추가 교육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8%, 52.8%, 46.2%로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급여제공 유형별로는 주야간 보호와 방문간호에서 추가 교육에 대한 필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문요양 및 목욕에서 가장 낮았다.

장기요양 관련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합)에게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1순위 선호 교육 내용으로 이용자 상태별 돌봄 기술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직무 교육 16.4%, 수급자 및 가족 상담기술 12.6%,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12.3% 등을 10명 중 한명 이상 응답자가 보고하였다. 그 밖에 기능회복 훈련, 안전 및 감염관리, 인권 및 학대예방이 7~8% 응답률, 전산 및 컴퓨터 기기 활용이 4.6%, 경영 및 관리자 교육이 1.2%의 응답률을 보였다. 2순위 선호 교육 내용으로는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가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안전 및 감염관리 12.7%, 기능회복훈련 12.6%, 이용자 돌봄기술 11.8%, 상담기술 11.3%, 직무교육 10.4%, 인권 및 학대 예방 8.4%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특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는 전산 및 컴퓨터 관련 교육 선호도가, 20~30대에서는 직무교육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 응답자 중 건강, 스트레스 관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직무교육이 55.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서도 30%이상으로 직무교육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안전 및 감염관리 교육도 10.4%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중에서는 주야간보호의 경우 직무교육, 단기보호는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8〉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8.6	22.5	25.8	34.8	8.3	100.0 (4,302)
성별						
남성	15.4	24.7	25.5	26.6	7.8	100.0 (264)
여성	8.2	22.3	25.9	35.3	8.3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5.2	39.1	21.7	19.6	4.3	100.0 (46)
30~39세	29.1	27.9	24.6	15.1	3.3	100.0 (92)
40~49세	16.0	30.1	24.7	25.2	4.0	100.0 (305)
50~59세	11.1	24.4	27.0	31.1	6.3	100.0 (1,152)
60~69세	6.8	20.9	25.3	38.6	8.4	100.0 (2,077)
70세 이상	3.1	18.2	26.5	37.5	14.7	100.0 (629)
지역						
대도시	7.2	20.6	25.8	39.3	7.0	100.0 (1,721)
중소도시	8.9	23.2	25.0	32.0	10.8	100.0 (1,596)
농어촌	10.6	24.4	27.3	31.4	6.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2	20.7	26.4	36.8	8.9	100.0 (3,826)
사회복지사	23.5	36.3	19.3	17.7	3.1	100.0 (289)
간호(조무)사	15.3	37.5	24.7	18.9	3.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5.4	30.8	26.9	19.2	7.7	100.0 (26)
운영주체						
개인	8.2	22.8	26.3	35.2	7.6	100.0 (3,313)
영리법인	9.4	19.1	21.2	36.0	14.3	100.0 (335)
비영리법인	10.8	22.5	25.0	32.6	9.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3	22.0	41.5	26.8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6.6	19.0	26.3	38.3	9.8	100.0 (2,886)
방문목욕	8.9	21.1	20.6	39.2	10.2	100.0 (148)
방문간호	16.7	41.7	25.0	16.7	0.0	100.0 (12)
주야간보호	14.6	33.9	22.7	24.8	4.0	100.0 (325)
단기보호	0.0	33.3	33.3	33.3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6	31.5	23.3	30.1	5.5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5.1	26.8	26.0	26.3	5.8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2.9	29.1	25.8	28.3	3.9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9	30.0	27.2	26.4	4.6	100.0 (403)
2019년	12.0	36.3	23.9	24.7	3.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49〉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1순위)

(단위: %, 명)

특성	이용자 상태별 돌봄 기술	직종별 직무 교육	수급자 (가족) 상담 기술	기능 회복 (재활) 훈련	안전, 감염 관리	인권 및 학대 예방	경영, 관리자 교육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건강, 스트레스 관리	기타	계(명)
전체	30.2	16.4	12.6	8.0	7.4	7.0	1.2	4.6	12.3	0.3	100.0 (2,449)
성별											
남성	27.6	19.3	8.9	8.3	9.1	6.3	3.0	5.6	11.9	0.0	100.0 (173)
여성	30.4	16.2	12.9	8.0	7.2	7.0	1.0	4.5	12.4	0.3	100.0 (2,276)
연령대											
20~29세	14.7	41.2	20.6	2.9	0.0	0.0	5.9	8.8	5.9	0.0	100.0 (35)
30~39세	15.8	32.9	18.4	5.3	3.9	5.3	5.3	5.3	7.9	0.0	100.0 (75)
40~49세	30.1	24.5	12.0	6.7	6.7	7.4	1.9	5.2	4.9	0.6	100.0 (216)
50~59세	32.0	21.6	11.0	7.9	6.9	4.1	1.2	4.5	10.3	0.6	100.0 (720)
60~69세	29.0	11.7	14.3	8.1	9.4	9.5	0.9	3.5	13.5	0.1	100.0 (1,101)
70세 이상	36.1	8.6	8.6	10.2	3.3	5.4	0.1	7.7	20.0	0.0	100.0 (301)
지역											
대도시	27.9	14.2	12.7	8.8	8.8	8.2	1.0	3.8	14.3	0.3	100.0 (923)
중소도시	33.4	17.4	12.6	7.2	6.6	5.5	1.3	5.1	10.6	0.4	100.0 (913)
농어촌	29.1	18.3	12.5	8.1	6.3	7.4	1.3	5.2	11.9	0.0	100.0 (613)
직종											
요양보호사	32.4	12.8	12.5	8.4	7.7	7.5	0.6	4.4	13.3	0.3	100.0 (2,076)
사회복지사	16.8	37.2	15.2	5.4	2.9	3.4	6.4	5.9	6.1	0.7	100.0 (228)
간호(조무)사	22.4	32.0	11.2	4.8	10.4	4.0	1.6	5.6	8.0	0.0	100.0 (126)
물리(작업)치료사	15.0	55.0	5.0	10.0	5.0	5.0	0.0	0.0	5.0	0.0	100.0 (19)
운영주체											
개인	31.4	15.2	12.7	8.2	7.9	6.9	1.0	4.9	11.5	0.3	100.0 (1,896)
영리법인	31.1	18.4	13.2	9.8	7.9	3.6	1.0	2.4	12.0	0.5	100.0 (166)
비영리법인	24.3	22.3	11.7	6.5	4.3	7.8	2.4	4.0	16.5	0.2	100.0 (358)
국가·지방자치단체	21.4	10.7	17.9	0.0	7.1	21.4	0.0	3.6	17.9	0.0	100.0 (29)
급여유형											
방문요양	31.1	10.9	14.8	9.0	7.5	7.5	0.7	4.5	13.9	0.2	100.0 (1,498)
방문목욕	37.8	13.5	12.2	6.8	8.1	5.4	0.0	1.4	14.9	0.0	100.0 (75)
방문간호	30.0	30.0	10.0	10.0	10.0	0.0	10.0	0.0	0.0	0.0	100.0 (10)
주야간보호	23.9	31.3	10.8	8.7	5.3	3.4	3.3	3.2	8.9	1.1	100.0 (231)
단기보호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1.9	19.1	6.4	4.3	12.8	4.3	2.1	8.5	10.6	0.0	100.0 (48)
노인요양시설(10~29명)	27.2	27.5	8.1	6.4	7.1	7.2	1.8	6.0	8.7	0.0	100.0 (178)
노인요양시설(30~49명)	30.7	22.6	6.7	8.3	7.4	8.8	2.8	3.9	8.8	0.0	100.0 (13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0.4	23.5	9.2	4.1	7.3	7.2	1.0	6.1	10.9	0.3	100.0 (278)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449명의 자료를 분석
2)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50〉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2순위)

(단위: %, 명)

특성	이용자 상태별 돌봄 기술	직종별 직무 교육	수급자 (가족) 상담 기술	기능 회복 (재활) 훈련	안전, 감염 관리	인권 및 학대 예방	경영, 관리자 교육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건강, 스트레스 관리	기타	계(명)	
전체	11.8	10.4	11.3	12.6	12.7	8.4	1.5	4.9	25.7	0.6	100.0	(2,433)
성별												
남성	13.1	11.1	10.5	12.6	12.4	9.8	3.8	5.4	21.4	0.0	100.0	(174)
여성	11.7	10.4	11.4	12.6	12.7	8.3	1.4	4.9	26.0	0.7	100.0	(2,259)
연령대												
20~29세	5.7	14.3	17.1	17.1	5.7	8.6	5.7	14.3	11.4	0.0	100.0	(35)
30~39세	8.0	13.3	7.3	10.7	9.3	6.7	4.0	6.7	24.0	0.0	100.0	(75)
40~49세	9.2	11.5	16.8	10.2	13.1	6.8	3.5	7.0	21.8	0.0	100.0	(216)
50~59세	12.3	12.0	12.1	12.6	9.9	8.9	1.7	6.2	24.0	0.3	100.0	(718)
60~69세	12.0	8.8	10.3	12.4	14.7	9.2	0.8	3.5	27.3	0.9	100.0	(1,091)
70세 이상	13.3	10.6	7.2	14.7	13.4	5.6	1.5	4.0	28.7	1.0	100.0	(300)
지역												
대도시	13.2	9.2	9.6	13.8	15.1	8.4	1.0	3.7	25.4	0.6	100.0	(910)
중소도시	12.2	11.4	13.4	11.8	10.3	7.5	2.3	6.0	24.5	0.7	100.0	(910)
농어촌	9.2	10.9	11.0	12.0	12.6	9.7	1.2	5.2	27.8	0.6	100.0	(613)
직종												
요양보호사	11.9	9.5	10.7	13.0	13.6	8.5	0.8	4.2	27.2	0.7	100.0	(2,063)
사회복지사	9.8	15.5	17.8	9.1	5.7	6.7	7.2	9.6	18.3	0.4	100.0	(227)
간호(조무)사	13.5	16.1	11.7	10.3	11.6	10.0	3.1	8.6	14.6	0.5	100.0	(125)
물리(작업)치료사	10.0	15.0	5.0	25.0	5.0	5.0	5.0	10.0	20.0	0.0	100.0	(20)
운영주체												
개인	12.3	9.6	10.7	13.3	13.2	8.2	1.6	5.0	25.4	0.8	100.0	(1,890)
영리법인	6.1	12.9	14.7	14.9	11.8	9.7	1.0	3.5	25.5	0.0	100.0	(163)
비영리법인	11.3	14.1	14.0	8.6	10.7	8.3	1.6	5.4	25.9	0.1	100.0	(352)
국가·지방자치단체	20.7	6.9	3.4	3.4	10.3	10.3	3.4	3.4	37.9	0.0	100.0	(29)
급여유형												
방문요양	12.3	8.8	11.7	13.1	12.7	7.3	0.7	3.2	29.5	0.6	100.0	(1,489)
방문목욕	8.1	4.1	14.9	20.3	14.9	13.5	1.4	5.4	16.2	1.4	100.0	(74)
방문간호	22.2	11.1	11.1	22.2	11.1	0.0	0.0	11.1	11.1	0.0	100.0	(9)[2]
주야간보호	10.3	11.9	12.8	13.5	9.1	10.0	3.1	9.3	19.8	0.2	100.0	(231)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8	12.8	8.5	10.6	12.8	12.8	2.1	8.5	19.1	0.0	100.0	(47)
노인요양시설(10~29명)	12.4	13.9	9.8	13.5	13.3	8.8	3.0	6.0	17.8	1.5	100.0	(178)
노인요양시설(30~49명)	9.9	15.4	10.7	6.5	11.3	11.6	4.4	8.8	21.5	0.0	100.0	(13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8	14.3	9.5	9.7	15.7	9.3	2.3	7.0	20.8	0.6	100.0	(275)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주제 2순위 까지 답변한 2,433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제4절 만족도 및 개선사항

1. 만족도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총 10개 항목의 만족도와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임금수준, 2) 근무시간, 3)근무유형, 4)일의 내용, 5)업무 강도, 6)경력개발 및 승진기회, 7) 고용 안정성, 8)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9)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10)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이다.

먼저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이 28.5%,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합)이 38.6%, 보통이 33.0%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5.3%)와 30대(34.8%)에서 상대적으로 (매우)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기관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24.5%만이 임금수준에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근무자에 비해 낮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비해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가 25~26%로 상대적으로 낮은 (매우)만족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및 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보다 비영리법인 및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근무자의 (매우)만족 비율이 30% 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단, 국가·지자체 근무자의 경우 (매우)불만족 비율도 41.4%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30명 미만) 근무 응답자의 경우 30% 이상이 임금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의 46.6%가 만족(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은 22.4%였으며, 보통은 31.1%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매우)만족률이 약간(1.2%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70대의 경우 40%대의 만족률을 보인 반면, 20대 67.4%, 30대 63.0%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39.7%만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55.8%)보다 만족률이 낮았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65.3%, 사회복지사(62.2%)의 만족률은 높은 반면, 요양보호사는 44.9%의 만족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과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56.1%로 비슷하게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 제공 요원의 35.1%만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지만, 주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정원 규모 상관없이)의 장기요양요원은 50% 이상의 만족률을 보였다.

〈표 6-51〉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임금수준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5.5	23.0	33.0	30.2	8.4	100.0 (4,302)
성별						
남성	7.8	22.3	37.1	25.2	7.7	100.0 (264)
여성	5.4	23.0	32.8	30.5	8.4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0.9	15.2	41.3	21.7	10.9	100.0 (46)
30~39세	8.7	26.1	29.3	26.1	9.8	100.0 (92)
40~49세	7.3	28.0	34.7	21.9	8.1	100.0 (305)
50~59세	3.7	19.6	33.5	32.3	11.0	100.0 (1,152)
60~69세	5.2	24.0	32.3	31.5	6.9	100.0 (2,077)
70세 이상	8.2	23.3	33.7	27.0	7.9	100.0 (629)
지역						
대도시	4.6	19.9	34.3	33.2	8.0	100.0 (1,721)
중소도시	7.3	23.3	31.6	27.3	10.5	100.0 (1,596)
농어촌	4.2	27.7	33.2	29.4	5.5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5.4	23.1	32.7	30.7	8.1	100.0 (3,826)
사회복지사	7.5	22.1	33.4	24.7	12.4	100.0 (289)
간호(조무)사	5.1	20.7	39.2	27.3	7.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4.2	20.8	37.5	29.2	8.3	100.0 (26)
운영주체						
개인	5.7	21.9	33.5	30.1	8.7	100.0 (3,313)
영리법인	4.1	22.3	33.7	35.8	4.1	100.0 (335)
비영리법인	5.2	28.6	30.4	26.8	9.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4	29.3	26.8	39.0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5.4	22.5	32.5	31.3	8.3	100.0 (2,886)
방문목욕	5.9	19.2	31.5	33.7	9.8	100.0 (148)
방문간호	7.7	23.1	38.5	23.1	7.7	100.0 (12)
주야간보호	6.8	23.3	32.4	26.6	10.9	100.0 (325)
단기보호	0.0	0.0	50.0	5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5	30.1	34.2	23.3	6.8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6.1	26.1	31.7	28.3	7.7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0	24.5	40.2	23.3	7.9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2	23.2	34.9	29.4	7.3	100.0 (403)
2019년	5.2	30.3	34.0	25.4	5.0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52〉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근무시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7.4	39.2	31.1	17.6	4.8	100.0 (4,302)
성별						
남성	8.8	36.7	27.5	18.5	8.6	100.0 (264)
여성	7.3	39.4	31.3	17.5	4.5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9.6	47.8	26.1	4.3	2.2	100.0 (46)
30~39세	16.3	46.7	26.1	7.6	3.3	100.0 (92)
40~49세	12.1	42.1	33.2	8.9	3.7	100.0 (305)
50~59세	5.5	39.7	33.3	15.3	6.2	100.0 (1,152)
60~69세	6.3	38.1	31.1	20.1	4.4	100.0 (2,077)
70세 이상	9.6	38.9	27.1	20.2	4.2	100.0 (629)
지역						
대도시	6.4	33.3	32.9	22.1	5.3	100.0 (1,721)
중소도시	8.5	39.8	28.9	16.6	6.2	100.0 (1,596)
농어촌	7.1	48.7	31.4	11.3	1.5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6.8	38.1	31.1	18.9	5.2	100.0 (3,826)
사회복지사	13.9	48.3	29.0	6.9	1.9	100.0 (289)
간호(조무)사	8.3	47.1	35.0	8.3	1.4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1.5	53.8	30.8	3.8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3	37.8	31.0	18.8	5.1	100.0 (3,313)
영리법인	5.4	37.0	39.0	14.0	4.5	100.0 (335)
비영리법인	8.3	47.8	27.3	13.2	3.4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2.2	43.9	31.7	12.2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6.6	36.7	29.5	21.3	5.9	100.0 (2,886)
방문목욕	6.8	28.3	39.4	19.5	6.0	100.0 (148)
방문간호	7.7	38.5	30.8	15.4	7.7	100.0 (12)
주야간보호	11.1	45.2	33.8	8.2	1.7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	47.9	31.5	9.6	4.1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9.1	47.4	34.2	6.4	2.9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6	46.0	36.0	7.9	2.5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1	46.1	32.9	11.0	1.0	100.0 (403)
2019년	7.0	44.0	26.8	18.4	3.8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음으로 근무유형(주간, 야간, 교대제 형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59.6%가 만족한다(매우 만족과 만족의 합)고 응답하였고, 보통 32.2%, 불만족(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은 8.1%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성(49.7%) 대비 여성(60.3%)의 (매우)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 70.8%로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반면, 60~70대는 60% 미만의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매우)만족 비율이 49.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80%, 사회복지사의 71.8%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요양보호사는 58.2%만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만족률 54.3%로 개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응답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68.4%)와 방문간호(75.0%) 제공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방문목욕 제공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약 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업무) 내용에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0.0%로 나타났고, 보통 37.1%,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12.9%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률(51.5%)이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약 56%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대비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43.3%)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의 62.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만족률이 높았고, 요양보호사가 가장 낮은 만족률(49.5%)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과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만족률이 50%이상으로 영리법인 및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66.6%)이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44.7%)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률이 낮게 나타났다.

〈표 6-53〉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근무유형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10.5	49.1	32.2	6.5	1.6	100.0 (4,302)
성별						
남성	10.1	39.6	44.8	4.5	1.0	100.0 (264)
여성	10.5	49.8	31.4	6.7	1.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9.6	45.7	30.4	4.3	0.0	100.0 (46)
30~39세	26.2	44.6	21.7	5.4	2.1	100.0 (92)
40~49세	18.4	47.1	30.6	2.5	1.5	100.0 (305)
50~59세	9.4	51.9	31.0	5.9	1.8	100.0 (1,152)
60~69세	9.1	49.8	32.1	7.4	1.6	100.0 (2,077)
70세 이상	10.2	44.0	37.1	7.1	1.6	100.0 (629)
지역						
대도시	8.8	41.0	41.3	7.5	1.5	100.0 (1,721)
중소도시	12.1	53.7	25.8	6.2	2.2	100.0 (1,596)
농어촌	10.9	56.0	26.7	5.5	1.0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9.6	48.6	33.2	6.9	1.7	100.0 (3,826)
사회복지사	19.6	52.2	24.0	2.9	1.3	100.0 (289)
간호(조무)사	13.3	55.2	25.0	5.2	1.3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24.0	56.0	20.0	.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0.6	49.2	32.3	6.2	1.7	100.0 (3,313)
영리법인	8.2	46.1	36.2	6.9	2.5	100.0 (335)
비영리법인	10.9	50.7	28.9	8.3	1.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0.3	48.7	38.5	2.6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9.7	49.6	32.7	6.4	1.7	100.0 (2,886)
방문목욕	11.0	41.9	38.2	7.2	1.7	100.0 (148)
방문간호	16.7	58.3	25.0	0.0	0.0	100.0 (12)
주야간보호	16.4	52.0	28.0	3.0	0.7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6	49.3	28.8	9.6	2.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2.4	52.3	27.1	6.5	1.7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0.5	47.3	32.5	7.7	1.9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1	45.0	33.6	9.5	1.8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54〉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8.0	42.0	37.1	10.4	2.5	100.0 (4,302)
성별						
남성	9.4	42.1	36.7	9.5	2.4	100.0 (264)
여성	7.9	42.0	37.1	10.4	2.5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4.9	31.9	48.9	4.3	0.0	100.0 (46)
30~39세	16.3	39.1	30.4	9.8	4.3	100.0 (92)
40~49세	12.9	43.5	35.7	6.2	1.6	100.0 (305)
50~59세	7.0	43.5	37.8	8.9	2.9	100.0 (1,152)
60~69세	7.4	41.2	36.6	12.2	2.5	100.0 (2,077)
70세 이상	7.6	42.4	38.2	9.8	1.9	100.0 (629)
지역						
대도시	6.2	37.1	43.2	11.6	2.0	100.0 (1,721)
중소도시	10.1	44.0	31.9	11.0	3.1	100.0 (1,596)
농어촌	7.8	47.6	35.0	7.3	2.3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8	41.7	37.5	10.5	2.6	100.0 (3,826)
사회복지사	11.0	44.5	32.8	9.6	2.1	100.0 (289)
간호(조무)사	7.8	44.8	36.8	9.1	1.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2.0	52.0	32.0	4.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9	42.1	37.6	9.7	2.8	100.0 (3,313)
영리법인	10.2	37.6	38.3	12.4	1.5	100.0 (335)
비영리법인	7.9	44.0	33.2	13.2	1.7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4.8	42.9	47.6	4.8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8.0	42.3	36.2	10.6	2.9	100.0 (2,886)
방문목욕	8.3	36.4	39.9	14.0	1.3	100.0 (148)
방문간호	8.3	58.3	25.0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10.9	44.9	35.5	7.4	1.3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	43.8	37.0	11.0	1.4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6	43.0	38.4	9.2	1.9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3	41.6	40.2	9.5	1.4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6.4	38.7	42.0	10.8	2.1	100.0 (403)
2019년	6.6	44.5	35.4	11.4	2.1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업무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8%가 (매우)만족, 41.5%가 보통, 17.8%가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의 업무 강도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는 45%이상 만족률을 보인 반면, 50~60대는 40% 미만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대비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40% 초반대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물리(작업)치료사의 57.7%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비해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31.7%). 급여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이 가장 낮으며, 방문목욕, 노인요양시설(30~49명)의 장기요양요원 순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경력 개발 및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0%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2%는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 관련 세부 문항 중 가장 낮은 만족 비율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9.7%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만족률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40대 만족률이 50~70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가장 높은 만족률을, 대도시가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의 39.8%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가 약 31%로 비슷한 만족률을, 요양보호사는 23.6%로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에 비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 만족률이 가장 낮았고, 단기보호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주야간보호(35.2%)와 방문간호(41.6%)의 장기요양요원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55〉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6.6	34.2	41.5	14.1	3.7	100.0 (4,302)
성별						
남성	8.4	38.0	35.5	15.7	2.5	100.0 (264)
여성	6.4	33.9	41.9	14.0	3.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7.8	28.9	46.7	6.7	0.0	100.0 (46)
30~39세	12.8	33.0	33.0	16.0	5.3	100.0 (92)
40~49세	9.5	37.6	40.0	10.3	2.7	100.0 (305)
50~59세	5.5	33.2	41.4	16.1	3.8	100.0 (1,152)
60~69세	5.9	33.5	41.6	15.2	3.9	100.0 (2,077)
70세 이상	7.6	37.2	43.2	8.9	3.0	100.0 (629)
지역						
대도시	5.1	28.6	48.5	15.2	2.5	100.0 (1,721)
중소도시	8.3	36.3	37.4	13.6	4.4	100.0 (1,596)
농어촌	6.2	40.5	36.1	12.9	4.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6.4	34.0	42.0	13.9	3.7	100.0 (3,826)
사회복지사	8.5	35.0	36.6	15.9	4.1	100.0 (289)
간호(조무)사	6.6	34.7	40.0	15.6	3.2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1.5	46.2	34.6	7.7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6.6	34.3	42.6	12.9	3.7	100.0 (3,313)
영리법인	8.2	33.3	36.8	18.6	3.1	100.0 (335)
비영리법인	6.0	34.6	38.0	17.3	4.1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4	29.3	46.3	22.0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6.7	35.3	41.8	12.5	3.8	100.0 (2,886)
방문목욕	9.2	26.8	42.3	17.9	3.7	100.0 (148)
방문간호	8.3	50.0	33.3	0.0	8.3	100.0 (12)
주야간보호	8.0	32.3	40.8	16.2	2.7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5	39.7	35.6	17.8	1.4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6.0	34.3	38.9	17.7	3.1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5.0	33.1	40.4	17.8	3.8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4.7	29.7	43.3	17.9	4.3	100.0 (403)
2019년	5.1	36.3	40.1	15.6	2.9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56〉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4.2	20.8	49.7	17.4	7.8	100.0 (4,302)
성별						
남성	6.6	28.0	45.5	14.2	5.7	100.0 (264)
여성	4.1	20.3	50.0	17.7	7.9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7	28.3	47.8	10.9	4.3	100.0 (46)
30~39세	10.9	27.2	37.0	18.5	6.5	100.0 (92)
40~49세	9.4	27.0	40.6	16.2	6.9	100.0 (305)
50~59세	3.7	21.6	46.8	17.8	10.1	100.0 (1,152)
60~69세	3.5	19.5	52.6	17.1	7.3	100.0 (2,077)
70세 이상	3.9	19.2	52.0	18.7	6.1	100.0 (629)
지역						
대도시	3.3	16.9	51.5	19.9	8.3	100.0 (1,721)
중소도시	5.7	22.0	47.6	16.9	7.8	100.0 (1,596)
농어촌	3.5	25.7	50.0	13.9	6.9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3.9	19.7	50.7	17.6	8.0	100.0 (3,826)
사회복지사	7.6	32.2	39.3	15.1	5.7	100.0 (289)
간호(조무)사	5.7	25.1	45.7	17.7	5.8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3.8	26.9	42.3	19.2	7.7	100.0 (26)
운영주체						
개인	4.3	19.9	50.8	17.4	7.7	100.0 (3,313)
영리법인	5.3	24.3	48.1	11.8	10.5	100.0 (335)
비영리법인	3.9	23.4	44.1	21.4	7.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0.0	26.8	58.5	12.2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3.9	18.8	50.8	18.1	8.4	100.0 (2,886)
방문목욕	5.4	17.0	50.4	17.5	9.6	100.0 (148)
방문간호	8.3	33.3	33..3	16.7	8.3	100.0 (12)
주야간보호	6.4	28.8	43.0	16.3	5.5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5	23.3	47.9	16.4	6.8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5.4	25.7	45.3	17.1	6.5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0	26.0	50.2	15.2	4.6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8	23.6	49.8	15.4	7.5	100.0 (403)
2019년	3.8	19.1	46.7	21.6	8.8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6%가 (매우)만족, 38.7%가 보통, 17.7%가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의 고용안정 관련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40대(특히,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인 반면, 50~70대 이상에서는 45% 미만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대비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작업)치료사가 약 60%로 높은 만족률을 보인 반면, 요양보호사 만족률은 41.8%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과 영리법인 대비 비영리법인과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와 노인요양시설(정원 규모 상관없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방문목욕이 32.6%로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방문요양 만족률도 40% 내외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복리후생 수준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매우)만족 35.3%, 보통 39.6%, (매우)불만족 25.1%로 (매우)불만족 비율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의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약 34%의 낮은 만족률을 보인 반면, 30대의 경우 48.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대비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44.7%)가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요양보호사의 만족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과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률이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 중 (매우)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57〉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고용 안정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8.2	35.4	38.7	13.7	4.0	100.0 (4,302)
성별						
남성	10.3	35.8	43.0	9.9	0.9	100.0 (264)
여성	8.0	35.4	38.4	14.0	4.2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5.2	43.5	37.0	4.3	0.0	100.0 (46)
30~39세	21.7	40.1	24.2	10.0	4.1	100.0 (92)
40~49세	12.2	40.5	35.8	9.2	2.2	100.0 (305)
50~59세	8.5	35.5	36.3	13.2	6.5	100.0 (1,152)
60~69세	6.7	34.9	39.4	15.4	3.5	100.0 (2,077)
70세 이상	7.7	33.1	44.2	12.8	2.2	100.0 (629)
지역						
대도시	6.1	28.8	44.3	16.1	4.7	100.0 (1,721)
중소도시	9.9	38.6	34.1	12.8	4.6	100.0 (1,596)
농어촌	8.9	41.8	36.3	11.0	2.0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6	34.2	39.6	14.4	4.2	100.0 (3,826)
사회복지사	14.5	46.1	29.5	6.9	3.0	100.0 (289)
간호(조무)사	10.4	42.0	34.7	10.4	2.5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2.0	48.0	32.0	8.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9	34.2	39.6	14.0	4.3	100.0 (3,313)
영리법인	8.4	33.2	41.4	14.2	2.7	100.0 (335)
비영리법인	9.8	42.1	32.6	12.1	3.4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1	50.0	31.0	9.5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7.1	32.2	40.3	15.7	4.7	100.0 (2,886)
방문목욕	8.4	24.2	44.9	17.9	4.7	100.0 (148)
방문간호	7.7	38.5	30.8	15.4	7.7	100.0 (12)
주야간보호	13.0	42.6	34.2	8.6	1.7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	39.2	39.2	10.8	2.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0.0	45.4	34.0	7.2	3.4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9	45.2	35.6	9.2	2.1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0.9	44.8	32.5	9.6	2.2	100.0 (403)
2019년	8.9	42.3	30.3	13.9	4.6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58〉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복리후생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7.2	28.1	39.6	18.5	6.6	100.0 (4,302)
성별						
남성	9.1	30.5	43.9	14.5	2.0	100.0 (264)
여성	7.0	28.0	39.4	18.8	6.9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3.0	28.3	43.5	8.7	6.5	100.0 (46)
30~39세	12.9	35.5	31.2	12.9	7.5	100.0 (92)
40~49세	10.1	30.8	41.7	12.3	5.1	100.0 (305)
50~59세	6.5	27.4	39.3	18.1	8.8	100.0 (1,152)
60~69세	6.4	27.2	39.8	20.3	6.3	100.0 (2,077)
70세 이상	8.2	30.2	39.8	17.8	3.9	100.0 (629)
지역						
대도시	5.6	23.7	43.8	19.8	7.1	100.0 (1,721)
중소도시	9.0	29.7	36.7	17.7	6.8	100.0 (1,596)
농어촌	7.0	33.4	37.1	17.3	5.2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6.9	27.6	40.2	18.9	6.5	100.0 (3,826)
사회복지사	10.8	33.9	33.3	14.7	7.3	100.0 (289)
간호(조무)사	7.4	31.0	38.8	15.7	7.2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0	28.0	40.0	20.0	4.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0	27.4	39.9	18.9	6.7	100.0 (3,313)
영리법인	6.9	24.1	44.3	14.6	10.2	100.0 (335)
비영리법인	8.3	33.3	36.1	18.3	4.0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4.9	39.0	34.1	19.5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6.5	26.2	40.6	19.4	7.3	100.0 (2,886)
방문목욕	8.0	19.9	41.1	25.4	5.5	100.0 (148)
방문간호	7.7	38.5	30.8	15.4	7.7	100.0 (12)
주야간보호	8.7	31.8	37.0	16.6	5.8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	34.3	37.3	17.8	4.2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8.7	35.4	37.6	13.2	5.0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6.6	34.0	39.2	16.1	4.0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9.6	33.3	36.4	15.6	5.1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5%가 (매우)만족, 42.8%가 보통, 8.7%가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매우)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여성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및 30대에서 60% 이상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60대 및 70대 미만은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대도시에서 가장 낮고,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60.4%로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요양보호사(48.3%)가 가장 낮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과 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였고, 비영리법인의 장기요양요원이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가 61.6%와 59.2%의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에서도 55~59%의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반면, 방문목욕(41.0%) 장기요양요원의 직장문화 관련 만족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및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자의 36.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1.4%는 보통, 22.2%는 (매우)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매우)만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및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가장 낮고, 농어촌에서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률을 보였으나, 물리(작업)치료사의 29.6%만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40.5%), 그 뒤로 국가·지자체(36.6%)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32.3%), 주야간보호(34.8%)등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표 6-59〉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10.1	39.4	42.8	6.0	1.7	100.0 (4,302)
성별						
남성	14.8	36.1	41.2	7.4	0.4	100.0 (264)
여성	9.8	39.7	42.9	5.9	1.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26.1	39.1	30.4	4.3	0.0	100.0 (46)
30~39세	21.7	38.0	29.3	7.6	3.3	100.0 (92)
40~49세	16.2	40.1	37.7	3.9	2.2	100.0 (305)
50~59세	9.6	41.5	41.0	5.8	2.1	100.0 (1,152)
60~69세	7.9	39.1	44.4	6.9	1.8	100.0 (2,077)
70세 이상	12.5	36.8	46.2	4.4	0.1	100.0 (629)
지역						
대도시	7.8	33.5	49.9	7.0	1.8	100.0 (1,721)
중소도시	12.7	39.8	39.7	6.2	1.6	100.0 (1,596)
농어촌	10.0	49.1	35.4	3.9	1.6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9.5	38.8	44.2	5.9	1.6	100.0 (3,826)
사회복지사	17.2	43.2	31.1	6.5	2.0	100.0 (289)
간호(조무)사	10.7	48.2	31.5	8.0	1.6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2.0	40.0	40.0	4.0	4.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9.5	38.7	44.8	5.5	1.6	100.0 (3,313)
영리법인	10.9	37.8	44.3	3.5	3.5	100.0 (335)
비영리법인	13.2	43.9	31.6	10.1	1.2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1	45.2	40.5	7.1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9.0	37.4	46.3	5.7	1.6	100.0 (2,886)
방문목욕	10.5	30.5	51.0	6.0	2.1	100.0 (148)
방문간호	15.4	46.2	30.8	0.0	7.7	100.0 (12)
주야간보호	16.1	43.1	32.2	7.0	1.6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0	43.8	35.6	6.8	2.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0.7	47.5	32.8	6.9	2.1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0.8	47.0	33.8	6.4	1.9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8	44.5	35.5	6.5	1.7	100.0 (403)
2019년	13.8	48.6	30.0	6.2	1.5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60〉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6.8	29.6	41.4	16.6	5.6	100.0 (4,302)
성별						
남성	7.4	29.6	47.0	12.3	3.7	100.0 (264)
여성	6.8	29.6	41.0	16.9	5.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0.9	21.7	45.7	17.4	4.3	100.0 (46)
30~39세	9.7	25.8	41.9	16.1	6.5	100.0 (92)
40~49세	7.4	26.9	48.8	13.9	3.0	100.0 (305)
50~59세	6.1	28.4	39.7	19.9	5.9	100.0 (1,152)
60~69세	6.5	30.6	40.6	16.3	6.0	100.0 (2,077)
70세 이상	8.2	31.1	43.2	13.0	4.5	100.0 (629)
지역						
대도시	5.6	24.7	46.0	17.0	6.7	100.0 (1,721)
중소도시	8.8	30.3	38.9	16.3	5.7	100.0 (1,596)
농어촌	5.8	37.1	37.2	16.5	3.3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6.9	29.6	41.2	16.7	5.7	100 (3,826)
사회복지사	6.9	29.5	41.0	18.0	4.6	100 (289)
간호(조무)사	5.3	32.6	44.9	13.6	3.6	100 (162)
물리(작업)치료사	7.4	22.2	44.4	18.5	7.4	100 (26)
운영주체						
개인	6.9	29.0	42.2	16.5	5.3	100.0 (3,313)
영리법인	6.8	26.8	43.9	14.0	8.5	100.0 (335)
비영리법인	6.0	34.5	35.8	18.4	5.3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7.3	29.3	39.0	19.5	4.9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7.2	29.2	40.7	16.7	6.3	100.0 (2,886)
방문목욕	6.3	26.0	43.2	19.9	4.7	100.0 (148)
방문간호	7.7	38.5	38.5	7.7	7.7	100.0 (12)
주야간보호	5.8	29.0	44.4	17.5	3.3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	37.0	37.0	17.8	4.1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6.9	32.6	40.4	15.8	4.3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6.2	33.9	42.0	13.8	4.2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7	29.2	44.2	16.5	4.5	100.0 (403)
2019년	7.9	33.3	35.7	18.3	4.9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만족도 관련 마지막 세부문항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2%가 (매우)만족, 43.1%가 보통, 10.7%가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의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40대, 70대 이상의 만족률이 5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만족률이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52.5%)가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고, 물리(작업)치료사(52.0%), 간호(조무)사(49.9%), 요양보호사(45.6%)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및 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보다 비영리법인(53.1%)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요원 만족률이 58.3%로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시설(10~29명), 주야간보호의 장기요양요원 만족률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목욕의 경우 40.6%의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표 6-61〉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7.9	38.3	43.1	8.8	1.9	100.0 (4,302)
성별						
남성	10.2	41.1	37.3	10.9	0.6	100.0 (264)
여성	7.7	38.2	43.5	8.7	1.9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5.6	31.1	48.9	4.4	0.0	100.0 (46)
30~39세	14.3	35.2	38.5	9.9	2.2	100.0 (92)
40~49세	9.2	41.7	40.6	7.8	0.7	100.0 (305)
50~59세	7.6	37.8	44.6	7.6	2.4	100.0 (1,152)
60~69세	6.8	37.5	43.4	10.4	1.9	100.0 (2,077)
70세 이상	9.8	41.8	41.0	6.2	1.1	100.0 (629)
지역						
대도시	6.2	32.5	49.4	9.9	1.9	100.0 (1,721)
중소도시	10.1	41.4	37.4	9.2	1.9	100.0 (1,596)
농어촌	7.1	43.6	41.4	6.2	1.6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7.7	37.9	43.6	9.0	1.8	100.0 (3,826)
사회복지사	10.7	41.8	38.5	6.7	2.3	100.0 (289)
간호(조무)사	6.7	43.2	39.3	9.4	1.5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0	44.0	44.0	4.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7.9	37.2	44.2	8.7	1.9	100.0 (3,313)
영리법인	6.7	38.1	43.1	9.8	2.3	100.0 (335)
비영리법인	8.9	44.2	36.3	9.3	1.3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2.4	41.5	53.7	2.4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7.9	37.1	43.5	9.5	2.1	100.0 (2,886)
방문목욕	6.7	33.9	48.9	9.7	0.8	100.0 (148)
방문간호	8.3	50.0	33.3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10.3	40.3	41.0	7.3	1.1	100.0 (325)
단기보호	0.0	50.0	50.0	0.0	0.0	100.0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	42.5	39.7	9.6	1.4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9	43.7	39.9	6.7	1.8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6.1	41.1	44.7	6.8	1.3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7.3	41.7	42.5	7.3	1.3	100.0 (403)
2019년	8.9	45.5	37.1	7.6	0.9	100.0 (3,73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이직경험 및 의향

지난 1년간의 이직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11.4%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88.6%는 이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간의 이직 유경험률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30대에서 이직 유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이직 유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농어촌과 비교해 이직 유경험률이 높게 응답되었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12.5%, 간호(조무)사 12.0%로 이직 유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물리(작업)치료사의 이직 유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14.6%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비영리법인의 장기요양요원 중 이직 유경험률이 가장 낮았다. 급여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30명~49명)이 13.1%로 가장 높은 이직 경험률을 나타냈으며, 방문목욕이 6.4%로 가장 낮은 이직률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이직 횟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난 1년간 타 업종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한 사람(111명)중 86.2%의 이직 횟수는 1회였고, 2회 이직자 비율은 10.3%, 3회 이상 이직자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중에서 2회 이상 이직자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2회 이상 이직자 비율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다회 이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9명을 대상으로 이직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 83.6%, 2회 9.0%, 3회 이상 7.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에게서 2회 이상 이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회 이상 이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다회 이직자 비율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중에서 다회 이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62〉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직 여부[1)2)]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11.4	88.6	100.0 (4,302)
성별			
남성	6.7	93.3	100.0 (264)
여성	11.7	88.3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0.6	89.4	100.0 (46)
30~39세	14.1	85.9	100.0 (92)
40~49세	8.1	91.9	100.0 (305)
50~59세	10.8	89.2	100.0 (1,152)
60~69세	12.0	88.0	100.0 (2,077)
70세 이상	11.6	88.4	100.0 (629)
지역			
대도시	11.6	88.4	100.0 (1,721)
중소도시	12.8	87.2	100.0 (1,596)
농어촌	8.7	91.3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1.3	88.7	100.0 (3,826)
사회복지사	12.5	87.5	100.0 (289)
간호(조무)사	12.0	88.0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0	92.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2.2	87.8	100.0 (3,313)
영리법인	9.8	90.2	100.0 (335)
비영리법인	7.3	92.7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4.6	85.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1.7	88.3	100.0 (2,886)
방문목욕	6.4	93.6	100.0 (148)
방문간호	8.3	91.7	100.0 (12)
주야간보호	12.0	88.0	100.0 (325)
단기보호	0.0	10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3	87.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2.2	87.8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13.1	86.9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6	91.4	100.0 (403)
2019년	8.0	92.0	100.0 (3,724)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지난 1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간의 이직 여부를 나타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63〉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직 횟수[1)2)3)]

(단위: %, 명, 회)

특성	타 업종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				
	1회	2회	3회 이상	계(명)		1회	2회	3회 이상	계(명)	
전체	86.2	10.3	3.6	100.0	(111)	83.6	9.0	7.3	100.0	(379)
성별										
남성	100.0	0.0	0.0	100.0	(4)	85.7	14.3	0.0	100.0	(13)
여성	85.8	10.6	3.7	100.0	(107)	83.5	9.0	7.6	100.0	(365)
연령대										
20~29세	100.0	0.0	0.0	100.0	(2)	100.0	0.0	0.0	100.0	(2)[4)]
30~39세	100.0	0.0	0.0	100.0	(7)	83.3	16.7	0.0	100.0	(6)[4)]
40~49세	100.0	0.0	0.0	100.0	(7)	94.1	0.0	5.9	100.0	(16)
50~59세	87.9	12.1	0.0	100.0	(33)	68.8	23.6	7.7	100.0	(92)
60~69세	83.7	14.3	2.0	100.0	(48)	89.3	3.2	7.5	100.0	(201)
70세 이상	76.9	0.0	23.1	100.0	(13)	85.1	7.9	7.0	100.0	(60)
지역										
대도시	77.1	14.1	8.6	100.0	(35)	80.7	12.4	6.9	100.0	(164)
중소도시	92.7	5.5	1.8	100.0	(55)	84.3	7.1	8.6	100.0	(149)
농어촌	85.7	14.3	0.0	100.0	(21)	89.4	4.5	6.1	100.0	(66)
직종										
요양보호사	83.3	12.2	4.4	100.0	(90)	83.0	9.0	8.0	100.0	(341)
사회복지사	100.0	0.0	0.0	100.0	(13)	87.5	12.5	0.0	100.0	(24)
간호(조무)사	100.0	0.0	0.0	100.0	(7)	91.6	8.3	0.0	100.0	(12)
물리(작업)치료사	100.0	0.0	0.0	100.0	(1)	100.0	0.0	0.0	100.0	(1)[4)]
운영주체										
개인	89.8	5.7	4.5	100.0	(88)	83.5	8.1	8.4	100.0	(318)
영리법인	40.0	60.0	0.0	100.0	(11)	90.9	4.5	4.5	100.0	(22)
비영리법인	100.0	0.0	0.0	100.0	(9)	82.9	17.1	0.0	100.0	(36)
국가·지방자치단체	100.0	0.0	0.0	100.0	(4)	66.7	33.3	0.0	100.0	(3)[4)]
급여유형										
방문요양	81.3	14.1	4.7	100.0	(64)	82.3	9.5	8.2	100.0	(274)
방문목욕	75.0	25.0	0.0	100.0	(4)	66.7	16.7	16.7	100.0	(6)[4)]
방문간호	0.0	0.0	0.0	0.0	(0)	100.0	0.0	0.0	100.0	(1)[4)]
주야간보호	100.0	0.0	0.0	100.0	(13)	88.5	7.7	3.8	100.0	(26)
단기보호	0.0	0.0	0.0	0.0	(0)	0.0	0.0	0.0	0.0	(0)[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00.0	0.0	0.0	100.0	(2)	100.0	0.0	0.0	100.0	(6)[4)]
노인요양시설 (10~29명)	77.8	11.1	11.1	100.0	(9)	91.3	8.7	0.0	100.0	(23)
노인요양시설 (30~49명)	100.0	0.0	0.0	100.0	(7)	88.9	5.6	5.6	100.0	(18)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100.0	0.0	0.0	100.0	(11)	83.3	8.3	8.3	100.0	(24)
2019년	68.4	31.3	0.4	100.0	(72)	81.0	13.3	5.7	100.0	(253)

주: 1) 타 업종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한 111명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한 379명의 자료를 분석
2) 지난 1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간의 이직 횟수를 나타냄
3)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 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기관 간 이직자 379명에게 이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중복 응답 가능). 그 결과, 개인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전 기관에서 일거리 제공이 중단되어서(이용자 사망, 거부 등)라는 응답이 24.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설장 또는 직원과의 갈등(15.7%),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14.6%)도 10% 이상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 낮은 임금 수준(9.4%), 고용 불안정성(8.2%),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불만족(8.2%), 기관의 해고 통보 또는 기관의 휴·폐업(8.0%)의 응답도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임금, 시설장 또는 직원과의 갈등, 기관의 휴폐업 또는 해고 통보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개인사정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는 타 직원과의 갈등이나 이전 기관에서의 업무 불만족, 고용 불안정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60대의 경우는 개인사정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특히 일거리 중단(36.3%)이나 이용자 및 가족과의 갈등(20.6%)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농어촌의 경우 담당업무 불만족(18.2%)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장 또는 직원과의 갈등이라는 응답(41.7%)이 많았고, 업무 불만족(21.7%)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낮은 임금수준이 23.1%로 개인 사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64〉 장기요양요원의 타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직한 이유(중복 응답)[1)2)]

(단위: %, 명)

특성	낮은 임금 수준	고용 불안정성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	시설장, 직원과의 갈등	이전 기관의 담당 업무 불만족	이전 기관의 일거리 중단	기관의 해고 통보, 기관의 휴·폐업	개인 사정	기타	계 (명)
전체	9.4	8.2	14.6	15.7	8.2	24.5	8.0	31.8	3.5	(379)
성별										
남성	14.3	0.0	0.0	21.4	7.7	23.1	21.4	21.4	0.0	(13)
여성	9.3	8.5	15.1	15.5	8.1	24.6	7.4	32.3	3.7	(365)
연령대										
20~29세	33.3	0.0	0.0	0.0	33.3	0.0	33.3	50.0	0.0	(2)[4)]
30~39세	50.0	16.7	0.0	50.0	16.7	0.0	16.7	16.7	0.0	(6)[4)]
40~49세	16.7	5.5	0.0	27.8	16.7	22.2	33.3	22.2	0.0	(16)
50~59세	12.0	14.3	15.3	23.5	17.2	18.5	5.5	27.3	5.4	(92)
60~69세	5.7	4.5	10.4	12.6	5.4	27.4	6.8	38.9	2.3	(201)
70세 이상	13.3	11.9	33.1	8.2	0.0	30.0	6.7	19.8	5.0	(60)
지역										
대도시	7.2	5.4	20.6	6.5	3.6	36.3	8.2	26.8	0.7	(164)
중소도시	11.8	11.6	11.7	25.0	8.8	19.3	5.0	34.8	8.0	(149)
농어촌	9.4	7.6	6.1	18.2	18.3	7.6	13.8	37.9	0.0	(66)
직종										
요양보호사	8.1	8.0	15.9	13.6	6.9	27.1	7.4	32.2	3.3	(341)
사회복지사	20.8	8.3	0.0	41.7	21.7	0.0	12.5	25.0	8.3	(24)
간호(조무)사	23.1	15.4	7.4	23.1	15.4	0.0	15.4	33.3	0.0	(12)
물리(작업)치료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운영주체										
개인	9.6	8.8	15.2	15.6	8.6	23.5	6.6	33.0	4.1	(318)
영리법인	4.5	4.5	13.6	27.3	4.5	18.2	32.1	22.5	0.0	(22)
비영리법인	8.3	5.4	8.3	11.1	8.3	38.9	5.8	24.8	0.0	(36)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33.3	0.0	66.7	0.0	(3)[4)]
급여유형										
방문요양	4.7	8.2	18.9	11.7	5.8	31.9	7.0	29.5	3.6	(274)
방문목욕	16.7	16.7	16.7	16.7	16.7	50.0	0.0	33.3	0.0	(6)[4)]
방문간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주야간보호	15.4	7.7	0.0	42.3	23.1	0.0	15.4	34.6	3.7	(26)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3	0.0	0.0	33.3	16.7	14.3	16.7	42.9	4.3	(6)[4)]
노인요양시설(10~29명)	17.4	4.3	4.3	17.4	13.0	4.3	8.7	47.8	5.3	(23)
노인요양시설(30~49명)	22.2	0.0	5.3	27.8	5.6	0.0	5.6	42.1	4.2	(18)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3.3	16.7	0.0	16.7	12.5	4.2	12.5	33.3	3.6	(24)
2019년	6.1	11.2	11.6	6.3	11.8	20.4	10.9	30.4	5.7	(253)

주: 1)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한 379명의 자료를 분석 (중복 응답)
2)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 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3) 기타 이유로 쉬고 싶어서, 육아(양육), 정년퇴직 등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향후 1년 이내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1년 이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9.4%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이직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에서 각각 21.3%, 33.4%로 높은 이직 의향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10.3%)에서 가장 높은 이직 의향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7.9%) 대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서 20% 이상 높은 이직 의향률이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장기요양요원에게서 12.2%의 가장 높은 이직 의향률이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대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7.8%), 주야간보호(1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 의향률을 보였다.

이직 의향이 있다는 404명의 응답자 대상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65.6%는 근무조건이 나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3.4%는 타 보건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그리고 18.3%는 보건의료·사회복지 이외의 업종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에게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이직 희망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타 장기요양기관, 중소도시의 경우 보건복지 이외의 업종, 농어촌의 경우 장기요양 외 다른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장기요양 이외)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28.6%와 24.2%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외 기관으로의 이직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에서 장기요양기관 외 기관 또는 업종으로의 이직 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65〉 장기요양요원의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과 이직 희망 업종[1)]

(단위: %, 명)

특성	이직 의향[1)]				이직을 희망하는 업종[2)]					
	있다	없다	계(명)		근무조건이 나은 장기요양기관	보건의료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	보건의료·사회복지 이외 업종	기타[3)]	계(명)	
전체	9.4	90.6	100.0	(4,302)	65.6	13.4	18.3	2.6	100.0	(404)
성별										
남성	9.0	91.0	100.0	(264)	73.9	17.4	4.3	4.3	100.0	(24)
여성	9.4	90.6	100.0	(4,038)	65.2	13.1	19.2	2.6	100.0	(380)
연령대										
20~29세	21.3	78.7	100.0	(46)	30.0	40.0	20.0	10.0	100.0	(10)
30~39세	33.4	66.6	100.0	(92)	38.7	22.6	32.3	6.5	100.0	(31)
40~49세	16.1	83.9	100.0	(305)	44.9	22.4	30.6	2.0	100.0	(49)
50~59세	10.2	89.8	100.0	(1,152)	64.0	16.2	17.3	2.5	100.0	(118)
60~69세	8.4	91.6	100.0	(2,077)	77.2	5.5	15.1	2.2	100.0	(174)
70세 이상	3.6	96.4	100.0	(629)	82.6	13.0	0.0	4.3	100.0	(23)
지역										
대도시	9.2	90.8	100.0	(1,721)	71.1	12.0	16.1	0.7	100.0	(159)
중소도시	10.3	89.7	100.0	(1,596)	61.1	13.5	20.9	4.5	100.0	(164)
농어촌	8.2	91.8	100.0	(985)	64.2	16.0	17.3	2.5	100.0	(81)
직종										
요양보호사	7.9	92.1	100.0	(3,826)	69.9	8.5	18.9	2.7	100.0	(302)
사회복지사	22.1	77.9	100.0	(289)	54.0	28.6	15.9	1.6	100.0	(64)
간호(조무)사	20.2	79.8	100.0	(162)	57.6	24.2	15.2	3.0	100.0	(33)
물리(작업)치료사	23.1	76.9	100.0	(26)	40.0	40.0	20.0	0.0	100.0	(6)[3)]
운영주체										
개인	9.6	90.4	100.0	(3,313)	67.8	11.8	18.2	2.3	100.0	(317)
영리법인	7.2	92.8	100.0	(335)	54.2	12.5	33.3	0.0	100.0	(24)
비영리법인	9.5	90.5	100.0	(613)	57.9	22.8	14.0	5.3	100.0	(58)
국가·지방자치단체	12.2	87.8	100.0	(41)	66.7	16.7	16.7	0.0	100.0	(5)[3)]
급여유형										
방문요양	7.3	92.7	100.0	(2,886)	70.7	6.3	21.5	1.5	100.0	(209)
방문목욕	5.8	94.2	100.0	(148)	66.7	11.1	22.2	0.0	100.0	(9)[3)]
방문간호	15.4	84.6	100.0	(12)	50.0	50.0	0.0	0.0	100.0	(2)[3)]
주야간보호	16.2	83.8	100.0	(325)	54.7	24.5	17.0	3.8	100.0	(53)
단기보호	0.0	100.0	100.0	(3)	0.0	0.0	0.0	0.0	0.0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8	82.2	100.0	(73)	83.3	8.3	8.3	0.0	100.0	(13)
노인요양시설(10~29명)	13.9	86.1	100.0	(262)	70.3	16.2	10.8	2.7	100.0	(36)
노인요양시설(30~49명)	14.9	85.1	100.0	(191)	69.0	17.2	10.3	3.4	100.0	(29)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3.3	86.7	100.0	(403)	48.1	25.9	18.5	7.4	100.0	(54)
2019년	14.6	85.4	100.0	(3,734)	64.0	17.9	15.3	2.8	100.0	(545)

주: 1) 이직의향은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은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 중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04명의 자료를 분석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개선사항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순위까지 질문하였다. 먼저,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로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법정 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이 18.2%로 나타났고,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6.9%, 정규직 고용 확대 4.4%, 업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제공 2.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특히 임금수준 상향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75.6%). 또한, 20대~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관련 교육 제공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50~60대에서는 법정 근로휴게시간 보장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농어촌에서 업무관련 훈련 제공 응답률이 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물리(작업)치료사(79.2%)중에서 임금수준 상향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요양보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및 훈련 관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영리법인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70% 이상 높은 임금 수준 상향 응답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의 경우 교육 관련 응답률이 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시설급여 제공기관에서는 법정 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이 높게 나타났다.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순위로는 법정 휴게, 근로시간 보장 26.4%로 가장 높았고, 임금수준 상향 19.4%, 임금격차 축소 18.4%, 업무관련 교육 제공 16.4%, 정규직 고용 확대 13.0% 등이 10% 이상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의 경우 정규직 고용 확대 응답률이 높았고, 남성은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및 교육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법정 수당, 휴게근로시간 응답률이 33.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30대에서 승진, 승급체계 마련이 13~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대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서 정규직 고용보다는 승진·승급 체계, 업무 교육 관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에서 특히 교육 관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33.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1,2순위 모두에서 교육 및 훈련 제공에 대한 필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6-6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1]

(단위: %, 명)

특성	법정수당, 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임금 수준 상향	정규직 고용 확대	승진, 승급체계 마련	업무관련 교육, 훈련 제공	기타[2]	계(명)
전체	18.2	6.9	66.2	4.4	0.7	2.7	0.9	100.0 (4,302)
성별								
남성	18.0	5.6	66.7	2.1	0.4	4.3	2.8	100.0 (264)
여성	18.2	6.9	66.2	4.6	0.7	2.6	0.7	100.0 (4,038)
연령대								
20~29세	8.9	6.7	75.6	0.0	2.2	6.7	0.0	100.0 (46)
30~39세	14.0	6.5	66.7	2.2	1.1	8.6	1.1	100.0 (92)
40~49세	13.3	10.4	66.0	4.4	1.1	4.5	0.3	100.0 (305)
50~59세	19.1	5.8	66.4	4.1	1.2	2.9	0.4	100.0 (1,152)
60~69세	19.3	7.1	64.8	5.2	0.5	2.1	1.0	100.0 (2,077)
70세 이상	16.6	6.3	69.9	3.2	0.1	2.4	1.6	100.0 (629)
지역								
대도시	17.9	6.3	67.8	4.3	0.6	1.8	1.2	100.0 (1,721)
중소도시	18.3	7.4	65.4	4.6	0.9	2.8	0.5	100.0 (1,596)
농어촌	18.6	6.8	64.7	4.5	0.5	4.1	0.7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18.8	6.7	66.2	4.7	0.6	2.2	0.9	100.0 (3,826)
사회복지사	10.8	8.3	68.5	2.5	1.7	7.4	0.8	100.0 (289)
간호(조무)사	19.5	8.4	60.6	2.1	1.9	6.9	0.5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12.5	4.2	79.2	0.0	0.0	4.2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18.9	6.2	65.7	4.8	0.7	2.8	0.9	100.0 (3,313)
영리법인	14.2	8.9	73.2	2.7	0.0	0.9	0.2	100.0 (335)
비영리법인	16.6	9.4	65.1	3.7	0.9	3.5	0.8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17.1	2.4	70.7	4.9	0.0	2.4	2.4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17.8	6.6	67.2	5.0	0.6	1.9	1.0	100.0 (2,886)
방문목욕	19.3	7.1	62.9	6.4	0.8	2.6	0.9	100.0 (148)
방문간호	15.4	7.7	53.8	7.7	7.7	7.7	0.0	100.0 (12)
주야간보호	16.5	7.0	65.4	3.2	1.2	6.3	0.4	100.0 (325)
단기보호	50.0	0.0	50.0	0.0	0.0	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2	9.7	58.3	2.8	1.4	4.2	1.4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9.9	7.6	63.6	1.8	1.4	5.1	0.5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23.4	6.3	63.4	3.5	0.3	2.8	0.2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8.0	8.1	65.8	3.3	0.5	3.8	0.6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사회적 인식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장의 부당 대우 또는 갑질, 교육 감소(교육 시 근무 시간 인정)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67〉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1)]

(단위: %, 명)

특성	법정수당, 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임금 수준 상향	정규직 고용 확대	승진, 승급체계 마련	업무관련 교육, 훈련 제공	기타[2)]	계(명)
전체	26.4	18.4	19.4	13.0	4.7	16.4	1.6	100.0 (4,256)
성별								
남성	22.8	21.0	17.2	9.1	6.5	19.2	4.2	100.0 (257)
여성	26.7	18.2	19.6	13.3	4.5	16.3	1.4	100.0 (3,999)
연령대								
20~29세	26.1	21.7	15.2	4.3	13.0	19.6	0.0	100.0 (46)
30~39세	24.7	14.6	15.7	9.0	14.6	20.2	1.1	100.0 (89)
40~49세	24.5	19.9	18.9	8.8	8.1	19.0	0.8	100.0 (300)
50~59세	25.2	18.6	17.3	13.4	5.5	18.9	1.2	100.0 (1,151)
60~69세	25.3	17.9	21.4	14.6	3.6	15.5	1.6	100.0 (2,048)
70세 이상	33.4	19.2	17.9	10.6	3.1	12.9	3.0	100.0 (626)
지역								
대도시	25.1	18.3	17.7	15.0	5.1	17.0	1.8	100.0 (1,691)
중소도시	27.6	19.7	19.9	13.3	3.2	14.3	1.9	100.0 (1,583)
농어촌	26.8	16.4	21.6	9.2	6.3	19.0	0.7	100.0 (981)
직종								
요양보호사	26.7	19.0	19.5	13.9	3.8	15.4	1.6	100.0 (3,784)
사회복지사	23.3	12.7	17.4	6.1	12.2	27.0	1.4	100.0 (286)
간호(조무)사	25.7	13.9	20.7	6.2	10.5	21.0	1.9	100.0 (160)
물리(작업)치료사	24.0	16.0	16.0	8.0	12.0	24.0	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26.7	19.0	19.6	13.1	4.4	15.8	1.4	100.0 (3,280)
영리법인	30.2	17.5	16.6	12.6	3.7	17.0	2.3	100.0 (330)
비영리법인	22.3	15.3	20.4	13.3	6.9	19.5	2.3	100.0 (606)
국가·지방자치단체	35.0	20.0	15.0	10.0	2.5	17.5	0.0	100.0 (40)
급여유형								
방문요양	26.7	19.1	18.8	14.6	3.3	15.9	1.7	100.0 (2,850)
방문목욕	26.9	25.0	18.3	14.1	3.0	11.9	0.9	100.0 (145)
방문간호	16.7	16.7	25.0	8.3	0.0	33.3	0.0	100.0 (12)
주야간보호	25.9	13.3	19.0	9.9	10.2	20.8	0.8	100.0 (323)
단기보호	33.3	0.0	33.3	0.0	0.0	33.3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0	15.3	25.0	9.7	6.9	16.7	1.4	100.0 (72)
노인요양시설(10~29명)	25.7	14.4	21.5	10.2	6.8	20.0	1.3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25.5	17.1	24.8	9.5	5.6	15.7	1.8	100.0 (190)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6.0	18.9	19.6	8.8	8.2	16.4	2.0	100.0 (398)

주: 1) 전체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중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 2순위까지 응답한 4,256명 자료를 분석
2) 기타: 사회적 인식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장의 부당 대우 또는 갑질, 교육 감소(교육 시 근무시간 인정)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장기요양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순위까지 질문하였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사항 1순위로는 업무보조 장비 또는 기기지원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 교육 17.2%, 서류업무 축소 또는 행정전산화 15.6%, 사회적 인식 개선 14.9%, 부당 대우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 12.6%, 권익 보호기관 강화 12.6% 라는 응답이 고르게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에게서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 이용자(가족)교육 강화 등 종사자 권익보호 관련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는 행정 및 서류업무 간소화에 대한 응답률이 30%(30대는 50%)이상 높게 나타났고, 70대에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21.2%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대비 타 직종에서 업무장비 지원 응답률이 높았는데, 특히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32.0%의 응답률을 보였다. 사회복지사는 서류업무 간소화 및 행정전산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49.8%).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특히 장비 지원 응답률(36.5%)과 부당대우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24.4%)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리법인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사회적 인식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급여 제공기관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장비 지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방문간호의 경우는 행정 간소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9.6%,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교육이 2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권익보호기관 강화(15.4%)와 부당대우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14.6%)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업무장비 지원 9.7%, 서류업무 축소 7.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60대에서 사회적인식 개선 응답률이 32.6%로 높았고, 20~30대에서는 서류업무 축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에게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업무 장비 지원과 서류업무 축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 장기요양요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인식개선 응답률을 보였고, 영리법인에서는 부당대우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또는 주야간보호보다 방문급여 유형 중에서 인식 개선 응답률이 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68〉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1]

(단위: %, 명)

특성	업무 보조 장비, 기기 지원	서류 업무 축소, 행정 전산화	부당 대우 적극 대응	권익 보호 기관 확대 강화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 (가족) 교육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2]	계(명)
전체	26.4	15.6	12.6	12.6	17.2	14.9	0.7	100.0 (4,302)
성별								
남성	25.9	23.7	8.8	13.6	11.1	14.1	2.7	100.0 (264)
여성	26.4	15.1	12.8	12.5	17.6	15.0	0.6	100.0 (4,038)
연령대								
20~29세	14.9	36.2	14.9	10.6	10.6	12.8	0.0	100.0 (46)
30~39세	15.1	50.5	11.8	10.8	6.5	5.4	0.0	100.0 (92)
40~49세	17.2	31.9	11.8	13.6	12.6	12.4	0.6	100.0 (305)
50~59세	29.3	15.8	12.8	11.0	15.8	14.7	0.6	100.0 (1,152)
60~69세	27.1	12.2	12.7	14.0	19.1	14.0	0.9	100.0 (2,077)
70세 이상	25.8	12.1	12.0	10.7	17.6	21.2	0.6	100.0 (629)
지역								
대도시	25.8	12.5	12.5	13.4	17.8	17.3	0.7	100.0 (1,721)
중소도시	26.9	17.9	12.0	13.0	15.5	13.8	0.9	100.0 (1,596)
농어촌	26.7	17.2	13.7	10.5	18.7	12.6	0.4	100.0 (985)
직종								
요양보호사	27.1	12.2	13.2	12.7	18.2	15.7	0.7	100.0 (3,826)
사회복지사	16.0	49.8	5.9	11.6	7.5	8.4	0.8	100.0 (289)
간호(조무)사	26.5	31.8	9.3	11.7	10.2	10.3	0.2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32.0	32.0	8.0	12.0	8.0	8.0	0.0	100.0 (26)
운영주체								
개인	26.3	14.9	12.5	13.2	17.7	14.8	0.6	100.0 (3,313)
영리법인	22.2	18.7	12.4	11.6	14.2	20.5	0.4	100.0 (335)
비영리법인	28.7	18.2	12.3	10.3	16.3	12.7	1.6	100.0 (613)
국가·지방자치단체	36.5	7.3	24.4	7.3	14.6	9.8	0.0	100.0 (41)
급여유형								
방문요양	22.2	13.3	14.6	12.5	20.6	16.2	0.7	100.0 (2,886)
방문목욕	29.5	9.7	10.9	14.7	20.4	14.0	0.9	100.0 (148)
방문간호	16.7	41.7	8.3	8.3	16.7	8.3	0.0	100.0 (12)
주야간보호	25.2	31.1	7.9	13.1	8.0	12.9	1.7	100.0 (325)
단기보호	50.0	50.0	0.0	0.0	0.0	0.0	0.0	100.0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4.7	25.0	9.7	11.1	6.9	12.5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40.7	20.1	7.1	11.4	7.4	13.1	0.2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1.0	18.8	7.1	10.9	8.3	12.7	1.1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38.6	14.4	9.4	14.3	11.6	11.0	0.6	100.0 (403)

주: 1) 장기요양요원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가족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 시간 연장, 임금 상향, 휴게공간 마련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표 6-69〉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1]

(단위: %, 명)

특성	업무 보조 장비, 기기 지원	서류 업무 축소, 행정 전산화	부당 대우 적극 대응	권익 보호 기관 확대 강화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 (가족) 교육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2]	계(명)
전체	9.7	7.8	14.6	15.4	21.6	29.6	1.1	100.0 (4,270)
성별								
남성	14.3	9.4	10.5	14.5	20.2	28.1	3.0	100.0 (257)
여성	9.4	7.7	14.9	15.5	21.7	29.7	1.0	100.0 (4,013)
연령대								
20~29세	11.4	15.9	13.6	11.4	20.5	27.3	0.0	100.0 (44)
30~39세	11.8	12.9	9.7	21.5	23.7	20.4	0.0	100.0 (93)
40~49세	9.6	11.7	14.3	15.3	19.2	28.4	1.4	100.0 (301)
50~59세	11.3	7.7	14.1	19.0	20.4	27.1	0.3	100.0 (1,144)
60~69세	8.0	7.6	14.8	13.7	22.4	32.6	1.0	100.0 (2,064)
70세 이상	12.5	5.6	16.2	13.8	22.3	26.7	2.9	100.0 (623)
지역								
대도시	8.6	8.4	15.5	16.3	21.3	29.1	0.9	100.0 (1,703)
중소도시	10.5	7.8	13.9	15.0	21.6	29.2	1.9	100.0 (1,583)
농어촌	10.5	6.9	14.1	14.7	22.3	31.2	0.3	100.0 (983)
직종								
요양보호사	9.3	6.9	15.1	15.2	21.9	30.5	1.1	100.0 (3,798)
사회복지사	12.9	16.3	10.3	16.7	19.8	22.8	1.3	100.0 (286)
간호(조무)사	13.5	13.6	10.9	17.7	19.6	23.5	1.2	100.0 (160)
물리(작업)치료사	20.0	20.0	8.0	16.0	20.0	16.0	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10.3	7.7	13.3	15.2	22.3	30.2	1.0	100.0 (3,294)
영리법인	5.7	5.7	23.4	21.4	15.5	25.9	2.5	100.0 (329)
비영리법인	8.9	9.8	17.0	13.0	21.1	29.1	1.1	100.0 (609)
국가·지방자치단체	7.5	7.5	17.5	22.5	22.5	22.5	0.0	100.0 (40)
급여유형								
방문요양	8.7	5.9	15.3	14.8	23.2	31.1	1.0	100.0 (2,863)
방문목욕	11.1	6.8	16.6	9.1	21.7	34.3	0.4	100.0 (146)
방문간호	8.3	8.3	8.3	25.0	16.7	33.3	0.0	100.0 (12)
주야간보호	10.5	11.8	12.6	19.6	22.1	22.7	0.7	100.0 (321)
단기보호	0.0	0.0	0.0	0.0	50.0	50.0	0.0	100.0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4	13.7	13.7	12.3	16.4	27.4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12.3	12.0	12.2	16.8	17.1	27.6	2.1	100.0 (261)
노인요양시설(30~49명)	13.2	12.7	12.4	19.4	18.4	23.4	0.6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11.6	12.5	13.6	16.9	15.7	27.8	1.9	100.0 (399)

주: 1) 전체 응답자중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순위까지 응답한 4,270명의 자료를 분석
2) 기타: 가족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시간 연장, 임금 상향, 휴게공간 마련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근무현황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와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2,249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재가급여와 관련한 근무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지난 1개월 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해당 응답자 중 96.5%는 지난 1개월 급여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급여제공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66.7%)가 상대적으로 낮고, 60대 및 70대 이상에서는 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급여제공률이 약 3%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70〉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요양급여 제공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96.5	3.5	100.0 (2,249)
성별			
남성	82.9	17.1	100.0 (35)
여성	96.7	3.3	100.0 (2,214)
연령대			
20~29세	75.0	25.0	100.0 (4)[2]
30~39세	66.7	33.3	100.0 (9)[2]
40~49세	91.5	8.5	100.0 (83)
50~59세	95.5	4.5	100.0 (497)
60~69세	97.1	2.9	100.0 (1,275)
70세 이상	97.5	2.5	100.0 (382)
지역			
대도시	97.0	3.0	100.0 (964)
중소도시	97.2	2.8	100.0 (847)
농어촌	94.0	6.0	100.0 (438)
운영주체			
개인	96.7	3.3	100.0 (1,882)
영리법인	94.5	5.5	100.0 (143)
비영리법인	96.3	3.7	100.0 (211)
국가·지방자치단체	100.0	0.0	100.0 (13)
2019년	95.1	4.9	100.0 (1,831)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2,170명을 대상으로 담당 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수를 조사하였다. 담당 이용자수는 1명 47.6%, 2명 36.7%, 3명 이상 15.8%로 나타났다. 1일 최대 방문자수는 절반가까이가 1명(48.8%), 2명 38.6%, 3명 10.7%, 4명 이상은 1.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에게서 담당 이용자수, 1일 최대 방문자수가 3명 이상인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보다 50, 60대에서 담당자수 및 1일 최대 방문자수가 3명 이상일 비율이 높았다(20~40대는 유효 응답자수가 적어 해석에서 제외함).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특히 담당 이용자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수가 많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37.1%는 지난 1개월 간 3명이상을 담당하고, 32.5%는 1일 최대 3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3명 이상 이용자를 담당하고, 1일 최대 3명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71〉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단위: %, 명)

특성	담당 이용자 수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1명	2명	3명이상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명)
전체	47.6	36.7	15.8	48.8	38.6	10.7	1.9	100.0 (2,170)
성별								
남성	44.8	44.8	10.3	46.6	53.4	0.0	0.0	100.0 (29)
여성	47.6	36.6	15.8	48.8	38.4	10.8	1.9	100.0 (2,141)
연령대								
20~29세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3)[2]
30~39세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6)[2]
40~49세	50.0	34.2	15.8	50.0	38.2	11.8	0.0	100.0 (76)
50~59세	42.5	38.7	18.8	43.8	40.9	11.3	3.9	100.0 (475)
60~69세	47.6	36.5	15.9	49.2	38.4	10.9	1.5	100.0 (1,238)
70세 이상	53.7	34.5	11.8	53.9	36.1	9.0	1.0	100.0 (372)
지역								
대도시	56.5	36.3	7.3	57.2	37.5	5.0	0.4	100.0 (935)
중소도시	47.0	38.3	14.7	49.0	40.2	9.1	1.6	100.0 (823)
농어촌	28.6	34.4	37.1	29.3	38.1	26.6	5.9	100.0 (412)
운영주체								
개인	48.7	36.4	14.9	49.9	37.9	10.2	1.9	100.0 (1,819)
영리법인	48.4	35.0	16.6	48.4	37.4	9.8	4.4	100.0 (135)
비영리법인	36.9	39.2	23.8	38.9	45.4	15.7	0.0	100.0 (203)
국가·지방자치단체	50.0	50.0	0.0	50.0	50.0	0.0	0.0	100.0 (13)
2019년	50.2	37.0	12.8	51.9	37.1	9.9	1.1	100.0 (1,742)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지난 1개월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적이 있는 2,170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 간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해당 응답자 중 9.4%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27.8%),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방문목욕 급여 제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와 농어촌,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방문목욕 급여 제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72〉 지난 1개월 동안 방문목욕 급여 제공 여부[1)2)]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9.4	90.6	100.0 (2,249)
성별			
남성	27.8	72.2	100.0 (35)
여성	9.1	90.9	100.0 (2,214)
연령대			
20~29세	25.0	75.0	100.0 (4)[2)]
30~39세	88.9	11.1	100.0 (9)[2)]
40~49세	9.8	90.2	100.0 (83)
50~59세	9.2	90.8	100.0 (497)
60~69세	9.2	90.8	100.0 (1,275)
70세 이상	8.2	91.8	100.0 (382)
지역			
대도시	6.2	93.8	100.0 (964)
중소도시	12.2	87.8	100.0 (847)
농어촌	10.9	89.1	100.0 (438)
운영주체			
개인	9.6	90.4	100.0 (1,882)
영리법인	14.5	85.5	100.0 (143)
비영리법인	4.6	95.4	100.0 (211)
국가·지방자치단체	0.0	100.0	100.0 (13)
2019년	10.0	90.0	100.0 (1,831)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담당 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를 조사하였다. 담당 이용자 수는 1명 52.1%, 2명 17.6%, 3명 이상 30.3%로 나타났다.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는 1명 62.5%, 2명 11.4%, 3명 6.6%, 4명 이상 19.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에게서 3명 이상 담당 이용자,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70대 이상 대비 50대에서 담당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담당 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어촌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는 절반 가까이 3명 이상을 담당하고(49.0%), 1일 최대 3명 또는 4명 이상(42.5%)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3〉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단위: %, 명)

특성	담당 이용자 수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명)
전체	52.1	17.6	30.3	62.5	11.4	6.6	19.5	100.0 (212)
성별								
남성	50.0	10.0	40.0	60.0	10.0	0.0	30.0	100.0 (10)
여성	52.0	18.1	29.8	62.6	11.6	6.9	18.8	100.0 (202)
연령대								
20~29세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1)[2]
30~39세	42.9	42.9	14.3	42.9	42.9	0.0	14.3	100.0 (8)[2]
40~49세	62.3	0.0	37.7	62.5	0.0	0.0	37.5	100.0 (8)[2]
50~59세	50.0	6.8	43.3	64.4	2.2	4.4	28.9	100.0 (46)
60~69세	50.0	21.5	28.6	59.6	14.0	8.2	18.2	100.0 (118)
70세 이상	62.5	18.8	18.8	77.4	9.7	6.5	6.5	100.0 (31)
지역								
대도시	61.7	11.7	26.7	68.0	10.0	10.0	11.7	100.0 (60)
중소도시	53.7	22.8	23.5	64.3	14.8	6.8	14.1	100.0 (104)
농어촌	36.7	14.3	49.0	53.2	4.3	2.1	40.4	100.0 (48)
운영주체								
개인	53.6	16.6	29.8	65.1	9.5	7.4	18.0	100.0 (181)
영리법인	52.4	28.6	19.0	54.5	27.3	4.5	13.6	100.0 (21)
비영리법인	20.0	10.0	70.0	22.2	11.1	0.0	66.7	100.0 (10)
2019년	59.6	18.0	11.7	66.7	15.8	3.8	13.8	100.0 (183)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지난 1개월간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한 적이 있는 212명의 자료를 분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응답자가 없어 운영 주체 특성에서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 간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해당 응답자 중 1.2%가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에서 방문간호 급여 제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와 농어촌,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방문간호 급여 제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74〉 지난 1개월 동안 방문간호 급여 제공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2	98.8	100.0 (2,249)
성별			
남성	0.0	100.0	100.0 (35)
여성	1.3	98.7	100.0 (2,214)
연령대			
20-29세	0.0	100.0	100.0 (4)[2]
30~39세	55.6	44.4	100.0 (9)[2]
40~49세	3.8	96.2	100.0 (83)
50~59세	1.5	98.5	100.0 (497)
60~69세	1.0	99.0	100.0 (1,275)
70세 이상	0.0	100.0	100.0 (382)
지역			
대도시	0.9	99.1	100.0 (964)
중소도시	1.3	98.7	100.0 (847)
농어촌	1.8	98.2	100.0 (438)
운영주체			
개인	1.2	98.8	100.0 (1,882)
영리법인	2.9	97.1	100.0 (143)
비영리법인	0.7	99.3	100.0 (211)
국가지방자치단체	1.0	99.0	100.0 (13)
2019년	0.5	99.5	100.0 (1,831)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담당 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를 조사하였다. 담당 이용자 수는 1명 42.9%, 2명 17.9%, 3명 이상 39.3%로 나타났다.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는 1명 50.0%, 2명 17.9%, 3명 14.3%, 4명 이상 17.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대비 40~50대에서 담당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담당 이용자 수와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어촌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57.1%는 3명 이상을 담당하고, 50.0%는 1일 최대 3명 또는 4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응답자 수가 적어 성별, 운영주체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유보하였다.

〈표 6-75〉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단위: %, 명)

특성	담당 이용자 수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계(명)
전체	42.9	17.9	39.3	50.0	17.9	14.3	17.9	100.0 (28)
성별								
남성	0.0	0.0	0.0	0.0	0.0	0.0	0.0	0.0 (0)[3]
여성	42.9	17.9	39.3	50.0	17.9	14.3	17.9	100.0 (28)
연령대								
30~39세	0.0	75.0	25.0	0.0	80.0	0.0	20.0	100.0 (5)[3]
40~49세	33.3	0.0	66.7	33.3	0.0	33.3	33.3	100.0 (3)[3]
50~59세	12.5	12.5	75.0	25.0	12.5	37.5	25.0	100.0 (8)[3]
60~69세	76.9	7.7	15.4	76.9	7.7	0.0	15.4	100.0 (13)
7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100.0 (0)[3]
지역								
대도시	55.6	11.1	33.3	60.0	10.0	10.0	20.0	100 (9)[3]
중소도시	36.4	36.4	27.3	45.5	36.4	0.0	18.2	100 (11)
농어촌	42.9	0.0	57.1	37.5	12.5	37.5	12.5	100 (8)[3]
운영주체								
개인	39.1	21.7	39.1	43.5	21.7	17.4	17.4	100.0 (22)
영리법인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4)[3]
비영리법인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1)[3]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0.0	0.0	0.0	0.0	0.0	100.0 (0)[3]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지난 1개월간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적이 있는 28명의 자료를 분석
2) 20~29세 해당하는 유효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해당 연령대를 삭제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간 병원 동행 등의 이유로 이용자와 함께 외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해당 응답자 중 72.9%는 1회 이상 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외출 무경험자 비율은 27.1%였다. 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평균 외출 횟수는 15.7회로 나타나, 평균 월 1회 이상 외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의 외출 경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28.6% 대 73.6%). 단, 외출 유경험자의 평균 외출 횟수는 남성(35.7회)이 여성(15.6회)에 비해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외출 경험률은 3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출 횟수의 경우 30대~40대 대비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외출 횟수가 많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용자 동행 외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77.5%), 외출 경험자의 평균 외출 횟수는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비슷하게 중소도시 외출 경험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 대비 요양보호사의 외출 경험률과 외출 횟수가 모두 3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슷한 외출 경험률을 보였고,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외출 경험률을 보였다.

지난 1년동안 이용자와 외출을 1회 이상 한 응답자 대상 주요 이동수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인 차량이라는 응답률이 27.9%로 가장 높았고, 택시 24.5%, 도보 2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가족 차량이 9.9%, 기관 차량이 6.8%, 대중교통 1.9%로 10% 미만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 응답도 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교통약자 이동수단, 장애인 지원 차량(택시)이라는 응답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70대 이상 대비 50대, 40대에서 본인 차량을 이용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응답자의 경우 61.2%가 본인 차량이 주요 이동수단이라고 응답하여, 특히 해당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기타(교통 약자 지원 차량), 대도시의 경우 도보 또는 택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에서 개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대비 기관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대비 방문목욕 시 기타(장애인, 교통약자 지원 차량 등) 응답률이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6〉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와 외출 동행 여부[1)2)]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평균(회)
전체	72.9	27.1	100.0 (2,249)	15.7
성별				
남성	28.6	71.4	100.0 (35)	35.7
여성	73.6	26.4	100.0 (2,214)	15.6
연령대				
20~29세	0.0	100.0	100.0 (4)[3)]	0.0
30~39세	77.8	22.2	100.0 (9)[3)]	4.5
40~49세	65.4	34.6	100.0 (83)	13.2
50~59세	71.5	28.5	100.0 (497)	17.1
60~69세	75.3	24.7	100.0 (1,275)	15.8
70세 이상	68.7	31.3	100.0 (382)	14.1
지역				
대도시	72.2	27.8	100.0 (964)	17.9
중소도시	71.2	28.8	100.0 (847)	12.7
농어촌	77.5	22.5	100.0 (438)	16.3
직종				
요양보호사	73.1	26.9	100.0 (2,236)	15.7
간호(조무)사	23.1	76.9	100.0 (12)	4.1
운영주체				
개인	72.4	27.6	100.0 (1,882)	15.7
영리법인	73.0	27.0	100.0 (143)	12.0
비영리법인	76.7	23.3	100.0 (211)	18.5
국가·지방자치단체	76.9	23.1	100.0 (13)	8.7
급여유형				
방문요양	74.9	25.1	100.0 (2,126)	15.7
방문목욕	38.4	61.6	100.0 (110)	16.7
방문간호	23.1	76.9	100.0 (12)	4.1
2019년	70.4	29.6	100.0 (1,831)	-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평균 외출 횟수는 외출 경험이 있는 1,639명의 자료를 분석.
2) 지난 1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간의 장기요양 제공 이용자와의 외출 동행 여부를 나타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77〉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와의 외출 동행 시 주된 이동수단[1)2)]

(단위: %, 명)

특성	도보	이용자 가족 차량	택시	대중 교통	본인 차량	기관 차량	기타	계(명)	
전체	22.8	9.9	24.5	1.9	27.9	6.8	6.3	100.0	(1,639)
성별									
남성	40.0	30.0	0.0	0.0	30.0	00.	0.0	100.0	(10)
여성	22.7	9.8	24.7	1.9	27.8	6.8	6.3	100.0	(1,629)
연령대									
30~39세	42.9	0.0	0.0	0.0	57.1	0.0	0.0	100.0	(7)[5)]
40~49세	22.2	11.1	5.6	0.0	42.6	5.6	13.0	100.0	(55)
50~59세	23.2	12.6	20.4	0.0	30.4	5.8	7.6	100.0	(355)
60~69세	23.2	9.5	25.2	2.1	27.1	7.0	5.9	100.0	(960)
70세 이상	20.1	7.7	32.1	3.9	23.7	7.6	4.8	100.0	(262)
지역									
대도시	34.1	11.6	30.7	3.3	11.0	4.8	4.5	100.0	(695)
중소도시	17.6	10.1	25.7	1.3	28.5	6.7	10.2	100.0	(603)
농어촌	8.8	6.1	10.0	0.0	61.2	10.9	3.0	100.0	(340)
직종									
요양보호사	22.8	9.9	24.6	1.9	27.8	6.8	6.3	100.0	(1,636)
간호(조무)사	0.0	0.0	0.0	0.0	100.0	0.0	0.0	100.0	(3)[5)]
운영주체									
개인	22.6	9.3	25.4	2.2	27.8	6.5	6.1	100.0	(1,363)
영리법인	27.1	12.2	21.9	0.0	23.6	12.4	2.8	100.0	(105)
비영리법인	20.4	11.8	20.5	0.0	32.9	6.0	8.4	100.0	(161)
국가·지방자치단체	33.3	33.3	0.0	0.0	0.0	0.0	33.3	100.0	(10)
급여유형									
방문요양	22.9	9.9	24.7	1.8	28.0	6.7	6.0	100.0	(1,593)
방문목욕	19.0	11.9	9.0	2.4	21.4	9.5	16.7	100.0	(43)
방문간호	0.0	0.0	0.0	0.0	100.0	0.0	0.0	100.0	(3)[5)]
2019년	13.2	10.5	32.2	5.5	30.1	6.0	2.5	100.0	(1,290)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평균 외출 횟수는 외출 경험이 있는 1,639명의 자료를 분석.
2) 지난 1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간 장기요양 제공 이용자와의 외출 시 주된 이동수단을 나타냄
3) 기타 의견은 교통약자 이동수단, 장애인 지원 차량 등
4) 2019년의 경우 대중교통 응답률은 버스와 전철 응답률의 합임
5)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 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해당 응답자 중 15.1%가 일을 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특히 일을 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보다 대도시의 장기요양요원 중 쉬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 보다 요양보호사 중 일을 쉰 경혐률이 높았고, 운영주체별로는 유효 응답자 수가 적은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급여유형 중에서는 방문간호 대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 중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 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본인의 개인사정이라는 응답률이 36.9%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자발적 중단(감염, 급여중단 등)이 26.6%,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용자(가족)의 요청으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이 23.6%로 비슷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한 자발적 중단(감염 불안, 가족 돌봄 등)이 13.4%, 코로나19와 무관한 수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이 7.7%, 코로나19와 무관한 소속기관의 사정이 3.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에서 50, 60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 비율이 52.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이유가, 농어촌에서는 본인의 개인사정이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대비 방문목욕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자발적 중단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78〉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경험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15.1	84.9	100.0 (2,249)
성별			
남성	11.5	88.5	100.0 (35)
여성	15.2	84.8	100.0 (2,214)
연령대			
20-29세	25.0	75.0	100.0 (4)[2)]
30~39세	44.4	55.6	100.0 (9)[2)]
40~49세	3.6	96.4	100.0 (83)
50~59세	14.8	85.2	100.0 (497)
60~69세	16.4	83.6	100.0 (1,275)
70세 이상	13.0	87.0	100.0 (382)
지역			
대도시	16.9	83.1	100.0 (964)
중소도시	14.1	85.9	100.0 (847)
농어촌	13.1	86.9	100.0 (438)
직종			
요양보호사	15.2	84.8	100.0 (2,236)
간호(조무)사	8.3	91.7	100.0 (12)
운영주체			
개인	14.3	85.7	100.0 (1,882)
영리법인	17.7	82.3	100.0 (143)
비영리법인	19.9	80.1	100.0 (211)
국가·지방자치단체	23.1	76.9	100.0 (13)
급여유형			
방문요양	15.2	84.8	100.0 (2,126)
방문목욕	14.3	85.7	100.0 (110)
방문간호	8.3	91.7	100.0 (12)
2019년	15.3	84.7	100.0 (1,830)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79〉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이유(중복 응답)[1)]

(단위: %, 명)

특성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와 무관				사례수(명)
	비자발적 중단(감염, 급여중단 등)	자발적 중단 (감염불안, 가족돌봄 등)	이용자(가족) 요청에 의한 비자발적 중단	자발적 중단(이용자와 갈등, 돌봄요구도 증가 등)	본인 개인사정	소속 기관 사정	
전체	26.6	13.4	23.6	7.7	36.9	3.8	(340)
성별							
남성	0.0	25.0	75.0	0.0	0.0	0.0	(4)[3)]
여성	26.6	13.4	23.0	7.8	37.4	3.8	(336)
연령대							
20-29세	0.0	0.0	0.0	0.0	100.0	0.0	(1)[3)]
30~39세	25.0	25.0	25.0	75.0	0.0	0.0	(4)[3)]
40~49세	0.0	0.0	0.0	0.0	100.0	0.0	(3)[3)]
50~59세	23.0	23.0	24.3	8.4	40.5	8.2	(74)
60~69세	22.4	13.2	23.2	8.1	36.2	3.2	(209)
70세 이상	52.0	2.0	26.5	0.0	32.0	0.0	(50)
지역							
대도시	24.5	13.6	27.4	8.0	31.4	4.3	(163)
중소도시	32.2	16.6	24.8	8.4	27.3	5.8	(120)
농어촌	20.8	6.9	10.3	5.2	72.4	0.0	(58)
직종							
요양보호사	26.6	13.5	23.6	7.8	37.0	3.8	(339)
간호(조무)사	0.0	0.0	50.1	0.0	0.0	0.0	(1)[3)]
운영주체							
개인	26.9	15.3	22.4	8.6	34.4	3.6	(270)
영리법인	19.2	16.0	28.0	12.9	42.3	0.0	(25)
비영리법인	23.8	2.4	31.0	0.0	45.2	7.1	(42)
국가·지자체	100.0	0.0	0.0	0.0	100.0	0.0	(3)[3)]
급여유형							
방문요양	25.8	13.1	23.9	8.0	37.0	4.0	(323)
방문목욕	43.8	18.8	18.8	6.3	37.5	0.0	(16)
방문간호	0.0	0.0	50.1	0.0	0.0	0.0	(1)[3)]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 중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340명의 자료를 분석(중복 응답)
2)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가 0.05 미만인 경우 수치가 0으로 나옴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22년 신규 문항임

지난 1년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해당 응답자의 74.0%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6.0%는 이러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26.0%의 절반 이상인 17.4%는 연 1~3회 경험하였고, 나머지는 년 4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에게서 1회 이상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대비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 대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중에서 갑작스럽게 일을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요원에서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0〉 가정방문형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1회 이상	월 1~3회	년 4~11회	년 1~3회	경험 없음	계(명)
전체	1.8	3.2	3.7	17.4	74.0	100.0 (2,249)
성별						
남성	0.0	0.0	19.4	25.0	55.6	100.0 (35)
여성	1.8	3.3	3.4	17.2	74.3	100.0 (2,214)
연령대						
20~29세	0.0	0.0	0.0	0.0	100.0	100.0 (4)[2]
30~39세	33.3	11.1	0.0	0.0	55.6	100.0 (9)[2]
40~49세	7.3	1.2	4.9	8.5	78.0	100.0 (83)
50~59세	2.2	1.8	5.8	17.8	72.4	100.0 (497)
60~69세	1.3	4.0	3.0	19.5	72.2	100.0 (1,275)
70세 이상	1.0	2.5	2.9	11.8	81.8	100.0 (382)
지역						
대도시	1.4	2.7	3.5	19.9	72.5	100.0 (964)
중소도시	2.4	4.5	3.7	17.0	72.4	100.0 (847)
농어촌	1.5	1.9	4.1	12.3	80.2	100.0 (438)
직종						
요양보호사	1.8	3.1	3.6	17.4	74.1	100.0 (2,236)
간호(조무)사	7.7	15.4	15.4	15.4	46.2	100.0 (12)
운영주체						
개인	1.9	2.7	3.6	16.6	75.2	100.0 (1,882)
영리법인	0.0	2.9	2.7	28.6	65.8	100.0 (143)
비영리법인	1.8	8.1	3.8	17.8	68.6	100.0 (211)
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23.4	0.0	76.9	100.0 (13)
급여유형						
방문요양	1.6	3.0	3.3	17.4	74.7	100.0 (2,126)
방문목욕	3.6	5.5	9.1	17.3	64.5	100.0 (110)
방문간호	7.7	15.4	15.4	15.4	46.2	100.0 (12)

주: 1)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2,249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22년 신규 문항임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근무 현황 관련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하루(1일) 근무를 기준으로 식사, 휴식, 취침 등을 포함한 규정상 휴게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실제 휴게시간을 조사하였다. 평균 휴게시간은 1.3시간으로, 구간별로는 1~3시간 미만이 85.4%, 1시간 미만이 7.7%, 3~5시간이 4.5%, 5시간 이상이 2.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에서 1시간 미만 휴게 시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60대의 경우 1시간 미만 이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70대의 경우 3시간 이상이라는 비율이 높아 평균 휴게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대비 농어촌 장기요양요원의 휴게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휴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개인과 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에게서 상대적으로 휴게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단기보호 종사자의 평균 휴게기간이 2.2시간으로 타 유형에 비해 하루 기준 평균 휴게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소속 기관 내 식사, 휴식, 취침 등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휴게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해당 응답자의 71.6%가 이러한 휴게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8.4%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휴게공간 여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의 경우 약 65%만 휴게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이 중소도시, 농어촌 대비 휴게공간 존재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가 휴게공간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의 응답자 중 휴게공간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77.8%), 개인 운영 기관의 응답자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규모가 클수록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6-81〉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1일 기준 실제 사용 휴게시간

(단위: %, 명, 시간)

특성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명)	평균
전체	7.7	85.4	4.5	2.4	100.0 (1,255)	1.3
성별						
남성	4.7	90.7	3.1	1.6	100.0 (129)	1.3
여성	8.1	84.8	4.7	2.4	100.0 (1,126)	1.3
연령대						
20~29세	2.4	95.2	2.4	0.0	100.0 (42)	1.1
30~39세	7.4	91.4	0.0	1.2	100.0 (81)	1.1
40~49세	8.7	88.8	1.2	1.2	100.0 (161)	1.1
50~59세	8.5	85.6	3.8	2.1	100.0 (470)	1.3
60~69세	7.6	82.0	7.3	3.1	100.0 (469)	1.5
70세 이상	2.9	85.3	2.9	8.8	100.0 (34)	1.6
지역						
대도시	7.9	85.5	4.5	2.1	100.0 (362)	1.3
중소도시	8.7	84.7	4.0	2.6	100.0 (473)	1.3
농어촌	6.5	86.0	5.1	2.4	100.0 (419)	1.4
직종						
요양보호사	7.0	82.8	6.7	3.4	100.0 (802)	1.5
사회복지사	8.1	91.2	0.3	0.4	100.0 (278)	1.0
간호(조무)사	11.4	86.4	1.3	0.9	100.0 (149)	1.1
물리치료사	4.0	96.0	0.0	0.0	100.0 (25)	1.0
운영주체						
개인	7.7	84.1	5.3	2.9	100.0 (798)	1.4
영리법인	7.4	84.7	6.1	2.0	100.0 (98)	1.4
비영리법인	7.3	89.0	2.5	1.2	100.0 (331)	1.2
국가·지방자치단체	18.5	81.5	0.0	0.0	100.0 (27)	1.0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13.0	86.1	0.6	0.3	100.0 (325)	1.1
단기보호	0.0	100.0	0.0	0.0	100.0 (2)[2)]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	78.1	8.2	6.8	100.0 (73)	1.7
노인요양시설(10~29명)	4.2	84.5	8.3	3.0	100.0 (262)	1.5
노인요양시설(30~49명)	6.4	87.3	3.0	3.3	100.0 (191)	1.4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6.5	85.9	5.3	2.3	100.0 (402)	1.4
2019년	14.8	71.1	6.9	7.3	100.0 (884)	1.6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 1,255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82〉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소속기관 내 독립된 휴게공간 여부

(단위: %, 명)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71.6	28.4	100.0 (1,255)
성별			
남성	71.3	28.7	100.0 (129)
여성	71.6	28.4	100.0 (1,126)
연령대			
20~29세	78.6	21.4	100.0 (42)
30~39세	65.3	34.7	100.0 (81)
40~49세	65.6	34.4	100.0 (161)
50~59세	72.2	27.8	100.0 (470)
60~69세	73.5	26.5	100.0 (469)
70세 이상	70.6	29.4	100.0 (34)
지역			
대도시	68.3	31.7	100.0 (362)
중소도시	72.1	27.9	100.0 (473)
농어촌	73.7	26.3	100.0 (419)
직종			
요양보호사	74.3	25.7	100.0 (802)
사회복지사	66.3	33.7	100.0 (278)
간호(조무)사	65.7	34.3	100.0 (149)
물리치료사	76.8	23.2	100.0 (25)
운영주체			
개인	68.7	31.3	100.0 (798)
영리법인	73.7	26.3	100.0 (98)
비영리법인	77.1	22.9	100.0 (331)
국가·지방자치단체	77.8	22.2	100.0 (27)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51.7	48.3	100.0 (325)
단기보호	33.3	66.7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2.1	47.9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7.9	22.1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79.8	20.2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3.3	16.7	100.0 (402)
2019년	76.4	23.6	100.0 (884)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 1,255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개월 간의 야간근무(22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응답자의 37.5%가 야간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야간근무 응답자 비율은 남성 대비 여성, 20~30대 대비 60대~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에서는 55% 이상이 야간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가장 높은 야간근무 경험자 비율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1% 미만만이 야간근무 경험이 있었고, 요양보호사는 57.2%가 야간 근무 경험이 있었다.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근무 장기요양요원 중에서 야간근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9.3%). 급여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종사자의 경우 1% 미만만이 야간근무 경험이 있었고, 다른 유형에서는 40% 이상이 야간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동안 근무시간 외 시간(퇴근 이후, 휴일 등)에 기관으로부터 업무상의 전화 또는 문자 대응 횟수를 조사하였다. 업무시간 외 업무상 연락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53.0%, 1회 이상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7.0%로 나타났다. 13.9%는 월 1~3회 응대, 8.2%는 주 1~2회 응대, 8.8%는 주1회 응대하여, 월 1회 이상 업무 시간 외 대응을 한 경험자는 전체 해당 응답자의 30.9%에 이르렀다. 성별로는 여성 대비 남성의 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응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30대에서 66.7%가 년 1회 이상 업무 외 시간에 응대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49.4%는 월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0대에서도 월 1회 이상 경험자가 47.2%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외 시간 응대 경험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약 2/3가 년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두 직종 모두 월 1회 이상 빈번하게 경험한 응답자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의 종사자에서 절반 이상이 업무시간 외 대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대비 주야간보호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 외 업무 연락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83〉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개월 동안 야간근무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명)
전체	37.5	62.5	100.0 (1,255)
성별			
남성	19.3	80.7	100.0 (129)
여성	39.6	60.4	100.0 (1,126)
연령대			
20~29세	2.4	97.6	100.0 (42)
30~39세	2.5	97.5	100.0 (81)
40~49세	11.8	88.2	100.0 (161)
50~59세	36.3	63.7	100.0 (470)
60~69세	55.1	44.9	100.0 (469)
70세 이상	58.8	41.2	100.0 (34)
지역			
대도시	37.1	62.9	100.0 (362)
중소도시	35.5	64.5	100.0 (473)
농어촌	40.0	60.0	100.0 (419)
직종			
요양보호사	57.2	42.8	100.0 (802)
사회복지사	1.1	98.9	100.0 (278)
간호(조무)사	6.0	94.0	100.0 (149)
물리치료사	0.0	10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33.9	66.1	100.0 (798)
영리법인	48.9	51.1	100.0 (98)
비영리법인	40.9	59.1	100.0 (331)
국가·지방자치단체	59.3	40.7	100.0 (27)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0.9	99.1	100.0 (325)
단기보호	50.0	5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9.3	50.7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43.8	56.2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48.7	51.3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55.5	44.5	100.0 (402)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 1,255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6-84〉 시설급여 및 주야간·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 외 업무상 전화 또는 문자 대응 횟수

(단위: %, 명)

특성	주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년 6~11회	년 4~5회	년 1~3회	없음	계(명)
전체	8.8	8.2	13.9	2.1	4.2	9.8	53.0	100.0 (1,255)
성별								
남성	9.3	10.1	18.6	0.0	4.7	10.1	47.3	100.0 (129)
여성	8.8	7.9	13.4	2.3	4.2	9.8	53.7	100.0 (1,126)
연령대								
20~29세	7.3	7.3	24.4	4.9	2.4	9.8	43.9	100.0 (42)
30~39세	17.3	12.3	19.8	2.5	3.7	11.1	33.3	100.0 (81)
40~49세	14.9	14.3	18.0	1.9	3.1	7.5	40.4	100.0 (161)
50~59세	9.5	8.1	14.7	2.8	4.0	8.7	52.3	100.0 (470)
60~69세	5.1	5.8	10.3	1.4	4.8	11.3	61.2	100.0 (469)
70세 이상	2.9	2.9	8.6	0.0	5.7	11.4	68.6	100.0 (34)
지역								
대도시	9.6	7.8	15.3	2.9	4.3	8.7	51.4	100.0 (362)
중소도시	8.8	8.4	14.5	1.4	4.4	9.6	52.9	100.0 (473)
농어촌	8.2	8.2	12.1	2.2	3.8	11.0	54.5	100.0 (419)
직종								
요양보호사	5.0	5.3	10.2	1.6	4.7	9.9	63.3	100.0 (802)
사회복지사	16.8	13.6	21.0	3.1	3.2	8.6	33.7	100.0 (278)
간호(조무)사	15.3	14.0	21.3	3.3	3.3	10.0	32.7	100.0 (149)
물리치료사	3.8	3.8	11.5	3.8	3.8	19.2	53.8	100.0 (25)
운영주체								
개인	9.1	7.9	14.0	1.6	4.4	10.3	52.6	100.0 (798)
영리법인	7.0	6.0	11.0	3.0	5.0	5.0	63.0	100.0 (98)
비영리법인	8.5	9.5	14.6	3.1	4.0	10.4	49.9	100.0 (33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11.1	3.7	14.8	0.0	0.0	7.4	63.0	100.0 (27)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12.1	9.9	14.0	1.8	3.9	9.6	48.7	100.0 (325)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5	8.2	13.7	1.4	4.1	11.0	56.2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7.1	8.9	14.8	2.5	3.8	9.1	53.9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8.7	8.2	11.1	2.1	5.4	8.2	56.3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8.0	6.1	14.7	2.3	4.0	11.1	53.7	100.0 (402)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 1,255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난 1년 동안 다른 장기요양기관 직원 또는 시설장이 수급자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비난, 고함, 욕설을 목격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4%,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9%, 꼬집기, 밀치기, 신체적 위협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6%, 필요 이상의 신체적 구속 또는 제한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1.4%, 성적 부당행위를 목격했다는 비율은 0.6%, 약물, 경관 영양등을 필요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0.8%, 경제적 착취를 목격했다는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먼저, 비난 등 언어적 부당행위 목격률은 남성 대비 여성, 40~50대, 농어촌 대비 중소도시, 요양보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게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는 영리법인, 급여유형에서는 주야간보호와 공동생활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목격률을 보였다. 이용자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앞의 언어적 부당행위와 비슷하게 남성 대비 여성, 40대, 농어촌 대비 대도시 및 중소도시, 요양보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게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운영주체에서는 국가·지자체, 급여유형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목격률을 보였다. 신체적 부당행위 성별, 연령별, 급여유형별 경향도 비슷하였다. 단, 직종별 차이에서 요양보호사의 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운영주체에서는 국가·지자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구속 및 제한의 경우도 40대, 중소도시, 국가·지자체, 공동생활가정, 물리치료사 중에서의 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적 부당행위, 약물 등 과남용, 경제적 착취는 전체 목격률이 1% 미만으로 장기요양요원 특성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유보하였다.

〈표 6-85〉 시설급여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요원의 지난 1년 동안 이용자에 대한 부당행위 목격률

(단위: %, 명)

특성	비난, 고함, 욕설	이용자 요구 무시, 부적절한 대응	꼬집기, 밀치기, 신체적 위협	신체적 구속, 제한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접촉	약물, 경관 영양 등 과남용	경제적 착취	계(명)
전체	3.4	1.9	1.6	1.4	0.6	0.8	0.3	100.0 (1,255)
성별								
남성	2.2	0.7	3.1	1.4	0.8	1.5	0.0	100.0 (129)
여성	3.6	2.0	1.5	1.4	0.6	0.8	0.3	100.0 (1,126)
연령대								
20~29세	0.0	2.4	0.0	0.0	0.0	2.4	0.0	100.0 (42)
30~39세	2.5	2.4	0.0	0.0	0.0	0.0	0.0	100.0 (81)
40~49세	5.1	2.5	1.3	1.9	0.6	1.2	0.5	100.0 (161)
50~59세	4.2	1.8	1.9	1.7	0.8	0.9	0.4	100.0 (470)
60~69세	2.5	1.9	1.7	1.3	0.5	0.7	0.0	100.0 (469)
70세 이상	2.9	2.9	2.9	0.0	0.0	0.0	0.0	100.0 (34)
지역								
대도시	3.5	2.2	1.6	1.0	0.2	0.8	0.2	100.0 (362)
중소도시	3.8	2.2	1.4	1.8	1.0	1.4	0.3	100.0 (473)
농어촌	3.0	1.4	1.8	1.4	0.6	0.3	0.2	100.0 (419)
직종								
요양보호사	3.0	1.4	2.1	1.4	0.7	0.8	0.1	100.0 (802)
사회복지사	4.0	2.1	0.7	1.4	0.3	0.7	0.4	100.0 (278)
간호(조무)사	4.7	4.0	1.3	1.3	0.0	1.3	0.6	100.0 (149)
물리치료사	4.0	4.0	0.0	3.8	0.0	0.0	0.0	100.0 (25)
운영주체								
개인	2.9	1.8	1.5	1.3	0.7	0.7	0.2	100.0 (798)
영리법인	6.0	1.0	1.0	1.0	0.0	3.0	0.0	100.0 (98)
비영리법인	4.1	2.2	2.0	1.5	0.5	0.3	0.4	100.0 (3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0	3.8	3.7	3.8	0.0	3.8	0.0	100.0 (27)
급여유형								
주야간보호	4.4	1.5	1.0	0.3	0.5	0.2	0.0	100.0 (325)
단기보호	0.0	0.0	0.0	0.0	0.0	0.0	0.0	100.0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4	2.7	2.7	2.7	0.0	1.4	0.0	100.0 (73)
노인요양시설(10~29명)	2.7	2.3	1.8	1.6	0.3	1.5	0.3	100.0 (262)
노인요양시설(30~49명)	3.6	2.1	1.6	1.7	1.0	0.5	0.6	100.0 (191)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2.7	1.9	1.8	1.8	0.6	1.1	0.2	100.0 (402)

주: 1)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 1,255명의 자료를 분석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7장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 7 장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1. 장기요양수급자 및 가족 조사의 주요 결과

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일반특성 및 급여 이용 결정 특성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수급자 조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77.5%이며, 미이용자는 22.5%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은 27.7%, 여성은 72.3%였으며, 8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70.4%, 65세 미만 수급자는 2.8%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보면,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4.7%, 2등급인 수급자는 9.2%, 3등급 27.4%, 4등급 45.7%, 5등급 10.9%, 인지지원등급 2.1%로 나타났으며,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54.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용하고 있는 급여유형으로는 방문요양이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19.9%, 주야간보호 14.6%, 방문목욕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방문간호 1.3%, 단기보호 0.1%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미이용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일반 가정이 71.2%, (요양)병원 28.6%, 기타 0.2%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미이용자의 가정 거주 비율은 19.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와 미이용자 중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거주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형태를 보면, 재가 급여 이용자는 독거가구 40.2%, 자녀동거가구 31.1%, 부부가구 22.4%,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4.8%, 기타 1.5%로 나타난다. 일반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미이용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25.8%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가구였으며, 부부가구 32.8%, 자녀동거가구 33.5%,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5.6%, 기타 2.4%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에서도 독거비율이 1/4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거공간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을 질문한 결과, 재가급여 이용자는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은 36.0%,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41.2%,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주택은 29.0%,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나 설치가 된 주택은 52.7%,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의 폭을 갖춘 주택은 56.1%, 휠체어가 이동가능한 방문인 주택은 44.8%, 긴급연락장치가 설치된 주택은 10.7%, 실외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은 47.4%로 조사되었다.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경우 실외 경사로 설치 외의 모든 항목에서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주거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복지용구 이용을 통해 주거 내 편의 및 안전 시설 설치가 높은것에 반해 미이용자의 경우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안전을 위한 주택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긴급 연락장치 설치율의 경우 낙상 예방과 응급시 빠른 조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미이용자의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주거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명)

특성	사례수	실내 문턱 없음	욕실/화장실 안전 손잡이	욕실/화장실 이외 공간의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휠체어 이동 가능한 현관 폭	휠체어 이동 가능한 방안 문	긴급 연락 장치	실외 경사로
재가급여 이용자	(2,687)	36.0	41.2	29.0	52.7	56.1	44.8	10.7	47.4
일반가정 거주 미이용자	(709)	33.3	28.5	14.8	43.6	50.8	43.8	7.1	49.4

장기요양 급여이용의 주된 결정 주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 본인 11.0%, 배우자 10.2%, 이웃이나 지인 5.0%, 형제자매 등 친인척 3.7%, 장기요양기관 직원 2.6%, 기타 3.2%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용 결정에서의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나 손자녀가 장기요양급여이용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직계가족 32.9%, 이웃이나 지인 23.1%, TV·신문·인터넷 11.9%, 장기요양기관 직원 11.9%, 기타 8.3%, 친인척 6.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와 시설급여 이용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 24.3%, 기관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 14.7%,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4.5%, 물리적 환경 12.6%, 인력수준 11.8%, 비용 11.0%, 전문서비스 6.9%, 기타 4.1%로 분석되었다.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물리적 환경이 30.5%로 가장 높고,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기관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 주변인의 소개나 추천이 14%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2〉 재가급여 이용자와 시설급여 이용자의 급여 선택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비용	물리적 환경	인력 수준	평판·평가	거리	소개 및 추천	전문서비스	기타[2)]	계(명)	
재가급여 이용자	11.0	12.6	11.8	14.7	14.5	24.3	6.9	4.1	100.0	(2,518)
시설급여 이용자	10.0	30.5	7.6	14.3	14.6	13.6	5.4	4.2	100.0	(421)

나.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특성

장기요양수급자의 이동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거동 가능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는 전체의 17.6%였으며, 기어서 또는 보장구를 착용하여 이동가능한 수급자는 7.8%, 타인의 부축이나 휠체어 등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는 58.1%, 거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16.6%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개수가 3개인 장기요양수급자는 25.5%, 5개 이상 23.7%, 2개 21.3%, 4개 18.0%, 1개 10.7%, 없음 0.8%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는 61.3%, 치매 54.4%, 당뇨병 31.7%,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8.7%, 뇌졸중 20.2% 등이다.

장기요양수급자는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알약 개수가 하루 4개

이하인 수급자는 28.9%, 5~9개 37.9%, 10~14개 20.0%, 15개 이상은 13.2%이다. 지난 1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 수급자는 61.9%였으며,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22.8%,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10.4%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간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한 평균 횟수는 없음 14.8%, 1회 44.7%, 2회 17.5%, 3회 8.6%, 4~10회 13.1%, 11회 이상 1.3%이다. 수급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비율은 36.2%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은 경우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2%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높을수록 낙상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욕창이 발생한 적이 있는 수급자는 8.9%이다.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욕창 발생률도 높아지며 급여유형에서도 시설보다는 재가급여 이용자와 미이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다. 급여 이용 특성 및 급여 이용 비용

재가급여 이용자는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급여유형을 보면, 방문요양 77.8%, 방문목욕 21.8%, 방문간호 3.9%, 주야간보호 20.5%, 단기보호 0.8%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18.3%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받고 있었으며,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의 59.5%는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유형별로 지난 1개월 동안 이용한 평균 일수는 방문요양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0.1일, 일반 요양보호사는 16.8일이었으며, 방문목욕은 평균 3.4일, 방문간호는 평균 4.0일, 주야간보호는 평균 18.0일을 이용하였다. 급여유형별로 지난 1개월 동안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일반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2.9시간, 방문목욕 1.0시간, 방문간호 0.7시간, 주야간보호 8.1시간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유형별 미이용자의 재가서비스별 인지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았다.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와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문간호는 54.3%, 단기보호는 27.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방문요양의 경우 향후 방문요양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수급자

는 48.6%였으며, 방문목욕 미이용자의 39.1%, 방문간호는 41.9%, 주야간보호 미이용자의 32.6%, 그리고 단기보호 미이용자의 30.5%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3〉 재가급여 서비스별 해당 급여 미이용자의 인지율 및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해당 급여 미이용자의 인지율	76.5	66.9	54.3	60.9	27.8
해당 급여 미이용자의 향후 이용의향	48.6	39.1	41.9	32.6	30.5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이후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69.2%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개수는 1개 22.7%, 2개 23.8%, 3개 19.0%, 4개 13.0%, 5개 이상 21.4%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3년 미만이 56.7%로 2019년 65.7%에 비해 9%가량 감소하여 시설입소 후 거주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시설급여 이용자의 시설 거주기간

(단위: %, 명)

시설거주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계(명)
2022년	17.7	21.1	17.9	13.0	9.2	21.1	100.0 (740)
2019년	22.1	26.6	17.0	11.1	7.5	15.7	100.0 (1,288)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 구강관리, 물리(작업)치료, 기능회복훈련,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여가활동, 산책, 야유회 등을 중심으로 시설급여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99.8%는 주당 평균 1.2회의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96.6%는 하루 평균 2.7회의 구강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69.4%는 주당 2.2회의 물리(작업)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회복훈련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83.9%로 주당 4.6회 이용하였으며, 인지기능증진서비스는 이용자의 82.2%가 주당 2.6회 이용하였다. 여가활동서비스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81.7%가 주당 평균 2.1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요양시설 건물 밖 산책을 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46.7%였으며, 월평균 5.6회의 산책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간 야유회나 나들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9.0%로 연 평균 2.6회 정도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조사 대비 산책은 11.8%포인트 감소, 야유회 또는 나들이는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이용에 대한 월 비용(비급여 포함)은 재가급여는 평균 12.3만원, 시설은 46.3만원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은 10.5만원, 방문목욕 8.5만원, 방문간호 9.6만원, 주야간보호 21.5만원, 단기보호 39.7만원으로 월평균 부담금이 분석되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월 평균 39.9만원, 노인요양시설은 46.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이용자 중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113.6만원(간병비 포함)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급여 이용자는 시설급여 이용자에 비해 비용 월 평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급여 이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위: %, 명)

구분	없음	0.1~30만원 미만			30~50만 원 미만	50~7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평균 (만 원)
		10만 원 미만	10~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1)				
재가	16.6	27.4	37.0	19.0	-	-	-	12.3
방문요양	19.6	29.7	41.6	9.2	-	-	-	10.5
방문목욕	19.0	44.9	27.5	8.5	-	-	-	8.5
방문간호	21.7	30.4	37.0	10.9	-	-	-	9.6
주야간보호	3.8	7.8	26.8	61.6	-	-	-	21.5
단기보호	0.0	0.0	0.0	100.0	-	-	-	39.7
시설	16.8		7.5		24.7	29.9	21.1	46.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3		10.5		26.3	33.3	10.5	39.9
노인요양시설	16.7		7.2		24.5	29.6	22.0	46.8
미이용자 중 요양병원	-	-	-	-	-	-	-	113.6

주: 1) 재가급여의 경우는 20만원이상, 시설급여는 0.1만원~30만원 미만으로 측정함.

라. 급여 만족도

장기요양급여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본인 응답이 가능한 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방문요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5.8%, 방문목욕 87.5%, 방문간호 89.7%, 주야간보호 93.9%, 단기보호 97.7%. 복지용구 72.2%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개별 서비스별 만족도는 식사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77.9%, 목욕서비스 80.7%, 청결서비스 80.3%, 기능회복 · 물리 · 작업 · 인지기능증진서비스 77.7%, 간호 및 의료서비스 77.5%, 여가활동 만족도 77.3%, 시설환경 78.6%, 장기요양기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81.4%로 나타났다.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0.4%였으며, 다른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0.5%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급여이용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도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급여 이용자 가족의 86.2%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93.1%, 방문목욕 89.9%, 방문간호 86.9%, 방문요양 86.7%, 단기보호 83.8% 순으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83.1%는 시설급여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시설 환경(86.2%), 장기요양 기관 직원(85.6%), 목욕 및 청결서비스(85.0%), 간호 및 의료서비스(83.6%), 식사서비스(79.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의 환경 및 인력, 신체 수발 지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본인과 이용자의 가족의 만족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재가급여에서는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족 만족도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시설급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가족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목욕, 간호의료서비스, 시설환경, 직원 만족도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는 가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시설급여 전반적 만족도에서도 이용자는 80.4%가 만족한 반면, 가족은 8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급여 이용에 대한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만족 비율[1)]

(단위: %)

구분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가족			
		직원	시간/일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 만족도	직원	시간/일수	서비스 내용	전반적 만족도
재가	방문요양	89.3	69.9	88.5	85.8	91.0	73.3	88.1	86.7
	방문목욕	89.9	79.6	89.0	87.5	92.4	83.1	89.7	89.9
	방문간호	92.1	76.1	85.3	89.7	92.2	73.4	88.6	86.9
	주야간	94.5	90.9	93.7	93.9	93.5	88.2	93.4	93.1
	단기보호[1)]				97.7				83.8
	복지용구				72.2				-
시설	식사				77.9				79.5
	목욕				80.7				85.0
	청결				80.3				-
	기능훈련				77.7				77.6
	간호의료서비스				77.5				83.6
	여가활동				77.3				-
	시설환경				78.6				86.2
	직원				81.4				85.6
	다른 수급자와의 공동생활만족도				60.5				-
	비용				-				62.8
	시설 전반적 만족도				80.4				83.1
제도 만족도					-				86.2

주: 1) 이용자 본인은 3점척도(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만족 비율, 이용자 가족은 5점 척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단기보호 이용자 중 본인응답자 7명으로 해석 주의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중 급여이용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순위)로는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75.1%, 필요한 시간(야간 및 주말 등)에 이용이 어려워서 32.8%,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필요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도 재가급여 이용시간 불충분과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이 불만족 이유로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7-7〉 재가 급여 이용자 가족의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1순위)

(단위: %, 명)

특성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불만	재가급여 이용시간 불충분	재가급여 내용의 제한성	재가급여낮은 질적 수준	필요한 시간에 이용어려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기타	계(명)
2022년도	13.8	75.1	6.5	4.8	32.8	2.8	0.9	(229)
2019년도	12.4	47.4	7.1	4.3	18.7	8.0	2.1	(149)

마. 수급자의 부적절한 대우(학대) 경험 및 가족의 목격

장기요양수급자 중 본인 응답이 가능한 경우 부적절한 대우(학대)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험이 6.5%로 가장 높으며, 의견무시나 대화기피가 3.4%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신체 및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는 1% 이하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에 비해 시설급여 이용자는 의견 무시나 대화기피와 같은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4.7%로 가장 높고, 언어적 학대 2.0%, 그 외 학대는 1%내외로 나타났다. 급여 미이용자인 경우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험이 1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가 5.7%, 언어적 학대 2.2%로 나타났다. 급여 이용자와 비교할 때 급여 미이용자의 경우 학대 경험률이 높다.

급여 이용자의 가족에게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수급자의 학대 경험률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정서적 학대가 2.0%, 적절한 돌봄 부재가 1.9%이고, 그 외의 경우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7-8〉 수급자 및 가족의 학대 경험 및 목격률

(단위: %)

특성	의견무시나 대화 기피	돌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언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재가급여 이용자	3.4	6.5	1.8	0.3	0.6	0.5
시설급여 이용자	4.7	1.2	2.0	0.3	0.9	0.3
급여 미이용자	5.7	13.1	2.2	0.0	0.0	0.8
급여 이용자의 가족 (목격률)	2.0	1.9	0.5	0.2	0.3	0.1

바. 코로나19의 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시점은 코로나19가 3년째 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고위험 감염 집단으로 안전을 위해 급여 이용 및 생활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25.9%,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3.8%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28.8%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54.2%이다. 급여 이용 수급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음 48.4%, 돌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23.5%,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만남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요양) 병원 이용이 이전 2019년에 비해 축소되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가족 등의 면회(방문) 횟수의 감소, 산책 및 야유회 등 외부 활동 축소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수급자 중 급여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이용 비율이 2019년 대비 47.2%에서 28.6%로 크게 감소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가족의 수급자 돌봄에 대한 부양 부담 감소에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이용자의 제도 이용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와 사회참여 활동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89.1%, 정서적 부양 부담 완화 86.1%, 사회참여 활동 향상 78.5%,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78.0% 순으로 도움(도움+매우 도움)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돌봄이 이루어지지만, 가족은 수급자에 대해 정서,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지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년간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주3회 이상 정서적 지원(71.0%), 신체 수발 지원(50.8%), 가사 지원(49.0%), 일상생활 지원(28.3%) 순으로 빈번한 돌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령, 중증 이용자의 가족일수록 돌봄 서비스 제공빈도가 높고, 물리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돌봄(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신체수발 지원)는 도시지역 이용자의 가족일수록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부담에 있어서는 신체수발 지원 34.6%, 일상생활 지원 28.7%, 가사 지원 26.7%, 정서적 지원 18.9% 순으로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돌봄 제공 횟수에 상응하였다.

상대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월1회 이상 제공한 정서적 지원은 65.4%, 일상생활 지원은 3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부담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16.2%, 정서적 지원 9.4%로 크지 않았다.

〈표 7-9〉 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율

(단위: %)

돌봄 내용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정서적 지원	18.9	9.4
일상생활지원	28.7	16.2
가사지원	26.7	-
신체수발 지원	34.6	-

아. 장기요양 제도 개선 의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에게 향후 해당 급여에 대한 개선 사항과 신규 희망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지속적인 재가 거주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재가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가 36.5%로 가장 높고, 1일 다회서비스와 같은 제공형태 다양화 18.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8.0%, 단기보호기관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식사 및 영양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0.1%로 가장 높고, 방문형 의료서비스 26.1%, 이동 지원 22.3%, 주택 수리 지원 10.4%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시설급여 기관의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돌봄인력 확대 43.8%, 간호사 및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 강화 23.4%, 치매 전담시설 확대 22.5% 등을 지적하였다. 이용자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배치 강화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개선 측면에서 우선 과제로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 38.9%, 치매, 뇌졸중 등을 위한 전문 의료 특화서비스 27.9%, 기능 훈련 및 재활서비스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의료 욕구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급여 이용자 가족의 급여 개선사항 및 희망서비스[1)]

(단위: %)

재가급여 개선사항				시설급여 개선사항			
현 재가급여 개선사항		희망하는 재가급여 새로운 서비스		현 시설급여 개선사항		희망하는 시설급여 새로운 서비스	
치매 전담 기관 확대	11.7	식사영양 서비스	30.1	1-2인실 제공	5.7	양질의 식사 서비스	6.6
1일다회 서비스	18.3	차량지원	22.3	돌봄인력 확대	43.8	상시적 의료(간호) 서비스	38.9
방문간호 제공 기관 확대	18.0	주택 개보수 지원	10.4	의료인력 강화	23.4	전문 의료 특화 서비스	27.0
단기보호 확대	13.5	야간 순회 서비스	8.7	치매전담시설 확대	22.5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	12.9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36.5	방문형 의료 서비스	26.1	-	-	임종기 돌봄 서비스	6.2
						여가활동 및 나들이	5.7

주: 1) 각 항목의 기타 비율과 내용은 4장 내용 참고

2. 장기요양기관 조사의 주요 결과

가. 일반적 특성

1) 급여유형 및 위치·운영형태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응답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은 재가급여 제공기관 78.7%,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1.2%로 세부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47.7%, 주야간보호 16.7%, 노인요양시설 15.0%, 방문목욕 1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2%, 방문간호 1.7%, 단기보호 0.2%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대도시 36.7%, 중소도시 37.1%, 농어촌 26.2%이며, 기관의 위치는 상업·업무 지역 44.2%, 주거지역 40.6%, 비주거·비상업지역 14.3%, 산지지역 0.7%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대표 등) 소유 30.3%, 법인 소유 9.2%, 전세 6.3%, 국가 및 지자체 소유

1.6%, 기타 0.6% 순이며, 응답기관의 운영형태는 단독이 77.9%, 병설이 22.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는 평균 33.7명이며, 10~29명 36.7%, 30~49명 23.8%, 9명 이하 18.6%, 50~69명 10.6%, 70~99명 7.0%, 100명 이상 3.3%로 나타났다.

2)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의 운영 특성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물리적 특성으로 건물 용도를 살펴보면, 51.6%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용도로 기관을 건립하였으며,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의 비율도 30.8%로 높았다. 단기보호의 66.7%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45.1%는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수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침상 이동용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62.5%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99.5%, 간식비 85.0%, 경관 유동식 42.6%, 2인실 29.8%, 1인실 28.2%, 이미용비 22.4%, 기타 0.5%이며,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1인실 8,421원(1일), 2인실 5,519원(1일), 식사재료비 2,775원(1식), 경관유동식 2,657원(1식), 이미용비 1,293원(1회), 간식비 853원(1식)으로 나타났다.

3) 주야간보호 운영 특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일수는 주 6일 운영이 78.9%로 가장 많고, 주 7일 11.6%, 주 5일 이하 9.5%이다. 평균 운영시간은 1일 10.4시간이며,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34.9%,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7.2%,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7.0%, 12시간 이상 16.0%, 9시간 미만 4.9% 으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99.7%, 간식비 86.8%,기저귀 7.1%, 기타 0.3%이며,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식재료비가 2,736원(1식), 기저귀 1,783원(1일), 간식비 798원(1식)으로 나타났다.

나.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및 인사 관리

1) 인력 현황 및 직원 복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인력 수는 평균 23.1명이며, 10~29명(41.5%), 5~9명(19.1%), 30~49명(17.3%), 5명 미만(11.3%), 50명 이상(10.8%) 순이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20.5명이며, 10~29명 기관 46.6%, 5~9명 31.9%, 30~49명 14.0%, 50명 이상 7.0%, 5명 미만 0.5% 순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은 사회복지사 2.8년, 간호사 3.3년, 간호조무사 2.6년, 물리(작업)치료사 3.6년, 요양보호사 2.3년, 조리원 2.2년이며, 전반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큰 기관, 비영리기관에서의 근속년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제외하고 평균 3년 미만으로 경력이 길지 않았다.

장기요양기관의 84.5%는 지난 6개월 동안 퇴사한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며, 평균 5.9명이 퇴사하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0.3명, 간호조무사 0.2명, 조리원 0.1명, 그 외 직원 0.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평균 인력수(재가 23.1명, 시설 20.5명)을 고려하면 직원의 퇴사비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직원의 근무 형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2교대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3교대(20.2%), 24시간 근무+2일 휴무(16.0%), 주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13.3%), 24시간 격일제(2.4%), 4교대(2.4%), 기타(1.2%) 순이다. 야간근무 운영 형태는 교대제 66.7%, 야간전담 근무자 19.2%, 교대제+야간전담 근무자 12.7%, 기타 0.7%로 나타났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수당 및 관련 직원복지(경조사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포상휴가 등)로 전체 기관 중 86.3%의 기관에서 제공하며,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지원 54.1%,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41.5%,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장비 지원 21.3%, 노동조합 또는 직원 협의체 운영 8.7%, 동호회 활동 지원 2.7%으로 나타났으나,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원이 없는 기관도 4.8%로 나타났다.

2)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 사고 관리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및 직원의 안전사고 여부와 사고 내용, 대응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기관 중 수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1.0%로 평균 2.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낙상이 1.8건, 흡인성 폐렴과 감염성 질환이 각각 1.7건, 질식 1.4건, 교통사고가 1.3건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기관은 전체의 19.8%로 손해배상 대응방식으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처리 73.1%, 기관예산 처리 25.8%, 기타 7.5%이다.

전체 응답기관 중 지난 1년간 직원의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를 경험한 기관은 12.2%로 평균 1.4건이며, 대응방식으로는 산재보험 65.3%, 장기요양기관예산 14.1%,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 12.2%, 직원의 개인 비용 12.3%, 기타 8.8%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원 교육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 교육필요 직종, 교육 개선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85.5%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이 필요한 직종(1순위)으로는 요양보호사가 55.2%, 시설장 21.1%, 사회복지사 20.3%, 간호(조무)사 1.3%, 사무국장 1.2%, 물리(작업)치료사 0.9% 등이었다. 장기요양요원의 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중심의 교육내용 개편' 55.3%,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17.3%,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확대 및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접근성 확대' 각각 9.3%, '양질의 전문강사 양성' 4.2%, '교육시간대의 다양화' 4.1%, '기타' 0.4% 순이다.

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1) 장기요양기관 운영 항목별 어려운 정도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렵다(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이용자 모집 78.0%, 인력채용 72.9%, 장기요양기관 평가 68.5%, 재정 운영 어려움 65.8%, 회계 및 행정업무 50.0%,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41.6%, 안전설비 및 시설관리 33.3%,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31.3%, 보호자 상담 및 대응 30.6% 순이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형 기관과 주야간보호에서는 인력채용과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이 타 항목의 어려움 비율보다 높았으며, 단기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자 모집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은 규모가 큰 시설은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기관평가의 어려움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30인 미만 시설은 인력채용과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의 비율은 10.3% 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이용자 모집은 5.7%포인트가 높아졌다. 반면, 기관 운영 관련 회계 및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11.5%포인트가 낮아졌으며,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도 5.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급여 유형에서는 재가급여보다는 시설급여 제공 기관에서의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높았으며,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려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매우 어렵다와 어렵다의 비율의 합)

(단위: %)

특성	이용자 상담 및 사례 관리	보호자 상담 및 대응	기관 운영 관련 회계 및 행정	기관 평가	안전 설비 및 시설 관리	이용자 병의원 이용 동행	재정운영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	인력 채용
전체	31.3	30.6	50.0	68.5	33.3	41.6	65.8	78.0	72.9
급여유형									
방문요양	35.4	31.5	52.3	68.3	-	43.6	67.0	78.7	70.5
방문목욕	39.0	35.0	55.4	67.1	-	41.7	57.7	82.1	73.5
방문간호	36.4	38.3	63.6	76.5	-	51.5	75.7	85.3	79.4
주야간보호	22.7	27.5	46.0	70.1	34.6	35.1	64.7	79.4	71.6
단기보호	25.0	25.0	50.0	66.6	20.0	25.0	75.0	66.6	66.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1	18.7	53.3	69.4	30.9	39.6	78.5	76.0	72.2
노인요양시설(10~29명)	22.5	25.5	42.9	66.9	28.8	37.3	63.5	75.0	80.6
노인요양시설(30~49명)	25.8	32.8	44.4	72.1	38.0	45.9	67.8	69.9	82.3
노인요양시설(50명이상)	32.4	46.5	29.1	65.2	38.0	52.1	57.7	60.0	81.4
지역									
대도시	35.9	33.9	52.5	70.4	37.2	39.2	69.1	79.1	66.5
중소도시	30.3	29.1	50.1	67.7	33.3	42.8	61.9	76.6	72.6
농어촌	26.8	28.5	46.5	67.1	29.0	43.5	66.4	77.5	82.2
2019년	31.4	29.1	61.5	66.5	34.2	-	71.2	72.3	62.6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1순위)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54.3%,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4%, 장기요양 인정자의 요양병원 이동 8.2%,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6.7%,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급여의 선호 5.1%, 기타 2.8%, 가족인 요양보호사 증가 1.4% 순이었다.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로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부족 20.6%, 높은 업무강도 18.0%,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서 10.4%, 사회적 편견 7.4%, 교대 또는 야간 근무 기피 6.0%, 기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이 어려운 직종은 요양보호사 71.0%, 사회복지사 11.5%, 간호사 6.3%, 조리원 5.6%, 간호조무사 3.7%, 물리(작업)치료사 1.5%, 그 외 직종 0.4% 순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방문형 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로 살펴본 결과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과 주야간 기관은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53.0%와 62.8%로 가장 높고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공백의 어려움을 두 번째로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43.3%,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 어려움 17.8%, 대면 면회가 안되는 데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 14.7%,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10.8%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방문형	주야간	단기 및 시설
이용자 수 감소(이로 인한 시설경영어려움)	53.0	62.8	17.8
이용자의 건강 악화	-	4.9	10.8
대면 면회불가로인한 이용자심리정서문제	-	-	14.7
서비스축소로 인한 불만증가	-	-	-
코로나19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10.8	3.4	7.0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29.8	24.3	43.3
외부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	0.9	1.0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2.6	1.2	1.2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3.6	1.8	2.2
기타	0.2	0.6	0.2
계	100.0	100.0	100.0

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직원 추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3.8%로 평균 3.7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채용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29.0%(2.8명), 사회복지사 21.7%(1.3명), 간호(조무)사 15.1%(1.2명), 조리원 14.1%(1.2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급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방문형 급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이용자 병원 동행시 기관 차량 또는 추가인력을 지원 64.0%,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도구(인지, 재활 등)를 구비한 서비스 제공 56.7%, 원거리 교통비 외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교통비 지급 53.3%,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를 운영 34.5%, 고난도 돌봄 대상자에게 추가 인력을 투입 18.9%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는 이용자의 자율성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 93.9%,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93.8%,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 45.9%,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보장 24.9%이다.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관의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노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저염식 등) 제공 82.8%, 지역 내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 이용자 건강관리 47.1%,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34.3%, 송영시 노인 실종 방지 시스템 마련 25.5%, 치매전담실 3.7%이고,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노력은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97.8%,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 94.5%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관 이용자의 자율성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 98.3%,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 96.9%, 야간 수면시 일괄 소등 하지 않음 83.6%,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 66.9%, 식사시간 선택의 자율성 보장 31.7% 순이다.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노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 92.3%, 임종, 감염병 등을 위한 특별 침실 마련 89.8%, 의료서비스 강화 87.4%, 간호서비스 강화 41.1%, 유니트케어와 같은 소단위 돌봄 제공 20.2%,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19.3%, ICT를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 설치 6.2%, 치매전담실 운영 5.9%이다.

시설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노력은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96.0%,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 96.9%이다.

3. 장기요양요원 조사의 주요 결과

가. 일반적 특성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응답한 장기요양요원의 78.4%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1.6%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에서 근무한다. 남성 장기요양요원은 6.1%인 반면 여성은 93.9%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절반 가까이(48.3%) 차지하며, 60대 이상의 비율은 62.9%로 상당히 높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88.9%를 차지하였고,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유형을 보면, 방문요양이 67.1%로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3.9%, 계약직(전일제)이 12.5%, 계약직(시간제)이 53.6%로 나타났다. 계약직 비중은 남성 대비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양보호사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59.9%는 시간제 계약직이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종사자의 70%이상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20.9%, 1년에서 5년 미만이 58.8%, 5년에서 10년 미만이 14.5%, 10년 이상은 5.8%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이직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11.4%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직 이유로는(중복응답 가능) 개인사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전 기관에서 일거리 제공이 중단되어서(이용자 사망, 거부 등)라는 응답이 24.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나. 근로조건

장기요양요원의 3개월 월 평균 근무일수는 월 20.9일이었으며, 월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근무일 1일 평균 약 5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개월 중 1개월이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은 30.6%로 이들 대부분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제공자였으며 이들의 절반가량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나타났다. 60시간 미만 근무한 원인 중 일거리가 없거나 기관에서 단기간 근로자만 채용해서라

는 등 타의에 의해 60시간 미만 일했다는 응답자는 17.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의 지난 3개월동안 구간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50만원 미만 14.2%, 50~100만원 미만 35.4%, 100~150만원 미만 13.8%, 150~200만원 미만 20.9%, 200만원 이상 15.7%이며,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은 120.7만원이다. 남성 대비 여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9.9만원으로 타 직종에 비해 낮았으며, 운영주체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64.5만원으로 4가지 운영 주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7%,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5.2%, 법정휴가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33.1%로 나타났다. 법정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이유로는 대체 인력 부족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정휴가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24.6%, 급여 또는 고용상 불이익 염려 19.8%, 업무량 과다 8.6%, 상사 또는 동료 눈치 7.0%, 기관의 휴가 거부·축소 3.9% 순으로 나타났다.

다. 근무환경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및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1.9%,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13.3%,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8.3%, 업무 이외 활동, 초과 업무를 요구받는 등의 업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는 응답자의 10.5%로 나타났다.

신체적·언어적·성적 부당행위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 대비 타 직종, 방문형 급여 대비 노인요양시설 소속 응답자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적 부당행위의 경우 연령대에서는 30대 및 60대,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급여제공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여 다른 세 가지 부당행위 유형과는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부당행위 경험자 대상으로 부당행위에 경험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한 결과, 1순

위 대응 방식으로 그냥 참고 일을 지속했다는 응답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 기관 보고 및 대응 요구 34.9%, 이용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제기 13.7%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한 경우에는 48.2%가 기관이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9.0%가 수급자 또는 업무를 변경해 주었다고 응답하는 등 일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에서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률도 17.4%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경험한 질환이나 사고 경험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경험률이 전체기간 15.4%, 1년 이내 1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발생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약 19%는 기관의 대응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28.5%는 기관에 질환이나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2021년 7월~2022년 6월)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6.8%)는 본인과 수급자(가족) 간 코로나19 상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방역 등 추가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14.9%), 근로시간 감소 또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12.5%), 이용자의 건강 상태 악화, 외부 활동 제한 등으로 돌봄 요구도 증가(11.0%)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 이상에게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에게서 소득감소의 어려움이 13.6%로 타 직종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서는 업무 과중이 약 40% 내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간호 제공 응답자에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 관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감소 33.2%, 근로 중단에 대한 불안 16.7%으로 나타났다.

라. 급여유형별 근무현황

1) 방문형 장기요양요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 절반 가까이는(47.6%) 담당 이용자가 1명이었으나, 2

명 혹은 3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명 이상 다수의 이용자를 담당하는 경향은 특히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더 두드러졌다.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로 나타나며, 근무 중단 이유로(중복 응답 가능) 본인의 개인 사정이라는 응답률이 36.9%로 가장 높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자발적 중단(감염, 급여중단 등)은 26.6%,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용자(가족)의 요청으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은 23.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6.0%가 이러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높게 나타났다.

2)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 단기보호 장기요양요원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1일 평균 휴게시간은 1.3시간으로 나타나며, 1시간 미만의 비율이 7.7%이며, 1~3시간인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 내 식사, 휴식, 취침 등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휴게 공간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8.4%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 중 지난 1년동안 업무시간 외 전화 또는 문자로 대응한 경우가 1회 이상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7.0%로 나타났으며, 월 1회 이상 경험자는 전체 해당 응답자의 30.9%로 나타났다. 특히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약 66%가 연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급여유형별로는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대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 외 전화(문자)대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 근무 만족도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나 근로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근무유형에 대한

만족도가 5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50.0%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또한 4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인 25.0%이며,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28.5%로 낮게 나타났다.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6.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만족도는 경력개발 및 승진기회(2.1%포인트 상승)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2%포인트 감소,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8.1%포인트 감소, 고용안정성도 7.6%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직장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12.9%포인트).

〈표 7-1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매우만족+만족)

(단위: %)

특성	2022년(A)	2019년(B)	변화(A-B))
임금수준	28.5	35.5	-7
근무시간	46.6	51.0	-4.4
근무유형	59.6	-	-
업무 내용	50.0	58.1	-8.1
업무 강도	40.8	41.4	-0.6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	25.0	22.9	2.1
고용안정성	43.6	51.2	-7.6
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35.3	-	-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	49.5	62.4	-12.9
장기요양기관 및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6.4	41.2	-4.8
업무 전반 만족도	46.2	54.4	-8.2

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정 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 18.2%,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 6.9%, 정규직 고용 확대 4.4%, 업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제공 2.7%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업무보조 장비 또는 기기 지원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 교육 17.2%, 서

류업무 축소 또는 행정전산화 15.6%, 사회적 인식 개선 14.9%, 부당 대우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대응 12.6%, 권익보호기관 강화 12.6% 라는 응답이 고르게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 재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에서 생활할 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 생활하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계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초기 중증 수급자 중심에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위한 재가급여의 보완과 발전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급여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급여 외에 식사관련 서비스, 차량 지원에 대한 욕구가 조사결과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지속적인 재가 생활 유지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장기요양서비스로서 식사·영양서비스(30.1%), 차량지원(22.3%), 방문형 의료서비스(26.1%)를 희망하였다.

수급자 및 가족의 조사 결과 재가거주자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활동의 어려움을 가족의 수발부담이 높은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18.8%는 식사준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 수급자의 20.0%는 식사준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중 26.7%는 가사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시 타인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경우, 차량지원서비스는 이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 및 편리한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재가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주거편의 및 안전장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재가 거주를 위해서 생활하는 주택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과거에 비해 주거 안전과 편의는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내 안전바 설치, 안전벨 설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거동불편자의 주택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급여 미이용자 중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와 비교하여 생활하는 주택의 안전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더욱 낮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조사 결과 수급자의 낙상률은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더 재가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안전장치 등 기능상태에 따른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이 재가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는 방문형 의료서비스이며, 기존 서비스 중 방문간호 제공기관 확대의 필요성 역시 18.0%로 응답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6.1%는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어 재가 거주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재택의료센터의 향후 본 사업으로 안착을 통해 재가거주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방문간호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요구된다. 조사결과 재가 거주자 중 1~2등급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이용자 중 1등급의 비율이 24.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 이용자 중 17.4%가 욕창 발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가 거주자 중 이동이 매우 제한적인 중증 수급자, 특히 욕창이 발생하는 중증 수급자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을 통해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중증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활용한 방문간호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1인 가구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재가 지원방식의 개편이 요구된다. 재가 거주 수급자 중 1인가구(독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조사시 재가급여 이용

자의 34.0%, 미이용자의 24.3%가 1인가구였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40.2%, 재가 거주 미이용자의 25.8%가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이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1일 1회 2~3시간의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의 단종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혼자사는 수급자의 돌봄 욕구 충족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본 사업을 준비중인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 수급자의 재가생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공 방식에서도 1일 1회가 아닌 필요에 따른 다회 방문, 야간 방문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가 거주 수급자의 기능 악화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2019년에 비해 시설거주 수급자의 거주 기간은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즉, 시설 입소 이후 다시 재가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능이 악화되더라도 재가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설 입소 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유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재가급여에서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의 적극적 급여화 추진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장기요양기관 조사에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정도를 파악하였다. 방문형 기관에서는 이용자 병원 동행시 차량이나 인력을 지원(64.0%), 기능 훈련을 위한 서비스 제공(56.7%), 수시 또는 야간 방문서비스 운영(34.5%)을 비롯하여 주야간보호에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제공(82.8%), 신체 및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34.3%,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관에서는 유니트케어와 같은 소단위 돌봄 제공 20.2%,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기기 활용 19.3%, ICT를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 설치 6.2%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별 기관에서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과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부족

한 상태이다. 현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기관의 돌봄 기기나 장비 도입, 유니트케어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 또는 일부 우수한 시설에 대한 기관 평가 가점부여(예)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크게 서비스 품질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비급여 방식의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급여 관리시스템 마련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비공식 돌봄)의 공생을 위한 정책 추진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서는 향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돌봄 부담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급자)의 돌봄 규모와 욕구를 고려하면 비공식 돌봄과의 적극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공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한적 보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활동을 촉진하고 지지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돌봄제도로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4. 장기요양수급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본 조사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학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응답이 가능한 수급자, 가족의 목격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수급자의 학대 경험, 시설 급여 제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학대 목격 경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자, 급여 미이용자별로 학대 유형별 경험 사례가 나타나며, 특히 시설 직원의 학대 목격 비율은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응답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수급자 본인 뿐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적극적 신고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요양요원 공급 확대 정책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장기요양요원 조사 지난 1년간 이직률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할때도 인력 구인의 어려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인력 구인의 어려움은 노인요양시설과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력 채용의 어려운 이유는 열악한 처우, 업무 강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요양에서의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인력 양성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최근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지금까지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6.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화 및 인권 보장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형태이지만,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본인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간제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방문형 요원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약(약속)을 당일 취소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중 특히 시

간제 고용형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취소, 연기 등에 대해 직원이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요원은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을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계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 (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003&CONT_SEQ=345605&FILE_SEQ=241326에서 인출.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15에서 인출.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 / 전국.**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3에서 2022. 3. 15. 인출.

통계청 통계대행과. (2022. 10.). 통계청 내부자료.

[부록 1]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표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승인번호 제117104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족)

인 사 말 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조사기간(2022. 7. 12. ~ 7. 25.)에 조사원이 귀하를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9조(벌칙)에 따라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주소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 ____로(길) ____	
	공동주택명 ____ ____동 ____호	
관리 사항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 번호
	[ ][ ][ ] - [ ][ ][ ] - [ ][ ][ ]	A - [ ][ ][ ][ ] - [ ][ ][ ][ ]

수급자	성 명	
	구 분	① 재가급여 이용자 ② 시설급여 이용자 ③ 미이용자
	연 락 처	- -
대리응답자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연 락 처	- -

이용 급여 유형 (명부로 작성)	① 방문 요양 ② 방문 목욕 ③ 방문 간호 ④ 주야간 보호 ⑤ 단기 보호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 ⑦ 노인요양시설 (현재 인원 ____명) ⑧ 미이용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조사	② 자기기입 조사
수급자 조사 소요 시간	① 20분 이내 ② 21분~30분	③ 31분~40분 ④ 41분 이상
가족 조사표 조사 방법	① 조사원 면접조사 ② 자기기입 조사 ③ 전화 조사	④ 미실시(미이용자 가족) ⑤ 거부/불응
가족 조사 소요 시간	① 20분 이내 ② 21분~30분	③ 31분~40분 ④ 41분 이상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수급자와의 관계	① 수급자의 배우자 ② 수급자의 아들 ③ 수급자의 며느리	④ 수급자의 딸 ⑤ 수급자의 사위 ⑥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⑦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⑧ 장기요양기관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 응답유형별 조사문항 : 수급자

항목	공통 문항	이용자		미이용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 응답	1~14	15~38 (36~38: 본인 응답만 가능)	39~52 (49~52: 본인 응답만 가능)	53~63 (63: 본인 응답만 가능)
가족 대리 응답	1~14	15~35	39~48	53~62
장기요양기관 직원 대리 응답	1~12	15~24	39~47	-

※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사람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용자 및 미이용자 모두 포함)

▣ 응답 유형별 조사 문항: 이용자 가족

공통 문항	이용자의 가족		공통(일반) 문항
	재가급여	시설급여	
64~73	74~78	79~83	84~88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를 표시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조사문항별 응답 대상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 주십시오.

※ 아래 문항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합니다.

I 공통문항

1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사별, 이혼, 별거, 미혼 포함)

2 귀하는 현재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 명

3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식사하실 때, 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① 일반식　② 죽　③ 미음　④ 경관유동식　⑤ 기타( )

* ④ 경관 유동식: 입으로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 관(튜브)으로 주입하는 묽은 음식
  ⑤ 기타: 당뇨식, 고혈압식, 암 환자식 등과 같은 **치료식** 포함

4 귀하는 현재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치매
② 뇌졸중(중풍, 뇌경색)
③ 고혈압
④ 당뇨병
⑤ 골관절염 · 류머티즘 관절염
⑥ 요통, 좌골 신경통
⑦ 골다공증
⑧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⑨ 눈 질환(백내장 · 녹내장)
⑩ 고지혈증
⑪ 위궤양 · 십이지장 궤양
⑫ 만성 신장 질환
⑬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⑭ 파킨슨병
⑮ 암
⑯ 협심증 · 심근경색증 · 심부전증
⑰ 만성 폐질환
⑱ 치과 질환(치통, 치주 질환 등)
⑲ 기타 ( )
⑳ 없다

5 귀하는 현재 **의사(한의사 포함)가 처방한 약**을 드시고 있습니까?
처방 약을 드시고 있다면, 그 약물의 개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1일 기준 _____ 개)　② 없다

6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병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의료 기관에서 진료**(대리 처방 포함*)**를 받은 적**(입원 제외)**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대리 처방: 원칙적 금지이나 의료법에 의한 대리 처방이 가능한 범위에 한함

① 있다 → **6-1** 수급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한 횟수는 몇 회 입니까?

_____회

※ 수급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가 '0(없음)'이면 6-2번 문항으로 이동

6-1-1 수급자는 주로 누구와 함께 의료기관에 가십니까?

① 수급자 혼자(동행자 없음)
② 동거 가족
③ 비동거 가족
④ 장기요양기관 직원
⑤ 기타( )

6-1-2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주로 어떻게 이동하십니까?

① 도보
② 자기 차량(수급자 또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 이용
③ 택시 이용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차량 이용
⑥ 기타*( )

* ⑥ 기타: 교통 약자 이동 수단, 129 응급차 등

6-2 가족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횟수는 몇 회 입니까?

_____회

② 없다

7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입원 횟수와 일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_____ 회, _____ 일) ② 없다

8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입원 횟수와 일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_____ 회, _____ 일) ② 없다

9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낙상(떨어지거나 넘어짐)하거나 갑자기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9-1** 낙상이나 갑자기 주저앉는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② 없다

10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욕창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귀하가 거주 하시는 곳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 **주로** 어떻게 이동하십니까?

① 거동이 불가능하여 주로 누워서 생활함
②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함(부축, 보조기구 착용, 휠체어 이동 등)
③ 기거나 엉덩이를 밀어서 이동 또는 스스로 보조기구를 착용하여 이동함
④ 보행에 문제가 없어 혼자 이동함

12 귀하는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범위 포함)

① 누워있는 자리(침대, 이불)에서만 혼자 움직일 수 있음
② 방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
③ 집 안(또는 시설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
④ 집 또는 시설의 주변(현관, 건물 입구 주변)까지만 활동할 수 있음
⑤ 집 안과 집 밖, 시설 안과 시설 밖 모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13 **[수급자, 가족만 응답]**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결정 여부, 급여 유형,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에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습니까?

① 수급자 본인
② 수급자의 배우자
③ 수급자의 자녀(배우자 포함), 손자녀(배우자 포함) 등 직계 가족
④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⑤ 이웃이나 지인
⑥ 장기요양기관 직원
⑦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및 지사 포함) 관계자
⑧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기관 관계자
⑨ 기타 ( )

14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얻습니까?

① 텔레비전(TV), 신문, 인터넷
② 배우자, 자녀(배우자 포함), 손자녀(배우자 포함) 등 직계 가족
③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④ 이웃이나 지인
⑤ 장기요양기관 직원
⑥ 병원(요양병원) 직원
⑦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및 지사 포함) 관계자
⑧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기관 관계자
⑨ 기타( )

시설급여 이용자는 39번 문항으로 이동하시고, 미이용자는 53번 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Ⅱ 재가급여 이용자

다음 15 ~ 38번 문항은 재가급여 이용자가 응답하는 설문입니다.

15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독거 가구(수급자 혼자)
② 부부 가구(수급자+배우자)
③ 자녀 동거 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
④ 자녀 및 손자녀 동거 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손자녀(배우자 포함))
⑤ 기타( )

16 귀 가구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① 수급자 본인
② 수급자의 배우자
③ 수급자의 아들
④ 수급자의 며느리
⑤ 수급자의 딸
⑥ 수급자의 사위
⑦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⑧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⑨ 기타( )

17 귀 가구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 ] 명(수급자 포함)

18 귀 가구 내에 장기요양인정 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 ] 명(수급자 포함)

1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 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 다세대 주택 ④ 기타( )

20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

2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실내에 문턱이 없다.		
2)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다.		
3)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 공간(거실, 현관 등)에 안전 손잡이가 있다.		
4)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 매트, 시트지 등이 있다.		
5) 현관의 폭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6)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의 폭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7) 비상벨 등 긴급 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8) 실외에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다.		

22 귀하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이용하신 장기요양급여를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급여 형태	지난 1개월 (2022. 6. 1. ~ 2022. 6. 30.)			미이용자	
	이용 여부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인지 여부	향후 이용 의향
1) 방문요양 * ①과 ② 중복 이용 가능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	_____ 일	____ 시간 ____ 분		
	② 일반 요양보호사	_____ 일	____ 시간 ____ 분		
	③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2) 방문목욕	① 예	_____ 일	____ 시간 ____ 분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3) 방문간호	① 예	_____ 일	____ 시간 ____ 분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4) 주야간보호	① 예	_____ 일	____ 시간 ____ 분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23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 여부	총이용 횟수	총이용 일수	인지 여부	향후 이용 의향
① 예	_____ 회	_____ 일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24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재가급여 이용 비용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얼마를 내셨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없으면, '0'으로 기입

총 [ ][ ][ ] 만 [ ] 천 원(복지 용구는 제외한 금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모두 포함)

▶▶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대리 응답한 경우에는 설문을 마칩니다.

25 ~ 35 번 까지는 본인이나 가족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5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 용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를 사용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_____ 개) → 25-1 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 25-2 번 문항으로 이동

*** 복지 용구 급여 품목**

구입 품목(10종)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 품목(6종)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25-1 [수급자, 가족만 응답]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 용구에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 26 번 문항으로 이동

25-2 [수급자, 가족만 응답] 현재 복지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지 용구가 필요하지 않아서
② 복지 용구를 잘 몰라서
③ 복지 용구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필요한 품목이 없어서)
④ 성능이 좋지 않아서
⑤ 색상이나 디자인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⑥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⑦ 기타( )

26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의 환경(청결도, 실내장식, 기관 설비, 침실이나 공용 공간의 면적 등)
③ 인력 수준(전문성, 보호 노인수 대비 인력 수 등)
④ 장기요양기관의 규모(이용자 수,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여부 등)
⑤ 장기요양기관 평가(평판, 평가 등급 등)
⑥ 수급자의 자택 또는 가족의 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의 거리
⑦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 및 추천
⑧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공립, 시립 등)
⑨ 치매, 간호, 재활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여부
⑩ 기타(　　)

27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시간에 드셨습니까?

① 처방전에 따라 제시간에 약을 먹었음
② 일주일에 1~2번은 제시간에 먹지 못함
③ 일주일에 3~4번은 제시간에 먹지 못함
④ 일주일에 5~6번은 제시간에 먹지 못함
⑤ 처방전에 따른 제시간에 거의 먹지 못함
⑥ 먹는 약이 없음

28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병의원(한의원 포함)이나 약국 등에 같이 가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있습니까? 가지 못한 적이 있다면 몇 회였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_____ 회)
② 없다

29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어도 집에서 생활하실 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식사 준비(상 차리기, 요리 등)
② 식사
③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가사 활동
④ 세안, 화장실 이용
⑤ 목욕
⑥ 병원 가기, 생필품 구입 등의 외출
⑦ 통증
⑧ 심리 · 정서적 문제(외로움, 무료함, 불안 등)
⑨ 기타 (　　)
⑩ 어려움 없음

30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30-1** 귀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많이 도와주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수급자의 배우자
② 수급자의 아들
③ 수급자의 며느리
④ 수급자의 딸
⑤ 수급자의 사위
⑥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⑦ 수급자의 형제, 자매 등 친인척
⑧ 유급 간병인이나 도우미
⑨ 이웃이나 지인
⑩ 기타( )
⑪ 없다

31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갈 때를 제외하고 외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출하셨습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⑤ 연 4~5회
⑥ 연 1~3회

31-2 주로 어디로 외출하셨습니까?

① 사회복지기관(복지관, 경로당 등)
②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등 공공행정기관
③ 종교기관
④ 집 주변 골목이나 공원
⑤ 자녀, 친구, 친지의 행사 장소 또는 집
⑥ 식당 · 쇼핑 장소(마트, 음식점, 시장 등)
⑦ 기타( )

② 없다

32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제외하고 지역 사회 내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현금 지원(후원금, 냉난방비 등, 기초 연금 제외)		
2) 현물 지원(쌀, 생필품 등)		
3) 식사 지원 서비스(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4) 보건 의료 서비스(치매 검진, 구강 검진, 우울증 검사 등)		
5) 이동 지원 서비스(차량 지원, 무료 택시 등)		
6) 주거 지원 서비스(도배 · 장판, 주택 개조 등)		
7) 여가 지원 서비스(교육, 나들이, 여가 활동 등)		

33 **[수급자, 가족만 응답]**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확진된 적이 있다.

② 밀접 접촉자로 판정받아 자가 격리를 한 적이 있다.

③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를 한 적이 없다.

34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_____ 일) → **34-1**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되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함

②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되어 장기요양기관(종사자)에서 서비스를 중단·거절함

③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확진이나 자가 격리로 서비스가 중단됨
(대체 인력을 받지 못함)

④ 감염이 우려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함

⑤ 장기요양기관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함

⑥ 기타( )

② 아니요

35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보건 의료 서비스**(병원 진료, 입원, 보건소 이용 등)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가족이 대리 응답한 경우에는 설문을 마칩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64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36 ~ 38 번 까지는 수급자 본인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36 **[수급자만 응답]** 귀하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이용하신 장기요양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단기보호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기준**
* 22번, 23번 문항의 급여 형태별 '이용 여부'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항목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1) 방문요양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2) 방문목욕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3) 방문간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4) 주야간보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5) 단기보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37 **[수급자만 응답]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다른 사람이 귀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2)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4)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다른 사람이 귀하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습니까?		
6)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를 바꾼 경우 등)		

38 **[수급자만 응답]** 귀하는 건강 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진다면 거주지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
②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의 집으로 이사
③ 노인요양시설 입소
④ 요양병원 입원

▶▶ **재가급여 이용자는 설문을 마칩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다음 39 ~ 52 번 문항은 시설급여 이용자가 응답하는 설문입니다.

Ⅲ 시설급여 이용자

39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 거주하셨습니까?

1) 일반 가정	39-1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독거 가구(수급자 혼자) ② 부부 가구(수급자+배우자) ③ 자녀 동거 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 ④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손자녀(배우자 포함)) ⑤ 기타( )	→ 40 번 문항으로 이동
2) (요양)병원	39-2 (요양)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계셨습니까? □□ 년 □□ 개월	
3) 이전(다른) 노인 요양시설	39-3 다른 노인요양시설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 년 □□ 개월	→ 41 번 문항으로 이동
4) 기타( )		
5) 모른다		

40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예 → 40-1 귀하가 이용하셨던 재가급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지 용구는 제외)
- ① 방문요양
- ② 방문목욕
- ③ 방문간호
- ④ 주야간보호
- ⑤ 단기보호

② 아니요

③ 모른다

41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 년 □□ 월

42 귀하는 현재 몇 인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① 1인실 ② 2인실 ③ 3인실 ④ 4인실

43 귀하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하신 서비스와 횟수를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이용 여부	이용 횟수(평균)
1) 목욕	① 예	주 _____ 회
	② 아니요	
2) 구강 관리(양치, 틀니 관리 등)	① 예	일 _____ 회
	② 아니요	
3) 물리(작업) 치료	① 예	주 _____ 회
	② 아니요	
4) 기능 회복 훈련(근력 증강 훈련, 균형 이동, 식사 동작 훈련 등)	① 예	주 _____ 회
	② 아니요	
5)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회상 프로그램, 문장 만들기 등)	① 예	주 _____ 회
	② 아니요	
6) 여가 활동 서비스(음악, 미술, 원예, 문화 공연 등)	① 예	주 _____ 회
	② 아니요	

44 귀하가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하셨던 야외 활동(실외 활동)과 횟수를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활동 여부	활동 횟수
1) 건물 밖 산책	① 예	일 평균 _____ 회
	② 아니요	
2) 야유회, 나들이	① 예	연 _____ 회
	② 아니요	

45 귀하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노인요양시설에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

총 [ ][ ][ ][ ] 만 [ ] 천 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모두 포함)

46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가족이나 지인 등이 귀하를 몇 회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⑤ 연 4~5회 ⑥ 연 1~3회 ⑦ 최근 1년간 없음

47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가족이나 지인 등과 통화(영상 통화 포함)를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⑤ 연 4~5회 ⑥ 연 1~3회 ⑦ 최근 1년간 없음

▶▶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대리 응답은 설문을 마칩니다.
48 번은 본인이나 가족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8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의 환경(청결도, 실내장식, 기관 설비, 침실이나 공용 공간의 면적 등)
③ 인력수준(전문성, 입소 노인수 대비 인력수 등)
④ 장기요양기관의 규모(입소자 수,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여부 등)
⑤ 장기요양기관 평가(평판, 평가 등급 등)
⑥ 자택 또는 가족의 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의 거리
⑦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 및 추천
⑧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공립, 시립 등)
⑨ 치매, 간호, 재활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여부
⑩ 기타( )

▶▶ 가족이 대리 응답한 경우에는 설문을 마칩니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64 번 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49 ~ 52 번은 본인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9 [수급자만 응답] 귀하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이용하신 장기요양서비스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⓪ 미이용	이용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1) 식사				
2) 목욕				
3) 세면, 구강, 몸단장 등 청결 서비스(목욕 제외)				
4) 기능 회복 훈련 · 물리(작업) 치료 · 인지 기능 증진				
5) 간호 및 의료 서비스				
6) 여가 활동 서비스(음악, 미술, 원예, 문화 공연 등)				
7) 시설의 환경(청결, 시설 설비, 면적 등)				
8) 장기요양기관 직원				
9) 전반적인 만족도				

50 **[수급자만 응답]** 귀하는 다른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 **50-1**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②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③ 입소 노인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서

④ 치매 증상이 심한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서

⑤ 정해진 일정(식사, 취침 등)에 맞추어 생활하기 어려워서

⑥ 기타(　　)

51 **[수급자만 응답]**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51-1**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옮기고 싶습니까?

①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녀 또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

② 다른 노인요양시설로 옮기고 싶다

③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다

52 **[수급자만 응답]**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다른 사람이 귀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2)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4)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다른 사람이 귀하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습니까?		
6)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를 바꾼 경우 등)		

▶▶ 시설급여 이용자는 설문을 마칩니다.

53 ~ 63 번 문항은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가 응답하는 설문입니다.

Ⅳ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53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는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1) 일반 가정	53-1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독거 가구(수급자 혼자) ② 부부 가구(수급자+배우자) ③ 자녀 동거 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 ④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수급자(배우자 포함)+자녀(배우자 포함)+손자녀(배우자 포함)) ⑤ 기타( )	→ 54 번 문항으로 이동
2) (요양)병원	53-2 현재 계시는 (요양)병원에는 얼마나 입원해 계셨습니까? 년 개월 53-3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입원비로 얼마를 내셨습니까?(간병비 포함) 총 만 천 원	→ 59 번 문항으로 이동
3) 기타( )		→ 59 번 문항으로 이동

54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 가구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① 수급자 본인 ② 수급자의 배우자 ③ 수급자의 아들 ④ 수급자의 며느리 ⑤ 수급자의 딸 ⑥ 수급자의 사위 ⑦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⑧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⑨ 기타 ( )

55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 가구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명(수급자 포함)

56 [수급자, 가족만 응답] 가구 내 장기요양인정 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 명(수급자 포함)

57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 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 다세대 주택 ④ 기타( )

58 **[수급자, 가족만 응답]** 현재 살고 계신 곳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실내에 문턱이 없다.		
2) 욕실이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다.		
3) 욕실이나 화장실 이외 공간에 안전 손잡이가 있다.		
4)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타일, 매트, 시트지 등이 있다.		
5) 현관의 폭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6)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의 폭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7) 비상벨 등 긴급 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8) 실외에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다.		

59 **[수급자, 가족만 응답]**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귀하의 일상생활이나 신체 수발 등은 주로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가장 **많이 도와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배우자
② 아들
③ 며느리
④ 딸
⑤ 사위
⑥ 손자녀(배우자 포함)
⑦ 형제자매 등 친인척
⑧ 유급 간병인이나 도우미
⑨ 이웃이나 지인 등
⑩ 기타( )
⑪ 없다

60 **[수급자, 가족만 응답]**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후에 이용한 적이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소규모 시설)
⑦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요양시설)
⑧ 복지 용구
⑨ 없다

61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② 가족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③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④ 본인 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⑤ 장기요양급여에 믿음이 가지 않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⑥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여서
⑦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선호해서
⑧ 나중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받았을 뿐 아직은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⑨ 기타( )

62 **[수급자, 가족만 응답]** 귀하가 앞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복지 용구
⑦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⑧ 없다

▶▶ 가족이 대리 응답한 경우에는 설문을 마칩니다. 63번은 본인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63 **[수급자만 응답]**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다른 사람이 귀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2)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4)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다른 사람이 귀하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습니까?		
6)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를 바꾼 경우 등)		

▶▶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는 설문을 마칩니다.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가족**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공통 문항

64 귀하는 수급자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① 수급자의 배우자
② 수급자의 아들
③ 수급자의 며느리
④ 수급자의 딸
⑤ 수급자의 사위
⑥ 수급자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⑦ 수급자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

65 귀하는 현재 수급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예 ※ **〈표지〉에 표시한 '급여 이용 유형'이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또는 ⑦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② 아니요' 에 표시**

② 아니요 → **65-1** 귀하는 수급자의 거주지(노인요양시설 포함)와 같은 행정 구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같은 읍면동에 거주
② 읍면동은 다르지만 같은 시군구에 거주
③ 시군구는 다르지만 같은 시도에 거주
④ 다른 시도 거주

66 귀하는 치매전담 기관이나 치매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수급자 또는 귀하가 이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인지 여부	이용 여부
1)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예	① 예 ② 아니요
	② 아니요	
2)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① 예	① 예 ② 아니요
	② 아니요	
3)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이용 모두 포함)	① 예	① 예 ② 아니요
	② 아니요	

67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으셨던 교육 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정기적인 가족 상담(방문, 전화 상담 포함)
② 필요할 때(또는 상황에 따른)마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
③ 노인 학대 예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또는 정보
④ 욕창 예방, 낙상 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 또는 정보
⑤ 부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교육
⑥ 치매 환자 돌봄 교육* 또는 정보
⑦ 교육 또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음 → 68번 문항으로 이동

* ⑥ 치매 환자 돌봄 교육: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신체 증상 돌봄, 응급 상황 대처 등과 관련한 교육

67-1 (67번에서 ①~⑥번 중 한 가지라도 선택하신 경우) 귀하가 받은 교육 또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8 귀하는 앞으로 어떤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교육 또는 정보를 받고 싶습니까?

① 부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교육
② 치매 환자 돌봄 교육
③ 욕창 예방, 낙상 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
④ 노인 학대 예방 등 인권 보호 교육
⑤ 지역 사회 연계 자원 관련 정보*
⑥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정보가 없음

* ⑤ 지역 사회 연계 자원 관련 정보: 보건, 복지 관련 기관(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해당 기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69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누가 내십니까?

① 본인 부담금 면제
② 수급자 본인
③ 수급자의 배우자
④ 수급자의 자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부담
⑤ 수급자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부담
⑥ 수급자 본인과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
⑦ 기타(　　)

70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귀하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2)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					
3)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4) 사회 참여 활동 향상					

71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2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22번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응답 제외**

항목	인지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1) 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기피했다.		
2) 수급자가 돌봄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돌봄이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3) 수급자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했다.		
4) 수급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시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5) 수급자를 밀치거나 때렸다.		
6) 수급자의 동의 없이 수급자의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를 변경했다.		

73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가 수급자를 돌보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수급자 돌봄과 관련한 가족 간의 갈등 증가
② 돌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증가
③ 수급자와 돌봄자 간의 잦은 마찰
④ 추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돌봄 비용 증가
⑤ 수급자와의 자유로운 만남(면회 등) 제한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⑥ 어려움이 없었음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79번 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74 ~ 78번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74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귀하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급여 제공 시간(월 20시간~30시간 이내)을 제외한 돌봄시간만 응답**

항목	횟수	부담 정도
1)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정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2)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쇼핑, 의료적 지원(약 구입 등), 행정 지원(서류 발급 등) 포함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성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3)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정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4)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 수발 지원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정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문제 행동 또는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75 수급자가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동안**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단기보호 이용자의 경우,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을 기준으로 응답
* 22번, 23번 문항의 급여 유형별 '이용 여부'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① 22번 방문요양서비스를 1)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만 받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응답 제외
  ② 22번 방문요양서비스를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일반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경우, 일반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응답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방문요양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2) 방문목욕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3) 방문간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4) 주야간보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5) 단기보호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					
	② 이용 시간 · 이용 일수					
	③ 서비스 내용					
	④ 전반적인 만족도					

▶▶ **1)~5) 중 하나라도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 75-1번 문항으로 이동**

75-1 귀하가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장기요양기관 직원(전문성, 친절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② 재가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③ 필요한 서비스(전문적인 의료 또는 간호 등)를 제공받지 못해서
④ 재가 서비스의 수준이 질적으로 낮아서
⑤ 필요한 시간(야간, 주말 등)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⑥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⑦ 기타 ( )

76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수급자를 어디로 모실 생각이십니까?

① 현재 살고 계신 집

② 수급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 근처

③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대기자 명단에 올린 경우도 포함)

④ 요양병원

⑤ 기타(　　)

77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치매전담기관 확대*

② 1일 다회 서비스*

③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④ 수급자를 잠시 돌봐줄 수 있는 단기보호 확대(가족 휴가, 이사, 입원 등 상황 발생 시)

⑤ 기존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이용 시간/이용 일수 확대

⑥ 기타(　　)

* ① 치매전담기관 확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기관 등 확대
② 1일 다회 서비스: 1일 2회 이상 방문(예: 1일 2시간+1시간, 1일 1시간+1시간+1시간 등)

78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합니까?

① 식사 및 영양 관리 서비스

② 병원 방문이나 외출에 필요한 차량 지원

③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택 수리 지원

④ 야간 순회 서비스*

⑤ 방문형 의료 서비스(재활, 구강 관리, 의료 서비스 등)

⑥ 기타(　　)

* ④ 야간 순회 서비스: 야간 시간 대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방문하여 위생 관리(배뇨 도움, 배설 도움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예방 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84**번 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79 ~ 83번은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79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귀하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횟수	부담 정도
1)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정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2)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쇼핑, 의료적 지원(약 구입 등), 행정 지원(서류 발급 등) 포함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정도 ⑤ 연 5회 이하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최근 1년간 없음	

80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식사					
2) 목욕 및 청결 서비스(세면, 구강, 몸단장 등)					
3) 신체,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					
4) 간호 및 의료 서비스					
5) 시설의 환경(청결도, 침실 면적 등)					
6)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7) 비용(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8) 전반적인 만족도					

81 수급자의 건강이 좋아지면 수급자를 집에서 모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81-1** 수급자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택 주거 환경(주방, 화장실, 생활 공간 등)이 불편해서
②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③ 수급자 돌봄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④ 주기적으로 의료 ·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게 하기 어려워서
⑤ 수급자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 · 정서적 부담 때문에

82 노인요양시설기관의 시설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2인실 제공
② 돌봄 인력(요양 보호사) 확대
③ 간호사, 의사 등 의료 인력 강화
④ 치매 전담 시설 확대*
⑤ 기타( )

* ④ 치매 전담 시설 확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치매전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대

83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양질의 식사 서비스
②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
③ 치매, 뇌졸중 등 전문 의료 특화 서비스
④ 기능 훈련 및 재활 서비스* 등
⑤ 임종기 돌봄 관련 서비스*
⑥ 여가 활동 및 나들이
⑦ 기타( )

* ④ 기능 훈련 및 재활 서비스: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관절 운동, 근력 증강 운동 등)과 기본동작 훈련 등
⑤ 임종기 돌봄 관련 서비스: 임종 장소 상담, 신체 상태별 돌봄 서비스 제공, 임종실 제공 등

84 ~ 88 번은 공통(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 문항입니다.

일반 사항

8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8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86 귀하는 **지난 1주일(2022. 6. 24. ~ 2022. 6. 30)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① 일을 하였다 → **86-1**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② 일을 하지 않았다

* **종사상 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함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 계약 설정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임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임
② 임 시 근 로 자 : 고용 계약 설정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임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경우임
③ 일 용 근 로 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등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조사 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임

87 귀댁의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월평균 가구 소득**(세금 공제 후)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88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 중에서 수급자를 돌보려고 일을 그만둔 적 있는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 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가족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전화	( ) -
	집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족)

2. 장기요양기관

승인번호 제 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인 사 말 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전국의 노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조사기간**(2022. 7. 12. ~ 7. 25.)**에 조사원이 귀 기관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9조(벌칙)에 따라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 _____로(길) _____ 공동 주택명 _____ _____동 _____호	
관리 사항	행정구역 분류번호 [ ][ ][ ] - [ ][ ][ ] - [ ][ ]	일련 번호 B - [ ][ ][ ] - [ ][ ][ ][ ]

응답자 성명		조사표 작성방법	① 조사원 면접조사 ② 자기기입 조사 ③ 인터넷 조사
급여 유형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 ⑦ 노인요양시설(10~29) ⑧ 노인요양시설(30~49) ⑨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조사 소요시간	① 20분 이내 ② 21분~30분 ③ 31분~40분 ④ 41분 이상
기관 위치	① 주거지역 ② 상업 · 업무 지역 ③ 농어촌지역 ④ 도서 산간 지역 ⑤ 기타( )	지방청 (사무소)	
		조사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조사원 연락처	- -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를 표시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조사 문항별 응답 대상자를 확인 후, 응답해 주십시오.**

모두 응답(공통 문항)

기관 운영 형태 및 점유 형태

1 귀 기관의 운영 주체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
② 영리 법인
③ 사회복지 법인
④ 기타 법인(종교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귀 기관의 건물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대표 등) 소유
② 법인 소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④ 전세
⑤ 월세
⑥ 기타( )

3 귀 기관은 단독으로 운영됩니까? 병설(다른 기관이나 시설과 함께 운영)로 운영됩니까?

① 단독
② 병설 →

3-1 귀 기관의 병설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요양기관과 병설
② 장기요양기관 이외 사회복지시설과 병설
③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병설
④ 기타( )

3-2 귀 기관(병설기관 포함)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유형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⑦ 노인요양시설

4 **2022. 7. 1.을 기준으로** 귀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다만, 정원이 없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정원 수 적지 않음)

* 표지에 적힌 급여 유형으로 응답, 비급여(100% 본인 부담) 이용 포함

(단위 : 명)

정원 총계	현원 수											
	현원 총계	장기요양인정등급							성별		치매 진단 여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등급 외 (등급 없는 이용자 포함)	남	여	치매	치매 아님

* 한국표준질병 · 사인 분류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은 이용자

기관 인력 관리

5 **2022. 7. 1.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원(명)				

6 **2022. 7. 1.을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직종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종별로 귀 기관에서 **근무한 평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 기관장 제외)

직종	직원 유무		기관 내 평균 근무 기간
	① 있다	② 없다	
1) 사회복지사			_____ 년 _____ 개월
2) 간호사			_____ 년 _____ 개월
3) 간호조무사			_____ 년 _____ 개월
4) 물리(작업)치료사			_____ 년 _____ 개월
5) 요양보호사			_____ 년 _____ 개월
6) 조리원			_____ 년 _____ 개월
7) 그 외 직종( )			_____ 년 _____ 개월

7 귀 기관에서 **지난 6개월(2022. 1. 1.~2022. 6. 30.) 동안** 퇴사한 건수는 직종별로 몇 건(누적 건수)입니까?

직종	퇴사
① 사회복지사	건
② 간호사	건
③ 간호조무사	건
④ 물리(작업)치료사	건
⑤ 요양보호사	건
⑥ 조리원	건
⑦ 그 외 직종( )	건
계	건

*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한 경우

8 **2022. 7. 1.을 기준으로** 귀 기관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직원의 건강 관리 지원
(**국민건강보험 제공 건강검진 외의** 별도 건강검진,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 도구 제공,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치료 지원, 직원을 위한 별도의 민간 건강보험 가입 등)
②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 장비 지원(리프트기, 목욕 침대 등의 설치 등)
③ 교육 훈련 등 자기 개발 지원(교육 훈련비 지원, 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④ 동호회 활동 지원
⑤ 수당 및 직원 복지(경조사 지원, 휴가비 · 교통비 · 피복비 · 예방 접종비 지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지급 등)
⑥ 노동조합 또는 직원 협의체 운영
⑦ 없음
⑧ 기타( )

9 귀하는 장기요양 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9-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시설장
② 사무국장
③ 사회복지사
④ 간호(조무)사
⑤ 물리(작업)치료사
⑥ 요양보호사
⑦ 기타( )

10 귀하는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양성 및 교육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실무 중심의 교육내용 개편(이용자 돌봄 기술 교육, 치매전문교육 등)
② 양질의 전문강사 양성
③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범위 및 교육시간 확대
④ 교육 시간대의 다양화(야간반, 주말반 등)
⑤ 교육 접근성 확대(교육 장소, 강의 방식(비대면, 온라인 강의 등)의 다양화)
⑥ 대체인력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⑦ 기타(　　)

11 귀하는 현재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교육에 있어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의 개선
② 요양보호사 실습 강화
③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의무화
④ 경력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마련
⑤ 기타(　　)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 대응

12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건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 1명이 1년간 두 번 낙상한 경우, 2건으로 기입

① 있다 → (총 _____건)

12-1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설 및 집 안 · 밖에서의) 낙상	_____ 건
② (송영, 외출, 병원 이송 시) 교통사고	_____ 건
③ 질식	_____ 건
④ 흡인성 폐렴(일반적 폐렴 제외)	_____ 건
⑤ 감염성 질환(독감, 간염, 결핵, 옴 등, 코로나19 제외)	_____ 건
⑥ 식중독	_____ 건
⑦ 노인 학대 신고 접수(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_____ 건
⑧ 기타(　　)	_____ 건

② 없다

13 귀 기관은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이용자의 상해나 사고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건이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총 _____건) → **13-1** 귀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보험 처리로 인한 기관의 자부담 포함)
② 장기요양기관 예산으로 처리
③ 기타(　　)

② 없다

14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건이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총 _____건) → **14-1** 귀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산재보험으로 처리
② 장기요양기관 예산으로 처리
③ 직원 개인 비용(민간 보험 포함)으로 처리
④ 기관이 가입한 민간보험으로 처리
⑤ 기타(　　)

② 없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

15 귀하는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지 않다	⑤ 전혀 어렵지 않다	⑥ 해당 없음
1) 이용자 상담 및 사례 관리						
2) 보호자 상담 및 대응						
3) 기관 운영과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업무						
4) 장기요양기관 평가						
5) 안전설비 및 시설 관리						
6)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동행						
7)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						
8) 이용자 모집						
9) 인력 채용						

▶▶ 8) 이용자 모집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15-1** 번으로 이동
▶▶ 9) 인력 채용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15-2-1** 번으로 이동

15-1 이용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지역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② 장기요양 인정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아서
④ 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경쟁해서
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급여를 선호해서
⑥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증가해서
⑦ 기타 ( )

▶▶ **15번 문항 9) 인력 채용에서 ③~⑤를 선택한 경우, 16번 문항으로 이동**

15-2-1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지역 내 관련 자격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보유자가 부족해서
② 급여가 낮아서
③ 업무 강도가 높아서
④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기피해서
⑤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⑥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거나 비용(교통비 등)이 많이 들어서
⑦ 기타 ( )

15-2-2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직종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사회복지사
② 간호사
③ 간호조무사
④ 물리(작업)치료사
⑤ 요양보호사
⑥ 조리원
⑦ 그 외 직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은 1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6 **[방문형 응답]**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 직원 수: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 수(등록만 된 직원 제외)
* 직함이 아닌 직원 배치 기준의 직종을 기준으로 작성
  예) 직원 배치 기준상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지만, 기관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기입

직원 배치 기준 직종	총 직원 수(명) (2022. 7. 1. 기준)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직원 수(명) (2022. 6. 1.~2022. 6. 30)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 시설장(관리 책임자)						
2) 사회복지사						
3) 간호사						
4) 간호조무사						
5) 요양보호사						
6) 치위생사						
7) 기타( )						
합계						
기관 내 겸직 실 인원						

* 기관 내 겸직 실 인원: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겸직하는 인원
  예) 조사 명부에 방문요양급여로 체크된 경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겸직이 가능하며, 조사 기관의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 인원을 1명으로 기재
* 방문요양은 15인 미만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위 직종(시설장)으로 표시하고, 기관 내 겸직 실 인원에도 기입

17 **[방문형 응답]** 귀 기관에서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이용자 수 감소
② 코로나19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③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④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 (요양보호사 및 이용자 방역 키트 제공 등)
⑤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⑥ 기타( )

18 **[방문형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수시 또는 야간 방문 서비스 운영		
2) 별도의 도구를 구비하여 서비스 제공(인지 프로그램용 교구(요양), 재활 도구(요양, 목욕, 간호), 마사지 기구(목욕) 등)		
3)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에 추가로 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		
4) 고난도의 돌봄 대상자(돌보기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추가 인력 투입		
5) 이용자 병원 동행 시, 기관 차량 또는 추가 인력 지원		

방문형 기관은 44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 직원 수: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 수(등록만 된 직원 제외)
* 급식이나 세탁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양사/조리원 또는 위생원은 '0' 기입
* 직함이 아닌 직원 배치 기준의 직종을 기준으로 작성
  예) 직원 배치 기준상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지만, 기관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기입

직원 배치 기준 직종	총 직원 수(명) (2022. 7. 1. 기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직원 수(명) (2022. 6. 1.~2022. 6. 3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1) 시설장(관리 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간호사								
5) 간호조무사								
6) 물리치료사								
7) 작업치료사								
8) 요양보호사								
9) 사무원								
10) 영양사								
11) 조리원								
12) 위생원								
13) 관리인								
14) 보조원(운전원)								
15) 기타( )								
합계								
기관 내 겸직 실 인원								

* 기관 내 겸직 실 인원: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겸직하는 인원
  예) 조사 명부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체크된 경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겸직이 가능하며, 조사 기관의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 인원을 1명으로 기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위 직종(시설장)으로 표시하고, 기관 내 겸직 실 인원에도 기입

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 **2022. 7. 1.을 기준으로** 귀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채용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 인력은 제외

직종	직원 수(명)
① 사회복지사	
② 간호(조무)사	
③ 요양보호사	
④ 조리원	
⑤ 그 외 직종( )	

2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주간과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각각 몇 명입니까?

항목	직원 수(명)
① 주간(야간 시간을 제외한 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수	
② 야간(22시~다음 날 6시)(*단, 주야간보호 제외) 근무 요양보호사 수	

2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응답]** 현재 법정 직원 배치 기준보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직종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 인력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 배치 기준

1순위		2순위	

① 사회복지사
② 간호사
③ 간호조무사
④ 물리치료사
⑤ 작업치료사
⑥ 요양보호사
⑦ 사무원
⑧ 영양사
⑨ 조리원
⑩ 위생원
⑪ 기타( )
⑫ 없다

주야간보호 기관은 37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제외]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② 대면 면회가 안 되는 데 따른 이용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발생
③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 채용의 어려움
④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⑤ 자원봉사자 등 외부 지원 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⑥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요양보호사 및 이용자 방역 키트 제공 등)
⑦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⑧ 이용자 감소로 시설 경영이 어려움
⑨ 서비스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 증가 및 정서적 문제 발생
⑩ 기타( )

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기관 내 감염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
② 종사자 대상으로 한 전문적 감염 관리 교육 강화
③ 방역 물품(마스크, 방호복) 제공
④ 시설 환경 개선(격리실 운영, 비접촉 면회 공간 마련, 공기청정기 설치 등)
⑤ 기타( )

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의 건물은 어떠한 용도로 건립되었습니까?

① 장기요양 급여 제공 용도로 건립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 양로시설로 건립해 사용하다가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
② 주거용 건물로 건립
③ 공공기관, 복지기관 건물로 건립
④ 상가 또는 업무용 건물로 건립
⑤ 병원 등 의료시설 건물로 건립
⑥ 호텔, 모텔, 고시원 등 다른 용도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
⑦ 기타( )

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은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또 침상을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관이 위치한 최고 층수	침상 이동 엘리베이터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③ 해당 없음 (1층이면서 단층인 경우 또는 복층이지만 생활실이 1층인 경우)
_____ 층			

2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2022. 7. 1.을 기준으로** 귀 기관의 침실 유형별 개수와 각 침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는 몇 명입니까?

항목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계
1) 침실 유형별 개수(개)					
2) 침실 사용 입소자 수(명)					

2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지난 6개월(2022. 1.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어떤 형태로 근무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근무 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24시간 근무 + 2일 휴무
② 24시간 격일제
③ 2교대
④ 3교대
⑤ 4교대
⑥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근무
⑦ 기타( )

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지난 1개월(2022. 6.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에서는 야간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를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① 교대제 ② 야간 전담 근무자가 근무 ③ 교대제+야간 전담 근무자가 근무 ④기타( )

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지난 1개월(2022. 6.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의 야간 근무 인원(시설장 포함)은 **하루 평균** 몇 명이었습니까?

총 [ ] 명

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지난 1개월(2022. 6.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외에 야간 근무를 한 직종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없음
② 시설장
③ 사무국장
④ 사회복지사
⑤ 간호(조무)사
⑥ 기타( )

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지난 3개월(2022. 4. 1.~2022. 6. 30) 동안** 귀 기관에 다음의 비공식 인력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비공식 인력	인력 여부	(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도움 정도				
		① 매우 도움됨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1) 사회복무요원	① 있음					
	② 없음					
2) 유급 프로그램 강사	① 있음					
	② 없음					
3) 개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① 있음					
	② 없음					

3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현재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식사 재료비, 간식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항목별로 기재
* 이미용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입

급여유형	비급여 항목	제공 여부		금액
		① 예	② 아니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1) 식사 재료비			1식 기준 _____ 원
	2) 간식비			1회 기준 _____ 원
	3) 경관 유동식			1식 기준 _____ 원
	4) 1인실			1일 기준 _____ 원
	5) 2인실			1일 기준 _____ 원
	6) 이미용비(커트 기준)			1회 기준 _____ 원
	7) 기타(　　)			1(　) 기준 _____ 원

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환자복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복장 착용이 가능		
2) 야간 수면 시간에 일괄 소등을 하지 않음		
3) 식사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4)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제공(당뇨식, 저염식 제외)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려한 별도의 다양한 식단 제공)		
5)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 보장		

3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특별 침실(임종, 감염병 등)을 마련		
2) 의료 서비스 강화(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 의료 계약 의사를 두거나 복수의 의료 기관과 협약 또는 치과 왕진 서비스로 치아 관리)		
3) 간호 서비스 강화(시설 내 간호사 배치)		
4) 치매 전담실 운영		
5) 소단위 돌봄(유닛 케어) 운영(치매 전담실, 전문 요양실을 제외) * 소규모 단위(10인 전후)로 별도의 식당 겸 거실을 둔 생활 소단위(유닛)로 시설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요양 서비스 제공		
6)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재활 운동 기구, 돌봄 로봇, 재활 로봇 등)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 설치 (낙상 감지 센서, 착용 가능(웨어러블) 기기 등)		
8) 건강 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당뇨식, 저염식, 연하 곤란식 등)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의 항목 중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소식지, 사회소통망(SNS) 활용, 정기적 회의)		
2) 모든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 상담 실시(분기별 1회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기관은 44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

37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이용자 수 감소
② 병의원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른 이용자의 건강 악화
③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잦은 퇴사 및 신규 채용의 어려움
④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
⑤ 자원봉사자 등 외부 지원 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⑥ 방역 관련 추가 비용 발생(요양보호사 및 이용자 방역 키트 제공 등)
⑦ 방역 지침 준수의 어려움
⑧ 기타(　　)

38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현재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식사 재료비, 간식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항목별로 기재

급여 유형	비급여 항목	제공 여부		금 액
		① 예	② 아니요	
주야간보호	1) 식사 재료비			1식 기준 _____원
	2) 간식비			1회 기준 _____원
	3) 기저귀			1일 기준 _____원
	4) 기타(　　)			1(　) 기준 _____원

39 [주야간보호 응답] 주야간보호의 **주당 운영 일수**는 며칠입니까? _____일

40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의 운영 시간은 하루 몇 시간입니까?(송영 시간 포함)

시작 시간	종료 시간
(　)시 (　)분	(　)시 (　)분

41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식사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2)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음		
3)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단 및 간식을 제공함 (당뇨식 저염식 외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 제공)		
4)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함		

42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치매 전담실 운영		
2)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재활 운동 기구, 돌봄 로봇, 재활 로봇 등)		
3) 송영(기관 이용을 위한 이동) 시 노인 실종 방지 시스템 마련 (이용자 승하차 정보 문자 제공, 보호자에게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전송)		
4) 지역 내 병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분기별 1회 이상) 이용자의 건강 관리		
5) 건강 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당뇨식, 저염식, 연하 곤란식 등)		

43 **[주야간보호 응답]** 귀 기관에서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의 항목 중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요
1)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소식지, 사회소통망(SNS) 활용, 정기적인 회의)		
2) 모든 이용자나 이용자의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상담 실시(분기별 1회 이상)		

시설장(관리 책임자) 일반 사항

4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4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세

46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중퇴 및 퇴학은 이전 학력으로 작성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2년제, 3년제)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47 귀하가 보유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⑧ 물리치료사와 ⑨ 작업치료사는 ①~⑦과 복수 응답만 가능함

① 사회복지사 ④ 한의사 ⑦ 요양보호사
② 의사 ⑤ 간호사 ⑧ 물리치료사
③ 치과의사 ⑥ 간호조무사 ⑨ 작업치료사

48 귀하는 언제부터 현재 소속 기관의 시설장(관리 책임자)으로 근무하였습니까?

□□□□년 □□월

49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현재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

1) 장기요양기관 근무 총 기간	2) 현재 소속기관 근무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년 _____ 개월

* 200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14년
* 1) 총 근무 기간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기입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장기요양요원

승인번호 제117104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

인 사 말 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조사기간**(2022. 7. 12. ~ 7. 25.)**에 조사원이 귀댁이나 근무기관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9조(벌칙)에 따라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 _____로(길) _____	
	공동 주택명 _____ _____동 _____호	
관리 사항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 번호
	□□-□□□-□□	C-□□□-□□□□

응답자 성 명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조사 ② 자기기입 조사 ③ 인터넷 조사
급여 유형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⑦ 노인요양시설(10~29) ⑧ 노인요양시설(30~49) ⑨ 노인요양시설(50명 이상)	조사 소요시간	① 20분 이내 ② 21분~30분 ③ 31분~40분 ④ 41분 이상
소속 기관명		지방청 (사무소)	
응답자 직 종	① 요양보호사 ② 사회복지사 ③ 간호(조무)사 ④ 물리(작업)치료사	조사원 성 명	
응답자 연락처	- -	조사원 연락처	- -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를 표시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월평균으로 작성 때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보유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자격증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1)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2급		
4) 간호사		
5) 간호조무사		
6) 물리치료사		
7) 작업치료사		

※ **표지의 응답자** 직종이 ① **요양보호사인 경우**만 응답

1-1 현재 귀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가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
②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근무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근무 병행

2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중퇴 및 퇴학은 이전 학력으로 작성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2년제, 3년제)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3 귀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일한 기간만을 모두 합하여 응답)

□□ 년 □□ 개월

* 200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14년

4 귀하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요양 관련 분야(장기요양,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가 본업이므로
② 가계의 부수입을 마련하려고
③ 가사, 양육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려고
④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려고
⑤ 부모 돌봄을 미리 준비하려고
⑥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같은 새로운 취업 · 창업 기회를 모색하려고
⑦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려고
⑧ 기타( )

표지에 기재된 소속 기관, 직종, 급여 유형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근무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
② 영리 법인
③ 비영리 법인(사회 복지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등)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6 귀하는 표지에 기재된 소속 기관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 ][ ][ ] 년 [ ][ ] 월

7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사원(직위 없음)
② 주임, 대리
③ 중간 관리자(부장, 차장, 팀장, 과장 등)
④ 사무국장
⑤ 시설장(관리 책임자)
⑥ 기타 ( )

8 귀하의 고용 형태와 주된 근무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1) 고용 형태	①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 ② 계약직(전일제) ③ 계약직(시간제, 현재 시급 [ ][ ], [ ][ ][ ] 원)
2) 주된 근무 장소	① 장기요양기관 ② 수급자 가정

9 귀하의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주된 근무 시간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주간 근무(09:00~18:00)
(유연 근무제(탄력적 근로 시간제) 포함)
② 저녁·야간 근무(18:00~09:00)
③ 교대 근무 → **9-1** 교대 근무는 어떤 형태입니까?
① 24시간 근무+2일 휴무
② 24시간 격일제
③ 2교대
④ 3교대
⑤ 4교대
⑥ 기타 ( )
④ 기타( )

10 귀하가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일수는 며칠입니까?
* 유급 휴가, 휴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

해당 월	4월	5월	6월
총 근무 일수	일	일	일

* 참고: 각 월별 주중, 주말 및 공휴일 일수 현황

구분	4월	5월	6월
월~금(법정 공휴일 제외)	21	21	20
토요일	5	4	4
일요일	4	5	4
법정 공휴일	–	1	2

11 귀하가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4월	5월	6월
총 시간	총 시간	총 시간

* 3개월 중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1-1번 문항으로 이동

11-1 월 6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② 일거리가 없어서
③ 기관에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해서
④ 건강이 좋지 않아서(본인의 코로나 감염 원인 포함)
⑤ 가사와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⑥ 2개 이상의 직장(다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어서
⑦ 본인이 원해서
⑧ 기타( )

12 귀하가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소속 기관에서 받은 임금**(세후 기준)**은 얼마입니까?

해당 월	4월	5월	6월
수령 임금(세후 기준)	만 원	만 원	만 원

13 다음은 소속 기관의 법정 근로 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수당 수령 방식
1) 휴일 수당	① 휴일 근무를 하지 않음 ② 휴일 수당 있음 ③ 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 ④ 휴일 수당 없음 ⑤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을 모름 ⑥ 기타( )
2) 주휴 수당	①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② 주휴 수당 있음 ③ 주휴 수당 없음 ④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을 모름 ⑤ 기타( )
3) 연차 수당	① 연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월 60시간 미만 근무) ② 별도의 연차 수당을 받음 ③ 급여(시급,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④ 소속 기관에서 정한 연간 연차 수당의 상한 일수 안에서 받음* ⑤ 연차 수당 대신 연차 휴가를 모두 쓰도록 함 ⑥ 연차 수당 없음 ⑦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을 모름 ⑧ 기타( )
4) 연장 근로 수당 (초과 근로 수당)	①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음 ② 별도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음 ③ 소속 기관에서 정한 월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상한 시간 안에서 받음* ④ 연장 근로 후 대체 휴무 사용 ⑤ 연장 근로 수당 없음 ⑥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을 모름 ⑦ 기타( )

1) 휴일 수당 지급 기준: 정해진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을 한 경우 1.5배를 더하여 수당을 지급
2) 주휴 수당 지급 기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주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3)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
* ④번의 예시: 연차 16일 중 3일까지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13일은 연차로 소진
4) 연장 근로 수당(초과 근로 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 ③번의 예시: 월 최대 10시간까지 연장 근로 수당 지급

14 귀하는 소속 기관에서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받는다	② 받지 않는다	③ 모른다
1) 장기근속 장려금			
2) 직책 수당			
3) 기타( )			

1)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무로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3) 기타 수당 예시
*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특수업무 수당, 경력 수당, 격려금 등

15 귀하는 소속 기관에서 법정 휴가 제도(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법정휴가 대상자가 아님 → **16** 번 문항으로 이동
③ 아니요

*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어야 함.(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 대상자가 아님)
*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주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음

15-1 귀하가 법정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시설장(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②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③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④ 급여 삭감, 고용 계약 갱신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⑤ 법정 휴가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⑥ 기관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⑦ 기타( )

표지에 기재된 소속 기관, 직종, 급여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는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하였습니까?

① 예(_____ 개 기관)　② 아니요 → **19** 번 문항으로 이동

17 귀하는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총 몇 시간을 근무하셨습니까?

4월	5월	6월
총 [ ][ ][ ] 시간	총 [ ][ ][ ] 시간	총 [ ][ ][ ] 시간

18 귀하가 **지난 3개월(2022. 4. 1. ~ 2022. 6. 30.) 동안** 근무하셨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임금 **(세후 기준)**은 얼마입니까?

4월	5월	6월
[ ][ ][ ] 만 원	[ ][ ][ ] 만 원	[ ][ ][ ] 만 원

19 귀하가 희망하는 근로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 [ ] 시간

20 귀하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적용 대상 아님	④ 모름
1)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임(단,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 만 60세~65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③ 적용 대상 아님'에 표시 * 장기요양기관 외 다른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경우는 '② 미가입'에 표시				
2) 건강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요양기관 외 다른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경우는 '② 미가입'에 표시				
3)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적용 대상임(가족인 요양보호사 포함) * 시설장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일하는 경우는 23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항목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월 1~3회	④ 연 6~11회	⑤ 연 4~5회	⑥ 연 1~3회	⑦ 경험 없음
1)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2)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시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4)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업무 이외의 활동이나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 1)~4) 중 모두 '⑦ 경험 없음'에 응답한 경우, 23 번 문항으로 이동

22 귀하는 위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을 요구 → **22-1** 이의 제기 후 기관의 대응 조치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③ 관련 협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④ 노동조합에 신고 및 대응 요구

⑤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직접 이의 제기

⑥ 이직(근무 기관 변경) 또는 그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중단

⑦ 그냥 참고 일을 지속

⑧ 가능한 한 해당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을 피함

⑨ 기타( )

① 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물질적 지원

② 적절한 휴식 제공(휴가, 휴직 등)

③ 심리적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공, 의료 기관 연결 등)

④ 수급자 또는 업무 변경

⑤ 기관이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이의 제기

⑥ 기타( )

⑦ 사후 조치 없었음

23 귀하는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환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체 기간 (시점 무관)		최근 1년 이내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				
2) 감염성 질환(독감, 간염, 결핵, 옴 등) * 코로나19 감염 제외				
3) 다치거나 사고(교통사고, 화상 등)				
4) (의사의 진단을 받은) 우울증 등 정신, 심리적 질환				

▶▶ **1)~4) 모두 최근 1년 이내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26 번 문항으로 이동**

24 장기요양 업무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로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발생한 비용이 없음

② 개인이 비용(민간 보험 포함) 처리

③ 장기요양기관(기관 예산 또는 기관 가입 보험)에서 비용 지급

④ 산재보험에서 비용 지급(또는 처리 중)

⑤ 기타( )

25 귀하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⑥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26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근로 시간 감소 또는 업무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소득 감소)
② 방역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 악화,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돌봄 요구도 증가
④ 동선 관리, 업무 외 활동 제한 등 지나친 사생활 침해
⑤ 근로 중단, 수급자 수 감소에 대한 불안
⑥ 본인과 수급자(가족) 간 코로나19 상호 감염에 대한 두려움
⑦ 기타( )

27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소속 기관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대면 또는 비대면 포함)

* 외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회, 지방지치단체, 교육 기관 등

① 예 →

27-1 교육의 내용(주제)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이용자 상태별(와상, 치매, 생애 말기 등) 돌봄 기술
② 신체 및 인지 기능회복 훈련(재활훈련 포함)
③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 상담 기술
④ 안전, 감염 관리 교육
⑤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⑥ 경영, 관리자 대상 교육(경영 위험 관리법, 인사 관리법 등)
⑦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⑧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⑨ 기타( )

27-2 교육의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두가지 이상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균적인 만족도로 선택해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② 아니요 →

27-3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한 교육이 아니어서(내용 또는 수준 부족)
② 교육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③ 외부 기관의 장기요양 관련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④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⑤ 교육비가 부담되어서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불안해서
⑦ 참석 의향이나 필요성이 없어서
⑧ 기타( )

28 귀하는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0 번 문항으로 이동

29 귀하가 향후 참여하고 싶으신 교육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이용자 상태별(와상, 치매, 생애 말기 등) 돌봄 기술 교육
② 직종별 직무 교육(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③ 수급자 및 수급자의 가족 상담 기술 교육
④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회복 훈련(재활 훈련 포함)
⑤ 안전, 감염 관리 교육
⑥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⑦ 경영, 관리자 대상 교육(경영 위험 관리법, 인사 관리법 등)
⑧ 전산, 컴퓨터 기기 활용
⑨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관련 교육
⑩ 기타(　　)

30 다음은 근무 조건 및 근무 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임금 수준					
2) 근무 시간					
3) 근무유형(주간, 야간, 교대제 형태)					
4) 일(업무) 내용					
5) 일(업무) 강도					
6)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					
7) 고용 안정성					
8) 종사자 복리 후생 수준					
9)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 문화					
10)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31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2022. 6. 30.) 동안** 이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1**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이직을 몇 회 하셨습니까?

① 다른 업종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 (총 _____회) → 32 번 문항으로 이동

②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 (총 _____회) → 31-1-1 번 문항으로 이동

31-1-1 이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낮은 임금 수준
② 고용의 불안정성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의 갈등
④ 시설장 또는 직원과의 갈등
⑤ 담당했던 요양 업무에 대한 불만족
⑥ 이전 기관에서 일거리 제공 중단(이용자 사망, 거부 등)
⑦ 기관의 해고 통보 또는 기관의 휴업·폐업
⑧ 개인 사정(건강 악화, 이사, 양육 등)
⑨ 기타( )

② 없다

32 귀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2-1**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근무 조건이 나은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기관 포함)
②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보건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③ 보건의료 · 사회복지 이외의 업종
④ 기타( )

② 없다

33 귀하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근로기준법」의 법정 수당 및 휴게 · 근로 시간 보장
② 장기요양기관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
③ 임금 수준 상향
④ 정규직 고용 확대
⑤ 승진, 승급체계 마련
⑥ 업무 관련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⑦ 기타( )

34 귀하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업무 강도를 낮추는 보조 장비 또는 기기 지원(전동 침대, 자동 목욕 기계, 리프트기 등)

② 서류 작성 업무 축소 및 행정 전산화 확대

③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④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권익 보호 기관 확대 강화(노동조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가족) 교육(권리와 의무 등 직원에 대한 존중 등)

⑥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⑦ 기타(　　)

▶▶ **방문형 기관 사회복지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만 근무하는 직원은 설문을 마칩니다.**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제공 기관 사회복지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가족 요양보호사는 제외)는 35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근무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3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표지에 기재된 소속기관, 급여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귀하가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수급자 수'는 실수로 적음
*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를 병행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수급자) 포함
*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지 않고 '0'으로 적음

항목	급여 제공 여부		담당하는 수급자 수	1일 최대 방문 수급자 수
	① 예	② 아니요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_____ 명	_____ 명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_____ 명	_____ 명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_____ 명	_____ 명

36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병원 동행 등의 이유로 **수급자와 외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 회) → **36-1** 수급자와 함께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한 이동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도보
② 수급자 가족의 차량
③ 택시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⑤ 본인(장기요양요원) 차량
⑥ 장기요양기관 차량
⑦ 기타( )

* 기타: 교통약자 이동수단, 129 응급차 등

② 없다

37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1개월 이상** 일을 쉰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7-1** 1개월 이상 일을 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 중단(기관 폐쇄, 수급자 또는 본인 감염, 급여 중단 등)
②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가족 돌봄 등으로 자발적 중단
③ (코로나19와 무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요청에 따른 비자발적 중단
④ (코로나19와 무관) 수급자(가족)과의 갈등, 수급자 돌봄 요구도 증가 등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
⑤ (코로나19와 무관) 본인의 개인 사정(건강, 가족 돌봄 등)
⑥ (코로나19와 무관) 소속 기관 사정 (휴업 · 폐업, 기관과의 갈등 등)
⑦ 기타(　　)

② 없다

38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3회　③ 연 4~11회　④ 연 1~3회　⑤ 경험한 적 없음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제공 간호(조무)사는 설문을 마칩니다.

2 0 2 2 년　장 기 요 양 실 태 조 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직원

39 귀하는 근무하실 때, 식사, 휴식, 취침 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하루(1일) 근무를 기준으로 실제 휴게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_____ 시간 _____ 분)

40 귀하의 소속 기관에는 식사, 휴식, 취침 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독립된 휴게 공간(요양보호사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귀하는 **지난 1개월(2022. 6. 1. ~ 2022. 6. 30.) 동안**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6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2 귀하가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근무 시간 외의 시간(퇴근 이후, 휴일 등)에 기관으로부터 업무상의 전화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를 받아 대응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① 주 3회 이상 ③ 월 1~3회 ⑤ 연 4~5회 ⑦ 최근 1년간 없음
② 주 1~2회 ④ 연 6~11회 ⑥ 연 1~3회

43 귀하는 **지난 1년(2021. 7. 1. ~ 2022. 6. 30.) 동안** 다른 장기요양기관 직원 또는 기관(시설장)이 수급자에게 행하는 다음 행동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2) 수급자의 음식, 위생 관리(화장실 이용, 체위 변경 등)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함		
3)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		
4) 필요 이상의 신체적 구속 또는 제한		
5) 성희롱 발언이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6) 약물, 소변 줄, 경관 영양 등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함		
7) 수급자의 동의 없이 수급자의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 경제적 착취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

[부록 2] 장기요양 행정지표 결과 분석

1. 2022년도 장기요양 행정지표 개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장기요양행정지표'를 개발하고 결과를 산출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 기존 장기요양통계연보의 통계와 함께 장기요양의 현황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장기요양행정지표는 기존 데이터 가공을 통해 추가적인 통계를 생산함으로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표본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장기요양통계연보에서 생산되는 통계 이외의 풍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9년 개발된 장기요양행정지표는 총 34개로 장기요양수급자 특성 및 급여이용(19개), 장기요양기관(10개), 장기요양요원(5개)의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2022년 연구에서는 2019년 개발된 장기요양행정지표 체계를 유지하되, 지표의 의미를 명확하기 하게 위한 지표명 변경과 용어 정의와 산출 기준을 수정 하였다. 〈1-5〉,〈1-6〉,〈1-8〉,〈1-11〉,〈1-12〉,〈1-15〉과 〈2-1〉 지표의 경우 지표명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1-13〉의 경우 지표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로 변경하여 보다 지표 산출의 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어 사용에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등록기관' 등으로 혼재하여 사용하던 것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다. 장기요양 행정지표의 구체적인 지표 구성 및 수정 내용은 〈부표 1〉과 같으며, 개별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 산출식, 세부 지표별 정의, 기초자료와 자료원을 제시하였다.

행정 지표의 결과분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의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였다. 2019년 행정지표에서 분석된 2016년~2018년까지의 3개년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연구에서는 2019~2021년의 3개년의 총 6년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 행정지표에서는 지표의 산출기준을 수정하면서 2016~2018의 결과 값이 기존 2019년도 결과값과 상이하여, 이를 변경된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부표 1〉 2022년 장기요양 행정지표 개요

구분	지표명		2019년 지표 대비 변화
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급여이용 (19개)	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
	1-2.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
	1-3.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
	1-4.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
	1-5.	장기요양급여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지표명 수정) ('19)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평균 이용일수 및 급여액
	1-6.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지표명 수정) ('19)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1-7.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비율	-
	1-8.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지표명 수정) ('19)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 현황
	1-9.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일수	-
	1-10.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1-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명 수정) ('19)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이용자 비율
	1-1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명 수정) ('19) 장기요양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1-1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변경) ('19)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비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를 기준으로 변경
	1-14.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급여이용률(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
	1-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명 수정) ('19) 장기요양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1-16.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
	1-17.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
	1-18.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
	1-19.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
2. 장기요양 기관 (10개)	2-1.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지표명 수정) ('19) 연도별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2-2.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
	2-3.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
	2-4.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

구분	지표명		2019년 지표 대비 변화
		침상 수	
	2-5.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
	2-6.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
	2-7.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
	2-8.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
	2-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
	2-10.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
3. 장기요양 요원 (5개)	3-1.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
	3-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	-
	3-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
	3-4.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
	3-5.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
3개 영역	34개 지표		

2. 행정지표 결과 분석

가. 장기요양 수급자 특성 및 급여이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보장규모는 2008년 제도도입이후 인정기준점수의 하한 점수를 낮추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과 2018년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한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의 6등급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4년 장기요양인정등급을 기존 3등급을 4등급으로 전환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도입하여 수급자 확대를 이룬 이후 2018년 인지지원등급 도입을 통해 수급자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214천명에서 2014년 425천명으로 2배 증가, 2018년 671천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2021년 954천명으로 14년만에 4.4배가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본 절에서는 2019년 개발된 '장기요양행정지표'를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의 진입, 사망, 등급변화 등 수급자의 특성과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은 보장규모의 확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6년 이후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은 2019년까지는 18%~19% 내외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2020년 15.7%, 2021년 16.5%로 감소하였다. 2014년과 2018년 이루어진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도입을 통한 수급자 보장성 확대 정책의 결과로서 신규 수급자의 비율이 2019년까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부터는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중 해당 년도의 신규 수급자 비율은 이전 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이후에 신규 수급자가 유입될 정책적 변화가 없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을 통한 인정조사의 어려움으로 신규 신청을 꺼리게 되는 요인 등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신규 수급자 증가 규모가 이전보다 감소한 결과이다.

신규 수급자의 수는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135천명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약 157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 주요 수급 연령인 후기 노인 인구(75세 이상)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매년 유입되는 신규 수급자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요양수급자 전체 규모 또한 후기노인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표 2〉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장기요양 신규수급자수}}{\text{장기요양 수급자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 신규수급자 수: 당해 연도 1년 동안 생애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수급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재신청 후 수급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 신규 수급자</td><td>98,380</td><td>110,334</td><td>130,980</td><td>141,483</td><td>134,903</td><td>157,049</td></tr>
<tr><td>장기요양수급자</td><td>519,850</td><td>585,287</td><td>670,810</td><td>772,206</td><td>857,984</td><td>953,511</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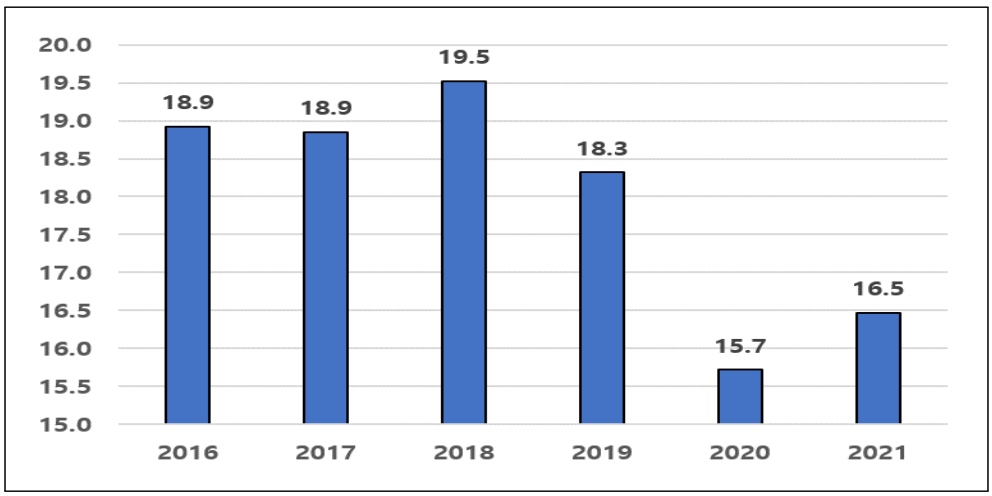

1-2.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장기요양수급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해당 년도의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대비 제도의 보장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신청하는 것은 요양 필요가 인지되어 신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인정조사를 통한 수급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국민이 생각하는 요양 필요 대비 제도의 보장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상향되었다. 2016년 60.9%에서 2021년 67.9%로 약 7.0%포인트 높아지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신규 인정신청자 규모는 2016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감소하였으나, 2021년 231천명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로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의 외부인 방문이 거부 또는 제한되어 일시적으로 신규 인정신청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적응 방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누적되었던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부표 3〉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장기요양 신규수급자수}}{\text{장기요양신규인정신청자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 신규 수급자 수: 당해 연도 1년 동안 생애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수급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 재신청 후 수급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장기요양 신규 인정 신청자 수
<table>
<tr><th>2016~2018</th><th>2019~2021</th></tr>
<tr><td>당해 연도 1년 동안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신규로 한 자(이전에 신청을 했으나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도 포함)</td><td>당해 연도 1년 동안 생애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자</td></tr>
</table></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 신규 수급자</td><td>98,380</td><td>110,334</td><td>130,980</td><td>141,483</td><td>134,903</td><td>157,049</td></tr>
<tr><td>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td><td>161,614</td><td>182,290</td><td>203,689</td><td>219,966</td><td>199,012</td><td>231,129</td></tr>
</table></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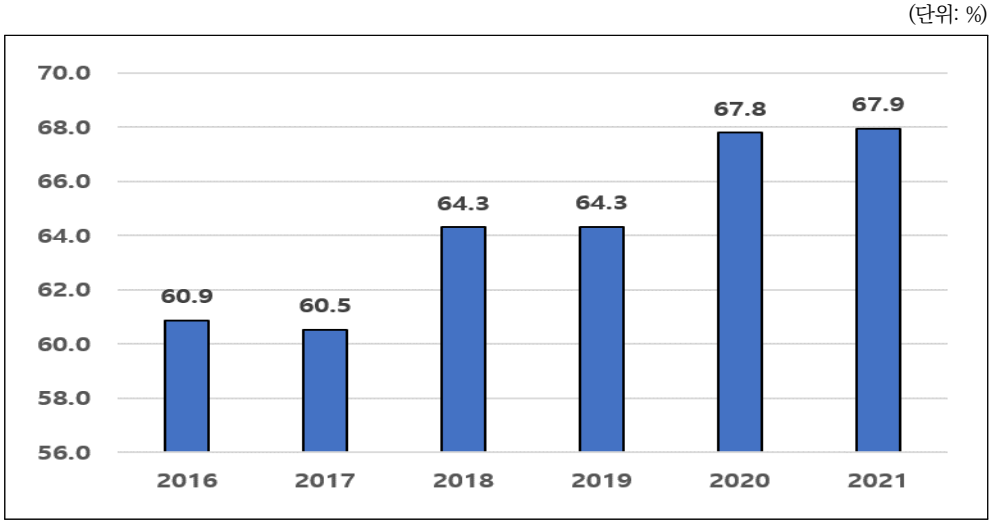

1-3.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령대별 장

기요양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5세 미만은 해당 인구 대비 0.1%, 65세 이상에서는 10.3%이며, 85세 이상에서는 37.3%로 나타난다. 즉, 85세 이상자 100명 중 장기요양수급자는 37.3명으로, 1/3이상인 것이다. 앞서 설명한 보장규모 확대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전 연령에서 장기요양수급자의 비율은 2016년 1.0%에서 2021년 1.8%로 증가하며, 연령별로는 65세 이하는 0.1%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2016년 7.1%에서 2021년 10.3%로 증가, 85세 이상은 2016년 28.1%에서 2021년 37.3%로 증가하였다.

〈부표 4〉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수}}{\text{연령대별 인구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수: 연령대별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 연령대별 인구수: 건강보험보장인구 수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표 5〉 연령대별 장기요양수급자 수 및 수급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 명수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9세 미만	438	0.0	439	0.0	417	0.0	416	0.0	413	0.0	367	0.0
40~49세	2,081	0.0	2,102	0.0	2,110	0.0	2,235	0.0	2,167	0.0	1,968	0.0
50~59세	11,406	0.1	11,875	0.1	12,310	0.1	13,454	0.2	13,906	0.2	13,300	0.1
60~64세	13,222	0.4	14,163	0.4	15,667	0.4	17,691	0.5	19,064	0.5	20,501	0.5
65~69세	31,201	1.4	34,014	1.4	36,934	1.5	43,013	1.7	48,106	1.7	52,851	1.7
70~74세	59,753	3.4	61,441	3.4	64,665	3.5	73,018	3.7	80,187	3.9	88,399	4.2
75~79세	106,060	7.3	117,555	7.5	135,323	8.4	153,412	9.5	167,952	10.4	176,424	11.0
80~84세	133,082	14.8	154,644	16.1	180,924	17.6	213,035	19.4	239,172	21.0	264,057	22.0
85~90세	103,045	25.2	120,679	27.1	142,473	29.8	166,441	31.7	189,079	32.6	220,250	34.8
90세 이상	59,562	35.2	68,375	36.7	79,987	39.3	89,491	39.6	97,938	39.7	115,414	43.1
65세 미만	27,147	0.1	28,579	0.1	30,504	0.1	33,796	0.1	35,550	0.1	36,136	0.1
65세 이상	492,703	7.1	556,708	7.6	640,306	8.4	738,410	9.2	822,434	9.7	917,375	10.3
85세 이상	162,607	28.1	189,054	29.9	222,460	32.6	255,932	34.1	287,017	34.7	335,664	37.3
전체	519,850	1.0	585,287	1.1	670,810	1.3	772,206	1.5	857,984	1.6	953,511	1.8

주: 2016~2018년 65세 미만 해당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오기입 수정(수정 전: 1.0, 수정 후: 0.1)

〔부도 3〕 전체 인구 및 연령대별 인구 대비 장기요양수급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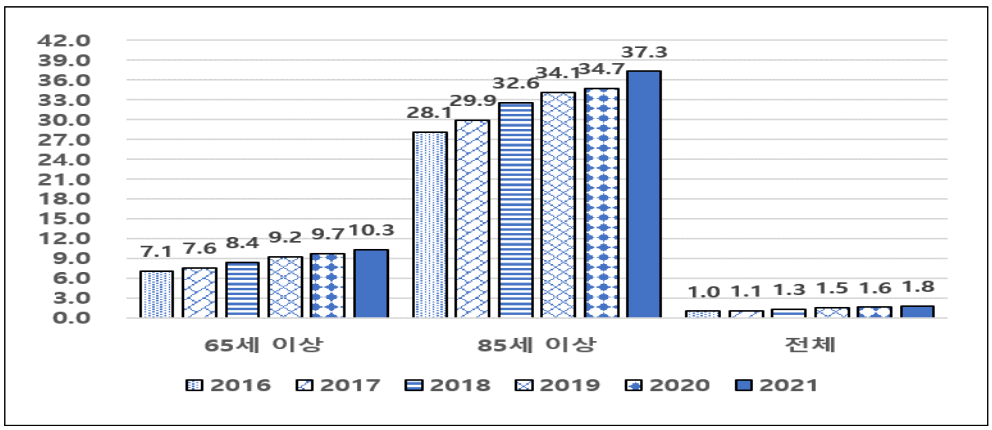

1-4.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장기요양수급자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노년기 기능상태가 계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사망까지 수급권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사망자 비율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수급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은 2016년 17.4%였으나, 매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13.8%로 나타난다. 장기요양수급권자 중 사망자의 규모는 2016년 90천명에서 2021년 132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사망자 규모 증가 속도에 비해 장기요양수급자 증가가 더욱 크기 때문에 수급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앞선 지표에서 2021년 신규 수급자(157천명)과 비교하면 수급자 중 사망자의 규모는 약 25천명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6〉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연도 사망자 수}}{\text{장기요양 수급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 연도 사망자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 연도 사망자 수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 연도 사망자 / 90,479 / 98,631 / 110,423 / 114,107 / 121,077 / 131,741 장기요양수급자 / 519,850 / 585,287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4〕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사망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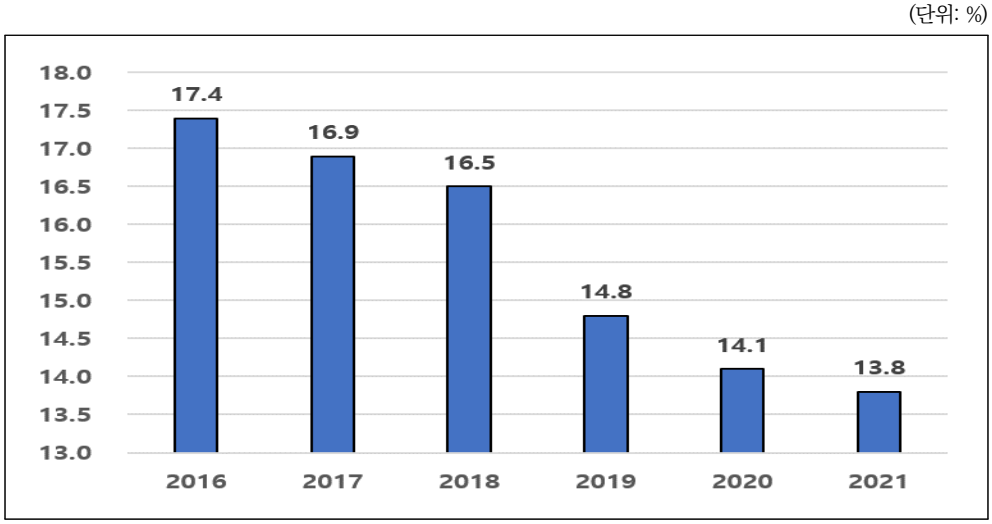

1-5. 장기요양급여 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장기요양급여 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은 노년기 장기요양 제도 이용 지속기간 및 자원소모량을 보여준다. 2019~2021년 지표에서는 사망자 중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의 장기요양 이용일수와 급여액을 제시하여 수급자이지만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를 제외한 결과이다. 수급자 중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2022년 지표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 중 사망자 수'가 아닌 '장기요양급여 이용 사망자'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급자 중 해당 년도에 사망한 자는 131,741명이지만, 급여를 이용한 자는 112,092명으로 사망자의 85.1%가 급여를 이용하였다.

산출방식이 변경된 2019년부터의 결과를 보면, 2019년은 사망할때까지 1인당 739.3일의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였으며 2021년 평균 972.9일을 이용하였다. 즉, 2021년 사망한 장기요양수급자는 2019년 사망한 수급자에 비해 233.6일을 더 이용하였으며, 급여액으로는 2019년 28백만원에서 2021년 39백만원으로 1인당 10백만원을 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1인당 총 급여액의 증가는 수가의 증가와 함께 수급자 보장성 확대로 인해 장기요양수급자 진입시기가 점차 경증시점으로 변화되면서 장기요양수급자의 사망시점까지의 지속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표 7〉 장기요양급여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급여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일수 및 급여액</td></tr>
<tr><td>산출식</td><td>1) 급여 이용일수 = $\frac{\text{당해 연도 사망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 이용일수의 합}}{\text{당해 연도 사망자 중 급여이용자수}}$

2) 평균 급여액 = $\frac{\text{당해 연도 사망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액}}{\text{당해 연도 사망자중 급여이용자수}}$</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당해 연도 사망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이용일수의 합: 당해 연도 사망자 중 일생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자의 이용기간 합산 일수
- 당해 연도 사망자가 사용한 장기요양 급여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당해 연도 사망자 중 급여이용자수 :당해 연도 1년 동안 사망한 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일생동안(개별) 1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 수
(*2016~2018: 당해 연도 1년동안 사망자수)</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일, 원,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당해 연도 사망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일)</td><td>119.5</td><td>310.7</td><td>465.0</td><td>739.3</td><td>863.4</td><td>972.9</td></tr>
<tr><td>당해연도 사망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액(원)</td><td>4,074,278</td><td>11,041,551</td><td>16,989,541</td><td>28,097,202</td><td>33,743,399</td><td>38,857,321</td></tr>
<tr><td>급여이용 사망자수(명)[1)]</td><td>90,479</td><td>98,631</td><td>110,423</td><td>98,923</td><td>107,482</td><td>112,092</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주 :1) 2016~2018년은 장기요양수급자 중 사망자수이며, 2019~2021년은 장기요양급여이용 사망자수임.

〔부도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사망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 및 급여액

(단위: 일,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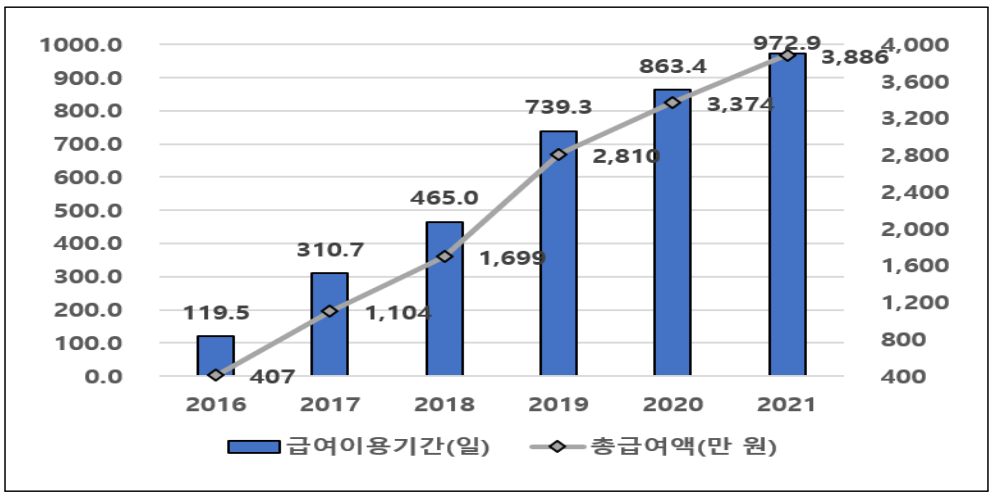

1-6.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장애인으로서의 특수 욕구를 함께 갖고 있는 대상의 규모를 알기 위함이다. 또한 장기요양 정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제도(대표적인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의미를 갖는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21년 35.6%이며, 2016년 37.9%와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규모는 2021년 339천명으로, 2016년 197천명과 비교하면 상당수 증가하였다. 장기요양수급자의 1/3 이상이 등록 장애인이며, 또한 해당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 제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표 8〉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
산출식	$\frac{\text{장기요양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수}}{\text{장기요양 수급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장기요양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수: 행복e음 데이터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 비고: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자격변동 등은 제외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장기요양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 / 196,855 / 221,312 / 249,827 / 284,239 / 310,570 / 339,213 장기요양수급자 / 519,850 / 585,287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6〕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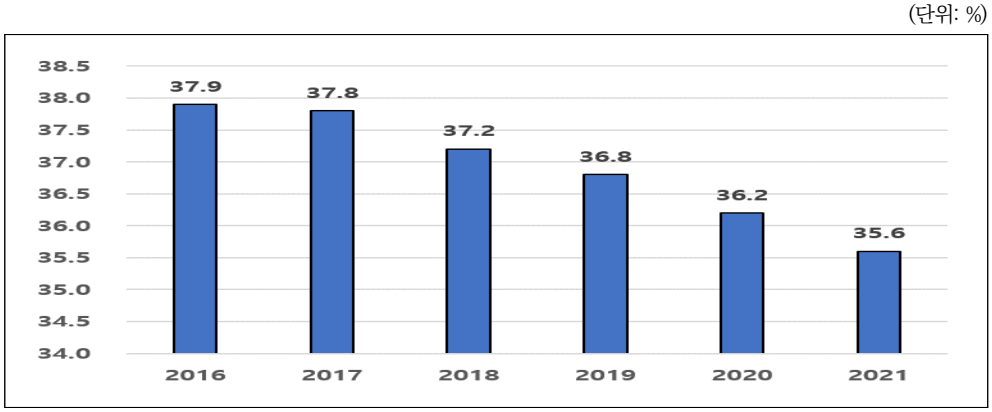

1-7.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수급 장애인 비율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표 1-6〉의 결과와 함께 장애인의 장기요양수급을 위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비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는 가정 하에 장애인의 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충족률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중 장기요양수급자의 비중은 2016년 65.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8%로 높아졌다. 이는 〈지표 1-2〉에서 해당년도의 장기요양 신규 인정신청자 대비 신규 수급자 비율이 2021년 67.9%인 것과 비교할 때 8.9%포인트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중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대비 수급자 비율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장기요양 수급권 확보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표 9〉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수급 장애인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등록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 수급 등록 장애인 비율 파악</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수}}{\text{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등록장애인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중 등록 장애인 수: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행복e음 데이터상 등록 장애인(누적인원)
-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행복e음 데이터상 등록 장애인인 자(누적인원)</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td><td>196,855</td><td>221,312</td><td>249,827</td><td>284,239</td><td>310,570</td><td>339,213</td></tr>
<tr><td>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중 등록 장애인</td><td>300,058</td><td>327,508</td><td>356,953</td><td>391,778</td><td>413,449</td><td>441,520</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7〕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애인 대비 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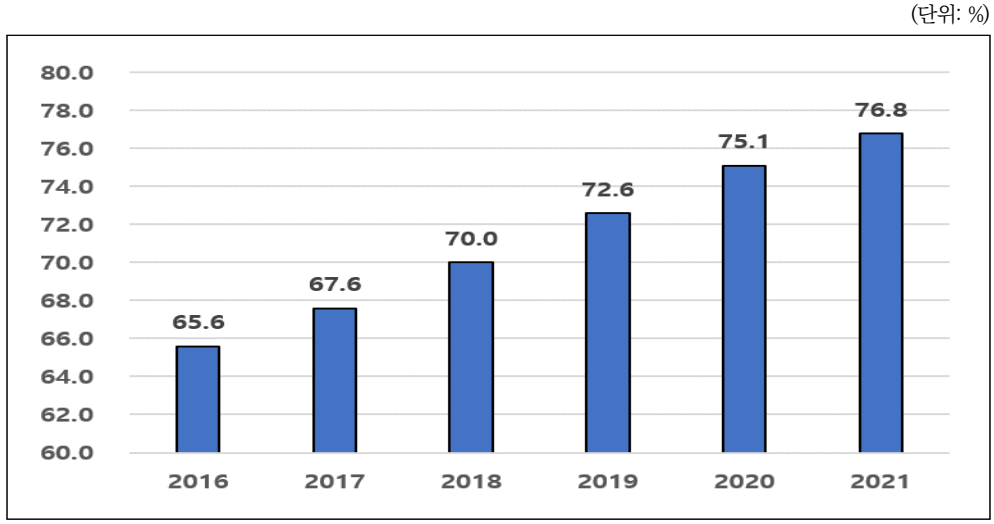

1-8.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또는 기능상태의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가 발생하며, 기능상태가 호전된 경우 등급이 하향(예, 1등급 → 2등급)되거나, 등급유지, 등급이 상향(악화)되게 된다.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 2016년 갱신신청자의 81.1%는 유지되며, 악화된 경우는 13.4%, 호전된 경우는 5.5%로 나타났다. 등급유지의 비중은 2019년 88.2%까지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부터는 다소 감소하고 2021년에는 78.7%로 나타났다. 등급 상향(악화)의 비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여 8.3%까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고 2021년 17.3%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부터 등급 갱신자 중 등급 악화가 증가하고,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의 대응 중 하나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연장, 장기요양인정조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등급갱신신청자수는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능악화로 인해 등급 상향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등급상향(악화)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등급 하향자(호전)의 비중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5%~3.5%의 범위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표 10〉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수급자 중 등급상향(악화), 등급유지(유지), 등급하향(호전)의 비율
산출식	$\frac{\text{장기요양등급 상향(유지/하향) 자수}}{\text{장기요양갱신 신청자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장기요양등급 상향자 수: 당해 연도 장기요양 갱신 신청 결과 이전 등급보다 높아진 자 (예: 3등급 → 2등급) -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 당해 연도 장기요양 갱신 신청 결과 이전 등급과 동일한 자 - 장기요양등급 하향자 수: 당해 연도 장기요양 갱신 신청 결과 이전 등급보다 낮아진 자 (예: 2등급 → 3등급) * 장기요양등급 상향(유지/하향)자수 연도별 산출 기준 - 장기요양 갱신 신청자: 당해 연도 말 기준 장기요양 갱신 신청 대상자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등급상향자 / 46,732 / 48,875 / 53,540 / 43,522 / 50,444 / 79,592 등급유지자 / 282,050 / 328,919 / 377,633 / 462,912 / 433,033 / 362,572 등급하향자 / 19,101 / 18,233 / 18,928 / 18,314 / 18,165 / 18,637 장기요양갱신신청자 / 347,883 / 396,027 / 450,101 / 524,748 / 501,642 / 460,801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8〕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변화율(하향/상향/유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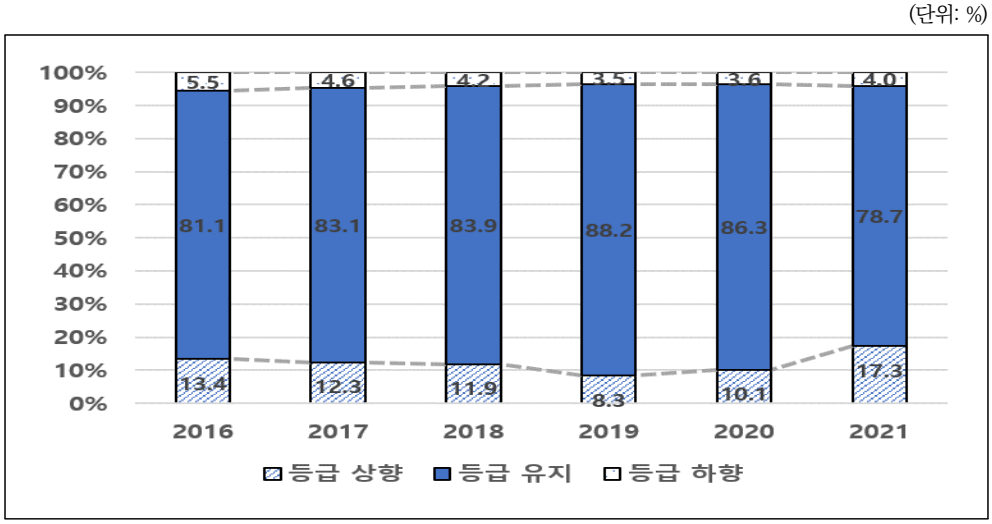

1-9.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 일수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와 외래이용일수를 살펴보았다. 수급자의 1년 간 평균 입원일수는 2016년~2018년은 40일을 넘었으나, 2019년 36.8일, 2020년 37.4일, 2021년 32.4일로 감소하였다. 장기요양수급자의 입원 일수는 감소한 반면 수급자의 외래이용일수는 2016년 26.9일이며, 2021년 26.4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기요양수급자의 입원일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요양병원 이용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수급자 중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는 28.6%가 (요양)병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조사의 47.2%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본 보고서 3장 〈표 3-98〉).

〈부표 11〉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일수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수급자의 입원 및 외래 이용자의 평균 입원 및 외래이용 일수</td></tr>
<tr><td>산출식</td><td>1)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 $\frac{\text{장기요양수급자 입원일수}}{\text{장기요양수급자 수}}$
2)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외래이용일수 = $\frac{\text{장기요양수급자 총 외래이용일수}}{\text{장기요양수급자 수}}$</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수급자 입원일수: 장기요양수급자의 해당년도 입원일수의 합
- 장기요양수급자 외래이용일수: 장기요양수급자의 해당년도 외래이용일수의 합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일,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수급자 입원일수(일)</td><td>21,281,171</td><td>24,818,323</td><td>28,731,219</td><td>28,431,328</td><td>31,791,959</td><td>30,939,611</td></tr>
<tr><td>장기요양수급자 외래이용일수(일)</td><td>13,961,333</td><td>15,977,731</td><td>18,499,049</td><td>19,699,064</td><td>22,752,418</td><td>25,137,394</td></tr>
<tr><td>장기요양수급자(명)</td><td>519,850</td><td>585,287</td><td>670,810</td><td>772,206</td><td>857,984</td><td>953,511</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DW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9〕 장기요양수급자의 연평균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 일수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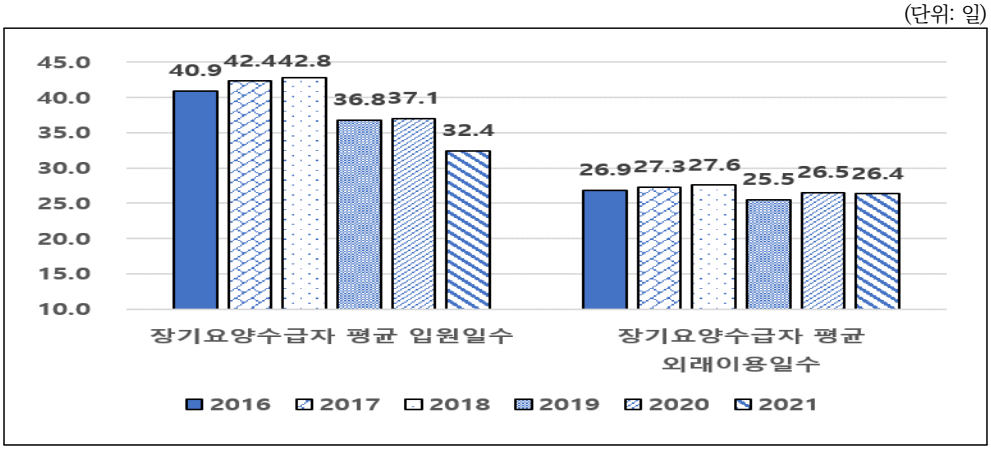

1-10.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6년 682만원에서 2018년 784만원으로 증가, 2019년 721만원, 2020년 789만원, 2021년 779만원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입원일수의 감소에 따라 1인당 입원비도 감소하였으며, 전체 진료비 중 입원비의 비중 또한 2018년 70.3%에서 65.2%로 다시 감소하였다.

〈부표 12〉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td></tr>
<tr><td>산출식</td><td>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frac{\text{장기요양수급자 총 진료비}}{\text{장기요양수급자 수}}$</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수급자 진료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원,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입원비(원)</td><td>4,776,933</td><td>5,171,088</td><td>5,511,233</td><td>4,943,458</td><td>5,354,773</td><td>5,075,457</td></tr>
<tr><td>외래진료비(원)</td><td>1,078,109</td><td>1,143,031</td><td>1,248,517</td><td>1,202,632</td><td>1,339,901</td><td>1,445,516</td></tr>
<tr><td>약제비[1](원)</td><td>968,561</td><td>1,024,524</td><td>1,083,445</td><td>1,062,501</td><td>1,199,111</td><td>1,270,811</td></tr>
<tr><td>진료비(원)</td><td>6,823,604</td><td>7,338,593</td><td>7,843,195</td><td>7,208,592</td><td>7,893,785</td><td>7,791,784</td></tr>
<tr><td>장기요양수급자(명)</td><td>519,850</td><td>585,287</td><td>670,810</td><td>772,206</td><td>857,984</td><td>953,511</td></tr>
<tr><td colspan="7">주: 2019~2021년도의 경우 '약국'으로 표기되어 있음.</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DW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0〕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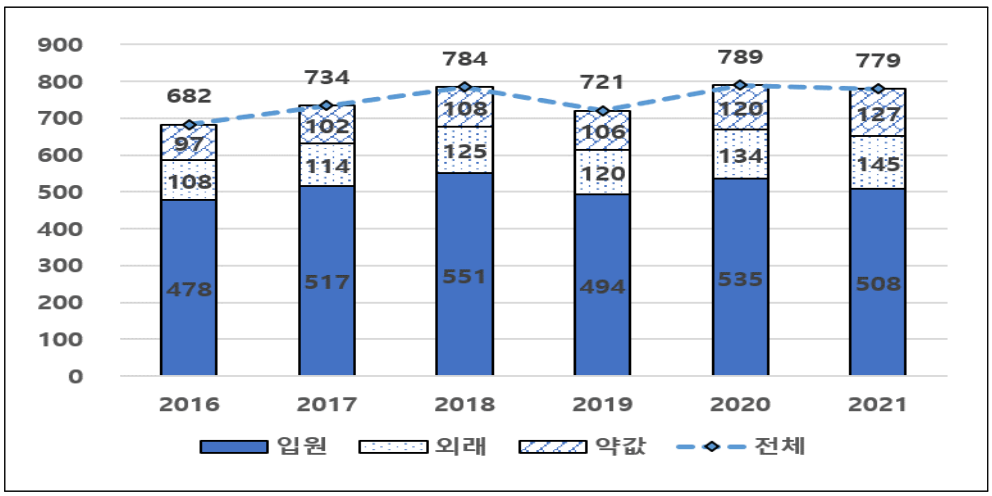

1-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장기요양수급자 중 이용자 비율은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비율을 의미한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급여를 이용한 비율은 2016년 85.2%이며, 2018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83.5%이며,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2021년 83.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5%내외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부표 13〉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수급자 대비 이용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text{장기요양수급자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 연도 급여비용 지급내역이 있는 자(공단 급여비용 지급일자 기준, 수급자의 중복, 사망 등은 제외)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사망, 등급탈락, 중복 수급자 제외)</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급여이용자</td><td>442,819</td><td>497,394</td><td>560,391</td><td>641,173</td><td>712,502</td><td>794,809</td></tr>
<tr><td>장기요양수급자</td><td>519,850</td><td>585,287</td><td>670,810</td><td>772,206</td><td>857,984</td><td>953,511</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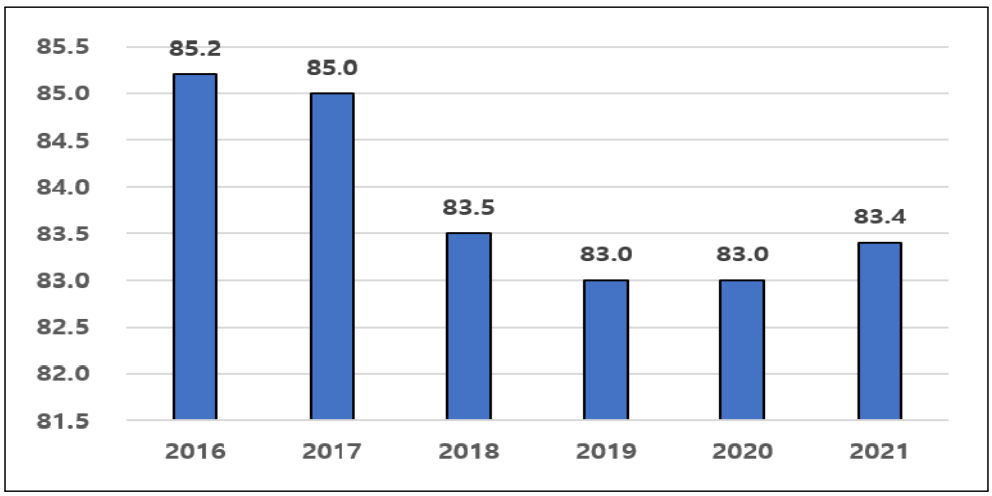

1-12.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재가급여 우선 원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장기요양 제도 운영에서는 시설급여 보다는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72.0%에서 2021년은 80.9%로 8.9%포인트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수급자 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상대적으로 경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재가 급여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부표 14〉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재가급여 이용자 수}}{\text{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재가급여 이용자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당해 연도에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 있는 수급자 수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장기요양 수급자 중 당해 연도 급여비용 지급이 있는 수급자(공단 급여비용 지급 기준, 수급자의 중복, 사망 등은 제외)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재가급여 이용자 / 318,847 / 366,621 / 422,173 / 495,447 / 562,680 / 643,16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442,819 / 497,394 / 560,391 / 641,173 / 712,502 / 794,809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12〕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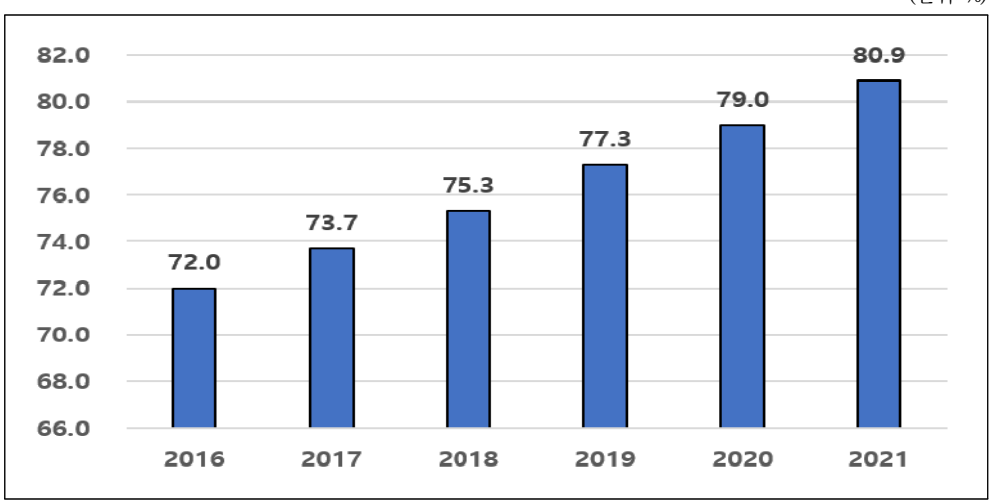

1-13.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비율[6)]

장기요양보험에서 지향하는 재가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 방

6) 2019년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지표를 '장기요양수급자'를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로 변경함. 이는 실제 급여 이용자 중 복합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복합 재가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내의 서비스를 필요한 조합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안되며, 복합재가서비스 이용 지원 및 유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복합재가급여 이용자의 수는 2016년 약 80천명에서 약 149천명으로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비율(전체 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 급여 이용자 비율)에 있어서는 2016년 18.0% 대비 2021년 18.7%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부표 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복합재가급여 이용자수}}{\text{장기요양급여 이용자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수: 당해 연도 1년 동안 장기요양수급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최소 1개월 이상 2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의 수(복지용구는 제외)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장기요양 수급자 중 당해 연도 급여비용 지급이 있는 수급자(공단 급여비용 지급 기준, 수급자의 중복, 사망 등은 제외)</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복합재가급여 이용자</td><td>79,572</td><td>92,697</td><td>104,501</td><td>118,674</td><td>133,278</td><td>148,673</td></tr>
<tr><td>장기요양 급여 이용자</td><td>442,819</td><td>497,394</td><td>560,391</td><td>641,173</td><td>712,502</td><td>794,809</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3〕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복합재가급여 이용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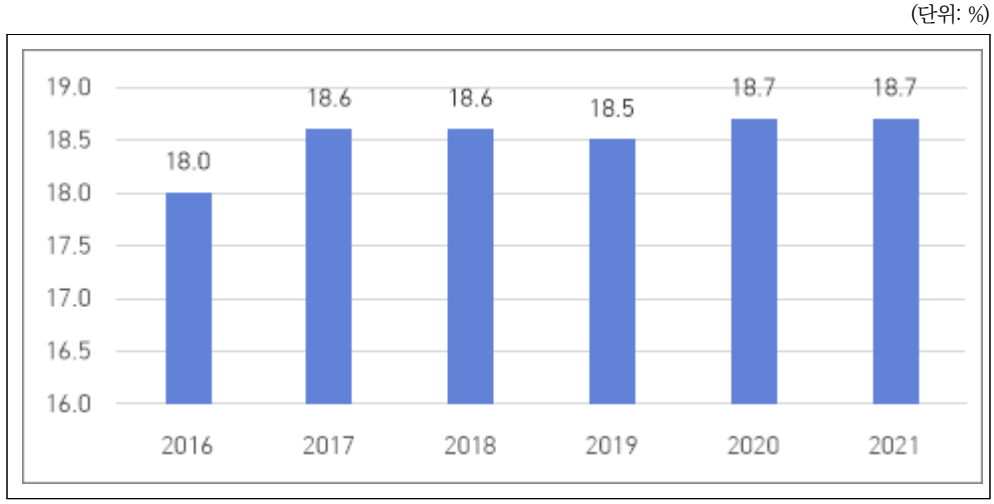

1-14.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급여이용률(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을 통해 월 한도액의 적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2016년 74.8%였으나, 2021년 92.3%까지 증가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현재의 월 한도액을 다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월 한도액 대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진행된 제도 개선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추가 가산 등이 확대되면서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 이용촉진을 위한 방문요양에 대한 중복 급여 추가 가산 등이다.

〈부표 16〉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 colspan="7">재가급여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td></tr>
<tr><td>산출식</td><td colspan="7">$\frac{\text{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지출액}}{\text{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colspan="7">-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평균 한도액: 당해 연도 고시상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평균 한도액
-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지출액: 당해 연도 12월 한 달간의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지출액(등급별 1인당 월 지출액의 합산/등급수)
* 월한도총액은 치매전담 추가산정,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원금,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복 급여 추가산정 등에 따른 월 한도액 변화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원)</td><td colspan="7"><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td><td>987,620</td><td>1,045,500</td><td>1,060,200</td><td>1,111,117</td><td>1,142,233</td><td>1,158,800</td></tr>
<tr><td>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지출액</td><td>738,609</td><td>790,720</td><td>838,767</td><td>1,038,932</td><td>1,051,858</td><td>1,069,837</td></tr>
</table></td></tr>
<tr><td>자료원</td><td colspan="7">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4〕 재가급여 이용자의 평균 월 한도액 대비 월 지출액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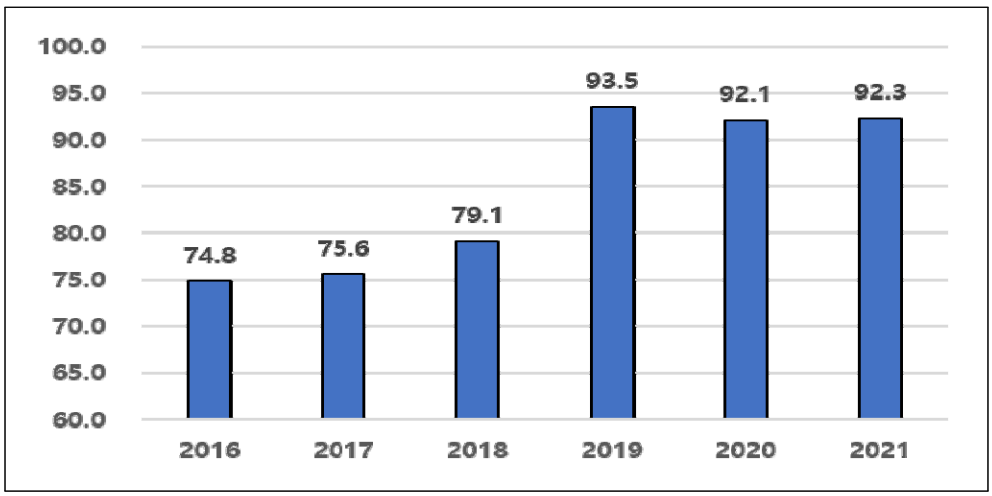

1-15.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의 비율은 2016년 34.0%에서 2021년 23.7%로 감소하였다. 앞서 〈지표 1-12〉의 '장기요양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 비율'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시설급여 이용자의 비율은 지난 6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시설급여 이용자 수}}{\text{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시설급여 이용자 수: 장기요양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당해 연도에 한번이상 이용한 수급자수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당해 연도 급여비용 지급내역이 있는 자(공단 급여비용 지급일자 기준, 수급자의 중복, 사망 등은 제외)</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시설급여 이용자</td><td>150,577</td><td>159,490</td><td>169,405</td><td>178,973</td><td>181,869</td><td>188,698</td></tr>
<tr><td>장기요양급여 이용자</td><td>442,819</td><td>497,394</td><td>560,391</td><td>641,173</td><td>712,502</td><td>794,809</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5〕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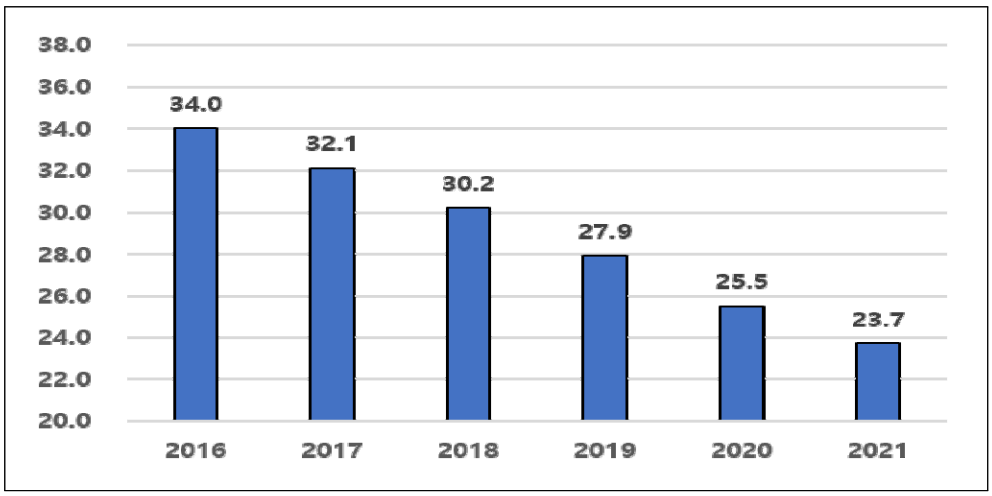

1-16.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장기요양급여 이용유형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시설급여 보다는 재가급여 우선 이용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상태 호전이나 재가 돌봄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설에 계속 거주하기 보다는 재가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지표 1-16〉과 〈지표 1-17〉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자간의 이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 이동한 비율은 2016년~2018년 7%대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2021년에는 5%내외로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표 18〉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당해 연도의 재가급여 이용자 중, 연도 내에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마지막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장기요양수급자의 비율
산출식	$\frac{\text{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 이동자 수}}{\text{재가급여 이용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 이동자 수: 당해 연도에 재가급여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다가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한 수급자 수 * 연도말의 인정자 중, 재가+시설 지급내역이 모두 있는 이용자들을 토대로, 마지막에 이용한 급여가 시설급여인 사람들 중 연도 내에 재가급여 이용내역이 있는 사람 -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수급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당해 연도에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 있는 수급자 수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 이동자 / 24,595 / 27,643 / 30,384 / 24,973 / 24,786 / 29,207 재가급여 이용자 / 318,847 / 366,621 / 422,173 / 495,447 / 562,680 / 643,165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16〕 재가급여 이용자 중 시설급여로의 이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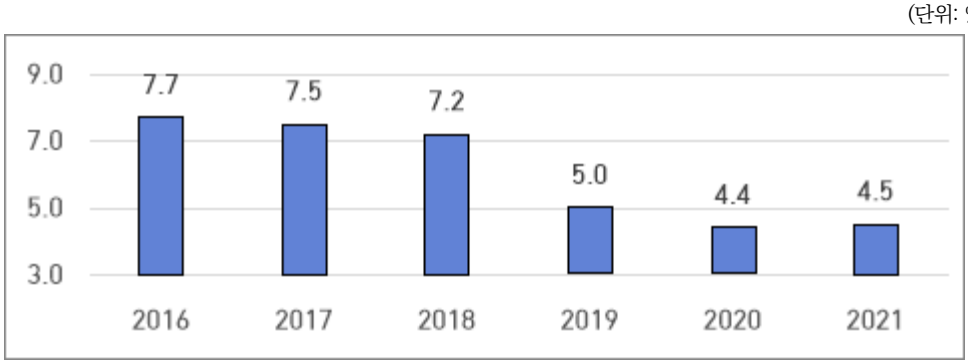

1-17.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이동한 규모 및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다. 2016년~2018년에는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 이동한 수는 7,923명에서 10,112명으로 증가하고 비율 또한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 대비 5.3%~6.2%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이후는 4천명대로 안정화되고 그 비율 또한 약 2.5%로 감소하였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의 이동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의 이동은 재가에서 시설로 이동한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9〉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연도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용자 중 해당년도에 한 번이라도 시설급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동자 수}}{\text{시설급여 이용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동자 수: 당해 연도에 시설급여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다가 마지막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한 수급자 수 * 연도말의 인정자 중, 재가+시설 지급내역이 모두 있는 이용자들을 토대로, 마지막에 이용한 급여가 재가급여인 사람들 중 연도 내에 시설급여 이용내역이 있는 사람 - 시설급여 이용자 수: 장기요양수급자 중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당해 연도에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 있는 수급자 수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동자 / 7,923 / 9,950 / 10,112 / 4,504 / 4,286 / 4,693 시설급여 이용자 / 150,577 / 159,490 / 169,405 / 178,973 / 181,869 / 188,698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17〕 시설급여 이용자 중 재가급여로의 이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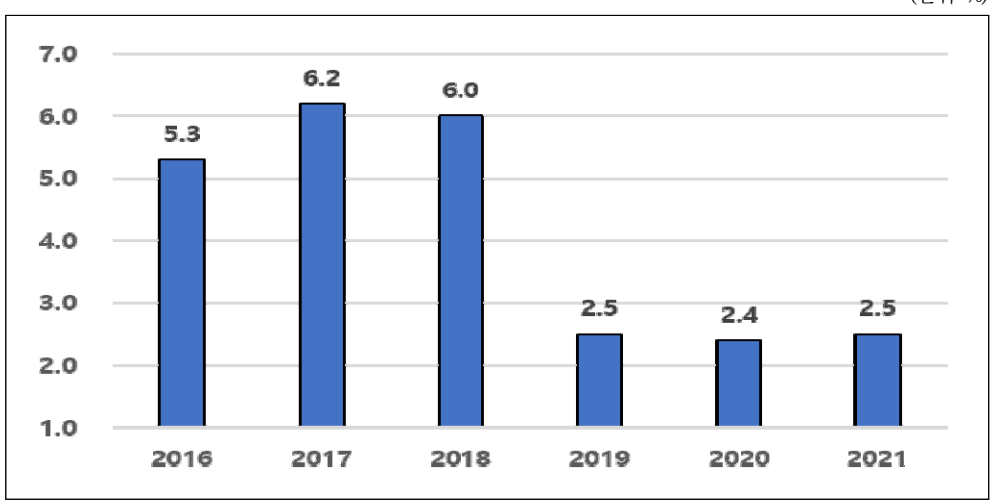

1-18.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가족요양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현금급여로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신체 및 정신, 성격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족요양비이용자수는 2016년 1,020명이며, 2021년에는 1,267명으로 증가하였

으나 전체 수급자 대비 비율은 0.2%('16)에서 0.13%('21)로 감소하였다.

〈부표 20〉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수급자 중에서 가족요양비 이용 비율
산출식	$\frac{\text{가족요양비 이용자 수}}{\text{장기요양수급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가족요양비 이용자 수: 당해 연도 중 가족요양비를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가족요양비 이용자 / 1,020 / 1,039 / 1,087 / 1,045 / 1,211 / 1,267 장기요양수급자 / 519,850 / 585,287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18〕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가족요양비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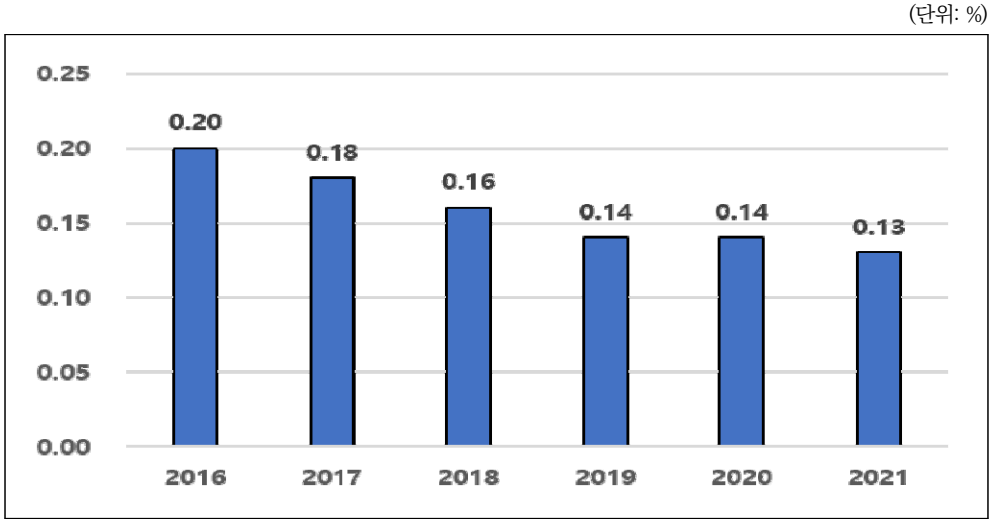

1-19.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는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수행의 자립 보조와 돌봄을 보조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35.9%이며, 계속적인 증가를 통해 2021년에는 41.2%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해당 비율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용자가 643,165명(지표 1-12 참조)임을 고려하면, 재가급여 이용자 중 61.1%가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는 결과이다. 재가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수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표 21〉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자 수</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복지용구 이용자 수}}{\text{장기요양수급자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복지용구 이용자 수: 당해 연도 중 복지용구를 1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수급자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복지용구 이용자</td><td>186,602</td><td>214,502</td><td>240,894</td><td>298,602</td><td>339,692</td><td>392,730</td></tr>
<tr><td>장기요양 수급자</td><td>519,850</td><td>585,287</td><td>670,810</td><td>772,206</td><td>857,984</td><td>953,511</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19〕 장기요양수급자 대비 복지용구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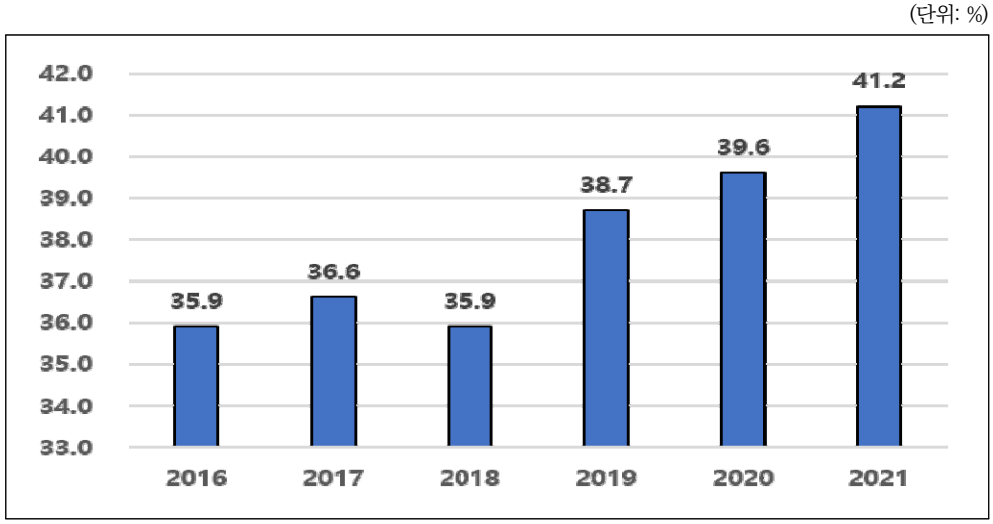

나.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행정지표

2-1.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19,398개소에서 2021년 26,547개소로 매년 평균 1,430개소가 증가하고 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016년 14,211개소에서 2020년 20,559개소로 년 평균 1,270개소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440개소가 급증하였다. 이는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 등록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 이전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설치한 기관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에는 211개소가 증가하여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2021년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16년 5,187개소에서 2021년 5,988개소이며 년 평균 160개소가 증가하였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표 23〉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 재가급여 제공기관: 당해 연도 말 기준 운영중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수
- 시설급여 제공기관: 당해 연도 말 기준 운영중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수</td></tr>
<tr><td>산출식</td><td>해당 없음</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재가급여 제공기관: 당해 연도 말 기준 운영중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수(중복 제외)
- 시설급여 제공기관: 당해 연도 말 기준 운영중인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수
- 장기요양기관: 당해 연도 말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수(휴·폐업 기관 제외, 복지용구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재가급여 제공기관</td><td>14,211</td><td>15,073</td><td>15,970</td><td>19,410</td><td>19,621</td><td>20,559</td></tr>
<tr><td>시설급여 제공기관</td><td>5,187</td><td>5,304</td><td>5,320</td><td>5,543</td><td>5,763</td><td>5,988</td></tr>
<tr><td>장기요양기관</td><td>19,398</td><td>20,377</td><td>21,290</td><td>24,953</td><td>25,384</td><td>26,547</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0〕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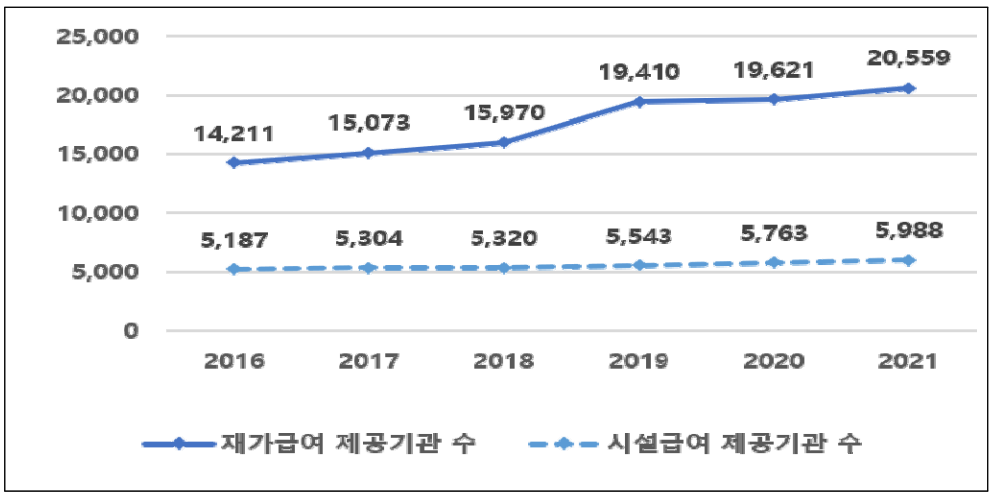

2-2.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 설립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원이 결정된다. 정원은 개별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규모를 의미하므로, 정원충족률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여주는 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원은 해당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한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주야간보호는 2016년 총 정원은 52,666명에서 2021년 161,710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정원충족률은 2016년~2018년에서는 61.4%에서 64.0%까지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 55.4%, 2020년 56.1%, 2021년 60.7%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의 총 정원은 2016년 2,55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231명으로 절반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며, 정원충족률 또한 2016년 56.9%에서 2021년은 41.0%로 감소하였다.

재가급여 중 이용시설인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지난 6년간 총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원충족률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또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 긍정적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단기보호는 수급자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비스 형태로 인해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보니 이용자 또한 감소하여 정원충족률도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기보호의 정원과 정원충족률의 감소는 향후에도 계속적인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재가 거주 중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해당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려된다.

시설급여 제공기관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총 정원은 2016년 17,961명에서 2021년 16,42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정원충족률은 85.5%에서 83.8%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총 정원은 2016년 150,395명에서 2021년 203,88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원충족률은 82.4%에서 79.4%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체 시설급여 공급은 2016년 168,356명에서 2021년 220,309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급은 감소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체 시설급여 공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충족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3〉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급여유형별 현원}}{\text{급여유형별 정원}}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급여유형별 정원: 당해 연도 말 기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의 시군구 지정신고 항목 중 정원 내역을 합산한 수
- 급여유형별 현원: 당해 연도 말 기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신고한 월평균 현원을 합산한 수(청구기준)</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 rowspan="2">주야간보호</td><td>정원</td><td>52,666</td><td>66,607</td><td>83,674</td><td>122,467</td><td>144,829</td><td>161,710</td></tr>
<tr><td>현원</td><td>32,335</td><td>42,300</td><td>53,590</td><td>67,837</td><td>81,312</td><td>98,179</td></tr>
<tr><td rowspan="2">단기보호</td><td>정원</td><td>2,551</td><td>2,085</td><td>1,646</td><td>1,474</td><td>1,324</td><td>1,231</td></tr>
<tr><td>현원</td><td>1,451</td><td>1,157</td><td>980</td><td>764</td><td>588</td><td>505</td></tr>
<tr><td rowspan="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정원</td><td>17,961</td><td>17,681</td><td>16,944</td><td>17,119</td><td>16,904</td><td>16,425</td></tr>
<tr><td>현원</td><td>15,358</td><td>15,381</td><td>15,059</td><td>14,628</td><td>14,370</td><td>13,757</td></tr>
<tr><td rowspan="2">노인요양시설</td><td>정원</td><td>150,395</td><td>156,862</td><td>163,484</td><td>175,611</td><td>188,373</td><td>203,884</td></tr>
<tr><td>현원</td><td>123,872</td><td>131,814</td><td>140,607</td><td>149,571</td><td>153,787</td><td>161,968</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1〕 급여유형별 정원충족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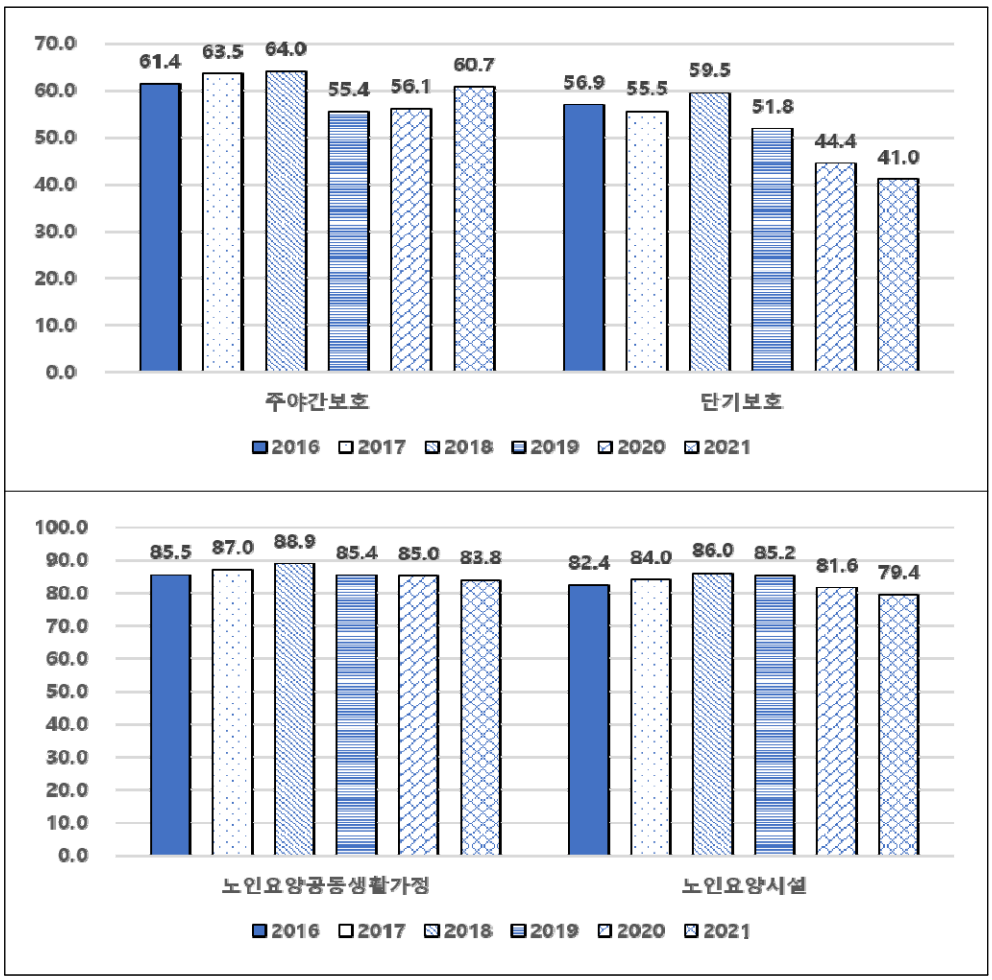

2-3.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가거주 노인의 다양한 요양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단일서비스 제공보다는 2종 이상의 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16년 9,275개소에서 2021년 12,689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 기간에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

관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2016년 65.3%에서 2021년 61.7%로 나타났다.

〈부표 25〉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산출식	$\frac{\text{복합재가급여제공기관수}}{\text{재가급여제공기관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복합재가급여 제공기관수: 당해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수 (휴·폐업 제외, 복지용구 제외) - 재가급여 제공기관수: 당해 연도 말 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수
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복합재가급여 제공기관 / 9,275 / 9,749 / 10,195 / 12,015 / 12,146 / 12,689 재가급여 제공기관 / 14,211 / 15,073 / 15,970 / 19,410 / 19,621 / 20,559
자료원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22〕 재가급여 제공기관 대비 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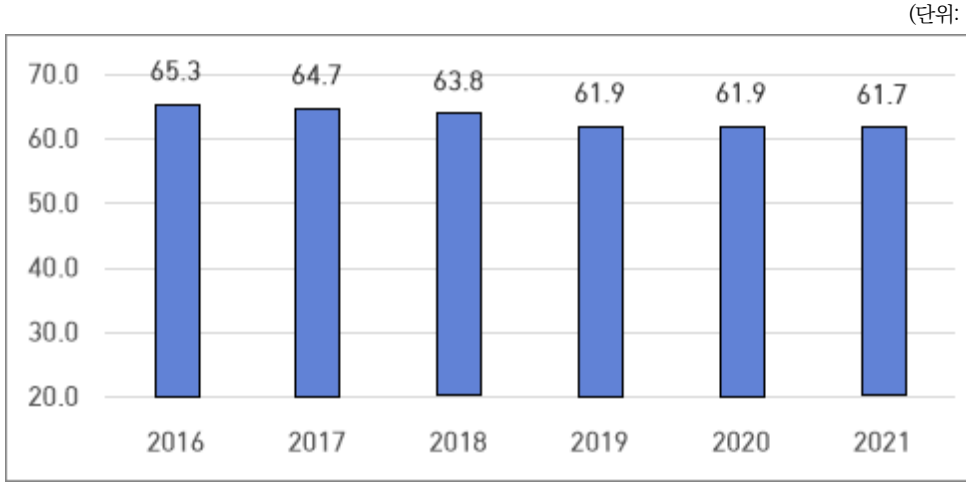

2-4.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 수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수는 2016년 323.9개에서 2021년 231.1개로 감소하고 있다. 시설급여 정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 수급자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부표 25〉 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 정원
산출식	$\frac{\text{시설급여제공기관정원의합}}{\text{장기요양수급자수}} \times 1000$
세부 지표별 정의	- 시설급여 제공기관 정원의 합: 당해 연도 말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의 시군구 지정신고 항목 중 정원 내역을 합산한 수 - 장기요양수급자 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후 등급 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 포함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시설급여 제공기관 정원의 합 / 168,356 / 174,543 / 180,428 / 192,730 / 205,277 / 220,309 장기요양수급자 수 / 519,850 / 585,287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자료원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23〕 수급자 1,000명당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침상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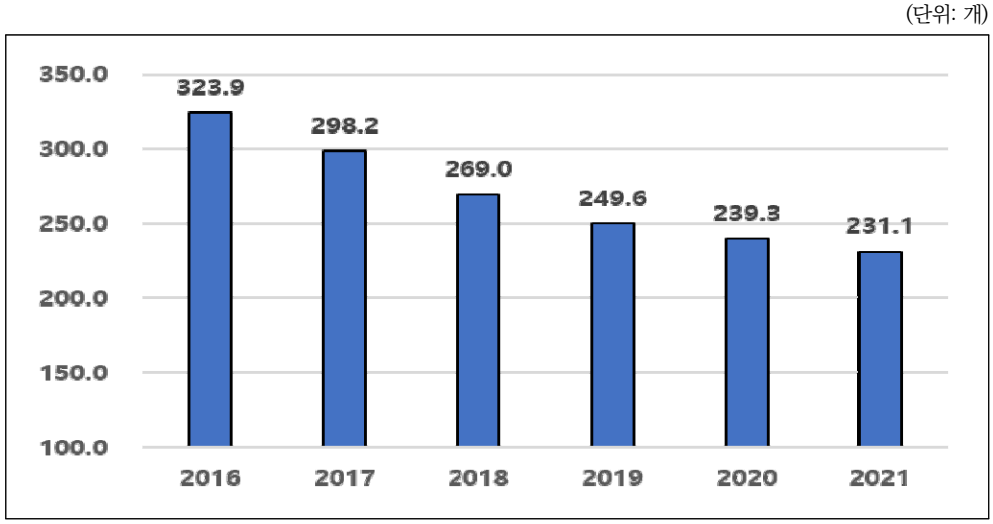

2-5.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 제공기관의 비율은 공급기관의 안정적 운영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6년~2018년에는 장기요양등록기관수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수는 약 81.0% 수준이였다. 최근 3년간 실제 제공기관수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2019년 89.3%, 2020년 87.8%, 2021년 88.7%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2016~2018년의 경우 등록기관수와 제공기관수의 단위를 서비스 종류별로 산정하고, 2019년부터는 중복을 제외한 기관수로 제시되었다.

〈부표 26〉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실제 급여제공기관 수}}{\text{장기요양등록기관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실제 급여제공기관수: 당해 연도 말일 기준, 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한 장기요양기관 수
* 2016~2018년: 서비스 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제공기관수 기준(중복 포함)
* 2019~2021년: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중복 제외)
- 장기요양등록기관수: 당해 연도 말 기준, 지정 유지 중인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총수 (휴업, 폐업 제외)
* 2016~2018년: 서비스 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록기관수 기준(중복 포함)
* 2019~2021년 합계의 경우 장기요양기관기호 기준</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실제 급여제공기관</td><td>23,329</td><td>24,502</td><td>25,430</td><td>20,815</td><td>22,280</td><td>23,542</td></tr>
<tr><td>장기요양등록기관</td><td>28,491</td><td>29,986</td><td>31,392</td><td>24,953</td><td>25,384</td><td>26,547</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4〕 장기요양등록기관 대비 실제 급여제공기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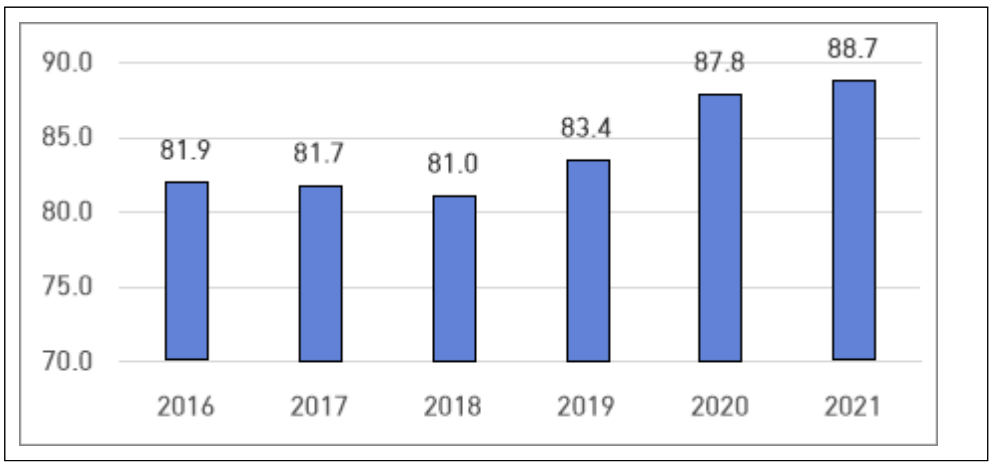

2-6.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급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관의 증가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업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3,451개소, 2017년 3,114개소, 2018년 3,317개소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 대비 개업률은 해당 기간에 15.3%~17.8%로 나타났다.

2019년에 개업한 장기요양기관은 6,527개소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2019년 말 장기요양기관 등록 제도 변화 이전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2019.12.12.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시군구로 지정신청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정책 변화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기관 개업을 고려한 경우 「노인복지법」의 시설 설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개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2019년 개업률은 26.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2,513개소가 개업을 하였으며, 이전 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며, 2021년부터는 다시 개업 장기요양기관은 3,257개소로 증가하여, 2018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표 28〉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당해 연도 말일 기준 장기요양기관 대비 당해 연도 개업 장기요양기관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당해연도 개업 장기요양기관수}}{\text{장기요양기관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당해 연도 개업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1년간 신규 지정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총합)
-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말 장기요양기관기호 기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수(휴·폐업 기관 제외, 복지용구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개업 장기요양기관</td><td>3,451</td><td>3,114</td><td>3,317</td><td>6,527</td><td>2,513</td><td>3,257</td></tr>
<tr><td>장기요양기관</td><td>19,398</td><td>20,377</td><td>21,290</td><td>24,953</td><td>25,384</td><td>26,547</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5〕 장기요양기관 개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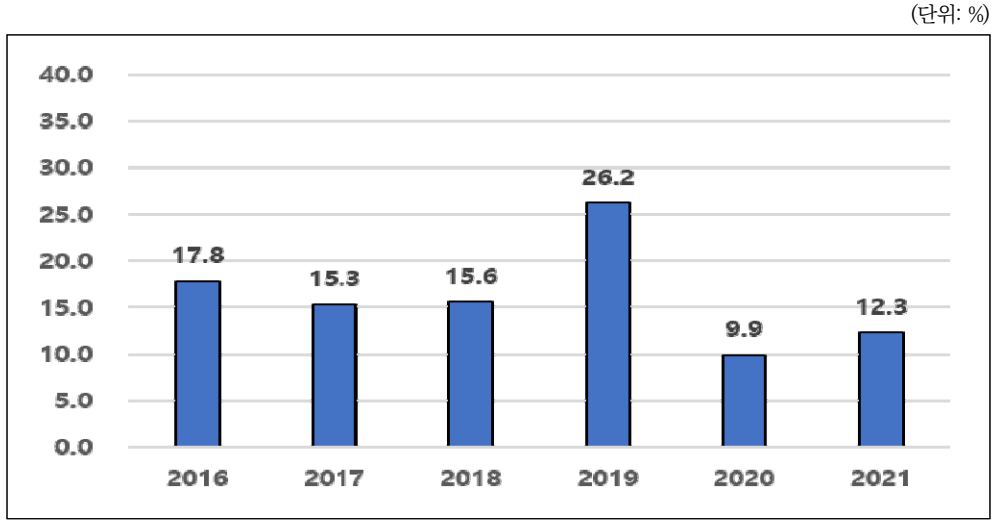

2-7.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장기요양기관은 개업하는 기관 뿐 아니라 폐업하는 기관의 수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9년까지 폐업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2,054개소가 폐업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2,762개소가 폐업을 하였다. 2019년 폐업이 증가한 원인은 2019년 12월말 장기요양기관 지정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폐업 신고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새롭게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년도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률은 2016년~2018년 약 10%가량으로 유지되고, 2019년 11.1%로 증가하며, 2020년과 2021년에는 7.4%수준으로 낮아졌다.

〈부표 29〉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당해 연도 말일 기준 장기요양기관 대비 당해 연도 폐업 장기요양기관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당해연도 폐업 장기요양기관 수}}{\text{장기요양기관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당해 연도 폐업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1년간 폐업신고한 장기요양기관 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합)
-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말 장기요양기관기호 기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수(휴·폐업 기관 제외, 복지용구 포함)</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폐업 장기요양기관</td><td>2,054</td><td>2,059</td><td>2,262</td><td>2,762</td><td>1,866</td><td>1,974</td></tr>
<tr><td>장기요양기관</td><td>19,398</td><td>20,377</td><td>21,290</td><td>24,953</td><td>25,384</td><td>26,547</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26〕 장기요양기관 폐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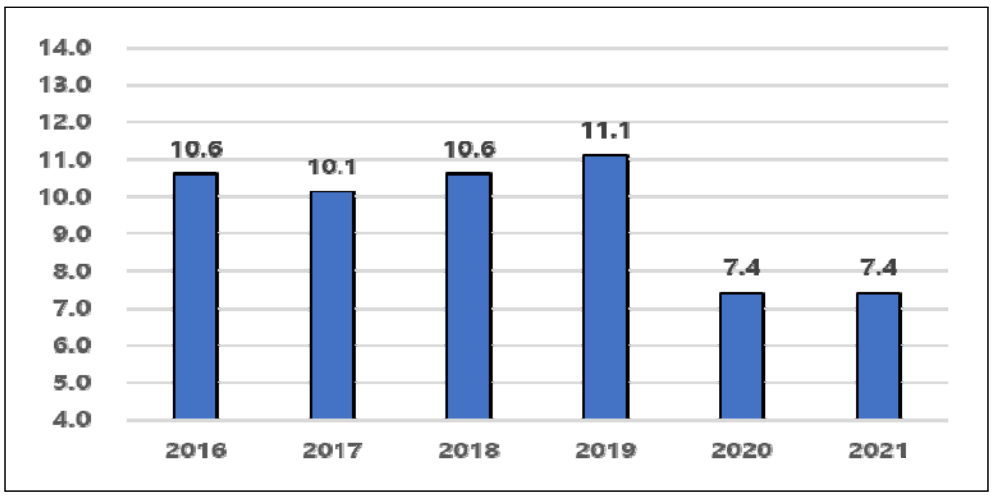

2-8.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기간이 일정수준 이상 안정화된 기관이 많을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년이상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3년 이상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61.5%이며, 2017년 63.2%, 2018년 60.5%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19년 55.4%, 2020년 57.3%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장기요양기관 개업과 폐업의 변화가 반영되어 2019년부터 2020년간 3년 이상 운영기관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에는 해당 수치가 65.9%로 증가하여 다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0〉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당해 연도 말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산출식	$\frac{\text{3년 이상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수}}{\text{장기요양기관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기준으로 3년 연속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청구실적이 있는 기관 총수 - 장기요양기관수: 당해 연도 말 장기요양기관기호 기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수(휴·폐업 기관 제외)
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 11,938 / 12,886 / 12,888 / 13,832 / 14,535 / 17,488 장기요양기관 / 19,398 / 20,377 / 21,290 / 24,953 / 25,384 / 26,547
자료원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27〕 3년 이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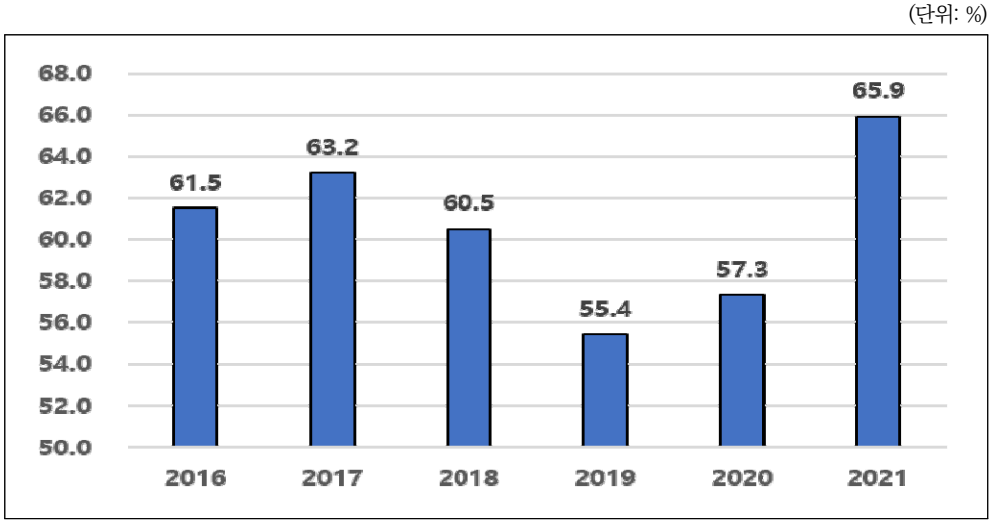

2-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요양보호사 인력은 장기요양요원 중 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직종이다.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도별 적정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480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030개소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수급자 규모가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요양호사 추가 양성 필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부표 3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산출식	해당 없음
세부 지표별 정의	- 교육기관수: 당해 연도 말 기준, 운영 중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제외), 휴·폐업기관 제외)
지표 기초자료 (단위: 개소)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 480 / 510 / 527 / 812 / 943 / 1,030
자료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부도 2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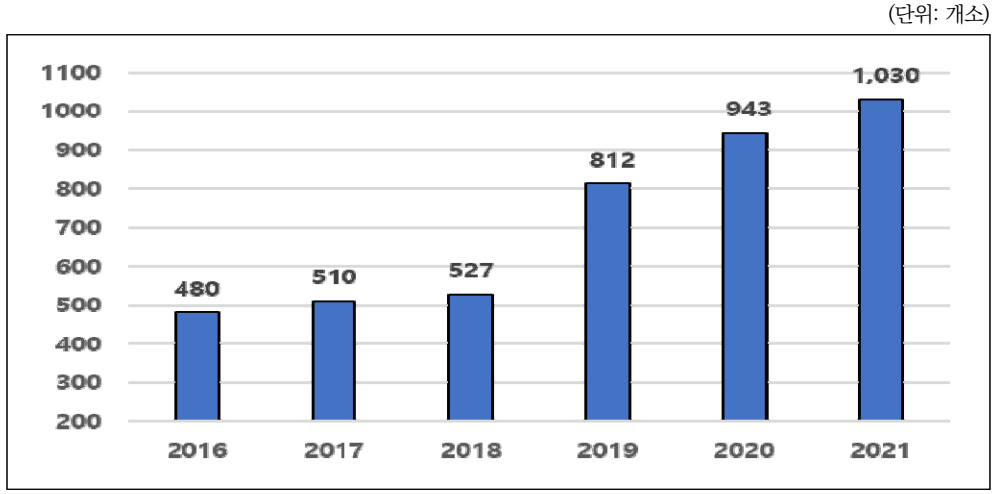

2-10.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 평가를 받는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 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으로 절대평가로 가장 우수한 A부터 매우 미흡한 E의 5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한해에 전수 평가를 받으며, 시설수가 많은 재가급여제공기관은 2년에 구분하여 평가를 받는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016~2017년과 2019~2020년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18년에 평가가 이루어졌다. 시설평가는 2021.3~2022.7.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평가결과를 년도별로 비교하면 방문요양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2017년과 비교하여 2019~2020년 평가에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평가에서 방문요양 기관 중 31.9%와 36.9%가 A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미흡한 E의 비율은 2016~2017년 평가와 비교할 때, 감소세로 고무적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 결과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보호는 A의 비중은 감소하고, E의 비중은 유사 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감소와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평가결과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 이외의 서비스의 경우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보호의 경우 양적 축소와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가장 최근 평가결과는 2018년으로 A 등급 비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3.9%, 노인요양시설이 18.3%이며, E 등급 비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31.0%, 노인요양시설이 16.0%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제공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평가결과가 나쁘며 그 비율 또한 1/3이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비해서는 미흡의 비율이 낮지만,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비교하면 상당수 기관이 미흡한 결과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에서도 운영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상향 표준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표 31〉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산출식	$\frac{\text{급여유형별 평가등급 기관 수}}{\text{당해 연도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기관수: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 중 A~E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수 - 당해 연도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수: 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 연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으로 정기평가만 포함(평가 불가기관은 제외) * 평가 불가기관: 당해 연도 기준 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 등(평가예정일 수급자 3인 미만, 행정처분, 종사자 평가대상 없음, 평가자료 분실 및 거부)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불가기관 기준에 의함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부표 32〉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기초자료(2016~2018년도)

(단위: 개소, %)

구분	2016					2017					2018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전체	100.0 (2,800)	100.0 (717)	100.0 (85)	100.0 (795)	100.0 (64)	100.0 (2,767)	100.0 (643)	100.0 (82)	100.0 (579)	100.0 (31)	100.0 (1,469)	100.0 (2,818)
A	24.7	21.5	38.8	36.9	10.9	24.2	21.8	35.4	27.8	9.7	3.9	18.3
B	31.9	33.8	28.2	29.7	42.2	31.8	33.9	41.5	30.4	19.4	17.3	23.6
C	20.7	24.1	18.8	15.5	32.8	22	25.2	12.2	21.9	25.8	24.2	24.5
D	11.9	12.6	8.2	11.1	10.9	12.7	13.8	3.7	11.1	29.0	23.6	17.6
E	10.8	8.1	5.9	6.9	3.1	9.3	5.3	7.3	8.8	16.1	31.0	16.0

주: 2016~2018년 영역별 전체 표본 수 오기입 수정(수정 전: 등급별 표본 수, 수정 후: 급여유형별 표본 수)

〈부표 32〉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지표 기초자료(2019~2020년도)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체	100.0 (3,399)	100.0 (665)	100.0 (99)	100.0 (1,259)	100.0 (43)	100.0 (3,540)	100.0 (664)	100.0 (131)	100.0 (1,053)	100.0 (23)
A	31.9	25.7	44.4	35.5	7.0	36.9	37.2	51.1	29.5	4.3
B	33.8	36.7	21.2	31.5	48.8	34.2	34.2	31.3	38.1	26.1
C	18.4	19.1	24.2	17.1	27.9	16.8	17.2	10.7	18.4	52.2
D	9.8	12.5	7.1	9.5	9.3	7.2	7.8	2.3	7.8	4.3
E	6.1	6.0	3.0	6.4	7.0	4.9	3.6	4.6	6.2	13.0

〔부도 29〕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재가급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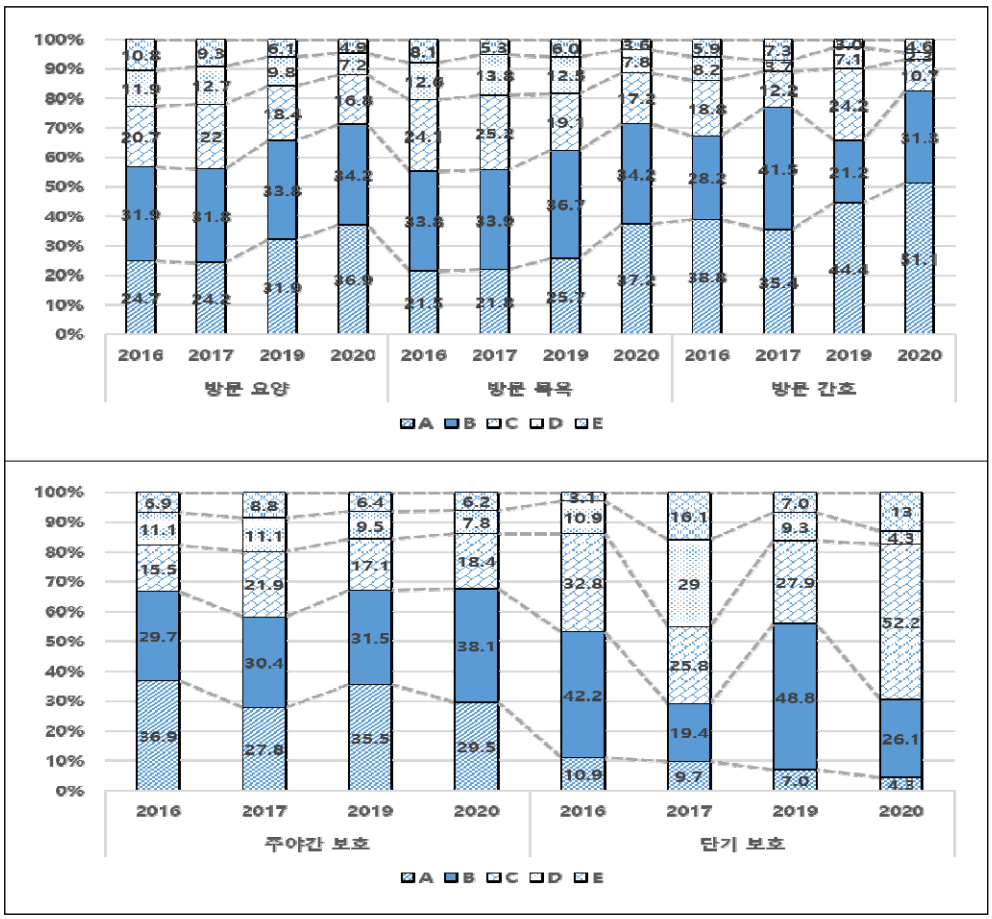

〔부도 30〕 급여유형별 평가등급 현황(시설급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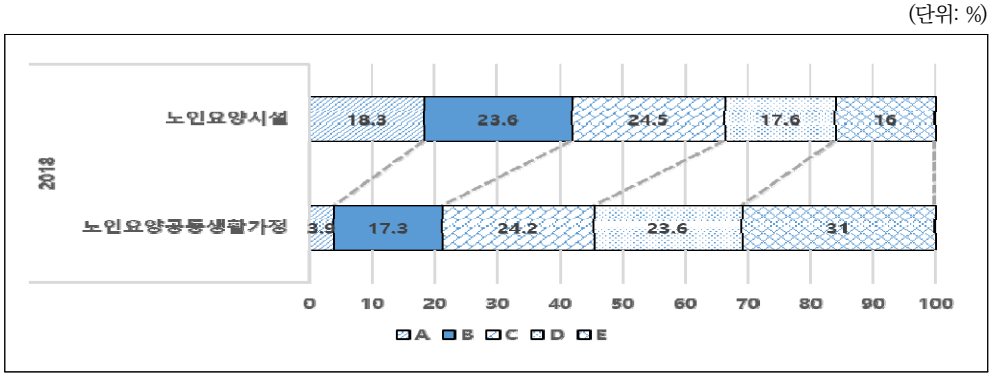

다. 장기요양요원 현황 행정지표

3-1.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는 2016년 340천명에서 2021년 562천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장기요양요원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약 90%가량이 요양보호사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사 6.0%, 간호(조무)사 4.3%, 물리(작업)치료사 0.6%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2016년 14,682명으로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4.3%에서 2021년 33,736명으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하여 타 직종에 비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함께 재가급여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확대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부표 33〉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 요원 수 대비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수
산출식	$\frac{\text{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수}}{\text{장기요양요원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수〉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수: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하단의 기준에 따라 발췌한 후 합산한 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 1회라도 심사결정이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기산(원청구 기준, 중복제거)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각 연도 말 발췌 기준 '가장 최근 가감산' 결정 기준으로 연도별 '10분이라도 근무내용 신고-제출-결정'받은 요양보호사(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중복제거) * 장기요양근무 요양보호사 수 집계는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 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한 수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전산시스템에서는 ①과 ②의 중복은 제거가 불가능함 -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수: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근무 간호(조무)사의 수를 하단의 기준에 따라 발췌한 후 합산한 수 * 방문간호는 당해 연도 1회 이상(10분 이상)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수로 중복 제거하였으며, 주야간, 단기, 시설은 따로 합산하여 중복을 제거한 수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각 연도 말 발췌 기준 연도별 '10분이라도 근무내용 신고-제출-결정'받은 간호(조무)사(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중복제거) * 사회복지사 등 방문 업무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타 기관의 일방 방문간호 혹은 주야간, 단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복 기산될 수 있음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td><td>- 장기요양기관 근무 물리(작업)치료사 수: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 수를 합산한 후 중복을 제거한 수
- 사회복지사 수: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수
* 2016~2018년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활용
〈장기요양요원 수〉
- 당해연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수를 합산한 수</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요양보호사</td><td>306,444</td><td>330,178</td><td>365,964</td><td>399,328</td><td>434,980</td><td>500,891</td></tr>
<tr><td>간호(조무)사</td><td>16,053</td><td>17,253</td><td>18,319</td><td>19,005</td><td>22,245</td><td>24,158</td></tr>
<tr><td>사회복지사</td><td>14,682</td><td>18,535</td><td>22,305</td><td>26,395</td><td>30,268</td><td>33,736</td></tr>
<tr><td>물리(작업)치료사</td><td>2,569</td><td>2,584</td><td>2,678</td><td>3,016</td><td>3,204</td><td>3,468</td></tr>
<tr><td>전체</td><td>339,748</td><td>368,550</td><td>409,266</td><td>447,744</td><td>490,697</td><td>562,253</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사회복지사)</td></tr>
</table>

〔부도 31〕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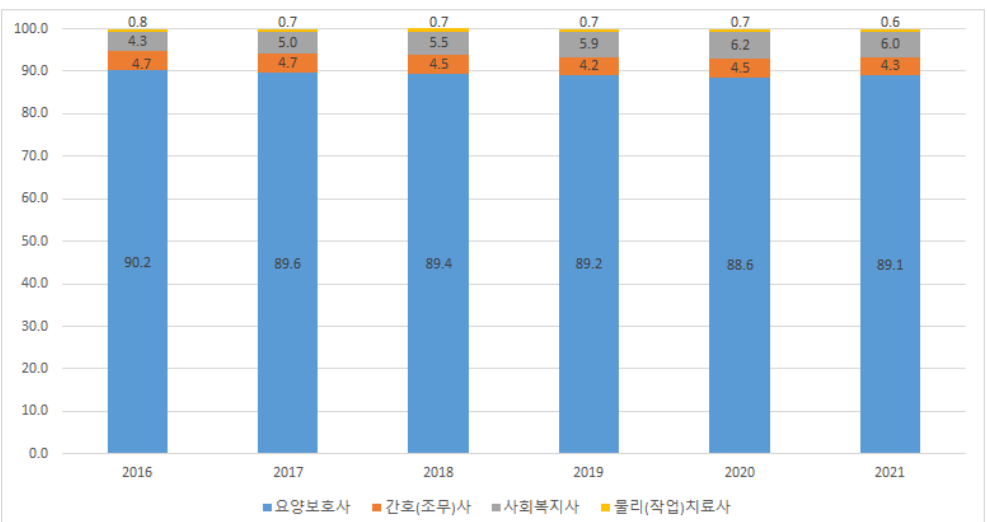

3-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는 2016년 141만명에서 2021년 2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의 증가는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약 9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2021년은 2020년대비 약 272천명이 증가하여 최근 들어 급속하게 요양보호자 자격증 발급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조치사항으로 요양보호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인정, 장기요양기관 현장실습을 교육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도록 완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표 35〉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
산출식	해당 없음
세부 지표별 정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연도별 누적 현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요양보호사 1, 2급과 취득유예자 포함(2019~2021년도 발급자 수 기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자료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췌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 1,415,203 / 1,512,750 / 1,625,658 / 1,786,186 / 1,935,229 / 2,206,730
자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울 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3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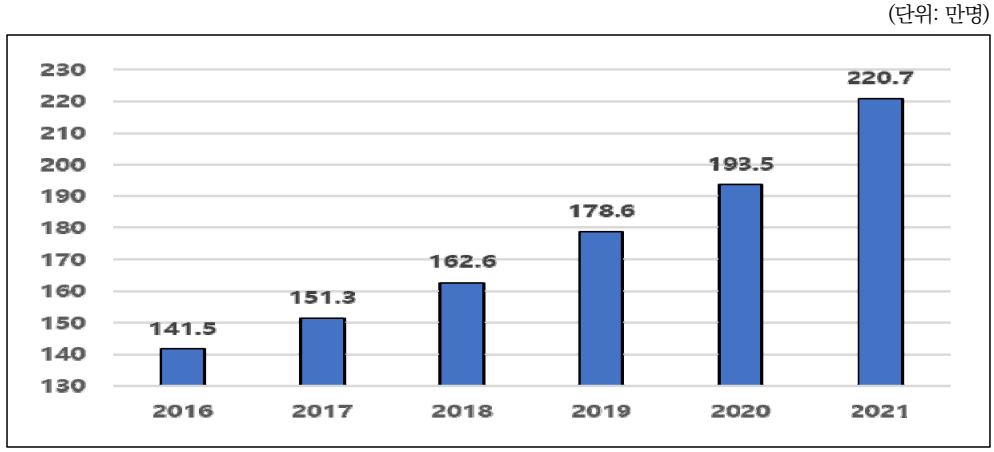

3-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16년 21.7%에서 2021년 22.7%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급제도 개편 및 인지지원 등급 도입, 노인인구의 증가의 요인으로 장기요양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장기요양기관 유형(방문간호 제외)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요양보호사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도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수}}{\text{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당해 연도 1회 이상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수로 중복 제거 수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 1회라도 심사결정이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기산(원청구 기준, 중복제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각 연도 말 발췌 기준 '가장 최근 가감산' 결정 기준으로 연도별 '10분이라도 근무내용 신고-제출-결정'받은 요양보호사(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중복제거)
* 장기요양근무 요양보호사 수 집계는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 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한 수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전산시스템에서는 ①과 ②의 중복은 제거가 불가능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 당해 연도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누적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요양보호사 1, 2급과 취득유예자 포함(2019~2021 발급자 수 기준)</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장기요양기관근무 요양보호사</td><td>306,444</td><td>330,178</td><td>365,964</td><td>399,328</td><td>434,980</td><td>500,891</td></tr>
<tr><td>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td><td>1,415,203</td><td>1,512,750</td><td>1,625,658</td><td>1,786,186</td><td>1,935,229</td><td>2,206,730</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td></tr>
</table>

〔부도 3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대비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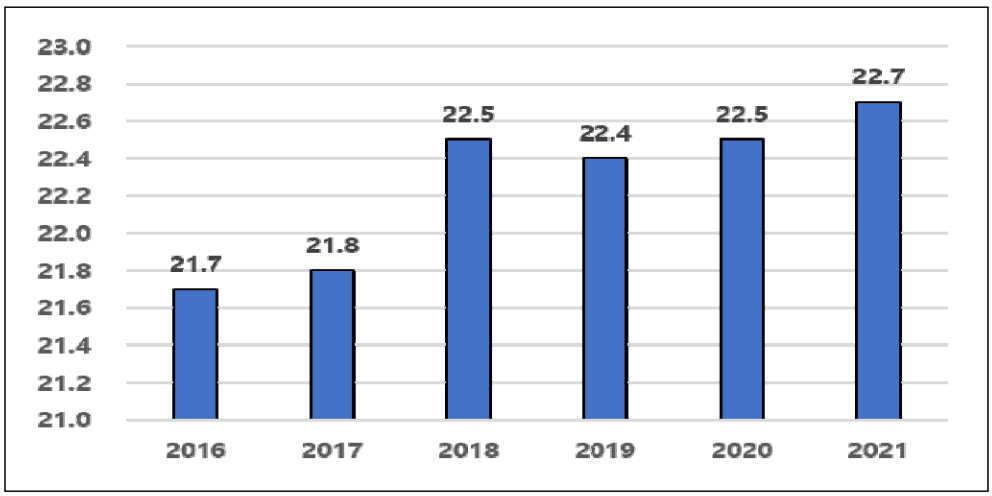

3-4.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 제공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년 2016년 60천명에서 2021년 122천명으로 6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016년대비 2017년에는 5천명가량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3천명이 증가하였다. 가족인요양보호사의 증가속도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16년에는 19.6%였으나, 2021년에는 24.4%로 높아졌으며,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4명중 1명은 가족 수급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인요양보호사 확대는 가족 돌봄에 대한 비용을 사회가 보상하는 형태로 인식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부표 37〉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지표 정의 및 산식

구분	세부내용
지표정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
산출식	$\frac{\text{가족인 요양보호사 수}}{\text{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수}} \times 100$
세부 지표별 정의	-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 당해 연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심사결정 받은 요양보호사수(중복 제거)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당해 연도 1회 이상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수(중복 제거) * 장기요양근무 요양보호사 수 집계는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 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중복 수 제거한 수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전산시스템에서는 ①과 ②의 중복은 제거가 불가능함
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 / 60,001 / 65,410 / 75,269 / 86,884 / 99,352 / 122,288 장기요양기관근무 요양보호사 / 306,444 / 330,178 / 365,964 / 399,328 / 434,980 / 500,891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DW

[부도 34]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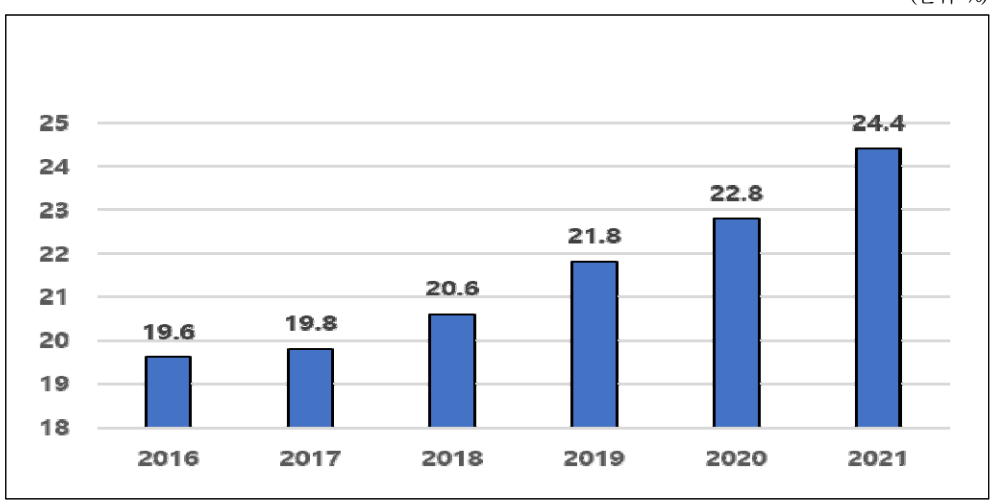

3-5.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교육 의무대상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정기간동안 동일 기관에서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는 2016년 75천명에서 2021년 161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 이수 비율은 2016년 63.9%였으며, 2018년 66.6%로 다소 증가하지만, 2021년 62.5%로 다소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50.2%로 감소하였다.

실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월 60시간 미만의 비율이 높고,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무 교육 대상자가 실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높지 않다. 2021년을 기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교육이수 대상자의 비중은 32.2%이며, 근무 요양보호사 중 실제 교육이수자는 20.1%에 불구하다. 수급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수준에 주요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표 38〉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지표 정의 및 산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표정의</td><td>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수 대비 직무교육 이수 요양보호사수</td></tr>
<tr><td>산출식</td><td>$\frac{\text{직무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text{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수}} \times 100$</td></tr>
<tr><td>세부 지표별 정의</td><td>- 직무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 교육대상자 명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 명단이 일치한 요양보호사수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 수: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자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021년 직무교육 이수자 중 17,070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 교육
* 2019~2021년 기준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td></tr>
<tr><td>지표 기초자료
(단위: 명)</td><td>
<table>
<tr><th>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직무교육 이수 요양보호사수</td><td>47,888</td><td>53,068</td><td>65,439</td><td>71,866</td><td>65,004</td><td>100,790</td></tr>
<tr><td>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수</td><td>74,991</td><td>89,337</td><td>98,328</td><td>117,299</td><td>129,585</td><td>161,380</td></tr>
</table>
</td></tr>
<tr><td>자료원</td><td>한국산업인력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송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직무교육 대상자 발췌자료</td></tr>
</table>

〔부도 35〕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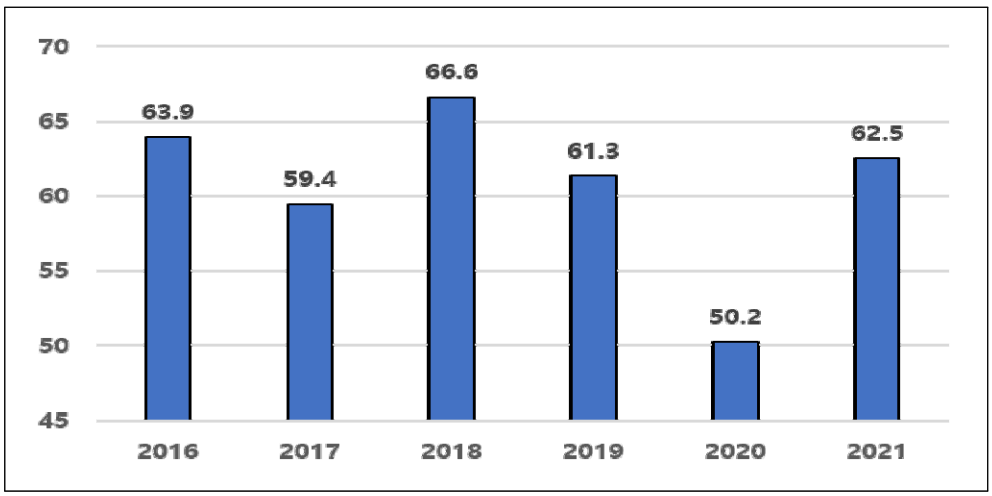
(단위: %)